韓國의 輸入(Korea's Import)

- 제1편 輸入制度 및 政策 -

2003. 1.

産 業 資 源 部

韓國貿易協會·韓國輸入業協會

발 간 사

지난 1951년 2억불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수입은 과거 50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02년에는 1,520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군정하에서 수입쿼터제로 출범하였으나, 2001년 수입자유화율 100%를 달성함으로써 WTO 출범 등 세계경제의 개방화·글로벌화 추세속에서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12위의 輸入大國으로 성장한 오늘, 수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수출을 위한 수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도 수출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갈「동전의 양면」이라는 思考의 轉換이 요구됩니다. 수입은 우리나라에 없는 물자를 조달하여 國內生産活動을 가능하게 해주고, 消費者의 選擇機會를 확대하여 國民厚生을 증대시켜 줍니다.

이에 産業資源部는 지금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6개월 여간의 노력 끝에 1945년 이후 輸入政策의 변화와 수입동향 및 통계를 망라한 「韓國의 輸入(Korea's Import)」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해방이후 과거사를 制度整備, 經濟開發, 開放經濟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시대별 정책변화를 약술하고, 무역업,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수입선다변화, 원산지 등 수입정책별 변화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2편은 주요수입동향, 그림으로보는 수입현황, 분야별 수입동향의 세 부분을 통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중요성과 역할이 이 책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고, 수입에 대해 막연히 否定的이었던 태도가 개선되어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경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책자 발간을 위해 노력한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업협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 1.

貿易投資室長 金在鉉

< 편 찬 진 >

■ 총괄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 박봉규

■ 간사 : 산업자원부 수입과장 김경종

- 수입과 서기관 이장훈
- 수입과 사무관 김성열
- 수입과 사무관 홍승인
- 수입과 사무관 박중수
- 수입과 주무관 이승도
- 수입과 주무관 임경숙

■ 한국무역협회

-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장 김극수
-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연구원 윤용
-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연구원 장상식

■ 한국수입업협회

- 부회장 최경연
- 정보지원팀 차장 서용익
- 무역통상팀 과장 김진현

<목 차>

第一部 時代別 變化

Ⅰ. 制度整備段階 ·····

Ⅰ- 1. 建國初期의 輸入政策 (1945～53年) ·····
Ⅰ- 2. 戰後復興期의 輸入政策 (1954～60年) ·····

Ⅱ. 經濟開發段階 ·····

Ⅱ - 1. 經濟開發初期의 輸入政策(1961～66年) ·····
Ⅱ - 2. 輸出主導成長期의 輸入政策 (1967～80年) ·····

Ⅲ. 開放經濟段階 ·····

Ⅲ - 1. 開放化初期의 輸入政策 (1981～94年) ·····
Ⅲ - 2. 開放化進行期의 輸入政策(1995～2001年) ·····

※ 시대별 수입추이 ·····

第二部 制度別 變化

Ⅰ. 輸入自由化의 推進 (輸出入公告) ·····

Ⅰ- 1. 1978年의 輸入自由化 ·····
(1) 수입자유화 대책위원회 활동 ·····
(2) 1978. 5월 수입자유화조치 ·····
(3) 1978. 7월 수입자유화조치 ·····
(4) 1978. 9월 수입자유화조치 ·····

Ⅰ- 2. 1979년의 수입자유화 ·····
(1) 1979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2) 1979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 ·····

Ⅰ- 3. 1980년의 수입자유화 ·····
(1) 1980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2) 특수지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에 관한 고시 ·····
(3) 1980년도 하반기 및 1981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Ⅰ - 4. 1981년의 수입자유화 ·····

Ⅰ - 5. 1982년의 수입자유화 ·····
(1) 1982년도 하반기 및 1983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2) 수입자유화 예시작업추진 ·····

Ⅰ - 6. 1983년의 수입자유화 ·····
(1) 수입자유화 논쟁 ·····
(2) 1983년도 하반기 및 1984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3) 수입자유화 예시작업추진 ·····

Ⅰ - 7. 1984년의 수입자유화 ·····
(1) 1984. 1. 1 수입자유화 ·····
(2) 1984년도 하반기 및 1985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3) 수입자유화계획 수립 ·····

Ⅰ - 8. 1985년의 수입자유화 ·····
(1) 1985년도 하반기 및 1986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2) '86-'88 수입자유화계획 공고 ·····

Ⅰ - 9. 1986년의 수입자유화 ·····

Ⅰ - 10. 1987년의 수입자유화 ·····

Ⅰ - 11. 1988년의 수입자유화 ·····
(1) 4.1 수입자유화 ·····
(2) 7.1 수입자유화 ·····
(3) 기타 수입촉진을 위한 수입제도개선 ·····

Ⅰ - 12. 1989년의 수입자유화 ·····
(1) '89-'91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수립 ·····
(2) 수입자유화 실시 및 수출입공고의 운영 ·····

Ⅰ - 13. 1990년의 수입자유화 ·····
(1) 수입자유화 실시 및 수출입공고의 운영 ·····
(2) '92-'94 수입자유화계획 수립 ·····

Ⅰ - 14. 1992년의 수입자유화 ·····

Ⅰ - 15. 1994년의 수입자유화 ·····

Ⅰ - 16. 1997년의 수입자유화 ·····

Ⅰ - 17. 2001년의 수입자유화 ·····

Ⅱ. 輸入監視制度 ·····

Ⅱ- 1. 수입감시제도의 도입 (1978년) ·····
Ⅱ- 2. 1978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3. 1979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4. 1979년 하반기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5. 1981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6. 1982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7. 1983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8. 1984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9. 1985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10. 1986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11. 1987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12. 1988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Ⅱ- 13. 수입감시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 ·····

Ⅲ. 輸出入別途公告 및 中古品의 輸入制限 ·····

Ⅲ- 1. 1989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2. 1990년의 수출입별도공고 개정 ·····
Ⅲ- 3. 1991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4. 1993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5. 1994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6. 1995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7. 1996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8. 1997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9. 1998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10. 1999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Ⅲ- 11. 2000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Ⅳ. 輸入先多邊化制度 ·····

Ⅳ- 1.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실시 ·····
Ⅳ- 2. 1979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3. 1980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4. 1982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5. 1982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6. 1983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7. 1984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8. 1985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9. 1986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0. 1987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1. 1988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2. 1989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3. 1990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4. 1991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5. 1994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6. 1995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7. 1996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8. 1997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Ⅳ- 19. 1998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

Ⅴ. 統合公告制度 ·····

Ⅴ- 1. 특별법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의 통합운용 ·····
Ⅴ- 2. 1983년의 통합고시 운용 ·····
Ⅴ- 3. 1984년의 통합고시 운용 ·····
Ⅴ- 4. 1985년의 통합고시 운용 ·····
Ⅴ- 5. 1986년의 통합고시 운용 ·····
Ⅴ- 6. 1987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7. 1988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8. 1989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9. 1990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0. 1991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1. 1992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2. 1993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3. 1994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4. 1995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5. 1996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6. 1997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7. 1998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8. 1999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19. 2000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20. 2001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Ⅴ- 21. 2002년의 통합공고 운용 ·····

Ⅵ. 原産地制度 ·····

<참고> 한국의 수입 관련법령의 체계 (2002년말 현재) ·····

第一部

時代別 變化

Ⅰ. 制度整備段階

Ⅰ- 1. 建國初期의 輸入政策 (1945～53年)

가. 主要施策

○ 1946年 1月 3日 軍政法令 第39號로 "對外貿易規制" 공포

- 貿易業免許制의 실시로 軍政廳이 지정한 자만이 輸出入을 行할 수 있도록 함

- 不要不急商品의 輸入과 緊要國內商品의 輸出을 防止하기 위하여 輸出入品 許可制 실시

- 輸出入品 輸送手段, 港口, 通信등에 대해 制限

○ 同年 10月 8日 關稅令을 개정하여 輸入關稅를 10% 이하로 引下

- 財政收入과 産業保護를 目的으로 한 自主的인 關稅가 아닌 美軍政에 유리한 低率關稅政策 實施

○ 1947年 6月 1日 軍政法令 第145號에 의거 朝鮮換金銀行을 設立

- 原始的 物物交換制에서 信託船積制로 발전

○ 1948年 12月 10日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援助에 관한 協定」(ECA 援助協定) 調印과 함께 無償援助의 雙務條約으로서 9改原則(닷지라인)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 주요내용으로는 經濟安定을 위한 財政金融面의 긴축정책, 稅率과 貿易統制, 쌀수출 및 귀속재산처리, 수출산업발전 등이 있음

○ 1949年 2月 貿易金融制度를 실시함

- 集荷資金과 船積資金으로 구분하고 商工部가 정한 輸出奬勵對象品目과 輸出許可品目에 한하여 集荷資金은 소요자금의 50%내에서, 船積資金은 소요자금의 75% 한도내에서 융자를 실시함

○ 同年 2月 輸出輸入의 쿼타制가 輸出入의 許可制의 補完策으로 실시됨.

- 全般的인 物資需給計劃을 기초로 하여 輸入商品을 類別 및 量的으로 統制 시도

- '49～'53년 기간에는 分期別 쿼타制가 실시, '53.11에는 分期別 쿼타制에서 上下半期別 쿼타制로 變更

- 輸入可能品目은 3段階(款, 項, 目)으로 分類되었고 商工部의 승인을 받으면 同一項內에서는 品目割當의 代替 가능

- 輸入割當은 地域別, 卽 日本과 기타 地域으로 분류됨

○ 同年 4月 新關稅法의 稅政으로 關稅自由權 확립

- 課稅對象의 擴充, 稅率의 引上(基本稅率 3割)

○ 1951年 6月 特惠輸出制度 실시

- 非必需 國內生産品(總 57個 品目)의 輸出에 대하여 그 輸出稼得額의 1% 내지 10%(平均 5%)에 해당하는 金額의 한도내에서 正常的으로 輸入이 許容되지 않는 40여 人氣品目을 輸入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함

○ 1952年 5月 輸出入 링크制 실시

- 特定 人氣品目의 수입을 特定輸出品에 링크

- 그러나 輸出에 링크된 輸入品目은 一般輸入쿼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링크制는 輸出을 크게 증가시켜 주는 要因이 되지 못함

○ 同年 施設財 및 原料에 대한 關稅免除

- 發電, 造船, 機械, 化學등 主要産業에 必要한 施設財 輸入에 대한 關稅免除

- 특히, 造船, 機械, 鑛業에 대하여는 原料輸入에까지 적용 확대

○ 同年 값싸고 품질좋은 商品의 原産地로부터 直輸入原則에 따라 對日輸入에 대하여 輸入先 多邊化 施策 추진

○ 1953年 特惠輸出制度의 强化

- 人氣品目 輸入에 使用할 수 있는 輸出額 稼得額 比率을 4%~50%(平均 15%)로 引上

나. 主要特徵

○ 軍政下 및 建國初期에는 産業不在, 生必品不足 및 外換不足등으로 정상적인 무역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援助物資등에 의존하는 對外依存的 經濟構造를 하고 있었으며 政府保有外換에 의한 輸出入과 援助輸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民間의 比重은 극히 적었음

○ 輸入을 抑制하고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輸出促進策을 실시함.

- 1949. 2 貿易金融制度, 輸入쿼타制 實施
- 1951. 6 特惠輸出制度 實施
- 1952. 5 輸出入링크制 실시
- 1953. 特惠輸出制度의 强化 (輸出稼得額比率基準 : 平均 5%~15%)

○ 그러나 動亂으로 인하여 物資需給의 根本的인 不均衡을 시정할 수 없었고 經濟的 不安과 外換의 不足으로 輸入쿼타의 擴大가 불가능하였음. 특히 輸入쿼타制는 國內産業保護보다는 외환사정에 따라 운영되었고 링크제도 輸出産業育成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음.

年度別 輸出入 推移 (단위 : 백만불)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輸出入總額	259.4	230.2	146.5	32.3	41.4	80.8	206.1
輸 出	26.8	22.2	13.8	29.4	15.6	26.6	44.7
輸 入	232.6	28.0	132.7	2.9	26.1	54.2	161.3
貿易收支	△205.8	△185.7	△118.9	26.5	△10.5	△27.6	△116.5
※ 援助輸入比重(%)	85.9	84.4	87.7	93.9	83.2	75.1	55.5

Ⅰ - 2. 戰後復興期의 輸入政策 (1954～60年)

가. 主要施策

○ 1954年 7月 地域別 쿼타제를 廢止하고 品目別 쿼타제만 실시하다가 1955年 8月 23日 輸入쿼타제 完全廢止

○ 1955年 8月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한 IMF 및 IBRD에 동시 가입

○ 同年 下半期에는 特惠輸出品目이 차츰 줄어들어 8月 15日 特惠輸出制度를 廢止함.

○ 1955年 半期別 貿易計劃 發表

- 許可 또는 禁輸되는 輸出入物品의 半期別 貿易計劃을 발표하고 輸入許可品目의 目錄에는 品目別 半期쿼타를 포함함.

- 輸出計劃은 自動承認品目, 制限承認品目, 禁輸品目으로 구분

- 輸入計劃은 自動承認品目, 制限承認品目, 禁輸品目으로 구분, 制限品目의 輸入은 主務部處의 事前承認을 必要로 함.

○ 1957年 12月 13日「貿易法」公布

○ 1958年 3月 18日「貿易法施行令」및「貿易委員會規程」公布

○ 同年 5月 11日「貿易法施行細則」公布

- 그동안 軍政法令과 산발적인 行政行爲에 의존하던 貿易政策이 비로소 法的體系를 정비

○ 1959年 10月 輸出促進對策의 일환으로서 輸出用 原資材 輸入에 대해 關稅減免

나. 主要特徵

○ 1954~60年 期間은 戰後復舊와 外援에 의한 消費財貿易이 中心이 됨.

- FOA(ICA), PL480(잉여농산물 원조), UNKRA 등의 원조에 의하여 忠州肥料工場, 수개처의 발전소건설, 교통, 체신, 사회공공시설 등의 복구와 消費財를 中心한 輸入代替産業의 育成

- 物價安定을 위한 低換率政策과 社會間接資本 및 輸入代替産業의 건설을 최중점사업으로 한 復興事業의 推進은 國民經濟構造를 輸入依存形 및 輸出不適格 經濟構造로 만듦

○ 經濟再建과 各種 行政制度의 整備

- 1957.12「貿易法」制定前까지는 軍政法令과 산발적인 行政行爲에 의해 貿易施策 실시

  · 1954~55年 期間中 外貨貸付制度, 特惠輸出制度, 輸入쿼타制 등 廢止
  · 1955年 半期別 貿易計劃 發表

- 1957. 12「貿易法」制定으로 비로소 近代國家로서 最初의 貿易法 體系 정비

○ 1955年 8月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한 IMF 및 IBRD 가입으로 新生 韓國의 國際的 地位 向上

年度別 輸出入 推移 (단위 : 백만불)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輸出入總額	267.5	359.4	410.7	464.7	394.7	323.6	376.3
輸 出	24.2	18.0	24.6	22.2	16.5	19.8	32.8
輸 入	243.3	341.4	386.1	442.2	378.2	303.8	343.5
貿易收支	△219.1	△323.4	△361.5	△420	△361.7	△284	△310.7
※ 援助輸入 比重(%)	61.4	68.1	82.8	84.5	82.2	69.3	67.5

Ⅱ. 經濟開發段階

Ⅱ - 1. 經濟開發初期의 輸入政策(1961～66年)

가. 主要施策

○ 1960年 輸出奬勵補助金制度, 輸出入링크제 실시

- 單一(固定) 換率制 採擇에 따라 弱化된 國內輸出業體의 競爭力支援을 위하여 도입운영('65年 廢止)

- 輸出을 促進하고 輸入을 抑制하기 위하여 輸出實績에 輸入을 結付시키는 制度

○ 1961年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수립('62～'66)

- 輸出擴大를 위한 生産基盤擴充과 輸入代替産業 育成

○ 同年 2月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貿易金融規程」을 廢止하고 「輸出金融規程」 제정

- 輸入金融 制外
- 수출금융, 외화표시공급자금, 외화표시지급보증, 수출산업육성자금, 선수출금융,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금융, 수출 USANCE 등

○ 1962年 3月 輸出振興法 制定・公布

- 輸出品 製造業體가 輸出用原資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무역금융 지원
- 담보력이 미약한 수출업자에게 연대보증에 의한 무역금융지원

○ 1964年 輸出振興綜合對策 수립, 靑瓦臺 輸出振興擴大會議 개최 (1956년 이후 매월개최)

○ 同年 5月 換率改革, 固定換率制에서 單一換率制로 變更 ('65.3부터 시행)

○ 1965年 3月 GATT에서 輸出商品에 대한 直接補助方式을 지양요청 해옴에 따라 直接補助方式에서 間接補助方式으로 전환

- 輸出入링크제 緩和, 輸出奬勵補助金制度 廢止
- 輸出用 原資材에 대해 市中銀行의 支拂保證으로 L/C 開設
- 輸出品 原資材 生産業者에 대한 內國信用狀制 실시
- 수출산업 육성자금운영 및 수출특화산업지원육성

○ 1966年 貿易去來法 제정

- 貿易法, 輸出振興法, 輸出奬勵金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통합 정비

나. 主要特徵

○ 經濟의 自立度提高 및 經濟開發에 必要한 外貨調達을 위하여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실시와 더불어 輸出드라이브 成長政策 및 輸入代替 産業育成을 강력히 추진

- 이를 위하여 60年代初期에는 輸出促進 및 輸入抑制를 위한 直接的인 統制 및 支援手段 運用

  · 1961年 輸出奬勵補助金制度, 輸出入링크制 실시

- 60年代 中盤에 들어 GATT의 요청에 따라 輸出産業에 대한 直接的인 支援方式에서 間接的인 支援方式으로 轉換

  · 1964年 輸出振興綜合施策 수립 추진
  · 1965年 輸出奬勵補助金制度 廢止, 輸出入링크制 緩和

○ 貿易關聯法體系 整備

- 1962. 3 輸出振興法 制定
- 1966年 貿易去來法 制定

年度別 輸出入 推移 (단위 : 백만불)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輸出入總額	356.9	476.6	647.1	523.4	638.4	966.7
輸　　出	40.8	54.8	86.8	119.0	175.0	250.3
輸　　入	316.1	421.8	560.3	404.4	463.4	716.4
貿易收支	△275.3	△367.0	△473.5	△285.4	△288.4	△466.1

Ⅱ - 2. 輸出主導成長期의 輸入政策 (1967～80年)

가. 主要施策

○ 1967年 4月 15日 GATT 加入, 케네디라운드 참여

○ 1967年 7月 25日 輸出入링크制 廢止

○ 1967年 12月 1日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의한 輸出入期別公告 실시

- 1968.1.1 시행

- 輸入開放幅의 擴大로 國內産業의 體質改善과 國際競爭力의 强化를 도모하여 輸出增進을 기함.

- 輸入禁止 또는 輸入制限品目의 選定

  · 特別法에 따른 制限品目
  · 國民保健上 有害品目
  · 國家安保 또는 公安上 有害한 品目
  · 道德良俗을 해치는 品目
  · 國民經濟水準에 비추어 奢侈性이 있는 品目

- 開放品目의 選定

  · 종전의 輸入開放品目
  · 關稅率이 50% 이상인 品目
  · 外換對數가 500 : 1 이상인 品目

○ 1967年 11月 22日 新關稅法 制定·實施

- 開放體制로의 移行에 따른 關稅側面에서의 補完 對策
- 手段 : 不當廉賣防止關稅, 緊急關稅, 相計關稅, 制限的 關稅授權制度

○ 1969年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綜合輸入抑制策 강구

- 輸入擔保金 積立率引上과 不要不急品目 및 短期延拂輸入의 規制

○ 1973 重化學工業育成 선언

- 輕工業의 輸出基盤을 바탕으로 中間財 및 輸入代替를 통한 經濟의 自立基盤 구축

- 産業構造高度化 및 防衛産業育成 도모

- 外國의 輸入規制强化, 輕工業製品輸出의 限界등 輸出與件의 變化에 따른 대응

- 重化學製品 輸出支援을 위하여 延拂輸出支援資金 擴充 및 輸出入銀行 發足

○ 70年代 中盤까지는 工業化의 적극적인 추친 및 世界貿易環境의 變化로 貿易收支逆調가 深化됨에 따라 輸入規制强化

- Link 輸入品目의 Link 율 하향조정
- 輸出用原資材의 國産代替促進을 위한 關稅還給制 채택
- 수입담보금 적립율의 상향조정

○ 1978 3次에 걸쳐 대폭적인 輸入自由化措置 단행

- 수입추천한도제, 링크제, 실수요자제한 등 수입제한요인 단계적 폐지

- 自由化에 따르는 衝擊緩和를 위하여 輸入監視 및 自由化豫示制 실시

- 수입자유화율 : 52.7%('77) → 64.9%('78)

나. 主要特徵

○ 1967. 4 GATT 加入 및 輸入規制方式의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의 전환등으로 國民經濟의 開放化 및 國際化 推進

- 輸入開放의 副作用으로 關稅側面에서의 補完對策으로서 1968. 1 新關稅法 制定・實施

- 1969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綜合輸入抑制策 강구

・輸入保證金 積立率引上과 不要不急品目 및 短期延拂輸入의 規制

○ 輸出主導에 의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하여 各種輸出支援施策을 强化

- 輸出産業의 生産基盤을 擴充시키기 위한 輸出金融 지원 강화
- 1969 輸出工業團地 및 輸出自由地域의 조성
- 1969 韓國輸出入銀行法의 制定 및 輸出保險制度의 실시

○ 1974年 第1次 石油波動 이후 전세계적인 保護貿易主義의 擴散으로 交易條件惡化 및 貿易收支逆調 深化

○ 原資材의 適期安定確保와 工業化의 推進에 따른 國産代替의 促進

- 石油波動 이후의 原料내셔널리즘의 高潮로 國際原資材價格의 앙등 및 이에 따른 값싼 原資材의 適期安定 確保 긴요

  · 원유, 원면, 고철, 원목 등 주요원자재수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관세율 인하 등 수입지원

- 輸入原資材 및 中間財의 國産代替 促進

  · 國産原資材 使用促進을 위하여 輸入原資材와 國産原資材에 대한 差等金融支援

  · 輸出用 原資材輸入에 대한 關稅의 事前減免制度를 事後還給制度로 전환

○ 1977年 石油波動의 진정과 世界經濟의 회복에 따라 수출 100억불 달성 및 이에 따른 外換事情의 好轉으로 輸入自由化 再開

- 자유화품목 : CCCN 4단위기준 155개
- 자 유 화 율 : 53.8% ('77) → 68.6% ('78)

○ 1979年 第2次 石油波動으로 輸入自由化推進 中斷

年度別 輸出入 推移 (단위 : 백만불)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輸出入總額	1,316	1,917	2,445	2,818	3,461	4,146	7,465
輸 出	320	455	622	835	1,067	1,624	3,225
輸 入	996	1,462	1,823	1,983	2,394	2,522	4,240
貿易收支	△676	△1,007	△1,201	△1,148	△1,326	△897	△1,015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輸出入總額	11,311	12,355	16,488	20,856	27,681	35,393	39,795
輸 出	4,460	5,081	7,715	10,046	12,710	15,055	17,504
輸 入	6,851	7,274	8,773	10,810	14,971	20,338	22,291
貿易收支	△2,391	△2,193	△1,058	△764	△2,261	△5,283	△4,786

Ⅲ. 開放經濟段階

Ⅲ - 1. 開放化初期의 輸入政策 (1981～94年)

가. 主要施策

○ 80年代들어 開放과 競爭, 自律에 立脚한 安定成長追求에 따라 輸入自由化 再開

- 輸入自由比率 : 80年 69.4% → 81年 74.7%

○ 1982. 7 각 個別法에 의한 輸出入制限內容을 統合하여 운영함(統合告示)

○ 1984, 85年에는 輸入自由化 豫示制를 도입하여 輸入自由化對象品目 및 日程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國內産業에 대한 衝擊을 最小化하는 동시에 外國의 開放壓力에 效果的으로 對處

○ 1986. 7 輸入自由化率이 90%대에 進入하여 先進國水準의 시현

○ 1987. 7 從前의 貿易去來法, 輸出組合法, 事業輸出促進法을 統廢合하여 對外貿易法 制定

- 産業影響調査制度 도입
- 輸出商品의 디자인 保護制度

○ 1988. 4 輸入自由化豫示計劃上의 制限品目을 전부 自由化하여 工産品輸入自由化의 事實上 完了

- 輸入自由化率 : 87年 93.6% → 88.4월 94.1%

○ 1989.1 輸入監視制度 廢止

- 마늘, 양파 등 一部 農産物에 대하여는 輸出入公告에서 흡수하여 계속 규제

○ '89-'91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89.6.2 산업정책심의회 통과)

- 수출입공고상 수입자유화

・공산품 등 : '89-'91간 36개품목 수입자유화
・농산물 등 : '89-'91간 227개품목 수입자유화

- 통합공고상 수입자유화

・농산물 : '89-'91간 28개품목 수입자유화

○ CFC 등 특정물질의 수입규제 (‘90.8월)

- ’90.7 정밀화학과에서 CFC 등 특정물질의 수입규제를 요청해 옴에 따라 ’90. 8 수출입별도공고 제11장에 신설, 신규수입제한(상공부 고시 제90-30호 ’90.8.20 발표, 시행)

○ 「’89～’91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91년도 수입자유화예시품목을 개방하기 위하여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개정・고시

- ’91.1.1일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는 품목 : 수출입공고상 93개 품목 (HS10 단위기준)

- 이중 91개 품목은 ’89.6에 수입자유화가 이미 예시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시행

  ・ 바나나, 파인애플, 대두유, 호도 등 농산물 29개 품목
  ・ 면양고기, 돼지설육, 사슴고기 등 축산물 10개 품목
  ・ 잉어, 갯장어, 농어, 해삼, 문어 등 수산물 37개 품목
  ・ 옥사, 견사, 회화, 뎃상, 귀금속류 등 기타품목 15개 품목임

- 고량주와 오가피주 2개 품목은 당초 예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90.8.27～9.1 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각료회담시 ’91.1.1부터 개방하기로 합의된 바 있어 개방하게 됨

- 수입규제품목(자유화율) : 376개 (96.35%) → 283개 (97.2%)

○ ‘92-’94 수입자유화 계획 고시 (‘91.4.1)

- 수출입공고 기준 자유화 품목 (자유화율)

  ・ ‘92. 1. 1 돼지, 사슴 등 43개 품목 자유화 (97.7%)
  ・ ‘93. 1. 1 넙치, 조기 등 45개 품목 자유화 (98.1%)
  ・ ‘94. 1. 1 돼지고기, 가지미 등 46개 품목 자유화 (98.5%)
  ・ ‘94년 이후 수입자유화 유보품목 : 젖소, 육우 등 150개

나. 主要特徵

○ 80年代들어 推進되기 시작한 開放政策의 一環으로 輸入自由化施策의 本格的 推進

- 開放競爭을 통한 産業의 體質强化 및 外國의 開放壓力에 能動的 對處
- 國內産業의 收容能力을 감안한 완만한 開放推進
  - · 産業에 대한 充分한 保護後 開放에 着手
  - · 輸入監視, 輸入先 多邊化, 彈力關稅等 補完對策의 活用
  - · 輸入自由化豫示制 導入

○ 美國 등 主要交易國과의 通商摩擦激化 및 貿易黑字幅 擴大 등으로 인하여 國內市場開放의 持續的 推進

- 輸入自由化率 : 81년 : 74.7% → 94년 : 98.6%
- 輸入監視制度 廢止
- 輸入先多邊化品目 大幅 縮小
- 個別法上의 制限品目 大幅 縮小

○ '87. 7 從前의 貿易去來法, 輸出組合法, 産業輸出促進法을 統廢合하여 對外貿易法 制定, 貿易制度의 先進化·開放化 기틀 마련

- 輸入開放으로 인한 産業被害를 救濟하기 위한 先進國型의 産業被害救濟制度인 産業影響調査制度 도입
- 輸出商品의 디자인 保護制度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공해유발물질에 대한 수출입 규제움직임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의 방안을 강구하게 됨 (CFC 등 특정물질의 수출입제한)

年度別 輸出入 推移 (단위 : 십억불)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輸出入總額	47.3	46.0	50.5	59.8	61.3	66.2	88.3	112.3
輸 出	21.2	21.8	24.4	29.2	30.2	34.7	47.3	60.7
輸 入	26.1	24.2	26.1	30.6	31.1	31.5	41.0	51.8
貿易收支	△4.9	△2.4	△1.7	△1.4	△0.9	3.2	6.3	8.9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輸出入總額	123.9	134.8	152.4	158.4	166.0	198.3		
輸 出	62.4	65.0	71.9	76.6	82.2	96.0		
輸 入	61.5	69.8	81.5	81.8	83.8	102.3		
貿易收支	0.9	△4.8	△9.7	△5.1	△1.6	△6.3		

Ⅲ - 2. 開放化進行期의 輸入政策(1995～2001年)

가. 主要施策

○ 「수입자유화예시계획(94.4)」에 따라 수입제한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 수출입승인을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개편('96.12.30)
- 수출입공고상 수입자유화율 100% ('01.1월)

○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점진적 축소 ('99.6.30 다변화 완전폐지)

○ 중고품수입제도의 운영 개선 : 96년부터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 ('99.1월 완전폐지)

○ 수출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96.12월)

- 2000. 1. 1 무역업 신고제 폐지

나. 主要特徵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95.1.1), OECD 가입 (’96.12.12) 등에 따라 각종 수입규제의 완화추세가 가속화

- 수입자유화율 : 99.0% (‘95년) ⇒ 100.0% (’01년)

○ 외환위기에 직면한 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97.12.3)하면서 당초일정보다 일찍 규제가 완화된 측면도 있음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우, WTO체제 출범 등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당초 ’99년말까지만 존속시켜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IMF와의 합의로 6개월 앞당겨 폐지 (‘99.6월말)

○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 이후 4년 연속 무역흑자 달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면서, 무역규모 확대와 함께 무역흑자 기조가 정착됨

年度別 輸出入 推移 (단위 : 십억불)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輸出入總額	260.2	280.0	280.8	225.6	263.5	332.8	291.5
輸　　出	125.1	129.7	136.2	132.3	143.7	172.3	150.4
輸　　入	135.1	150.3	144.6	93.3	119.8	160.5	141.1
貿易收支	△10.1	△20.6	△8.5	39.0	23.9	11.8	9.3

年度別 輸入自由化率

年度	區分	總品目 (A)	禁止	制限	自動 (B)	自由化率 (B/A/%)
1967	下	1,302	105	440	767	58.5
1968	上	〃	77	474	761	58.0
	下	〃	77	506	729	55.6
1969	上	〃	75	514	723	55.1
	下	〃	74	530	708	54.0
1970	上	〃	73	526	713	54.3
	下	〃	73	529	710	54.1
1971	上	〃	73	520	719	54.8
	下	〃	73	570	669	51.0
1972	上	〃	73	574	665	50.7
	下	〃	73	571	668	50.9
1973	上	〃	73	569	670	51.1
	下	〃	73	556	683	52.1
1974	上	〃	73	570	669	51.0
	下	〃	73	574	665	50.7
1975	上	〃	71	592	649	49.5
	下	〃	66	602	644	49.1
1976	上	〃	66	584	662	50.5
	下	〃	64	579	669	51.0
1977	上	〃	63	580	669	51.0
	下	〃	61	560	691	52.7

年度 \ 區分	總 品 目 (A)	禁 止	制 限	自 動 (B)	自由化率 (B/A/%)
1978 上	1,097	50	456	591	53.9
1978 5	〃	-	431	666	60.3
1978 上	〃	-	424	673	61.3
1978 9	〃	-	385	712	64.9
1979 上	〃	-	344	753	68.6
1979 下	1,010	-	327	683	67.6
1980 上	〃	-	318	692	68.5
80. 下 / 81. 上	〃	-	317	693	68.6
81. 下 / 82. 上	7,465	-	1,886	5,579	74.7
82. 下 / 83. 上	7,560	-	1,769	5,791	76.6
83. 下 / 84. 上	7,560	-	1,482	6,078	80.4
84. 1. 1	7,560	-	1,459	6,101	80.7
84. 下 / 85. 上	7,915	-	1,203	6,712	84.8
85. 下 / 86. 上	7,915	-	970	6,945	87.7
86. 下 / 87. 上	7,915	-	670	7,245	91.5
87. 下 / 88. 3	7,915	-	503	7,408	93.6
88. 4. 1	10,205	-	605	9,600	94.1
88. 7. 1	10,205	-	534	9,671	94.8
89. 1. 1	10,241	-	547	9,694	94.7

※ '88.4.1 以前에는 CCCN 基準, 以後에는 HS基準임.

[참고] 연도별 수입자유화율 추이

(단위 : HS 10단위 품목)

연도	총품목수	수입자동 승인품목	제 한 품 목	금 지 품 목	자유화율 (%)	자유화 품 목	신 규 제 한
1967	1,312	767	440	105	58.5		
1968	1,312	729	506	77	55.6		
1969	1,312	708	530	74	54.0		
1970	1,312	710	529	73	54.1		
1971	1,312	669	570	73	51.0		
1972	1,312	668	571	73	50.9		
1973	1,312	683	556	73	52.1		
1974	1,312	665	574	73	50.7		
1975	1,312	644	602	66	49.1		
1976	1,312	669	579	64	51.0		
1977	1,312	691	560	61	52.7		
1978	1,097	712	385		64.9		
1979	1,010	683	327		67.6		
1980	1,010	692	318		68.6		
1981	7,465	5,579	1,886		74.6		
1982	7,560	5,791	1,769		76.6		
1983	7,560	6,078	1,482		80.4	305	18
1984	7,915	6,712	1,203		84.8	357	
1985	7,915	6,943	972		87.7	235	2
1986	7,915	7,245	670		91.5	301	1
1987	7,911	7,408	503		93.6	170	3
1988	10,295	9,761	534		94.8	333	4
1989	10,241	9,776	465		95.5	84	13
1990	10,274	9,898	376		96.3	98	
1991	10,274	9,991	283		97.2	93	
1992	10,322	10,080	242		97.7	43	
1993	10,417	10,221	196		98.1	47	
1994	10,502	10,401	150		98.6	47	
1995	10,502	10,502	101		99.0	49	
1996	10,859	10,778	81		99.3	34	
1997	10,859	10,851	8		99.9	73	
.	.	.	.		.	.	
.	.	.	.		.	.	
2001	11,170	11,170	0		100.0	8	

참고

< 시대별 수입추이 >

Ⅰ. 主要 輸入動向

◇ 건국초기 5억불 규모에 불과하던 **輸入은 50여년만에 금액면에서 3천배 가까이 증가**

* 수입금액(억불) : (50) 0.48 → (68) 14.6 → (77) 108.1 →(94) 1,023.4 → (00) 1,604.8 → (01) 1,410.9

◇ 지역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증가

* 지역별 수입비중(%)
- (일본) : (70) 41.0 → (90) 26.6 → (99) 16.8
- (중동) : (70) 5.7 → (90) 8.9 → (01) 16.6
- (미국) : (70) 29.5 → (90) 24.3 → (01) 15.9

◇ **주요 수입국**은 일본과 미국의 압도적 점유가 계속된 가운데 **90년대 이후 중국이 크게 부상**

* 10대 수입국 순위변화 : ( )은 전체수입중 비중(%)
- (일본) : (70) 1위(40.8) → (90) 1위(26.6) → (01) 1위(18.9)
- (미국) : (70) 2위(29.5) → (90) 2위(24.3) → (01) 2위(15.9)
- (중국) : (90) 5위(3.2) → (95) 3위(5.5) → (01) 3위(9.4)

◇ **수입상품 구조면**에서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소비재의 수입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

* 수입상품 비중의 변화 : ①원자재:(70) 52.9 →(80) 65.0 →(00) 50.8, ②자본재:(70) 23.1 → (80) 23.0 → (00) 40.2, ③소비재:(70) 24.0 → (80) 12.1 → (00) 8.8

1. 時代別 輸入推移

가. 建國初期 段階 (1945~53년)

□ 건국초기에는 정부외환보유에 의한 수입과 **援助輸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적자

○ 이에 따라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1950	1951	1952	1953
수입금액(백만불)	48	155	214	345
무역수지	△19	△139	△186	△305
원조수입비중(%)	93.9	83.2	75.1	55.5

□ 산업부재, 생필품 부족 및 외환부족 등으로 정상적 무역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

나. 戰後復興 段階 (1954~60년)

□ 전후복구와 외국원조에 의한 소비재 무역이 중심이되었으며, **수입규모는 2억불 ~ 3억불 사이**의 미미한 수준

○ FOA, PL480, UNKRA 등의 외국원조에 의해 충주비료공장 및 발전소의 건설 등이 이루어짐

○ 한 때 수입금액이 4억불을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대략 3억불대 수준을 유지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수입금액(백만불)	243	341	386	442	378	304	344
원조수입비중(%)	61.4	68.1	82.8	84.5	82.2	69.3	67.5

다. 經濟開發 初期段階 (1961~66년)

□ 수출드라이브 시기, 수출촉진을 위해 輸入抑制를 위한 직접적 통제 및 지원수단을 사용, 수출장려보조금제도·수출입링크제 등

□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으로 **7억불대 수준**까지 수입이 증가

○ 61년 3억불대 수준에서 66년에는 7.1억불까지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4.6억불까지 상승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수입금액(백만불)	316	422	560	404	463	716
무역수지(백만불)	△275	△367	△473	△285	△288	△406

라. 輸出主導 成長段階 (1967~73년)

□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수입규모도 **40억불대 수준**으로 증가

○ 수입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수입금액(백만불)	996	1,463	1,824	1,984	2,394	2,522	4,240
무역수지(백만불)	△676	△1,007	△1,201	△1,149	△1,327	△898	△1,015

□ 수출입링크제를 폐지(1967)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의한 수출입기별공고 실시

마. 石油波動 其間 (1974~80년)

□ 19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교역조건 악화 및 무역수지 역조 심화

□ 1977년 석유파동의 진정으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고 외환사정의 호전으로 수입자유화를 재개

○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수입의 증가속도가 더욱 커져 **220억불대까지 수입이 증가**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수입금액(백만불)	6,852	7,274	8,774	10,811	14,972	20,339	22,292
무역수지(백만불)	△2,391	△2,193	△1,058	△764	△2,261	△5,283	△4,787

바. 開放化 初期段階 (1981~93년)

□ 수입자유화 예시제 도입(1984), 수입자유화율 확대(86년 90%대 진입), 수입감시제도 폐지(1989) 등 **수입자유화 확대**

○ 87년·88년에는 20%대 이상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시현하였으나 **86년부터 무역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 반전(4년 지속)

○ 90년도 이후 부터는 다시 적자로 반전

	1981	1983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수입금액(억불)	261.3	261.9	311.3	315.8	410.2	518.1	614.6	698.4	815.2	817.7	838.0
증감률(%)	17.2	8.0	1.6	1.4	29.9	26.3	18.6	13.6	16.7	0.3	2.5
무역수지(억불)	△49	△17	△9	32	62	88	18.6	△48.2	△96.5	△51.4	△156

□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격화 및 무역흑자폭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내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입자유화율 ; (81) 74.7% → (88) 94.8% → (93) 98.1%

사. 開放化 進行段階(1994~97년)

□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수입이 1,000억불을 초과(1994)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200억불을 초과(1996)

	1994	1995	1996	1997
수입금액(억불)	1,023.4	1,351.1	1,503.3	1,446.1
무역수지(억불)	△63.3	△100.6	△206.2	△84.5

□ 수입급증과 무역수지 적자 누적은 금융·기업의 부실누적 등과 함께 **외환위기 촉발**의 원인으로 작용

아. 開放化 完成段階(1997~2001년)

□ 외환위기로 일부 잔존하고 있던 수입규제가 전면 폐지* 되어 사실상 **수입시장은 전면적으로 개방**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99.6.20), 중고품수입제도 폐지(99.1) 등

□ 외환위기 직후 수입은 급감(97:1,446.1억불→98:932.8억불)하여 98년 39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2000년에는 역대 최고수준인 1,604.8억불의 수입실적을 기록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입금액(억불)	1,446.1	932.8	1,197.5	1,604.8	1,410.9
무역수지(억불)	△84.5	390.3	239.3	117.8	93.4

2. 用途別・品目別 輸入

◇ 전체적으로 원유, 석탄, 석유제품 등 **原資材의 수입비중이 가장 큼**

◇ 70년대 이후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

◇ 소비재의 수입은 경제개발초기 2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감소

가. 經濟開發初期(60년대)

○ 양모, 원면, 광물성 연료 등 원자재와 어패류, 곡물 등 소비재의 수입비중이 큼

* 수입상품비중(%) (61년) : (양모) 23, (어패류) 16.5, (원면) 16.1, (광물성연료) 15.0, (곡물) 13.1

나. 輸出主導 成長期(70년대)

○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반기계・전기기기・운반용기기 등 자본재수입이 크게 증가

* 수입상품비중(%) (70년) : (일반기계) 15.4, (곡물) 12.3, (운반용기기) 7.6, (전기기기) 6.7, (석유) 6.7, (섬유사) 6.5

다. 開放化 初期(80년대)

○ 원유가 최대 수입품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곡류,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등이 수입주종품목

* 수입상품비중(%) (85년) : (원유) 17.9, (선박) 10.7, (석유화학제품) 4.0, (기타기계) 3.8, (곡류・곡분) 3.6, (석탄・코크스) 3.3

라. 開放化 進行 및 完成期(90년대)

○ 원유, 석유제품 등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여전히 다수를 점유하나 절대적 비중의 크기는 감소

○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비메모리칩・장비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입이 급증

* 수입상품비중(%) (95년) : (원유) 8.0, (반도체) 6.7, (기타기계) 3.0%, (석유제품) 2.8, (컴퓨터) 2.5, (항공기 및 부품) 2.4

마. 最 近

○ 원유의 수입비중이 다시 10%대 이상으로 증가한 가운데 IT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반도체・컴퓨터 관련 제품의 비중이 증가

* 수입상품비중(%) (01년) : (원유) 15.1, (반도체) 11.0, (컴퓨터) 4.2, (석유제품) 3.4, (천연가스) 2.8, (석탄) 1.7

3. 地域別·國家別 輸入

◇ 전기·전자, 기계류 등 자본재를 대상으로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 점차 그 비중이 감소되는 추세

◇ 9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3대 수입국으로 부상

가. 輸出主導 成長期(70년대)

○ 70년대 초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중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

* 5대 수입국(70) ( )은 비중(%) : (1위) 일본(40.5), (2위) 미국(29.5), (3위) 독일(3.4), (4위) 말련(2.9), (5위) 프랑스(2.6)

나. 開放化 初期(80년대)

○ 일본과 미국이 각각 20%대 이상의 수입 점유비중을 차지

○ 사우디, 말련, 호주, 인니 등 원자재생산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큰 비중을 점유

* 5대 수입국(85) ( )은 비중(%) : (1위) 일본(24.3), (2위) 미국(20.8), (3위) 말련(4.0), (4위) 호주(3.6), (5위) 이란(3.3)

다. 開放化 進行 및 完成期(90년대 이후)

○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 섬유류 등의 수입증가로 중국이 3대 수입국으로 부상

* 5대 수입국(01) ( )은 비중(%) : (1위) 일본(18.9), (2위) 미국(15.9), (3위) 중국(9.4), (4위) 사우디(5.7), (5위) 호주(3.9)

4. 品目別・國家別 輸入

◇ **농림수산물**은 주로 미국・중국・호주 등으로부터 수입

◇ 원유・석탄 등 **광산물**은 사우디 등 중동국가와 호주・중국・캐나다 등으로부터 수입

◇ 기계류・철강 등 **자본재**는 일본・미국・독일・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가. 원자재

○ 곡실류, 식물성 물질 등 농산물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 곡실류 수입(01) ( )은 구성비 : (미국) 15.2억불(47.1%), (호주) 2.4억불(16.3%), (중국) 1.4억불(9.6%), (브라질)

○ 수입원자재의 대표 품목인 원유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으로부터 도입

* 원유 수입(01) ( )은 구성비 : (사우디) 66.9억불(31.3%), (아랍에미리트) 33.8억불(15.9%), (이란) 19.8억불(9.3%)

나. 자본재

○ 일반기계, 전기기기,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자본재의 최대 對韓 수출국가는 일본

* 일반기계의 對日 수입: (91) 49.1억불 → (94) 56.3억불 → (95) 71.9억불 → (96) 63.5억불 → (97) 46.5억불 → (99) 27억불 → (00) 41.1억불

다. 소비재

○ 중국・미국・EU・일본 등이 주요 소비재 수입국

* 소비재수입(01) : (중국) 40.7억불, (EU) 24억불, (일본) 21.8억불, (미국) 31.9억불

5. 國家別 輸入構造

< 국가별 주요 수입품목 >

◇ 미국 : 자동차, 원유, 컴퓨터, 의류, 유류제품, 완구 등
◇ 일본 : 원유, 의류, 천연가스, 육류, 금속광, 석탄 등
◇ 중국 : 기계류, 전기기품, 화공품, 광물성연료 등

가. 미 국

○ 90년대까지 일본이 가장 큰 미국의 무역적자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최대의 무역적자국으로 부상

*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01, 억불) : (중국) △830, (일본) △689.6, (카나다) △532.4, (멕시코) △292.2, (독일) △290.3

○ 자동차가 2001년 현재 1,574억불로 가장 큰 수입주종 품목

*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01, 억불) : (자동차) 1,574.0, (컴퓨터) 758.6, (원유) 744.2, (의류) 638.6, (TV・VCR) 628.2, (유류제품) 246.0

나. 일 본

○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장 큰 무역적자국

* 일본의 10대 무역적자국(01,억불) : (중국) △268.6, (UAE) △102.7, (사우디) △87.2, (인니) △84.6, (호주) △67.7, (카타르) △57.2, (이란) △42.2

○ 원유의 수입규모가 가장 크며 의류, 육류 등 소비재의 수입도 큼

* 일본의 주력 수입품목(01,억불) : (원유) 462.8, (의류등) 190.8, (천연가스) 175.0, (육류) 83.9, (금속광) 77.1, (석탄) 63.9, (과실및야채) 61.6

다. 중 국

○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 대만, 한국의 순

* 중국의 수입대상 국가(01,억불) : (일본) 428, (미국) 262, (대만) 273, (한국) 234
* 주요 수입품목(01,억불) : (전기기품) 558.8, (기계류) 405.5, (화공품) 190.7, (광물성연료) 175.4, (섬유류) 162.5, (화학기계) 97.7

第二部

制度別 變化

Ⅰ. 輸入自由化의 推進 (輸出入公告)

Ⅰ - 1. 1978년의 수입자유화

(1) 수입자유화 대책위원회 활동

○ 수입자유화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상공부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 수입자유화의 기본방향, 품목선정, 예시계획 및 보완대책 등 수입자유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키 위한 범정부적 협의기구

가. 설치경위

'76.10 경제정책조정을 위한 청와대 관계관회의

'76.11 수입정책조정방안수립, 청와대제출

'78. 2. 6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규정 통과

수입정책조정방안

('76.10 수입정책조정을 위한 청와대 관계관회의결과에 따라 '76.11 당부에서 마련한 것임.)

(1) 정책조정의 필요성

제4차 5개년계획기간중 우리경제는 무역균형 및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GATT 제18조 B를 이유로 한 국내산업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함.

(2) 수입정책조정방향

(가) 수입자유화품목 확대

○ 고관세율품목의 자유화

- 기본관세율 또는 잠정관세율이 60%이상인 품목을 우선 검토

・대상품목 : BTN Heading 기준 254개

○ 국제경쟁력이 발생한 품목의 자유화

- 단위품목으로서 년간 수출실적이 10백만불이상인 품목을 우선 검토
  · 대상품목 : 96개

○ 장기간 수입면에서 보호한 품목의 자유화

- 대상품목 : 555개

(나) 간접제한방식으로 이행

○ 탄력관세 대상품목 확대로 산업보호
○ 수입담보금 적립율 200% 품목 확대 및 담보금 거치기간 연장
○ 기타 검사, 규격, 특허등 각종규제의 강화

(다) 수입절차의 간소화

○ 수입추천범위 축소
○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 실수요자 수입제도 개선

(라) 물가와 연결시키는 조정방법 검토

○ 수입금지 품목의 국내공급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일정비율이상 고가인 품목의 자유화
○ 수입추천 대상품목이 고가일 때는 즉시 수입 추천하는 운영체제 확립

(마) 시한부 수입억제방법 활용

○ 기존 수입금지품목 및 제한품목에 대하여 자유화시기 검토

- 품목별로 자유화 년도 사전예시 공고

○ 새로운 제한품목에 대하여도 제한시 자유화 년도 예시 공고

(3) 관계부처의 협조사항

○ 품목담당 주무부처의 자유화검토 참여
○ 각종 특별법에 의한 사전 수입허가대상품목의 재검토

(4) 작업계획

'76.11　수입정책조정방안 청와대제출
'77. 2　각부처에 작업지침 통보
'77. 4　각부처 의견종합
'77. 5　77년 하반기 수출입기별공고(안) 작성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운영방안

(1) 기본방향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의 조화
○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 국제무역환경에의 적응
○ 국제수지 변화에의 대응

(2) 추진계획

○ 수입자유화 사전예시제 실시
○ 간접수입조정방식의 활용
  - 외환정책의 보완적 조정
  - 관세정책의 보완적 조정
  - 수입금융의 탄력적인 지원
○ MTN 협상과 연계한 수입자유화 검토
○ 가급적 신규 수입제한은 지양

(3) 검토대상품목

○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CCCN 4 단위기준)

총 품 목	금 지 품 목	제 한 품 목	자 동 품 목
1,097	50	456	591

○ 특별법 적용대상품목

- 수량규제 : 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비료단속법, 담배전매법, 홍삼전매법,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 관한 법률 등
- 절차규제 : 약사법, 식품위생법, 마약법, 농약관리법

(4) 수입자유화 대상품목 선정 기준

○ 비경쟁 수입원자재
○ 고관세품목, 장기간 제한되어온 품목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 국내외 가격차이가 극히 현저한 품목
○ 국내 수급상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
○ 수입자유화 조치가 국내 관련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기타

- LINK 대상품목
- 제한의 실효성이 적은 수입추천품목
- 한도제 운영 품목

(5) 검토주안점

○ 대외 적응능력을 감안한 단계적, 년차적 조정 방안
○ 수입규제정책의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 외환, 관세, 수입금융, 기타 수입관련정책의 상호 보완성 제고 방안
○ 수출환경의 변화 추세에 대처하는 수입정책의 실시 방안
○ 기타 수입자유화 실시에 따르는 무역제도의 개편 및 보완 방안

(6) 검토절차

○ 회의개최방법

- 주1회 위원장이 소집
-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회의소집

○ 자료제출

소관부처는 소관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상공부에 제출

○ 검토대상별 작업계획

'78. 2 ~ 3 농수산물, 원자재

4 ~ 5 의약품, 기계류, 잡화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규정〉

(1) 설치목적

수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품목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상공부에 둠.

(2) 기능

○ 수입제한의 단계적인 완화를 위한 기본지침의 작성
○ 수입자유화대상품목의 선정 및 실시시기의 검토
○ 부처간의 이견조정
○ 수입제한 완화에 따른 보완책의 강구
○ 기타 수입자유화에 관한 사항

(3)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8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함.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상역차관보, 공업차관보), 동자부, 건설부, 보사부, 교통부, 체신부, 과기처, 제1무임소장관실, 제2무임소장관실, 산림청, 수산청,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

(4) 기타

○ 자료제출 : 각부처에서는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상공부에 제출

○ 의견청취 :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제1차 수입자유화 대책위원회 개최

(1) 일시 : 1978. 2. 10

(2) 장소 : 상공부 대회의실

(3) 회의주재 : 상공부 차관

(4) 참석자 : 동 위원회 위원(전원)

(5) 협의안건

- ○ 대책위원회 운영방법
- ○ EPB가 제시한 수입제한 완화 대상품목 검토

(6) 협의내용

- ○ 수입자유화 개념정리, 수입자유화 추진기본방향 및 대상품목 선정 원칙 등에 대하여 위원별 의견표명이 있었음.
- ○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기협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1주일 이내 차기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되도록 함.
  - 소위원회 구성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주관), 청와대 비서관, 국무총리행정조정실
- ○ 상기원칙이 결정되면 품목별 자유화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품목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는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기본방향, 선정기준(원칙) 등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관련 정책상의 보완점 등을 정리하여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에 상정함.
- ○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

〈토의내용〉

위원장 :

- 수입자유화는 각 위원의 고견과 선진제국의 선례 등을 참고하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어려운 과제인만큼 각 위원회 운영방안과 자유화에 관하여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바람.

경제기획원 :

- 수입자유화에 관한 원칙을 정한 다음 이에 맞추어 품목별 검토를 할 것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화 대상품목에 대한 사전검토와 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 올릴 것
- 이젠 소비자도 보호받아야 될 때가 되었고 농산물도 구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가지고 가격이 안정되기는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수입자유화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재무부 :

-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여기서 수입자유화 원칙을 작성, 이에 따라 품목별로 자유화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 단, 소위구성은 상공부가 주축이 되고 관계부처만 포함시킬 것
  단, 소위구성은 상공부가 주측이 되고 관계부처만 포함시킬 것
- 외환절약이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갑작스런 자유화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것이니 정부의 의지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임.

농수산부 :

- 이번 자유화 검토대상품목으로 올린 것중 농수산부 소관품목은 전부 수입자유화가 불가능한 품목들임.
- 수입자유화는 충분한 검토후에 시행할 것

청와대 :

- 수입자유화의 원칙은 관련정책과 조화를 통한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함.
- 수입자유화의 기본방향은 산업정책, 관세정책, 수입선다변화등과 조화되도록 설정하고 예컨대, 국제경쟁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상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국제경쟁력의 정도를 표시(숫자 등) 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이 정하여지면 개별품목을 이에 대입하여 수입자유화를 결정하고 특별한 문제되는 품목만 논의하도록 할 것
- 관련검토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이므로 소위 검토 후 본 위원회에 올리되 회의자료를 사전에 관계부처에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수입자유화의 개념, 원칙, 방향 등을 정하는 것은 상공부가 주축이 되고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실무진으로 구성하여 작성토록 할 것
- 이 원칙에의 대입은 상공부 유통수입국에서 우선 수고하여 줄 것

과학기술처 :

-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병행하여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

동력자원부 :

- 수입자유화는 의의가 있는 것이니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출발 할 것. 따라서 상공부에서 수입자유화의 개념정리를 하여 각 위원들이 이행하도록 설명할 것
- 수입자유화의 목표와 방향 및 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처리하되 위원회에서 문제해결이 안되는 품목은 다시 소위에서 검토 후 본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토록 할 것

수산청 :

- 각 부처와 협의 후 우선 위원회에 올려 논의처리하고 결론이 안나는 품목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할 것

부위원장(무역차관보) :

- 76년도부터 수입자유화를 전제하여 2차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고 또 예시품목, 단계적 자유화 가능품목 검토 등 많은 작업을 하였음.
- 소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시 자유화를 반대할 경우 원칙을 세웠을 때 품목별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MTN협상을 위하여 고의로 자유화 발표를 지연시킬 필요도 있음.
- 업계와의 협의주장은 이상적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곤란한 점 등 실무상 애로가 많음.
- 경제기획원에서 이번 회의에 올린 품목은 원칙에 구애되지 말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

〈경제기획원의 수입제한완화요청품목 검토결과〉

○ 전량 수입의존원자재에 대한 협회등의 추천제 폐지(13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74.01	동설	07.06	타피오카 Chip
17.01	원당	44.03	원목
53.01	원모	21.07	콜라베이스
53.02		41.02	우피(국산불가규격)
53.03		39.01	Polyester Chip(특수규격)
53.04		39.01	Nylon Chip(특수규격)
53.05		09.01	커피원두
47.01	화학 Pulp	18.01	코코아 원두
17.03	당밀		

○ 수입한도제 폐지 대상품목(34개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53.01	원모	79.01	아연괴
17.03	당밀	29.02	삼염화 에틸렌
17.01	원당	29.15	무수 푸탈산
59.03	부직포(특수)	34.02	계면활성제
28.17	가성소다(고형)	38.19	P.P.G.(폴리프로필렌글리콘)
29.02	V.C.M.	39.01	P.P.G.(〃)
22.08	무수에틸알콜	39.02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84.35	윤전기	21.07	조제식료품
25.01	천일염	22.03	맥주
09.01	커피원두	22.04	포도착즙
18.01	코코아원두	22.05	포도주
33.04	향료	22.06	베르무드와 유사한 포도주
39.02	HDPE(고농도폴리에틸렌)	22.07	양조주

○ 수입한도제 폐지 대상품목(34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40.02	합성고무	22.09	에칠알콜
11.07	맥아	02.01	양고기
15.07	면실유	04.03	버터
		04.04	치즈

○ 수출 또는 국산품 사용실적 링크제 폐지(17개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53.01	원모	84.62	베아링
53.05		84.54	제록스(복사기)
44.03	미송 원목, 나왕 원목	25.07	고령토
73.08	핫코일	22.03	양주원액
73.13	냉연박판	22.09	
73.13	열연박판	39.02	LDPE
29.35	카프로락탐	39.02	PP(폴리푸로필렌)
29.27	AN 모노마	20.06	파인애플
84.41	공업용 재봉기	08.01	바나나

〈소위원회 구성〉

○ 개최일시 : 1978. 2. 15 15:00

○ 개최장소 : 상공부 차관실

○ 참석자

-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 재무부 세정차관보
- 대통령 비서실 경제담당비서관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

○ 협의사항

- 수입자유화 기본개념정리, 추진기본방향 및 대상품목 선정원칙(기준) 협의
- 수입자유화 대상품목 검토

다. 제2차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개최

○ 일시 : 1978. 2. 16 16:00

○ 장소 : 상공부 대회의실

○ 주재 : 상공부차관

○ 참석자 :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위원

○ 협의안건 : 소위원회 검토를 거친 수입자유화추진계획(안)검토

수입자유화 추진계획(안)

(1) 수입자유화정책의 기본개념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과잉보호체제의 탈피
- 업계의 체질개선 및 산업합리화

○ 국산화정책과의 조화
- 국내유치산업의 보호육성
- 중화학공업 적극추진

○ 국제무역환경에의 적응
- GATT/MTN과 관련하여 추진
- 지역간 무역수지 불균형 조정

○ 물자수급의 원활과 국내물가수준의 안정
- 국내물가수준의 적정선 유지

○ 국제수지변화에의 적응
-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 유지

(2) 수입자유화 추진 기본방향

○ 관련정책과의 유기적 연계하에서 추진
- 산업지원정책, 산업조정정책, 관세 및 가격정책과의 유기적 상호 보완

○ 단계적 자유화
- 예시제 실시 - 제한품목의 수입폭 확대

○ 수입감시제도 도입

○ 직접적 수입제한 → 간접적 수입제한(관세제도 활용)

(3) 업종(또는 품목) 유형과 그 자유화대책

(가) 자유화 대상

○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국산품과의 경합이 없는 업종(또는 품목)
- 비경쟁 수입원자재
- 국산품 선호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특산품 등)

○ 국내생산을 계획하지 않은 업종(또는 품목)
- 국제분업의 이익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 비능률적인 업종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시되는 품목
- 고도의 자본집약적이며 기술집약적인 품목으로서 시장성이 적어 국산개발에 효율성이 없는 경우

○ 국내생산을 계속하는 업종으로서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 → 관세조치로 보호
- 수출주종품목
- 가격 또는 비가격 경쟁면에서 현저하게 유리한 품목
- 당장은 국제경쟁력이 강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보완조치를 강구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업종

(나) 수입감시대상

○ 수입감시품목이란 수입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수입동향을 일정기간 면밀히 주시하여 동향을 파악한 후 수입자동승인품목 또는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

○ 대상

- 국제경쟁력은 있으나 즉각 수입자유화할 경우 문제점이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준비기간이 필요시 될 경우
- 당장은 국제경쟁력이 강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보완조치를 강구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외국산 선호도가 큰 품목 또는 사치품류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 등
-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 등

(다) 수입제한대상

○ 육성산업의 산품으로서 일정시점까지는 국제경쟁력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관세로서도 보호되지 않는 품목

- 중화학공업제품으로서 정부에서 중점저긍로 육성 추진하는 계획 사업 및 기타 경제개발계획상 추진사업
- 기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업종(품목)

○ 농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으로서 민감품목

○ 규모의 경제면에서 현단계에서는 바로 개방이 곤란한 품목

- 단위당 국제규모에 미달하는 개발초기에 있는 유치산업
- 산업관련 효과가 크며 중화학공업 추진에 불가피한 중간재 및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업종

○ 국제 관례상 규제품목

○ 기타 불요불급한 고가사치품

- 외제선호도가 극심한 품목
- 사회 일부 한정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품목

(라) 수입금지대상

○ 국헌위반, 공서양속의 문란과 국민보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

(4) 수입자유화작업 추진계획

○ 작업실무반 구성

- 부문별 작업 실무반
  - 농수산물 및 식료품반(농수산물 주관)
  - 광산물반(동력자원부 주관)
  - 공산품반(상공부 주관)
- 총괄작업반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로 구성

○ 부문별 작업 실무반은 소관부처의 해당품목에 대하여 수입자유화 추진기본원칙에 따라 기별공고를 재편성 작업함.

○ 총괄작업반은 독자적으로 수입자유화 추진기본원칙에 따라서 기별공고를 재편성 작업함.

○ 상기 두 안을 소위원회에 검토,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함.

○ 작업계획

78. 2. 16 : 수입자유화 추진기본방향 설정

78. 3. 31 : 기본원칙에 의한 현행 기별공고 재편안 작성완료

78. 4월초 수입자유화 대책위원회 상정 심의

라. 제3차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개최

○ 일시 : 1978년 4월 15일

○ 장소 : 상공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 위원

○ 협의사항

- 수입자유화대상품목선정 및 보완대책
- 기타사항

(2) 1978. 5월 수입자유화조치

(상공부고시 제78-8호, '78.5.1 시행)

가. 기본방향

○ 수입제한요인의 제거

- 현행 수입추천, 한도, 링크, 실수요자제도등 행정규제의 단계적 철폐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국제화)

- 과잉보호체제의 탈피
- 업계의 체질개선 및 산업합리화

○ 경쟁에 의한 가격조달기능 발휘

○ 수입감시 및 예시제의 실시

○ 잔존제한품목의 계속적인 자유화추진

나. 선정기준

○ 자유화대상

- 기초소재 및 원자재
- 국내공급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품목
- 기타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진 품목

○ 제한대상

- 농수산물
- 중소기업업종제품
- 고급사치품
- 특별법상 제한품목

다. 수입자유화 내용

○ '78. 4. 15 제1차 수입자유화 발표(5월 1일 시행)

- 133개 품목(CCCN 4단위 75개 포함) 수입자유화

(자유화율 : 53.9% → 61.3%)

○ 수입금지품목 폐지

○ 수입감시제도 신설

- 신규 자유화품목중 46개 품목(4단위 기준 28개)을 감시품목으로 지정

○ 수입자유화 예시

- '79~'82년간 118개 품목(CCCN 4단위 152개) 예시

○ 조정결과

(CCCN 4단위)

	현 행	개 정	비 고
총 품 목	1,097	1,097	
금 지 품 목	50	0	△50
제 한 품 목	456	431	△25
자 동 품 목	591	666	75
자 유 화 율	53.9	60.3	

○ 수입자유화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1차)			
1503	라아드유	3401 0201	세탁비누
1702 0103	기타의 당류	3803 0100	분말 활성탄소
0400		3815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3901	페놀 수지
		3902	Acrylic Polymer Emulsion
1801	코코아두		합성수지의 성형제품
1803 0000	코코아 페이스트	3907	합성수지의 가공제품
1804 0000	코코아 버터	4002 0205	합성고무중 IR
1805 0000	코코아 분	4009	고무관
1903	마카로니, 스파겟티등	4010	고무벨트
1907	빵 기타 베이커리제품	4011	타이어(레디알타이어 제외)
1908	파이, 비스켓등	4102	소가죽(우갑피 제외)
2105	수우프 및 부로드	4103	면양가죽
2107 0101	청량음료 원액	4104	산양가죽
0401	라면	4105	기타피혁
2507	남정식 등	4106 0000	특수가공가죽
2707 0100	벤젠	4108	〃
0200	톨루엔	4403	원목
0300	크실렌	4701	Pulp
2827	리타제, 광명단	5301	양모
2838 0101	항산니켈, 황산소다	5302 0101	수모
0206		⋮	
2845 0500	규산 알루미늄	0199	
2901 0401	벤젠		
0406	혼합 카실랜	5303	모설
2914	기타의 스테아린산	5304 0000	〃
	에스테르	5305	카드 및 콤한 양모 및 수모
2923 0501	구루타민산	5306	방모사
0502	구루타민산 소다	5307	소모사
3102 0400	공업용 유안	5308	모사(섬수꼬사)
3206	레이크 안료		
3207	기타 착색제등		

CCCN	품 목	CCCN	품 목
5509 0101	기타의 면직물중	8423 0109	휠로더
⋮	생지견직물	0202	
0199		8424 0204	파종기, 이양기, 경운기
		0302	
5601	PVA 섬유	8425 0200	
5602 0104	PVA 토우	0302	탈곡기, 사료절단기, 콤바인
5603	인조섬유의 설	0303	
5604 0500	PVA SF 및 설	8403 0101	비스켓 m/c, mixer 등
6401	신발류	8433 0103	봉투제조기
6402 0201	신발류(가죽갑피신발 제외)	8502	퍼머넌트 마그넷트
⋮		8506 0202	가정용 선풍기
0500		8510 0101	광부용 안전등
		8515	흑백TV (9인치 이상)
6405	신발류의 부분품	8519	실휴즈 및 고리휴즈, 방폭형
0406 0000	각반, 스패트등		스위치, 접속기구등, 방폭형
6807	암면		배전판, 선박용 배전반,
6901	위생용기		자동차용 접속기구류
7004	판유리중 무늬유리	8702	3톤이상의 화물자동차
7005	판유리	9010 0301	사전용 감광처리기계
7006	〃	0302	〃
7007	판유리 중 서리유리등	0339	〃
7008	안전유리	9023	비중계 및 온도계
7009	유리경	9201	피아노
7013	유리제품	9202	현악기
7301	선철	9203	오르간
7307 0200	Biilets	9204	아코디온
7324 0300	내압용기중 LPG용기	9205	취주악기
7333	철재의 수봉침	9206	북, 목금
7334	철재 Pin, 크립	9207	전자악기
7335	객화차용 스프링	9208	오르간
8201	가래, 삽, 팽이, 낫등, 수공구	9210	악기부분품
8215 0000	비금속제의 자루		
8302	비금속제의 장식		
8415 0101	가정용냉장고(200ℓ 미만)		

(3) 1978. 7월 수입자유화조치

(상공부고시 제78-12호, '78. 7. 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 시 : '78.5.30

(2) 심의안

○ 실수요자 소요분 제한규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다만,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일부품목에 국한하여 예외로 함.

○ 수입추천기관의 조정요청관련

- 농수산물중 과실, 면실유, 조제한 과실류 및 수산물의 수입요령상 종전에는 수입추천, 제한방법을 통한 사실상금지 등으로 여러 가지 제한방법이 표기되어 왔었으나 이를 모두 농수산부 및 수산청이 정하는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당부에 요청하여 온 바 있었으나, 수입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및 수입정책의 일관된 집행등을 위한 견지에서 금번 개정시 반영하지 않았음.

○ 신규수입제한 및 자유화에 대하여

-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으로 요청되어온 사항에 대하여는 요청안 대로 반영함.
- 신규수입제한요청에 대하여는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분에 한하여 반영하였음.

(3) 심의결과

○ 원안통과

○ 수정사항

- 해외어업협력용 스턴트롤 어선을 수입허용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기별공고상에 표기하기로 함(수산청 요청).
- 농수산부의 면실유 수입추천기관 변경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현 제한내용을 그대로 적용함.
- CCCN 7310 철근에 대하여는 원활한 국내수급을 기하고자 고시일로부터 시행

나. 수입자유화 내용

○ 수입자유화품목

CCCN		품 목
(2차)		
4813		핵크그라픽 카본지
5202		금속 드리사
5805		세폭 직물
5806		직조한 레이블 뺏지등
5808		튜울 기타의 망직물(수편직)
5809		튜울 기타의 망직물(무늬드리형식)
5907	0100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 등
	0300	
5912		기타의 방법으로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직물
5915	0000	직물제의 호오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0		철근
8413	0102	Oil Burner

(4) 1978. 9월 수입자유화조치

(상공부고시 제78-28호, '78.9.18 시행)

가. 추진경위

○ '78. 8. 26 청와대 실무자회의 개최
9. 8 수입자유화 소위원회 개최
9. 11 수입자유화 대책위원회 개최

〈청와대 실무자회의 결과〉

가. 일 시 : '78. 8. 26

나. 장 소 : 경제 제1, 경제담당비서관실

다. 참석자 : 경제 제1, 경제담당비서관실, 국무총리 행정조정관 담당관,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재무부 관세조정과장,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상공부 수입국장

라. 내 용 : 수입자유화 확대에 관한 실무자 회의

마. 회의내용

상 공 부 :

- '78년도 제2차 수입자유화방안(수입자유화대상품목 선정기준과 대상품목)을 설명함.

경제기획원 :

- 물가안정과 통화환수를 위하여 보다 많은 수입자유화가 요망됨.
  - 특히 과실류등의 과감한 수입조치와,
  - '78년도에 5억불, '79년도에 9억불의 수입순증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입을 자유화하여야 함.

재 무 부 :

- 상공부의 선정품목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으나 앞으로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경공업제품(섬유사, 섬유제품 등)과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재는 수입을 자유화하여야 하며 수입자유화와 병행하여 관세율도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건사회부 :

- 의약품과 화장품의 수입자유화는 국민보건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상 매품목마다 일일이 수입허가되어야 함.

(청와대 조정안)

○ 보건사회부의 제2차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에 대하여

- 선정된 화장품중「향수」등은 사치성품목으로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금차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임. 오히려 일반여론에 부합되도록 기초화장품부터 수입을 개방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는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수입자유화 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 제시할 것

○ 농수산부 소관 식료품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입자유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상공부 소관 품목중에서도

- 물가안정을 위하여 국내가가 국제가보다 현저히 고가인 품목을 조사하여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추가하고
- '79년에도 수입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므로 소비자의 의견(여론)을 년말까지 종합하여 수입자유화의 시책에 참조하여야 할 것임.

○ 수입자유화는 상공부가 주관부처이나 상공부에서 타부처의 수입자유화 시책이나 품목에 대하여 관여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수입자유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와대에서 직접 조정할 것임.

나. 선정기준

○ 자유화대상

-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독과점 품목
- GATT/MTN 양허품목
-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주종품목
- 주무부가 선정한 특별법상 제한품목

○ 유보대상
- 중화학공업제품으로서 개발단계에 있는 품목
- 중소기업제품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
- 사치성이 큰 소비재

다. 수입자유화 내용

(1) 수입자유화

○ 39개 품목(CCCN 8단위 기준 299개) 추가 자유화
- 자유화율 : 61. 3% → 64.9%

○ 수입자유화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3차)			
2804 0202	적린	3214 0100	인쇄용 잉크
2813 0204	White Carbon	3303	식품 및 음료용 향료
2825 0101	산화티타늄	3702	사진용 필름
2831 0101	아염소산 소다	3901	폴리에스터 수지
2842 0101 ~ 0108	소다회, 중탄소소다	4011	래디알 타이어
		4102	우혁(은면피)
3205	도료	4421	목상자
3207	기타의 도료	4811	벽지

(2) 수입규제조치의 완화

○ 수입한도의 증액

(단위 : 천불)

품 목	현 행	개 정	증 액
당 밀	22,238	23,088	850
V C M	20,085	30,685	10,600
삼염화에틸렌	732	932	200
계면활성제	11,182	13,182	2,000
합성고무	2,716	3,416	700
부직포	798	898	100

○ 수출용 원자재 수입비율의 상향조정

품 목	수출용원자재의 수입허가기준 완화	
	현 행(%)	개 정(%)
나이론F사	20	30
폴리에스터F사	20	30
비스코스F사	20	30
나이론다후다	50	60
폴리에스터직물	50	60
나이론타이어코드지	20	60
방모사	20	30
유모사	20	30
면사	20	100
재봉사	20	30
아크릴파일직물	30	60
부직포	20	60
카본블랙	30	40
SBR	10	20
고무사	5	30

CCCN	품 목	CCCN	품 목
4815 0200	화장지	7325	타이어 로프등
4820 0000	종이제의 권사구류	7336 0201	석유스토브
5803	테피스트리 직물	7401	동의 괴등
5904 0100 ~ 0400	끈 및 망	7417 0400	등산용 버너
		7603	알미늄판과 대
5905	어망	8203	1인 용구
6003	메리야스 및 편물제의 양말류	8204	수공구와 1인용구
		8206 0200 ~ 0600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나이프와 컷팅블레이드
6110	봉제의 양말 및 장갑류		
6205	Dress Pattern 등 기타 섬유제품	8315	용접용
		8410	오수펌프
6503	모자류	8421 0500	Spray Gun, 소화기
6504	〃	8461	발브류
6505	〃	8503 0201	망간 건전지
6506	〃	8504	축전지
7308	철강의 코일	8506 0201	환풍기
7310 0101 ~ 0199	선재(Wire Rob)	8507 0200	전기식 이발기
		8515 0701 ~ 0799	일반라디오
7311	형강		
7313	냉연강판, 열간압연강판 (3~6 m/m)	8520 0201	형광전구
		8523	통신케이블, 권선
7314	흑철선, 아연도철선	8702 0402	고속도로용 버스
7316 0101 ~ 0301	궤조	9606	수동식의 체

○ 수출용 원자재 사전승인제 폐지 품목

폴리프로필렌 F사, 나이론 SF사, 폴리프로필렌 SF사, PVC 방적사, 산화티타늄, 호루마린, 고무가황촉진제, 도료(선박용 제외), 박엽지(博葉紙), 골판지원지

○ 수입허가기준의 완화

- 수입추천업무 - 상공부에로의 단계적 이관
-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추천기준의 대폭 완화
  (정밀기기센터 추천분 포함)
- 링크비율 조정

수 입 대 상 품 목	현 행	개 정
조 개(패)	목공품 및 수출실적의 8% 이내	20% 이내
양 주 원 액	수출실적의 30%	100%
폴 리 프 로 필 렌	1 (국산) : 1(수입)	1(국산) : 1.5(수입)
저 밀 도 폴 리 에 치 렌	1.5(국산) : 1(수입)	1(국산) : 1.5(수입)

- 자동차 부속품 수입비율 상향조정

수 입 대 상 품 목	현 행	개 정
피 아 트	38	51
마 크 Ⅳ	38	48
레 코 드	35	55
제 미 니	25	27

라. 특별법상 제한품목의 운용

○ 제1차 수입자유화('78. 5)을 위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특별법에서는 소관 품목의 품질 및 안전등 질적규제를 위주로 하고 수출입에 대한 규제는 무역거래법으로 일원화하도록 협의한 바 있음.

○ 동 협의결과에 따라 소관부처에서는 특별법의 개정에 대하여 규제의 특수성을 내세워 대부분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금차 수입자유화조치로서는 특별법상 제한품목중 수입자유화를 하겠다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고 특별법의 개정은 관계부처와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추진코자 함.

○ 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0901	커피의 각과 피
1506	동물성 유지
1802	코코아두의 각과 찌꺼기
2305	포도주의 박
3004	탈지면, 비닐수술포, 외상보호용 비닐포
3306	치 약
8414	노와 오븐
9017	위즙채취기, 간장천자기, 정자활력검사가온기, 우이관류통시험관 정액보존기, 우비천공기, 의화기, 체중추정척(牛豚用)

마. 수입자유화계획예시

(1) 선정기준

○ 품목별로 산출된 수출수행능력

- 수입자유화전략에 관한 전경련의 보고서에 의함.
- 「B. Balassa」의 공식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경쟁국간의 비교우위지수를 산출, 경쟁능력을 측정하고 국내산업상 제요인에 의한 보완기준(전후방 연관효과, 중간투입물자급도, 외화가득률 등)을 감안하여 선정

〈전경련 조사결과〉

(CCCN 4단위기준)

구분 \ 단계별	제1차 79년	제2차 80~81년	제3차 82~83년	제4차 84~85년
자유화품목수	79	94	117	96
자유화율(%)	67.9	76.5	87.1	95.1

* 78. 5. 1 제1차 수입자유화 조치이후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을 기준하였음.

(2) 선정방법

○ 수입자유화예시품목에 대하여 생산국과 업계와의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수입자유화예정연도를 정함.

○ 수입자유화의 예정연도가 정해진 품목이라도 당해 품목의 수급상황, 연료조달상황, 연관산업과의 관계, 국제경쟁력등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유화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용코자 함.

(3) 예시품목의 내용(미발표, 내부계획)

구분 \ 단계별		제1차 79~80년	제2차 81~82년	제3차 83~84년	제4차 85년
기관별	상공부	56	88		
	전경련	41	37	48	43
	계	97	125	48	43
자유화율(%)		72.3	83.7	88.1	92.0

Ⅰ - 2. 1979년의 수입자유화

(1) 1979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상공부 고시 제78-35호, 36호, 39호, 79.1.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시 : '78. 11. 30

(2) 참석자 : 상공부차관(주제)의 위원

(3) 심의결과

○ 일부 수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안통과

- 섬유공업시설과 사료관리법 및 석유사업법 대상품목의 수입을 주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공고하는 요령에 의하도록 수정함.
  (종전 : 상공부장관이 별도공고하는 바에 의하되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

○ 기별공고책정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제출한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검토의견에 수개 공산품을 자유화하기 위해 결정하고 잔여품목에 대하여도 계속 검토키로 하였음.

나. 개정내용

(1) 수입제도의 개선

○ 사료관리법 및 석유사업법대상품목의 수입요령은 주무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되 점차적으로 무역거래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공부장관과 협의하게 함(제3조 제4항 일부 개정).

○ 정유산업용 및 발전소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기자재와 부분품의 수입확인권을 동자부의 신설에 따라 상공부에서 동자부로 이관함.
(제7조 제1항 제11호 일부개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 특별법상의 연구기관, 한국선박연구소등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의 지

원을 위하여 연구용 및 시험용 시설이나 재료는 수입제한품목도공업진흥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게 함(제7조 제1항 제17호 신설).

○ 항공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산업용 원료기재 또는 부분품등 수입제한품목도 상공부장관의 별도공고로서 수입을 허용함(제7조의8 신설).

○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간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해외에 투입되었던 건설용장비는 중고품을 포함하여 수입제한품목도 상공부장관의 별도 공고로서 수입을 허용함(제7조의9 신설).

(2) 수입자유화

(가) 선정기준

○ '79년도의 자유화예시품목은 계획대로 수입자유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
○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국산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열관리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기타 주무부에서 선정한 품목

(나) 수입자유화 내용

○ 349개 품목(CCCN 4단위 기준 41개) 수입자유화
- 수입자유화율 64.9% → 68.6%

(CCCN 4단위, %)

	현 행	개 정	비 고
총 품 목	1,097	1,097	
자 동 품 목	712	753	41
제 한 품 목	385	344	△41
자 유 화 율	64.9	68.6	3.7

○ 수입자유화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1차)			
0101 0101	경주용 말	3811	살충제, 소독제
0199	기타의 말	3901 0206	
0104	면양과 산양	0406	에폭시수지
0105 0104	오리	0306	
0204		0506	
0103	칠면조	4007	고무사와 고무끈
0203		4420	목제사진틀, 거울틀
0199	기타의 가금류	4422	목제통 이와 유사한 용기
0299		4425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목제 부분
0106	기타의 산동물(성게, 해삼, 해파리, 사슴, 꿀벌 제외)	4426	스폴, 콥, 보빙등
0405 0102	기타의 조란	4801	인쇄용지, 필기용지
0200	(부화용 달걀제외)	4807	지와 판지
0514 0101		4814 0000	편지지 및 봉투등
0103		4815 0300	기타의 지와 판지
0210	용연향, 해리향	0499	
⋮		4816 0200	골판지상자등
0299		0500	
		5104	타이아코드지, 합성섬유의 장섬유 직물
1203 0305	임목종자	5509 0201	기타의 면직물
0399		⋮	
2106	천연효모 또는 조제 베이킹파우다	1000	
2713 0101	파라핀 왁스		
3701 0101	일반사진촬영용필름,	5605 0201	면 혼방사
0102	항공용 필름	⋮	
0403		0299	
3702 0103	영화용 흑백필름,		
⋮	항공용 필름	5606	〃
0106		5607	인조섬유 직물
0603		5810	자수포와 자수직물

CCCN	품 목	CCCN	품 목
5908 0100	접착테이프	7336 0101	
0300	기타 도포직물	⋮	
5910	리놀리엄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한 물품	0199	철강제 조리기구, 난방기구
		0202	
6003 0101		⋮	
⋮	여자용 스타킹	0299	
0299			
		7337 0200	방열기
6004 0202-3		7403	동의 형제
0302-3	남자용 내의	7417 0100	난로
0402-3	(면제, 합성섬유제)	0200	부엌용레인지
0502-3		0300	오븐
0602-3		0500	기타 가열기구
		7801	연의 괴
6103 0101		8211 0100	이발 면도기
⋮	합성섬유제 또는 면제의 내의	8305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클립, 스테이플
0106			
0201		8312	비금속제의 사진틀, 거울틀 등
⋮		8415 0304	쇼우 케이스
0205		8510 0199	발전램프
6106	쇼올,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등	0200	발전램프 부분품
6202	배드린넨, 테이블린넨 등	8710 0102	원동기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차
6204	타아포린, 돗등	⋮	
6402 0101		0299	
⋮	가죽갑피구두		
0199		9009 0101	Overhead Projector
		9601	비와 브러쉬
7314	철강의 선	9806	석판, 흑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7323	철강제의 통, 드럼등		
7332	철강제의 볼트, 넛트 (차량용 제외)	9816	마네킹 인형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3) 신규수입제한

CCCN	품 목
2915	DMT 및 TAP
2935	HOP (농약 원재)
3205	염료(일부)
8419	포장기계
8519	가중부하 개폐기
8520	크세논 램프
8444	금속압연기(수입제한규격확대 : 롤길이 500㎜ → 1,000㎜)

※ '78~'79년 수입자유화 추진실적

(CCCN, 4단위 기준)

	'78. 1	'78. 5	'78. 7	'78. 9	'79. 1	비 고
총 품 목 수	1,097	1,097	1,097	1,097	1,097	
수 입 금 지 품 목	50	-	-	-	-	△50
수 입 제 한 품 목	456	431	424	385	344	△112
수 입 자 동 품 목	591	666	673	712	753	162
자 유 화 율(%)	53.9	60.7	61.3	64.9	68.6	14.7

- 자유화품목

	'78. 5	'78. 7	'78. 9	'79. 1
4단위기준(개)	75	7	39	41
8단위기준(개)	133	38	299	349

다. 수입확대계획

○ '78. 9. 11 상공부의 경제장관 간담회 보고사항

○ 지 침

- 수입제한품목중 예시품목이 아닌 잔여품목에 대하여 예시제 실시
- 예시시기는 '79~'84년까지로 하여 수입자유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함.
  (전경련에서 검토한 안을 참고하여 예시시기를 조정함)
- '79년에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은 '79 상반기 기별공고에 반영함.
- '84년까지 예시가 불가능하거나 예시추정이 곤란한 품목은 사유 명시

(2) 1979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

(상공부고시 제79-21호, '79. 7. 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시 : '79. 5. 31

(2) 심의결과

○ 원안통과

○ 수정결의

- 실수요자단체 수입추천제도는 존속시킴.
  품목 : 원당, AN, 카프로락탐, 레진류, 악기제조용모직물
- 크라프트라이나(골판지 원지)는 계속 수입제한품목으로 함.

나. 개정내용

(1) 수입절차의 간소화

○ 원자재에 대한 실수요자 단체의 수입추천제도의 철폐
○ 원자재중 시설보유 실수요자 소요분의 수입제한내용의 완화
○ 기계류등 일부품목의 수입제한내용의 「네거티브」화
○ 주무부 별도공고 품목의 제한내용 변경(상공부에서 별도공고로 일원화)

(2) 기타 제도의 개편

○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요령 사전협의(상공부와 사전협의)
○ 통상정책상 필요한 경우 수입제한승인품목도 특별히 수입할 수 있는 근거설정
○ 관세협력 이사회(CCC)의 CCCN 체제개편 권고안에 따라 품목조정
(현 CCCN 4단위 기준 1,097개 → 1,010개 : △87개)

(3) 수입자유화

(가) 선정기준

-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 긴요물자로 지정된 품목
- 주무부에서 검토 선정되어온 품목

(나) 수입자유화 내용

○ 9개품목(CCCN 8단위 기준 48개 품목) 추가자유화

- 자유화율 : 66.8% → 67.7%(0.9% 증)

(CCCN 4단위기준)

	개 편 전	개 편 후	비 고
총 품 목	1,097	1,010	△ 87
수입자동승인품목	753	675	△ 78
수입제한승인품목	344	335	△ 9
자 유 화 율(%)	68.6	66.8	△ 1.8

○ 수입자유화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601 0101	튜립의 구근	4805 0200	골판지, 파형지, 파형판
0602 0301	과수목	5312 0100	모직물(마모제)
0399		5507	면거즈
1203 0399	원예종자	5508	면제 테리타올지
1208 0400	치커리 뿌리	6103	남자용 내의
0500	구약구	7312	철강의 대
1405	유연용·염색용 원료	7313 0601	아연도 강판
2102 0300	커피대용물(치커리)	0605	
2713 0102	슬랙왁스	8213	기타의 칼붙이
0103	스케일왁스	8306 0100	비금속제의 사진틀
2817 0101	고체의 가성소다	8515 0599	자동차용 라디오
2901 0402	톨루엔	8712 0201	자전거 부분품
2905 0203	Menthol	0299	
3402	계면활성제, 조제세척제	0300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부분품
4801	크라프트지, 안피지	9508 0201	커로우조우

(4) 수입제한내용의 변경

○ 실수요자단체의 수입추천제도의 철폐

CCCN	품 목	현 행	개 정
1701	원당	제당협회추천	상공부추천
2927	아크릴로 니트릴	화섬협회추천	석유화학협회 추천
2935	카프로락담	〃	〃
3901	Polyamide Resin	〃	〃
3901	Polyester Resin	〃	〃
5311	악기제조용 모직물	악기공업협회추천	유모방협회추천

○ 실수요자 소요분 수입제한내용의 조정(삭제)

CCCN	품 목	현 행	개 정
0205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농수산부 추천	좌 동
0303	진주모패	수산청 〃	〃
0401	밀크와 크림	농수산부 〃	〃
0505	어류의 설	수산청 〃	〃
1206	호프	농수산부 〃	〃
1507	면실유	제유공업조합 〃	〃
2927	아크릴로 니트릴	화섬협회 〃	석유화학협회추천
2935	카프로락담	〃 〃	〃
3901	Polyamide Resin (섬유용)	〃 〃	〃
5101	나이론F사 등	〃 〃	좌 동
5311	악기제조용 모직물	악기공업조합 추천	유모방협회 추천
5601	나이론 섬유등	화섬협회 추천	좌 동

○ 주무부 별도공고품목의 상공부공고 일원화

CCCN	품 목	현 행	개 정	비 고
0201		농수산부별공	상공부별공	(농수산부와 협의)
0202				
0204	육 류			
0206				
0301	어 류	수산청별공	〃	(수산청과 협의)
0302				
0303	갑각류의 연체동물 (일부)	〃	〃	
0601	화훼류로써 숙근초 및 란류	농수산부별공	〃	(농수산부와 협의)
0602	호프종근, 상묘	〃	〃	
	버섯의 균자, 묘목등	산림청별공	〃	(산림청과 협의)
0801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농수산부별공	〃	(농수산부와 협의)
0802	감 귤	농수산부별공	〃	(농수산부와 협의)
0803	무화과	〃	〃	〃
0804	포 도	〃	〃	〃
0805	너트(핵자)	〃	〃	〃
0806	사과 및 배등	〃	〃	〃
0807	핵 과	〃	〃	〃
0808	딸 기	〃	〃	〃
0809	기타 신선과실	〃	〃	〃
1203	채소종자 및 목초종자	〃	〃	〃
1508	피마자유	〃	〃	〃
1601	소세지(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	〃	〃

CCCN	품 목	현 행	개 정	비 고
1602	육류의 기타 조제식료품	농수산부별공	상공부별공	(농수산부와 협의)
1604	어류의 조제식료품	수산청별공	〃	(수산청과 협의)
1605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식료품	〃	〃	〃
1704	설탕과자	보사부별공	〃	(보사부와 협의)
1806	초코렛과자	〃	〃	〃
1904	타피오카 등	농수산부별공	〃	(농수산부와 협의)
2006	가당한 조제한 과실	〃	〃	〃
2007	오렌지 쥬스 농축액	〃	〃	〃
2902	BHC, r-BHC 등	〃	〃	〃
9706	국제경기용 선수용 운동기구류	문공부별공	〃	(문교부와 협의)

Ⅰ - 3. 1980년의 수입자유화

(1) 1980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상공부고시 제79-37호, '80. 1. 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 일　　시 : '79. 11. 29
○ 심의결과 : 원안통과

나. 개정내용

(1) 수입제도의 개선

○ 외국상품 국내 전시회 출품 물품 수입조정
종전에는 주한외국공관장이 인정하는 외국상품전시회에 출품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수입허용하여 왔으나 금번에 이를 개정하여 주한외국공관장이 직접 주관하는 외국상품 전시회에 대하여만 전시회 출품 물품을 사전에 상공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육성방향과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동 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하여 지도록 함.

○ 외국의 정변등의 경우 해외진출업체 소유시설재등 수입
외국의 정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체가 동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재, 원자재 및 동제품을 국내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수출입기별공고상 품목별 표시구분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요령에 의하여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체 소유산업시설재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

○ 반도체 생산시설에 소요되는 부분품의 수입
현재로는 전자산업분야중 전략 육성분야인 반도체등의 생산 및 동 유지보수를 위한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출입기별공고상 품목별 제한조치에 불구하고 수입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에 이를 조정

확대하여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품에까지 수입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수입절차를 단순화하고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동 산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음.

○ 시험연구소 소요시설 및 재료의 수입추천기관 조정
- 추천기관조정 : 종전 공업진흥청장에서 주무부장관으로 바뀜.
- 시험연구소 개념에 수출품 검사기관을 추가하였음.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특별법에 추가하였음.

(2) 수입자유화

(가) 선정기준

1) 자유화대상

○ '79~'80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 물가안정에 기여 또는 민생안정을 기할 수 있는 품목
○ 국산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특정 목적과 관련되는 품목
- 열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공해방지
- 안전성 제고
- 농업생산성 제고
○ 제한의 실효성이 적거나 체계적으로 수입자유화가 요구되는 품목
○ 기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및 타 부처에서 요청하는 품목

2) 유보대상

○ 중화학공업 제품으로서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품목
○ 중소기업제품 및 농수산물로서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품목
○ 사치성 소비재

(나) 수입자유화 내용

○ 9개품목 추가 자유화

- 자유화율 : 67.6% → 68.5%

○ 수입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1701	원당
1703	당밀(주정용은 제외)
2107	Pineapple Beverage Base, 고밀백대두분(70% 이상)
2520	불용성 무수석고
2835	Sodium Sulphide
2837	중아황산 소다
2936	OTSA(Ortho Toluene Sulphur Amide)
3903	연초제조용 세로판
4304	Polyurethan Foam with oneside flocking
4424	목재의 가사용구
4816	지대(Paper sack), Paper pots(원예, 육묘용의 것)
4909	그림엽서, 카드등
6702	조화
7303	고철
7310	철강의 봉
7315	콘크리트보강용 합금강선
7604	알미늄 박
8307	휴대용 가스등
8465	기계의 기판, Wheels, Hands for M/C
8520	네온전구, 적외선전구, Beam Lamp
9018	산업용 Gas Mask, 산업용 Respirators
9812	빗 및 헤어슬라이드

〈참고〉

'79～'80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중 자유화실시 현황

○ '79～'80수입자유화 예시품목 115개 중에서(CCCN 4단위기준 49개)

- 자유화품목 13개(CCCN 4단위기준 7개)
- 잔존제한품목 102개(CCCN 4단위기준 42개)

○ 예시품목중 수입자유화 품목(13개)

황산소다, 중아황산소다, OTSA, 연초제조용 세로판, 목제가사용구, 지대, Paper Pots, 그림엽서 및 카드 등, 조화, 네온전구, 적외선전구, Beam lamp, 빗 및 헤어슬라이드

○ 주요 잔존 제한품목(102개)

목각제품, 크라프트라이나, 골판지원지, 성냥, 앨범, 산류, 모조장식용품, 에어콘, 냉동기, 측정·계량기기류, 제지기계류, 타자기, 애자, 전기검사·계측기기, 최종 및 궤종시계, 인형, 완구, 보온병

(3) 신규수입제한

CCCN	품 목	비 고
2904	에틸렌 글리콜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국내산업보호 및 국산 대체촉진
8701	트럭 트랙터	
8448	Chuck 류	
8422	Tower Crane	
9016	마이크로메타, 베니어 캘리퍼스	
8417	산업용 열사용기기류 전용부분품	기계류 국산화 추진
8419	산업용 세척, 건조기기류 전용 부분품	
8422	하역기기류 전용 부분품	
8508	자동차용 배전반(Distributor)	
8519	자동차용 Contact Point	
9007	카메라 부분품(전용)	
9024	자동온도조절기(thermostat)	

(2) 특수지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에 관한 고시

(상공부고시 제80-3호, '80. 1. 29)

○ 로데지아국과의 수출입 및 기타 교역관계에 대한 제한 철폐

- '67 하반기 수출입기별공고에 로데지아국과의 수출입제한규정 신설
- '79. 12. 21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로데지아 교역금지조치 해제결의

〈참고〉 특수지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에 대한 기준(중앙정보부)

가. 특수지역의 범위

특수지역이라 함은 좌경 중립국, 미수교국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적성의 강도 등을 감안, 북괴, 소련, 동독, 체코, 폴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유고, 알바니아, 중공, 몽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의 16개 공산국으로 한정함.

나. 특수지역의 일반재 수입시 원산지표시 제거여부 및 시기 및 그 대상

○ 원산지 표시 제거여부 및 시기

- 특수지역으로부터 원료, 원자재 및 제품등을 수입할 시에는 수입계약당시에 원산지표시 제거를 요청하여 사전 제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관 전에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야 함.
- 단, 최종소비재(시판상품)가 아닌 중간시설재(기계, 장비, 부품 등)로서 공장내나 일정 장소에 비치, 사용하는 제품이 원산지표시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관후 원산지 표시를 은폐하여 사용케 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감독관청은 원산지표시 은폐사용여부를 확인 요망

○ 원산지 표시 제거대상

제품의 포장, 용기, 내용물의 개체에 표시된 모든 원산지표시가 해당됨.

다. 해외진출업체가 현지사용을 목적으로 한 특수지역제품의 수입여부

해외진출업체가 현지사용 목적을 위해 특수지역 제품을 수입시는 전기나항에 준하되 현지공관의 확인(수입허가 신청시와 수입완료후)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라. 보세지역에서 재수출되는 원자재 및 제품의 원산지표시 제거 여부

재수출을 전제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표시 제거는 불요하나 원산지 표시가 있는 용기나 포장지가 보세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조치해야 함.

(3) 1980년도 하반기 및 1981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상공부고시 제80-14호, '80. 7. 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 일　　시 : '80. 5. 30

○ 심의결과 : 원안통과

- 차기 기별공고 개정시 반영조치할 대상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1	당나귀	2903	니트로벤젠
2201	물, 얼음	3703	인화지
2507	제지용 고령토	7604	알미늄 박
9809	봉랍	8455	금전등록기 등의 부품
4423	건축용 목공품(감시품목)	9005	쌍안경(감시품목)
4901	카렌더　　(　〃　)	9104	벽시계(　〃　)
3606	성　냥　　(　〃　)	3819	알킬벤젠(　〃　)
9705	카니발용품　(　〃　)	3903	세로판(　〃　)
9706	회전목마등　(　〃　)		

나. 개정내용

(1) 수입제도의 개선

○ 심신장애자가 전용하는 일반생활용품(보건사회부장관 추천)이나 교육용 물품(교통부장관 추천)에 대하여는 수출입기별공고상 품목별 제한내용에 불구하고 수입허용

○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국제경제연구원 소요물품은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수출입기별공고상 제한내용에 불구하고 수입허용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자유화

○ 3개품목(CCCN 8단위 기준 33개) 추가 자유화

- 자유화율 : 68.5% → 68.6%

○ 수입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601	화훼류의 구근	9007	카메라 다리
0602	호프종근, 상묘	9702	인형의 부분품 및 부속품
2107	Lemon beverage base, Apple beverage base, 제빵개량첨가제, 복합유화인정제	9704	실내볼링장용 자동 Pin Seter
		9706	약력 및 완력 증진기
		9805	제도용 연필(7-9H)
		9808	Film Carbon Ribbon
2850	핵분열물질	9810	20㎝ 이상의 점화용 라이타
2851	동위원소		
2852	토륨등		
5605	PVA 방적사		
5606			
8410	자동차용 내연기관 펌프		
8411	진공펌프		
8433	지대제조기		
8455	지철기의 부분품, 발인기의 부분품		
8501	전기유도기		
8506	진공소제기		
8519	열전용 릴레이, 개폐기, 방폭형 제어반		

(3) 신규수입제한

CCCN	품 목	CCCN	품 목
2817	가성소다(액상의 것)	8417	저온살균기
2832	염소산소다	8431	판지제조기
2922	고무노화방지제	9016	마이크로 메터의 부분품,
3205	분산성 염료		버니어 캘리퍼스의 부분품
3819	조제된 고무노화방지제	9024	적산열량계
3902	ABS 수지		(구경 40㎜이하의 것), LP gas
7135	전기강판 및 강대		조정기
	(규소강판 및 강대포함)	9026	수도미터, 가스미터
8202	고속도강	9028	자동차용 제동시험기
8406	소형디젤엔진(7HP이하의 것)		(Brake Tester)
8411	공기압축기	9029	Thermostat의 부분품

(4) 수입제한내용의 변경

CCCN	품 목	현 행	개 정
0401 0402	밀크, 크림	농수산부 추천	상공부 별도공고
0403	버터	〃	〃
0404	치이즈	〃	〃
0601	화훼류로서 균류	상공부 별도공고	농수산부 추천
0805	넛트류	〃	〃

CCCN	품 목	현 행	개 정
1208	크로레라분	농수산부 추천	수산청 추천
2006	파인애플 통조림	상공부 별도공고	밤수출실적에 LINK
3902	합성수지류의 Scrap	석유화학협회, 프라스틱조합 추천	재생 프라스틱조합 추천
7014	자동차용 Beam lamp 제조용 Lens	상공부 별도공고	수송공고
7102	반귀석류	〃	이리귀금속조합 추천
7313	석도강판	제한(금지)	철강협회 추천
8501	변압기(80천 KVA이하)	제한(금지)	전기조합 추천
	계기용 변압기(72KV이하)		〃
8508	농업용엔진에 사용하는 Mapmet	상공부 별도공고	농기구조합 추천
8703	기중기차	수송공고	KIMM 추천
9024	자동차엔진용 Thermostat	KIMM 추천	수송공고
9017	시계 Movement	상공부별도공고	시계조합 또는 전자공업진흥회 추천
9108			
9110	시계부속품		

Ⅰ - 4. 1981년의 수입자유화

< 1981년도 하반기 및 1982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상공부고시 제81-19호, '81. 7. 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시 : '81. 5. 26

(2) 심의결과 : 원안통과

〈심의내용〉

○ 경제기획원 :

- 기별공고는 '80년대 산업합리화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단시일내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로 보호하여 이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별법 대상품목은 현재처럼 개별 법령에 의거 규제하는 것보다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연간 매출고 100억원 이상인 시장지배적업종중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방하여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무부 :

- 관세율 조정으로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은 관세율 조정에 대하여 재무부와 사전협의한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개정내용

(1) 수입제도의 개편

○ 품목분류기준 변경 : CCCN 4단위 → CCCN 8단위

○ 수입한도 관리품목제도 폐지

○ 국가안보시설용 물품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연수용 시설기재의 특례수입 허용 근거 마련

(2) 수입자유화

(가) 선정기준

○ 자유화 대상

- 수입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품목
  - ·실질적으로 전량수입되고 있는 품목
  - · 수입수요가 적어 자유화하더라도 수입급증의 우려가 적은 품목
-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면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
- 용도별 제한 및 실수요자 제한의 철폐
- 경기상황과 사치품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유화 유예

○ 규제대상

- 신규제한 불허(다만, 수입감시품목 중 수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은 수입제한품목으로 환원)
- 불가피한 신규제한의 경우는 1개월간 예시후 제한

(나) 수입자유화 내용

○ 총괄

(CCCN 8단위기준)

	종 전	개 정	비 고
총 품 목	1,010(7,465)	7,465	396
자 동 품 목	693(5,183)	5,579	△396
제 한 품 목	317(2,282)	1,886	5.3
자 유 화 율(%)	68.6(69.4)	74.7	

○ 품목변경 내용

- 제한 → AA : 398개
  (완전 AA 271개, 감시 115개, 다변화 12개)
- 감시 → 제한 : 2개

○ 수입자유화품목(271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1 0200	당나귀, 노새와 버새	0602 0101	뿌리 삽목용의 가지 및 접목용의 가지(과수의 것)
0301 0102	연 어(양식용 활어)	0199	뿌리 삽목용의 가지 및 접목용의 가지(과수의 것 제외)
0103	송 어(〃)	0200	버섯의 균사
0104	초 어(〃)	0401	오동나무
0105	대두어(〃)	0499	버섯의 포자
0106	백연어(〃)	0804 0200	건포도
0107	떡붕어(〃)	0805 0600	은행
0507	청 어(신선, 냉장)	0812 0100	감(건조)
0602	연 어(냉동)	0200	대추(〃)
0607	청 어(〃)	0300	머루(〃)
0608	대 구(〃)	0400	기타의 과실(〃)
0302 0305	북 어(건조)	0813 0000	멜론의 껍질과 감귤류의 껍질
0306	장 어(〃)	1201 0200	코프라
0401	연 어(염장)	0300	팜넛 및 핵
0402	송 어(〃)	0400	대두
0403	청 어(〃)	0500	아마인
0501	멸치젓	1208 0104	톳
0502	갈치젓	0105	파래
0503	조기젓	1405 0401	돌가사리
0701	청 어(훈제)	0402	뜬새모가사리
0702	연 어(〃)	0403	불등가사리
0303 0514	민물게(신선, 냉장)	1508 0100	탈수 피마자유
0601	소 라(염장, 염수장)	0200	기타의 동식물성 유지
0602	조 개(〃 〃)	1604 0105	연어 통조림
0603	새우젓	0107	청어 통조림
0604	게 젓	0203	생선 마리네이트
0605	굴 젓	1605 0104	새조개 통조림
0606	조개젓	2006 0207	밀폐용기에 넣은밤(가당한 것)
0505 0000	어류의 웨이스트	0306	밀폐용기에 넣은 밤(가당한 것 제외)
0601 0300	구근과 과정을 제외한 기타의 것		

CCCN	품 목	CCCN	품 목
2107 0201	인삼차	3703 0300	X선용 인화지
0202	인삼 경옥고	0400	심전도용 인화지
0203	당삼	0500	사진복사용 인화지
0204	봉밀삼	0600	청사진용 인화지
0205	인삼과자	0700	기타 인화지
0299	기타 백삼제품류	3901 0203	알킷수지 및 기타의 폴리에스테르
0301	홍삼차		
0399	기타 홍삼제품류	0204	포리 아미드
2201 0100	물	0403	알킷수지 및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200	얼음		
0300	눈	0404	폴리아미드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2202 0500	인삼드링크		
2207 0202	약주	4203 0501	야구용 캐쳐그로브(가죽 또는 재생가죽제)
2209 0301	소주		
0302	인삼주	0599	기타 야구용 그로브
2501 0300	순염화소다	4816 0500	지 또는 판지제의 서류상자, 서류함, 기타 유사한 물품
0400	기타의 소금, 염수 및 해수		
2507 0102	고령토	5101 1400	기타 재생섬유의 장섬유사
2515 0100	대리석	5103 0101	재봉사(합성섬유)
0200	설화석고	0199	기 타(〃)
2904 0303	소르비틀	0201	재봉사(재생섬유)
2922 0301	싸이클로 헥실아민	0299	기 타(〃)
2926 0203	헥사메틸렌 테르라민	5605 0199	기타 합성섬유의 방적사
3213 0202	제도용 잉크	0399	기타 합성섬유의 방적사
0301	복사용 잉크	0499	기타 합성섬유의 방적사
0302	볼펜용 잉크	0502	아세테이트의 방적사
0303	금속성 잉크	0599	기타 재생섬유의 방적사
0399	기타의 잉크	0702	아세테이트 섬유의 방적사
3401 0299	기타의 비누와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	0799	기타 재생섬유의 방적사
		0802	아세테이트 섬유의 방적사
		0899	기타 재생섬유의 방적사
		5606 0101	재봉사(합성단섬유의 전중량이 85% 이상인 것)
		0102	편물사(〃)

CCCN	품 목	CCCN	품 목
0199	기 타(합성단섬유의 전중량이 85% 이상인 것)	1002	3㎜미만의 무늬 철강판
0201	재봉사(합성 단섬유의 전중량이 85% 미만의 것)	1099	〃 기타 천공, 연마, 요형의 철강판
0202	편물사(〃)	1102	〃 페인트도장 철강판
0299	기 타(〃)	1199	〃 기타 비금속도 철강판
0301	재봉사(재생섬유의 것)	7332 0201	금속용 나사못
0302	편물사(〃)	0299	기타의 나사못
0399	기 타(〃)	0300	리베트
7313 0102	6㎜이상 9.5㎜미만 철강판(석도강판 제외)	0400	코터핀 및 코터
0103	9.5㎜이상 13㎜미만 철강판(〃)	0500	와 서
0104	13㎜이상 19㎜미만 철강판(〃)	0600	기타의 고정쇠
0105	19㎜이상 25㎜미만의 철강판(〃)	8301 0301	열 쇠
0106	25㎜이상 철강판(〃)	8304 0000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 서류선반, 서류분류함,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0301	0.9㎜미만의 열간압연의 철강판	8307 0201	항공기 활주로용 조명기구
0302	0.9㎜~1.7㎜미만의 열간압연의 철강판	0202	도로용 레인마아크용 〃
0303	1.7㎜~3㎜미만의 열간압연의 철강판	0203	철도차량의 〃
0701	3㎜미만의 크롬도 철강판	0300	부분품
0702	〃 니켈도 〃	8402 0101	철도차량보일러용의 부속기기
0703	〃 동도 〃	0102	선박보일러용의 부속기기
0705	〃 알루미늄도 〃	0200	증기 원동기용의 응축기
0706	〃 인조산화 〃	8410 0504	왕복펌프의 부분품
0799	〃 기 타 〃	0505	원심펌프의 부분품
0800	〃 크레드 〃	0506	로타리펌프의 부분품
0900	〃 파 형 〃	8411 0200	기타의 기체펌프
1001	〃 연 마 〃	0300	가스터빈용의 후리이피스톤식의 압축기
		0701	가스터빈용의 후리이피스톤식의 부분품
		8415 0303	혈액저장용 냉장고

CCCN	품 목
8417 0299	냉매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미만의 공기조절기용 기기·설비 및 장치의 부분품
0399	냉매압축기의 사용동력 11㎾이상의 공기조절기용 기기·설비 및 장치의 부분품
8419 0100	가정용 접시세척기
0401	주사약 충전기
8420 0201	저울추
8423 0108	자주식의 로오드 로울러 (탬핑 또는 콤팩팅의 것)
0204	기타 굴착기(자주식 제외)
8431 0302	기타의 부분품(섬유소 펄프 제조기계의 것 제외)
8441 0300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기구
8443 0101	전로
0104	압력주조기
0199	기타의 주조기
8456 0102	기계식 체
0402	조괴기, 평입기, 성형기
8459 0600	담배제조용의 기계류
1502	가정형 제습기, 가습기, 공기세정기의 부분품
8462 0202	로울러와 나이들
8463 0100	항공기의 것과 부분품
0211	오일레스 베어링
0299	기타 차량이외의 부분품
3501 0801	수은 아아크 정류기기
0803	금속 실래륨 정류기
0804	기타의 금속정류기기 (실리콘 정류기 및 셀레늄 정류기 제외)
8503 0400	부분품
8506 0500	가정용 전기기기 부분품
8507 0300	면도기 부분품
8508 0100	항공기용 발전기
0401	항공기용 발전기 부분품
8509 0104	제상기
0105	제무기
8511 0401	전기납땜 인두
0499	기타의 기기(전기로, 오븐 및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가열기 및 용접기 및 전기납땜 인두를 제외)
0601	오븐 및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식품가공의 것)
0603	가열기(이화학용의 것)
0604	가열기(금속처리용의 것)
0698	가열기(기타의 것)
8512 0101	전기로의 전열용 저항체
0198	기타의 전열용 저항체
0199	전열용 저항체의 부분품
0301	토양 가열기
0700	부분품
8513 0802	전화교환기 부분품
0803	반송용 통신기기 부분품
0804	인쇄전기기기 부분품
0805	영상전신기기 부분품
0806	모사전송기기 부분품
8515 1202	흑백 TV 수상기의 튜우너
1300	라디오 수신기 부분품

CCCN	품 목	CCCN	품 목
1400	무선통신용 부분품	0400	목제의 인형
1500	T.V 카메라 부분품	9704 0100	탁구용구
1601	항행용 무선기기 부분품	0101	골프용
1602	레이다아 부분품	0199	기타 골프용 운동용구
8519 0201	퓨우즈	9706 0201	정구용 공
0400	접속함	0202	정구용 라켓
0701	계전기의 부분품	0299	기타 정구용 운동용구
0703	플러그, 소켓 기타 이와 유사한 접속용 기기의 부분품	0300	스키용 운동용구
		0400	아이스하키용 운동용구
		0500	야구용 운동용구
0706	개폐기의 부분품	0600	기타의 운동용구
8521 0102	흑백 T.V 수상기용 음극선관	0701	등산용구
		9707 0103	낚시용의 망
0201	송신기용 열전자관	0199	기타의 낚시 용구
0202	T.V 용 촬영관	0200	기타의 수렵용구
0203	광전관	9708 0100	회전목마
0204	정류관	0200	그네
0205	방전관	0300	기타의 순회용구
0206	증폭관	9805 0301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오크
8524 0201	탄소 브러쉬	0302	재단용의 초오크
8525 0101	현수형 유리제 애자	0399	기타 초오크
0102	고정형 유리제 애자	0400	기타의 도화용구
0399	기타의 애자	9808 0200	잉크 패드
8714 0301	손수레	9809 0100	봉납
0302	우마차	0200	기타
0303	썰매	9815 0300	보온병 부분품
8901 0601	여객선(총톤수 20천t 이상)		
9005 0100	굴절식의 단안경		
9106 0100	전동기를 갖춘 타임스윗치		
0200	기타의 타임스윗치		
9211 0100	전기축음기		
9212 0103	녹음용 카아트리지 테이프		
9508 0100	젤라틴 캡슐		
9702 0100	작물제의 인형		

CCCN	품 목	CCCN	품 목
〈수입자동 → 수입감시〉			
0405 0101	조란(껍질이 붙은 것)	0405	고무가공한 직물제의 〃(〃)
3606 0000	성냥	0499	기타의 〃(〃)
4202 0101	가죽 또는 재생가죽의 핸드백	0501	가죽 또는 재생가죽제의 화장용 케이스
0102	직물제의 핸드백	0502	직물제의 〃(〃)
0103	플라스틱제의 〃	0503	플라스틱제의 〃(〃)
0104	인조피혁제의 〃	0504	인조피혁제의 〃(〃)
0105	고무가공한 직물제의 〃	0505	고무가공한 직물제의 〃(〃)
0199	기타의 핸드백	0599	기타의 화장용 케이스
0201	가죽 또는 재생가죽제의 여행용트렁크	0601	가죽 또는 재생가죽제의 손가방 및 서류가방
0202	직물류제의 〃	0602	직물제의 〃(〃)
0203	플라스틱제의 〃	0603	플라스틱제의 〃(〃)
0204	인조피혁제의 〃	0604	인조피혁제의 〃(〃)
0205	고무가공한 직물제의 〃	0605	고무가공한 직물제의 〃(〃)
0299	기타의 여행용 트렁크	0699	기타의 손가방 및 서류가방
0301	가죽 또는 재생가죽제의 슈우트케이스	0701	공구케이스
0302	직물류제의 슈우트케이스	0702	카메라쌍안경 및 이와 유사한 기구 케이스
0303	플라스틱제의 〃	0703	쇼핑백
0304	인조피혁제의 〃	0704	악기케이스
0305	고무가공한 직물제의 〃	0705	수렵, 낚시, 골프 및 이와 유사한 운동용구용 백
0399	기타의 슈우트케이스	0706	담배케이스, 쌈지, 열쇠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케이스
0401	가죽 또는 재생가죽제의 여행용구(트렁크와 슈우트 케이스를 제외한다)	0799	기타 케이스
0402	직물류의 〃(〃)		
0403	플라스틱제의 〃(〃)	4427 0101	담배상자(칠기제품)
0404	인조피혁제의 〃(〃)	0102	보석상자(〃)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3	식기류 (〃)	0701	팬티로스(재상 섬유제)
0104	옷장등 가구류(〃)	0900	기타 섬유제 내의류(모제, 면제,
0199	기타 (〃)		합성섬유제 및 견제의 것 제외)
0201	옷걸이(칠기제품 제외)	6005 0203	드레스, 스커트, 슈트 및 여자,
0202	식기류(〃)		소녀 및 유아용 의복
0203	상 자(〃)		(폴리아미드제의 것)
0204	장신구(〃)	0206	〃 (기타합성섬유제의 것)
0205	조 상(〃)	0207	〃 (재생 〃)
0299	기 타(〃)	0299	〃 (기타 〃)
4603 0600	부채, 핸드스크린	0303	기타외의 및 의복부속품
0101	대나무 세공품(핸드백, 보석함,		(폴리아미드제의 것)
	기타 이와 유사	0304	〃 (폴리에스테르 〃)
	한 바구니)	0306	〃 (기타합성 〃)
0102	〃 (낚시바구니)	0307	〃 (재생섬유제의 것)
0103	〃 (과일바구니 등)	0399	〃 (기타 〃)
0104	〃 (접시, 쟁반, 기타		
	이와 유사한 식	0403	기타의 편직제품
	탁, 주방용구)		(합성섬유제의 것)
0109	〃 (기타)	0404	〃 (재생 〃)
		0499	〃 (기타 〃)
0200	등나무 가공품		
0300	종이, 경목, 세로훼인 및 다른	6006 0100	탄성편물
	재료에 플라스틱을 피복한 가	0201	고무사를 사용한 양말
	공품	0202	〃 장갑
0400	바구니 및 기타의 세공품	0203	〃 벨트
0500	기타 세공품	0299	기타의 탄성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품
4910 0000	카렌다		
6004 0301	팬티호스	6101 0101	남자 및 소년용 외의류
	(폴리아미드섬유제)		(고무직물제의 것)
0401	〃 (폴리에스터섬유제)	0103	〃 (PVC인조피혁제의 것)
0501	〃 (아크릴 섬유제)	0202	남자 및 소년용 오버코트, 기타
0601	〃 (기타합성 섬유제)		코트(폴리아미드제의 것)

CCCN	품 목	CCCN	품 목
0204	〃 (아크릴 〃)		
0206	〃 (재 생 〃)	〈수입제한 → 수입선다변화〉	
0304	남자용 및 소년용의 양복 (폴리아미드제의 것)		
0306	〃 (아크릴섬유제의 것)	2919 0199	기타의 인산에스테르 및 그 염
0307	〃 (폴리비닐알콜제 것)	2935 0201	5-이노신산 소다와 5-구아닐산 소다
0404	남자용 소년용의 하의 (폴리아미드제의 것)	0299	기타의 핵산 및 그 염과 유도체
0406	〃 (아크릴제의 것)		
0407	〃 (폴리비닐알콜제 것)		
0410	〃 (견제의 것)	3819 3200	합성복합 조미료
0507	남자 및 소년용의 상의 (폴리비닐알콜제 것)	7017 0102	이화학용 유리제품
6102 0101	여자, 소녀 또는 유아용의 외의류(고무직물의 것)	7337 0101	유류사용 중앙난방 보일러
0103	〃 (PVC 인조피혁제의 것)	0102	석탄사용 〃
0207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코트 및 상의류 (폴리비닐알콜제 것)	0103	가스사용 〃
		0199	기타의 〃
		0300	에어 히타의 〃
0304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양복 (폴리아미드제의 것)	0400	온풍 배분기 〃
0307	〃 (폴리비닐알콜제 것)	9027 0104	택시미터
0404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드레스 (폴리아미드제의 것)		
0407	〃 (폴리비닐알콜제 것)		
0504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스커트 (폴리아미드제의 것)		
0507	〃 (폴리비닐알콜제 것)		
0605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브라우스 (〃)		
0707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기타 외의류(〃)		
9702 0500	기타의 인형		

(3) 신규수입제한

○ 수입감시 → 수입제한(2개)

CCCN	품 목
4009	편상식 고무호스중 상용압력 70~210 ㎏/㎠에 해당하는 것
7405	동박적층판

Ⅰ - 5. 1982년의 수입자유화

(1) 1982년도 하반기 및 1983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상공부고시 제82-21호, '82. 7. 1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　　시 : '82. 5. 26

(2) 심의결과

○ 원안통과

○ 총칙부문은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관계부처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 경쟁촉진등을 위한 해외경쟁도입 근거규정의 신설

〈심의내용〉

○ 경제기획원 :
- 수입자유화를 좀더 과감히 추진하여 국내업계를 자극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바탕 마련(예 : 분유, 조제분유, 원당, 정당 등)
- 독과점품목 및 시장지배력행사품목에 대해 수출입기별공고의 예외조치(수입제한품목이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세청 :
- 무역정책에 있어 수입의 직접규제보다는 관세에 의한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동자부 :
- 국내자원이용확대측면에서 규사의 수입제한이 바람직함.

○ 무역협회 :

- 국제적으로 수입자유화는 퇴색되고 자국시장을 자국이 확보한다는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수입자유화에 신중을 기하고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수입자유화조치로 단체수입이 감소하면 애로가 많을 것이므로 단계적인 자유화가 소망스러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입 추천권을 이들 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업계의 수수료 경감이 필요함.

※ 산업정책심의회 심의('82. 5. 27) : 원안통과

경제기획원이 제안한 "경쟁촉진 및 수급안정을 위한 특별조치" 사항을 총칙에 규정함.

나. 개정내용

(1) 수입제도 개선

○ 공정거래관련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 시장지배력 행사가능품목 및 유사공동행위등에 의하여 경쟁질서의 정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과 현저한 수급불균형으로 생필품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서 경쟁의 촉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수입이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요청하여 상공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한 예외수입 근거조항 신설

(2) 선정기준

○ 수입자유화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과 산업정책과의 조화를 유지함.

○ 자유화 대상

- 수입을 자유화하여도 수입급증의 우려가 없는 품목
-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
- 국제경쟁력 제고를 자극할 필요가 있는 품목
- 국산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완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기계류의 전용부분품
- 수입제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품목
- 수입감시 및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전환가능한 품목
- 관세에 의한 간접보호로 경쟁이 가능한 내구소비재 등
- 타 법령과 중복 규제되고 있는 품목 등

○ 규제대상

- 신규 수입 제한은 가능한 한 억제함.
- 가동초기의 석유화학 제품으로서 적정 가동율의 유지가 필요한 품목
- 중화학투자조정 대상품목으로서 관련업계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 기초소재품목의 관련생산품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
- 비교우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발초기단계의 품목
- 산업정책상 생산업체의 전문화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 수입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품목

(3) 수입자유화

○ 총 괄

	현 행		개 정	비 고
	종전체제	개편체제		
총 품 목	7,465	7,560	7,560	중도자유화 : 4
제 한 품 목	1,886	1,911	1,769	금번자유화 : 163
A A 품 목	5,579	5,649	5,791	금번제한 : 25
자 유 화 율(%)	74.7	74.9	76.6	자유화증가 : 142

○ 세부내용

구 분		품 목 수
수 입 자 유 화	완 전 자 유 화	150
	수 입 선 다 변 화	10
	관 세 보 호 조 건 부	5
	(계)	(163)
	일 부 자 유 화	15
수 입 제 한	신 규 제 한	25
	제 한 범 위 확 대	37

* 관세보호와 다변화품목 조정내용에는 2개품목이 중복되어 있음.

○ 수입자유화품목(167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6 0201	성게	2902 0102	3염화 에틸렌
0301 0101	실장어(양식용 활어)	2914 1199	기타
0199	기타양식용 활어	2915 0103	수산
0302	농성어(해수활어)	0404	테레프탈산 디메틸(D.M.T)
0302 0703	명태(훈제)	3401 0203	로진 및 나프덴산 비누
0704	멸치(〃)	3902 0601	고밀도 폴리에틸렌(이온 교환 수지를 제외한 것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303 0199	기타 양식용의 갑각류 및 연체동물	0602	고밀도 이외의 폴리에틸렌 (〃)
0406	홍합(건조)	0603	폴리프로필렌(〃)
0510	홍합(신선, 냉장)	0604	폴리스틸렌 수지 및 폴리스틸렌 공중합물 수지(〃)
0512	새조개(〃)	0605	염화비닐수지(〃)
0513	반지락(〃)	0606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물(〃)
0515 0302	잠종	0607	아크릴 수지·메타아크릴수지 및 아크릴 메타아크릴 공중합물(웨이스트와 스크랩)
0303	누에 번데기	0608	초산비닐수지(〃)
0901 0101	볶지 아니한 커피	0699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1201 0100	낙화생		
1203 0100	채소종자	4807 0499	기타의 종이와 판지
1405 0399	우무가사리를 제외한 한천제조용 해초류	4813 0199	카본지와 등사원지 이외의 복사지
0404	도박	5009 0300	에세테이트 인견교직 또는 혼방견직물
0405	진도박	0400	기타 인조섬유와 교직 또는 혼방한 견직물
0406	말	0500	모와 교직 또는 혼방한 견직물
0499	한천제조용 이외의 기타 해초류	0600	기타 견직물
1603 0300	어류의 엑스	5602 0199	기타 폴리아미드계 단섬유
1605 0101	굴 통조림		
0102	홍합 통조림		
0103	반지락 통조림		
0105	새우 통조림		
0108	고동 통조림		
0110	골뱅이 통조림		
2107 0499	기타 인스턴트 면류		

CCCN	품 목	CCCN	품 목
5604 0400	폴리염화비닐계의 것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	5804 0301	파일 및 시니일직물 (폴리아미드계의 것)
0600	기타 합성섬유의 것	0302	파일 및 시니일직물 (폴리에스테르계의 것)
5605 0105	폴리프로필렌계 섬유의 방적사 (합성 단섬유의 중량이 전중량 의 85%이상의 것)	0303	파일 및 시니일직물 (아크릴계 섬유의 것)
		0399	파일 및 시니일직물 (기타 합성섬유의 것)
0401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방적사 (기타 섬유와 혼방한 합성단섬유 방적사로서의 합성단 섬유의 중 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의 것)	0500	파일 및 시니일직물 (견으로 된 것)
		0600	파일 및 시니일직물 (기타 섬유의 것)
0402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의 방적사(〃)	6001 0303	폴리프로필렌 장섬유사의 편직물
0403	아크릴계 섬유의 방적사 (〃)	0304	아크릴 장섬유사의 편직물
0404	폴리프로필렌계 섬유의 방적사 (기타 섬유와 혼방한 합성 단섬유 방적사로서 합성 단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의 것)	0403	폴리프로필렌 단섬유사의 편직물
		0502	아세테이트 장섬유사의 편직물
		0599	기타 재생장섬유사의 편직물
		0601	비스코스레이온의 단섬유 방적 사의 편직물
0701	비스코스레이욘의 방적사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재생단섬유의 방적사 로서 재생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의 것)	0602	아세테이트 단섬유 방적사의 편직물
		0699	기타 재생 단섬유 방적사의 편직물
0801	비스코스레이욘의 방적사 (기타섬유와 혼방한 재생 단섬유 방적사로서 재생 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의 것)	6005 0107	저지, 쉐터, 폴오바, 트윈셑, 가디간, 외의용셔츠, 베드자켙 및 잠바(재생 섬유제의 것)
		6104 0301	아세테이트 섬유의 것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내의류)

CCCN	품 목	CCCN	품 목
0302	비스코스레이욘 섬유의 것(〃)	8202 0102	금속용 수동식 톱
0399	기타 재생섬유의 것(〃)	0199	기타 〃
0400	마 또는 모시제의 것(〃)	8307 0204	무영등
6107 0299	기타 재생 섬유제의 넥타이류	8417 0499	낙동용 기계설비 및 장치의 부분품
6201 0300	면제의 것(여행용 리그와 모포류)	0599	석유화학공업용의 기기, 설비 및 장치의 부분품
6911 0400	기타(자기)	0699	이화학용의 기기, 설비 및 장치의 부분품
6912 0400	기타(도자기)	0799	기타용도의 기기, 설비 및 장치의 부분품
7102 0102	공업용의 다이아몬드(선별가공한 것)	8419 1002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기계의 부분품
0300	공업용 귀석	8441 0200	재봉기용 바늘
0600	공업용 반귀석	8455 0400	금전등록기의 부분품
7103 0101	다이야몬드(기계 또는 기타 공업용의 공하기에 적합한 형상의 것)	8456 0201	파쇄기와 분쇄기(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t이하의 것)
0102	기타의 귀석과 반귀석(〃)	8459 0299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7313 0101	두께가 4.75㎜ 초과 6㎜ 미만의 철강판(석도 강판을 제외함)	0701	목재, 섬유 또는 코르크의 응결 성형용의 프레스
0200	두께가 3㎜ 이상 4.75㎜ 이하의 철강판(〃)	0799	기타의 목재처리용의 기계류(목재, 섬유 또는 코르크의 응결 성형용의 프레스를 제외)
7335 0202	압소버형 와형 스프링	0899	기타의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처리용의 기계류
7337 0502	방열기 부분품	1199	기타의 절연전선제조기(권선기 및 절연재료 또는 보호재료피복기 제외)
0599	기타 부분품		
0600	태양열 접열기와 그 부분품		

CCCN	품 목	CCCN	품 목
1402	기타의 프레스	8704 0101	제8701호중 무한궤도식 트렉터의 것(원동기를 갖춘 샤시)
1403	기타의 압출기		
1407	기타의 로오프 및 케이블 제조기	8706 0101	제8701호중 무한궤도식 트렉터의 샤시
1409	기타의 파쇄기 및 혼합기		
8501 0501	방폭 또는 수중형전동기 (직류 이외의 것)	9026 0101	단상 50A이상의 적산전력계
		9028 0403	압력계(전자식)
0601	계기용 변압기 (유압식의 것)	9211 0400	녹음기와 음성재생기(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직결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테이프덱을 제외한다)
0602	용량 200KVA미만의 유압식 변압기(계기용 제외)		
0702	전압조정기	9212 0104	레코오드판용의 소재
0899	기타의 정류기기(수은 아아크 정류기기 및 금속정류기기를 제외함)	0199	기타의 녹음용 매체
		0300	기타의 녹음용 또는 기타 유사한 기록용의 매체(녹음용과 녹화용 매체 이외의 것)
1199	기타의 인덕터 (리액터를 제외함)		
		0401	영상과 음향이 기록된 것
1201	발전기의 부분품	0403	축음기용의 레코오드판
1203	회전식콘버어터의 부분품	0404	기타의 리일테이프
1301	트랜스포오머의 부분품	0405	기타의 카셋트의 것
1302	정지식 콘버어터의 부분품	0499	기타
1303	정류기기의 부분품	9401 0101	금속제의 의자
1309	기타의 부분품	9403 0101	금속제의 침대
8503 0102	산화은전지(보턴형의 것)	0199	기타의 금속제 기구
8509 0199	기타의 자동차용 기기	9707 0102	낚시바늘
8511 0501	전기로의 부분품	9810 0300	라이터의 부분품
8513 0202	공중통신용 전자식 자동 교환기		
0301	나선 반송장치		
8515 1299	기타의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부품		
8525 0301	인조프라스틱제 애자		

CCCN	품 목	CCCN	품 목
〈수입제한 → 수입선다변화〉		〈수입제한 → 관세조정〉	
6903 0102	흑연도가니	8506 0400	기타의 기기(진공청소기, 마루광택기, 환풍기, 선풍기, 식품파쇄기, 믹서 및 과즙 추출기 이외의 것)
0202	기타 내화도가니		
7335 0101	자동차용 판상스프링(철강제의 것)	8512 0299	기타의 기기(즉시 식품가열기 제외)
7337 0501	보일러의 부분품		
0503	에어히터의 부분품		(이상 50% → 90%)
0504	온풍배분기용 부분품		
		9007 0302	섬광전구
8459 1000	가정형의 가습기, 제습기 및 공기세정기		(40% → 60%)
8506 0400	기타의 기기(진공청소기, 마루광택기, 환풍기, 선풍기, 식품파쇄기, 믹서 및 과즙추출기 이외의 것)	9815 0100	보온병
		0200	기타의 진공용기
			(이상 50% → 90%)
8515 0401	수상기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미만의 흑백TV수상기(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을 포함하며, 폐쇄회로식의 것을 제외한다)		
9007 0302	섬광전구		

○ 일부자유화품목(14개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104 0299	생선어묵 제조용 조미료	8422 1800	콘베이어, 호이스트, 크레인, 잭의 부분품
2107 0900	생선어묵 제조용 첨가제		
7014 0100	자동차 시일드빔 램프용	8459 0300	성형기, 분쇄기, 교반기,
0500	렌즈		압출기
	자동차세미시일드빔	8501 1202	직경 50㎜ 이하의 직류 전동기의 부분품
7604 0200	렌즈용 렌즈		
8202 0101	Etched Aluminium	9401 0200	금속제 의자의 부분품
0299	Foil	9403 0302	금속제 가구의 부분품
	핸드소오, 2중톱	9704 0200	실내볼링용구
	실톱날, 핸드소오의 날	9804 0100	Mapping 펜촉,
			Round 펜촉

(4) 신규수입제한(25개 품목)

CCCN	품 목	제 한 내 용	제 한 사 유
0407 0299	멍게	수산청 추천	수입제한의 실효성 확보
2901 0402	톨루엔	석유화학공업협회 추천	불량휘발유 유통 근절
0403	오르토크실렌	〃	가동초기의 석유화학공업보호
0405	파라크실렌	〃	
2904 0103	부틸알코올	〃	
0104	2에틸헥실알코올	〃	
2906 0101	석탄산	〃	
2913 0201	아세톤	〃	
2930 02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CCCN	품 목	제 한 내 용	제 한 사 유
7340 0500	강구	주단조공업협동조합 추천	수입제한의 실효성 확보
7403 0102	황동의 봉·형재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추천	원자재 가격고가로 경쟁력 미약
0103	청동의 〃	〃	
0202	황동의 선	〃	
0203	황동의 선	〃	
7405 0200	동박(0.03㎜ 이상)	〃	
7407 0200	동의 중공봉	〃	
8414 0301	비전기식 노·오븐 (철강용)	주단조공업협동조합 추천	주물공업의 전문화 유도
0399	비전기식 노·오븐 (기타 금속처리용)	〃	
8418 0402	오일크리너의 하우징과 캡	기계공업진흥회 추천	개발초기단계의 국내산업보호
0499	여과·청청기기의 기타 부분품	〃	
8501 0102	400kw이상 1,000kw 미만의 발전기 (피스톤식 엔진부)	전기공업협동조합 추천	○ 국산엔진 수요 확보 ○ 발전기공업보호 육성
0203	400kw이상의 직류발전기	〃	
0304	400kw이상 1,000kw미만의 기타 발전기	〃	
8519 0799	내연기관배전반용 콘텍트 포인트세트의 부분품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추천	수입제한의 실효성 확보
9024 0301	전기연결식 LPG 액면 측정기	〃	개발초기의 국내 산업보호

※ 수입제한요청품목중 비반영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303 0199	기타의 갑각류 및 연체동물	4701 0402	표백화학펄프
0701 0200	토마토	6802 0101	연마한 대리석
0403	양배추	0102	기타 대리석
0405	당근	7325 0200	기타 철강선 제품
0406	오이	8207 0199	기타의 투울립
0499	기타 채소	8456 0299	해머 크랏샤
0812 0200	대추		
0910 0100	생강		
0401 0210	맹종죽		
0202	청환죽		
0299	기타		
2002 0105	죽순통조림		
2505 0100	규사		
2505 0201	점토사		
0202	장석사		
0299	기타 공업용 모래		
0300	기타 모래		
3205 0200	염료		
0300			
0400			
0700			

다. '82 / '83 수출입기별공고중 개정고시

(상공부고시 제82-44호, '82. 11. 10시행)

(1) 원면의 수입제한

○ 대　　상 : CCCN 5501 0100, 0201, 0202, 0203, 0204의 원면

○ 수입요령 : 수입자동승인품목 → 대한방직협회의 추천

○ 제한사유

원면수입에 대한 자금면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원면수입 질서의 교란을 초래하여 국내 면방업계에 물량확보의 불안과 자금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요자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 원면도입 제도변천

- '82. 7. 1 '82 하반기 및 '83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개정시 원면 도입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자금면의 제한철폐
- 금번 개정으로 수입제한조치 환원

'81 하반기 및 '82 상반기	'82 하반기 및 '83 상반기
(기별공고) 총칙 §5 ①상공부장관은 차관자금 및 PL 480호 자금만으로 수입하여야 할 품목 및 그 수입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시 10408호) 총칙 §5 ①에 의한 품목 : 소맥, 옥수수, 원면 * 자금면에서 제한	(기별공고) 총칙 §5 ①상공부장관은 차관자금 등 특정한 자금으로만 수입하여야 할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입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시 10408호) 폐지 * PL 480 협정기간만료('81. 9. 30)로 총칙 개정

(2) 멍게의 품목분류 변경

○ 기별공고상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 주관부서인 관세청의 분류가 상이하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산청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

기 별 공 고	관 세 청
0407 0299 멍게	0204 0300 냉동멍게 0206 0200 염장, 건조멍게

○ 개정결과 관세청의 품목분류방식에 따르도록 함.

(3) 표백화학펄프 수입제한요청 검토

○ 수입요령

현 행	개 정 요 령
AA(수입감시품목)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의 추천

○ 제한요청 사유

국내화학 펄프공업의 육성

○ 제한요청 사유검토

현재 수입감시품목으로서 국산과 수입품은 1 : 1의 링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제지공업연합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제한의 필요성이 없음.

(2) 수입자유화 예시작업추진

가. 목 적

수입자유화 추진방식을 단기운용방식에서 증기운용방식으로 개편하여 3~4년 이내에 수입자유화가 필요한 품목을 미리 알림으로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 국내산업의 대외적응능력 제고를 개방충격을 최소화 하며
- 경쟁원리도입으로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성함.

* '81하반기 및 '82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책정내용을 대통령각하께 보고시 수입자유화예시제 실시에 관한 지시가 있었음('81. 5. 27)

(지시사항)

- 수입자유화 품목의 사전예시제를 실시할 것
- 수입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경제성 검토, 기술향상 및 경쟁력 향상노력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수입자유화를 실시할 것

나. 작업의 대상

(1)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중 상공부 소관 품목

○ 중점검토대상 :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이 80%미만인 산업

구 분	기초소재	기계류	전자전기	섬유류	화학·요업	잡 화
총 품 목	1,829	1,346	440	1,074	691	527
제한품목	137	465	242	339	58	130
자유화목	92.5	65.5	45	68.4	91.6	75.3

(2) 특별법상 산업보호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는 품목

○ 약사법(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 농약관리법(농약원재 및 완제품)
○ 석유사업법(원유, 석유제품) 등

(3) 중점검토대상

1 단 계 작 업	2 단 계 작 업
○ 수입자유화율 80%미만 품목 - 기계, 전자전기, 섬유 ○ 특별법상 제한되고 있는 품목 - 의약품, 화장품 등	○ 수입자유화율 80%이상 품목 - 철강, 금속제품 - 화학제품

다. 예시품목 선정기준과 고려사항

(1) 선정기준

○ 다음 목적상 필요한 품목
- 물가안정
- 수출증대
- 에너지절약
- 관련품목의 경쟁력 향상

○ 자급율이 낮은 기초소재
○ 장기간 보호된 독과점 품목
○ 에너지 및 자원다소비형 품목
○ 경쟁력제고 노력이 요구되는 품목
○ 장기간 보호하여도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품목

(2) 고려사항

○ 통상정책과의 연계
○ 국제수지상황과의 조화
○ 장단기산업정책과의 조화

라. 추진현황 및 작업계획

(1) 추진현황

○ 관계부처 및 생산국에 자료요청('81. 11. 30)

○ 자료제출현황

부처(국)별 \ 내용		총 제 한 품 목 수	'83~'85 예시품목수	비 고
주무부처	농 수 산 부	182	-	농가보호
	동 력 자 원 부	12	10	
	보 건 사 회 부	36	-	
	산 림 청	11	-	
	수 산 청	215	-	어민보호
	국 세 청	30	-	세수확보(주류)
	기 타	25	-	특수목적상 제한
생산국	중 소 기 업 국	10	10	
	기 초 공 업 국	120	29	
	기 계 공 업 국	508	-	
	전 자 전 기 공 업 국	243	-	
	섬 유 생 활 공 업 국	539	198	

○ 관련연구기관에 자료협조요청

KDI, KIET 등 연구기관에 작업추진방향, 품목선정기준, 예시단계구분, 보완대책 등에 대한 의견 요청

(2) 작업반 편성과 관계기관의 협조

(가) 작업반 편성 : 총괄은 상역국장, 사무관별로 담당관제 운영

(나) 관계기관과의 협조

○ 각부처 및 생산국

○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섬산연 등 생산자 단체

○ 무역·상의등 수요자 단체

○ KIET, KDI 등 연구기관

(3) 작업계획

구 분		내 용	일 정
기본자료작성	·현행 수입제한 내용분석 및 기본 자료작성	○ 품목별 제한사유 분석 ○ 수입상황 및 수입선 ○ 국내외 가격비교 ○ 수급상황 ○ 수입개방시의 문제점	'82. 2~3
	·기본자료 종합 및 품목군 구분	○ 즉시 자유화 가능품목 ○ 단계별 예시 가능품목 ○ 상당기간 보호를 요하는 품목 (제외품목)	'82. 4
	·업종별 의견청취	○ 생산자 단체 ○ 수요자 단체 ○ 관계기관	'82. 4~5
	·검토안 작성	○ 즉시 자유화 가능품목 → 기별공고 반영 ○ 단계별 예시 가능품목 → 예시안 작성	'82. 5
종합자료작성	·「산업구조개선 및 합리화계획」 작성결과와 연계	○ 단계별 예시대상품목 및 예시단계의 종합조정	'82. 7(1차) '83. 1(2차)
	·대상품목 선정확정	○ 단계별 예시 가능품목 (2~3단계로 구분)	'82. 7(1차)
		○ 상당기간 보호를 요하는 품목(제외품목)	'83. 1(2차)

마. 예시작업결과

(1) 예시단계 구분

○ 1단계 : '83. 7. 1 수입자유화품목('83하반기 및 '84상반기 기별공고 책정시 반영)

○ 2단계 : '84. 7. 1 수입자유화품목('84하반기 및 '85상반기 기별공고 책정시 반영)

○ 3단계 : '85. 7. 1 수입자유화품목('85하반기 및 '86상반기 기별공고 책정시 반영)

(2) 산업별 검토내용 : 별지

(3) 예시방법

구 분	문 제 점
각 소관 공업국을 통하여 관련 업계 및 단체에 통보	○ 수입자유화의 강력한 추진곤란
고 시	○ 외국인투자 감소 및 기술제공 기피 가능성 ○ 외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개방압력 가중 가능성 ○ 대내외 여건 변동에 대응한 자유화의 신축성 유지 곤란 ○ 자유화에 대한 과잉기대로 자유화시 수입급증 가능성

〈검토의견〉

관련업계에 대한 통보만으로서도 예시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1안 채택이 바람직함.

［별지］

산 업 별 검 토 내 용

가. 기초공업(철강 및 비철금속, 석유화학, 정밀화학)

(1) 산업의 개관

○ 방대한 시설규모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소재와 중간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

○ 철강 및 비철금속, 주단조품
- 합금철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공급능력과 품질은 문제점이 없으나 가격경쟁력이 미약하며, 특수강은 국산개발 초기단계로서 신강종의 개발 및 품질고급화 단계
- 비철금속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에너지가격의 고가, 원자재의 해외의존, 시설의 국제규모 미달 및 내수공급과잉으로 가격경쟁력 열위이며 일부 중화학 투자조정
- 주단조품은 전형적 중소기업산업으로서 다품종소량 생산 체제임.

○ 석유화학
- 기술 및 품질은 국제수준
- 원료(나프타) 가격의 고가와 산업구조의 취약성(1사 1공장형태) 및 구조적 불황에 따른 선진국의 투매성행으로 가격경쟁력 열위

○ 정밀화학(염료, 화학공업의 첨가제)
-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 및 기술집약산업으로서 국산개발초기 단계이며 수요침체와 선진국의 투매로 가격경쟁력이 열위

(2) 수입자유화 현황

구 분	석유화학	정밀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평 균
자유화율(%)	69.3	97.8	89.7	92.5

(3) 수입자유화 원칙

○ 석유화학

- 원칙적으로 '86년까지 현행 수입제한조치를 지속하되 산업연관효과가 낮거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일부품목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자유화 추진

○ 정밀화학, 철강, 비철금속, 주단조품

- 수입자유화 완성단계로서 잔존 수입제한품목에 대하여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일부품목에 한하여 자유화 추진

(4) 검토결과

구 분	제 한 품 목	예 시 계 획				예 시 제 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철 강 금 속	77		3		3	74
석 유 화 학	39	2		6	8	31
정 밀 화 학	21		1	13	14	7
계	137	2	4	19	25	112

나. 기계공업

(1) 산업의 개관

○ 기술 및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5차계획의 중점 육성산업

○ 가격보다 품질과 성능, 브랜드 이미지가 경쟁력 좌우

○ 개발초기 단계로서 막대한 시설투자에 상응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 투자의 미흡으로 인한 시설운용의 비효율성, 기술축적의 미흡, 전문화, 계열화의 미비, 국산기계구입에 대한 지원체제의 미비 등으로 경쟁력 열위

○ 중기계, 디젤엔진, 자동차의 경우 중화학 투자조정

(2) 수입자유화 현황

구 분	산업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평 균
자유화율(%)	64.7	74.8	49.4	65.5

(3) 수입자유화 원칙 : 기계공업육성시책과 연계하에 신중한 자유화 추진

- ○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낮은 품목, 기술도입 및 개발정도가 높은 품목, 수출주도형, 개발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 ○ 전용기기부터 범용기기의 순으로 자유화
- ○ 기능 및 생산공정상 기초부품, 중간조립품, 최종완제품의 순으로 자유화
- ○ 국산화율 정도는 품목별 특성에 따름

(4) 검토결과

구 분	제 한 품 목	예 시 계 획				예 시 제 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산 업 기 계	250	6	7	11	24	226
정 밀 기 계	94	5	6	8	19	75
수 송 기 계	121	3	8	16	27	94
계	465	14	21	35	70	395

다. 전자전기공업

(1) 산업의 개관

- ○ 기술집약, 자원절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이며 기계, 조선등 유관산업과의 결합현상의 심화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관건이 되는 5차계획의 중점육성산업
- ○ 국제수준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단순부품조립과 가전제품 위주의 발전으로 산업용기기부분이 특히 취약함.

○ 가전제품

- 어느정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부품개발이 취약하며 브랜드 이미지가 낮음.

○ 산업용 기기

- 개발초기의 유치단계로서 시장의 협소, 기술축적의 미흡으로 경쟁력이 낮으며 중전기공업의 경우 중화학 투자조정

○ 부품산업

- 선진국 하청가공형태의 종속적 생산형태로서 완제품 조립산업과의 계열화, 전문화체제의 미흡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표준화가 뒤짐.

(2) 수입자유화 현황

구 분	가전제품	전자기기	전기기기	부품	평 균
자유화율(%)	42.9	48.7	47.5	38.8	45

* 타산업에 비하여 자유화율이 특히 낮음

(3) 수입자유화 원칙 : 전자공업 육성시책과의 연계하에 신중한 자유화 추진

○ 국내공급이 미흡한 품목,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소비재로서 독과점품목,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관납위주의 품목등 수입유발효과가 낮은 품목, 장기간 보호하여도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 가전제품의 경우 관세율 인상, 수입선 다변화등 보완대책 병행

(4) 검토결과

구 분	제 한 품 목	예 시 계 획				예 시 제 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가 전 제 품	48	10	12	4	26	22
전 기 기 기	74	2	6	33	41	33
전 자 기 기	60	1	6	12	19	41
전 자 부 품	60	-	-	9	9	51
계	242	13	24	58	95	147

라. 섬유공업

(1) 산업의 개관

○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비재산업으로서 수출 주종산업

○ 경영기술의 혁신, 시설개체, 품질고급화 및 신소재 개발, 패션 및 디자인의 개발,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질적성장이 필요한 사업

○ 섬유원료(화섬)
- 원자재 가격의 고가, 시설적정규모미달, 금융비용의 과중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

○ 사 및 직물
- 시설의 노후화, 원자재 가격의 고가, 염색가공기술의 낙후로 경쟁력 미약

○ 제 품
-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수입규제,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양적성장이 한계에 달하여 품질고급화, 패션 및 디자인의 개발등을 통한 고가품 개발이 필요

(2) 수입자유화 현황

구 분	원 료	사 및 직물	제 품	평 균
자유화율(%)	75.9	79.8	54.7	68.4

(3) 수입자유화 원칙

○ 화섬원료
- 가격경쟁력이 미약하나 전방산업(사 및 직물, 제품)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므로 원자재인 석유화학제품 가격과의 관련하에 신중한 재검토를 요함(예시대상에서 제외).

○ 사 및 직물
- 사치성이 낮은 품목, 국내수요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며 사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감시품목 지정등 보안대책 강구

○ 제 품

- 국민소비생활보호, 고가품 개발촉진을 위하여 자유화율을 타산업 수준까지 제고하되 국민의 위화감 조성과 수입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감시품목지정, 관세율 인상등의 보완대책 병행
- 패션에 대한 선호도 및 외제선호도가 낮은 품목, 국제경쟁력 보유품목, 국내수요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합성섬유제, 내의류, 남자용을 천연섬유제, 외의류, 여자용에 우선하여 자유화)

(4) 검토결과

구 분	제 한 품 목	예 시 계 획				예 시 제 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원 료(인조섬유사등)	41	-	-	-	-	41
사 및 직 물	90	10	29	20	59	31
제 품	208	40	56	40	136	72
계	339	50	85	60	195	114

마. 일반화학 및 요업제품

(1) 산업의 개관

○ 일반화학제품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최종소비재 또는 중간재산업
- 종류가 다양하고 시장규모가 적은 중소기업형 산업

○ 요업제품(도자기)

-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
- 분업화, 전문화의 미흡으로 생산성이 낮으며 국제시장에서 중급품으로서 품질고급화 단계

(2) 자유화 현황 : 자유화율 91.6%로서 자유화 완성단계

(3) 자유화 원칙

○ 일반화학 제품

- 경쟁력 보유품목, 추가적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는 서양산업등 일부품목에 한하여 자유화 추진

○ 요업제품(도자기)

- 수요가 적은 장식용 도자기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여 85년까지 완전자유화

(4) 검토결과

구 분	제 한 품 목	예 시 계 획				예 시 제 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일 반 화 학 제 품	30	1	5	13	19	11
요 업 제 품	28	5	-	18	23	5
계	58	6	5	31	42	16

바. 잡 화

(1) 산업의 개관

○ 대부분 중소기업형 소비재산업으로서 86 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산업

○ 문구류

-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제시장에서 중급품으로서 품질고급화 단계이며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음.

○ 완구류

- 봉제완구 등 일부는 수출산업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및 금속제 완구등은 수출산업화 단계로서 홍콩, 대만등에 비하여 경쟁력 열위

○ 가구류

-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품질 및 디자인 개발이 뒤지며 고급목재구는 사치성이 높음.

○ 공예품

-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료에 따라 사치성 물품이 많음.

○ 기 타

- 라이타, 안경테등은 품질 및 디자인이 뒤지며 면도날, 지퍼, 단추 등은 품질면에서 뒤짐.

(2) 자유화 현황

○ 수입자유화율 : 75.3%

(3) 자유화 원칙

○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사치성향 및 외제선호도가 낮은 품목, 수입자유화에 의한 국내산업개발 효과가 높은 품목, 수입제한의 실효성이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되 사치성이 높은 품목이나 외제선호도가 높은 품목 등에 대하여 감시 또는 다변화품목지정 등 보완대책 강구

(4) 검토결과

구 분	제 한 품 목	예 시 계 획				예 시 제 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문 구 류	20	3	3	13	19	1
완구 및 레져용품	15	5	6	4	15	-
가 구 류	10	2	2	6	10	-
공 예 품	24	3	-	8	11	13
보 석 류	16	-	-	-	-	16
기 타	45	2	2	23	27	18
계	130	15	13	54	82	48

Ⅰ - 6. 1983년의 수입자유화

(1) 수입자유화 논쟁

가. 배 경

KDI와 KIET가 수입자유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개방”과 “보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킴.

’83. 2. 21 KDI,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보호정책의 개편방향” 건의

2. 21 KDET, “88년대 산업정책방향” 건의

나. 내용비교

	KIET(안)	KDI(안)
○기본방향	- 시장원리를 존중하되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산업정책의 추진을 중시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추진성과를 높이 평가)	- 시장기능주도의 경제운용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이 독자적 판단과 책임하에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
	- 개발도상국인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를 효과적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전략 육성부문을 선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함.	-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 선별지원을 지양하고 각종유인을 산업간에 균등하게 배분하며 아울러 국제경쟁도입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구조를 실현함.

	KIET(안)	KDI(안)
○지원시책		
- 금 융	-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전략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 금융자율화 및 민영화로 금융자산이 산업간 경쟁력에 따라 원활히 배분되도록 함
- 세 제	- 전략산업의 내수 진작 및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조세지원강화	- 기술 및 인력개발 집중지원
- 수 입 자유화	-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앞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수입제한, 관세인상등으로 보호하여 국산화 촉진	- 84년 1월을 기해 기별공고제 및 이와 대등한 수입규제조치를 폐지하여 주곡을 제외한 전품목을 자유화 - 종래의 규제품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명목보호율과 같은 수준의 관세 부과
- 관 세	- 산업정책지원을 위하여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등관세율 강화	- '85년부터 '88년까지 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최고율이 30%에 이르게 함 - 중요산업데 대한 관세감면을 향후 3년에 걸쳐 폐지 - 현재 무세로 수입되는 원유등 원자재에 대한 최저세율의 부과
- 행정절차	- 상공부내에 산업정책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산업별, 기능별(금융, 세제, 관세, 수입규제 등)산업정책을 검토	- 관세율 책정을 위한 심사작업반 설치

다. 상공부입장

(1) 기본입장

○ 국제경제원리의 효율성도입 및 가격조절기능을 통해 국내산업의 구조개편과 고도화를 기하여 나가겠다는 취진는 당부의 수입자 유화정책 및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 부합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에 대한 각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당부로서는 과보호된 산업분야 및 상당한 경쟁수준에 도달한 산업에 대하여는 예시제등을 활용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개방에 따른 산업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임.

○ KDI의 개편방안은 당장 실천에 옮긴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관세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현실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투자수준, 국내산업의 가격 및 품질수준, 국민의 소비성향, 수입제품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 의식수준의 현실적 여건이 선진국수준과의 괴리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2) 자유화의 한계

(가) 경쟁원리의 측면

○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산업으로서 수출산업화의 전망이 좋은 산업에 대하여는 내수기반확충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상당기간 과도적 보호기간이 필요함(대표수요의 이론)

- 일본의 경우 : 중화학공업의 내수산업화 → 수출산업화 : 약 5~8년
- 한국의 경우 : 경공업의 내수산업화 → 수출산업화 : 약 3~5년

○ 우리나라의 조세 및 관세구조는 내수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적측면보다 재정관세측면에 중점을 두어 원료 및 중간재에 대해서도 고율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세에 의한 산업이 보호되는 실질적 실효보호율은 낮은 수준에 있거나 부(負)의 수준에 있음.

- 선진국의 경우 : 원료 및 중간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영세율

○ 최근 국제경제의 장기침체하에서 각국의 덤핑수출정책은 관세라는 소극적 수단으로서는 가격경쟁원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음.

○ 자유무역론에 입각한 비교우위론의 경제사적 배경이 세계경제의 남북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의 실증적 경제사에 있어서 선진국 역할이 산업경쟁원리에 입각한 국제분업체제의 발전보다는 자본의 독점적지배 및 자국상품의 시장화를 위해 후진국 경제를 이용하여 왔다는 비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나) 국제수지측면

○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는 국제수지측면에 있어서 최소한 무역수지 내지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한 상태에서 가능함.

- 일본의 경우

· 1950년도에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전환후 10년후인 1960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함.

(단위 : 백만불)

	'50	'55	'60	'61	'62	'63	'64	'65
무 역 수 지	38	△53	268	△558	402	△166	375	1,901
경 상 수 지	476	226	143	△982	△49	△779	△480	932
자 유 화 율	-	-	41	62	73	73	93	93

- 대만의 경우

(단위 : 백만불)

구 분	1971	1972	1973	1974
무 역 수 지	154	403	603	△1,433
경 상 수 지	170	513	564	△525
자 유 화 율	21.1	34.1	67.3	96.3

- 서독의 경우

(단위 : 백만불)

	1948	1945	1950	1951	1952
무 역 수 지	△856	△1,109	△723	△35	168
경 상 수 지	-	-	△102	548	590

* 개방시기 : EC역내는 '50년부터, EC역외는 '54년부터 자유화 추진

(다) 정치 사회적 측면

○ 산업의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안보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산업보호정책이 요구됨.

○ 국내외 경기침체하에서 수입자유화의 가속화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적 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일부 도산을 초래하게 되고 노동인력의 전문성에 따른 노동구조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노동인구의 산업간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할 것임.

- 한국기업의 재무구조(자기자본비율) : 20~30%
- 선진국기업의 〃 : 50~70%

(라) 경제성장의 측면

○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기조하의 불요불급한 수입증가는 국내생산에 의한 부가가치의 해외 누출을 촉진하고 그 분량만큼 경제성장율을 둔화시킴.

$$\triangle Y(\text{소득증가율}) = \frac{1}{\triangle I(\text{한계수입성향}) + \triangle S(\text{한계저축성향})}$$

(마) 소비성향 및 저축저해

○ 우리나라의 높은 국민소비성향 및 국산제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외국제품에 대한 높은 수입성향은 사치품에 대한 가격의 비탄력적 특질이 가세되어 수입을 가속적으로 유발하여 국민저축목표를 크게 저해할 것임.

(2) 1983년도 하반기 및 1984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상공부고시 제83-22호, '83.7.1 시행)

가. 추진경위

'83. 3. 12 기본계획수립

-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방향, 품목선정원칙, 수입자 유화목표(80% 선)을 심의확정

(위원회국성 : 경제부처 차관보급 및 경제단체대표)

3.~4. 각부처 의견종합

- 경제기획원 의견

・수입자유화율 82% 제고

・자원배분, 품질향상, 국민생활안정에 역점

- 재무부의견

・실질적 수입자유화확대(1년이내 92%)

・탄력관세제의 운용으로 보완

5. 품목별 심의

- 상공부소관품목 : 상공부주관

- 타부처소관품목 : 주무부처・경제기획원・상공부 협의

5.26 무역위원회 심의

5.27 산업정책심의회 심의

5.31 고시

나. 선정기준

(1) 자유화 대상

○ 품목선정원칙

- 국제경쟁력 보유품목 및 경쟁력 유발가능품목

-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 국산품과 경합이 적은 품목
- 상당기간 보호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확보가 곤란시되는 비교열위 품목
- 기타 시장교란이나 수입급증의 우려가 적은 품목

○ 수입급증으로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자유화와 동시에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 탄력적으로 운영함.

○ 대일 수입규제로 수입자유화가 가능한 품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 운영함.

○ 관세인상으로 국제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자유화와 동시에 관세를 조정함 (63개 품목)

(2) 규제대상

○ 신규 수입제한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부득이한 최소한의 신규제한만 인정함.
- 신규국산개발품목으로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TV 브라운 관용 유리)
- 기존 수입감시품목중 실질상 자유화가 어려운 품목(화학펄프, 동괴)
- 원자재와 제품간의 수입제한 균형유지상 불가피한 품목(고체가성소다, 인쇄회로기판)
- 환경훼손, 국민보건위생상 저해우려 품목(염화비페닐)
- 국민감정상 혐오감을 주는 품목(뱀, 지렁이)

다. 수입자유화

(1) 조정결과

(CCCN8 단위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총 품 목	7,560	7,560	중도변견제한 : 4
제 한 품 목	1,769	1,482	금번 자유화 : 305
자 동 품 목	5,791	6,078	금 번 제 한 : 14
자 유 화 율(%)	76.6	80.4	자유화 증감 : 287

○ 세부조정 내용

구 분		품 목 수	비 고
수 입 자 유 화	완 전 자 유 화	191	
	수 입 감 시	69	
	수 입 선 다 변 화	13	
	관 세 보 호 조 건 부	32	감시 및 다변화와 중복되는
	(계)	(305)	30개 불포함
수 입 제 한	신 규 제 한	10	중도제한 4개포함
	감 시 → 제 한	8	
	(계)	(18)	
수입자유화품목 순증		287	
CCCN8 단위내 자유화확대		15	
〃 제한범위확대		21	

○ 수입자유화 품목(305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5 0102	185g이하의 종계 이외의 닭	0300	기타의 규산질의 흙
0205 0100	근육층이 없는 돼지비계	2901 0499	기타의 방향족탄화수소
0200	가금의 비계	3703 0102	흑백사진용의 인화지 (즉시 인화용)
0301 0301	장어(양식용, 관상용을 제외한 해수활어)	0202	〃 (즉시 인화용이외)
0303	복어(〃)	3819 0700	복합수지안정제
0502	삼치(신선, 냉장한 것에 한하여 피레트 제외)	4209 0900	가죽 또는 재생가죽제 장갑 (운동장갑 제외)
0511	전어(신선, 냉장한 것)	1001	파충류제의 의류
0606	보리멸(냉동한 것)	4301 0200	토끼의 생모피
0302 0405	전어(염장)	0300	산양의 생모피
0603	조기알젓(건조·염장·염수장)	4303 0204	모피제 장갑(밍크모피 제외)
0604	청어알젓(〃)	0205	모피제 모자
0303 0202	문어(산 것)	0206	모피제 가방
0801 0200	코코넛(탈각한 것 포함, 신선·건조한 것)	4304 0204	인조모피제 장갑
0300	브라질넛(〃)	4818 0100	앨범
0400	캐슈넛(〃)	5501 0100	실면
1201 0600	면실(분쇄한 것 포함)	0201	기타의 원면 (섬유길이 23.2㎜미만)
0700	피마자(〃)	0202	기타의 원면 (섬유길이 23.2~25.4㎜)
1208 0106	미 역	0203	기타의 원면 (섬유길이 25.4~28.5㎜)
1507 0700	개자유	0204	기타의 원면 (섬유길이 28.5㎜이상)
1200	피마자유	5605 0101	폴리아미드계 방적사 (합성중량85%이상)
1604 0201	캐비어 및 캐비어대용물	0301	폴리아미드계 방적사 (주로 양모, 섬수모와 혼방한 것으로 합섬중량 85%미만)
0202	생선 페이스트	0304	폴리프로필렌계 방적사 (주로 양모, 섬수모와 혼방한 것으로 합섬중량 85%미만)
2104 0102	된장		
0103	춘장		
0104	고추장		
2208 0101	조주정		
2512 0200	트리폴라이트		

CCCN	품 목	CCCN	품 목
0501	비스코스레이욘의 방적사	0605	〃 (폴리에스테르제)
	(재생단섬유 중량 85%이상)	0606	〃 (아크릴 섬유제)
6001 0205	면의 편직물	0607	〃 (폴리비닐알콜섬유제)
	(기타 합섬과 혼방한 것)	0608	〃 (기타 합섬제)
0206	면의 편직물	0609	〃 (재생 섬유제)
	(재생섬유와 혼방한 것)		
0299	면의 편직물	6102 0206	여자, 유아용 코트 및 상의류
	(기타 섬유와 혼방한 것)		(아크릴 섬유제)
6004 0202	팬티(면편직물제)	0208	〃 (기타 합섬제)
6005 0106	저지, 쉐타, 폴오바, 스립	0209	〃 (재생 섬유제)
	오바, 트윈셋, 가디간, 외의	0305	여자, 유아용 양복
	용셔츠, 베드자켓 및 잠바		(폴리에스테르제)
	(기타 합섬제 편직물의 것)	0306	〃 (아크릴 섬유제)
6101 0203	남자, 소년용 코트	0308	〃 (기타 합섬제)
	(폴리에스테르제)	0309	〃 (재생 섬유제)
0205	〃 (기타 합섬제)	0406	여자, 유아용 드레스
0303	남자, 소년용 양복(면제)		(아크릴 섬유제)
0308	〃 (기타 합섬제)	0408	(기타 합섬제)
0309	〃 (재생 섬유제)	0409	〃 (재생 섬유제)
0310	〃 (견제)	0499	〃 (기타 섬유제)
0399	〃 (기타 섬유제)	0506	여자, 유아용 스커트
0408	남자, 소년용 하의		(아크릴 섬유제)
	(기타 합섬제)	0508	〃 (기타 합섬제)
0409	〃 (재생 섬유제)	0509	〃 (재생 섬유제)
0499	〃 (기타 섬유제)	0599	〃 (기타 섬유제)
0504	남자, 소년용 상의	0604	여자, 유아용 브라우스
	(폴리아미드제)		(아크릴 섬유제)
0506	〃 (아크릴섬유제)	0606	〃 (기타 합섬제)
0508	〃 (기타 합섬제)	0607	〃 (재생 섬유제)
0509	〃 (재생 섬유제)	0706	여자, 유아용 기타 외의류
0599	〃 (기타 섬유제)		(아크릴 섬유제)
0604	기타 남자, 소년용 외의류	0708	〃 (기타 합섬제)
	(폴리아미드제)		

CCCN	품 목	CCCN	품 목
0709	〃 (재생 섬유제)	0402	가정용 냉장고와 냉동고의 부분품
6104 0201	여자, 유아용 내의류 (폴리아미드제)	8418 0402	오일 크리너의 하우징과 캡
0202	〃 (폴리에스테르제)	8419 06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0299	〃 (기타 합섬제)		
0700	〃 (기타 섬유제)		
6107 0201	넥타이(아세테이트제)	8422 0101	뉴머틱 엘리베이터 (연속작동기계)
0300	〃 (합섬제)		
0400	〃 (기타 섬유제)	0102	뉴머틱콘베이어(연속작동기계)
6201 0100	전기모포	1700	기타의 적하·하역등의 기계류 (양하중량 10MT를 초과하는 것)
0500	여행용러그와 모포류 (기타 섬유제)		
6601 0300	대나무제 우산	8433 0102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
0600	기타의 우산류	8451 0301	체크라이터
6912 0103	기타의 도자기(술병)	8452 0500	금전등록기
0300	〃 (토이렛용품)	8454 0203	화폐분류기, 화폐계수기 및 화폐포장기
7014 0100	시일드빔 램프유리 조명기구	8456 0199	분리기 및 세척기
7105 0202	은의 봉 및 형재	0401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203	은의 판 및 대	8459 0401	고무제품성형기
0299	기타의 은	0499	기타의 고무공업용 기계류
7313 0404	냉간압연한 석도강판의 원판(두께 3㎜미만)	8463 0205	치차전동기(항공기 및 차량용 제외)
7315 1000	고탄소강의 선재	0301	샤프트 커플링
7335 0201	자동차용의 나선형스프링 (철강재의 것)	8501 0203	출력 400Kw이상 직류발전기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결합된 것 제외)
7403 0103	청동의 봉, 형재	0505	출력 100W이상 373W미만전동기 (직류, 방폭 또는 수중형 전동기, 정류자 전동기 제외)
0203	청동의 선		
8202 0101	목재용 수동식 톱		
8205 0100	다이어몬드공구	0606	기타 유압식 변압기(계기용 변압기와 용량 60,000KVA미만 변압기 제외)
8402 0199	기타 보일러용의 부속기기		
8410 0503	내연기관용 액체펌프의 부분품	0900	회전식 콘버터
8415 0200	가정용 냉동고		

CCCN	품 목	CCCN	품 목
8503 0101	수은전지(보턴형의 것)	8901 0602	여객선(3,000톤~20,000톤)
0199	기타전지(〃)	0605	기상관측선
0299	기타전지(보턴형이외)	0606	어업지도·조사 및 시험선
8508 0201	자석발전기(차량용)	0607	학술연구용선
8509 0102	음향신호기	9104 0200	크로노미터
8511 0599	기타의 부분품(전기로, 오븐, 가열기기, 용접, 절단기기의 것)	9211 0501	자동차용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카트리지식의 테이프덱 제외)
8513 0299	기타의 전화교환기	0601	비자동차용 릴테이프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테이프덱 제외)
0899	기타의 유선전신기기의 부분품	0701	릴테이프의 테이프덱
8514 0299	기타의 음향기기	0799	기타의 테이프덱
8515 1101	인쇄, 전신기기의 부분품(무선용)	9401 0199	의자 기타의 걸상(목재, 철재 이외의 것)
1102	영상 전신기기의 부분품(무선용)	0200	부분품
1203	기타의 Color TV부분품	9403 0301	기타의 가구(목제, 철제 이외의 것)
1701	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진단용 TV모니터(천연색)	0302	부분품
1702	〃 (흑 백)	9702 0303	인형(도자, 유리제)
8518 0301	고정식 축전기의 부분품	9703 0100	완구(직물제)
8520 0202	수은등구(자외선전구 제외)	0400	〃(도자, 유리제)
8521 0700	크리스탈검파기	0500	〃(목제)
1200	부분품(TV수상기용이외의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의 것)	0700	부분품과 부속품
		9705 0000	축제용품
		9706 0799	기타의 옥외유희용구
1303	정류기소자의 부분품	9707 0101	낚시대
1399	기타의 반도체디바이스 및 광전지의 부분품	9804 0200	닙포인트
		9807 0200	수동식 인쇄용세트
8523 0199	기타의 프렉시블 코드	0300	기타
8703 060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0700	이동방송차		

CCCN	품 목	CCCN	품 목
〈수입제한 → 수입감시〉			
0204 0200	토끼고기(신선, 냉장, 냉동)	4302 0102	도끼모피
0515 0301	동물의 피	0103	산양모피
0304	동물의 사체	0104	면양모피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202	토끼모피의 조각 또는 절단품
0807 0200	살구(신선한 것)	5804 0201	벨베틴
0300	자두(〃)	0202	골덴
0810 0000	냉동과실(가당한 것 제외)	6101 0119	남자 및 소년용 외의류
1704 0100	츄잉껌		(인조피혁제)
2003 0000	냉동과실(가당한 것)	0299	남자 소년용코트(기타 섬유제)
4203 0201	잠바류(가죽 또는 재생	0699	기타 남자 및 소년용의
	가죽제의 남자 또는		외의류 (기타 섬유제)
	소년용)	6102 0199	여자, 유아용의 외의류
0202	자켓류(〃)		(인조피혁제)
0203	코트류(〃)	0204	〃 (폴리아미드제)
0204	조끼류(〃)	0205	〃 (폴리에스테르제)
0299	기타상의류(〃)	0299	〃 (기타 섬유제)
0301	잠바류(가죽 또는 재생	0399	여자, 유아용의 양복
	가죽제의 여자 및 소년용)		(기타 섬유제)
0302	자켓류(〃)	0505	여자, 유아용의 스커트
0303	코트류(〃)		(폴리에스테르제)
0304	조끼류(〃)	0602	여자 유아용의 브라우스
0399	기타의 상의류(가죽 또는		(폴리아미드제)
	재생가죽제의 여자 및	0704	여자, 유아용의 기다 외의류
	소녀용)		(폴리아미드제)
0401	기타의 남자 또는	0799	〃 (기타 섬유제)
	소년용 의류		
	(가죽 또는 재생가죽제의 것)	6104 0199	여자, 유아용의 내의류
0402	기타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		(면과 혼방된 것)
	(〃)	6109 0200	콜셋 및 콜셋벨트
			(면과 혼방된 것)
4205 0100	기타의 가죽제품	0300	기타
	(파충류가죽제)	6911 0103	자기(술병)
0200	〃 (기타 가죽제)	0300	자기(토이렛용품)

CCCN	품 목	CCCN	품 목
7014 0200	유리조명기구	9404 0100	매트리스
0300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0200	매트리스, 서포오트
0400	유리엘레먼트	0300	기타의 침구류
8307 0299	기타의 조명기구	0400	부분품
	(비금속제의 것)		
8406 0401	자동차용 내연기관		
	(배기용량 100㎤ 이하)		
0402	〃		
	(배기용량 100㎤ 초과)		
0406	〃		
	(배기용량 4,000㎤ 초과		
	10,000㎤ 이하)		
0407	〃		
	(배기용량 10,000㎤ 초과)		
0501	〃		
	(배기용량 1,000㎤ 이하)		
8415 0102	가정형냉장고(200～400ℓ)		
0199	〃 (400ℓ이상)		
9003 0101	안경의 테 및 자루(귀금속제)		
	〃 (기타제)		
0199	부분품		
0200	의자 기타의 걸상		
9401 0102	(필리핀산 마호가니, 라왕,		
	탱궐 및 등나무제)		
0103	의자 기타의 걸상		
	(기타 목재)		
9403 0201	침대(필리핀산 마호가니,		
	라왕, 탱궐 및 등나무제)		
0202	침대(기타목재)		
0203	기타가구(필리핀산 마호가니,		
	라왕, 탱궐 및 등나무제)		
0299	기타 가구(기타 목재)		

CCCN	품 목	CCCN	품 목
〈수입제한 → 수입선다변화〉			
6107 0100	넥타이(견제)	0501	비스코레이욘 장섬유
7332 0101	볼트와 너트의 세트		편직물
0102	볼 트	0700	기티섬유 편직물
0103	너 트	6004 0101	팬티호스(모제)
8440 0100	전기세탁기(1회 세탁능력 6kg 이하의 것)	0102	남자 및 소년용 내의, 잠옷(모제)
0200	〃 (1회 세탁능력 6kg 초과의 것)	0103	여자, 유아용 내의, 잠옷(모제)
8450 0101	용접, 절단용 기계(금속용)	0204	〃 (면제)
0200	부분품	0304	〃 (폴리아미드제)
8461 0201	밸브(감압식의 것)	0404	〃 (폴리에스터제)
8465 0200	기타의 차량의 부분품	0504	〃 (아크릴제)
8501 0400	직류전동기	0604	〃 (기타합섬제)
8702 0505	일반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0t 이상)	0704	〃 (재생섬유제)
9101 0202	금, 백금, 진주, 귀석, 반귀석, 상아, 산호, 별갑 등을 사용 또는 장식하지 아니한 전자식 휴대시계	6005 0103	저지, 쉐타, 풀오바, 스립오바, 베드자켓, 및 잠바 (폴리아미드제)
〈수입제한 → 관세조정〉		0305	기타외의 및 의복부속품 (아크릴제)
1702 0101	포도당	0401	기타의 편직제품(모제)
4816 0400	액체포장용기(지 또는 판지제)	0402	〃 (면제)
6001 0301	장섬유 편직물 (폴리아미드의 것)	0405	〃 (견제)
0302	〃 (폴리에스테르의 것)	6913 0400	도자제 개인장신구
0399	〃 (기타합섬의 것)	9102 0100	좌종시계(워치무브먼트를 갖춘 것)
0401	단섬유 편직물 (폴리아미드의 것)	0200	괘종시계(〃)
0402	〃 (폴리에스테르의 것)	9104 0301	종시계
0404	〃 (아크릴의 것)	0399	기타의 시계
0499	〃 (기타 합섬의 것)	9701 0100	아동용 자전거 등
		0200	기타의 유아용 승용물

○ 일부 자유화 품목(15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1201 1100	겨자씨	8518 0101	종이 축전기
1202 0000	면실, 아마인 및 피마자의 분(粉)	8519 0699	가공선로용 크램프류, 코넥터류, 슬리브류
2107 0102	Plum, lemon 등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9028 0501	자동차용 비전자식 레규레이터 (사용전압 6 - 24v)
0900	빙과류 제조용 안정제	0502	자동차용 비전자식 자동 조정기기 (사용전압 6 - 24v)
7405 0200	동의 박(두께 0.03~0.15㎜, 폭 600㎜ 이상)	9107 0199	카렌다 또는 요일을 갖추지 않은 전자시계 무브먼트 (디지털 무브먼트에 한함)
8415 0499	에어 드라이어의 부분품	9807 0100	번호기 이외의 Stamp
8418 0399	공기청정기(집진기제외)		
0499	공기청정기의 부분품		
8419 0200	레이블 첨부기		

※ 수입자유화품목 유형별 예시

구 분	품 목
경쟁력 보유	장어, 복어, 전어, 보리멸치(0301), 미역(1208), 된장, 춘장, 고추장(2104), 복합수지안정제(3819), 면합섬제 편직물(6001), 면편직물제 팬티(6004), 합섬제 의류(6101, 6102), 넥타이(6107), 냉간압연한 석도강판원판(7313), 고탄소강의 선재(7315), 자동차용의 나선형 스프링(7335), 회전식 공기예열기의 부분품(8402).
수출 대종	가죽제장갑(4203), 직물제완구(9703), 혁제의류(4203), 안경테 및 부분품(9003), 앨범(4818), 의자 기타의 걸상과 부분품(9401), 기타 가구 및 부분품(9403), 낚싯대(9707).
국내생산 무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0801), 분지형 도데실벤젠(2901), 260cc이하 및 4,000cc 초과의 가솔린엔진(8406), 1,000cc이하의 디젤엔진(8406), 록커셔블(8422), 기어링 샤프트, 샤프트 커플링(8463), 이동통신차, 레이더차, 이동방송차(8703), 3,000톤 이상의 여객선, 기상관측선, 어업지도조사 및 시험선, 학술연구용선(8901), 크로노미터(9104), 릴테이프와 테이프댁(9211), 토끼 및 산양의 생모피(4301), 원면(5501), 토끼, 산양, 면양모피(4302).
비교 열위	뉴머틱콘베이어(8422),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8433), 첵크라이터(8452), 고무제품 성형기(8459), 기타의 고무 공업용 기계류(8459), 면도기(8507), 음향신호기(8509), 무선용인쇄 및 영상전신기기 부분품(8515), 진단용 T.V 모니터(칼라 및 흑백)(8515), 립포인트(9804), 수동식 인쇄용 셋트(9807), 유리조명기구(7014). 흑백사진용 인화지(3703), 시일드빔 램프용 유리조명기구(7014), 회전식 콘버터(8501), 수은전지, 기타전지(8503), 기타의 테이프덱(9211).

구 분	품 목
기 타 (수요미미 등)	돼지비계, 가금비계(0205), 동물의 피(0515), 동물의 사체(0515), 면실, 피마자(1201), 생선페이스트(1604), 파충류 제의류(4203), 모피제장갑, 모자, 가방(4303), 대나무, 제우산(6601), 청동외 봉·형재, 선(7403), 살구, 자두(0807), 냉동과실(0810, 2003), 뉴머틱엘리베이터(8422), 도자, 유리제 인형, 완구(9702, 9703), 개자유, 피마자유(1507), 폴리아미드계, 폴리프로필렌계, 비스코스레이온계 방적사(5605), 전기 모포(6201), 자동차용 기름유출 방지용 링(8465), 직류전동기(8501), 기타의 음향기기(8514), 기타의 칼라 T.V 부분품(8515), 크리스탈 검파기(8521), 축제용품(9705), 옥외 유희용구(9706), 전기세탁기(8440), 300ℓ이상의 냉장고(8415).

(2) 경제기획원 수입자유화요청 검토

(가) 검토기준

○ EPB 검토기준

- 국내산업에 충격이 적고 수입량이 비탄력적인 수입원자재 및 기자재
- 독과점품목과 국민생활안정대상품목
- 자원의 추가적 투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지양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
- 수입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품목등

○ 당부검토기준

원칙적으로 EPB 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다음 품목은 제외(향후 예시제 대상품목으로 검토)

- 개발초기단계인 품목
- 국제경쟁력이 미흡한 품목
- 관세보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품목(Dumping 품목)
- 전후방산업과의 형평상 일방적 자유화가 어려운 품목
- 예시기간없는 자유화로 업계에의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품목
- 구체적 현황 파악이 곤란한 품목

(나) 경제기획원 수입자유화 요청내용 검토

○ 총 괄

구분 / 소관		요청품목	검토결과	
			자유화	계속제한
당부소관	기초공업국	59	3	56
	기계공업국	140	13	127
	전자전기공업국	37	11	26
	섬유생활공업국	313	115	198
	소계	549	142	407
타부처소관	농수산부	72	7	65
	보건수산부	30	3	27
	수산청	126	11	115
	국세청	31	1	30
	소계	259	22	237
계		808	164	644

○ 검토결과

자유화품목	농산물	토끼고기, 장어, 복어, 삼치, 전어, 보리멸치, 조기알젓, 청어알젓, 피마자유, 캐비어, 생산페이스트, 포도당, 당밀, 설탕과자, 코코아 제품, 과실통조림, 된장, 춘장, 고추장, 조주정
	공산품	인화지, 의류와 의류부속품, 우유포장용 종이봉지, 청동의 봉·형재, 가정형냉장고, 지와 판지의 절단가공기계, 세탁기, 수은전지, 후레시블코오드, 안경테, 도자제인형, 직물제 완구류
제한품목	농산물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고기, 고래고기, 천연꿀, 상아, 귀납, 바나나, 오랜지, 커피, 마가린, 쇼트닝, 소시지, 육류통조림, 원당, 정제당, 육아용 조제분유, 맥주, 주류
	공산품	아연괴, 카본블랙, 가성소다, 소다회, 화장비누, PE, 지와 판지, 견직물, 인조장섬유사, 모직물, 인조단섬유, 인조장섬유토우, 인조단섬유와 웨이스트, 합금철,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동의 판과대, 동의 관, 알루미늄 박, 면도와 면도날, 베아링, 알카리망간건전지, 트랙터, 버스,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안경, 사진기, 압력계, 시계, 단추, 지퍼, 만년필, 연필, 라이터.

(3) 독과점품목의 수입자유화

○ 자유화율 : 44.5% → 48.8%

구 분		경제기획원고시기준	CCCN 8 단위품목기준
총 품 목		58	164
현 행	자 유 화 품 목	21	73
	자 유 화 율(%)	36.2	44.5
개 정	자 유 화 품 목	24	80
	자 유 화 율(%)	41.4	48.8

○ 자유화의 제약요인

독과점품목의 대부분이 다음의 이유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임.

- 국가기간산업(석유화학원료, 비철금속, 특수강등) 및 이와 관련산업(화섬사, 케이블등)
- 유망유치산업(자동차, 전자등)
- 원료생산농민보호(분유, 쥬스등)
- 원료의 수입의존(설탕)

○ 자유화 품목

품 목	생 산 업 체
아 이 스 크 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삼강
껌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면 복 지	태창기업, 전방
화물자동차(10톤이상)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가정용냉장고(300ℓ이상)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자동차디젤엔진(1,000cc이하)	대우중공업(국내미생산 규격)

○ 향후 자유화계획

금번 기별공고시 자유화시기의 우선예시로 자유화 촉진

라. 신규수입제한

○ 신규수입제한 : 14개

- 수입자동 → 수입제한 : 8개
- 수입감시 → 수입제한 : 6개

CCCN	품 목	제 한 사 유	비 고
0106 0701	뱀		
0999	별게이외의 산동물 (지렁이)		
2817 0101	가성소다(고체의 것)	원료와 제품간의 수입제한 한 균형유지	
2907 0199	기타의 할로겐화 유도체	인체유해물질 특별관리	
4701 0401	반표백 목재화학펄프	금지성 감시품목의 제한 양성화	감시품목
0402	표백 목재화학펄프		
0602	〃		
7011 0101	전자관용 유리구 (냉음극선 수상관의 것)	가동초기의 국내 산업보호	
7401 0401	동의 괴	금지성 감시품목의 제한 양성화	감시품목
0402	동의 잉곳트바		
0403	동의 빌렛		
0404	동의 스래브		
0499	기타		
8519 0801	인쇄회로기판	원자재와 제품간의 수입제한 균형유지	

※ 수입제한요청 품목중 미반영 품목(12개품목)

CCCN		품 목	비 고
0704	0201	건조마늘	수요미미
0704	0299	기타의 건조한 채소	〃
2517	0101	활석	경쟁력 보유
	0199	기타의 활석	
	0200	천연동석	
8205	0703	기어커팅호브	·기어가공업 경쟁력 저하 ·수입선 다변화 품목임
8417	0706	살균장치	수요미미
8422	0104	뉴머티식이외의 엘리베이터 (연속작동기계)	〃
8423	0101	자주식 불도저	
	0102	자주식 앵글도저	
8448	0299	금속가공기계부분품	·범용품 경쟁력 보유 ·수입량 미미
8461	0299	밸브(자동제어식 및 감압식 이외의 것)	·범용품 경쟁력 보유 ·특수규격품질보장 필요 ·현행 수입선다변화 품목

〈참 고〉 # 전자계산기 수입제도의 개선

가. 의 의

수출입기별공고상의 CCCN 8453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 주변기기 및 동 부품의 수입계획 확인에 관한 요령을 개정
(상공부고시 제83-36호, '83.8.23)

나. 개선내용

○ 민간부문의 전자계산기, 주변기기 및 동 부품(CCCN 8453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계획 확인업무를 한국전자공업진흥회로 위탁하여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함.

○ 민간부문의 컴퓨터 국산화와 수입정책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공업진흥회내에 전자계산기 수입심의회 설치

- 위원장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위 원 : 상공부 정보기기과장외 5명
- 감 사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진흥담당 이사

○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입을 불허한다는 용어를 삭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수입심의회가 수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

다. 전자계산기 수입계획 확인요령

(1) 목 적

○ 전자계산기등의 보급·이용 증진

○ 전자계산기등의 국산화에 필요한 부품개발과 기술이전 촉진

○ 국산전자계산기의 수요창출 도모

(2) 용 어

○ 전자계산기

-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작(하드웨어)와
-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을 위한 이용기술조직(시스템 소프트웨어) 포함.

○ 주변기기 : 전자계산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

○ 부　　품 : 전자계산기 및 주변기기의 조립 또는 유지보수용 자재

(3) 전자계산기 분류 :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개인용 전자계산기

(4) 국산개발촉진

○ 국산화개발 촉진품목

전 자 계 산 기	소형(Mini), 초소형(Micro), 개인용(퍼스컴)
주 변 기 기	인쇄장치(한글, 한자, 영문등), 자기디스크 및 테이프 장치(Floppy disk 포함), 인텔리전트 터미널, 기타 터미널류(CRT Terminal, Banking Terminal 등)

(5) 수입절차

(가) 전자계산기

신청자	확 인 기 관	확　　인　　절　　차
공공기관	상 공 부 장 관	· 기종의 적정성, 국산기기로의 대체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수입가격이 10만불이상(임대월 2천불이상) 인 경우 과기처장관과 협의)
민 간 인	전자공업진흥회	· 국산개발추진품목 : 전자계산기 수입심의회의 심의결정 · 국산개발대상이 아닌 품목 : 자동적으로 수입계획을 확인하되 심의회가 추천하는 기종에 대해 우선 확인 · 퍼스컴 : 전자계산기 수입심의회 추천

(나) 부　품

○ 국산개발대상품목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부품 : 상공부장관의 국산화 계획 확인

○ 유지보수용부품 : 전자공업진흥회의 확인

(6) 확인유효기간 : 90일

(7) 전자계산기 수입심의회 설치운영

○ 구　성

- 위원장 : 전자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위　원 : 상공부 정보기기과장,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과장,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교수,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시스템부장,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전산실수석연구원, 한국데이타통신 연구개발실장
  (간사 : 전자공업진흥회 진흥담당이사)

○ 심의사항

- 국산개발대상인 전자계산기의 수입의 필요성
- 공급자가 첨단기술을 이전하거나 국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전자계산기 등의 국산화에 기여한 바와 크다고 인정되어 우선적으로 수입할 필요성이 있는 기종의 선정
- 퍼스컴의 범국민적 보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입할 필요성이 있는 기종의 선정

(3) 수입자유화 예시작업추진

가. 기본방향

(1) 단계적 자유화 추진

국내산업의 충격, 국제수제에 대한 영향, 국민소비풍토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기조치) : 80.4%
2단계(84.7.1 - 85.6.30) : 85%선
3단계(85.7.1 - 86.6.30) : 90%

(2) 관련정책과의 조화 유지

○ 산업정책과의 조화
- 산업구조의 합리화, 고도화 시책
- 국산화추진시책

○ 관세정책과 연계추진
- 자유화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연계 조정
- 수입급증에 대비한 탄력관세제도의 적극적 활용
(긴급관세, 조정관세 등)

○ 통상정책과 연계

(3) 수입조정기능의 효율화

○ 수입동향감시체제의 확립
○ 수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나. 품목선정원칙

(1) 자유화 대상

○ 경쟁력이 갖추어진 과보호된 품목
-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력 보유품목
-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 국내생산이 어려운 기초원자재

○ 비교열위품목
- 가격 또는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열위인 품목
- 국내수요가 적고 국산개발의 타당성이 적은 품목
- 관련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저해가 되는 품목
- 구조불황 및 지양산업
  · 에너지 및 자원다소비등으로 경쟁력 유지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품목
  · 원자재 생산국과 경쟁이 어려운 품목
  · 후발 개발도상국과 경쟁이 어려운 품목
  · 공해다발산업

○ 경쟁촉진이 필요한 독과점산업
- 공정거래법령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품목
- 기타 국내생산이 독과점상태인 품목

(2) 규제대상

○ 농어민 소득증대에 영향이 큰 주요농산물

○ 중소기업형 제품

○ 국내산업개발효과가 낮고 건전소비풍토의 정착에 저해가 되는 고가 사치품

○ 유망유치산업
- 가까운 장래에 비교우위의 확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관세만으로 보호가 곤란한 품목

○ 수입대체품목 및 신규개발품목

다. 작업계획

(1) 작업대상

○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품목(1,482개 품목)
○ 특별법상 수입제한품목(1,331개 품목)

(2) 작업기간 : '83. 7～'83. 10

(3) 작업내용

○ 산업별 자유화방향의 설정

○ 품목별 경쟁력의 평가 및 분석
- 조사방법 : 관련단체 및 생산업체의 실태조사, 상공부 및 KIET의 조사자료 활용
- 조사내용 : 생산업체현황, 수급현황,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원자재, 정부의 육성시책 및 관련시책, 외국의 규제현황 등(별표 참조)

○ 단계별 수입자유화대상품목 선정

○ 수입자유화에 따른 품목별 보완대책 강구
- 수입감시 및 다변화품목 선정
- 관세의 조정
- 수출입의 Link제(수입자의 지정등)
- 수입검사대상품목의 확대 및 검사기준의 강화
-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A/S) 등

〈주요 조사사항〉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 생산업체현황	- 업체수 및 기업규모, 고용인원 - 전문화 계열화현화 - 생산업체 및 시장점유율(독과점여부)
○ 수급상황	- 생산, 수출, 내수, 수입량 비교 - 수출·수입의존도 및 주주입선 - 생산능력 및 가동율
○ 가격경쟁력	- 내수가, 수출가, 수입가의 비교 - 원가구성비
○ 품질경쟁력	- KS표시, 공장품질관리등급 및 국제공인규격획득현황 -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현황 - 국산화율 및 제고계획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 원자재	- 주요원자재 구성(품명・점유율) 및 수입제한여부 - 조달방법(국내조달, 수입), 주수입선 및 가격
○ 정부의 육성 시책 등	- 우선육성업종 지정여부 -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여부 - 세제 및 금융, 기술개발지원 현황
○ 외국의 규제 현황	- 규제국 및 규제형태

(4) 작업추진체계

(가) 본부장 : 제1차관보

(나) 총괄반

○ 반장 : 상역국장

○ 반원 : 무역정책과장(간사), 수입관리과장, 산업정책담당관, 경제기획원 산업정책조정과장, 재무부 관세조정과장

○ 보조 : 상역국, 산업정책관실, 무역협회, KID

(다) 각 산업별 작업반

○ 기초공업반 ○ 기계공업반

○ 전자전기공업 ○ 섬유생활공업반

○ 1차 산품반 ○ 의약, 식품반

○ 구성

- 반장 : 각 소관국(부처) 정책과장
- 반원 : 상역국 또는 산업정책관실 사무관 1

소관국(부처) 사무관 1

〃 기 좌 1

○ 작업방법

- 평일에는 각자 검토작업
- 주 2일은 공동작업
- 현지 실태조사 병행실시

(라) 주무국(부처)의 역할

○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의견청취 종합
○ 기초자료 및 보조자료 조사제공
○ 생산업체 실태조사 참여
○ 보완대책 강구제시

(5) 작업일정

'83. 7. 25 작업계획 통보 및 검토자료 요청
'83. 8. 8 경제 4단체에 작업계획 통보 및 의견문의
'83. 8~10 관계부처 검토시안작성 및 자료취합
'83. 10~11 작업반, 총괄반 검토
'83. 12. 10 무역위원회 심의
'83. 12. 20 산업정책심의회 심의
'84. 1 예시

○ 관계부처 시안내용

상 공 부	제한품목	자유화율 (%)	예 시 계 획			
			'84	'85	'86	'87이후
상 공 부	1,079	80.8	77 (82.1)	164 (85.1)	220 (89.0)	618
타 부 처	403	79.3	13 (80.0)	33 (81.7)	12 (82.3)	345
계	1,482	80.4	90 (81.6)	197 (84.2)	232 (87.3)	963
목 표			348 (85)	378 (90)		

* ( )안은 자유화율(%)

Ⅰ - 7. 1984년의 수입자유화

(1) 1984. 1. 1 수입자유화

가. 배　　경 : '83. 9 레이건 미대통령 방한으로 미국관심품목에 대해 자유화 조치

나. 총요청품목 : 32개(CCCN 8단위 : 25개)

다. 요청내역

○ 공산품 ┌ 우선요청품목 : 11개(CCCN 8단위 152개)
　　　　└ 관 심 품 목 : 8개(CCCN 8단위 66개)

우 선 요 청 품 목				우 선 요 청 품 목			
품 목	현 황			품 목	현 황		
	자유화	제 한	계		자유화	제 한	계
소형컴퓨터 및 주변기기		6	6	자 동 차	1	27	28
				건 전 지	5	2	7
카 페 트		13	13	용 접 기	1	6	7
화 섬 사	50	45	95	동	2	5	7
파일직물	8 (감시2)	5	13	엔진베어링		1	1
				화장비누와 삼푸		2	2
확 성 기		1	1	건설장비 및 엔진		13	13
방향성 전기강판		2	2				
유리그릇	3 (감시)		3	석유난로	1 (감시)		1
유압식 공작기계		1	1				
냉장고 및 냉동기	7 (감시3)	1	8				
면 도 날		1	1				
필름·인화지	6		6				
카 메 라		3	3				
계	74	78	152	계	10	56	66

○ 농수산물 ┌ 우선요청품목 : 4개(9개)
　　　　└ 관 심 품 목 : 9개(27개)

우 선 요 청 품 목				우 선 요 청 품 목			
품 목	현 황			품 목	현 황		
	자유화	제 한	계		자유화	제 한	계
알 몬 드		1	1	우 지	1		1
신선·가공한 감귤류		6	6	사료용 동물 단백질		1	1
알 파 파 초		1	1	가금, 계란 및 관련생산품	3 (감시)	4	7
신선한 버찌		1	1	돼지고기 및 쇠고기		3	3
				복숭아통조림 및 과일칵테일		5	5
				화 장 품		6	6
				면 실 유		1	1
				건포도 및 건오얏	2		2
				아이스크림 믹스	1		1
계		9	9	계	7	29	36

라. 조치결과

○ 31개품목(일부자유화품목 8개 포함) '84.1.1부터 자유화

○ 자유화율 : 80.4% →80.7%

(CCCN 8단위)

	84.1 이전	84. 1 이후	비 고
총 품 목	7,560	7,560	
수 입 제 한 품 목	1,482	1,459	-23
수 입 자 동 품 목	6,078	6,101	23
자 율 화 율(%)	80.4	80.7	0.3

○ 자유화품목 및 사유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16㎜ 카메라, 레몬
- 국내생산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 파일직물(6), 전기강판(2), 가정형이외의 대형냉장고(2), 유압식다목적공작기계
-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보호가 가능한 품목 : 카페트(13), 화장비누(1)
- 기타 수입급증의 우려가 없는 품목 : 방적사(3), 샴푸, 화성기증 5″이하의 Cone Speaker

※ 특별법상 자유화품목 : 샴푸

○ 보완대책

- 관세인상

  화장비누(30%→70%), 파일직물(50%→75%), 카페트(50%→75%)
-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

  유압식 다목적 공작기계, 확성기중 5″이상의 콘 스피커, 16㎜필름용 사진기

○ 자유화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3401 0102	화장비누	0501	기타의 인조섬유제 터후트한 양탄자류
5605 0102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의 방적사(합성 단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의 것)	0502	기타의 인조섬유제 직조한 양탄자류
0302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의 방적사(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의 혼방한 합성단섬유의 것으로 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의 것)	0599	기타의 인조섬유제 양탄자류
		0601	기타 섬유제의 터후트한 양탄자류
		0699	기타 섬유제의 양탄자류
0303	아크릴계 섬유의 방적사 (〃)	5804 0101	파일직물(양모 또는 섬수모로 된 것)
		0102	서니일 직물(〃)
5801 0101	기계제 양탄자류(양모 또는 섬수모로 된 것)	0299	기타의 파일 및 서니일 직물(면으로 된 것)
0102	수제 양탄자류(〃)	0401	기타의 파일 및 서니일 직물(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201	기계제 양탄자류(기타 섬유로 된 것)	0402	기타의 파일 및 서니일 직물(기타재생섬유의 것)
0202	수제 양탄자류(〃)	0499	기타의 파일 및 서니일 직물(아세테이트섬유의 것)
5802 0100	켈럼, 슈멕 및 카라마니러그 및 이와 유사한 것		
0201	양모 또는 섬수모로 터후트한 양탄자류	7315 2801	두께 3㎜미만의 방향성 규소강판(압연이상의 가공을 한 것 제외함)
0202	양모 또는 섬수모로 직조한 양탄자류	2802	두께 3㎜미만의 무방향성 규소강판(〃)
0299	기타의 양모 또는 섬수모의 양탄자류	3401	방향성 규소강대
0401	아크릴섬유제의 터후트한 양탄자류	3402	무방향성 규소강대
0402	아크릴섬유제의 직조한 양탄자류	9007 0201	사용필름의 측이 16㎜의 일반용 사진기
0499	아크릴섬유제의 양탄자류		

< 참고 >

미국의 개방요청품목 및 조치내용

(1) 총 괄

품 목	CCCN			조 치 내 용			
	계	자동	제한	84.1.1	84예시	85-86예시	유 보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8	-	8	-	2	-	6
2. 카페트	13	-	13	13	-	(3)	-
3. 화섬사	95	50	45	3	8	23	11
4. 파일직물	14	8	6	6	-	-	-
5. 확성기	1	-	1	(1)	-	1	-
6. 전기강판	2	-	2	2	-	-	-
7. 유리그릇	3	3	-	-	-	-	-
8. 유압식다목적공작기계	1	-	1	1	-	-	-
9. 냉장고 및 냉동기기	10	8	2	2	-	(2)	-
10. 면도날	1	-	1	-	-	-	1
11. 필름, 인화지, 카메라	10	6	4	1	2	-	1
12. 자동차	28	1	27	-	1	11	15
13. 건전지	7	5	2	-	-	2	-
14. 용접기	7	1	6	-	-	6	-
15. 동	5	2	3	-	-	3	-
16. 엔진베아링	1	-	1	-	-	1	-
17. 화장비누와 샴푸	2	-	2	2	-	-	-
18. 건설장비 및 엔진	13	-	13	-	-	1	12
19. 석유난로	1	1	-	-	-	-	-
20. 알몬드	1	-	1	-	-	-	1

품 목	CCCN			조 치 내 용			
	계	자동	제한	84.1.1	84예시	85-86예시	유 보
21. 신선·가공한 감귤류	5	-	5	1	(1)	-	4
22. 알팔파초	1	-	1	-	-	-	1
23. 양 벚	1	-	1	-	-	-	1
24. 우 지	1	1	-	-	-	-	-
25. 사료용 동물단백질	1	-	1	-	-	-	1
26. 가금·계란 및 관련생산품	7	3	4	-	-	2	2
27. 돼지고기 및 쇠고기	3	-	3	-	-	-	3
28. 복숭아통조림 및 과일칵테일	5	-	5	-	-	-	5
29. 화장품	4	-	4	-	-	4	-
30. 면실류	1	-	1	-	-	1	-
31. 건포도 및 건오얏	1	1	-	-	-	-	-
32. 아이스크림 파우더	1	1	-	-	-	-	-
계	254	91	163	31	13	55	64

주 : ( )안은 중복품목임.

(2) 84. 7. 1 예시품목 및 사유

○ 대형 컴퓨터본체(2개 품목)

- 현 국내기술수준으로 당분간 국내생산이 불가능하며 국내중점육성 대상은 소형컴퓨터 및 주변기기임.

○ 화섬사(8개 품목)

- 생산업체가 대형 화섬업체로서 시장지배적품목(3) 또는 사실상의 독과점 품목임(5)
- 수급규모가 적은 규격들임.
- 섬유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점진적 개방 필요

○ 16㎜ 이하 필름용 사진기 및 부분품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며 국내수요가 한정되어 수입급증의 우려가 없음.

○ 10t 초과 덤프트럭

-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3사 생산품

○ 쵸코렛(2개 품목)

- 제과3사의 사실상의 독과점
- 경쟁력 보유
- 고율관세(50%)로 불요불급 수입억제

○ 건축용 목공품(5개 품목)

- 목제품 가구류 포함하여 모두 자유화되어 있음.
- 경쟁력 보유

(3) 예시보류품목

품 목 명	CCCN 품목수	품 목 명	CCCN 품목수
1. 알몬드	1	8. 복숭아통조림 및 과일칵테일	5
2. 신선 또는 가공한 감귤류	4	9. 자동차	15
3. Alfalfa초	1	10. 건설장비 및 엔진	12
4. 양벚(Cherry)	1	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6
5. 사료용 동물단백질	1	12. 화섬사	11
6. 가금·계란 및 관련 생산품	2	13. 카메라	1
7. 돼지고기 및 쇠고기	3	14. 면도날	1

(2) 1984년도 하반기 및 1985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상공부고시 제84-16호, '84.7.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시 : '84. 5. 23

(2) 심의결과

○ 원안통과

○ 토의내용

- 외국의 수입개방요청품목(영국 등)에 대한 고려여부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이 있었음.
- 자유화를 앞당기 시장지배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 및 커피의 수입자유화에 대한 보사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수입급증에 대비한 행정지도를 강구키로 하고 원안대로 자유화키로 하였음.
- 수입자유화와 병행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시책강구에 대한 무역협회의 건의가 있었음.

- 금번 기별공고는 지난 2월의 수입자유화계획을 반영한 것이므로 산업정책심의회에 정식 상정은 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통한 형식적 절차만을 거치도록 하였음.

※ 산업정책심의회 심의('84. 5)

○ 원안의결

나. 개정내용

(1) 수입제도의 개선

○ 공산품 품질향상 지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요령에 의한 수입에 대한 수입제한의 예외조항을 신설함.

(2) 수입자유화

○ 조정결과

- '84년도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은 계획대로 자유화함.
  (남자용 외의류등 318품목)
-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중 관계부처간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품목을 앞당겨 자유화함(볶은 커피 등 8품목)
- 주무부서로부터 "은행"등 9개 품목에 대한 신규제한요청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반영치 아니함.
- 한국관세행정 통계분류의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조정함.
- 기타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조정함.

(CCCN 8단위 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증 감
총 품 목 수	7,915(7,560)	7,915(7,560)	
자동승인품목	6,386(6,101)	6,712(6,407)	+ 326(306)
제 한 품 목	1,529(1,459)	1,203(1,153)	
자율화율(%)	80.7(80.7)	84.8(84.7)	+ 4.1(4.0)

※ ( )안은 종전품목분류 기준임.

○ 수입자유화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5 0101	종계(중량 185g 이하의 것)	2902 0305	디. 디. 티
0201	종계(중량 185g 초과의 것)	2903 0301	니트로벤젠
0301 0201	금잉어(관상용 활어)	2935 1699	기타의 복소환식화합물
0202	열대어(관상용 활어)	3401 0205	액체비누
0299	기타 관상용의 활어	3819 05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
0609	송어(냉동한 것)		나프탈린
0611	삼치(냉동한 것)	4301 0100	밍크의 모피
0303 0201	산 새우	0400	친칠라의 모피
0203	굴	0500	쥐의 모피
0205	소라와 고등	0600	기타의 모피
0307	냉동한 돌가재	4302 0101	밍크모피
0405	건조한 바다가재	0105	친칠라모피
0802 0300	레몬과 라임	0106	여우의 오피
0803 0000	무화과(신선, 건조)	0199	기타의 모피
0901 0102	볶은 커피	0201	밍크모피의 조각 또는 절달품
0201	커피의 각과 피	0299	기타모티의 조각 또는 절단품
1704 0201	드롭프스	4304 01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0202	캐러멜	4423 0100	조립식 목재건물
0299	기타의 캔디류	0200	문틀 및 창문
0300	츄잉껌 및 캔디류를 제외한	0300	나무대문
	기타 설탕과자	0400	마루판
1806 0101	초코렛	0500	기타의 목제품
0199	초코렛 과자	4602 0701	프레이트
2102 0100	커피의 엑스, 에센스 및	0799	프레이트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품		물품
2202 0200	착색가당향미 탄산수	5101 0204	108데니어이상 200데니어미만
2203 0000	맥 주		의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취드사
519 0300	산화마그네슘	0206	810데니어이상의 폴리아미드계
0400	마그네시아 크링카		비텍스춰드사
2901 0402	톨루엔	0301	63데니어이상 폴리아미드계
0407	SBR고무제용의 스틸렌		비텍스춰드사
0408	기타의 스틸렌	0302	기타 폴리아미드계 비텍스
			춰드사

CCCN	품 목	CCCN	품 목
0506	810데이어이상의 폴리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	0204	면의 편직물(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0601	63데니어이하 기타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	6004	내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0701	63데니어이하의 폴리프로피렌계 비텍스춰드사		
0702	63데니어이하의 폴리프로프린계 비텍스춰드사	0801	남자셔츠(견제의 것)
		0802	남자 및 소년용의 내의(셔츠 제외) 및 잠옷(견제의 것)
1204	180데니어이상 800데이너 미만의 비스코스레이온사	0803	여자, 소녀 및 유아용 내의 및 잠옷(견제의 것)
1205	800데니어이상의 비스코스레이온사	6005	외의류 및 기타의 제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303	130데이너이상의 아세테이트사		
6001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상의 외의류(면제)
		0102	〃 (폴리에스테르섬유제)
	양모 또는 섬수모의 편물	0104	〃 (아크릴섬유제)
0101	(순모제의 것)	0105	〃 (견제)
	양모 또는 섬수모의 편물	0108	〃 (마제)
0102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혼방한 것)	0109	〃 (기타섬유제)
		0199	〃
	양모 또는 섬수모의 편물	0202	하의 외의류(면제)
0103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0204	〃 (폴리에스테르섬유제)
	양모 또는 섬수모의 편물	0205	〃 (아크릴섬유제)
0199	(기타 섬유와 혼방한 것)	0208	드레스, 스커트, 슈트 및 여자, 소녀 및 유아용 의복 (견제의 것)
	면의 편직물(순면의 것)		
0201	면의 편직물		
0202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0302	기타 외의 및 의복부속품 (면제의 것)
	면의 편직물		
0203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0308	기타 외의 및 의복부속품 (견제의 것)

CCCN	품 목	CCCN	품 목
6101	남자용의 외의류	6102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외의류
0102	남자 및 소년용 외의류 (폴리우레탄 인조피혁제의 것)	0102	여자, 소녀 또는 유아용의 외의류(폴리우레탄인조피혁제의 것)
0201	남자 및 소년용 오버코트 및 기타 코트(모제의 것)	0202	〃 (모혼방제의 것)
001	남자 및 소년용 양복 (순모제의 것)	0203	여자, 소녀 및 유아용 코오트 및 상의류(면제의 것)
0302	〃 (모혼방제의 것)	0210	〃 (견제의 것)
0305	〃 (폴리에스테르섬유제의 것)	0302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양복 (모혼방제의 것)
0401	남자 및 소년용의 하의 (순모제의 것)	0303	〃 (면제의 것)
0402	〃 (모혼방제의 것)	0310	〃 (견제의 것)
0403	〃 (면제의 것)	0402	여자, 소년 및 유아용의 드레스(모혼방제의 것)
0405	〃 (폴리에스테르섬유제의 것)	0403	〃 (면제의 것)
0501	남자 및 소년용의 상의 (순모제의 것)	0405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양복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0502	〃 (모혼방제의 것)	0502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스커트(모혼방제의 것)
0505	〃 (폴리에스테르섬유제의 것)	0503	〃 (면제의 것)
0510	〃 (견제의 것)	0601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브라우스(면제의 것)
0601	기타 남자 및 소년용의 외의류(순모제의 것)	0603	〃 (폴리에스테르의 것)
0602	〃 (모혼방제의 것)	0609	〃 (모혼방제의 것)
0603	〃 (면제의 것)	0699	〃 (기타 섬유제의 것)
0610	〃 (견제의 것)	0702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기타 외의류(모혼방제의 것)
		0703	〃 (면제의 것)
		0705	〃 (폴리에스테르의 것)
		0710	〃 (견제의 것)
		6104	여자용 유아용의 내의류
		0101	순면의 것

CCCN	품 목	CCCN	품 목
0500	견제의 것	0705	휀.송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의 부부품
0600	모제의 것		
6109 0100	브레이저	0799	기타 펌프의 부분품
6201 0202	모혼방제의 여행용 러그와 모포류	8412 0101	윈도우형 자장식 공기조절기 (사용동력 11kw 미만)
0400	합성섬유제의 여행용 러그와 모포류	0103	자장식 공기조절기 (사용동력 11kw 이상)
7014 0500	기타 유리제의 것	0200	자장식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7315 1200	기타의 합금강의 선재 (고탄소강, 스테인레스강 및 내열강의 것을 제외함)	8414 0301	철강처리용의 노와 오븐
		0399	기타 금속처리용의 노와 오븐
		855 0301	천연색 TV수상기(형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23㎝미만의 것)
3601	스테인레스 강선		
7403 0102	황도의 봉.형재		
0202	황동의 선	8417 0201	공기조절기용 응축기 (냉매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 미만의 것)
7404 0401	반도체조용 합금동의 편과 대		
0499	기타 합금동의 판과 대		
7405 0200	기타의 동의박	0202	공기조절기용 증발기 (〃)
7407 0200	동의 중공봉		
7901 0309	아연의 합금괴	0301	공기조절기용 응축기 (냉매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
8205 1000	선인발용 다이스 및 금속압출용 다이스		
8301 0302	비금속제의 자물쇠 부분품	0302	공기조절기용 증발기 (〃)
8307 0100	방폭형의 비금속제 램프		
	기타의 조명기구	0401	낙녹용의 냉각기
8410 0404	터어빈펌프	0498	낙농용 냉각기, 농축기, 치즈 제조용 숙성기를 제외한 기기, 설비 및 장치
0501	급유용의 펌프 부분품		
8410 0501	기타의 기체압축기 (사용동력 373kw 이상의 것)	0501	석유화학공업의 가열기
0704	기타의 기체압축기의 부분품	0502	〃 냉각기
		0503	〃 응축기
		0504	〃 증발기
		0505	〃 건조기

CCCN	품 목	CCCN	품 목
0506	〃 증류, 정류 또는 분류기(탑)	0202	초지기
0507	〃 열교환기	0299	기타의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기계(초지준비기, 초지기, 권취기 등 제외)
0508	〃 반응기	8435 0101	윤전식 평판 인쇄기
0601	이화학용의 가열기	0201	윤전식 볼록한 인쇄기
0602	〃 냉각기	0301	윤전식 오목한 인쇄기
0603	〃 증발기	0401	기타의 윤전식 인쇄기
0604	〃 증류, 정류 또는 분류기(탑)	8444 0101	분괴압연기
0698	〃 기타의 기기, 설비 및 장치	0105	강편압연기
0701	기타 유도의 가열기	0299	기타 로울
0702	〃 냉각기	8445 0402	기타 리이빙반
0703	〃 증발기	0299	기타 프로우필 밀링반
0704	〃 증류, 정류 또는 분류기(탑)	1005	프로우필연삭반(그라인eld 휄 또는 연마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0707	기타 용도의 건조기	1100	랩핑반(〃)
0708	〃 응축기	1200	호우닝반(〃)
0710	〃 열교환기	8447 0102	제개기계
0711	〃 고온 및 저항온기	8452 0102	전자계산기 (액정식의 17단위 이상)
0798	기타의 기기설비 및 장치	0103	전가계산기 (형광식의 17단위 미만)
8418 0199	기타 원심분리기	0104	전가계산기 (형광식의 17단위 이상)
0305	가정형의 정수기	8453 0201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의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16메가바이트 이상의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를 갖춘 것으로서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0398	가정형의 기타 여과용 또는 청정기의 기기		
0499	기타 부분품		
8420 0299	중량측정기기의 부뵵품		
8421 0699	기타의 기기 (쇼트블라스트기)		
8422 0103	에스칼레이터와 무우빙 페이브먼트(연속작동기계)		
8431 0201	초지준비기		

CCCN	품 목	CCCN	품 목
8456	선별기, 기계식 체.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및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교상의 토양, 석.광석,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처리용에 한한다)	0504	출력 100W 미만의 전동기(직류전동기, 방폭 또는 수중형 전동기, 동기 전도익 및 정류자 전동기는 제외한다)
		1202	전동기의 부분품
0101	선별기	8505 0301	광산용 또는 토목공사용의 부분품
0301	배처 플랜트		
0302	콘크리트 혼합기	0309	기타 수지식 전동공구부분품
0499	기타 기계	8506 0100	진공소제기
8549 0300	유지공업용의 기계류	8508 0301	점화코이(항공기의 것과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이외의 것)
0501	인조프라스틱공업용의 성형프레스		
0802	금속도금기	0302	시동전동기(〃)
1101	절연전선제조기중 권선기	0399	기타기기(〃)
1300	교반기	0499	부분품(〃)
1412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8512 0399	난방기기
1599	기타의 부분품	8513 0101	코드레스 전화기
8463 0202	전동축(항공기 및 제86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0103	버튼식 전화기
		0199	기타의 전화기
0203	크랭크(〃)	0302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8501 0301	출력 50kw 미만의 기타의 발전기(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결합된 것과 직류발전기를 제외함)	0701	인터폰
		0801	전화기 부분품
		8514 0200	이어포운
		0204	전화기용 송.수화기
0303	출력 200kw 이상 400kw 미만의 기타의 발전기(〃)	0300	부분품
		8515 0103	모사 전송기기
0503	정류자 전동기 (직류 이외의 것)	0501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자동차전용의 라디오수신기
		0701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라디오 수신기(자동차 전용 및 류대용 이외의 것)
		1002	로오랑 리시버

CCCN	품 목	CCCN	품 목
1004	기타의 항행용 무선기기 및 무선 원격 조절기기	0402	제8701호중 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렉터 이외의 트랙터의 것
1099	기타의 기기		
1699	기타의 부분품	0202	제8702호중 버스와 마이크로버스의 것
8518 0299	기타의 가변식 축전기		
0302	가변식의 축전기의 부분품	0203	제8702호중 화물자동차의 것
8519 0302	플러그	0299	제8702호중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이외의 것
0303	잭		
0305	콘센트	0300	제8703호의 것
0399	기타의 접속용기기	8706 0103	제8701호중 별게 이외의 트렉터의 샤시
8520 0299	기타의 방전등구(자외선 전구를 제외한다)	0400	제8701호의 무한궤도식 트랙터에 전용되는 제8463호의 물품의 부분품 및 차축(샤시제외)
8521 0208	디지트론		
0802	트라이액		
1500	기타의 부분품	0600	제8701호의 무한궤도식 트렉터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8523 0301	금속피복의 한 전력케이블 (11kw 이상의 것)		
0302	금소피복을 한 전력케이블 (11kw 미만의 것)	8714 0401	트레일러의 부분품
		0499	기타의 차랴의 부분품
0400	통신케이블	8901 0301	탱커(총t수 3,000t 이상이며 선령 12년 미만의 것)
8701 0300	기타 트렉터 (무한궤도식은 제외)	0302	탱커(총t수 3,000t 이상이며 선령 12년 미만의 것)
8702 0603	적재중량이 10톤 초과 20톤 이하의 덤프트럭		트롤어선과 기타의 어선, 공모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선박
8703 0500	이동진료차		
1000	농업용 살포차		(총t수 20,000t 이사이며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8704 0103	원동기를 갖춘 샤시 (제8701호의 것)		
8705	차체(운전대를 포함하여, 제8701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0503	트롤어선과 기타의 어선, 공모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즌 기타의 선박 (총t수 3,000t이상 20,000t 미만이며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0401	제8701호중 트레일러 견인용도로 주행식 트렉터의 것		

CCCN	품 목	CCCN	품 목
0504	트롤어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선박(총t수 1,000t 이상 3,000t 미만이며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9005 0300	굴절식의 단안경과 쌍안경 부분품
		9007 0299	기타의 일반사진기(사용필름의 폭이 16㎜ 및 35㎜이외의 것)
0508	트롤어선과 기타의 어선, 공모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선박(총t수 20,000t 이상이며 선령 12년 이상의 것으로 목조선을 제외한다)	0301	섬광기구
		0402	일반사진기의 부분품
		9010 0200	복사기 부분품
		9016 0990	기타의 제도기기, 설계용구
		9024 0700	열 유량계
0509	트롤어선과 기타의 어선, 공모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선박(총t수 3,000t 이상 20,000t 미만이며 선령 12년 이상의 것으로서 목조선을 제외한다)	9026 0200	기타의 적산전력계 (단상 50A이상의 것 제외)
		9027 0201	시계식의 속도계외 회전속도계
		0299	기타의 속도계외 회전속도계 (시계식 이외의 것)
		9028 0402	온도계외파이로미터(전자식의 것)
0510	트롤어선과 기타의 어선, 공모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선박(총t수 1,000t 이상 3,000t 미만이며 선령 12년 이상의 것으로서 목조선을 제외함)	0404	액면계, 유량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전자식의 것)
		0409	회전속도계와 속도계(전자식의 것)
		0501	비전자식 전압자동조정기기(조절장치를 포함한다)
8905 0400	기타의 부구조물		
9004 0101	귀금속을 사용한 시력교정용 안경	0702	온도계와 파이로미터(전자식의 것을 제외한다)
0199	귀금속을 사용한 것 이외의 시력교정용 안경	9110 0100	시계 케이스
		0200	시계 부분품
0201	귀금속을 사용한 보호용 안경 및 기타의 안경		
0299	귀금속을 사용한 것 이외의 보호용 안경 및 기타의 안경		

CCCN	품 목	CCCN	품 목
9110 0200	휴대용시계의 구동식스프링 및 헤어스프링		
0401	휴대용 이외의 시계의 무브먼트세트 및 플랫트포옴 탈진기 (전기구동식, 전기 권식 또는 전자식의 것)		
0499	휴대용 이외의 시계의 기타의 무브먼트세트 및 플랫트포옴 탈진기		
0500	휴대용 이외 시계의 구동스프링 및 헤어스프링		
0600	휴대용 이외의 시계의 별게 이외의 부분품		
9211 0599	기타의 자동차용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테이프덱을 제외한다)		
0699	기타의 비자동차용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테이프덱을 제외한다)		
0800	기 타		
9212 0101	녹음용 리일테이프		
0299	기타의 녹화용 매체		
9123 0400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9804 0100	펜촉		
9810 0100	가스라이터		
0200	기타의 라이터		

○ '85이후 자유화예시품목중 조기 자유화품목

CCCN	품 목 명	당초자유화계획
0901 0102	볶은 커피	85
2102 0100	커피의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품	86
2202 0400	기타 음료중 유산균 음료	86
5101 0301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취드사(63데니어 이상)	85
0302	기타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86
0601	기타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63데니어 이하)	85
8412 0101	윈도우형 자장식 공기조절기(사용동력 11kw 미만)	85
8515 0301	천연색 TV 수상기(형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23㎝ 미만의 것)	85
8523 0302	금속피복을 한 전력케이블(11KV 미만의 것)	85

※ 2202 0400(별게이외의 음료)는 부분자유화

○ 부분자유화품목(28개)

CCCN	품 목
0301 0699	기타 냉동어중 “은대구, 임연수어, 볼낙(적어 포함), 홍살치”
0303 0399	기타 냉동한 갑각류와 연체동물중 “왕게”(King Crab)
1405 0799	기타의 염색용 원료중 “아나토씨앗”
2202 0400	기타의 음료중 “유산균음료”
2208 0199	기타의 에틸알콜중 “주류제조용 발효 주정이외의 것”
3902 0204	폴리에스터수지 및 폴리스티렌 공중합수지중 “ABS(콤파운드 포함)”
8202 0203	원형 톱날중 “외겨이 200㎜미만 또는 700㎜ 초과의 것”
8415 0499	냉장고와 냉동기기의 부분품중 “아이스크림 프리저”
8418 0401	내연기관의 부분품중 “차량내연기관의 여과용 및 청정용기기의 부분품”
8419 03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기계중 “접시세척기”
0499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중 “가스필러” “자동캡슐 충전기계”
0701	기타의 자동포장기중 “자동이쑤시개 포장기” “자동롤 포장기” 페이퍼 카톤포장기“
8422 0201	블록과 체인블록중 “공기식의 거”, “방폭형의 것”
0299	
0499	기타의 크레인중 “갠트리크레인” “콘테이너크레인” “러핑크레인” “브리지크레인” “천정주행식크레인” “집크레인” “타워크레인”
1299	
0800	10t 이하의 잭중 “볼.스크류식의 것”

CCCN	품 목
8459 0599	기타의 인조프라스틱 공업용 기계중 “펀칭프레스” “분쇄기” “혼합기” “교반기” “믹싱로울”
8462 0101	보올베어링중 “형번 6400～6414, 6800～6814, 6900～6914의 것”
0102	로울러베어링중 형번 32004～32014, 33004～33014의 것“
8501 0799	기타의 변압기중 “용량 60,000KVA 초과, 475,000KVA 이하의 것”
8515 1200	Color TV Tuner중 “기계식의 것”
9028 1101	전자식 전압자동조정기중 “용량 1,000kw 이하의 것(다만 자동차용 레규레이터는 불포함)”
9029 0000	부분품과 부속품중 “제9026호 해당품목중 전산전력계 전용의 부분품”
9107 0101	조립된 위치 무브먼트중 “전자손목시계 무브먼트(디지탈 무브먼트에 한함)”
0102	
0201	
0202	
0299	

○ 수입요령 일부변경 품목(4개)

CCCN	품 목	변 경 내 용
1208 0300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	기타의 것은 농수산부장관 추천 →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추천
1507 0600	유 채 유	농수산부장관 추천 → 콘덴서 제조용 절연유는 전자공업진흥회 추천
8463 0201	차량용 축연결구류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추천 → 농기구 차량용은 기계공업진흥회 추천
8514 0101	가청주파증폭기	전자공업진흥회 추천 → 보청기용은 보건사회부장관 추천

〈참고〉

관계부처의 요청사항중 미반영 내역

○ 신규 수입제한 요청품목(9개)

CCCN	품 목	요 청 사 유	검 토 결 과
0805 0600	은 행	생가농가보호	수입실적미미
2201 0100	물	약사법에 의한 수입제한을 기별공고에 의한 제한으로 변경	현행대로 약사법에 의해 제한
5802 0501	기타인조섬유제의 터후트한 양탄자류		수입급증우려 없음
6603 0101	자동전개식 금속제 우산틀		┐ | 수입실적 감소
0102	철접는식 금속제 우산틀		|
0199	기타 우산틀		|
0200	기타우산의 부분품 및 부속품		| ┘
8453 0699	기타 자동자료 처리기계		수입제한 불요
8503 0100	수 은 전 지	수은공해방지	행정지도

○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중 자유화 보류요청품목(7개)

CCCN	품 목	요 청 사 유	검 토 결 과
8435 0101 0201 0301 0401	윤전식 평팡인쇄기 윤전식 볼록인쇄기 윤전식 오목판 인쇄기 기타의 윤전식 인쇄기	ㄱ ㅣ언론정책과 밀접한 ㅣ관련 ㅣ ㅣ ㄴ	수입감시품목 지정 (문화공보부 사전 확인)
8515 1099 1699	기타의 무선기기 기타의 무선기기 부분품	일본방송 위성전파의 국내침투 방지 "	수입감시품목 지정 "
9007 0402	특수용도 이외의 사진기 부분품	부분품의 수입자유화는 완제품자유화와 같은 효과	수입선다변화

다. 84/85 수출입기별공고중 개정고시

(상공부고시 제84-33호, '84.12.21 시행)

(1) 주요내용

○ 간척사업용에 국한된 해외건설장비 반입대상을 확대하여 해외건설철수업체의 유휴장비도 국내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총칙 제7조 제1항 제22호)

○ 아연광의 수입을 자유화하여 수입절차를 간소화함.

○ 스텐레스강판의 수입제한을 확대하여 유사규격의 변칙적인 수입유통을 방지함.

(2) 해외건설장비 반입을 위한 근거 마련
(총칙 제7조 제1항 제22호 개정)

○ 요청기관 : 건설부장관(기계공업국)

○ 요청사유 : 해외건설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철수업체의 장비반입을 위한 기별공고상의 근거 마련

(3) 아연광의 수입자유화

○ 요청기관 : 동력자원부장관

○ 요청사유 : 아연광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절차 번잡 → 국내수입업체에서 국산아연광의 인수조건하에 수입자유화

(4) 스테인레스강판 수입제한 확대

(가) 현행 수입요령

CCCN	품 목	현 행 수 입 요 령
735 2401	스텐레스강판(3-4.75㎜)	ㄱ 1. 스텐레스 강판중 재징 302,
		ㅣ 304, 304L, 430, 316, 두께
2701	스텐레스강판(3㎜ 미만)	ㅣ 0.3-3㎜이며, 폭 100-1,250㎜
		ㅣ : 철강협회 추천
3301	스텐레스 강대	ㄴ 2. 기타 : 수입자 등

(나) 스텐레스강판 수입현황

(단위 : 톤)

	'82	'83	'84전망	증가율(%)
수 요	99,197	134,144	172,648	28.7
내 수	85,185	121,599	155,534	27.9
수 출	14,012	12,545	17,114	36.4
생 산	89,026	110,082	123,248	12.0
수 입	10,17	24,062	49,400	105.3
수입비중(%)	10.3	7.9	28.6	59.8
가 동 률(%)	80.2	90.2	71.2	△21.1

- '84년 수요증가는 30%에 달하나 국내업체의 설비확충과 2배이상의 수입증가에 따라 가동율은 70%로 급락될 전마임('84년에 5,000t→22,000t으로 설비 확장한 대양금속의 경우 가동율은 20-25%선)

(다) 국내업체의 능력현황

(단위 : 천톤)

	'82	'83	'84	'85
삼미특수강	90	101	135	135
동양물살	10	10	10	10
삼양금속	6	6	6	6
대양금속	5	5	22	22
계	11	122	173	203

- 스텐레스 강판의 수입자유화('86년 예시) 이전에 국내업체간 경쟁을 유도키로 함에 따라 삼양, 대양의 설비 확대 추진
- 삼미에서도 수입자유화에 대처키 위하여 고급제품 생산이 가능한 광휘소둔로(B.A Line) 설치('84.10～'86.3 105억원)

(라) 수입증가요인 검토

○ 현행 기별공고는 강종, 폭, 두께 등 규격을 명시하여 수입제한하고 있으나 국내 실수요가 없는 광폭 또는 유사강종으로 변칙 수입되고 있어 계속적인 제한규격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년간 100% 이상씩 수입급증('84년 국내수요의 30% 수입)

- '83년 : 제한폭 확대(1,000～2,250㎜), 강종 추가(304L)
- '84년 : 강종추가(302)

○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상태에 있어 국산이 정상적인 가격경재에서 경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덤핑으로 가격경쟁이 곤란함.

- 세계수급(자유세계)

(단위 : 만톤)

수 요	공 급	공 급 초 과
258	342	84

- 가격현황

(단위 : 톤)

한 국			일 본	
내 수	로 칼	수 출	국내가	수출가
1,982	1,610	1,500	1,990	1,450

○ 2배 이상의 수입증가는 내수용의 수입급증에 기인함.
(스텐레스 관련제품의 수출은 전년가 비슷한 수준)

- 스텐레스 관련제품의 수출현황

(단위 : 백만$)

	'82	'83	'84.1-6	'84 전망
수 출 액	208	247	120	240

- 수입 스텐레스 강판의 용도 추정

(단위 : 천톤)

	'83	'84	증 가 율(%)
내 수 용	9.1	34.4	278.0
수 출 용	15.0	15.0	-
계	24.1	49.4	105.0

(바) 종합검토의견

○ 우리나라 특수강공업은 아직 유치단계로 이의 전략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전 철강에 대한 특수강 생산비중(%)

한 국	일 본	서 독	미 국	E C
3.3	16.9	20.3	12.8	16.0

○ '86자유화예시품목으로서 연간 수요가 약 30%씩 증가하여 단기간내에 경쟁력 확보가 유망시되는 품목이나 수입제도의 불합리성으로 국내수요의 30%에 달하는 덤핑제품이 변칙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수입이 년간 100%씩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곤란에 직면 → 수입제도의 근본적인 재조정으로 한시적인 국내산업보호대책 필요

○ 대외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적음.

- 신규수입제한품목의 증가없이 수입요령의 개정만으로 가능
- 수입의 약 70%가 대일수입이며 지역 차별없이 수입 제한 확대하는 경우에는 대일 마찰의 가능성이 적음.

※ 관계부처의 수출입공고 개정요청내용중 미반영 사항

가. 완구용 연화 수입제한 요청

(1) 요청기관 : 내무부 치안본부장

(2) 요청사유 : 완구용 연화의 수입유통으로 인한 어린이 화상사고 및 불의의 재해 예방

(3) 현행 수입요령

○ 연화류는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의 대상품목으로서 기별공상 수입자동승인품목임.

○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제13조 제2항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완구용 연화에 대하여는 제14조(내무부장관의 제조업허가)의 규정외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동 법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임.

(4) 검토의견

○ 완구용 연화는 화약류의 일종으로서 총포, 도검, 화약류의 단속대상인 바, 사회안전의 측면에서 수입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동특별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현재 특별법의 대상품목으로서 사회공공안전을 위하여 기별공고에 수입을 제한하는 예는 없음)

○ 이를 위해서는 동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법률의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완구용 연화의 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입통제가 필요한 연화에 대하여는 완구용 연화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연화로 최급하도록 내무부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무역거래법에 의한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는 기별공고상 제한은 신규제한품목의 증가(2개 품목)를 초래하는 바, 추후 수입동향을 보아 수입감시품목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무연탄 등 수입제한요청

(1) 요청기관 : 동력자원부장관

(2) 요청사유

현재까지는 국내외 무연탄 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자동승인품목으로 운용하여도 문제점이 없었으나 최근 가격추이를 감안시 국내 유일한 부존자원인 석탄산업의 존립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3) 현행 수입요령

CCCN	품 목	현행 수입요령
2701 0200	무 연 탄	AA
0301	연 탄	〃
0302	마 젝 탄	〃

(4) 검토의견

최근의 수입실적이 매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현단계에서 수입제한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입동향을 보아 제한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수입실적

	'82		'83		'84(1-9)	
	실 적	증 가 율	실 적	증 가 율	실 적	증 가 율
물 량 (천t)	2,472	△64	805	△67.4	383	△62.3
금 액 (백만불)	116	△47	49	△70.5	23	△41

다. 내연기관 부품 수입요령 조정

(1) 요청기관 : 관세청장

(2) 요청사유 : CCCN 8406 0903 철도차량용 내연기관부품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이나 동 품목은 일반차량용 내연기관(현 수입제한승인품목)에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철도차량용 내연기관부품과 일반차량용 내연기관부품의 수입요령을 개선

(3) 검토의견

- ○ 일반차량용 내연기관의 부품은 '87이후 예시품목으로서 현단계에서 자유화가 곤란하며 철도차량용 내연기관부품을 제한할 경우 신규수입제한품목 증가
- ○ 통관상의 무제점은 CCCN 분류해석상의 운영개선에 의하여 해결가능 → 각각 다른 두 개의 세 번에 분류될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으로 분류토록 조치

(3) 수입자유화계획 수립

(상공부공고 제84-22호, '84.5.26)

가. 기본방향

개방경제체제의 이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현실적으로 국내산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국제수지영향 고려

- 경쟁력 보유품목, 수입제한에 의한 산업보호효과가 적은 품목, 관련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저해가 되는 품목은 우선적으로 자유화
- 원자재 및 에너지다소비산업 등 구조불황산업과 독과점품목에 대하여는 가급적 조기에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내산업에 잠정적인 대비기간을 부여하여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
- 중점적 육성이 필요한 유망전략산업에 대하여는 한시적인 경쟁력 강화기간 부여
- 농가소득관련 주요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수립때까지 예시 유보

나. 무역위원회 심의

○ 일시 : '84. 5

○ '84.2.24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품목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화 넌도를 일부 재조정

○ 년도별 자유화계획 조정

구 분		총품목	수입제한품목	자 유 화 계 획				
				'85	'86	'87	'88	예 시 보 류
당초	품목수(개)	7,915	1,203	237	309	174	112	379
	자유화율(%)		84.8	87.7	91.6	93.8	95.2	
조정	품목수(개)	7,915	1,03	233	308	174	110	379
	자유화율(%)		84.8	87.7	91.6	93.8	95.2	

○ 품목별 조정내역

CCCN	품 목	당초예시년도	조정년도
0901 0102	볶은커피	85	84
2102 0100	커피의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과 이들의 조제품	86	84
2202 0400	기타 음료중 “유산균음료”	86	84
5101 0301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63데니어 이상의 것)	85	84
0302	기타 폴리아미드계 비텍스 춰드사	86	84
0601	기타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 (63데니어 이하의 것)	85	84
8515 0301	천연색 TV 수상기(9인치 미만의것)	85	84
8523 0302	금속피복을 한 전력케이블 (11KV 미만의 것)	85	84
3902 0203	폴리프로필렌	86	85
8702 0402	고속도로용 버스	87	86
8709 0101	자동이륜차(기관의 배기용량 260㎤ 초과의 것)	87	86
0201	자동이륜차 (배기용량이 260㎤ 이하 100㎤ 초과의 것)	88	87
0301	자동이륜차 (배기용량이 100㎤ 이하의 것)	88	87

다. 수입자유화계획 조정내용

(1) 연도별 주요자유화 품목

○ '84자유화품목('84.7.1부터 시행)

맥주, 톨루엔, 커피, 스티렌, 모노마, 모피 및 생모피, 편직물, 의류(여자용의 순모제 및 견제 제외), 에어콘, 가열기, 냉각기, 열교환기, 정수기, 에스컬레이터, 제지기계, 선별기, 콘크리트혼합기, 진공소제기, 전기난방기, 녹음기(휴대용 제외),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덤프트럭(10t～20t), 이동진료차, 라이타, 안경 등

○ '85자유화 예시품목

설탕, 모피제품, 인조피혁, Knit Wear, 의류(여자용 순모제), 은괴, 알루미늄괴, 엘리베이터, 콘베어, 잭, 재봉기, 보통선반, 전기로, 칼라TV(19″이상), 카세트, 녹음기, 전선, 트럭(8t～10t), 구급차, 구난차, 도로청소차, 제설차와 살포차, 포크리프트 트럭(지게차), 트레일러 등

○ '86자유화 예시품목

카본블랙, 가성소다, 카프로락탐, 나일론F사, 폴리에스터F사, 모직물, 도자기, 특수강, 스텐레스강판, 동괴, 아연괴, 자동차, 디젤엔진, 냉장냉동기계, 포장기계, 중량측정기계, 적하・하역기계, 굴착기, 전동공구, 전기용접기, 전자레인지, 칼라TV(10″～18″), 일반버스, 트럭(4t～8t), 특장차 등

(2) 산업별 수입자유화계획

(CCCN 8단위 기준)

구 분	총품목	수입제한 품목	자 유 화 계 획				
			'85	'86	'87	'88	예시보류
합 계	7,915	1,203 (84.8)	232 (87.7)	308 (91.6)	174 (93.8)	110 (95.2)	379 (100)
경쟁력 보유산업 (섬유류)	1,089	105 (90.4)	31 (93.1)	32 (96.1)	19 (97.9)	-	23 (100)
소재산업 (화학, 철강, 금속)	2,984	167 (94.4)	32 (95.4)	76 (98.0)	41 (99.4)	-	18 (100)
기계, 전자산업	1,909	497 (74.0)	131 (80.8)	52 (88.7)	102 (94.0)	110 (99.9)	2 (100)
기 타	1,933	434 (77.4)	38 (79.5)	48 (82.0)	12 (82.6)	-	336 (100)

( )안은 자유화율(%)

(3)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의 수입자유화 계획

구 분	총품목	수입제한 품목	자 유 화 계 획				
			'85	'86	'87	'88	예시보류
합 계	202	76 (62.4)	17 (70.8)	40 (90.6)	11 (96.0)	2 (97.0)	6 (100)
기 초 소 재 (화학, 철강, 금속)	76	35 (53.9)	5 (60.5)	26 (94.7)	4 (100)	-	-
기계, 전자산업	52	33 (36.5)	11 (57.7)	13 (82.7)	7 (96.2)	2 (100)	-
기 타	74	8 (89.2)	1 (90.5)	1 (91.9)	-	-	6 (100)

( )안은 자율화율(%)

○ 수입자유화 부진사유

- 수입제한품목의 대부분이 경쟁력 취약한 기초소재산업으로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합리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나
- 자동차, 전자 등 전략육성산업으로서 아직도 신기술의 도입 및 시설 확장, 합리화를 위한 투자가 진행중에 있어 한시적인 보호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임.

라. 예시 및 자유화추진

- 수입자유화계획에 예시된 품목은 매년도별 수출입기별공고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변경
- 산업 및 통상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화년도의 조정가능

〈참고〉

수입자유화예시작업추진연혁

'78. 12 농수산품 119개 품목을 제외한 225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자유화예시계획 수립

(CCCN 4단위 기준)

구분 \ 연도	'79～'80	'81～'82	'83～'84
품 목 수	42	169	14
자 유 화 율(%)	72.9	88.3	89.6

'81. 3 서석준 장관 수입자유화예시제 실시지시

'81. 5 대통령각하 수출입기별공고 개정내용보고시 수입자유화예시제 실시 지시

'82. 1 '82업무계획 보고시 수입자유화예시제 실시계획 보고

'83. 1 '83업무계획보고시 수입자유화예시제 실시계획 보고

'84. 2 '84～'86수입자유화 대상품목 발표

'84. 5 수입자유화예시계획 발표
'84～'88수입자유화율 및
'84～'88수입자유화품목 발표

Ⅰ - 8. 1985년의 수입자유화

(1) 1985년도 하반기 및 1986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상공부 고시 제85-17호, '85.7.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시 : '85. 5. 24

(2) 회의결과

○ 원안통과

○ 부처별 의견제시

부 처	품 목	의 견 내 용	심 의 결 과
농 수 산 부	누 에 고 치	수입제한	수입감시품목 지정
	견 방 사		
산 림 청	아 몬 드	수입자유화유보	원안통과
	목 재	수입제한	원안통과
수 산 청	어류의웨이스트	수입제한	원안통과

※ 산업정책심의회 심의에서('85.5.28) 원안 통과

- 다만, 수입자유화율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현행 특별법상의 수입규제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별법상의 통합고시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

나. 개정내용

(1) 예시품목의 수입자유화

○ '84.5.26 "수입자유화 계획"으로 공고한 '85년 수입자유화예시품목 232개품목은 계획대로 자유화 조치함

○ 예시된 품목중 국내 농축산물보호상 불가피한 품목, 중소기업의 신규국산개발품목으로 일정기간 더 보호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자유화 계획공고 이후 여건변동으로 국내산업보호측면에서 자유화의 연기가 불가피한 품목중 8개품목은 수입자유화시기를 조정함

품 목	자 유 화 계 획	사 유
(농가보호) · 과즙음료 · 육엑스 · 육 즙	자유화 유보 〃 〃	○ 과실농가 생산기반 위축 ○ 국내외 가격차로 요식업소, 식품가공업체에서 대량수입 가능성
(중소기업보호) · 잭(2개) · 자동차전조등용램프	1년 연기, '86년 자유화 〃	○ '84년 중소기업에서 국산개발 ○ 정부에서 연구개발 지원 ○ '84년 중소기업에서 신제품개발, 국산화
(산업여건변화) · 인조피혁 · 3t초과 포크리프트트럭	1년 연기, '86년 자유화 〃	○ '84년 수해 ○ 국산화제고를 위해 대규모시설 투자중

○ 대내외에 공표한 연도별 수입자유화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86년 이후 자유화대상품목중에서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11개 품목을 앞당겨서 자유화함.

구 분	품 목
경쟁력 보유	자동차키셑, 파라솔, 비치파라솔
수입급증의 우려가 없는 품목	그레이프 푸루우트, 아몬드
특별법에 의해 수입억제 가능	종우용젖소, 종우용소, 종돈, 동물의 정액, 귀갑과 귀판, 천산갑

(2) 신규수입제한

○ 수입자동차승인품목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으로 협동화사업투자를 진행중인 "우산틀"(2개품목)의 수입을 신규로 제한함.

(3) 수입요령 변경

○ 수입제한승인품목중 31개품목의 수입요령을 부분적으로 변경함.

구 분	품 목
부분 자유화	"기타자동선반"등 18개 품목
수입금지 → 수입추천	"페로망간"등 4개 품목
기 타	9개 품목
계	31개 품목

(4) 수입제한품목의 조정결과

(가) 조정내역

○ 자유화예시품목	232개
○ '85예시품목중 자유화연기	△8개
○ '86이후 자유화예시품목중 '85자유화품목	11개
○ '85수입자유화품목	235개
○ 신규제한품목	△2개
○ '85수입자동승인품목 증가	233개

(나) 조정결과

○ 농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등의 일부에 대하여 수입자유화를 유보하거나 또는 수입제한하였으나 종우등 6새 품목을 특별법에 의한 수입관리로 전환하고 기별공고상 수입을 개방함에 따라 자유화율은 당초 계획된 87.7%에 달함.

구 분	현 행	개 정
총 품 목 수	7,915	7,915
자 동 승 인 품 목	6,712	6,945
제 한 품 목	1,203	970
자 유 화 율 (%)	84.8	87.7

○ 주요자유화품목

산 업 별	품 목
1 차 산 업	북어, 가다랭이, 산게, 굴, 산호, 면실유
식 품	마아가린, 쇼트닝, 간장, 토마토케찹, 마요네즈, 식초, 설탕, 코코아, 옥수수통조림

산 업 별	품 목
화 학 제 품	폴리프로필렌, PVC레쟈
철강금속제품	은괴, 알루미늄괴, 동관, 알루미늄박, 동의봉, 동의형재・선, 원형톱날
전자전기제품	계전기, 소케트, 전자계산기, 믹서, 전기로, 전기다리미, 전기밥솥과 밥통, 칼라TV(19″ 이상), 카세트 녹음기, 전선, 카셋테이프, 면도기, 마이크로폰, 고정식축전기, 애자
기 계 류	원심펌프, 송풍기, 냉매압축기의 부분품, 공기조절이용기기 및 설비, 엘리베이터, 콘베어, 보통선반, Crusher, 공업용진공소제기, 유해성배기가스처리기, 낙농용 여과 및 청정기기, 공업용 정수기, 재봉기부분품, 압연기의 로울, 베어링볼, 기어, 자동세척기, 시동전동기, 구급차, 구난차, 도로청소차, 제설차, 3t이하 지게차, 트레일러, 쌍안경, 일반화물차(8t～10t)
섬 유 류	Wool Knit Wear, Wool 여성의류, 모피제품, 인조모피제품, pp장섬유사, 비스코스레이온사, 순모제의 모포
잡 화 류	잉크, 등사원지, 노트류, 연필깎기, 당구용구, 남바랑스탬프, 비금속제의 소상

○ 수입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2 0101	종우용 소	2107 0102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0201	기타의 종우용 소	0199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베이스
0103 0103	종 돈	0800	옥수수 통조림
0301 0505	복어(신선 또는 냉장한 것)	2202 0100	가당향의 탄산수
0512	가다랭이(〃)	2208 0200	변성알코올
0303 0208	산 게	2210 0100	양조식초
0508	굴(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0	기타의 식초대용물
0509 0501	귀갑과 귀판	2512 0100	다이아토마이트
0502	천산갑	3210 0000	수성그림물감
0512 0100	산 호	3213 0201	보통의 필기용 잉크
0300	기 타	3803 0201	활성규조토
0512 0200	동물의 정액	0202	활성토
0802 0400	그레이프 푸루우트	3902 0203	폴리프로필렌
0805 0100	아몬드	0206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물
0200	면실유	3903 0101	재생섬유소
1513 0100	마아가린	0102	가소화하지 않은 질산섬유소
0200	이미테이션라아드	0103	가소화한 질산섬유소
0300	쇼트닝	0301	기타 형상의 재생섬유소
0400	기타의 조제식용지	0302	기타 형상의 가소화하지 않은 질산섬유소
1606 0203	골뱅이(훈제한 것)	0303	기타 형상의 가소화한 질산섬유소
0205	우렁이(훈제한 것)	4303 0101	밍크모피제 코오트
1701 0101	조당(당도가 98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0102	밍크모피제 숄
0102	조당(당도가 98도를 초과하는 것)	0103	밍크모피제 목도리
0200	정제당	0199	기타 밍크모피제품
1806 0201	가당코코아	0201	기타 코우트
0299	기타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	0202	기타 목도리
2104 0101	간 장	0203	기타 숄
0199	기타의 장류		
0201	토마토 케첩		
0204	마요네즈		

CCCN	품 목	CCCN	품 목
0207	기타 융단	0401	여자, 소녀 및 유아용 드레스
0299	기타 모피제품(밍크 모피제는 제외)		(순모제의 것)
		0501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스커트
4304 0201	인조모피제 코우트		(순모제의 것)
0202	인조모피제 목도리	0510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스커트
0203	인조모피제 숄		(견제의 것)
0299	기타의 인조모피제품	0608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브라우
4813 0102	등사원지		스(순모제의 것)
4818 0200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의 문바구	0701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기타 외의류(모제의 것)
5101 0703	63데니어 초과의 폴리프로피렌계 장섬유사	6201 0201	모제 모포류
		6601 0400	파라솔
1201	110데니어 미만의 비스코스레이온사	0500	우산텐트, 비치파라솔 및 이와 유사한 우산
1202	110데니어 이상 130데니어 미만의 비스코스레이온사	7105 0100	은의 괴, 편 및 입
		0201	은의 분
1203	130데니어 이상 180데니어 미만의 비스코스레이온사	7315 1501	고속도강의 봉강(선재를 제외한다)과 중공마니잉 드릴강
5908 0201	PVC leather	7403 0101	동의 봉과 형재(합금제외)
0299	기타 인조피혁	0201	동의 선(합금제외)
6005 0101	저지,쉐타, 풀오바, 스립 오바, 트윈셋, 가디간, 외의용 셔츠, 베드자켓 및 잠바(모제의 것)	7404 0101	동의 판과 대(반도체제조용)
		7407 0101	동의 관 및 소관(합금동제외)
0201	드레스, 스커트, 슈트 및 여자, 소녀 및 유아용 의복 (모제의 것)	0102	황동의 관 및 소관
		0103	청동의 관과 소관
		0199	기타의 합금동의 관 및 소관
0301	기타 외의 의복부속품 (모제의 것)	7601 0100	알루미늄괴(합금하지 아니한 것)
		0201	알루미늄괴(다이케스팅어로이)
6102 0201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코오트 및 상의류(순모제의 것)	0209	알루미늄괴(기타 합금의 것)
		7604 0200	알루미늄의 박(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의 것)
0301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양복 (순모제의 것)	8202 0203	원형톱날

CCCN	품 목	CCCN	품 목
0299	기타의 수동식 또는 기계식 톱날	8422 0104	뉴우머티식 이외의 엘리베이터(연속 작동기계)
8301 0199	다이얼식 이외의 비금속제 자물쇠	0105	뉴우머틱식 이외의 콘베이어(연속 작동기계)
8306 0200	소상과 기타의 실내장식품	8411 0102	쌍침직진형의 재봉기
8410 0402	원심펌프	0104	피혁 및 기타 후물용의 재봉기
8411 0600	휀·송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0105	포장대 봉합용의 재봉기
0702	냉매압축기의 부분품	0401	단침직진형 재봉기의 부분품
8417 0298	냉매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 미만의 공기조절기용 기기설비 및 장치(공기조절용 응축기와 증발기를 제외한다)	0402	쌍침직진형 재봉기의 부분품
		0403	지그재그형 재봉기의 부분품
		0499	기타 재봉기의 부분품
		8444 0201	주조제 로울
		0202	단조제 로울
0398	기타 냉매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이상의 공기조절기용 기기설비 및 장치(공기조절기용 응축기와 증발기를 제외할 것)	8445 0302	기타 보통선반
		0404	기타 무릎형 밀링반
		0503	기타 직립 드릴링반
		0902	스크류커팅반
0706	살균장치	1503	훨딩기
8418 0302	여과용 또는 청정용의 기기로서 유해성 배기가스처리용의 것	1799	기타의 프레스(최고가압 5M/T이하의 것)
0303	낙농용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	8452 0101	액정식의 17단위 미만의 전자계산기
0306	가정용 이외의 정수기	8454 0299	별게 이외의 사무용기기(연필깎기)
0399	기타 여과용 또는 청정용의 기기	8456 0299	파쇄기와 분쇄기(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시간단 20t초과의 것)
0201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내연기관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의 기기	8459 1414	자동차 세척기
		1415	공업용 진공소제기
		0201	토목공사용의 기계류
0401	내연기관의 부분품	8462 0201	베어링 볼

CCCN	품 목	CCCN	품 목
8463 0201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의 부분품	8513 0799	기타의 유선전신전화용 기기
0204	치차(항공기 및 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을 제외한다)	8514 0201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0208	베어링 하우징(〃)	0205	헤드폰
8501 0201	출력 20kw미만의 직류발전기(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8515 0104	라디오방송용의 송신기기
0202	출력 20kw이상 400kw미만의 직류발전기(〃)	0202	폐쇄회로식의 흑백TV(녹음기 및 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0302	출력 50kw이상 200kw미만의 기타의 발전기(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결합된 것과 직류발전기를 제외한다)	0304	18인치 칼라TV(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0304	출력 400kw 이상, 1,000kw미만의 기타의 발전기	0601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를 갖춘 휴대형의 라디오 수신기
8506 0300	식품파쇄기 및 믹서와 과즙 추출기	0803	고정식의 기타 무선통신용의 수신기(장.중.단.초단과 이외의 것)
8507 0100	전기 면도기	0899	기타 무선통신용의 수신기(고정식 이외의 것)
8508 0204	시동전동기(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1199	기타의 송신기와 송.수신기의 부분품
0402	부분품(〃)	8518 0101	고정식 전해 축전기
8509 0101	조명기기 및 조명신 신호기	0102	고정식 자기 축전기
8511 0101	이화학용 전기로	0199	기타의 고정식 축전기
0102	금속처리용 전기로	0201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198	기타의 전기로	8519 0100	계전기
0301	점용접기기(아아크 용접기기를 제외한다)	0304	소켓트
0303	버트용접기기(〃)	0699	기타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또는 접송용기기(사용전압이 22kw미만의 것)
8512 0400	이용용기기	0799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또는 접속용기기의 기타 부분품
0500	전기다리미	0902	기타의 볼륨 콘트롤러
0601	전기밥솥과 밥통(겸용의 것을 포함한다)	0999	기타의 가변식 저항기
		1001	탄소피막형의 고정식 저항기
		1099	기타의 고정식 저항기

CCCN	품 목	CCCN	품 목
8521 0299	기타의 전자관	8706 0102	제8702호중 트레일러 견인용
0300	광전지		도로주행식 트렉터의 샤시
0499	기타의 트랜지스타	0300	제8703호의 샤시
0801	다이리스터	8707 0100	운반.하역용 캐리어의 부분품
0899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0201	적재중량이 3t 이하의 포오크
8523 0101	고무 또는 합성고무 절연		리프트트럭
	전선	0299	기타의 운반하역용 캐리어
0102	인조플라스틱 절연전선	8709 0102	사이드카아(260㎤ 초과)
0202	권선용 피복전선	0199	기타의 보조원동기를 갖춘
0303	기타 전력케이블		자전거(〃)
	(11KV 이상의 것)	0202	사이드카아(100㎤-260㎤_
0399	기타 전력케이블	0299	기타의 보조원동기를 갖춘 자
	(11KV 미만의 것)		전거(〃)
8525 0201	현수형 도자제 애자	0302	사이드카아(100㎤ 이하)
0202	고정형 도자제 애자	0399	기타의 보조원동기를 갖춘 자
8701 0299	기타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		전거(〃)
	주행식 트렉터	8712 0100	보조원동기를 갖춘 자전거의
8702 0103	배기량이 2,000㎤ 초과하는 경		부분품
	주용 자동차	8714 0100	이동주택용의 주거 및 캠프용
0801	국급차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03 0100	구난차	0200	화물수용송의 트레일러와 세미
0300	도로청소차, 제설차와 살포차		트레일러
8704 0300	제8703호의 샤시	0399	기타의 차량
	(원동기를 갖춘 것)	9005 0200	굴절식의 쌍안경
8705 0101	제8702호중 배기량이 2,000㎤를	9016 0202	마이크로미터와 캘리퍼스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버스와 마	9024 0301	액면계
	이크로버스를 제외)의 차체	9026 0302	액체의 적산용 계기
0102	제8702호중 배기량이 2,000㎤이		(자동기록식 이외의 것)
	하의 승용자동차(버스와 마이		
	크로 버스를 제외)의 차체		

CCCN	품 목	CCCN	품 목
9028 0101	전자식 전압자동조정기기 (조절기를 포함한다)		
0799	기타의 비전기적량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분석용기기		
9108 0101	전자식의 워치 무부먼트 (전기시계용)		
0199	전자식 워치무부먼트 (〃)		
9111 0101	휴대용시계의 무부먼트세트 및 플랫트포옴탈진기(전기구동식, 전기권식 또는 전자식의 것)		
0102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및 플렛트포옴탈진기(자동권식의 것)		
0199	휴대용시계의 기타의 무브먼트 셋트 및 플랫트포옴 탈진기		
9211 0602	비자동차용 카셋트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테이프덱을 제외한다)		
0702	카셋트의 데이프덱		
9212 0102	녹음용 카셋트테이프		
9704 0200	당구용구		
0500	기타 게임용구 및 유희용구		
9807 0100	스탬프		
9808 0100	타자기용 리본		
03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리본		
0400	기 타		

○ 산업별 수입자유화현황

구 분	총 품 목	제 한 품 목		증 감
		현 행	개 정	
계	7,915	1,203 (84.8)	970 (87.7)	233 (2.9)
1차 상품 및 음식료품	1,386	336 (75.8)	302 (78.2)	34 (2.4)
화 학 및 요 업 제 품	2,182	109 (95.0)	95 (95.6)	14 (0.6)
철 강 · 금 속 제 품	802	58 (92.8)	41 (94.9)	17 (2.1)
기 계 류	1,414	312 (77.9)	239 (83.1)	73 (5.2)
전 자 전 기	495	185 (62.6)	130 (73.7)	55 (10.1)
섬 유 류	1,089	105 (90.4)	74 (93.2)	31 (2.8)
기 타	547	98 (82.1)	89 (83.7)	9 (1.6)

※ ( )안은 자율화율(%)

○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의 조정결과

구 분	총 품 목	수입자동품목	제한품목	자율화율
현 행	254	184	70	72.4
개 정	254	198	56	78.0
증 감		+14		+5.6

- 자유화품목

정당, 폴리프로필렌, 합금강의봉강(3개)중 1개, 칼라 TV(19″ 이상), 녹음기(2개), 전력케이블(2개), 모터싸이클중 기타의 것(6개)

○ 부분수입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0515 0399	기타의 동물성생산품중 “Brine Shrimp Eggs″
0807 0400	기타의 핵과중 “버찌”
2107 1200	기타의 조제식품중 “가수분해된 식물성단백질”, 유아식 혼합제제“
8423 0101 0102	ㄱ 불도저, 앵글도저중 “330마력 이상의 것” ㄴ
8422 2100 8423 0199	ㄱ 휠로더중 “300마력 이상의 것” ㄴ
8445 0305	기타자동선반중 “단축자동선반으로 가공직물경 15㎜초과의 것”, “단능반으로 스윙 600㎜ 주축경 120㎜초과의 것”
0603	기타 호라이존틀 보오링반중 “테이블형 및 플로어형 보오링 머신으로 주축경 130㎜를 초과하는 것”
1001	원통연삭반중 “스윙 320㎜ 중심간거리 1,000㎜를 초과하는 원통연삭반”, “Angular Slide 원통형 연삭반”
1003	평면연삭반중 “작업테이블 크기 850㎜×500㎜를 초과하는 평면연삭반”, “전자척직경 570㎜를 초과하는 회전테이블 평면연삭반”
1099	기타의 연삭반중 “나사, 지그, 크랭크축, 캠, 스프라인, 기어가공 전용연삭반”
8459 1499	기타의 기계류중 “자동권선기”, 와이어프트리퍼, 조립기
8519 0602	개폐기중 “사용전압 6-24V의 것”
8702 0502	8t초과 10t 이하의 화물자동차
9028 0301	전압계와 전류계중 “자동차용으로 사용전압 6-24V의 것”
9029 0000	계기류의 부분품중 “도로주행속도계의 부분품”

○ 수입요령변경품목

CCCN	품 목	변 경 내 용
2817 0101	가성소다(고체)	석유화학협회추천 → 소다공업협회 추천
0102	가성소다(고체이외)	상공부장관 별도공고품목 → 소다공업협회 추천
2832 0101	염소산소다	상공부장관 별도공고품목 → 소다공업협회 추천
2842 0101	소다회	상공부장관별도공고품목 → 소다공업협회 추천
7116 0100	ㄱ	전품목을 공예조합연합회 추천품목으로 변경
0200	ㅣ모조신변장식용품	
0300	ㄴ	
7302 0100	페로망간	상공부장과 별도공고품목 → 철강협회 추천
0200	페로실리콘	
0900	실리콘망간	
8422 1800	하역 또는 적하용기기의 부분품	엘리베이터 부분품을 추천품목에 추가
8501 0102	출력 400kw 이상 발전기	수입제한 규격 확대(정격출력 1,000kw미만 → 정격출력 2,000kw미만)
9703 0200	모형기타의 완구	상공부장관 별도공고품목 → 완구공업협동조합 추천

〈참고〉 관계부처의 수출입공고 개정요청내용중 미반영사항

○ 수입제한요청중 미반영품목

소 관	품 목	사 유
수 산 청	○ 장 어	- 수입실적미미(61t)
	○ 산새우	- 수입실적미미(61t) ('84, 8천불)
	○ 기타의 파충류(민물거북이 등)	- 수입실적 미미 ('84, 160천불)
	○ 어류의 웨이스트	- 수입실적 미미 ('84, 110천불) - 보건위생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
산 림 청	○ 은 행	- 수입실적 미미 ('84, 16천불)
	○ 원목 및 목재(38품목)	- 장기간 수입자유화품목 - 85% 수입의존
환 경 청	○ 수은전지	- 공해방지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
상 공 부	○ 우 지	- 수입의존 불가피
	○ 팜스테아린	- 수입의존 불가피
	○ 대리석(3개 품목)	- 현재대로 수입감시품목으로 운영
	○ 화강암(2개 품목)	
농수산부	○ 누에고치	- 일정비율 수입의존 불가피
	○ 견방사	- 일정빙율 수입의존 불가피
	○ 화훼류(7개 품목)	- 수입감시품목 지정 운영
	○ 소뼈	- 현재대로 수입감시품목으로 운영

○ 수입자유화 유보요청중 미반영품목

소 관	품 목	사 유
상 공 부	○ 조당 및 정제당(3개 품목)	- 자유화후 감시품목으로 지정 운영 (제당협회 확인분만 수입허용)
	○ 모피 및 인조모피제품(13개 품목)	-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운영
	○ 비스코스레이온사(3개)	- 수입자유화후 잠정적인 보완대책을 병행하면서 원진레이온에 대한 근본적인 정상화대책 강구
	○ 63데니어 초과의 PP장섬유사	- 수입급증 가능성 없음.
	○ 재봉기 및 부분품(7개 품목)	- 장기간 보호되었으며 개방을 통한 자극 필요
	○ 차량용 동력전달장치 부분품	- 생산업체가 대기업으로서 개방에 대응능력 있음.
	○ 연필절삭기	- 대국민 홍보
	○ 그림물감 등	○ 수입동향을 보아 보완대책 강구
	○ 당구용품	- 수입동향을 보아 보완대책 강구
	○ 기타실내 유희용구	
동력자원부	○ 다이아토마이토	- 국산품 가격경쟁력 보유
	○ 활성규조토	
	○ 활성토	

다. 85/86 수출입기별공고중 개정고시

(상공부고시 제86-1호, '86.1.10 시행)

(1) 개정내용

○ 총칙 제7조(수출입제한품목 등의 예외조치)

- 조선용기자재의 예외수입추천기관 변경
  - 현행 : 조선공업협회 → 개정 : 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예외수입추천기관 변경
  - 현행 : 시·도지사 → 개정 : 시장·군수(직할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

(2) 개정사유

○ 조선기자재의 예외수입추천기관 변경

-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의 효율적 추진

조선기자재의 국산화가 상당수준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생산자조합에서 이의 수입추천을 포함한 국산화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됨.

- 수입추천업무의 일원화

조선기자재의 수입추천업무가 조선공업협회와 조선기자재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기별공고 총칙에 의한 기자재의 예외수입추천 : 조선공업협회

・ 조선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부품의 예외수입추천 : 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 생산자조합에서 수입추천업무 관장

수입추천업무는 수입제한의 취지에 따라 대부분 생산자단체에서 관장함.

※ 지금까지 조선공업협회에서 수입추천을 한 것은 조선기자재공업이 낙후되어 조선기자재 수입정책이 무리한 수입대체보다는 기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통한 조선공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설립년한이 일천하여 업무수용태세가 미비되었기 때문임.

○ 견본품의 예외수입추천기관변경

예외수입추천기관은 시・도지사인 반면 실수요자 증명은 시・군에서 발급하여 절차가 번잡하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것임(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한 건의사항임).

(2) '86-'88 수입자유화계획 공고

(상공부 공고 제85-64호, '85.11.1)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 시 : '85. 9. 7

(2) 장 소 : 상공부 대회의실

(3) 심의결과

○ 농수산부 소관품목은 산업정책심의회 상정시까지 실무협의를 계속하여 조정된 결과를 상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농수산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정책심의회 상정키로 의결

○ 조정내용

구 분	총 품 목	수입제한품목	자 유 화 계 획		
			'86	'87	'88
당 초	7,915	970 (87.7)	308 (91.6)	174 (93.8)	110 (95.2)
조 정	7,915	970 (87.7)	303 (91.6)	161 (93.6)	142 (95.4)

(4) 기타의견

○ 농수산부

농수산물중 축산물등에 대하여는 88년 이내 자유화 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대외 발표는 보류요망.

○ 경제기획원

- 수입감시 및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무역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발표된 '86자유화 대상품목과 내부결정한 '87 및 '88자유화 대상품목을 결정당시와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경제기획원실무의견 >

○ 농수산물

일부품목의 경우 연기주장에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농촌문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조정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움.

○ 공산품

- 석유화학, 화섬원료에 대하여는 대체로 당부의견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이 실질적인 독과점품목인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파라크실렌, 2에틸헥실알코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 자동차에 대하여는 '83년에 계획한대로 2,000cc 이하의 중소형을 '87년에 개방하고 2,000cc 초과 대형을 '88년에 개방 주장
- 음향기기, VTR 등 전자제품에 대하여는 '84년에 계획한대로 '87년에 개방 주장

○ 재무부 의견

- 이견 없음.

다만, 기조치한 수입자유화의 효과분석이 필요함.

○ 해외협력위원회 의견

- 미측 관심품목인 면도날('87년 예시)을 '86년에 개방 주장
- 소형 컴퓨터('87년 예시)를 '86년에 개방 요청
- 소형자동차('88년 예시)를 '86년부터 미국시장에 수출예정임을 감안하여 당초 검토대로 '87년에 자유화함이 타당(경제기획원의견과 동일)

(5) 농수산부 조정요청

당 초 예시년도	CCCN	품 명	수정 의견	비 고
'86	1507 0100	대두유	보 류	미측 관심품목
	1601 0100	소시지	〃	
	160 0100	쇠고기통조림	〃	
	0102	돼지고기통조림	'87	
	0104	가금고기 통조림	'87	
'87	0201 0400	말, 당나귀, 버새의 고기	보 류	
	0202 0101	칠면조 고기	'86	
	0199	기타 가금류고기	〃	
	0200	가금류의 식용설육	〃	
	0206 0101	햄	보 류	
	0109	베이컨	〃	
	0809 0300	감(단감제외)	무변동	
	1602 0103	양고기통조림	보 류	
'88	0806 0202	마르멜로	무변동	
	2006 0203	밀폐용기에 넣은 황도(가당)	〃	미측 관심품목
	0205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칵테일 (가당)	〃	〃
	2006 0399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의 조제과실(무과당)		
보 류	1206 0200	루플린	'86	
	0504 0200	동물의 방광	'87	
	1601 0200	기타 소시지 유사조제 식료품	〃	수입부과금 부과조건부

나. 경제장관협의회 심의

(1) 일　시 : '85. 9. 14

(2) 장　소 : 부총리실

(3) 참석자 : 부총리, 상공부장관, 농수산부장관, 경제수석비서관, 행정조정실장, 해협위기획단장

(4) 조정내용

	당초	조정		조정결과
		추　가	삭　제	
'86	303	4개 ・루플린(당초보류) ・칠면조고기┐ ・가금류고기 ｜(당초 '87) ・가금류설육┘	5개 ・돼지고기통조림┐'87 ・가금고기통조림┘ ・대두유 → '88 ・소시지, 쇠고기통조림 → 보류	302
'87	161	8개 ・돼지고기통조림┐(당초 '86) ・가금고기통조림┘ ・2,000cc 이하 ┐(당초 '88) 승용차(4) ┘ ・방광 ┐ ・소시지유사 ｜(당초 보류) 식품 ┘	9개 ・칠면조고기 ┐ ・가금류설육 ｜→ '86 ・가금유설육 ┘ ・2,000cc 이상 ┐→ '88 승용차(2) ┘ ・말고기 등, 햄, ┐ 베이컨, 양고기 ｜보류 통조림 ┘	160
'88	142	3개 ・2,000cc 이상 승용차(2) ・대두유	4개 ・2,000cc 이하 승용차(4)	141

※ 산업정책심의회 심의('85. 10. 25)
경제장관협의회의 조정결과대로 확정함.

다. 수입자유화계획 내용

(1) 목 적

연도별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개방경쟁에 대비케 하여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 발표된 수입자유화 계획중 '86년도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을 일부 수정하고 '87, '88자유화 대상품목을 확정하기 위한 것임.

(2) 검토기준

○ 1986년도 수입자유화품목은 '84.5.26에 공고한 수입자유화계획(상공부 공고 제84-22호)대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범위에서 일부 조정함.

○ '87, '88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은 1984. 2 수입자유화계획 수립시에 잠장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조정함.

- 통상정책상 특별히 필요한 품목은 가능한 한 조기 자유화 함.
- 품목별 국제경쟁력을 점거한 결과 그동안 여건변화로 다소 조정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여 자유화하는 것으로 함.
- 기타 당초 보류된 품목중 수입급증의 우려가 없는 일부 품목을 앞당겨 자유화함.

< 세부기준 >

○ 당초 계획에 비하여 수입자유화 연도가 변경이 없거나 앞당겨진 품목은 별도의 부처간 협의없이 주무부처 의견대로 확정

○ 당초계획보다 자유화 연도의 연기를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검토

- 미국의 관심품목 및 독과점 품목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자유화

- 석유화학등 기초소재와 합성단섬유등 관련 제품은 자유화시기를 상호연계하여 검토
-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산업의 보호기간, 수급상황, 가격 및 품질경쟁력, 재무구조, 가동율 등 경쟁력 현황과 자유화 연기를 허용할 시 경쟁력 확보의 전망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화 연도 조정

※ 미국 관심품목

예시년도	Priority Ⅰ	Priority Ⅱ
'86	나이론 카페트, 스파크 플러그, 윈드쉴드 와이퍼	전동공구, 스피커
'87	면도기 및 면도날, 건설장비, 컴퓨터	돼지고기통조기(당초 '86) 가금고기통조림(당초 '86)
'88	공작기계,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과일칵테일(가당), 과실칵테일(무가당)	저울, 황도(가당한 것)
보 류	설육, 오렌지, 포도쥬스	포도('92) 대두유('92, 당초 '86) 쇠고기 통조림('92, 당초 '86) 소시기('92, 다초 '86) 기타 농산물

(3) 조정내용

(가) 총 괄

(CCCN 8단위 기준)

구 분	총 품 목	수입제한 품 목	자 유 화 계 획		
			'86	'87	'88
당 초	7,915	971 (87.7)	308 (91.6)	174 (93.8)	110 (95.2)
조 정	7,915	970 (87.7)	302 (91.6)	160 (93.6)	141 (95.4)

※ ( )은 자유화율(%)

(나) 자유화를 앞당긴 품목

CCCN	품 목	자 유 화 율	
		당 초	조 정
0504 0200	동물의 방광	보 류	87
0806 0202	마르멜로	〃	88
1206 0200	루플린	〃	86
1601 0200	소시지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	87
2006 0203	밀폐용기에 넣은 황도(가당)	〃	88
0205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칵테일(가당)	〃	88
0399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조제과실(무가당)	〃	88
2914 0101	초산	87	86

CCCN	품 목	자 유 화 율	
		당 초	조 정
8453 0203	디지털 자동자료 처리기계	88	87
	(자료 전송량 32비트 미만)		
0299	기타 디지털 자동자료 처리 기계	88	87
3902 0501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보 류	87
0502	고밀도 이외의 폴리에틸렌 필름	〃	87
0503	폴리프로필렌 수지필름	〃	87
0505	염화비닐 수지필름	〃	88
0509	기타의 폴리프로필렌필름	〃	87
9904 0100	우표	〃	86
0200	수입인지	〃	87
0300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87

(다) 자유화연도를 늦춘 품목

CCCN	품 목	자 유 화 계 획		조정사유
		당 초	조 정	
<농축산물>				
0201 0400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고기	86	보 류	불요불급
0809 0300	감	86	87	농가보호
0206 0101	햄	86	보류	ㄱ
0102	베이컨	86	〃	ㅣ축산물가격
1601 0100	소시지	86	〃	ㅣ경쟁력
1602 1010	쇠고기 통조림	86	〃	ㅣ취약
0103	양고기 통조림	86	〃	ㅣ
0102	돼지고기 통조림	86	87	ㅣ
0104	가금고기 통조림	86	87	ㄴ
1507 0100	대두유	86	88	

CCCN	품 목	자유화계획		조정사유
		당 초	조 정	
<석유화학>				
2817 0101	가성소다(고체)	86	87	┐ · 사우디의
2901 0405	파라크실렌	87	88	│ 석유화학
2904 0104	2에틸헥실알코올	87	88	│ 공장가동
0301	에틸렌 글리콜	87	88	│ 등에따른
2915 0401	오르토프탈산디옥틸	87	88	│ 국제수급
2927 0100	아크릴로 니트릴	87	88	│ 불안정
2930 0200	톨루엔 디이소시아 네이트(TDI)	87	88	│ · 가격경쟁
3819 3600	┐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87	88	│ 력의 취약
3901 0215	┘			┘ 을 보완
3902 0202	고밀도 이외의 폴리에틸렌	87	88	하기 위 하여 1년 연기
<합성섬유>		87	88	┐ 원자재
5601 0201	┐ 폴리에스테르계 단섬유 ┘			│ 수입자유화
0299	┐ 아크릴계 단섬유	87	88	│ 시기와
0301	│			│ 일치
0302	│			│
0303	│			│
0399	┘			│
5602 0102	폴리에스테르계 토우	87	88	│
0103	아크릴계 토우			│
5604 0200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 (폴리에스테르계)	87	88	│
0300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 (아크릴계)	87	88	┘

CCCN	품 목	자유화계획		조정사유
		당 초	조 정	
< 기 계>				가동율저조
8704 0400	기중기차	87	88	
〈전자·전기〉				
8515 0900	텔레비젼카메라	87	88	┐올림픽상품
9211 0102	디지탈전기축음기	87	88	｜으로 신규
9211 0199	기타 전기축음기	87	88	｜개발중이므
0201	디지탈식레코드플레이어	87	88	｜로 올림픽
0299	기타 레코드 플레이어	87	88	｜개최시까지
0301	VTR	87	88	｜연기
0399	VTR	87	88	┘

(4) 연도별 주요자유화품목

(가) '86년도 수입자유화품목(총 302개 품목)

○ 공산품

- 소다회, 카본블랙, 초산, 가성소다(액체), 테레프탈산, 카프로락탐, 폴리스티렌등 석유화학제품
- 크리프트라이너, 골판지원지등 종이제품
- 합성장섬유사, 모직물, 아크릴방적사, 나이론카페트등 섬유제품
- 특수강, 강구, 동괴, 스텐레스강판 등 금속제품
- 냉동기계, 디젤엔진, 굴착기, 플레인샤프트 베아링, 식품포장 및 충전기계, 적하하역기계, 타자기, 복사기, 재봉기 등 기계류
- 화물자동차(4통 초과), 고속버스 및 일반버스, 특장차 등 자동차, 260cc 이상의 모터싸이클
- 윈드스크린와이퍼, 점화코일, 스파크플러그 등 자동차부품
- 전동공구, 알카리건전지, 용접기, 스피커 및 앰프, 칼라 TV, 브라운관 등 전자전기제품

○ 농수산물

- 칠면조고기, 기타 가금류의 고기, 가금류의 식용설육, 루풀린, 바다가재 등

○ 기 타

- 토마토소스, 인스탄트카레 등의 식품, 우표 등

(나) '87년 수입자유화품목(총 160개 품목)

○ 공산품

- VCM, 페놀, 아세톤, HDPE필름, LDPE필름, PP필름, 염료, 합성고무 등 화학제품
- 나이론단섬유, 비스코스레이온단섬유 등의 합성섬유제품
- 건설중장비, 금속압연기, 기어커팅기, 목공기계, 경도시험기 압축시험기 등 기계류
- 소형컴퓨터,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전자통신기기, 반도체, 브라운관유리 등 전자전기제품
- 짚차, 2,000cc 이하의 승용차, 마이크로버스, 소형 화물자동차등 자동차
- 기타 면도날, 손목시계, 비디오테이프(원판), 지퍼, 필기구, 수입인지 등

○ 농산물

- 돼지고기통조림, 가금고기통조림, 동물의 방광, 소시지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감

(다) '88년 수입자유화품목(총 141개 품목)

○ 공산품

- 파라크실렌, 2에틸헥실알코올, 에틸렌글리콜, D○P, AN, 모노머, TDI, PPG, LDPE, PVC 필름 등
- 폴리에스테르섬유 및 토우, 아크릴단섬유 및 토우 등 합성섬유제품

- 자동차엔진, 기중기차, 전자식중량측정기기, 금속공작기계, 베어링, TV카메라, 2,000cc 이상 승용차, 일반사진기, 선박 등 기계류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축 및 레코드플레이어, VTR 등 전자전기제품

○ 농산물
- 마르멜로, 대두유, 황도통조림, 과실칵테일, 기타의 조제좌실 등

(라) 산업별 자유화계획

구 분	총 품 목	제한품목	자 유 화 계 획		
			'86	'87	'88
1차산품 및 음식료품	1,386	302 (78.2)	22 (79.7)	5 (80.1)	5 (80.5)
화 학·제 지·요 업	2,182	94 (95.6)	45 (97.7)	30 (99.1)	10 (99.6)
철 강 · 금 속	797	35 (95.6)	30 (99.4)	5 (100)	-
기 계	1,414	240 (83.0)	91 (89.4)	55 (93.3)	94 (100.0)
전 자 · 전 기	494	129 (78.9)	65 (87.0)	42 (95.5)	22 (100.0)
섬 유	1,089	75 (93.1)	33 (96.1)	9 (96.9)	10 (97.8)
기 타	553	95 (82.8)	16 (85.7)	14 (88.2)	-
계	7,915	970 (87.7)	302 (91.6)	160 (93.6)	141 (95.4)

라. 예시 및 자유화 추진

○ '86자유화대상품목중 변경된 내용과 '87-'88자유화대상품목은 상공부공고로 예시함.

○ 예시품목은 당해연도 수출입기별공고의 정기적인 개정을 통하여 자유화 함.

○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자유화 년도를 조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Ⅰ - 9. 1986년의 수입자유화

< 1986년도 하반기 및 1987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

(상공부 고시 제85-21호, '86.7.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 일시 : '86. 5. 21

○ 회의결과 : 원안통과

- 부처간 이견이 있는 품목은 산정심에 상정하여 심의

나. 산업정책심의회 심의

(1) 일시 : '86. 5. 31

(2) 회의결과

○ 골판지원지(CCCN 4801 0999)의 자유화를 '88년으로 연기

○ 기타 : 원안통과

(3) 회의결과 조치계획

○ 건설부 : 10t초과 중차량의 신규 수입규제

CCCN	품 목
8701 0100	기타의 무한궤도식 트랙터
0300	기타의 트랙터
8702 0503	10톤 초과 트럭
0603	10톤 초과 20톤 이하 덤프트럭
0604	20톤 초과 덤프트럭

- 조치계획 : 교통부의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통하여 규제 방안 모색

○ 농수산부 : 카제인의 신규 수입제한

CCCN	품 목
3501 0100	카제인
0201	카제인염
0299	기타 카제인 유도체

- 조치계획 : 수입과에서 관련 수입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 동 조치로 실효가 없을시 수입감시품목으로 전환

○ 체신부 : 현행 총칙 제17조 제1항 제8호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물품(무기류 제외)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분의 수입”의 예외 수입규정 존치

- 조치계획 : 체신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
(6월중 별도공고를 통하여 조치)

○ 과학기술처 : 현행 총칙 제7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연구기관용 물품의 예외수입조항 존치

- 조치계획 : 견본, 부품, 시약등 소모성, 연구용물품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치하되 시설기재에 대하여는 예외수입 불허
(6월중 별도공고를 통하여 조치)

다. 개정내요

(1) 예외수입규정의 정비

○ 현 황

- 수출입기별공고 총칙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수출입제한 품목이거나 수입감시, 수입선 다변화품목인 경우에도 예외적 절차에 의해 수입가능(28개 항목)

○ 정비방안

- 원칙적으로 기별공고상의 예외수입제도는 폐지함. 다만, 거래의 특성상 별도취급이 필요한 다음 3개 항목만 존치
  · 화학적 순수등급이상의 시약의 수입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재한 미국잉여재산의 수입

- 삭제에 따라 업계의 수입절차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공부장관이 따로 수입추천기관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예외수입규정을 존치하더라도 그 예외의 범위를 기별공고상 제한의 배제에 국한하고 수입선다변화 및 감시품목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지 않음.

(2) 수입자유화

(가) 예시품목의 수입자유화

'86-'88수입자유화계획에 의거 302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되 자유화예시품목중 281개 품목은 그대로 자유화하고 21개 품목은 계획을 수정하여 자유화함.

(나) 예시품목중 수입자유화가 연기되는 품목

기계류・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예시이후 산업여건이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화시기를 연기함.

품 목	사 유	자유화년도
(기계류・소재・부품 국산화)		
○ 고탄소강의 봉강	- 특수강산업육성, 고급신소재 개발 및 사업화	88
○ 스테인레스 봉강	기간 필요	87
○ 기타 합금강 봉강	- 방위산업육성	88
○ 스테인레스강판 및 강대(3개)	- 고급강판 개발, 핫코일 국산화 (포항제철, 1,500억 투자 예정)	87(1개) 88(2개)
○ 재봉기(2개)	- 고가특수재봉기의 국산화 추진 (9개 업체에서 26개 제품개발중)	88
○ 냉매압축기(2매)	- 합작투자에 의하여 국산화 착수 (투자규모 400억, '85-'87)	88

품 목	사 유	자유화년도
○ 복사기	- 부품의 계열화, 국산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 - 위폐방지(칼라복사기)	87
○ 굴착기	-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후 개방	88
○ 자동차부분품(2개)	- 중소기업개발부품으로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보호 필요	88
○ 아나로그식 워치 무브 먼트(3)	- 전자식부품의 국산화	87
(기 타)		
○ 냉동복어	- 동남아 맹독성 복어 수입가능	보 류
○ 기타 물고기통조림	- 수입급증 가능	〃
○ 바다가재(2개)	- 사치성 기호식품	〃

(다) '87이후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의 86 자유화

○ '87년이후 자유화 대상품목중에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앞당겨 자유화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21개 품목은 닾당겨서 자유화함.

- 소라 2개(신선, 냉동)
- 염장정어리
- 염료(4개)
- 공작기계(4개)
- 내연기관 2개(260cc-2000cc)
- 건조대구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가공물홀더(목공기계부분품)
- 기계식 워치무브먼트(3개)
- 3,000t 미만탱커(2개)

(라) 신규 수입제한

○ 수입자동승인품목중 국산신기술제품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에서 신기술제품으로 선정하여 2년간 수입규제에 의한 보호를 고시(과학기술처고시 제85-14호)한 "아스파템"(원당의 대체당원임)의 수입을 신규로 제한함.

(마) 수입요령 변경

○ 수입제한승인품목중 수입요령을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고 있는 50개 품목의 수입요령을 수출입기별공고상에 직접 규정함.

○ 축산물의 수입추천기관을 농수산부장관에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변경(28개 품목)

○ 동물약품협회의 해산에 따라 동물약품용 원료의 수입추천기관을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4개 품목)

○ 일부 수산물을 별도공고(금지)에서 수산청장추천으로 변경(4개 품목)

○ 선박류의 수입추천을 주무부장관이 추천(상공부장관의 합의를 받아)하던 것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분에 한하여 상공부장관이 추천토록 변경(23개 품목)

(바) 조정결과

○ 조정내역

'86수입자유화 예시품목	302개
- '86예시품목중 자유화연기	-21개
- '87이후 예시품목중 앞당긴 품목	21개
- 신규 제한품목	-1개
'86수입자동승인품목 증가	233개

○ 조정결과

구 분	현 행	개 정	개 정
총 품 목 수	7,915	7,915	
자 동 승 인 품 목	6,945	7,246	301
제 한 승 인 품 목	970	669	
자 유 화 율 (%)	87.7	9.5	3.8

(사) 수입자유화내용

○ 주요 수입자유화품목

- 화학, 제지제품
  - · 소다회, 카본블랙, 초산, 가성소다(액체), 테레프탈산, 카프로락탐, 폴리스티렌, 고밀도폴리에틸렌
  - · 크라프트라이너, 골판지원지 등
- 섬유제품
  - · 함성장섬유사, 모직물, 아크릴방적사, 나이론카페트 등
- 철강, 금속제품
  - · 합금철, 강구, 동괴, 석도강판 등
- 기계류
  - · 냉동기계, 디젤엔진, 플레인샤프트베아링, 식품포장 및 충전기계, 적하 및 하역기계, 공작기계일부, 타자기 등
  - · 화물자동차(4통 초과), 고속버스 및 일반버스, 특장차 등 자동차, 260cc 이상의 모터사이클
  - · 윈드스크린와이퍼, 점화코일, 스파크플러그 등 자동차부품
- 전자, 전지제품
  - · 전동공구, 알칼리건전지, 용접기, 스피커 및 앰프, 칼라TV, TV브라운관 등
- 농수산물, 식품 등
  - · 칠면조고기, 기타 가금류의 고기, 가금류의 식용설육, 루풀린, 소라, 건조대구 등
  - · 토마토소스, 인스탄트카레 등

○ 수입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202 0101	칠면조 고기	2935 0301	카프로락탐
0199	기타 가금류 고기	3205 0100	산성염료
0200	가금류의 식용설육	0300	염기성염료 및 카치온염료
0301 0304	도미(활어)	0400	매염염료 및 산성매염염료
0513	마다랭이(신선, 냉장한 것)	0700	분산성 염료
0302 0200	건조한 대구	3902 0100	이온교환수지
0404	기타의 정어리	0201	고밀도 폴리에틸렌
0303 0306	소라(냉동한 것)	0204	폴리스티렌수지 및 폴리스티렌
0404	건조한 굴		공중합수지
0511	소라(신선, 냉장)	0213	에틸렌 공중합물
0901 0299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4005 0101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판,
1206 0200	루플린		시이트 및 스트립(타물질을 배
1605 0101	오징어 통조림		합하지 아니한 것)
0107	소라 통조림	0102	〃 (천연검 또는 재생고
0109	전복 통조림		무를 배합한 것)
011	게 통조림	0103	〃 (직물과 혼합한 것)
2102 0200	차 또는 마태의 엑스	0104	〃 (기타의 것)
2104 0202	토마토소오스	0200	가황용 배합을 한 천연고무
0203	인트턴트 커피		또는 합성고무의 입(粒)
0299	기타의 소오스 및 혼합조미료	0300	응고의 전후에 카아본블랙
2202 0400	기타의 음료		또는 실리카를 배합한 비가황
2520 0100	천연석고		천연 또는 합성고무의 마스터
2803 0199	기타 카아본블랙		배취
2817 0102	가성소다(고체이외의 것)	4009 0100	철강선으로 보강한 고무관
2832 0101	염소산 소다	4801 0300	크라프트 라이너
2842 0101	소다회	0501	성권의 양면크라프트지
2904 0101	메타놀		(1㎡중량이 200g 이하의 것)
0302	프로필렌글리콜	0503	양면 크라프트지를 제외한 기
0305	펜타에리즈리틀		타 성권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2911 0403	아세트 알데히드		(〃)
2914 0101	초 산	0601	양면크라프트지(1m의 중량이
2915 0203	텔레프탈산		200g을 초과하는 것)

CCCN	품 목	CCCN	품 목
0602	양면 크라프트지를 제외한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302	110데니어 이상 130데니어 미만의 아세테이트사
	(〃)	5311 0101	순방모직물(양모 또는 섬수모의 방모직물)
5101 0100	폴리아미드계 텍스춰드사	0102	혼방방모직물(양모 또는 섬수모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의 방모직물)
0201	이형단면의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0201	순소모직물(양모 또는 섬수모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의 것)
0202	63데니어 이하의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0202	혼방소모직물(〃)
0203	63데니어 초과 108데니어 미만의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0300	모직물(양모 또는 섬수모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미만)
0205	200데니어 이상 810데이너 미만의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0401	방모혼방직물(양모 또는 섬수모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의 것)
0400	폴리제스테르계 텍스춰드사	0402	소모혼방직물(〃)
0501	이형단면의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	0500	모직물(〃)
0502	63데니어 이하의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사	5312 0200	기타(수모제의 것)
0503	63데니어 초과 108데니어 미만의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	5605 0103	공통식번수 40수 미만인 아크릴계 섬유의 방적사
0504	108데니어 이상 200데니어 미만의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	0104	공통식번수 40수 이상인 아크릴계 섬유의 방적사
0505	200데니어 이상 810데니어 미만의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	5802 0301	폴리아미드섬유계의 터후트한 양탄자류
0602	63데니어 이상의 기타 폴리에스테르계 비텍스춰드사	0302	폴리아미드섬유계의 직조한 양탄자류
1301	110데니어 미만의 아세테이트사	0399	폴리아미드섬유계의 기타 양탄자류
		5903 0101	인조피혁(폴리우레탄섬유제)

CCCN	품 목
0199	기타 부직포(폴리우레탄 섬유제 인조피혁 이외의 것)
0200	부직포 제품
6102 0410	여자소녀 및 유아용 드레스(견제의 것)
0610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부라우스(견제의 것)
6601 0100	스틱겸용 긴 우산
0200	절첩식 우산
6911 0101	밥그릇
0102	술 잔
0104	주전자
0105	커피잔
0106	접시 및 쟁반
0199	기타의 식탁용 자기
0200	부엌용품
6912 0101	밥그릇
0102	술 잔
0104	주전자
0105	커피잔
0106	접시 및 쟁반
0199	기타의 식탁용 도자기
0200	부엌용품
6913 0100	완전장식용품
0200	식탁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장식용인 것)
0300	식탁용품 및 가정용품 이외의 장식품
0500	기타의 도자기제의 장식품
7302 0100	페로 망간
0200	페로실리콘
0900	실리콘 망간(철의 함유량이 4% 이상의 것)
7313 0503	두께가 3㎜미만의 석도강판
7315 1101	스테인레스강의 선재
1102	내열강의 선재
1402	내열강의 봉강과 중공 마이닝 드릴강
150	베어링강의 봉강과 중공 마이닝 드릴강
7340 0700	강 구
7401 02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401	동의 괴(정제한 것)
0402	동의 잉곳드바
0403	동의 빌렛
040	동의 스래브
099	기타의 동
7404 0199	기타 순동의 판과 대
0201	반도체제조용 활동의 판과 대
0299	기타 황동의 판과 대
0301	반도체제조용 청동의 판과 대
0399	기타 청동의 판과 대
7901 0200	합금하지 아니한 괴
0301	아연 알루미늄 합금괴
0302	아연 동 합금괴
8207 0199	기타의 투울팁
8406 0303	배기용량이 260㎤를 초과하는 내연기관
0502	배기용량이 1,000㎤를 초과하고 2,000㎤ 이하의 내연기관
0503	배기용량이 2,000㎤를 초과하고 4,000㎤ 이하의 내연기관
0504	배기용량 4,000㎤를 초과하고 10,000㎤ 이하의 내연기관

CCCN	품 목	CCCN	품 목
0505	배기용량이 10,000㎤를 초과하는 내연기관	0799	기타의 포장기계
8410 01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	0800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0499	기타의 액체펌프	0900	기타의 기계
841 0599	기타의 기체압추기(사용동력 74.6KW 미만의 것)	8420 0103	콘베이어 스케일
8412 0102	윈도우형 이외의 자장식 공기조절기(사용동력 11KW 미만의 것)	0104	홉퍼스케일
8415 0301	기타의 냉동기	0105	트럭스케일
0399	가정형냉장고, 가정형냉동고, 혈액저장용냉장고, 쇼유케이스, 아이스큐버를 제외한 냉장고와 냉동기구를 갖춘 기계	0199	기타의 중량측정기기
0499	가정형 냉장고와 냉동고의 부분품을 제외한 기타 부분품	8422 0199	별게 이외의 기타 연속작동 기계
8418 0301	여과용 또는 청정용의 기기로서 유해성 폐수처리용의 것	0201	블록과 체인블록(양하중량 10MT 이하의 것)
8419 0200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기계	0299	블록과 체인블록을 제외한 기타 폴리태클과 호이스트
03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기계	0800	잭(양하중량이 10MT 초과의 것)
0499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타의 기계	0900	기타의 적하.하역등의 기계류
05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1001	블록과 체인블록 (양하중량 10MT 초과)
0701	별게 이외의 자동포장기	1600	잭(양하중량이 10MT 초과)
0702	자동결속기	1800	부분품
0703	진공포장기	8423 0302	굴착기의 부분품
		0303	불도우저의 부분품
		0399	기타의 부분품
		8441 0101	단침직진형의 재봉기
		8445 0303	기타 터렛선반
		0304	기타 코우핑 선반
		0306	기타 입선반
		0403	기타 베드형 밀링반
		0502	기타 레이디얼 드릴랑반
		0700	톱반
		1401	에어햄머
		1499	기타의 단조기와 스탬핑머신

CCCN	품 목	CCCN	품 목
1504	프렛트닝기	2000	부분품
1603	낫칭기	8511 0201	교류아아크 용접기기
8451 0200	수동식 타자기	0299	기타의 아아크 용접기기
8459 0599	기타의 인조프라스틱 공업용 기계류	0302	봉합 용접기기
		0399	기타의 용접기기
12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기계류	8512 0602	전자레인지
		0699	기타의 가정용전열기기
1499	기타의 기계류	8513 0201	자동식 전화교환기
1501	냉방기기 부분품	8514 0101	가청주파증폭기
1503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기의 부분품	0102	스피커 시스템
		0202	확성기
8463 0206	기어박스	8515 0105	텔레비전방송용의 송신기기
0209	플레인샤프트베어링	0106	무선전화기
8501 0701	계기용변압기(유입식의 것은 제외한다)	0199	기타의 송신기와 송수신기
		0201	폐쇄회로식의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
0799	기타의 변압기		
0802	금속실리콘 정류기	0302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 (9″ - 14″)
1000	정지시콘버터		
8503 0103	알칼리망간건전지(보턴형의 것)	0303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 (14″ - 18″)
0202	알칼리망간건전기(보턴형 이외의 것)		
		0801	고정식의 장.중.단파 수상기
8505 0199	광산용 또는 토목공사용 수지식 공구	0802	고정식의 초단파 수신기
		1001	무선방향 탐지기
0201	금속표면처리용 수지식 공구	1201	천연색 텔레비전용 수상기의 튜우너
0202	기타 금속가공용 수지식 공구		
0299	기타 수지식 공구	8519 0301	콘넥터
8508 0202	점화코일	0601	차단기(사용전압이 22KV 미만의 것)
0203	배전기		
0205	스파크프러그	0602	개폐기(사용전압이 22KV 미만의 것)
0299	기타기기		
8509 0103	윈드스크린 와이퍼	0801	인쇄회로
		0901	개폐기를 갖춘 볼륨콘트롤러
		1002	금속피막형의 고정식 저항기
		8520 0199	필라멘트 전구(자동차 전자등용의 것)

CCCN	품 목	CCCN	품 목
8521 0101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용 음극선관	0202	샤시(배기량이 2,000㎤ 이하 승용자동차의 것)
0207	마그네트론	0299	샤시(기타 자동차의 것)
1000	압전기 결정소자	8707 0202	적재중량이 3t을 초과하는 포크리프트 트럭
1100	부분품(텔레비젼수상기용 음극선광의 것)	8709 0101	자동이륜차(기관의 배기용량이 260㎤ 초과의 것)
1301	트랜지스터의 부분품	8901 0303	ㄱ 총톤수 300t 미만의 탱커
1302	다이오드의 부분품	0304	ㄴ (신조선에 한함)
8702 0301	배기량이 1,000㎤ 이하의 찝형 자동차	9024 0102	금속형 압력계
0402	고속도로용 버스	0601	냉장고용 온도자동조정기기
0499	기타의 버스	0699	기타의 온도자동조정기기
0502	적재중량이 4톤 초과 10톤 이하의 일반화물자동차	9028 0102	온도.액면 또는 유량의 전자식 자동조정기기
0701	냉동 및 냉장차	0301	전압계와 전류계
0702	탱크차	0302	회로계
0799	기타의 자동차	0307	디지털 멀티 테스터
0899	기 타	0399	기타의 전자식 기기로서 전기적량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8703 0201	사다리 소방차		
0202	화학소방차		
0299	기타소방차	0499	회전속도계와 속도계
0900	기타의 특수용도차	0502	온도.액면 또는 유량의 비전자식 자동조정기
8704 0102	샤시(트레일러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의 것)	0601	전압계, 전류계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시전기계기
0201	샤시(배기량이 2,000㎤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것)	0602	회로계
0202	샤시(배기량이 2,000㎤ 이하 승용자동차의 것)	0699	기타의 비전자식 기기로서 전기적량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0209	샤시(승용자도차 이외의 것)		
8706 0201	샤시(배기량이 2,000㎤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것)	9029 0000	부분품과 부속품(제9023호 내지 제9028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전용의 것에 한한다)
		9104 0101	전자식 전기시계

CCCN	품 목	CCCN	품 목
0199	기타 전기시계	9805 0100	연필과 연필의 심
9107 0201	카렌다 및 요일 갖춘 것 (전자식 이외의 것)	0200	크레용과 파스텔
		9904 0100	우 표
0202	카렌다를 갖춘 것(〃)		
0299	카렌다 또는 요일을 갖추지 아니한 것(전자식 이외의 것)		
9108 0200	전기시계용 이외의 조립무브먼트		
9100 0101	귀금속으로 장식한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의 부분품		
0102	귀금속으로 장식한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		
911 0300	별게 이외의 휴대용 시계의 부분품		
9213 0100	축음기와 레코오드 플레이어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0300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702 0200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제의 것		
9703 0200	고무 또는 인조플라스틱제의 것		
0300	금속제의 것		
0600	기타의 모형과 완구		
9704 0400	전자식 게임기		
9801 0101	조개껍질의 단추		
0102	인조플라스틱제의 단추		
0103	금속제의 단추		
0199	기타의 단추		
0200	기타의 프레스 파스너		
0300	부분품		

○ 산업별 자유화내용

(CCCN 8단위 기준)

구 분	총품목수	현 행 자유화율	개 정		
			자유화품목	증 가	자유화율
계	7,915	87,7	7,245	300	91.5
1 차 산 품	1,386	78.2	1,106	22	79.7
화 학	2,182	95.6	2,136	48	97.9
철 강 · 금 속	797	95.6	786	24	98.6
기 계	1,414	83.0	1,266	92	89.5
전 자 · 전 기	494	73.9	430	65	87.0
섬 유	1,089	93.1	1,047	33	96.1
잡 화	553	82.8	474	16	85.7

○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

- 총 괄

	'86 1. 1	'86. 7. 1	비 고
총 품 목(CCCN 8단위기준)	278	278	
자 유 화 품 목	211	252	41
제 한 품 목	67	26	-41
자 유 화 율	75.8	90.6	

※ 총품목수는 '86. 1. 1 경제기획원고시품목임.

- 자유화품목(41개품목)

곡분음료, 나이론F사(5개), 아크릴방적사(2개), 액체가성소다, 소다회,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합금철(3), 베아링강봉강, 주석도강판, 동괴, 아연괴(3), 가정용펌프, 전력회로차단기, 트랜스밋션, TV수상기(2), 앰프세트, 전화교환기, TV용 브라운관, 인쇄회로기판, 건전지(2), 버스(2), 트럭, 자동차디젤엔진(4), 자동차차축, 모토사이클

- 수입제한품목(26개 품목)

  소시지 2(보류), 조제분유(보류), 유산균발효유(보류), 대두유('88), V.C.M('87), L.D.P.E.('88), P.V.C.('87), 합금강의 봉강('88), 스텐레스강판('87:1, '88:2), 굴착기('88), 전력회로차단기('87), 볼베아링('88), V.T.R.2('88), 승용차('87:4, '88:2), 일반화물자동차('87), 모터사이클2('87)

○ 수입요령변경품목

- 제한조치품목 수출입요령(별도공고) 흡수 : 컴퓨터등 50개
- 기타 : 59개
  - ·추천기관변경(농수산부장관→축협중앙회) :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햄, 베이컨, 천연꿀, 장, 방광, 소시지, 쇠고기통조림, 돼지고기통조림, 양고기통조림, 가금고기통조림, 기타고기통조림, 육엑스 육즙
  - ·기 타

CCCN	품 목	수 입 요 령	
		현 행	개 정
2107 0600	김(굽거나 조미한 것)	별도공고	수산청장 추천
0700	기타식용해초	〃	수산청장 추천
0106 1002	기타지렁이	〃	1. 실지렁이 : 수산청장 추천 2. 기타 : 별도공고
9505 0299	기 타	〃	2. 진주핵 : 수산청장 추천 2. 기타 : 별도공고
8901(23개)	석박류	〃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수요자소요분에 한하여 상공부장관 추천

< 참고 >

관계부처의 요청사항중 미반영 내역

(1) 수입제한요청중 미반영품목

소 관	품 목	사 유
농 수 산 부 건 설 부 문 화 공 보 부 산 림 청	○ 카제인등 (3개) ○ 10톤초과 중차량(5개) ○ 윤전기(4개) ○ 원목(38개)	○ 97%를 수입의존, 제한실익 없음. ○ 도로보존을 위한 차량 중량의 규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 ○ 현행감시제도로 목적달성 가능 ○ 원목의 대부분은 수입의존 불가피

(2) 수입자유화 유보요청중 미반영품목

소 관	품 목	사 유
체 신 부	○ 무선통신기기(6개)	○ 특별법 통합고시에 반영
상 공 부	○ 크라프트라이너 및 골판지 원지(6개) ○ 고무관 ○ 우산(2개) ○ 연필과 연필심 ○ 크레용과 파스텔 ○ 식품충전용기계	○ 대외통상 고려 ○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서 단기간에 해결 곤란 ○ 수입동향을 보아 보완대책 강구 ○ 〃 ○ 1년 연기로 품질향상 곤란 ○ 〃 ○ 수요 및 생산업체가 동일계열

Ⅰ - 10. 1987년의 수입자유화

< 1987년도 수출입공고 >

(상공부고시 제87-15호, '87. 7. 1 시행)

가. 무역위원회 심의

(1) 일시 : '87. 5. 20

(2) 심의결과

○ 무역위원회 상정안대로 고시할 것을 의결하고 수입자유화부분에 관하여 일부 이견이 있는 품목은 산업정책심의회 심의시까지 협의조정키로 함.

(3) 실무협의조정내용

○ 단감 : 농산부에서 당초 예시에서 제외된 단감의 수입자유화를 유보할 것을 요청하여 자유화를 유보키로 함.

○ 무연탄 : 현재 수입자유화품목인 무연탄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석탄산업등에 의하여 동력자원부가 수급조절조치를 취하여 수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결정에 의하도록 함.

○ 칼라복사기 : 화폐, 유가증권등의 위·변조 방지대책수립을 위하여 자유화를 1년 유보하는 안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자유화하고 관련기관이 이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여 계획대로 자유화키로 함.

○ 손목시계 무브먼트 : 무브먼트 2개품목의 자유화를 1년 연기하는 안 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에서 계획대로 자유화할 것을 주장하여 1개품목(날짜, 요일이 없는 것)에 한하여 1년 연기하도록 함.

○ 중형컴퓨터 : 당초 '88년에 자유화할 예정이었으나 대미통상관계를 감안하여 앞당겨 자유화하기로 함.

○ 아크릴로 니크릴 및 아크릴계 단섬유 6개품목 : 당초 '88년에 자유화할 예정이었으나 국내공급이 부족하므로 앞당겨 자유화하기로 함.

<부처별 의견제시>

(가) 경제기획원 의견

○ 베어링등 12개품목의 조기 수입개방

(당부입장)

○ 기본입장

- 기예시한 계획을 특별한 명분없이 앞당기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에 문제
- 대미 통상마찰 해소에 실익이 없음.
- 업계에서는 예시계획에 따라 신규투자 등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1년이라는 기간은 중요한 의미
- '88년에 모든 공산품 개방됨.
- 수입자유화정책은 장기적인 산업정책의 문제로서 일시적, 단기적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됨.

○ 품목별 검토

- 국내공급부족 및 경쟁력확보한 LDPE 및 미국관심품목으로 기 개방 결정한 천공기는 '87자유화

○ 기타는 계획대로 '88 자유화

품 목	요 청 사 유	검 토 의 견
볼베아링 롤러베아링	· 미국관심품목 · 중소기업등 개방요구	· 원자재미국산화 및 선진국의 기술공여기피로 경쟁력 취약 · 대일수입 70%, 대미 10%로 미측 실익 적으며 미측 경쟁력 있는 품목은 기자유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 미국관심품목 · 국제경쟁력 보유	· '88자유화방침을 미측에 기통보 · 일반산업용으로서 미측관심품목인 자동차용품이 아님 · 중소기업제품,가동율저조(40~50%) · '87기계류, 부품, 소재 개발대상품목 ·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 EC관심품목 · 국제경쟁력 보유	· 가동율저조(67%) · 국제가변동에 따른 산업체 질 강과 기간필요
폴리프로 필렌글리콜	· EU관심품목 · 국제경쟁력보유 · 수입파급효과미미	· 주원료(Po)전량 수입의존 - 국산화추진('87~'89 : 년간 10만톤) · 시설규모 경제단위 미달
스텐레스강판, 스텐레스강대	· 국제경쟁력보유	· '86기별공고개정시 연기한 품목을 다시 조기개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 · 핫코일 국산화추진
선박용디젤엔진	· 조선업계의 개방요구	·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 · 국산화개발초기단계

(나) 농림수산부 의견 :

○ 대미통상대책과 관련하여 조기개방하는 그레이프푸루우트쥬스, 레몬쥬스중 농축액은 자유화를 유보, 농수산부장관 추천

- 그레이프푸루우트 및 레몬은 국산감귤과 유사하여 농축액 수입시 국내과수농가 피해

○ "감"중 단감은 수입자유화 유보

- 단감은 수입자유화계획에서 유보된 품목임.

(당부입장)

○ 쥬스류 : 농축액 포함하여 '87자유화

- 대미통상대책으로서 미측에 기히 수입개방을 통보하였는바,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부의 대외공신력의 실추, 대미통상마찰 야기
- '86말에 수입개방을 결정하고 불과 1년이내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문제

(통상마찰의 주요 요인의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임)

○ 감 : 단감포함 자유화

- 단감은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되지 않고 감의 일부에 포함되는 바, 단감의 자유화 유보시 자유화품목의 1개 감소초래
- 감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수입개방으로 농가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희박함.
- 수입관리상 감가 단감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

(다) 보건사회부 의견

○ “50%이상의 조직화대두단백”의 수입자유화

- 미국관심품목(’87 한미 통상실무회의)

(농림수산부 의견)

○ 계속제한

- 대두담백은 콩의 소비와 직접대체관계, 콩의 수입자유화와 같은 결과 초래
  - 대두는 양곡관리법에 의해 수입제한
  - 대두담백은 만두, 햄버거, 피자, 소시지등의 첨가제로 뿐만 아니라 두부, 두유등 콩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 국제가격이 국내가의 1/3수준으로 수입개방시 콩재배농가 및 가공업체에 피해막대

(당부입장)

○ 대두의 수입자유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대두는 현재 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제한)

나. 산업정책심의회 심의

(1) 일　　시 : ’87. 5. 29

(2) 심의결과 :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에너지로서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과 국내탄광 및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무연탄(CCN 2701, 3개품목)을 신규로 수입을 제한함.

○ 화폐, 유가증권등의 위조·변조 방지대책수립을 위하여 칼라복사기의 자유화를 1년간 유보토록 함.

다. 개정내용

(1) 예시품목의 수입자유화

"86-88수입자유화계획"에 의하여 '87년에 수입자유화하기로 예정된 158개 푸목등 146개 품목을 계획대로 자유화함.

(2) 예시품목의 수입자유화 연기조정(12개 품목)

- '87년도 국산화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육성중인 손목시계무브먼트,아날로그 손목시계
-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육성중인 디젤엔진, 400kw 이상의 발전기
- 중소기업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취약한 고체가성소다, 트위스트드릴
- 경쟁력보완을 위한 시설투자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중인 초산에틸,석탄산
- 대외통상마찰완화를 위하여 대형승용차와 개방시기를 조정한 중소형 승용차 2개품목(1,200-2,000cc)
- 화폐, 유기증권의 위·변조 방지대책수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칼라 복사기
- 농가소득보호를 위한 단감등

CCCN	품 목	CCCN	품 목
8217 0101	가성소다(고체)	2906 0101	석탄산
2914 0102	초산에틸	8501 0102	디젤엔진결합발전기
8205 0202	트위스트드릴	8406 0899	기타내연기관
9101 0601	아날로그 손목시계	9107 0199	워치무브먼트
8702 0602	캐리올트럭형 승용차		(전자식)
	(1,000-2,000cc)	0809 0300	감
0299	기타의 승용차	9010 0102	전자식 복사기
	(1,000-2,000cc)		(칼라)

(3) '88이후 수입자유화예시품목의 '87 자유화

- 대미통상마찰완화를 위한 컴퓨터 주변기기중 6개품목, 그레이프 루루트쥬스, 대형승용차 2개품목
- 국내공급이 부족한 저밀도 폴리에틸렌, 아크릴계 단섬유 7개품목
- 경쟁력이 이미 확보된 옥탄올, 공작기계중 6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미국관심품목]		
8453 0101	아날로그 컴퓨터	8702 0102	캐리올트럭형 승용차
0102	하이브리드 컴퓨터		(배기량 2,000cc 초과)
0202	중형컴퓨터	0199	기타의 승용차
0601	천공기		(")
0602	검공기	2007 0200	그레이프루르트 쥬스
0604	음극선관 단말기		
	[국내공급 부족품목]		
5601 0301	ㄱ	3902 0202	저밀도 폴리에틸렌
0302	ㅣ아크릴계단섬유	2927 0200	아크릴로 니트릴
0303	ㅣ	5604 0300	아크릴계섬유와 웨이스트
0399	ㄴ		
5602 0103	아크릴계 토우		
	[기타 경쟁력 보유품목]		
8444 0106	형재압연기	8445 0406	안능공구밀링반
0198	기타 압연기	1602	편칭기
		1802	압출기
2904 0104	2에틸헥실알코올	1300	연삭가오기계

(4) 신규수입제한

기존의 수입자동승인품목중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에너지로서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과 국내탄광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수입관리가 불가피한 무연탄(CCN 2701, 3개품목)을 신규로 수입을 제한함.

(5) 수입요령 변경품목

(가) 부분자유화

○ 대미통상마찰완화를 위하여 기히 방침을 결정한 기타 귤류의 쥬스 중 “레몬쥬스”, 기타의 과일쥬스중 “크린베리 쥬스”, 사용동력 11kw미만의 냉매압축기중 “카쿨러용 콤프레서”의 수입을 자유화함.

○ 포도주(붉은포도주, 백포도주)의 수입허용방침에 따라 수입금지(별도공고)를 국세청장 추천으로 변경함.

○ 기타의 식물성 생산물중 국내생산이 없는 “Teasel”(식물열매로서 직물의 잔털을 세우는 데 사용)과 “목분”(선향제조용 점결제 및 증량제), “타라종자의 배유부분”(Tara Seed Kernel, 가공식품의 안정제)의 수입을 자유화함.

(나) 수입추천기관변경

○ 한·미 공동어업사업에 의한 미측 어획물의 국내반입을 수입으로 봄에 따라 이의 수입추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명태, 명란, 기타 냉동어, 피레트의 수입추천기관을 수산청장에게 한국원양어업협회로 변경함.

○ 기타 밀크류 및 과실쥬스 등 9개 품목중 의약품 및 화장품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기관을 농림수산부장관(농협중앙회)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변경하여 수입추천을 원활히 함.

○ 초산에틸의 수입추천기관을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로 변경함.

○ 생사의 수입추천기관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한국생사수출조합으로 변경함.

(다) 기타

○ 한국관세행정통계분류(CCCNK)의 변경으로 해파리등 4개품목의 세번을 CCCN 0407에서 0206으로 변경함.

(6) 조정결과

○ 조정내역

'87수입자유화 예시품목	158개
- '87예시품목중 자유화연기	-12개
- 신규수입제한품목	-3개
- '87이후 예시품목중 앞당긴 품목	24개
'87수입자동승인품목 증가	167개

○ 조정결과

(CCCN 8단위 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증 가
총 품 목 수	7,911	7,911	
자 동 승 인 품 목	7,241	7,408	167
제 한 승 인 품 목	670	503	
자 유 화 율 (%)	91.5	93.6	2.1

○ 수입자유화 품목(107개)

구 분	품 목
농수산물(5개)	동물의 방광, 소시지유사식품, 돼지고기통조림, 가금 고기통조림, 그레이프푸루우트쥬스
화학제품(24개)	2에틸헥실알코올(옥탄올), AN모노머, 오르토크실렌, VCM, 클로로플로로메탄, 부틸알콜, 아세톤, 무스말레인산, 무스프탈산, 아민관능화합물(4개), 아조디카본아미드, 조제고무노화방지제, PVC수지, LDPE수지, 석유수지, HDPE필름, LDPE필름, PP필름(2개), 합성고무(2개)

구 분	품 목
섬 유 (15개)	나일론단섬유(4개), 기타합성단섬유, 비스코스단섬유(3개), 아세테이트토우, 아크릴단섬유(6개)
철 강 (2개)	스테인레스봉강, 스테인레스강판(두께 3-4.75미리)
기 계 (59개)	산업용엔진부분품, 차량엔진부문품, 차량엔진용액체펌프, 건설중장비(12개), 연압기(5개), 공작기계(9개), 목공기계(4개), 냉방기기, 베어링부분품, 도로주행식 트랙터, 승용차(6개), 마이크로버스, 트럭(4t이하), 덤프트럭(2개), 오토바이(2개), 항장력·경도·압축·충격시험기(4개), 가스미터, 손목시계(3개), 녹음기부분품, 손목시계무브먼트(2개)
전 자 (48개)	브라운관유리, 동박적층판, 아날로그컴퓨터, 하이브리드컴퓨터, 천공기, 검공기, 음곡선관단말기, 중소형컴퓨터(3개), 400kw미만 발전기, 전동기(4개), 변압기(3개), 유선통신기기(7개), 무선통신기기(3개), 전기회로의 개폐·보호·접속기기(3개),배전반 및 조절반(3개), 전자부품(12개), 비데오테이프(2개)
잡 화 (17개)	면도날 및 면도기(3개), 지퍼(6개), 필기구(6개), 수입인지등(2개)

○ 수입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504 0200	방광	0502	고밀도 이외의 폴리에틸렌 필름
1601 0200	소시지 유사 조제식료품 (육, 설육 또는 동물의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0503	폴리프로필렌 수지필름으로서 금속을 증착한 것
		0509	기타의 폴리프로필렌 필름
1602 0102	돼지고기 통조림	4002 0201	폴리부타디엔(합성고무)
0104	가금고기통조림	0203	폴리부타디엔스티렌(합성고무)
2007 0200	그레이프프루트쥬스	5601 0101	이형단면의 폴리아미드계 단섬유
2901 0403	오르토크실렌		
2902 0101	염화비닐 모노머(Viny1 Chloride Monomer)	0199	기타 폴리아미드계 단섬유
		0301	이형단면의 아크릴계 단섬유
0204	클로로 홀로로메탄	0302	콘쥬케이트한 아크릴계 단섬유
2904 0103	부틸알코올	0303	모드아크릴단섬유
0104	2에틸헥실알코올	0399	기타 아크릴계 단섬유
2913 0201	아세톤	0600	기타 합성단섬유
2915 0102	무수말레인산	0701	이형단면 비스코스레이온 단섬유
0201	무수프탈산		
2922 0210	엔-페닐-엔-이소프로필-파라-페닐린 디아민	0702	포리노직 비스코스레이온 단섬유
		0799	기타의 비스코스레이온 단섬유
0211	엔-(1.3-디메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5602 0101	폴리아미드계 토우
		0103	아크릴계 토우
0212	디페닐아민과 아세톤의 반응물	0202	아세테이트 토우
0399	기타의 아민관응 화합물	5604 0100	폴리아미드계의 단섬유와 웨이스트
2927 0200	아크릴로 니트릴	0300	아크릴계의 단섬유와 웨이스트
2928 0201	아조디 카아본 아미드	7011 0101	전자관용의 유리구(냉음극선 수상관의 것)
3819 0300	조제한 고무노화방지제		
3902 0202	고밀도 이외의 폴리에틸렌	7315 1401	스테인레스강의 봉강과 중공마이닝 드릴강
0205	염화비닐 수지		
0214	석유수지 및 구마론 인덴수지	2401	두께가 3mm이상 4.75mm이하의 스테인레스강판(압연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0501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CCCN	품 목	CCCN	품 목
7405 0101	동의 박(인쇄회로기판 제조에 적합한 형상의 것으로서 보강제를 붙인 것)	8423 0101	자주식 불도우저
		0102	자주식 앵글도우저
		0106	자주식 그레이더
8211 0100	보통면도	0109	휠로우더
0200	안전면도 및 그 부품	0110	크로라 로우더
0399	기타의 면도날	8444 002	선재압연기
8406 0904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내연기관의 부분품	0103	판재압연기
		0104	관압연기
0999	기타 내연기관의 부분품 (철도 차량용의 것과 항공기용의 것을 제외함)	0106	형재압연기
		0198	기타의 금속압연기
9410 0304	차량용 내연기관의 액체 펌프	8445 0201	수치제어식 기어커팅기
		0399	기타의 선반
8422 0499	양하중량이 10MT 이하의 크레인중 케이블크레인과 크로라 크레인을 제외한 기타 크레인 (연속 작동기계 이외의 것)	0405	기타 평삭 밀링반
		0406	기타 만능공구밀링반
		0899	기타의 평삭반
		1300	기타의 연삭반 및 이와 유사한 기계
1900	휠로우더(양하중량이 10MT 이하의 것으로서 연속 작동기계 이외의 것)	1602	펀칭기
		1704	액압프레스(100MT 이하의 것)
		1802	압출기
2000	클로라 로우더(〃)	8447 0103	목공용 공작기계
1202	클로라크레인(양하중량이 10MT을 촉hk하는 것으로서 연속작동기계 이외의 것)	0199	기타의 목재가공기계
		0201	절삭가공기
		0299	기타의 가공기계
1299	케이블크레인, 클로라크레인 이외의 기타 크레인(〃)	8453 0101	아날로그 자동자료처리기계
		0102	하이브리드 자동자료처리기계
2100	휠로우더(양하중량이 10MT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연속작동기계 이외의 것)	0202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의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16메가바이트 미만의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중앙처리장치를 갖춘것으로서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2200	크로라로우더(〃)		

CCCN	품 목	CCCN	품 목
0203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미만의 것으로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	0604	용량 1,000KVA 이상 10,000KVA 미만의 유입식 변압기
		0605	용량 10,000KVA 이상 60,000KVA 미만의 유입식 변압기 (〃)
0299	기타의 디지털 자동자료 처리기계(〃)	8513 0399	기타의 방송용 통신기기
0601	천공기	0401	텔리타이프
0602	검공기	0402	텔리프린터
0604	음극선관 단말기	0499	기타의 인쇄전신기기
8459 0900	냉방기기(카쿨러를 포함한다)	0500	영상전신기기
8462 0299	기타의 베아링 부분품	0600	모사전송기기
8501 0101	출력 400KW 미만의 발전기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결합된 것)	0807	공중통신용 전자식자동교환기 부분품
		8515 0101	인쇄전신기기
		0102	영상전신기기
0506	출력 373KW 이상 373KW 미만의 전동기(직류전동기, 동기전공기 및 정류자전동기는 제외한다)	1003	레이다
		8519 0501	차단기(사용전압이 22KV 이상의 것)
		0502	개폐기(〃)
0507	출력 74,600W 이상 373KW 미만의 전동기(〃)	0599	별게 이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또는 접속용기기(사용전압이 22KV 이상 것)
0508	출력 373KW 이상 746KW 미만의 전동기(직류전동기, 방폭 또는 수중형전동기, 동기전동기 및 정류자전동기는 제외한다)	1201	배전반
		1203	자동조절반
		1299	기타의 조절반
0509	출력 746KW 이상의 것으로 1,492KW 미만의 전동기 (〃)	8521 0401	실리콘 트랜지스터
		0501	실리콘 다이오드
		0502	게르마늄 다이오드
0603	용량 200KVA 이상 1,000KVA 미만의 유입식 변압기	0599	기타 다이오드
		1600	발광 다이오드
		0600	정류기소자
		0901	대규모 직접회로(LSI)

CCCN	품 목	CCCN	품 목
0902	초대규모 직접회로(VLSI)	0601	적재중량 4t 이하의 덤프트럭
0998	기타의 직접회로	0602	적재중량이 4t 초과 10톤 이하의 덤프트럭
0999	기타의 초소형 전자회로		
1304	반도체 제조용의 부분품	8709 0201	자동이륜차(배기용량 260㎤이하 100㎤ 초과의 것)
1400	초소형전자회로의 부분품		
8701 0201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렉터	0301	자동이륜차(배기용량 100㎤의 이하의 것)
8702 0101	배기량이 2,000㎤를 초과하는 찝형자동차(화객겸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9022 0101	항장력 시험기
		0102	경도시험기
		0104	압축시험기
0201	배기량이 2,000㎤이하 1,000㎤ 초과의 찝형 자동차(〃)	0107	충격시험기
		9026 0201	기체의 적산용계기
0102	배기량이 1,000㎤ 초과 캐리올트럭형, 세단딜리버리용 기타 이와 유사한 승용차	9101 0201	금. 백금, 진주, 귀석, 반귀석, 상아, 산호, 별갑등을 케이스, 문자판, 밴드등에 사용하거나 장식한 휴대시계(스톱워치, 맹인시계를 제외한다)
0199	배기량이 2,000㎤초과 기타 승용자동차(버스와 마이크로버스를 제외하며 화객겸용자동차를 포함한다)	0298	전자식의 기타 휴대시계
		0299	기타 별게이외의 휴대시계
0302	배기량이 1,000㎤이하 케리올트럭형, 세단딜리버리형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차(화객겸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9107 0101	워치 무브먼트(카렌다 및 요일 갖춘 것, 전자식의 것)
		0102	워치무브먼트(카렌다를 갖추 것, 전자식의 것)
0399	배기량이 1,000㎤이하 기타의 승용자동차(버스와 마이크로버스를 제외하며, 화객겸용자동차를 포함)	9212 0201	비데오테이프(VHS형의 것)
		0202	비데오테이프(Beta Max형의 것)
0401	마이크로버스	9213 0200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501	적재중량 4t 이하의 일반 화물자동차		

CCCN	품 목	CCCN	품 목
9802 0101	인조플라스틱제 슬라이드 화스너		
0102	금속제 슬라이드화스너		
0199	기타의 슬라이드화스너		
0201	인조플라스틱제의 부분품		
0202	금속제의 부분품		
0299	기타의 부분품		
9803 0101	만년필		
0102	보올펜		
0103	싸인펜		
0104	마아커펜		
0199	기타의 필기용구		
0200	부분품과 부속품		
9704 0200	수입인지		
0300	기타		

○ 산업별 자유화내용

(CCCN 8단위 기준)

구 분	총 품 목	자 유 화 계 획		
		'86	'87	'88
계	7,911	7,242 (91.5)	7,408 (93.6)	167
1차산품 및 음식료품	1,382	1,102 (79.7)	1,104 (79.9)	2
화 학 및 요 업 제 품	2,182	2,137 (97.7)	2,161 (99.0)	24
철 강·금 속 제 품	792	786 (99.2)	788 (99.5)	2
기 계 류	1,415	1,265 (89.5)	1,324 (93.6)	59
전 자·전 기 기 기	495	430 (86.7)	478 (96.6)	48
섬 유 제 품	1,089	1,047 (96.1)	1,062 (97.5)	15
잡 화	556	474 (85.3)	491 (88.3)	17

주 : 1. ( )안은 수입자유화율 (%)임.

2. 총품목수는 종전 CCCN 8단위기준 7,915개에서 CCCNK 변경으로 4개 줄어든 7,911개가 됨.

○ 시장지배적사업자 품목

- 수입자유화율

(CCCN 8단위 기준)

	현 행	개 정	증 가
총 품 목 수	298	298	
수입자동품목	257	272	15
수입제한품목	41	26	
자 유 화 율(%)	86.2	91.2	5.0

- '87자유화품목(15개)

  염화비닐모노머(VCM), 염화비닐수지(PVC), 스텐레스강판(두께 3~4.75미리), 1,000cc이하 승용차(2개), 2,000cc초과 승용차(2개), 4톤이하 일반화물자동차, 오토바이(2개), 전자복사기(칼라제외), 손목시계(3개), LDPE수지

- 수입제한품목(26개)

  소시지(2개), 조제분유, 유산균발효유, 커피크리머, 대두유, 합금강의 봉강, 스텐레스강판 및 강대(2개), 굴착기, 트랜스밋션, 볼베아링, VTR(2개), 1,000~2,000cc승용차(2개), 자동차 차축, 일반화물선(8개), 아날로그 손목시계

○ 수입요령 변경품목

CCCN	품 목	수 입 요 령		비 고
		현 행	개 정	
2007 0102	오렌지농축액	농협중앙회추천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 : 의약품수출입 협회 추천 기타 : 농협추천	추천기관 변경
0300	기타 귤류의 쥬스	농수산부장관 추천	레몬쥬스 : AA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 : 의약품수출입 협회 추천 기타 : 농림수산부 장관추천	부분자유화 추천기관 변경
0101 0400 0500 0601 0602 0603	오렌지쥬스 파인애플쥬스 토마토쥬스 사과쥬스 포도쥬스 복숭아쥬스	┐ │ │ 농수산부 │ 장관 추천 │ ┘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 : 의약품수출입 협회 추천 기타 : 농림수산부 장관 추천	추천기관 변경
0699	기타의 과일 쥬우스	(생략)	그렌베리쥬스 : AA 기타 : 현행과 같음	부분자유화
0402 0400	기타밀크(훼이제 외)와 크림	유가공협회 추천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 : 의약품수출입 협회 추천 기타 : 유가공협회 추천	추천기관 변경
1405 0599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	Corn Cob Grit : AA 기타 : 별도공고	Teasel, 목분 : AA 기타 : 별도공고	부분자유화

CCCN	품 목	수 입 요 령		비 고
		현 행	개 정	
8411 0401	사용동력 11kw 미만의 냉매 압축기	냉동공조공업협회 추천	카쿨러용 콤프레서 : AA 기타 : 냉동공조공업 협회 추천	부분자유화
0206 0201	해서동물의 것	수산청장추천	해삼창젓, 성게젓, 해파리(비건조) : AA 기타 : 수산청장추천	CCCNK 변경
0301 0612 0613 0800	명태(냉동) 명란(〃) 피레트(〃)	수산청장추천	한·미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 원양어업협회 추천	추천기관 변경
0699	기타 냉동어(냉동)	수산청장추천	기타 : 수산청장추천 한·미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 원양어업협회	
2205 0100 0200	붉은포도주 백포도주	원액 : 국세청장 기타 : 교통부장관 별도공고	기타 : 수산청장추천 국세청장, 교통부장관 추천	부분자유화
2914 0201	초산에틸	석유화학공업협회 추천	정밀화학공업협회 추천	추천기관 변경

※ 자유화 유보요청중 미반영품목

CCCN	품 목	요 청 사 유	검 토 결 과
7011 0101	브라운관용 유리	· 생산능력확대를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중	· 주수입선이 일본으로서 다변화 검토
9101 0201	귀금속장식손목시계	· 외제서호도가 높음 · 무브먼트의 미국산화	· 독과점품목
1602 0102	돼지고기통조림	· 원료고가, 농가보호 · 육가공산업 유치단계	· 미국관심품목
160 0200	소시지유사조제 식료품	· 수입개방시 사실상 육가공제품 전반의 수입개방과 같은 결과 초래	· 〃
(0809 0300)	단감	· 당초예시에서 단감 제외	· 수입금증으로 인한 농가피해 우려없음
(2007 0200)	그레이프푸르트 쥬스 농축액	· 대미통상관련 수입자유화대상에서 농축액 제외	· 수입개방방침을 미측에 기통보
(0300)	레몬쥬스 농축액		· 농축액제외는 대외적 공신력문제, 통사마찰 초래 가능

라. '87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상공부고시 제87-40호, '88. 1. 시행)

(1) HS전환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 수입자유화율

(단위 : 개)

	총 품 목	규제품목	자유화품목	자유화율(%)
CCCN(8단위)	7,911	503	7,488	93.6
H S(10단위)	10,222	864	9,358	91.5

※ HS품목분류추진현황 : 참고

(2) 수입자유화

○ 신규수입자유화

- 수입 완전자유화 : 6개 품목

H S	품 목	종전수입요령	비 고
0511 99 3000	수정란	축협추천	·주종인 소, 돼지의 수정란은 통합공고에 의거 제한되고 있음.
2924 29 9090	아스파템	별도공고	·신기술제품보호기간 종료
7214 60 1000	평면의 봉강	ㄱ	·국내생산 불가
60 9000	기타의 봉강	ㅣ	·종전에도 사실상 전량 자동 추천함.
7219 24 0000	스텐레스 열연강판 (두께 3㎜ 미만)	ㅣ철강협회추천 ㅣ	
7220 12 0000	스텐레스열연강판 (두께 4.75㎜ 미만)	ㅣ ㄴ	

- 부분적 수입자유화 : 2개 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비 고
		종 전	개 정	
1212 99 9000	기타식물성 생산품	산개, 타라종자의 배유부분 : AA 기타 : 축협추천	화분 : 축협추천 기타 : AA	
2106 90 9090	기타 조제식료품	(생략)	커피조제용 첨가물 :AA 기타 : 현행과 같음	

○ 수입제한내용의 변경 : 3개 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비 고
		종 전	개 정	
0208 20 0000	개구리 다리	축협추진	별도공고	축협추천 대사아님.
0208 90 9000	기타의 육과 식용설율	축협 또는 수산청장 추천	해양동물의 것 : 수산청장 추천 기타 : 별도공고	축협추천 대상 없음.
0307 49 1020	오징어 (냉동)	수산청장 추천	한미(카나다 포함)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 원양어업협회 추천 기타 : 수산청장 추천	수산청장 요청

< 참고 >

H S 기준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

(가) 목 적

'88.1.1부터 HS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수출입공고등의 품목분류체제를 현행 CCCN으로부터 HS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나) HS분류변경 추진현황

- '85. 6. 한국, HS협약기업
- '87. 7. 재무부, HS기준 한국통일상품분류 고시
- '87. 8. 당부, 무역관련 각종 규정의 HS관련 정비작업 착수
- '87. 10. HS협약비준 및 HS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국회동의
- '87. 11. 각 부처, HS실시 대비중
  - ·상공부 : 수출입공고등 HS전환작업 완료
  - ·재무부 : HS에 대한 관세조정협상 완료단체
  - ·관세청 : HS실시 도상연습 빛 통관통계 조정작업중

(다) 시행시기 : 1988.1.1

- 한국통일상품분류고시에서 HS협약의 효력발생시기부터 시행토록 규정
- 한국이 가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HS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제1조에 의거, 17개국 이상이 서명한 후 3개월이후의 첫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9개국이 서명 (비준조건부 서명국포함시 51개국)하였으므로 '88.1.1부터 시행하게 됨.

(각국의 추진상황)

- EC제국, 일본, 북구제국, 호주등 50개 국가이상이 '88.1.1부터 HS실시 예정
- 미국 : 종합무역법안에서 분리하여 별도입법으로 HS실시 추진중임.
  - ·민주당(상원)의 반대로 연내입법가능성 불투명
  - ·USTR은 연내 의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중
  - ·미국의회관련 전문가들은 동법안의 연내통과를 낙관

마. 한·미통상관계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배경

(가) 재정·무역적자의 급격한 증가

○ '80년대 전반기 달러화 강세로 무역적자 크게 확대
- '85년 상반기중 채무국으로 전락되어 '87년말 순외채, 3,682억 달러임

○ 공급증시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확대
- '87년이후 점차 개선추세이나 그간 재정적자누계는 2조3천억 달러에 이름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 추이

(억달러)

	'80	'84	'86	'87
무 역 적 자	314	1,224	1,562	1,712
재 정 적 자	738	1,853	2,212	1,504

(나)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

○ 상품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 일본의 부상
- 산업공업국들과의 경쟁 확대

(다) 미·일간의 무역분규가 신흥공업국으로 확대

○ 미국의 애일무역적자 증대 ('84 ; 368억불 → '86 ; 585억불)
- 대일무역적자 : 368억달러('84) → 585억달러('86)

○ 일본의 미온적 시장개방 조치

(라) 의회의 정치적 압력

○ 무역문제 해결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 불신
- 1930년이후 최고조의 보호주의 분위기

○ '88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통상문제를 전략화 하여 각종 보호주의 법안 제안을 통한 대행정부 압력 가중

- '88.8.23 종합무역법안의 입법이 확정됨.
- 미국경제 회복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 및 무역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규정을 둠.
- 주요내용
  -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 강화
  - 각종 수입규제 제도의 강화
  -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
  - 환율 적정평가를 위한 협약 추진

(2) 신통상정책 방향

(가) 자유무역으로부터 공정무역 추구

○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강화

- 반덤핑, 상계관세
- 337조 (지적소유권 침해방지)

○ 301조 발동등 상대국의 시장개방 촉구

(나) 쌍무주의 또는 상호주의 적용강화

○ 상대국의 시장개방,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정도에 따라 특혜관세 (GSP)수혜폭 결정

○ 무역문제 해결에 양자 협상방식 강조

- GATT의 다자주의 원칙 이탈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이스라엘, 카나다)

(다) 상품무역 중신에서 서어비스 무역의 강조

○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서어비스무역 장벽제거 및 서어비스무역 규범개발 노력

- 미국GNP의 68%, 고용의 74%

○ New Round협상에 서어비스무역 포함 주장

(라) 기 타

○ 수출진흥책 별도 시행 (기금조성 및 Incentive 등)

○ 행정부(USTR)의 대외협상권 강화 등

(3) 한·미 통상관계

(가) 교역관계

○ 대미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

- 대미 수출의존도 : '81년 26.5% → '87년 38.7%

○ 대미 흑자폭의 확대 통상마찰 심화

- 대일적자 및 대미흑자의 확대로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렵게 됨.

대미 교역의존도

(%)

	'81	'83	'85	'86	'87
수 출	26.5	33.6	35.5	40.4	38.7
수 입	23.1	23.9	20.8	20.2	21.3
교 역	24.6	28.5	28.0	30.8	30.6

주요교역국과의 무역수지(통관기준)

(백만달러)

	'81	'83	'85	'86	'87
전 체	-5,138	-1,747	-853	3,130	6,261
대 미	-389	1,845	4,265	7,335	9,553
대 일	-2,929	-2,881	-3,017	-5,444	-5,220
대 E C	762	873	169	1,090	2,050

(나) 통상관계

(1) 미국의 수입자유화 요청

○ 미국의 요청품목 ('83년이후 현재까지)
쇠고기, 오렌지, 포도주, 아몬드, 알파파초, 대두유 및 면실유, 쵸코렛, 조제과실, 담배 및 시가, 화장품, 파일직물, 카페트, 공작기계, 건설장비, 컴퓨터, 카메라, 자동차 등

○ '84년이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수입개방 조치한 품목중 미국의 관심품목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품목별	품 목 명
'84	9	쵸코렛, 화장비누, 반제마루판, 케페트 (나일론 제외), 파일직물, 확성기 (5″이하)등
'85	10	아몬드, 면실유, 옥수수통조림, 화장품(일부), 건설장비 (일부), 공작기계(일부), 버찌 등
'86	17	섬유사, 밧데리, 전동공구, 자동차부품, 소다회, 크라프트라이너, 나일론카페트, 공작기계 등
'87	9	면도기와 면도날, 발전기 및 엔진부품, 소형컴퓨터, 돼지고기통조림, 과일쥬스, 건설장비
'88	10	조제과실(일부), 중량측정기기, 굴착기, 자동차, 공작기계, 컴퓨터주변기기, 베아링, 발전기, 카메라
자유화 보류		쇠고기, 알파파초, 포도주 및 샴페인, 냉동어류, 포도, 오렌지, 소시지 등

(2) 대응방향

(가) 대미무역흑자의 적정관리

○ 과도한 무역수지흑자의 부작용
- 물가압력, 수출 및 내수산업간 불균형 심화
- 외국의 시장개방 및 환율절상 압력 가중

○ 따라서 흑자의 적정수준 관리 필요
- 환율조정보다는 시장개방으로 대응
- 수출의 축소보다는 수입증대 도모
- 실질적인 시장접근 수입증대 도모
- 지역간 무역불균형을 개성하기 위한 수출입선 다변화시책 병행 추진

(나)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노력

○ 농산물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
- 공산품
  · 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
  · 불필요한 수입제한적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
- 서비스시장
  · 국내산업 발전정도를 감안, 단계적인 개방 추진
  ·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

○ 농산물의 단계적이고 신중한 개방 검토
- 농가소득 증대, 농업부문 구조조정 추이와 국제규범 정립 추이를 감안, 개방속도를 조정
- 협의제의에는 적극 대응, 미측의 불만완화 노력
- 궁극적으로 농산물도 개방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고려, 장기적인 개방 및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시장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 보완대책 수립으로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선대책수립, 후개방 원칙을 견지

Ⅰ - 11. 1988년의 수입자유화

(1) 4.1 수입자유화

(상공부고시 제88-7호, '88.4.1 시행)

가. 추진경위

○ 2.16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된 흑자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86년 42억불 흑자에 이어 '87년에는 76.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기조가 정착되었으며 금년에는 흑자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흑자폭 증대에 따른 대외적 개방압력의 완화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와 함께 수입증대의 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확대균형적 흑자관리대책 추진

○ 2.19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의

나. 개정내용

(1) 예시품목의 수입자유화

○ 수입자유화계획에 의거 예시된 133개품목중 농산물 2개품목(대두유, 황도통조림)을 제외한 131개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함.

(2) 수입자유화 유보품목중 일부품목의 조기개방

○ 1989년도 이후로 수입자유화가 유보된 370개품목중 조기개방이 가능한 14개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함.

- 펄프(3개)
- 동식물표본(3개)
- 귀금속 및 귀석의 제품, 세공품(8개)

(3) 신규수입제한

- 수입감시품목 축소방침에 따라 수입감시대상에서 해제되는 품목중 설탕류 3개품목은 이를 수입감시대상품목에서 해제하고 수출입공고에 반영하여 수입을 계속 제한하도록 함.

(4) 개정결과

(단위 : 개, %)

	현 행		개 정		증 가	
	CCCN	HS	CCCN	HS	CCCN	HS
총 품 목	7,911	10,205	7,911	10,205	-	-
자동승인품목	7,408	9,358	7,550	9,606	142	262
제한승인품목	503	861	361	599	△142	△262
수입자유화율	93.6	91.7	95.4	94.1	1.8	2.6

* CCCN 8단위, HS 10단위

(5) 수입자유화 내용

○ 주요수입자유화품목

산 업 별	'88 개방예시품목	개방유보품목중 조기개방품목
1 차 산 업	마르멜로, 과일칵테일, 기타조제과일 등 3개	
화 학 제 품	석탄산, 고체가성소다, 파라크실렌, PVC필름, TDI, DOP, PPG등 12개	
철 강·금 속	스텐레스강, 합금강등 4개	
기 계 류	중소형자동차, 엔진, 기중기차, 베어링, 금속공작기계, 진공펌프, 압축기, 35mm 사진기, 아날로그손목시계, 전자식중량측정기, 공업용미싱, 드릴, 선박등 91개	
전 자·전 기	컴퓨터기기, VTR, TV 카메라, 전축, 발전기등 17개	
섬 유 제 품	폴리에스테르계 단섬유 및 토우 4개	
기 타		세공품(5개), 동식물표본(3개), 공업용진주(3개)
계	131개	14개

○ 1988. 4. 1 수입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808 20 2000	마르멜로	5501 20 0000	폴리에스테르계 토우
2008 92 1000	과일칵테일	5503 20 1000	폴리에스테르계 단섬유
92 2000	과일샐러드		(이형단면의 것)
92 9000	기타 과실혼합류	20 9000	〃 (기타의 것)
99 9000	기타 조제과실	5506 20 1000	〃 (이형단면의 것)
		20 9000	〃 (기타의 것)
2815 11 0000	고체의 가성소다		
2902 43 0000	파라-크실렌	7114 11 1000	은제세공품(식탁용)
2905 31 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1 2000	〃 (화장실용)
2907 11 1000	페놀	11 3000	〃 (사무실 및
2915 31 0000	초산에틸		〃 책상용)
2917 32 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산	11 4000	〃 (끽연용)
32 9000	기타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11 9000	〃 (기 타)
2929 10 1000	톨루엔 디이 소시아네이트	19 1000	기타 귀금속제 세공품
3823 90 9090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식탁용)
3907 20 2000	폴리옥시프로필렌	19 2000	〃 (화장실용)
3920 41 0000	경질의 염화비닐수지필름	19 3000	〃 (사무실 및
42 0000	연질의 염화비닐수지필름		〃 책상용)
3921 90 4010	경질의 염화비닐수지필름	19 4000	〃 (끽연용)
90 4020	연질의 염화비닐수지필름	19 9000	〃 (기타)
4703 21 1000	화학목재펄프(침엽수류의 것)	20 1000	비금속제 세공품
21 2000	〃 (〃)		(식탁용)
29 1000	〃 (활엽수류의 것)	20 2000	〃 (화장실용)
29 2000	〃 (〃)	20 3000	〃 (사무실 및
4704 21 0000	〃 (침엽수류의 것)		〃 책상용)
29 0000	〃 (활엽수류의 것)	20 4000	〃 (끽연용)
4804 41 9000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20 9000	〃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것, 1㎡당	7116 20 1000	귀석 또는 반귀석제의 것
51 0000	150g 초과 225g 미만의 것)		(공업용)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20 9010	〃 (신변장식용)
	(표백하지 아니한 것, 1m 당	20 9090	〃 (기타)
	225g 이상의 것)		

CCCN	품 목	CCCN	품 목
7214 60 2000	원형의 봉강(탄소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	40 0000	기체 압축기(예인용)
7215 40 0000	기타 봉강(〃)	80 9220	기타의 기체압축기 (74.6-373kw)
7219 33 0000	냉간압연한 스테인레스강 (두께 1-3㎜, 폭 600㎜이상)	8423 10 0000	체중기(유아용저울포함)와 가정형의 저울
34 0000	냉간압연한 스테인레스강 (두께 0.5-1㎜, 폭 600㎜이상)	20 1000	콘베이어용 연속계량기 저울(콘베이어 스케일)
35 0000	냉간압연한 스테인레스강 (두께 0.5㎜, 폭 600㎜이상)	20 2000	〃 (휘이드 미터 또는 휘이드웨이어)
7220 20 0000	냉간압연한 스테인레스강 (폭 600㎜ 미만)	20 9000	기타 콘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
7228 20 0000	실리코 망간강의 봉	30 0000	정량저울
30 0000	기타 봉	81 0000	기타의 중량측정기기 (30kg 이하)
40 0000	기타 봉	82 0000	〃 (30-5,000kg)
50 0000	기타 봉	89 1000	〃 (트럭스케일)
60 0000	기타 봉	89 9000	기타의 중량측정기기
80 0000	중공 드릴 봉	8425 52 1000	엑스카베이터
8207 50 1000	드릴	8452 10 1020	가정형 재봉기 (지그재그형)
8407 31 1000	모터사이클엔진(50cc 이하)	10 1030	〃 (프리아암식)
32 1000	모터사이클엔진(50-250cc)	10 1090	〃 (기타)
33 1000	모터사이클엔진(250-1,000cc)	21 1000	기타의 재봉기 (신발제조용)
34 9000	기타의 엔진(1,000cc 초과)	21 4000	〃 (모피용)
90 9000	기타의 엔진(불꽃점화식)	21 9000	〃 (기타)
8408 10 1000	선박추진용엔진(300kw 이하)	29 1000	〃 (신발제조용)
10 2000	선박추진용엔진(300-2,000kw)	29 4000	〃 (모피용)
10 3000	선박추진용엔진(2,000kw초과)	29 9000	〃 (기타)
90 9000	기타의 엔진(압축점화식)	8456 10 0000	공작기계(레이저방식)
8409 99 3020	선박용 엔진부품(300-2,000kw)	20 0000	〃 (초음파방식)
90 3030	선박용 엔진부품(2,000kw초과)	30 0000	〃 (방전 방식)
8414 10 0000	진공펌프	90 0000	〃 (기타)
30 1000	냉장설비용의 압축기 (11kw 미만)		
30 2000	냉장설비용의 압축기 (11kw 이상)		

CCCN	품 목	CCCN	품 목
8457 10 0000	머시닝 센테(금속가공용)	8461 10 1000	플레이닝머신
20 0000	유니트 콘스트럭션 머시인	20 0000	쉐이핑머시인 또는
	(싱극스테이션용)		슬로우팅 머시인
30 0000	트랜스퍼 머시인	30 0000	부로우칭머시인
	(멀티스테이션용)	40 1090	기타 기어절삭기
8458 11 0000	수평선반(수치제어식)	90 0000	기타의 공자기계
19 0000	수평선반(기타)		
91 0000	기타의 선반(수치제어식)	8462 21 0000	굽힘기·집음기·교정기
8459 10 0000	웨이타입 유니트헤드 머시인		와 펼침기(수치제어식)
	(금속절삭 가공용)	29 0000	〃 (기타)
21 0000	기타의 드릴링 머신	31 0000	전단기(수치제어식)
	(수치제어식의것)	39 0000	전단기(기타)
29 3000	다축드릴링 머신	91 2000	액압프레스(100-3000MT)
29 9000	기타의 드릴링 머신	91 3000	〃 (300-1,000MT)
31 0000	기타의 보오링-킬링머신	91 4000	〃(1,000MT초과)
	(수치제어식의것)	99 0000	기타의 금속가공기계
39 0000	기타의 보오링-밀링머신	8463 10 0000	드로우 벤치
	(기타의 것)	20 0000	나사 건조기
40 1000	지그 보오링 머신	30 0000	선 가공기
40 2000	수평 보오링 머신	90 0000	기타의 금속가공기계
40 9000	기타 보오링 머신	8466 10 0000	투울 호울더와
51 0000	무릎형보오링머신(수치제어식)		자동개폐식 아이헤드
61 0000	기타의 밀링머신(수치제어식)	8471 91 0000	자동자료 처리기계
69 9000	기타의 밀링머신		(64메가바이트이상)
70 1000	탭핑 머신	91 2000	자동자료 처리기계
8460 11 0000	평면연삭기(수치제어식의것)		(16메가바이트이상)
19 0000	평면연삭기(기타)	91 9000	자동자료 처리기계
21 0000	기타의 연삭기(수치제어식)		(기타 디지털형)
29 1000	원통 연삭기	92 1010	문자 독취장치
29 2000	내면 연삭기	92 1020	키 입력장치
29 3000	무심 연삭기	92 1090	기타 입력장치
29 9000	기타 연삭기	92 2010	프린터
31 0000	샤프닝 머신(수치제어식)	92 2020	데이터 디스플레이장치
39 0000	기타의 샤프닝 머신	92 2090	기타 출력장치

CCCN	품 목	CCCN	품 목
92 3020	비디오텍스 또는 텔레텍스	30 2000	TV카메라(모니터용)
92 3030	음성 입출력장치	30 9000	TV카메라(기타)
92 3090	기타 입출력 겸용의것	8703 22 1000	승용차(1,000-1,500CC의 새단형)
93 1000	주기억장치(RAM 및R○M)	22 3000	승용차(1,000-1,500CC의 캐리올 트럭형)
93 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22 4000	승용차(1,000-1,500CC의 스테이숀 웨곤)
93 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22 6000	승용차(1,000-1,500CC의 호움카)
93 2090	기타 보조기억장치	22 9000	승용차(1,000-1,500CC의 기타)
93 9000	기타 기억장치	23 1000	승용차(1,500-3,000CC의 새단형)
99 0000	기타의 자동자료처리기계	23 3000	승용차(1,500-3,000CC의 캐리올 트럭형)
8482 10 0000	보울 베어링	23 4000	승용차(1,500-3,000CC의 스테이션)
20 0000	원추형 로울러 베어링	23 6000	승용차(1,500-3,000CC의 호움카)
50 0000	기타의 원통형 롤러 베에링	23 9000	승용차(1,500-3,000CC의 기타)
8502 13 1010	발전기(출력 400kw 이상)	31 1000	승용차(1,500CC이하의 새단형)
13 2000	발전기(출력750-1,500KVA)	31 3000	승용차(1,500CC이하의 캐리올 트럭형)
13 3000	발전기(출력1,500-3,500KVA)	31 4000	승용차(1,500CC이하의 스테이션 웨곤)
20 3010	발전기(출력 400kw 이상)	31 6000	승용차(1,500CC이하의 호움카)
20 4000	발전기(출력750-1,500KVA)	31 9000	승용차(1,500CC이하의 기타)
20 5000	발전기(출력1,500-3,500KVA)	32 1000	승용차(1,500CC이하의 새단형
8219 21 1000	레코오드 플레이어(디지탈 신호방식)		
21 9000	레코오드 플레이어(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것)		
29 0000	레코오드 플레이어(확성기를 갖춘 것)		
31 0000	턴테이블(레코오드판 자동 교환기능을 갖춘것)		
39 1000	텐테이블(디지탈 신호방식)		
39 9000	텐테이블(기타)		
8521 10 1000	VTR(비데오 카메라 내장형)		
10 9010	VTR(폭12.7㎜초과)		
10 9020	VTR(폭12.7㎜이상)		
90 1000	VTR(디스크형)		
90 9000	VTR(기타)		
8525 30 1000	TVZKAPFK(녹화기용)		

CCCN	품 목	CCCN	품 목
32 3000	승용차(1.500-2,500cc의 캐리올 트럭형)	90 1010	일반화물선
32 4000	승용차(1.500-2,500cc의 스테이션 웨곤)	90 1020	벌크선
32 6000	승용차(1.500-2,500cc의 호움카)	90 1030	콘테이너선
32 9000	승용차(1.500-2,500cc의 기타)	90 1090	기타 화물선
90 1000	승용차(기타 세단형)	90 2000	화객선
90 3000	승용차(기타 케리올 트럭형)	8902 00 1030	목조어선
90 4000	승용차(기타 스테이션 웨곤)	00 1010	철강어선
90 6000	승용차(기타 호움 카)	00 1020	에프·알·피선
90 9000	승용차(기타)	00 1090	기타어선
8705 10 0000	기중기차	00 2000	어획물의 가공 및 저장선박
8708 10 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903 10 0000	유람선(인플렛터블식)
21 0000	안전벨트	91 0000	범선
29 0000	기타 차체의 부분품	92 0000	모터 보우트
31 0000	브레이크 라이닝	99 0000	기타 유람선
39 0000	기타 제동장치 및 부분품	8906 00 9010	구명보트
40 0000	기어박스	00 9050	병원선
50 0000	구동차축	00 9090	기타의 선박
60 0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9006 51 0000	사진기(폭35㎜이하 롤 필름용의 것)
70 0000	로우드 휘일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3 0000	사진기(폭35㎜의 롤 필름용의 것)
80 0000	서스펜션 쇼크 업소오보	9009 12 0000	복사기
91 0000	방열기	9032 10 1090	가변식온도자동조종기기
92 0000	소음기와배기관	9102 11 9000	휴대시계(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3 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91 9000	휴대시계(밧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94 0000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9108 11 0000	무부먼트(〃)
8901 10 0000	순항선	9111 20 0000	워치 케이스(비금속재)
10 2000	유람선	80 0000	〃 (기타의케이스)
10 3000	페리보우트	90 9000	〃 부분품
10 9000	기타위 여객선	9705 00 0000	수집품과 표본
30 0000	냉동선		

○ 산업별 자유화현황

	총품목수	자 유 화 품 목		
		현 행	개 정	증 가
계	7,911	7,408(93.6)	7,550(95.4)	142
1 차 산 품	1,382	1,104(79.9)	1,104(79.9)	-
화 학 제 품	2,182	2,161(99.0)	2,176(99.7)	15
철 강 금 속	792	788(99.5)	792(100.0)	4
기 계 류	1,415	1,324(93.6)	1,415(100.0)	91
전 자 전 기	495	478(96.6)	495(100.0)	17
섬 유 제 품	1,089	1,062(97.5)	1,066(97.9)	4
잡 화	556	491(88.3)	502(90.3)	11

주:( )안은 수입자유화율임(%)

〈참고〉

설탕 수입규제 검토

(가) 수입개방시 외국제품의 덤핑우려

○ 설탕은 그 원료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이의 적기·적량확보는 매우 중요함.

○ 설탕수입을 완전 개방할 경우 우월한 원당조달능력을 배경으로 한 외국설탕회사의 덤핑 및 매수시장침투로 국내 제당산업 도산 우려

* 도산사례 : 홍콩의 제당회사인 TAIKOO SUGAR REEINERY는 설탕의 수입이 완전 개방된 1969년 외국회사의 덤핑으로 도산됨.

〈국내외 원당가격비교〉

(단위:$/톤)

	'81	'82	'83	'84	'85	'86	'87	'88
국내가	904	742	628	556	431	440	456	480
국제가	880	430	400	280	228	309	327	357

(나) 국내업체의 국제가격변동 대응능력 부족

○ 설탕등 1차산품은 일반적으로 작황에 따라 국제가격의 등락의 폭이 매우 큼에 반하여 국내업체의 국제가격의 급변에 따른 충격흡수능력이 부족함.

- 원당가 폭락시 : 국내업체는 기수입된 고가의 원당을 사용하게 되어 원당생산국의 수출품과 경쟁불가능
- 원당가 폭등시 : 국제설탕가격이 즉시 폭등할 뿐 아니라 원당확보도 곤란

* 설탕등 1차산품은 자기공급계약, 국제선물거래시장등을 통한 장기적 공급기반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내업체는 원당확보능력미흡

(다) 설탕의 수입규제는 각국의 보편적인 현상

○ 설탕은 수입자유화를 요구하는 국가도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동경라운드이후 1차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 결과 일부 열대산품에 대하여는 수입규제가 많이 완하되었으나 설탕에 대하여는 아직도 쿼타, 관세 등으로 수입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적극적인 개방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음.

〈각국의 설탕수입규제제도〉

구 분		국가	규제내용	규제내용
원당 수입국		싱가폴 홍 콩	· 수입제한(고율관세부과) · A/A(→제당업체도산)	15$/톤(50%) 무세
원당생산	수출국	필리핀 대 만 E C	· 수입제한 · 수입제한 · 수입과징금부과(´87:560$/톤) · 수출보조금지급	70% 100% 무세
	수입국	미 국 일 본 인 니 마 련	· 수입쿼타제실시 · 수출보조금지급 · 원당은 수입쿼타제실시,설탕은 수입과징금부과(당가안정법) · 수입제한 · 수입제한	15$/톤(5%) 41,500엔/톤(100%) 15% 무세

(2) 7.1 수입자유화

(상공부고시 제88-28호. '88.7.1시행)

가.추진경위

○ 5.20 생활용품 수입확대를 위한 경제장관협의회 개최
○ 6. 8 '88년 추가 수입자유화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 협의
○ 6. 9 귀금속류 수입자유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 6.30 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잠사업관련 당정실무협의회 결과〉

(1) 일 시 : '88.6.7. 14:00

(2) 장 소 : 민주정의당 당사 8층 정책조정회의실

(3) 주 관 : 민주정의당 정책조정실

(4) 안 건 : 생사류 수입자유화에 관한 건
○ 내수용 견직물 수입자유화
○ 수출용 생사 수입자유화
○ 내수용 누에고치 수입제동 변경(감시품목→제한품목)

(5) 참석범위
○ 민주정의당측 : 정책조정실 부실장(서상목 의원 주재)
전문위원(농림수산 김병권 위원, 상공 안광구 위원)
○ 행정부측 : 경제기획원(박유광 차관보)
농림수산부(제1차관보 및 잠업과장)
상공부(박용도 차관보)

(6) 협의결과

국내양잠농가보호와 견직물의 수출경쟁력 유지가 되도록 상공부에서 국산생사에 대한 수입생사 링크비율을 조정할 경우 경제기획원에서 견직물 수입자유화를 재검토, 현행제도 유지키로 합의

〈추가 수입자유화실시를 위한 관계부처 심무회의결과〉

(1) 일 시 : '88. 6. 8(수) 15:00

(2) 장 소 : 상공부 상역국장실

(3) 참석범위 : 상공부 상역국장(주재), 무역정책과장
농림수산부 국제협력과장, 문화공보부 예술1과장
보건사회부 위생제도과장, 산림청 수출진흥과장
수산청 무역과 행정사무관

(4) 회의결과

○ 한·미 무역실무회담 결과와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자유화하기로 한 품목 재확인

○ 추가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기타 동물성 생산품 선정

〈귀금속류 수입자유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결과〉

(1) 공청회명 : 귀금속 및 보석류의 유통구조현황과 개선방안

(2) 주관 : 한국무역협회

(3) 일시 및 장소 : 1988.6.9(목) 오후3시, 무역회관 7층 중회의실

(4) 참석자

○ 주제발표 : 성용모(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귀금속 및 보석류의 유통구조현황과 개선방안」

○ 공 술 인 : 곽 근(전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회장)
이준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이사장)
이준석(이리공단귀금속보석가공업협동조합전무이사)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성대(한국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오경승(인아실업 대표이사)

(5) 토의내용 요지

○ 가공기술업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의 공술인들은 귀금속·보석류의 수입개방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반면 이리구금속공단측은 개방에 따른 6가지의 전제조건제시를 통해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표명함.

○ 한편 귀금속·보석류의 현행 관세 및 특소세등 가격체계와 내수판매 및 수출하여, 품질공인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석 공술인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이의조속한 개선을 요망함.

○ 소비자입장을 대변하는 방청객들은 정부공인기관의 품질보증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에 각별한 정책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역설함.

(가) 개방지지 입장

○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후생 증진
- 국내거래의 60%에 달하는 밀수근절등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 음성거래에 따른 불이익(내외가격차)의 소비자 전가 지양

○ 올림픽등 국제화시대이 고외회가득상품 개발 촉진

○ 우수기능을 활용한 특화산업으로서의 유망성

(나) 소극적 입장

○ 귀금속·보석류의 개방은 동 부문의 지속적 산업화를 위한 전체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생산기반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계층간의 위화감 극소화등 현안극복을 위한 대책 필요

(다) 제시한 대책

○ 기존 생산기반 보호 및 수출산업화 촉지
-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을 통한 재벌의 시장참여 억제
- 수입창구일원화와 수출링크제 도입을 통한 수출산업화 촉진
- 개방에 따른 숙련공 부족난에 대비 전문인력 양성 적극화

○ 소비자보호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 정부공인기관의 품질보증제 조기도입(태극마크제의 도입등)
- 도매센터 서립 및 대도시 직판장 설치로 유통구조 개선 촉진

○ 세율인하를 통한 가격체계의조정

- 특소세 면세점 상향조정(현행 15만원→50만원) 및 누진차등제 책택
- 관세율 대폭인하(특히 원석 관세는 현행10%→영세율 적용)

○ 수입개방과 관련한 대응

- 개방이후 관계법강화를 통한 양질의 제품(특히 금) 도입 적극유도
- 품목별 예시제를 통한 단계적 수입개방(최소 1992년까지)
- 대중화품목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확대로 계층간 위화감 극소화

〈산업정책심의회 심의결과〉

○ 농림수산부의 요청으로 커피크리머를 자유화 대상품목에서 제외

○ 보건사회부 요청에 따라 조제식료품(HS 2106 90 9090)을 통합공고상의 수입규제품목으로 전환하고 자유화

나. 개정이유

(1) 수입규제품목중 조기자유화가능품목의 자유화

○ 현행 수출입공고상 수입규제품목중 조기자유화가 가능한 35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 공예품류 : 11개
  - 상아 및 상아제품, 산호제품, 흑옥·호박 및 이들의 제품
- 동물성생산품 : 6개
  - 개구리다리, 환형동물, 뱀, 기타 동물성생산품
- 식룰성생산품 : 7개
  - 식품포장용 잎, 수피, 기타염색용원료,화훼종자,기타 식물성생산품
- 식물류 : 7개
  - 커피크리머, 식이보조용조제품, 향미용조제품, 클로렐라, 스피루리나등
- 기타 : 4개
  - 연탄, 마젝탄, PCB, BHC

(2) 한미무역실무회담 결과 반영

○ 한미무역실무회담(´85.5.2-5.5.서울)의결과 수입자유화하기로 협의된 품목의 수입자유화

- 대상 : 아보카도, 육엑스, 채소쥬스, 고단백대두분(단백질함량 50% 이상)

* 한미무역실무회담결과에 의한 수입자유화품목은 5개품목이나 이중 냉동감자는 수입감시품목으로 동품목은 7.1부로 수입감시 예정

(3) 생활용품 수입확대를 위한 수입자유화

○ 경제장관협의회(´88.5.20)에서 수입자유화하기로 의결한42개 생활용품중 일부품목을 관련부처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수입자유화함.

	당 초	조 정	조 정 이 유
	42개(*)	34개	
공산품	견 노 일 직 물 순 견 직 물 생 지 견 직 물 크 레 이 프 데 신	(삭제)	○ 견직물의 수입자유화는생사, 견사류의 수입자유화와 동일한 결과 초래 ○ 국내잠업생산기반유지 및 농가소득원보호를 위하여 생사, 견사 및 견직물류 수입규제 계속 필요
	신 변 장 식 용 품(금제) 〃 (은제) 〃 (백금제) (기 타 귀 금 속 제)	(삭제)	○ 유치단계의 국내 귀금속가공 산업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신변장식용품중 주종생산품에 대하여는 당분간 수입자유화 유보

	당 초	조 정	조 정 이 유
	진주, 진주제품, 신변장식용품(금발, 은박, 백금발, 기타 귀금속박), 모조신변장식용품, 우산틀 등 20개	(좌동)	○ 계획대로 수입자유화
1차산품	굴비 북어	연어, 바다가재 통조림	○ 굴비, 북어는 국내 주요생산어종으로 어가소득보호를 위하여 수입자유화보유 ○ 대미통상마찰완화를 위하여 미국 관심품목 2개 자유화
	들기름, 살구통조림, 멸치통조림, 전갱이, 통조림, 실지렁이, 어류간장, 해덕, 검정대구, 보드카 등 12개	(좌동)	○ 계획대로 수입자유화

*주 : 한미무역회담 결과에 의한 수입자유화 품목(4개) 제외

(4) 개정결과

(HS 10 단위기준)

	총품목	자유화품목	
		현행(자유화율)	개정(자유화율)
계	10,205	9,600(94.1)	9,673(94.8)
1차산품 및 식품	1,956	1,432(73.2)	1,475(75.4)
화 학 제 품	2,872	2,782(100.0)	2,782(100.0)
철 강 · 금 속	957	957(100.0)	957(100.0)
기 계	1,746	1,746(100.00	1,746(100.0)
전 자 · 전 기	637	637(100.0)	637(100.0)
섬 유 제 품	1,476	1,458(98.8)	1,458(98.8)
기 타	651	590(90.6)	618(94.9)

○ 1988.7.1 수입자유화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6 00 1090	기타 행양동물	1604 16 1000	멸치통조림
00 4000	뱀	19 1020	전갱이통조림
00 6020	실지렁이	19 1090	기타 어류통조림
00 6090	기타 화형동물	1605 30 1000	바다가재통조림
0208 20 0000	개구리다리		
		2008 50 0000	살구조제품
0302 19 0000	기타연어류(신선,냉장)	2009 80 2000	체조쥬우스
62 0000	해덕(〃)	2102 20 3010	클로렐라(정제)
63 0000	검정대구(〃)	20 3090	〃 (부말)
70 1000	어류 간장(〃)	20 4010	스피루리나(정제)
0303 80 1000	어류 간장(냉동)	20 4090	〃 (분말)
0507 10 1000	상아	2106 10 9000	고단백대두유
10 9000	아이모리분, 웨이스트		(단백질함량50%이상)
90 2090	귀갑류 및 웨이스트	90 9020	식이보조용 조제품
0511 91 9000	기타 동물성생산품	90 9050	향미용 조제품
99 9090	기타 동물성생산품		
0804 40 0000	애버카도우		
1207 91 0000	양귀비씨		
99 9000	기타종자(대마종자)		
1209 30 0000	앵속속식물화훼종자		
1212 20 9090	기타 해초류		
1404 10 9000	기타 염색용원료		
90 2090	기타의 수피		
90 3090	기타 식품포장용 잎		
90 9000	기타 식물성생산품		
1515 90 1000	들기름 및 분획물		
1603 00 1000	육액스		

CCCN	품 목	CCCN	품 목
2701 20 1000	연탄	9601 10 0000	아이보리 제품
20 2000	마젝탄	90 1000	패각제 제품
		90 2000	뿔 제품
2903 59 0000	B.H.C	90 3000	뼈 제품
69 900	염화비페닐	90 4000	산호제 제품
		90 9000	기타 제품
6603 20 0000	우산물		
		9602 00 9020	혹은,호박등의 제품
7101 10 1000	천연진주(비가공)	00 9090	지타 식물성.광물성의
10 2000	〃 (가공)		제품
21 0000	양식진주(비가공)		
20 0000	〃 (가공)		
7113 20 1000	신변장식용품(백금박)		
20 2000	〃(금박)		
20 3000	〃(은박)		
20 9000	〃(기타)		
7116 10 1000	천연진주 제품		
10 2000	양식진주 제품		
7117 11 0000	모조신변장식용품		
19 1000			
19 2000			
19 3000			
19 4000			
19 5000			
19 6000			
19 9000			
90 0000			

(3) 기타 수입촉진을 위한 수입제도개선

< 각종 수입제도 변경 >

(1) 사실상 수입금지제도 폐지(수입추천품목 전환)
(상공부고시 제88-51호, '88.12.2시행)

○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수입촉진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 내용
- 종전 상공부장관 별도공품목을 품목소관부처의 추천품목으로 전환
  · 상공부장관 별도공고품목은 별도공고가 없은 경우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수입금지품목임.
- 대상품목 : 견직물, 귀금속류, 주류등 59개품목(HS 10단위 기준)

(품목내역)

구 분	수	품목내역
귀 금 속 류	15	다이아먼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팔, 비취, 수정
섬 유 류	7	견직물, 비단
식 음 료	7	두부, 조제식료품, 커피크리머, 기타육
임 산 물	3	저피, 떡갈일, 멍개잎
주 류	27	포도주, 사과주, 꼬냑, 위스키, 브랜디, 럼, 진, 고량주등
계	59	

(2) 축산물 수입추천기관변경(상공부고시 제88-34호, '88.8.5시행)

○ '84.11이후 금지되었던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서 쇠고기의 수입창구 일원화

○ 쇠고기 및 동 제품의 수입추천기관을 축협에서 축산물유통사업단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내수용 : 축산업협동조합추천 ・수입자 : 축협 또는 그 지정을 받은자 -외와획득용 : 교통부장관추천 ・수입자 : 관광호텔용품센터	-내수용 및 외화획득용 모두 축산물 유통사업단 추천 ・수입자 : 사업단 또는 지정을 받은 자

* 축산물유통사업단 개요

- 설립취지 :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통하여 양축가 소득증대 및 축산물 가격안정 도모
- 법적성격 : 비영리재단법인(민법 제32조)
- 설립지 : 1988.7.29
- 구 성
  - 당연직 이사 10인 (생산자대표5, 소비자대표3, 학계대표1, 정부대표)
  - 선임직 이사 4인 (양축농민대표3,학계대표1)
  - 이사장 : 명의식(축산협동조합중앙회회장)
  - 사업단장 : 박철우(〃 이사)
- 성격 : 사실상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기구임.
  (이사장 및 직원은 축협에서 파견근무)

(3) 기타 수입제도 변경

○ 냉동감자의 추가 수입감시 해제

-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88.7.1 수입감시에서 해제된 냉동감자(조리하지 않은 것, HS 0710 10 0000)에 이어 조제냉동감자(HS 2004 10 0000)를 수입 감시에서 추가 해제 함.

○ 과립(granular)형태의 단백질농축물 수입 자유화

-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88.7.1 수입자유화된 단백질농축물의 범위에 과립형태도 포함되도록 추가 조치함.

	'88.7.1 이전	'88.7.1~8.5	'88.8.5 이후
자유화범위	70%이상의 고단백질두분	50%이상의 고단백대두분	단백질함량50% 이상의 식물성 단백질계물질

○ 로약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수입제한

- 천연꿀은 농가의 주요소득원으로 동종물품인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수입도 수입제한품목인 천연꿀의 수입개방과 연계하여 검토

Ⅰ - 12. 1989년의 수입자유화

(1) '89-'91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수립

가. 추진경위

○ 경 위

'89. 1. 9 경제기획원, 농축수산물예시계획 및 보완대책반 회의개최
1. 11 농림수산부, 농축수산물수입자유화계획 및 보완대책 협의
1. 25 농림수산부, 문공부, 동자부등에 수입자유화와 관련하여 수입자유화계획수립협조요청
2. 2 공산품 및 잡화류에 대한 수입자유화 검토
2. 14 '89-'91 수입자유화예시계획 수립진행 현황보고
3. '89-'91 수입자유화예시계획 수립현황 및 추진계획보고
4. 8 농림수산부, '89-'91농수산물수입자유화예시계획 및 보완대책발표

○ 수출입공고상 수입자유화 대상품목

- 공산품등 46개품목
- 농산물 501개품목
- 총 546개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다유화계획수립 추진

○ 자유화예시계획수립 경과

- 공산품

46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공부주관으로 관계부처 즉 문화부, 과기처, 동자부등과 부내공업국(섬생활공업국 등)의 의견수렴 및 수입자유화 시기를 제출토록 하여 89년 4월 46개품목중 36개품목에 대해서 년도별 개방일정을 합의

- 농산물

501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의 주관하에 산림청, 수산청 등 품목관련부처(청)과 협의하여 년도별 개방품목을 선정하고 경제기획원등과는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수립을 위하여 협의하고 '89년 4월 8일 농수산물수입개방예시계획을 수립 확정 발표함.

나. 산업정책심의회 상정, 확정

○ '89.6.2.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한 '89-'91 수입자유화예시계획(안)은 상정한 (안)과는 달리 '91년 개방예시품목으로 들어있던 위스키, 코냑, 브랜디등 주류 8개품목이 1년 앞당겨진 '90년도에 개방하기로 하여 수정 확정되었다.

○ 동 자유화예시계획을 수정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나라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던 상태로 특히 한·미간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년초부터 계속 되어 온 한·미 통상협상은 우리부 제1차관보와 미국의 USTR의 피터 알가이어부대표보와의 이례적인 전화협상으로 '91년 5월 19일 타결이 되었다.

- 동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관세인하와 더불어 미국이 수입개방요청한 위스키, 코냑, 브랜디류등 주류 8개품목을 조기개방하기로 합의함.

다. 예시계획의 확정

○ 산업정책심의회를 통과한 '89-'91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공고상 수입자유화
  · 공산품등 : '89-'91간 36개품목 수입자유화
  · 농산물등 : '89-'91간 227개품목 수입자유화

- 통합공고상 수입자유화
  · 농산물 : '89-'91간 28개품목 수입자유화

〈'89.6.2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한 예시계획의 주요내용〉

(1) 수출입공고상 수입자유화계획

(가)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 농산물은 정부가 수입자유화대책반을 구성하여 농가소득에 영향이 적은 품목, 경쟁력이 있거나, 국내산품과 경합이 적은 품목, 국내공급이 부족한 농산자재등을 중심으로 자유화품목 선정

○ 현행 501개 수입규제품목중 '89-'91년간 237개품목 수입자유화

- '89년 : 76개품목
  · 파파야, 딸기, 커피크리머등 농산물 38개품목
    (부분자유화 2개품목 포함)
  · 오리고기, 양고기등 축산물 10개품목
  · 연어, 대구, 새우등 수산물 26개품목
  · 럼, 진, 보드카등 주류 3개품목

- '90년 : 84개품목
  · 페칸, 토마토쥬스 등 농산물 19개품목
    (부분자유화 3개품목 포함)
  · 산닭, 소세지, 육분등 축산물 14개품목
  · 송어, 다랭이, 게, 굴등 수산물 32개품목
  · 위스키, 코냑, 브랜디류, 포도주, 과일주등 주류 19개품목

- '91년 : 84개품목
  · 멜론, 바나나, 파인애플 등 농산물 29개품목
  · 사슴고기, 칠면조제품 등 축산물 10개품목
  · 상어지느러미, 해삼, 게살 등 수산물 37개품목

(나) 공산품등의 수입자유화

○ 현행 46개 수입규제품목중 '89-'91년간 36개품목 수입자유화
- '89년 : 다이아몬드, 골동품 등 8개품목
- '90년 : 신변장식용품, 조각품 등 14개품목
- '91년 : 루비, 비취, 회화, 연광 등 15개품목

(2) 통합공고상 수입자유화

○ '89-'91년간 28개품목 수입자유화
- '89년 : 8개품목(잠두, 이집트콩, 렌즈콩, 배합사료, 식물성박 등)
- '90년 : 11개품목(밀, 호밀, 알팔라, 옥수수분, 사료첨가제 등)
- '91년 : 9개품목(강낭콩, 완두콩, 대두박, 조, 수수 등)

(3) 수입자유화 시기

(가) '89년도 수입자유화 계획품목은 관련업계의 준비시간을 고려, '89년 7월 1일부터 자유화

(나) '90년도 및 '91년도 수입자유화품목은 당년도 경제상황을 감안, 적기에 자유화하도록 함.

〈참고 89-1〉 '89-'91 수입자유화계획의 고시 내용

상공부고시 제89-17호

수 입 자 유 화 계 획

1989년 내지 1991년에 시행할 수입자유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년 6월 9일

상 공 부 장 관

1. 년도별 수입자유화품목과 수입자유화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총품목	수입제한 품 목	수 입 자 유 화		
				'89	'90	'91
수출입 공 고	품목수(개, HS10 단위)	10,241	547	84	98	91
	수입자유화율		(94.7)	(95.5)	(96.4)	(97.3)
통합공고(개, HS10 단위)		-	-	8	11	9

2. 연도별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3. 연도별 수입자유화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별표의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은 매년 1월 1일(단, '89년은 7월 1일)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의 개정을 통하여 자유화한다.

나.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품목의 조정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89-1의 별표〕

'89-'91 수입자유화 품목

Ⅰ. 수출입공고상 수입자유화품목

1. '89년도 : 84개

H S	품 목	비 고
0204 21 0000	기타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냉장)	
50 1000	산양고기(신선, 냉장)	
0205 00 1000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고기(신선, 냉장)	
0206 22 0000	소의 간장(냉동)	
41 0000	돼지의 긴장(냉동)	
80 0000	기타 식용설육(신선, 냉장)	
0207 10 0000	가금류의 절단하지 않은 육중 오리의 것 (신선, 냉장)	부분 자유화 (닭의 육은 규제)
0302 12 0000	연 어(신선, 냉장)	
50 0000	대 구(신선, 냉장)	
0303 72 0000	해 덕(냉동)	
73 0000	검정대구(〃)	
78 0000	민 대 구(〃)	
0304 20 3000	대구피레트(냉동)	
0305 20 1000	어류의 간장(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20 3000	훈제어란	
30 2000	어류의 피레트(염장, 염수장)	
62 0000	대 구(염장, 염수장)	
69 8000	꽁 치(〃)	

H S	품 목	비 고
0306 21 0000	닭새우류(신선, 냉장)	
22 0000	바다가재(신선, 냉장)	
29 1000	기타 갑각류(산 것, 신선, 냉장)	
29 2000	〃 (건조)	
29 3000	〃 (염장, 염수장)	
0307 29 9000	가리비과 조개(건조, 염장, 염수장)	
31 0000	홍합(산 것)	
60 0000	달팽이	
0802 50 0000	피스타치오	
0804 10 0000	대추야자(신선, 건조)	
50 1000	과 아 버(〃)	
50 2000	맹 고(〃)	
50 3000	맹고스틴(〃)	
0807 20 0000	포포우(신선)	
0809 40 2000	슬로우(신선)	
0810 10 0000	초본류 딸기(신선)	
20 0000	나무딸기, 검은 나무딸기등(〃)	
30 0000	커런트와 구즈베리(〃)	
40 0000	크랜베리와 빌베리 등(〃)	
0812 20 0000	초본류 딸기	
1207 60 0000	잇꽃씨	
92 0000	시어넛	
1212 20 5010	다시마(염장)	
30 0000	살구, 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	

H S	품 목	비 고
1508 10 0000	낙화생유(조유)	
90 1000	〃 (정제유)	
90 9000	〃 (기타)	
1512 11 2000	잇꽃유(조유)	
19 1020	〃 (정제유)	
19 9020	〃 (기타)	
1513 21 2000	바바수유(조유)	
29 1020	〃 (정제유)	
29 9000	〃 (기타)	
1515 60 0000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1602 90 1000	기타 육류조제품(통조림)	
90 9000	기타 육류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1603 00 2000	육즙	
1604 11 9000	연어 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12 9000	청어 조제품(〃)	
16 9000	멸치 조제품(〃)	
1605 30 9000	바다가재 조제품(통조림이외의 조제품)	
40 1000	기타 갑각류 조제품(통조림)	
40 9000	〃 (통조림이외의 것)	
2007 10 0000	균질화한 조제품	
91 1000	감귤류의 잼, 제리, 마아말레이드	
99 1000	기타 과실의 잼, 제리, 마아말레이드	
99 9000	기타 과실의 퓨레, 페이스트	

H S	품 목	비 고
2008 11 1000	피넛버터	
40 0000	배 조제품	
80 0000	딸기 조제품	
91 0000	팜하트 조제품	
2009 80 1090	기타 과실쥬스	
90 1000	과실 혼합쥬스	
2106 10 9000	기타 단백질계물질중 단백질함량 48%이상의 식물성 단백질계 물질	부분 자유화 (단백질함량 48% 미만의 것은 규제)
2106 90 9010	커피크리머	
2208 40 0000	럼 및 태피아	
50 0000	진 및 제네바	
90 3000	보드카	
5003 90 1000	페니	
7102 10 0000	다이아몬드원석(공업용)	
31 0000	〃 (비공업용)	
7103 99 9030	옥수	
99 9090	기타 귀석(가공)	
7113 19 9000	신변장식용품(기타 귀금속제)	
9706 00 1000	골동품(도자기류)	
00 9000	골동품(기타)	

2. '90년도 : 98개

H S	품 목	비 고
0105 91 9000	닭(185g 초과, 종계제외)	
0204 50 2000	산양고기(냉동)	
0205 00 2000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고기(냉동)	
0206 90 0000	기타 식용설육(냉동)	
0207 39 1000	가금류의 절단육중 오리의 것(신선, 냉동)	부분 자유화 (닭의 육은 규제)
0207 43 1000	오리, 거위, 기니아새의 절단육(냉동)	
0208 90 9090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냉동)	
0210 90 1000	기타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0302 11 0000	송어(신선, 냉장)	
0303 41 0000	날개다랭이(냉동)	
42 0000	황다랭이(〃)	
49 1000	눈다랭이(〃)	
49 9000	기타 다랭이(〃)	
79 9050	닭고기(〃)	
0304 10 2000	어류의 연육(신선, 냉장)	
0305 69 9000	기타(염장, 염수장)	
0306 12 0000	바다가재(냉동)	
19 0000	기타 갑각류(〃)	
24 2000	게(건조)	

H S	품 목	비 고
0307 10 2000	굴(냉동)	
39 1000	홍합(냉동)	
39 9000	홍합(염장, 염수장)	
91 1910	재첩(산건, 신선, 냉장)	
91 9010	성게(신선, 냉장)	
91 9090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99 1990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냉동)	
99 2910	성게(건조)	
99 2920	해삼(〃)	
99 2930	우렁쉥이(〃)	
0307 99 3190	기타 연체동물(염장, 염수장)	
99 3920	해삼(〃)	
99 3990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03 10 1000	액상 요구르트	
90 3000	케피어	
0802 90 9000	기타 건과류중 페칸, 마카다미아	부분 자유화
0810 90 9000	기타 과실(신선) 중 키위	부분 자유화
0812 10 0000	버찌(저장처리)	
90 0000	기타 과실과 건과류(〃)	
1206 00 0000	해바라기씨	
1404 90 2010	저피	
1512 19 1010	해바라기씨유(정제유)	
19 9010	〃 (기타)	

H S	품 목	비 고
1601 00 1000	소시지	
1602 20 1000	동물간장 조제품(통조림)	
20 9000	〃 (기타)	
1604 13 9000	정어리 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1605 10 1020	게살(훈제)	
10 9000	게 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20 9010	새우와 보리새우의 조제품(훈제)	
20 9090	〃 (기타)	
90 1090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통조림)	
90 2090	기타 연체동물(훈제)	
90 9090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기타조제품)	
1901 10 1090	유아용 조제식료품	
1903 00 1000	타피오카(대용물)	
00 9000	기타 타피오카 대용물	
2006 00 2000	파인애플(설탕으로 조제한 것)	
00 4000	연뿌리(〃)	
2008 20 0000	파인애플 조제품	
60 0000	버찌 조제품	
2009 30 2000	라임쥬스	
40 0000	파인애플 쥬우스	
50 0000	토마토 쥬우스	
80 1020	딸기 쥬우스	
90 9000	기타 혼합쥬우스	

H S	품 목	비 고
2204 10 0000	발포성 포도주	
21 1000	붉은 포도주(2ℓ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1 2000	흰 포도주(〃)	
21 9000	기타 포도주(〃)	
2204 29 1000	붉은 포도주(〃)	
29 2000	흰 포도주(〃)	
29 9000	기타 포도주(〃)	
2205 10 0000	베르뭇포도주(2ℓ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0 0000	〃 (기타)	
2206 00 1010	사과주	
00 1020	배술	
00 1090	기타 과실발효주	
2208 20 1000	꼬냑	
20 9000	기타 증류주	
30 1000	스카치 위스키	
30 2000	버본 위스키	
30 3000	라이 위스키	
30 9000	기타 위스키류	
90 1000	브랜디류	
5007 20 2010	홀치기가공 순견직물	
7103 10 0000	귀석, 반귀석 원석	
7104 20 1000	다이아몬드 원석(합성, 재생)	
20 9000	귀석, 반귀석원석(〃)	
90 9010	다이아몬드(가공, 합성, 재생)	

H S	품 목	비 고
7113 11 0000	신변장식용품(은제)	
19 1000	〃 (백금제)	
19 2000	〃 (금재)	
8524 21 2000	전자계산조직의 자료를 기록한 테이프 (폭 4㎜이하의 것)	
22 2000	〃 (폭 4㎜초과 6.5㎜이하의 것)	
23 9010	〃 (폭 6.5㎜초과의 것)	
90 2000	〃 (기타)	
9703 00 1000	조 각	
00 2000	조 각	

3. '91년도 : 91개

H S	품 목	비 고
0106 00 5000	꿀벌	
0204 10 0000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냉장)	
22 0000	기타 면양의 지육(신선, 냉장)	
23 0000	〃 정육(〃)	
0206 30 0000	돼지의 설육(신선, 냉장)	
49 0000	돼지의 설육(냉동)	
0207 23 0000	오리의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0208 90 1000	사슴고기(신선, 냉장, 냉동)	
90 9010	해양동물의 육과 실용설육(〃)	
0301 93 0000	잉어(활어)	
99 9000	기타어류(〃)	
0302 69 6000	갯장어(신선, 냉장)	
69 2000	어란(〃)	
0302 77 0000	농어(냉동)	
79 9080	새꼬리민테(〃)	
0304 10 1000	어류의 피레트(신선, 냉장)	
10 9000	기타 어육(〃)	
0305 10 0000	식용 어분	
20 2000	건조 어란	
59 1000	상어 지느러미(건조)	
0306 14 1000	게살(냉동)	
24 1000	게(신선, 냉장)	

H S	품 목	비 고
0307 21 0000	가리비과 조개(산 것, 신선, 냉장)	
29 1000	〃 (냉동)	
59 9000	문어(염장, 염수장)	
0307 91 1190	백합(산 것, 신선, 냉장)	
91 1400	진주조개(〃)	
91 1500	피조개(〃)	
91 1600	새조개(산 것)	
91 1700	개아지살(산 것, 신선, 냉장)	
0307 99 1140	개아지살(냉동)	
99 1150	피조개(〃)	
99 1910	해삼(〃)	
99 2120	개아지살(건조)	
99 2130	바지락(〃)	
99 2990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99 3110	개량조개(염장, 염수장)	
99 3910	성게(〃)	
0504 00 1000	동물의 장	
0802 21 0000	해즐너트, 필버트(탈각하지 아니한 것)	
22 0000	〃 (탈각한 것)	
31 0000	호도(탈각하지 아니한 것)	
32 0000	〃 (탈각한 것)	
0803 00 0000	바나나(신선, 건조)	
0804 34 0000	파인애플(〃)	
0807 10 0000	멜론(수박포함)	

H S	품 목	비 고
1205 00 0000	유채	
1208 10 0000	대두의 분과 조분	
1212 10 5090	다시마(신선, 건조)	
1404 90 3010	떡갈잎	
90 3020	멍개잎	
1507 10 0000	대두유(조유)	
90 1000	〃 (정제유)	
90 9000	〃 (기타)	
1512 11 1000	해바라기씨유(조유)	
1514 10 1000	유채유(조유)	
90 1010	〃 (정제유)	
90 9000	〃 (기타)	
1515 21 0000	옥수수유(조유)	
29 0000	〃 (기타)	
90 9010	미강유와 그 분획물	
1602 31 9000	칠면조의 육제품(통조림이외의 것)	
1604 14 9000	기타 다랑이	
15 9000	고등어 조제품	
20 3000	생선소시지	
1605 10 1090	게살(기타 조제품)	
90 2030	새조개(훈제)	

H S	품 목	비 고
1701 11 1000	사탕수수당(당도 98도이하)	
11 2000	〃 (당도 98도초과)	
1701 12 1000	사탕무우당(당도 98도이하)	
12 2000	〃 (당도 98도초과)	
2006 00 1000	마통글라세	
2008 70 0000	복숭아 조제품	
2106 90 4090	기타 해조류 조제품	
2607 00 0000	연광과 그 정광	
5002 00 2000	옥사	
5006 00 1000	견연사(소매용)	
5007 10 0000	견노일직물	
7102 39 0000	다이아몬드(가공, 비공업용)	
7103 91 9010	루 비(가공)	
91 9020	사파이어(〃)	
91 9030	에메랄드(〃)	
99 9010	오 팔(〃)	
99 9020	비 취(〃)	
99 9040	수 정(〃)	
7104 90 9090	합성, 재생한 귀석, 반귀석(가공)	

H S	품 목	비 고
9701 10 1000	회 화	
10 2000	뎃 상	
10 3000	파스텔	
90 0000	기 타	
9702 00 0000	판 화	

Ⅱ. 통합공고상 자유화품목

1. '89년도 : 8개

H S	품 목	비 고
0713 20 0000	이집트콩	
40 0000	렌즈콩	
50 0000	잠두	
2301 10 2000	수지박	
2306 90 2000	들깨유박	
90 9000	기타 식물성유박	
2309 90 1010	배합사료(양돈용의 것)	
90 1090	기타 배합사료(대용유 제외)	부분 자유화

2. '90년도 : 11개

H S	품 목	비 고
1002 00 0000	호밀	
1004 00 0000	귀리	
1001 10 0000	듀럼종의 밀	
90 1000	메슬린	
90 9000	기타 밀	
1102 10 0000	호밀가루	
20 0000	옥수수 가루	

H S	품 목	비 고
1214 10 0000	알팔파	
2309 90 1030	배합사료(어류용의 것)	
90 3020	사료첨가제(비타민을 주로 한 것)	
90 3030	사료첨가제(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	

3. '91년도 : 9개

H S	품 목	비 고
0713 10 0000	완두	
33 0000	강낭콩	
39 0000	기타 콩	
90 0000	기타 건조 체두류	
1007 00 0000	수수	
1008 20 0000	조	
1104 30 0000	곡물의 배양	
1106 10 0000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	
2304 00 0000	대두유박	

〈참고 89-2〉 예시계획에 따른 년도별수입자유화품목 수 및 자유화율의 변화

1. 수출입공고상 수입자유화

(단위 : 개, HS10 단위)

산 업 별	수입제한 ('89.4)	수 입 자 유 화				유보품목 ('92이후 검토)
		'89	'90	'91	계	
전 체	547	84(82)	98(95)	91	273(268)	279
농축수산물	501	77(75)	84(81)	76	237(232)	269
농 산 물 (주 류)	196 (33)	41(39) (3)	38(35) (19)	29	108(103) (22)	93 (11)
축 산 물	109	10	14	10	34	75
수 산 물	196	26	32	37	95	107
공산품 및 기타	46	7	14	15	36	10
견 직 물	8	-	1	1	2	6
귀금속류	20	5	7	8	20	-
미 술 품	9	2	2	5	9	-
소프트웨어	4	-	4	-	4	-
광 산 물	5	-	-	1	1	4

※ ( )는 부분자유화 품목 제외시 자유화품목 숫자임.

※ '89-'91 수입자유화계획(종합)

	수출입공고	통 합 공 고	계
농 산 물	237 / 232	28 / 27	265 / 259
농축수산물(농림수산부)	215 / 210	28 / 27	243 / 237
주 류(국 세 청)	22	-	22
공산품(상공부 등)	36	-	36
계	273 / 268	28 /27	301 / 295

※ (/)의 왼쪽 숫자는 부분자유화품목을 포함한 숫자이고 오른쪽 숫자는 부분자유화 품목을 제외한 숫자임.

2. 輸入自由化 現況

(단위 : %)

區 分		總品目	輸入自由化比率			
			'89. 4	'89. 7	'90	'91
全體		10,274	94.7 (547)	95.5 (465)	96.4 (370)	97.3 (279)
農畜水産物		1,790	71.9 (501)	76.1 (426)	80.4 (345)	84.6 (269)
	農産物	1,150	83.1 (196)	86.5 (157)	89.4 (122)	92.0 (93)
	畜産物	301	63.4 (109)	66.8 (99)	71.8 (85)	75.1 (75)
	水産物	339	40.2 (196)	48.2 (170)	57.5 (138)	68.4 (101)
工産品및其他		8,484	99.5 (46)	99.5 (39)	99.7 (25)	99.9 (10)
	化學·鐵鋼·金屬 機械·電子·電氣	6,173	100.0 -	100.0 -	100.0 -	100.0 -
	纖維類	1,344	99.4 (8)	99.4 (8)	99.5 (7)	99.6 (6)
	鑛産物	312	98.4 (5)	98.4 (5)	98.4 (5)	98.7 (4)
	其他	655	95.0 (33)	96.0 (26)	98.0 (13)	100.0 (-)

註 : ( )안은 輸入規制品目

라. 89-91 수입자유화 이후 유보 품목(285개 품목)

H S	품 목	비 고
0102 90 1000	젖 소	
90 2000	육 우	
90 9000	기타 소	
0103 91 0000	돼지(50㎏미만)	
92 0000	돼지(50㎏이상)	
0106 00 1050	사 슴	
0201 10 0000	쇠고기(신선, 냉장)	
20 0000	〃	
30 0000	〃	
0202 10 0000	쇠고기(냉동)	
20 0000	〃	
30 0000	〃	
0203 11 0000	돼지고기(신선, 냉장)	
12 0000	〃	
19 0000	〃	
21 0000	돼지고기(냉동)	
22 0000	〃	
29 0000	〃	
0204 30 0000	양고기(냉동)	
41 0000	〃	
42 0000	〃	
43 0000	〃	

※ 주 : 부분자유화(부분규제) 품목 5개 제외 : 별첨 참조

H S	품 목	비 고
0206 10 0000	소의 설육(신선, 냉장)	
21 0000	소의 혀(냉동)	
29 0000	소의 설육(〃)	
0207 21 0000	닭고기(비절단)	
41 1000	닭고기(절단)	
0208 90 2000	고래고기(신선, 냉장, 냉동)	
0210 11 0000	돼지고기(염장, 건조, 훈제)	
12 0000	〃 (〃)	
19 0000	〃 (〃)	
0210 20 0000	쇠고기(〃)	
90 9000	기타의 육(〃)	
0301 92 0000	뱀장어(활어)	
99 2000	방 어(〃)	
99 8000	넙 치(〃)	
0302 21 0000	넙 치(〃)	
22 0000	가자미(〃)	
23 0000	서 대(〃)	
29 0000	기타 넙치류(〃)	
61 0000	정어리(〃)	
64 0000	고등어(〃)	
65 0000	곱상어 및 상어(〃)	
66 0000	뱀장어(〃)	
69 1000	명 태(〃)	
69 2000	방 어(〃)	
69 3000	갈 치(〃)	
69 4000	돔(〃)	

H S	품 목	비 고
0302 69 5000	붕장어(〃)	
69 7000	전갱이(〃)	
69 8000	꽁 치(〃)	
69 9030	병 어(〃)	
69 9040	아 귀(〃)	
69 9090	기타어류(〃)	
0303 31 0000	넙 치(냉동)	
32 0000	가자미(〃)	
33 0000	서 대(〃)	
39 0000	기타 넙치류(〃)	
43 0000	가다랭이(〃)	
71 0000	정어리(〃)	
74 0000	고등어(〃)	
0303 75 0000	곱상어 및 상어(〃)	
76 0000	뱀장어(〃)	
79 1000	명 태(〃)	
79 3000	갈 치(〃)	
79 4000	돔 (〃)	
79 5000	붕장어(〃)	
79 6000	조 기(〃)	
79 7000	전갱이(〃)	
79 8000	꽁 치(〃)	
79 9020	북 어(〃)	
79 9090	기타어류(〃)	
80 2000	어 란(〃)	

H S	품 목	비 고
0304 20 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20 1000	명태피레트(〃)	
20 4000	기타 냉동어류 피레트(가자미의 것)	
20 9000	〃 (기타)	
90 1010	냉동연육(명태의 것)	
90 1090	〃 (기타)	
90 9000	기타 어육	
0305 20 4010	명태어란(염장, 염수장)	
20 4090	기타어란(〃)	
30 1000	어류의 피레트(건조)	
49 9000	기타어류(훈제)	
59 2000	멸치(건조)	
59 3000	명태(〃)	
59 4000	조기(〃)	
59 7000	건조어류(까나리)	
59 8000	〃 (실치)	
59 9000	〃 (기타)	
69 3000	갈 치(염장, 염수장)	
69 5000	고등어(〃)	
69 6000	조 기(〃)	
69 7000	전갱이(〃)	
0306 13 1000	새우살(냉동)	
13 9000	새우와 보리새우(〃)	
14 9000	게(〃)	
23 1000	새우, 보리새우(신선, 냉동)	
23 2000	〃 (건조)	
23 3000	〃 (염장, 염수장)	

H S	품 목	비 고
0307 41 1000	갑오징어(산 것, 신선, 냉장)	
41 2000	오 징 어(〃)	
49 1010	갑오징어(냉동)	
49 1020	오 징 어(〃)	
49 2000	갑오징어, 오징어(염장, 염수장)	
49 3000	〃 (건조)	
51 0000	문어(신선, 냉장)	
59 1000	〃 (냉동)	
59 2000	〃 (건조)	
91 1200	전복(산 것, 신선, 냉장)	
91 1990	기타연체동물(산 것, 신선, 냉장)	
91 9020	해삼(산 것, 신선, 냉장)	
91 9030	우렁쉥이(〃)	
99 1110	새조개(냉동)	
99 1120	개량조개(〃)	
99 1130	바지락(〃)	
99 1190	기타연체동물(〃)	
99 1920	우렁쉥이(〃)	
99 2110	개량조개(건조)	
99 2190	기타연체동물(〃)	
99 3120	바지락(염장, 염수장)	
0401 10 0000	밀크와 크림(비농축)	
20 0000	〃	
30 0000	〃	
0402 10 1010	탈지분유	
10 1090	밀크와 크림(농축)	
10 9000	〃	

H S	품 목	비 고
0402 21 1000	전지분유	
21 9000	밀크와 크림(농축)	
29 0000	〃	
91 1000	무당연유	
91 9000	밀크와 크림(농축)	
99 1000	가당연유	
99 9000	밀크와 크림(농축)	
0403 10 9000	기타 요구르트	
90 1000	버터밀크	
90 2000	응고유와 응고크림	
90 9000	기타 발효밀크와 크림	
0404 10 1000	유장분말	
10 9000	기타 유장	
90 0000	기타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한 물품	
0405 00 1000	버터	
00 9000	기타 지와 유	
0406 10 1000	신선한 치이즈	
10 2000	커어드	
20 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	
30 0000	가공치이즈	
40 0000	블루바인 치이즈	
90 0000	기타 치이즈	
0408 19 0000	계란의 난황	
99 0000	계란의 조란	
0409 00 0000	천연꿀	
0504 00 3000	동물의 위	

H S	품 목	비 고
0511 91 1090	기타 부화용 알	
0703 10 1000	양파(신선, 냉장)	
20 0000	마늘(〃)	
0709 60 0000	고추류(신선, 냉장)	
0710 80 2000	마늘(냉동)	
0711 90 1000	마늘(저장처리한 것)	
90 5000	고추(〃)	
0712 20 0000	양파(건조)	
90 1000	마늘(〃)	
0714 10 1000	매니옥(신선)	
10 2010	매니옥의 칩(건조)	
10 2020	매니옥의 팰리트(〃)	
0802 40 1000	밤(비탈각)	
40 2000	〃(탈각)	
90 1010	잣(비탈각)	
90 1020	〃(탈각)	
0805 10 0000	오렌지(신선, 건조)	
20 1000	감귤(〃)	
20 9000	기타 감귤류(〃)	
90 9000	기타 감귤류(〃)	
0806 10 0000	포도(신선)	
0808 10 0000	사과(신선)	
20 1000	배(〃)	

H S	품 목	비 고
0809 30 0000	복숭아(신선)	
0810 90 2000	단 감(신선)	
90 3000	대 추(〃)	
0811 90 0000	기타 냉동과실	
0813 40 2000	건대추	
0902 10 0000	녹 차(3㎏이하)	
20 0000	〃 (3㎏초과)	
30 0000	홍 차(3㎏이하)	
40 0000	〃 (3㎏초과)	
0904 20 1000	고 추(비분쇄)	
20 2000	〃 (분쇄)	
0910 20 1000	생 강	
1107 10 0000	맥 아(볶지 아니한 것)	
20 1000	〃 (훈연한 것)	
20 9000	〃 (기타)	
1207 40 0000	참 깨	
99 1000	들 깨	
99 9000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실	
1208 90 0000	기타 채유용 종자의 분	
1210 10 0000	호 프(분상의 것)	
20 1000	〃 (기타)	

H S	품 목	비 고
1212 20 1010	김(마른 것)	
20 1090	김(기타)	
99 9000	화 분	
1515 50 0000	참기름	
90 9090	기타 식물성유지	
1602 10 0000	균질화한 육 조제품	
39 9000	기타 가금류고기 조제품(통제림이외의 것)	
41 9000	돼지고기 조제품(〃)	
42 9000	〃 (〃)	
49 9000	〃 (〃)	
50 1000	쇠고기 조제품(통조림)	
50 9000	〃 (통조림이외의 것)	
1604 13 1000	정어리 조제품(통조림)	
14 1000	다랑이 조제품(통조림)	
14 1090	다랑이 통조림(기타)	
14 2000	가다랑이 통조림(〃)	
15 1000	고등어 통조림(통조림)	
19 1010	꽁치 통조림(통조림)	
1604 19 9010	쥐치포	
19 9090	기타 어류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20 4010	생선묵(게맛의 것)	
20 4090	〃 (기타)	
20 9000	기타 어류조제품	
1605 20 9020	새우와 보리새우의 조제품(브래드)	
90 2010	오징어(훈제)	
90 9010	조미 오징어	

H S	품 목	비 고
1701 91 0000	정제당(가향, 착색)	
99 0000	〃 (기타)	
1702 10 1000	유 당	
90 1000	인조꿀	
1703 10 1000	당 밀(사탕수수 당밀)	
90 1000	〃 (기타)	
1901 10 1010	조제분유	
90 2000	기타 조제식료품	
2006 00 3000	생 강(설탕으로 조제한 것)	
00 9000	기타 과실(〃)	
2007 91 9000	감귤류의 퓨레, 페이스트	
2008 11 9000	낙화생 조제품	
19 9000	기타 견과류 조제품	
30 0000	감귤류과실 조제품	
99 1000	포도 조제품	
99 2000	사과 조제품	
2009 11 1000	오렌지쥬스(농축, 냉동)	
19 1000	〃 (농축, 기타)	
11 9000	오렌지쥬스(기타, 냉동)	
19 9000	〃 (기타)	
30 9000	기타 감귤류쥬스	
60 0000	포도 쥬우스	
70 0000	사과 쥬우스	
80 1010	복숭아 쥬우스	

H S	품 목	비 고
2106 10 1000	두부	
90 4010	조제한 김	
90 9090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	
2202 90 2000	과즙음료	
2204 30 0000	기타 포도즙	
2206 00 2010	청 주	
00 2030	탁 주	
00 2090	기타 곡물발효주	
00 9000	기타 발효주	
2207 10 9000	주 정	
2208 10 0000	알콜성음료	
90 2000	리큐르류	
90 6000	고량주	
90 7000	오가피주	
90 9000	기타 주류	
2501 00 1010	암 염	
00 1020	천일염	
00 9010	식탁염	
2701 11 0000	무연탄	
5001 00 0000	누에고치	
5002 00 1010	백잠사	
00 1020	〃	
00 1030	〃	
00 1040	〃	

H S	품 목	비 고
5002 00 1050	백잠사	
00 9000	기타 생사	
5004 00 0000	견 사	
5007 20 1000	생지견직물	
20 2020	사틴	
20 2030	크레이프 데신	
20 2090	기타 순견직물	
20 9000	기타의 직물	
90 1000	기타의 생지견직물	

(2) 수입자유화 실시 및 수출입공고의 운영

가. 수입자유화 실시

○ 예시계획의 확정 고시

- '89년 6월 2일 산업정책심의회를 통과한 '89-'91 수입자유화예시계획은 상공부고시 제89-17호(89.6.9)로 '89-'91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확정 발표됨

나. 89년도 수입자유화실시

○ '89.7.1부터 84개품목 수입자유화

(단위 : 개, HS10 단위)

	수	주 요 품 목	비 고
농 산 물	41	피스타치오, 대추야자, 과아버, 맹고, 맹고스틴, 포포우, 슬로우, 딸기, 살구핵, 낙화생유, 호호버유, 잼, 과일쥬스, 커피크리머, 단백질계물질, 럼, 진, 보드카 등	○ 부분자유화 2개품목 - 가금류고기 (오리고기는 AA, 닭고기는 계속 규제) - 단백질계물질 (단백질함량 48% 이상의 것은 AA, 48%미만의 것은 계속 규제)
축 산 물	10	산양고기, 말고기, 소·돼지의 간장, 오리고기, 육류조제품, 육즙 등	
수 산 물	26	연어, 대구, 꽁치, 대구피레트, 어류간장, 닭새우, 바다가재, 홍합, 달팽이, 다시마, 연어조제품 등	
공산품등	7	다이아몬드원석(2), 옥수, 기타귀석, 신변장식용품(기타귀금속제), 골동품(2)	
계	84		

다. 수출입제한 품목의 조정내용

1) 수출요령 개정 : 수출자율규제지역 조정

품 목	현 행	개 정 (안)
가발	전지역 수출규제	(삭 제)
흑백TV	대 미국 수출자율규제	〃
전자렌지	대 미국, EC 수출자율규제	대 미국, EC, 일본, 홍콩, 싱가폴, EFTA 수출자율규제
C.D.P.	(신 설)	대 EC 수출자율규제
Video Tape	〃	〃

2) 수입요령 개정

품 목(HS)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유 당 (1702 10 1000)	○ 보건사회부장관 추천	○ 동물약품제조용 유당은 한국동물약품제조공업협동조합의 추천 ○ 기타는 보건사회부장관 추천	○ 농림수산부 및 보사부와 합의
소프트 웨어 (8524 21 2000)	○ 과학기술처장관 추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추천	○ 과기처 요청 수용
음료제조용 알콜성 합성 조제품 (2208 10 0000)	○ 국세청장 추진	○ 알콜도수 1도미만의 것은 보건사회부장관 추천 ○ 알콜도수 1도이상의 것은 국세청장 추천	○ 알콜도수 1도이상의 음료만 주류로 분류됨(주세법 제2조) ○ 보사부, 국세청과 합의
조제 식료품 (2106 90 9090)	○ 축협 추천 -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 (신 설) ○ 기타는 AA	○ 축협추천 - (좌 동) - 벌꿀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벌꿀함양 60%이상의 것 ○ 기타는 AA	○ 벌꿀기제 조제식료품 신규제한 * 벌꿀함량수치에 대하여 농림수산부(50%)와 보사부(70%) 의견 상이

라. 수입자유화 품목현황('89년 7월 1부 자유화 84개 품목)

H S	품 목	H S	품 목
0204 21 0000	기타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냉장)	0804 10 0000	대추야자(신선, 건조)
50 1000	산양고기(신선, 냉장)	50 1000	과이버(〃)
		50 2000	맹고(〃)
0205 00 1000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고기(신선, 냉장)	50 3000	맹고스틴(〃)
		0807 20 0000	포포우(신선)
0206 22 0000	소의 간장(냉동)	0809 40 2000	슬로우(신선)
41 0000	돼지의 간장(냉동)		
80 0000	기타 식용설육(신선, 냉장)	0810 10 0000	초본류 딸기(신선)
		20 0000	나무딸기, 검은 나무딸기등(〃)
0207 10 0000	가금류의 절단하지 않은 육중 오리의 것(신선, 냉장)	30 0000	커런트와 구즈베리(〃)
		40 0000	크렌베리와 빌베리등(〃)
		0812 20 0000	초본류 딸기
0302 12 0000	연어(신선, 냉장)		
50 0000	대구(〃)	1207 60 0000	잇꽃씨
		92 0000	시어넛
0303 72 0000	해 덕(냉동)		
73 0000	검정대구(〃)	1212 20 5010	다시마(염장)
78 0000	민 대 구(〃)	30 0000	살구, 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
		1508 10 0000	낙화생유(조유)
0304 20 3000	대구피레트(냉동)	90 1000	〃 (정제유)
		90 9000	〃 (기타)
0305 20 1000	어류의 간장(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1512 11 2000	잇꽃유(조유)
20 3000	훈제어란	19 1020	〃 (정제유)
30 2000	어류의 피레트(염장, 염수장)	19 9020	〃 (기타)
62 0000	대구(염장, 염수장)		
69 8000	꽁치(〃)	1513 21 2000	바바수유(조유)
0306 21 0000	닭새우류(신선, 냉장)	29 1020	〃 (정제유)
22 0000	바다가재(신선, 냉장)	29 9000	〃 (기타)
29 1000	기타 갑각류(산 것, 신선, 냉장)		
29 2000	〃 (건조)	1515 60 0000	호호버유와 그 분획물
29 3000	〃 (염장, 염수장)		
		1602 90 1000	기타 육류조제품(통조림)
0307 29 9000	가리비과 조개(건조, 염장, 염수장)	90 9000	기타 육류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31 0000	홍합(산 것)		
60 0000	달팽이		
0802 50 0000	피스타치오		

H S	품 목	H S	품 목
1603 00 2000	육즙	7103 99 9030	옥수
		99 9090	기타 귀석(가공)
1604 11 9000	연어 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12 9000	청어 조제품(〃)	7113 19 9000	신변장식용품(기타 귀금속제)
16 9000	멸치 조제품(〃)		
		9706 00 1000	골동품(도자기류)
1605 30 9000	바다가재 조제품(통조림이외의 조제품)	00 9000	골동품(기타)
40 1000	기타 갑각류 조제품(통조림)		
40 9000	〃 (통조림이외의 것)		
2007 10 0000	균질화된 조제품		
91 1000	감귤류의 잼, 제리, 마아말레이드		
99 1000	기타 과실의 잼, 재리, 마아말레이드		
99 9000	기타 과실의 퓨레, 페이스트		
2008 11 1000	피넛버터		
40 0000	배 조제품		
80 0000	딸리 조제품		
91 0000	팜하트 조제품		
2009 80 1090	기타 과실쥬스		
90 1000	과실 혼합쥬스		
2106 10 9000	기타 단백질계물질중 단백질 함량 48%이상의 식물성 단백질계 물질		
2106 90 9010	커피크리머		
2208 40 0000	럼 및 태피아		
50 0000	진 및 제네바		
90 3000	보드카		
5003 90 1000	페니		
7102 10 0000	다이아몬드원석(공업용)		
31 0000	〃 (비공업용)		

Ⅰ - 13. 1990년의 수입자유화

(1) 수입자유화 실시 및 수출입공고의 운영

가. '90년도 수입자유화실시

○ 정부는 지난 '89년 6월에 발표한 바 있는 '89-'91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90년도 수입자유화예시품목을 개방하기 위하여 수출입공고를 개정·고시하였다.

○ 이번의 수출입공고의 개정고시에 따라 '90년 1월 1일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는 품목은 총 98개 품목(HS10단위 기준)인데, 이 중에는 페칸, 파인애플, 연뿌리, 토마토쥬스등 농산물 38개품목(포도주, 위스키, 과실주등 주류 19개품목 포함), 닭, 산양고기, 가금류고기, 소시지등 축산물 14개품목, 송어, 대랭이, 명태, 달고기, 홍합, 해삼, 게살 등 수산물 32개품목, 그리고 다이아몬드, 신변장식용품, 조각, 조상등 기타 잡화류 14개 품목이 포함되었다.

○ 이에 따라 현재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465개품목중 '90년 1월부로 98개품목(3개품목은 부분자유화품목)을 수입자유화함으로서 수입규제 품목은 370개로 축소되었고 수입자유화율은 95.5%에서 96.4%로 상승하게 됨으로 수입자유화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정부는 이미 고시한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91년도까지 수입개방을 완료한뒤, '92년도 이후에도 수입규제품목의 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 10월말의 GATT의 BOP 협의결과 우리나라가 BOP를 졸업함에 따라 현행 수입규제품목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할 의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 다만, 지난번 BOP 협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수입규제품목을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되, '97년 7월까지는 현행 수입규제품목의 자유화를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는 92년 이후에도 3개년 단위의 수입자유화계획을 2차에 걸쳐 수입, 추진할 계획이다.

나. '90 주요 수입자유화 품목

(단위 : 개, HS10 단위)

구 분		수	주 요 품 목	비고(미국관심)
계		98		17
농 축 수 산 물		84		17
	농 산 물	38	기타견과류 중, 페칸·마카다미아, 버찌(저장처리), 해바라기씨, 저피, 캐피어, 파인애플, 연뿌리, 액상요구르트, 파인애플주유스, 토마토쥬우스	○ 페칸, 키위, 토마토쥬스 등 15개
	(주 류)	(19)	포도주류(9개품목) 위스키류(7개품목) 사과주등 과실주(3개품목)	(포도주등 주류 8개)
	축 산 물	14	닭(185g 초과, 종계제외), 산양고기, 말·당나귀, 노새와 버새고기, 오리, 거위, 기니아새의 절단육, 소시지 등	○ 오리고기 등 2개
	수 산 물	32	송어(신선, 냉장), 다랭이(냉동), 명태(염장, 염수장), 달고기, 게(건조), 바다가재, 홍합(냉동, 염장, 염수장), 해삼(건조), 게살(훈제), 새우와 보리새우(훈제, 기타) 등	
기 타		14	다이아몬드, 신변장식용품, 전자계산조직용테이프, 조작 등	

〈참고 90-1〉

○ '90년도 수입자유화품목 현황(98개품목, 3개의 부분자유화품목 포함)

H S	품 목	비 고
0105 91 9000	닭(185g 초과, 종계제외)	
0204 50 2000	산양고기(냉동)	
0205 00 2000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고기(냉동)	
0206 90 0000	기타 식용설육(냉동)	
0207 39 1000	가금류의 절단육중 오리의 것(신선, 냉장)	부분 자유화 (닭의 육은 규제)
0207 43 1000	오리, 거위, 기니아새의 절단육(냉동)	
0208 90 9090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냉동)	
0210 90 1000	기타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0302 11 0000	송어(신선, 냉장)	
0303 41 0000 42 0000 49 1000 49 9000 79 9050	날개다랭이(냉동) 황다랭이(〃) 눈다랭이(〃) 기타 다랭이(〃) 달고기(〃)	
0304 10 2000	어류의 연육(신선, 냉장)	
0305 69 9000	기타(염장, 염수장)	
0306 12 0000 19 0000 24 2000	바다가재(냉동) 기타 갑각류(〃) 게(건조)	

H S	품 목	비 고
0307 10 2000	굴(냉동)	
39 1000	홍합(냉동)	
39 9000	홍합(염장, 염수장)	
91 1910	재첩(산 것, 신선, 냉장)	
91 9010	성게(신선, 냉장)	
91 9090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99 1990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냉동)	
99 2910	성게(건조)	
99 2920	해삼(〃)	
99 2930	우렁쉥이(〃)	
0307 99 3190	기타 연체동물(염장, 염수장)	
99 3920	해삼(〃)	
99 3990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03 10 1000	액상 요구르트	
90 3000	캐피터	
0802 90 9000	기타 견과류중 페칸, 마카다미아	부분 자유화
0810 90 9000	기타 과실(신선)중 키위	부분 자유화
0812 10 0000	버찌(저장처리)	
90 0000	기타 과실과 견과류(〃)	
1206 00 0000	해바라기씨	
1404 90 2010	저피	
1512 19 1010	해바라기씨유(정제유)	
19 9010	〃 (기타)	

H S	품 목	비 고
1601 00 1000	소시지	
1602 20 1000	동물간장 조제품(통조림)	
20 9000	〃 (기타)	
1604 13 9000	정어리 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1605 10 1020	게살(훈제)	
10 9000	게 조제품(통조림이외의 것)	
20 9010	새우와 보리새우의 조제품(훈제)	
20 9090	〃 (기타)	
90 1090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통조림)	
90 2090	기타 연체동물(훈제)	
90 9090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기타 조제품)	
1901 10 1090	유아용 조제식료품	
1903 00 1000	타피오카(대용물)	
00 9000	기타 타피오카 대용물	
2006 00 2000	파인애플(설탕으로 조제한 것)	
00 4000	연뿌리(〃)	
2008 20 0000	파인애플 조제품	
60 0000	버찌 조제품	
2009 30 2000	라임쥬스	
40 0000	파인애플 쥬우스	
50 0000	토마토 쥬우스	
80 1020	딸기 쥬우스	
90 9000	기타 혼합쥬우스	

H S	품 목	비 고
2204 10 0000	발포성 포도주	
21 1000	붉은 포도주(2ℓ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1 2000	흰 포도주(〃)	
21 9000	기타 포도주(〃)	
2204 29 1000	붉은 포도주(기타)	
29 2000	흰 포도주(〃)	
29 9000	기타 포도주(〃)	
2205 10 0000	베르뭇포도주(2ℓ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0 0000	〃 (기타)	
2206 00 1010	사과주	
00 1020	배술	
00 1090	기타 과실발효주	
2208 20 1000	꼬냑	
20 9000	기타 증류주	
30 1000	스카치 위스키	
30 2000	버본 위스키	
30 3000	타이 위스키	
30 9000	기타 위스키류	
90 1000	브랜디류	
5007 20 2010	홀치기가공 손견직물	
7103 10 0000	귀속, 반귀석 원석	
7104 20 1000	다이아몬드 원석(합성, 재생)	
20 9000	귀석, 반귀석원석(〃)	
90 9010	다이아몬드(가공, 합성, 재생)	

H S	품 목	비 고
7113 11 0000	신변장식용품(은제)	
19 0000	〃 (백금제)	
19 2000	〃 (금제)	
8524 21 2000	전자계산조직의 자료를 기록한 테이프 (폭 4㎜이하의 것)	
22 2000	〃 (폭 4㎜초과 6.5㎜이하의 것)	
23 9010	〃 (폭 6.5㎜초과의 것)	
90 2000	〃 (기타)	
9703 00 1000	조각	
00 2000	조상	

다. 수출제한품목조정

○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출입 절차간소화를 추진하고 또한 최근 어려워진 수출환경면에서 기업의 수출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간 협정에 의한 쿼타품목 또는 자율규제품목이외에 수출질서유지 내지 국내 원자재의 안정확보차원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던 품목을 수출자유화하거나 수출제한 승인지역을 대폭 축소하였다.

○ 수출제한승인품목의 조정내용은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등 석유화학제품, 갈포벽지, 동제식탁용품 및 실지렁이, 밤나무묘목 등 14개품목(HS 6단위기준)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자유화되고,

- 또한 견직물, 면사, 자켓, 바지등 섬유류 122개품목(HS 6단위기준)과 평판압연제품, 강관등 철강제품 54개품목(HS 6단위기준), 총 17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수출제한 승인지역을 미국, EC 등 쿼타지역으로 최소화하였으며,

- 탱커, 냉동선등 선박류 3개품목(HS 6단위기준)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의 합리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수출제한승인품목(한국조선공업협회 추천)으로 전환하였다.

○ 상공부는 금번 수출제한승인품목의 자유화내지 제한내용 축소조치로 인하여 섬유류, 철강재, 공예품 및 합성수지제 생활용품등 5억 3천만$ 상당의 수출상품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수출제한 승인품목의 조정내용

(단위 : 개, HS 6단위)

구 분	품목수	주 요 품 목	비 고
수출이 자유화되는 품목	14	실지렁이, 삼치, 가자미, 뱀장어, 밤나무등의 묘목,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제의 휴대용시계줄, 밴드·조립식 건물등	○ 농림수산부등 유관기관요청 반영 ○ 수출추천불요 품목요청
수출금지에서 추천품목	9	철연흑연, 철광, 동광, 우라늄등	
수출지역이 조정되는 품목	176	견직물, 외의류, 내의류, 양말, 장갑류중 니트류(122개)	○ 일본지역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 '89.4 한·일 섬유회담결과 반영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철강제의 관, 연선·로프 등(54개)	○ 캐나다, 호주를 추천대상에서 제외(수출추천 대상 지역조정)
수출추천품목으로 추가되는 품목	3	탱커, 냉동선,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조선공업합리화대책중 일부 (기계공업국)

라. 시멘트의 수출제한

상공부는 최근 건설경기의 호조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한 시멘트에 대해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5.11(금)부터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수요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하였다.

지난해 시멘트수급은 공급 31.3백만톤, 수요 30.6백만톤(내수 28.2백만톤, 수출 2.4백만톤)으로서 년말재고가 0.7백만톤이었으며 금년 1/4분기중에는 생산 6.8백만톤, 수요 6.7백만톤으로 총수급면에서는 0.8백만톤의 재고가 있었으나 동기간중 특히 내수가 전년동기대비 29.2% 급증한 데 이어 4월에도 활발한 건설자재 수요에 일부 가수요까지 가중됨에 따라 시멘트 풍귀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공부는 주요건자재인 시멘트 및 시멘트크링커를 현재 수출자동 승인품목에서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수출추천품목으로 수출입공고를 개정·고시하여 종래의 수출물량을 국내수요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공부는 시멘트수입을 촉진하여 국내수급부족을 완화하도록 활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재의 수급부족현상은 시멘트제조회사의 설비증설(한라시멘트등 8개)이 금년 8월이면 대부분 완료되어 '89년말 현재 33.2백만톤이던 생산능력이 30%이상 증가해 년산 43백만톤규모로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시멘트수급동향

(천톤)

		'89			'90. 1/4
		상반기	하반기	계	
생산능력		16,420	16,820	33,240	8,300
생산		14,298	16,176	30,474	6,864
수요	내수	12,902 (4)	15,308 (11)	28,210 (18)	6,132 (29.2)
	수출	1,223	1,226	2,449	537
	계	14,125	16,534	30,659	6,669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마. HS개정에 따른 품목조정

1) 개 요

'90년 1월 1일부터 개정, HS 분류체제가 1989년 12월말까지는 HS10단위기준으로 10,241개품목이었으나, '90년 1. 1부터 33개 품목이 증가한 10,274개 품목이 됨.

이에 따라 6개품목이 독립 세 번화되면서 수입제한승인품목은 370개 품목에서 376개품목으로 증가되었고 또 수입자동승인품목은 HS 10단위기준으로 종전 9,871개품목에서 27개품목이 증가하여 9,898개품목으로 증가됨.

(HS10 단위 기준)

	당 초('89.12.31)	개 정('90.1.1)	비 고
총 품 목	10,241 개품목	10,274 개품목	33 개품목증가
수 입 규 제 품 목	370 개품목	376 개품목	6 개품목증가
수 입 자 동 승 인	9,871 개품목	9,898 개품목	27 개품목증가
수 입 자 유 화 율	96.4	96.3	

2) 수입요령 변경내용

○ HS개정에 따른 수입요령 조정

- 현행공고에 부분자유화 품목으로 되어있는 품목중 HS 세번이 별도로 독립된 품목

  · 실장어, 새우젓, 와인쿨러 외 7개품목

- 기존수입제한품목중 독립세번화된 품목 : 생선묵, 설치외 6개품목

부분자유화품목중 독립세번화		기존수입제한품목중 독립세번화	
0301 21 1000	실장어	0304 20 4000	가자미의 냉동피렛트
99 9010	농성어	0304 90 1010	명태의 냉동연육
99 9020	복 어	0305 59 7000	까나리
0306 23 3010	새우젓	8000	실 치
0307 99 1160	소 라		
0810 90 4000	키위프루트	1604 20 4010	게맛의 생선묵
2206 00 9010	와인쿨러	1604 14 1090	기타의 다랭이통조림
7 개 품 목		6 개 품 목	

- 기타 기자유화 품목중 20개품목이 증가됨.

〈참고 90-2〉 시멘트의 수출제한 관련 고시

상공부고시 제90-22호

대외무역법 제18조에 의한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0년 5월 11일

상 공 부 장 관

다 음

수출입공고중개정고시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출제한승인품목중 별첨 1과 같이 한다.

〔별표 2〕 수입제한승인품목중 별첨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별표 1］ 수출제한승인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2523	포트랜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시멘트 폰듀), 슬랙 시멘트, 슈우퍼설페이트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시멘트 클링커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523. 2	포트랜드 시멘트	
29	기타	

(2) '92-'94 수입자유화계획 수립

○ '89. 10 GATT/BOP에서의 합의에 따라 '91.3까지 '92-'94 수입자유화 계획을 수립, GATT에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품목소관처에 '92-'94 수입자유화 계획을 제출토록함('90.7.2).

Ⅰ - 14. 1992년의 수입자유화

상공부고시 제1992-50호
대외무역법 제18조에 의한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2년 12월 30일
상 공 부 장 관

수출입공고중개정고시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출입추천실적등의 보고) 수출입 추천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추천실적을 연도경과 후 15일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수출제한승인품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수입제한승인품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한 수입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추천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 추천기관의 수출·입 추천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타고시의 개정) 수출입공고중개정고시(상공부고시 제91-55호, 1991.12.28) 부칙 제4항 중 “1992년 12월 31일”을 “1993년 12월 31일”로 한다.

수 출 입 공 고

제 정 상공부고시 제87-15호(1987. 6. 1)
전문개정 상공부고시 제87-40호(1987.12.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또는 수입승인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상에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고시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승인대상품목은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선박의 경우에는 선령 1년이상의 것으로서 운항실적이 있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중고품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출입요령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5조(수출제한승인품목 및 수출자동승인품목) ①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제한승인품목이며 이는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을 위한 물품은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할 수 있다.

②별표1에 게기하지 아니한 품목은 수출자동승인품목이며 자동적으로 수출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출물품의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자동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동 품목의 인정기관의 디자인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승인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승인품목 및 수입자동승인품목) ①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입제한승인품목이며 이는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2.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3. 시장·군수(직할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②별표2에 게기하지 아니한 품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이며 이는 자동적으로 수입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동승인품목이라 하더라도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1. 방위산업용 원료기재의 수입
2.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3.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
4. 삭제 〈1988.12.31 상공부고시 제88-58호〉
5. 대외무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의 수입

③별표2의 수입요령에 불구하고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이 국내수급상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 수량 및 수입자를 따로 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출입절차의 간소화) 상공부장관은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1 또는 별표2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에 불구하고 수출 또는 수입추천기관을 따로 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추천요령의 공고등)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제한품목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에서 정하는 추천 주무관서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은 사전에 상공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 동 추천요령을 본 수출입공고 시행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수출추천기관의 장은 수출추천권한의 일부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출관련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입추천등의 유효기간) 이 고시에 의한 수입추천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천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수출입추천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추천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추천실적을 연도경과후 15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상공부고시 제87-40호, '87.12.17)

1. 이 고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수출입공고(상공부고시 제87-15호)" 및 "수출입공고개정고시(상공부고시 제87-16호, 제87-20호, 제87-21호, 제87-35호)"는 이를 폐지한다.
3. 이 고시 시행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추천(또는 확인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추천(또는 확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이 고시 시행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한 고시 및 공고는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5. 이 고시시행이전에 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수출입거래에 대하여는 당해거래의 종료시까지 CCCN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상공부고시 제87-58호, '88.12.31)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9.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이전의 수출입공고 또는 수입감시품목수입요령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추천(확인)을 받은 물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타공고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입감시품목수입요령
   상공부공고 제87-41호('87. 6. 30), 상공부공고 제87-79호('87. 12. 30)
   상공부공고 제88-15호('88. 3. 15), 상공부공고 제88-27호('88. 6. 30)
   상공부공고 제88-35호('88. 8. 5)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상공부고시 제91-9호, '91.3.14)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의 효력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상공부고시 제91-55호, '91.12.28)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추천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 추천기관의 수출·입 추천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타고시의 개정) 수출입공고중개정고시(상공부고시 제91-9호, 1992.3.14) 부칙 제2항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2년 12월 31일"로 한다.

수입제한승인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102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2 90	기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1000	젖 소	
90 2000	육 우	
90 9000	기 타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 0000	도체와 이분도체	
20 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30 0000	뼈없는 것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10 0000	도체와 이분도체	
20 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30 0000	뼈없는 것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1 0000	도체와 이분도체	
12 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19 0000	기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203 2	냉동한 것	
21 0000	도체와 이분도체	
0203 22 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9 0000	기타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204 30 0000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 냉동한 것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206	식용설육(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0 0000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소의 것, 냉동한 것	
29 0000	기타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2	가금류의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1 0000	닭	
0207 3	가금류의 절단육과 설육(간장 포함), 신선 또는 냉장한 것	
39 1000	절단육	1. 다음의 것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닭의 것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0207 4	가금류의 절단육과 설육(간장 제외), 냉동한 것	
41	닭의 것	
41 1000	절단육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10 1	돼지고기	

H S	품 목	수 입 요 령
11 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2 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19 0000	기타	
0210 20 0000	쇠고기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1	활어	
0301 9	기타의 활어	
92 00	뱀장어(앵귈라종)	
92 9000	기타	
99 2000	방어	
99 8000	넙치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2 2	넙치류(플루로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시대, 슬레이대, 스코프탈미대 및 시타리대)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21 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로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스데노레피스)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2 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29 0000	기타	
0302 6	기타어류,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64 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66 0000	뱀장어(앵귈라종)	
69 1000	명태	
69 2000	방어	
69 3000	갈치	
69 8000	꽁치(학꽁치 포함)	
69 9030	병어	

H S	품 목	수 입 요 령
69 9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1) 전어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3	넙치류(플루로 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시대, 솔레이대, 스코프탈미대, 시타리대)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32 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한·미(카나다포함) 공동어업 사업에 의한 것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3 0000	서대(솔레아종)	
0303 4	다랭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 〈카추워누스〉 펠라미스)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43 0000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0303 7	기타어류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71 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렛(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4 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75 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한·미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76 0000	뱀장어(앵귈라종) 명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한·미(카나다포함) 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3 79 3000 79 4000 79 5000 79 6000 79 7000 79 8000 79 9020	갈치 돔 붕장어 조기 전갱이 꽁치(학꽁치 포함) 북어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9 9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한·미(카나다포함) 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3 80 20 2010 2090	어란 명란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한·미(카나다포함) 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4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4 20 20 1000 90 90 10 90 1010	냉동한 피레트 명태의 것 기타 냉동연육 명태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한·미(카나다포함) 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5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의	

H S	품 목	수 입 요 령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 20	간장과 어란(건조, 훈제,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20 40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4010	명태의 것	
0305 5	건조한 어류, 염장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59 2000	멸치	
59 3000	명태(북어)	
59 4000	조기(굴비)	
0305 6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69 3000	갈치	1.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1) 갈치젓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69 5000	고등어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불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불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 조분과 팰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을 포함한다]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6 1	냉동한 것	
13	새우와 보리새우	
13 1000	새우살	
13 9000	기타	
14	게	
14 9000	기타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306 2	냉동하지 아니한 것 새우와 보리새우	
23 2000	건조한 것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3 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1) 새우젓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이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팰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에 한한다]	
0307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로시아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트토다투스종, 세피오투디스종)	
4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41 2000	오징어	
49 10	냉동한 것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9 1010	갑오징어	
0307 49 1020	오징어	1. 다음의 것은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한·미(카나다포함) 공동어업사업에 의한 것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9 3000	건조한 것	
0307 5	문어(옥토푸스종)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9 1000	냉동한 것	
0307 9	기타[갑각류이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을 포함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9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91 1200	전복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1 19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1) 고동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1 9030	우렁쉥이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7 99 1	냉동한 것	
99 1110	새조개	
99 1120	개량조개	
99 1130	바지락	
99 1190	기타	
99 3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99 3120	바지락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 10	분상, 입상 또는 기타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의 것	
0402 10 10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10 1010	탈지분유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1090	기타	
10 9000	기타	
0402 2	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 1.5를 초과하는 것	
0402 2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1 1000	전지분유	
21 9000	기타	
29 0000	기타	
0402 9	기타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402 9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91 1000	무당연유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1 9000	기타	
0402 99	기타	
99 1000	가당연유	
99 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3 10	요구르트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9000	기타	
90	기타	
90 1000	버터밀크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10	유장	1. 다음의 것은 한국대용유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사료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10	유장	
10 1000	유장분말	
10 9000	기타	
0405	버터와 기타의 지와 유 (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0 1000	버터	
00 9000	기타	
0406	치즈와 커드	
0406 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10 1000	신선한 치즈	
10 2000	커드	
20 0000	같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406 30 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한다)	
40 0000	블루바인 치즈	
90 0000	기타 치즈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	
9	기타	1. 다음의 것은 대한양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닭의 것
99 0000	기타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0409 00 0000	천연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703	양파, 쪽파, 마늘, 부추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0 1000	양파	
20 0000	마늘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60 0000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90 1000	마늘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50	기타 채소	
90 5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고추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0712	건조한 채소	
20 0000	양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1000	마늘	
0714	매니옥, 칡뿌리, 살렙, 국아,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피경(자르거나 팰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0714 10	매니옥(카사바)	
10 1000	신선한 것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건조한 것	
10 2010	칩	
10 2020	팰리트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여부를 불문한다)	
0802 40	밤(카스타네아종)	
40 1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 2000	탈각한 것	
90 10	잣	
90 1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90 1020	탈각한 것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10 0000	오렌지	
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클렌맨타인, 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20 1000	감귤	
20 9000	기타	
90 0000	기타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0 0000	신선한 것	
0808	사과, 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0000	사과	
20 1000	배	
0809	살구, 버찌,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30 000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90 2000	단감	
90 3000	대추	
0813	건조한 과실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 2000	대추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내용량이 3kg이하로 포장된 것)	
20 0000	기타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0 0000	홍차(발효차)와 반발효차(내용량이 3kg이하로 포장된 것)	
40 0000	기타홍차(발효차)와 기타 반발효차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904 20	고추류	
20 1000	분쇄하지 아니한 것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2000	분쇄한 것	
0910 10 0000	생강	
1107	맥아	
10 0000	볶지 아니한 것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1000	훈연한 것	
20 9000	기타 볶은 것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0 0000	참깨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팰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투플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000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팰리트상의 것을 제외한다)	
20 100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팰리트상의 것에 한한다)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1212 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김	
20 1010	마른 것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1090	기타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50 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 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제조용의 것 2. 다음의 것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동물약품제조용의 것 3. 기타의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	
4	돼지의 것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41 9000	기타	
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42 9000	기타	
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49 9000	기타	
50	소의 것	
5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0 9000	기타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 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 14	다랑이, 가다랑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14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14 1010	다랭이	
14 1020	가다랭이	
1604 15	고등어	
15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4 19	기타	
19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9 1010	꽁치	
19 90	기타	
19 9010	쥐치포	
1604 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40	생선묵	
20 4090	기타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1605 20	새우와 보리새우	
20 90	기타	
20 9020	브레드한 것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1 9	기타	
91 00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대한제당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9 0000	기타	
1702	기타의 당류, 당시럽, 인조꿀 및 캐러멜당	
1702 10 1000	유 당	1. 다음의 것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동물약품제조용의 것 2. 기타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1000	인조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1901	맥아엑스와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1901 10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10 1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10 1010	조제분유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부분(탈수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00 3000	생강	
2007	잼, 과실제리, 마아말레이드,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조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1	감귤류의 과실	
91 9000	기타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2008 1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낙화생	
11 9000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9	과실주우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우스(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 1	오렌지주우스	
11	냉동한 것	
11 1000	농축한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9 11 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9 19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9 1000	농축한 것	
2009 19 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2009 30 9000 60 0000 70 0000	기타 감귤주우스 포도주우스(포도즙을 포함한다) 사과주우스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2106 90 40 90 4010	조제한 식용해초류 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202	설탕이나 기타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2 90 2000	과즙음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 배술, 미이드)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곡물발효주	
00 2010	청주	1. 다음의 것은 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관광호텔 및 외국인관광업소 소요분의 완제품 (2) 주한외국인용 및 기타 소요분의 완제품 2. 기타의 것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용량을 불문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2207 10 10 900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세청장(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2501 00 1010 00 1020 00 9010	암 염 천일염 식 염	대한염업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701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 마쎅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1 1 11 0000	석탄(분쇄한 것이지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무연탄	대한석탄공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001 00 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5002 00 1010 00 1020 00 1030 00 1040 00 1050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백잠사 20 데시덱스 이하의 것 20 데시덱스를 초과하고 25.56데시덱스 이하의 것 25.56데시덱스를 초과하고 28.89데시덱스 이하의 것 28.89데시덱스를 초과하고 36.67데시덱스 이하의 것 36.67데시덱스를 초과의 것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004 00 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5007 20	기타의 직물(견 또는 웨이스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으로 견노일의 것을 제외한다)	
20 1000	생지견직물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20	순견직물(생지견직물을 제외한다)	
20 2020	사틴	
20 2030	크레이프 데신	
20 2090	기타	
20 9000	기타	

Ⅰ - 15. 1994년의 수입자유화

통상산업부고시 제1994-1호
대외무역법 제18조에 의한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년 12월 26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 출 입 공 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또는 수입승인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상에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고시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승인대상품목은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선박의 경우에는 선령 1년이상의 것으로서 운항실적이 있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중고품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출입요령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5조(수출제한승인품목 및 수출자동승인품목) ①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제한승인품목이며 이는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하여야 한다.
②별표1에 게기하지 아니한 품목은 수출자동승인품목이며 자동적으로 수출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출물품의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자동

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동 품목의 인정기관의 디자인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승인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승인품목 및 수입자동승인품목) ①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입제한승인품목이며 이는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확인없이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2.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3. 시장·군수(직할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②별표2에 게기하지 아니한 품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이며 이는 별도의 추천·확인없이 수입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동승인품목이라 하더라도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1. 방위산업용 원료기재의 수입
2.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3.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
4. 대외무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의 수입
5.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등의 수출입

제7조(수출입절차의 간소화)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1 또는 별표2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에 불구하고 수출 또는 수입추천 기관을 따로 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추천요령의 공고등)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제한품목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에서 정하는 추천 주무관서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은 사전에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 동 추천요령을 본 수출입공고 시행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수출추천기관의 장은 수출추천권한의 일부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출관련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입추천등의 유효기간) 이 고시에 의한 수입추천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천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수출입추천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추천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추천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연도경과후 15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추천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추천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 추천기관의 수출·입 추천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수입제한승인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102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2 90	기타	
90 1000	젖 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2000	육 우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 0000	도체와 이분도체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30 0000	뼈없는 것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10 0000	도체와 이분도체	
20 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30 0000	뼈없는 것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2	냉동한 것	
21 0000	도체와 이분도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203 22 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9 0000	기타	
0206	식용설육(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0 0000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소의 것, 냉동한 것	
29 0000	기타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2	가금류의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21 0000	닭	
0207 4	가금류의 절단육과 설육(간장 제외), 냉동한 것	
41	닭의 것	
41 1000	절단육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10 1	돼지고기	
11 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19 0000	기타	
0210 20 0000	쇠고기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1	활어	
0301 9	기타의 활어	
92 00	뱀장어(앵귈라종)	
92 9000	기타	
99 2000	방어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9 8000	넙치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2 2	넙치류(플루로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시대, 슬레이대, 스코프탈미대 및 시타리대)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21 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로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스데노레피스)	
29 0000	기타	
0302 6	기타어류,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 방어는 '95.7.1부터 수입자도승인 품목임)
64 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69 1000	명태	
69 2000	방어	
69 3000	갈치	
69 8000	꽁치(학꽁치 포함)	
69 9030	병어	
69 9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1) 전어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3	넙치류(플루로 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로시대, 솔레이대, 스코프탈미대, 시타리대)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32 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3 4	다랭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 〈카추워누스〉 펠라미스)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43 0000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303 7	기타어류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74 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5 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 '95.7.1부터 수입자동승인품목임)
79 1000	명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3 79 3000	갈치	
79 5000	붕장어	
79 6000	조기	
79 8000	꽁치(학꽁치 포함)	
79 90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1) 화학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태평양먹장어(Pacific hagfish)와 대서양먹장어(Atlantic hagfish) (2) 아귀(Monkfish)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4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4 20	냉동한 피레트	
20 1000	명태의 것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 '95.7.1부터 수입자동승인품목임)
0305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의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 5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59 2000	멸치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305 6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69 3000	갈치	1.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1) 갈치젓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불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불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 조분과 팰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을 포함한다]	
0306 1	냉동한 것	
13	새우와 보리새우	
13 1000	새우살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6 2	냉동하지 아니한 것	
23	새우와 보리새우	
23 2000	건조한 것	
23 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 '95.7.1부터 수입자동승인품목임)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이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팰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에 한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307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로시아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트토다투스종, 세피오투디스종)	
49 10	냉동한 것	
49 1010	갑오징어	
0307 49 1020	오징어	
49 3000	건조한 것	
0307 9	기타[갑각류이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을 포함한다)]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91 1200	전복	
91 19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1) 고동 2. 기타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1 9030	우렁쉥이	
0307 99 1	냉동한 것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9 1130	바지락	
99 1190	기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 9	기타	
0402 9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91 1000	무당연유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1 9000	기타	
0402 99	기타	
99 1000	가당연유	

H S	품 목	수 입 요 령
99 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0	기타	
90 1000	버터밀크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405	버터와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00 1000	버터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0 9000	기타	
0409 00 0000	천연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0 0000	오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클렌맨타인, 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20 1000	감귤	
20 9000	기타	
90 0000	기타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0 0000	신선한 것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00	볶지 아니한 것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12 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20 10	김	
20 1010	마른 것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1090	기타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	
4	돼지의 것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41 9000	기타	
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42 9000	기타	
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49 9000	기타	
50	소의 것	
5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0 9000	기타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H S	품 목	수 입 요 령
1604 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 14	다랭이, 가다랭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14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4 1010	다랭이	
14 1020	가다랭이	
1604 15	고등어	
15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4 19	기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 기타생선묵은 '95.7.1부터 수입자동화승인품목임)
19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9 1010	꽁치	
19 90	기타	
19 9010	쥐치포	
1604 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20 40	생선묵	
20 4090	기타	
1702	기타의 당류, 당시럽, 인조꿀 및 캐러멜당	
1702 10 1000	유 당	1. 다음의 것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동물약품제조용의 것 2. 기타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1000	인조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2008 1 11 11 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낙화생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9	과실주우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우스(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 1 11 11 1000	오렌지주우스 냉동한 것 농축한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9 11 90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9 19 19 1000	기타 농축한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09 19 9000 2009 30 9000 70 0000	기타 기타 감귤주우스 사과주우스	1.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의약품 및 화장품원료규격의 것으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의 것 2. 기타의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 90 40 90 4010	조제한 식용해초류 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용량을 불문한다)	
2207 10 10 900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기타	1. 다음의 것은 국세청장(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승인품목임.
2501 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2501 00 1010 00 1020 00 9010	암 염 천일염 식 염	대한염업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701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 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1 1 11 0000	석탄(분쇄한 것이지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을 제외한다) 무연탄	대한석탄공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입 요 령
5001 00 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5002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잠사	
00 1010	20 데시덱스 이하의 것	
00 1020	20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5.56데시텍스 이하의 것	
00 1030	25.56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8.89데시텍스 이하의 것	
00 1040	28.89데시텍스를 초과하고 36.67데시텍스 이하의 것	
00 1050	36.67데시텍스를 초과의 것	
5004 00 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007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007 20	기타의 직물(견 또는 웨이스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으로 견노일의 것을 제외한다)	
20 1000	생지견직물	
20 20	순견직물(생지견직물을 제외한다)	
20 2020	사틴	
20 2030	크레이프 데신	
20 9000	기타	

Ⅰ- 16. 1997년의 수입자유화

69개 농·축·수산물 및 8개 공산품 수입자유화(97.7.1부터)

(수출입공고 개정)

○ 통상산업부는 89.10 GATT/BOP 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른 “95-97 및 2001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77개 수입제한품목을 수입제한에서 해제하여 수입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수출입공고를 97.6.23일 개정·고시하여 97.7.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 금번 수입제한품목에서 해제되는 77개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중 혀·간장·꼬리·족등 부산물, 천연꿀, 오렌지, 생사등 농축수산물 38개 품목,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김등 수산물 31개 품목 및 염, 직물, 무연탄 등 공산품 8개품목이며, 이번 공고 개정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시 별도의 수입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됨.

○ 77개품목의 수입자유화로 잔존 수입제한품목수는 전체 HS10단위기준 11,012개 품목중 소고기관련 8개 품목임.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99.3%에서 99.9%로 확대됨.

○ 잔존 쇠고기관련 8개 품목은 2001.1.1부터 수입자유화될 예정임.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17호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59호, 제1997-33호 및 제1997-100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6월 23일

통상산업부장관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0203 21 0000호란 내지 제5007 20 2090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97.7.1 수입자유화 품목

순서	HS번호	품 목 명	품목구분
1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농축산물
2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뼈채절단)	〃
3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
4	0206-10-0000	쇠고기(식용설육/신선, 냉장)	〃
5	0206-29-1000	쇠고기(식용설육/혀, 간장 이외 기타/꼬리/냉동)	〃
6	0206-29-2000	쇠고기(식용설육/혀, 간장 이외 기타/족/냉동)	〃
7	0206-29-9000	쇠고기(식용설육/혀, 간장 이외 기타/꼬리, 족이외의 기타/냉동)	〃
8	0207-12-1000	닭고기(중량이 550그램 이하의 것/미절단/냉동)	〃
9	0207-12-9000	닭고기(중량이 550그램 이하의 것 제외 미절단/냉동)	〃
10	0207-14-1010	닭고기(다리/절단/간장제외/냉동)	〃
11	0207-14-1020	닭고기(가슴/절단/간장제외/냉동)	〃
12	0207-14-1030	닭고기(날개/절단/간장제외/냉동)	〃
13	0207-14-1090	닭고기(기타/절단/간장제외/냉동)	〃
14	0210-11-0000	돼지고기(넓적다리,어깨살/절단/뼈있는 것/염장,염수장,건조,훈제)	〃
15	0210-19-0000	돼지고기(넓적다리,어깨살,복부살제외 기타/염장,염수장,건조,훈제)	〃
16	0210-20-1000	쇠고기(육, 식용설육/건조, 훈제)	〃
17	0210-20-9000	쇠고기(육, 식용설육/염장, 염수장)	〃
18	0301-92-9000	뱀장어(실장어 이외 기타/활어)	수산물
19	0301-99-2000	방어(yellow tail/활어)	〃
20	0301-99-8000	넙치류(flat fish/활어)	〃
21	0302-64-0000	고등어(간장, 어란제외/신선, 냉장)	〃
22	0302-69-1000	명태(alaska pollack/간장, 어란제외/신선, 냉장)	〃
23	0302-69-3000	갈치(hair tail/간장, 어란제외/신선, 냉장)	〃
24	0302-69-9090	어류(간장/신선, 어란제외/신선, 냉장)	〃
25	0303-79-3000	갈치(hair tail/간장, 어란제외/냉동)	〃
26	0303-79-6000	조기(yellow corvina/간장, 어란제외/냉동)	〃
27	0303-79-9092	먹장어(태평양, 대서양)(간장, 어란제외/냉동) ※ 화학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것은 '95.1.1 자유화됨	〃
28	0303-79-9093	홍어(간장, 어란제외/냉동)	〃
29	0303-79-9094	밀크피쉬(간장, 어란제외/냉동)	〃
30	0303-79-9095	민어(간장, 어란제외/냉동)	〃
31	0303-79-9099	어류(기타/간장, 어란제외/냉동)	〃
32	0303-59-2000	멸치(건조, 염장불문/훈제제외)	〃

순서	HS번호	품 목 명	품목구분
33	0306-13-1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새우살)	수산물
34	0306-23-2000	새우・보리새우(건조)	〃
35	0307-49-1020	오징어(냉동)	〃
36	0307-49-3000	갑오징어와 오징어(건조)	〃
37	0307-91-1200	전복(abalone/산건/신선, 냉장)	〃
38	0307-91-1990	연체동물(굴, 홍합, 오징어, 문어 등 이외기타/산것/신선・냉장)	〃
39	0307-99-1130	바지락(baby clams/냉동)	〃
40	0307-99-1190	연체동물(새조개, 개량조개, 바지락, 소라등 이외기타/냉동)	〃
41	0409-00-0000	천연꿀	농축산물
42	0805-10-0000	오랜지(oranges/신선, 건조)	〃
43	0805-20-1000	감귤류(Korean citrus/신선, 건조)	〃
44	0805-20-9000	감귤류(감귤 이외 기타/신선, 건조)	〃
45	0805-90-0000	감귤류(오랜지, 맨더린류, 레몬, 그레이프 푸루우트 이외 기타/신선,건조)	〃
46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 것)	〃
47	1212-20-1010	김(laver/마른 것)	수산물
48	1602-41-9000	돼지고기(넓적다리살.그절단육/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농축산물
49	1602-42-9000	돼지고기(어깨살.그 절단육/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
50	1602-49-9000	돼지고기(넓적다리.어깨살.그 절단육 이외 기타/혼합물 포함/밀폐용기 이외 기타)	〃
51	1602-50-1000	쇠고기(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
52	1602-50-9000	쇠고기(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
53	1604-14-1011	다랑이(기름에 담근 것/조제/밀폐용기 넣은 것)	수산물
54	1604-14-1012	다랑이(보일드한 것/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
55	1604-14-1019	다랑이(기타/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
56	1604-14-1021	가다랑이(기름에 담근 것/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
57	1604-14-1022	가다랑이(보일드한 것/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
58	1604-14-1029	가다랑이(기타/제조/밀폐용기에 넣은 것)	〃
59	2009-11-1000	오랜지쥬스(냉동/농축)	농축산물
60	2009-11-9000	오랜지쥬스(냉동/농축 이외 기타)	〃
61	2009-19-1000	오랜지쥬스(냉동 이외 기타/농축)	〃
62	2009-19-9000	오랜지쥬스(냉동 이외 기타/비농축)	〃
63	2009-30-9000	감귤류쥬스(단일 귤류쥬스/레몬. 라임 외 기타)	〃
64	2009-90-4010	김(조제)	수산물
65	2501-00-1010	암염	공산품

순서	HS번호	품 목 명	품목구분
66	2501-00-1020	천일염	공산품
67	2501-00-9010	식염	〃
68	2701-11-0000	무연탄	〃
69	5002-00-1020	생사(백잠사/20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	〃
70	5002-00-1030	생사(백잠사/25.56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	농축산물
71	5002-00-1040	생사(백잠사/28.89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	〃
72	5002-00-1050	생사(백잠사/36.67 데시텍스 이하)	〃
73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 제외)	〃
74	5007-20-1000	생지견직물	공산품
75	5007-20-2020	사틴	〃
76	5007-20-2030	크레이프데신	〃
77	5007-20-2090	기타	〃

Ⅰ- 17. 2001년의 수입자유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38호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23일
산업자원부 장 관

수 출 입 공 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4조제1항, 제2항의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 공고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4조(수출제한품목)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제한품목) ①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 승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 승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2.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의 수입
3.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

제6조(수출입절차의 간소화)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1의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승인요령의 공고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출관련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승인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 승인기관의 수출·입 승인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01.1.1 수입자유화 품목(8개)

순서	HS 번호	품 목 명	자유화연도
1	0102-90-1000	소(젖소)	2001.1.1
2	0102-90-2000	소(육우)	2001.1.1
3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2001.1.1
4	0201-20-0000	쇠고기(신성.냉장/뼈채 절단)	2001.1.1
5	0201-30-0000	쇠고기(신성.냉장/뼈없는 것)	2001.1.1
6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2001.1.1
7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2001.1.1
8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2001.1.1

Ⅱ. 輸入監視制度

Ⅱ- 1. 수입감시제도의 도입 (1978년)

○ 근거 : 수출입기별공고 제5조의4에 신설
(상공부공고 제78-41호, 78. 5. 1)

○ 제도운용
- 수입절차는 자동승인품목의 수입절차에 따름.
- 무역협회는 감시품목의 수입동향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감시품목중 문제품목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은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의 심의 및 주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강구 실시해야 함.
  · 보완대책으로서는 제한적 관세수권제도(制限的 關稅授權制度), 부당염매방지관세(不當廉賣防止關稅), 상계관세, 기타 산업합리화지원시책이 있음.
- 감시품목의 보완대책강구, 감시품목의 해제에 대하여는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수입감시품목
- 신규 자유화품목 중 46개품목(4단위 기준 28개)을 감시품목으로 지정, '78.5.1부터 시행

CCCN	품 목	CCCN	품 목
1702	기타의 당류 및 당수	5603	인조섬유의 설
1705	착색 또는 향료를 함유한 당류, 당수 및 당밀	6910	취사용 싱크, 세면대, 변기, 목욕조 등 위생용 기류
1903	마카로니, 스파겟티		
1906	성찬용 웨이퍼등	7004	
1907	빵, 건빵, 기타 베이커리 제품	7005	판유리
		7006	
1908	파이, 비스켓, 스폰지 케이크	7007	
		7008	안전유리
2105	수우프 및 브로스	7009	유리경
2107	조제식료품중 라면	7013	유리제품
2838	황산닉켈, 황산소다	7301	일반주물용 선철
2845	규산알미늄	8415	전기식 냉장고
2923	그루타민산, 그루타민산 소다	8417	곡물 건조기
		8424	파종기, 이앙기, 경운기
3901	페놀수지, 알킷드수지, 요소수지, 합성수지의 성형제품	8425	탈곡기, 사료절단기
		8430	제빵기계, 비스켓 제조기계
3902	합성수지의 성형제품	8506	선풍기
3907	합성수지의 가공제품	8515	흑백 TV
4403	원목	8702	화물자동차(8대이상)
5306	방모사	8707	지게차(10대이상)
5307	소모사	9010	사진용 감광처리기게
5308	기타 수모사	9023	비중계, 체온계

Ⅱ- 2. 1978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299개 자유화품목중 39개 품목을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

- '78. 9. 10 시행
- 추가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813	화이트 카본	7314	흑철선, 아연도철선
2825	산화 티타늄	7316	경례일
2831	아염소산 소다	7336	오일스토브 및 동부분품
2842	소다회	7401	동과 동합금괴
3205	안료	7417	등산용 버너 및 동부품
3209	도료	7603	알미늄판과 대
3213	인쇄용 잉크	8203	인공용구
3304	식용 및 음료용 향료	8204	수도구
3702	사진용 흑백필름	8205	절삭용구
3901	폴리에스틸 수지	8206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3902	PVC sheet		나이프와 컷팅블레이드
4011	레디알 타이어	8315	용접봉
4807	아트지	8410	오수펌프(10HP 이하)
4815	화장지	8461	Valve
5905	어 망	8519	가정용 소켓트, 콘셋트
6110	장갑과 양말	8520	형광방전등, 백열전구
7311	형 강	8523	전자기기 및 플라스틱
7313	냉연강판		전선등

Ⅱ- 3. 1979년 상반기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 근거 : 상공부고시 제78-161호 ('78. 12. 18)

○ 시행 : '79. 1. 1

○ 추가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3901	에폭시 수지	6204	텐트등 캠핑용품
4005	천연고무의 판·시트	6402	갑피구두
4007	고무사 및 고무끈	7312	냉간압연강대
4815	기타 지와 판지	7332	철강제의 볼트, 너트
5104	인조섬유의 장섬유직물		나사 등
5509	일반면직물	7336	철강제의 스토브,
5605	면혼방사		레인지 등
5606	〃	7337	방열기(라디에타)
5607	인조섬유의 단섬유직물	7403	동의 형재
5810	자면포와 자면품	7417	동제의 가열기구와
5908	방직용섬유의 직물류		부분품
5909	〃	7801	연의 괴와 설
6003	여자용 스타킹	8441	가정용 재봉기
6004	남자용 내의	8501	주상변압기
	(합성섬유제, 면제)	8512	전기식 순간탕비기
6103	〃	8710	자전차
6106	솔, 스카프, 머풀러	9009	Overhead Projector
6202	린넨류		

Ⅱ- 4. 1979년 하반기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1) 수입감시품목 조정

○ 현행 감시품목 99개중

- 원목, 소다회, 방모사, 연괴, 경운기 등 원자재류 또는 기기등 80개 품목은 해제
- 금번 수입자유화품목중 남자용 내의 및 합성세제(경성) 등 2개품목은 추가
- 잔존 감시품목 : 20개(남자용 내의는 기존 감시품목의 확대임)

(2) 행정지도 방안

○ 수입업자가 수입감시품목의 수입허가(또는 승인) 신청시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오퍼확인을 받게 함.
(감시품목운영요령 제3조에 단서규정을 신설)

○ 한국무역대리점협회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2회에 걸쳐 개별 심사함.

- 실무위원회 구성(한국무역대리점협회내에 설치)

위원장 :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부회장

위 원 : 상공부 수입국 수입관리과장

〃 유통경제국 유통과장

〃 생산주무부 (국) 소관과장

간 사 :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담당이사

- 심사기준

해당품목의 국내수급상황, 수입가격의 적정성(고가품 여부), 유통면에서의 기여도, 기타 수입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사치성 또는 불요불급성이 있는 상품은 오퍼확인을 불허하거나 수입업자를 설득하여 수입을 억제내지 금지함(대일지역 수입은 불허함).

○ 수입감시품목의 조정은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임.

<수입감시제도 개선방안('80. 10월)>

가. 제도개요

○ 개념

수입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수입동향을 일정기간 주시하여 파악한 후 수입자유화 또는 제한을 강구하는 준자유화 품목

○ 근거

- 기별공고총칙 제5조의 4(수입감시품목)
- 상공부공고 제78-41호(감시품목 운영요령)

○ 운영현황

- 대상품목 : 국민생활에 직접 공하는 소비성품목등 25개
- 사실상 수입불허(또는 수입제한) 함.
- 품목별로 수입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 수입제한방법

OFFER SHEET 확인(무역대리점협회를 경유토록 함)

나. 대상품목 현황

대 상 품 목	수 입 허 용 여 부
○ 식료품 6개(유당, 마늘가루, 과자류, 스프류) ○ 섬유제품류 6개(스타킹, 내의, 양말, 스카프) ○ 유리 및 도자기제품 3개(변기, 유리그릇) ○ 가정용 기기류 3개(레인지, 재봉기, 전화기) ○ 산업용 물품 2개(고무호스, 동박적층판) ○ 기타 소비성물품 5개(구두약, 가죽구두, 합성수지 제품) (합계 25개)	○ 수입불허 : 과자류, 유리제품, 구두약, 전화기, 가죽구두, 커피크림, 인조꿀, 섬유제품류 ○ 일부만 수입허용 : 유당, 합성수지 제품, 고무호스류(대일 수입을 불허함)

다. 문제점 검토

○ 전반적으로 수입불허방향으로 운영함으로써 본질적인 수입감시기능 결여

○ 구미지역 또는 국제기구(IMF, GATT등)에서 근본적으로 수입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간주, 이의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여 올 것으로 전망됨.

○ 급격한 경제여건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품목조정 기능부족
- 신규품목 추가요건의 객관성 결여
- 일단 지정된 후에는 품목 재조정 없이 비탄력적으로 지속됨.

○ 부분적인 수입허용기준의 객관성 결여로 일부 수입업자로부터 오해 여지가 있음.

라. 개편방향

○ 기본방향
-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운영함.
- 기준, 요건등을 객관화하여 감시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 개편방침
- 근거체제를 개선함.
  · 근거 : 무역거래법 시행
  · 고시방법 : 무역관리규정 및 동 별표
-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Group 별로 수입절차를 정함.
- 현행 대상품목을 전면 조정함.

○ 대상품목 지정요건

신규수입자유화된 품목중
- 국민감정상 문제가 예상되는 사치성 소비재
- 급격한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

○ 수입감시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

- 부분적으로 수입을 허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 수입불허의 경우
  - 대일수입
  - 고도의 사치성 소비재
  - 국내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불허)

○ 제도운용

- 수입절차

구 분		Group	수입절차	비 고
사치성 소비재		A	현행위원회 제도활용	품목별특성을 감안하여 내부 수입허용 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입가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감시제도의 운영을 기함.
수입 급증이 예상 되는 품목	물량조정이 필요한 품목	B		
	특수규격(조건)만 수입허용해야 할 품목	C	관련단체 추천제 실시	국내생산규격 또는 수입허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관련단체에서 정함(내부규정).

- 품목조정
  - 운용기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 실시기간 : 6개월
  - 대상품목 : 현재의 품목수 범위이내에서 유지
  - 품목조정시 검토요인
    - 품목별로 계속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국민의 소비행태
    - 국내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Ⅱ- 5. 1981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1) 추가품목

○ 수입제한 → 수입감시(앞의 수입자유화품목 참조)

○ 수입자동 → 수입감시

CCCN	품 목
4701	표백화학펄프
293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2) 해제품목

○ 수입감시 → 수입제한(2개)
(앞의 신규수입제한 참조)

Ⅱ- 6. 1982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상공부공고 제82-21호, '82. 7. 1 시행)

(1) 운 용

CCCN 4단위 기준으로 표시된 14개 품목을 완전 8 단위로 명확히 표시, 수입승인업무의 정확 및 민원인 편의 도모

- CCCN 4단위 : 44 → 8단위 : 282

(2) 품목조정

	CCCN	품 목	비 고
해 제	2930	TDI	'82. 7. 1. 시행
	8441	가정용 재봉기	〃
추 가	0703 0400	기타 채소	'82. 3.18. 시행
	0812 0200	대추	〃
	2915 0103	수산	'82. 7. 1. 시행
	8460	금속주조용 주형	〃
	6005 0107		
	6104 0301		
	0302	재생 또는 인조섬유의	〃
	0399	의류 등	
	0400		
	6107 0299		
	6201 0300		
	2002 0105	죽순통조림	〃

Ⅱ- 7. 1983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상공부공고 제83-27호, '83.7.1 시행)

가. 기본방향

○ 감시품목운영 기본취지에 따라 자동수입허용을 원칙으로 함.

○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품목은 금지 또는 제한성으로 운영함.

○ 자동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생산 및 국제수지를 감안하여 일정 수입수준을 초과할 경우 수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을 조절함.

＊ 수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구 분	현 행	개 정
○ 위원회 명칭	수입감시품목운영위원회	수입관리위원회
○ 위원회 기능	- 수입감시품목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 수입감시품목의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여부 심의 - 수입감시품목의 품목별 수입허용기준 및 운영방안 심의	- 수입자동승인품목의 수입동향 점검 및 품목별 기본대책 강구 - 수입감시품목의 지정 및 운영방안 심의 - 수입자동승인품목 및 수입감시품목의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여부 심의 및 대책강구
○ 위원회 구성	위원장 :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전무 위 원 : 관련부처 과장급 공무원	위원장 : 상공부 제1차관보 위 원 : 관련부처 국장급 공무원

나. 선정기준

○ 해제대상

- 장기간 감시존치품목은 대폭 자유화함(183개)
- 감시품목으로서 장기간 자유화의 전망이 어려운 품목은 수입제한품목으로 전환함(9개)

○ 추가대상

- 기별공고상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중 일부 민간품목 및 농산물을 감시품목으로 지정함(74개)

다.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8단위 기준)

현 행	조 정		조 정 결 과
	해 제	추 가	
283	192	74	165

(2) 해제품목

○ 기별공고상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전환 : 9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2107-0900	조제된 비낙농크림 (Non-Dairy Cream)	7401-0401	괴(기타의 동의 매트, 괴, 스크랩)
4701-0401	펄프(반표백한 것)	0402	잉곳드바(〃)
0402	〃	0403	빌 렛(〃)
0602	기타의 펄프	0404	스 래 브(〃)
		0499	기 타(〃)

○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전환품목 : 24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3907-0101	보빈, 풀, 릴 이와 유사한 것 (기계용의 부분품)	0400	신변용 장식용품 및 기타의 장신구
0199	프라스틱볼을 제외한 기타의 것(기계용의 부분품)	0500	사무용품(학용품 포함)
		0600	의류 및 의류부속품
0201	운반용기 또는 포장용기	0700	전기조명기기
0202	〃	0800	로울러 블라인드, 베니스 블라인드
	(기타)		
0301	목욕통	1100	부채, 핸드스크린
0302	대야	1200	코르셋 비스코, 의류부속용품의 서포오드
0303	변기		
0304	비누갑	1000	기타의 것(21개 제외)
0399	기타의 위생용품 및 화장용품	6910-(7)	설거지통, 세면대, 목욕통

○ 완전해제품목 : 159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3402 0500	합성세제	6104 (4)	재생섬유제의 것
3606 0000	성냥	6106 (8)	숄, 스카프
4202 (44)	가방류	6107 0299	넥타이
4910 0000	카렌다	6110- (2)	장갑과 양말류
5810 (3)	자수포	6201 0300	여행용 러그와 모포류 (면제)
6003 (6)	스타킹		
6004 (19)	내의류	6402 (11)	신발류
6005 (13)	외의류	7013 0200	토일릿용품
6006 (5)	편물	0300	유리제문구
6101 (10)	남자·소년용 외의류	0500	기타유리제품
6102 (9)	여자·유아용 외의류	9702 0500	기타의 인형
6103 (14)	내의류	9812 (2)	빗, 헤어슬라이드

(3) 추가품목

○ 수입제한승인품목 → 수입감시품목 : 69개
(앞의 수입자유화품목 참고)

○ 기타 : 5개

<일일수입동향 분석파악을 위한 Task Force 운영>

가. 목 적

'83. 7. 1부터 수입자유화 확대조치와 관련하여 일일수입동향을 분석, 파악하여 합리적인 수입관리대책을 수립 실시코자 함.

나. 구 성

○ 책임자 : 한국무역협회 전산실장

○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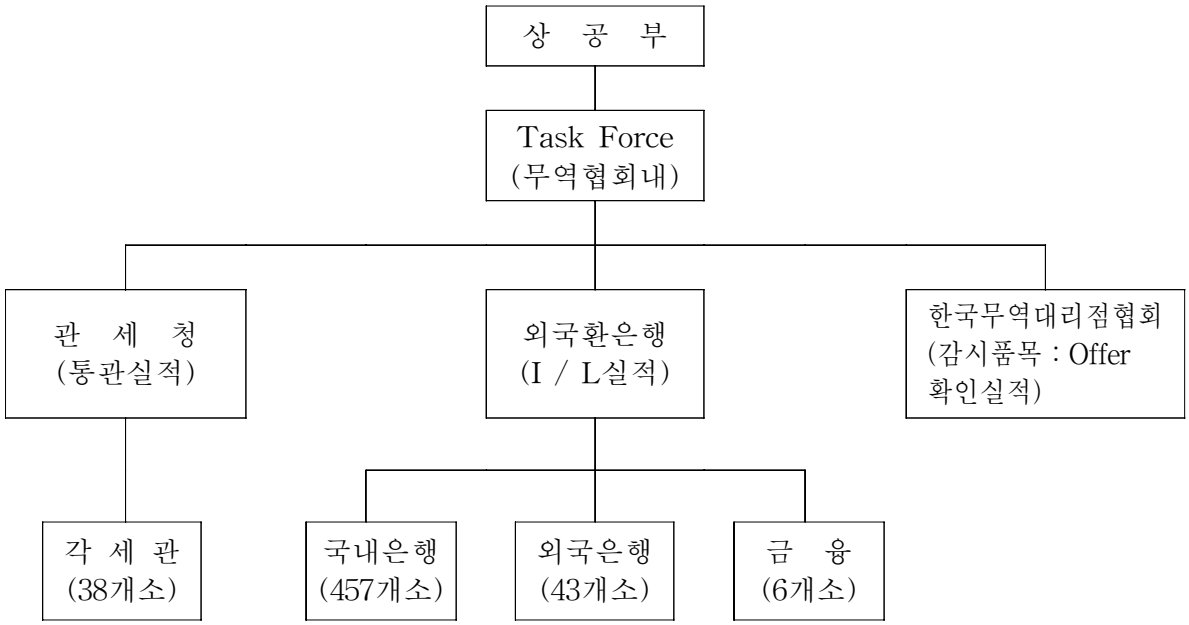

무역협회 근무
- 상공부 사무관 : 2명
- 무역협회 과장급 : 2명
- 무역협회 대리급 : 2명
- 무역대리점협회 부장급 : 1명
- 집 계 요 원 : 10명

당해근무처 근무
- 506개외국환은행 : 수입허가서일보 책임자 : 1명
- 관세청 : 사무관 : 1명
- 각세관 : 주 사 : 1명

다. 기　능

○ 일일품목별 수입허가실적 분석 파악(서식 : 별첨)

○ 〃 수입통관실적 분석 파악(〃)

○ 〃 Offer 확인실적 분석 파악(〃)

라. 기　간 : '83. 6. 21～상당기간

마. 일일수입동향 분석체계

○ 수입허가실적분석

외국환은행 (506개소) → 무역협회 → Task Force → 상공부 본부

(상공부)

○ 수입통관실적

세 관 → 관세청 → 무역협회 → Task Force → 상공부 본부

(상공부)

○ 감시품목의 Offer 확인실적

감시품목수입자 → Offer 협회 → Task Force → 상공부 본부

(상공부)

바. 감시품목의 Offer 발행실적

○ 무역대리점협회는 일일감시품목의 Offer 발행실적을 익일 10:00까지 Task Force에 통보함.

○ 감시품목의 Offer 발행실적 내용

- 용도별, 품목별 Offer 실적
- Offer 발행실적 증가가 높은 품목등

사. 수입통관실적

○ 각 세관은 당일 통관실적을 당일 입력조치(관세청, 각 세관 협조)

○ 관세청은 당일 통관실적을 익일 10:00까지 무역협회 전산실에 입력

○ 무역협회 전산실은 16:00까지 품목별 통관실적 분석 보고

아. 수입허가실적

○ 각 외국환은행의 본점 및 지점은 직접 당일 수입허가서일보를 익일 10:00까지 무역협회에 직송함.
단, 지방은행 및 지방에 있는 지점은 당일 I/L 발급실적은 속달우편으로 송부함.

○ 무역협회 전산실은 16:00까지 품목별 수입허가실적 분석 보고

○ 무역협회 6월 I/L 발급실적을 7.1일까지 전산처리 완료

○ 무역협회는 당일 18:00시 이후 도착분 및 사서함 도착분은 익일 10:00까지 Task Force에 인계할 것

〈별첨〉

수입실적일일보고

작성기관 : 무역협회

1983년 월 일( ) (단위 : 백만불)

구 분	년도별	당일실적	당월누계	전월까지누계	년간누계
통관기준(CIF)	'82				
	'83				
	대비(%)				
I / L 실 적	'82				
	'83				
	대비(%)				
Offer확인실적 (감시품목)	'82				
	'83				
	대비(%)				

Ⅱ- 8. 1984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상공부공고 제84-25호, '84.7.1 시행)

가. 기본방향

○ 수입자유화 기본원칙에 따라 감시품목의 점진적 축소운영
○ 실효성확보 가능품목 위주로 개편, 운영의 내실화 도모

나. 선정기준

○ 추가대상 : 38품목
- '84신규자유화품목중 민감품목(쵸코렛 등 23개 품목)
- 농가소득 관련된 품목으로서 수급조절 필요품목(토마토등 개 품목)
- 기타 관세조정, 품목세분화등에 따라 수입동향의 주시가 필요한 품목(전화기 등 7개 품목)

○ 해제대상 : 76품목
- 감시품목지정후 1년간 수입실적이 없거나 극히 적은 품목(의류, 식품 등 68개 품목)
-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전환한 품목(냉장고 등 2개 품목)
- 원자재적 성격의 품목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패각 5개 품목)

다. 품목운영

(1) 운영기준

○ 농가소득관련품목
- 제한성으로 운영
- 수급상 필요시 제한적으로 허용

○ 기타품목
- 개방성을 원칙으로 운영
- 품목의 특성에 따라 자격, 지역, 규격 등의 운영기준 설정

(2) 운영절차

구 분	내 용
운영기준설정	○ 품목별 허용 또는 제한기준설정 ○ 수입관리위원회 심의
신청내용의 처리	○ 운영기준에 적합시 - 동향점검후 자동처리 ○ 기준에 부적합한 때 자동불허 처분 ○ 수입급증 등 특이동향 발견시 - 수입관리위원회 심의기준 조정 등 대책 강구

라.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8단위 기준)

현 행	조 정		조 정 결 과
	해 제	추 가	
165	76	38	127

(2) 해제품목 : 76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0512 0201	진주패각	4302 0102	토끼모피
0202	청패각(전복)	003	산양모피
0203	첩패각과 지첩패각	0104	면양모피
0204	야광패각(소라)	0202	토끼모피의 절단품
0299	기타패각	6003 0101	스타킹
0703 0400	기타염장채소(죽순, 고사리, 마늘, 양송이)	0201	스타킹
		6101(6개)	남자 및 소년용 외의류
1704 0100	추잉껌	6102(11개)	여자, 소녀 및 유아용의 외의류
1903(6개)	마카로니, 스파케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6103(6개)	남자 및 소년용의 내의
		6104 0199	면과 혼방된 것 (여자용 또는 유아용의 내의류)
1908(5개)	파이, 비스켓,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리 제품	6106 0101	견의 것 (쇼울, 스카프, 머플러 등)
4203(12개)	의류(가죽 또는 재생가죽제)		
4205 0100	파충류 가죽제의 것	6109 0200	콜셋 및 콜셋벨트
0200	기 타	6109 0300	기 타

CCCN	품 목	CCCN	품 목
6911 0103	술병(자기)	0406	차량내연기관(4,000～10,000㎤)
0300	토이릿용품(자기)	0407	차량내연기관(10,000㎤ 초과)
7013 0400	장식용 유리제품	0501	차량내연기관(10,000㎤ 이하)
7014 0400	유리엘레먼트	8415 0102	가정형 냉장고(300～400ℓ)
8307 0299	기타 비금속제조명기구	8513 0100	전화기(다이알식에 한함)
8406 0401	차량내연기관(100㎤ 이하)		
0402	차량내연기관(100～260㎤)		

(3) 추가품목 : 38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0701 0200	토마토	2001 0100	식초로 조제한 채소의 것
0304	파		(죽순)
0403	양배추	2002 0299	기타조제한 채소(죽순)
0405	당 근	2102 0299	커피의 엑스, 에센스 및 농축
0499	기타(양상치, 죽순, 고사리)		물과 이들의 조제품
0702 0300	기타 냉동채소(죽순, 고사리)	2901 0407	SBR 고무제조용의 스티렌
0704 0299	기타 건조채소(양파, 죽순,	0408	기타의 스티렌
	고사리)	3819 0500	분지형(Hard Type)
0901 0102	볶은 커피		알킬벤젠
1806 0101	초코렛	3902 0204	ABS 수지
0199	기 타	4302 0101	밍크모피
		0105	친칠라모피

CCCN	품 목	CCCN	품 목
0106	여우모피	8441 0200	재봉기용 바늘
0199	기타모피	8513 0101	코드레스전화기
0201	밍크모피조각	0102	다이알식 전화기
0299	기타모피조각	0103	버튼식 전화기
4603 0700	기타 농세공물	0199	기타 전화기
6101 0207	남자 및 소년용 오버코트	8515 1099	기타의 무선기기중 위성방송 수신기
0403	남자 및 소년용의 하의 (면제의 것)	1699	파라보라 안테나
0503	남자 및 소년용의 상의 (면제의 것)		
6102 0203	여자, 소녀 및 유아용 코오트 및 상의류(면제)		
8435 0101	윤전식 평판인쇄기중 윤전기		
0201	윤전식 볼록판인쇄기중 윤전기		
0301	윤전식 오목판인쇄기중 윤전기		
0401	기타의 윤전식 인쇄기중 윤전기		

마. 대리석 및 화강석 수입감시품목 지정

(1) 수입제도

	자 유 화 일 시	감 시 지 정
대 리 석	원 석 : '81. 7. 1 가공품 : '77. 1. 1	'84. 8. 18
화 강 석	원 석 : '78. 1. 1 가공품 : '78년 이전	'84. 12. 12

(2) 운영방향(확인기준)

구 분	운 영 방 향
대 리 석 (원석,가공품)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사치성이나 향락업소용이 아닐 것 - 관광, 문화, 국제관계 등의 차원에서 건축미학상 꼭 필요한 건물용일 것 - 상기 건물용의 경우에도 외화획득, 국제관계행사 등에 직접 공여되는 부문의 최소한의 것일 것 - 동 소요에 대해 국내석재로는 기능, 건축미학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대체가 곤란한 것일 것
화 강 암 (원석, 가공품)	화강암을 원칙적으로 제한성으로 운영함. 다만,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색상의 제품(색의 조화측면에서 볼 때 대체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의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대리석의 확인기준”에 준하여 검토할 수 있음(당분간 불허함).

바. 냉동소뼈 및 인증기 수입감시품목지정

(상공부공고 제84-77호, ’84.11.27 시행)

CCCN	품 목	사유 및 운영방향
0508 0299	기타중 냉동소뼈	○ 사유 : 국내 소값 하락에 따른 양축농가 보호(저가의 냉동소뼈 대량수입) ○ 운영 :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수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8454 0299	기타중 인증기	○ 사유 : 정부공문서규정 개정에(간인제실시) 따른 관련 국내생산업계 보호(총무처 요청) ○ 운영 : 국산개발등 특히 필요한 경우 수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Ⅱ- 9. 1985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상공부공고 제85-41호, '85.7.1 시행)

가. 기본방향

- ○ 개방기조와 대외통상관계를 고려하여 감시품목의 전체규모는 가급적 현수준 이하로 조정
- ○ 감시품목의 선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잠정관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호목적만으로 지정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 농가소득 관련품목 및 불요불급품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적 수단으로 원용
- ○ 장기간 감시품목으로 운영되어온 품목은 당해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감시제도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해제
- ○ 품목선정방법은 현행 CCCN 8단위 기준에서 4단위 기준으로 개편 공고하고 8단위 기준은 내부자료로 작성하여 업무처리에 활용

나. 선정기준

(1) 해제대상

- ○ 장기간 계속하여 감시품목으로 운영되어온 품목중 경쟁력을 이미 확보 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력 확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 ○ 기존감시품목중 제한없이 허용되어온 품목으로서 년간 수입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품목
- ○ 국내산업의 경쟁촉진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이 개방된 품목으로서 당분간 어느정도의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 ○ 원료성 제품으로서 사실상 수입의 허용이 불가피한 품목

(2) 추가대상

- ○ 수입이 급증하였거나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국내산업 및 국내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기별공고의 개정등 확정조치 이전에 한시적 보호를 위하여 긴급관리가 필요한 품목

○ 수입대체상품 및 신기술개발로 한시적보호가 필요한 품목
○ 국민감정 및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품목으로서 외제선호경향이 높은 고가사치품 또는 불요불급품에 해당되어 잠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품목
○ 민간단체의 자율관리 또는 세제 및 행정지도등 유도방안으로는 수입관리의 효과가 미흡하여 별도 관리가 필요한 품목
○ 기타 무역수지관리 및 산업정책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될 필요가 있는 품목

다.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8단위 기준)

현 행	조 정		결 과
	삭 제	추 가	
142	53	16	105

(2) 해제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 수입을 허용하면서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28)	면제의 남자외의류(3), 타아포린(3), 살구, 자두, 목공예품(15), 쇼올스카프(2), 면제의 여자코트, 토끼고기, 400리터이상 냉장고
○ 원자재 성격의 품목(3)	분지형알킬벤젠, ABS수지, 재봉기용 바늘
○ 통상정책상 필요품목(5)	벨베틴, 골덴, 유리제품(3)
○ 기타 경쟁력을 확보하였거나 국내산업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17)	면제이외의 손수건(4), 목제가구(3), 기타의 조리 및 난방기구(3), 육류이외의 수우프(3), 윤전기(4)

○ 오퍼확인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28개 품목)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6101 0207 0403 0503	┐ │면제의 남자 및 소년용 외의류 ┘	84. 5.31
6204 0100 0300 0400	┐ │타아포린, 돛, 천막 ┘	79. 6. 1
0807 0200 0300	살구 자두	88. 5.31 83. 5.31
4427 전품목 (15)	목공예품	81. 5.30
6106 0201 0202	┐ 견제·모제의 쇼올, 스카프, 머플러 ┘	79. 6. 1
6102 0203	면제의 여자·소녀 및 유아용 코트	84. 5.31
0204 0200	토끼고기	83. 5.31
8415 0199	400ℓ 이상의 가정형 냉장고	83. 5.31

○ 기타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국내산업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17개)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6105 0200 0300 0400 0500	┐ 손수건 │(면제의 것) │ ┘	84. 8.18
9401 0102 9403 0201 0203	┐ │목재가구 ┘	85 5.31
7336 0199 0203 0299	기타 조리기구 석탄난방기구 기타 난방기구	79. 6. 1
2105 0102 0103 0199	┐ │육류이외의 수우프 ┘	82. 5.31
8435 0101 0201 0301 0401	┐ │윤전기 │ ┘	84. 5.31

○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5개)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5804 0201	벨베틴	83. 5.31
0202	골덴	〃
7013 0101	┐	79. 6. 1
0102	ㅣ유리제품	
0199	┘	

○ 원자재적 성격의 품목으로서 제한없이 허용하는 품목(3개)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3819 0500	분지형알킬벨젠	84. 5.31
3902 0204	ABS 수지	〃
8441 0200	재봉기용 바늘	〃

(3) 추가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 농수산물로서 수급조절 및 생산농가 보호필요 품목(2)	기타의 냉동채소중 감자, 마늘, 누에고치, 기타의 견방사
○ 신기술 개발보호를 위해 한시적 관리 필요품목(2)	복층절연유리,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리본
○ 수입대체촉진을 위해 동향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품목(12)	염소산칼륨, 전자식오르간, 망간건전기, 기타중 리코더, 우산의 부분품, 연마판유리, 타일, 조당류(3), 폴리루로피렌, 수성그림물감, 연필깎기

○ 농산물로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3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0702 0300	기타의 냉동채소중 다음의 것 - 감자, 마늘	5001 0000 5005 0200	누에고치 기타의 견방사

○ 수입대체상품 및 신기술개발로 한시적 보호가 필요하 품목(9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2832 0102	염소산칼륨	7007 0400	복층절연유리
8502 0201	망간건전지	9808 0300	자동자료처리 기계용리본
9207 0300	전자식오르간	7006 0101	연마판유리
9205 0199	기타중 리코더	6908 0101	타일
6603 0200	우산의 부분품		

○ 외제선호경향이 높거나 건전소비풍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2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3210 0000	수성그림물감	8454 0299	연필깎기

○ 금년도 자유화되는 품목으로서 국내산업 및 국내시장에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4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1701 0101	ㄱ 조당	3902 0203	폴리푸로필렌
0102	ㄴ		
0200	정제당		

※ 신규추가요청품목중 감시요건상 부적합하거나 삭제 협의된 품목(17개)

○ '85자유화품목중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특히 요청된 품목(16)

- 송풍기, 싸이드카등(6)
- 재봉기 및 동부품(7)
- 휴대용 시계부분품
- 초산비닐, 아몬드

○ 기존 자유화품목중 수입절감 및 산업보호등 위해 요청된 품목(1)

- 프레스 가공다이스 및 펀치

(4) 존치품목(89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0405 (3)	조란과 난황	0199	6초코렛 과자
0508 0299	기타의 골과 호온코어	2001 0100	죽순(조제한 것)
0515 0301	동물의 피	2002 0105	죽순통조림
0304	동물의 사체	0299	죽순(조제한 것)
0701 0200	토마토(신선한 것)	2003 0000	냉동과실(가당한 것)
0304	파(신선한 것)	2105 0101	ㄱ 육류스우프
0403	양배추(〃)	0200	ㄴ
0405	당근(〃)	2102 0100	커피의 엑스, 에센스, 이들의 조제품
0499	양상치, 죽순, 고사리 (신선한 것)	2515 0100	대리석(원석)
0702 0300	죽순, 고사리(내동한 것)	2516 0100	화강암(원석)
0702 0400	죽순, 고사리, 마늘, 양송이 (염장한 것)	2915 0103	수산
0704 0201	건조마늘	3405 0201	구두약
0299	양파, 죽순, 고사리 (건조한 것)	0203	자동차용 왁스
0812 0200	대추	3907 0900	프라스틱 그릇
0810 0000	냉동과실	4302 0101	모피(밍크)
0901 0102	볶은 커피	0105	모피(친칠라)
0910 0100	생강	0106	모피(여우)
1702 0200	유당	0199	모피(기타)
0300	인조꿀	0201	모피조각(밍크)
1806 0101	초코렛	0299	모피조각(기타)
		4603 (11)	농세공품
		6105 0100	손수건(면제)
		6204 0200	타아포린, 돛, 천막 (합성섬유제)

CCCN	품 목	CCCN	품 목
6301 0000	중고의류	9403 0202	침대(기타목재)
6802 0101	대리석(가공한 것)	0299	기타가구(기타목재)
0102	기타대리석(가공한 것)	9404 (4)	메트리스, 이불, 침구류
0401	화강암(가공한 것)	9706 0202	테니스라켓
7014 0200	유리조명기구	8460 0299	ㄱ 금형
0300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0500	ㄴ
7336 0101	ㄱ	2901 0407	ㄱ 스티렌
0201	ㅣ철강제 난방기구,	0408	ㄴ
0202	ㅣ가열기구		
0300	ㄴ		
7338 0102	법랑제 주방용품		
8454 0299	인증기		
8513 0101	코드레스전화기		
0102	다이알식 전화기		
0103	버튼식 전화기		
0199	기타의 전화기		
8515 1099	위성방송수신기, 튜너		
1699	파라보나안테나, 동 부분품		
9003 (3)	안경테, 자루, 부분품		
9101 0202	디지털 휴대시계		
9401 0103	의자, 걸상(기타목재)		

라. 기타 감시품목조정

(상공부 공고 제85-54호, '85.9.6)

	CCCN	품 목
추 가	8435	○ 평판인쇄기(윤전식의 것) ○ 불록판인쇄기(〃) ○ 오목판인쇄기(〃) ○ 기타 인쇄기(〃)
해 제	1806	○ 초코렛 ○ 초코렛과자

Ⅱ- 10. 1986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상공부고시 제86-33호, '86. 7. 1 시행)

가. 기본방향

○ 국내산업여건상 감시가 불가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며 주요교역 상대국의 관심도와 국내업계의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일정량을 수입허용

○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감시하는 품목은 향후 2년 정도의 한시적 운용을 원칙으로 관련기업으로 하여금 개방경쟁에 대비토록 촉구

○ 농수산물, 불요불급사치품은 무역수지동향과 국내소비행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감시 해제

나. 선정기준

○ 해제대상

- 장기간 감시품목으로 운영되어온 품목중 경쟁력을 확보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 기존 감시품목중 제한없이 허용되어온 품목으로서 연간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
- 대일지역 수입이 문제되는 품목은 감시에서 다변화로 전환

○ 추가대상

- 대외통상 교섭상 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품목
- '85이전 자유화품목중
  - ·중소중견기업 신규개발품목으로서 수입상품과의 경쟁이 불리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
  - ·불요불급 소비재로서 수입급증품목(수입증가 20% 이상)
  - ·농가소득품목으로서 농어촌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품목

- '86자유화품목중

  · 부품, 소재, 원자재의 국산화 규격이 포함된 품목으로서 한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부품, 소재, 원자재의 과도기적 수입과 국산공급 물량조절이 극히 필요한 품목

  ·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서 잠정적 보호가 필요한 품목

다.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4단위 기준)

현 행	조 정		존 치
	해 제	추 가	
58 (111)	13 (35)	10 (30)	55 (106)

※ ( )안은 CCCN 8단위 기준임.

(2) 해제품목

CCCN	품 목	비 고
0701	(농수산물) 토마토, 파, 양배추, 당근, 양상치, 죽순, 고사리 (신선한 것)	'84. 7. 1 지정
6105 6204 9404 6301	(섬유류) 면제의 손수건 타아포린, 천막, 돛 매트리스 중고의류	'84. 8. 18 지정 '79. 6. 1 지정 '83. 7. 1 지정 '82.10.10 지정
2901 3902	(석유화학원료) 스티렌 폴리푸로필렌 (일반공산품)	'84. 7. 1 지정 '84. 7. 1 지정

CCCN	품 목	비 고
3405	광택용의 납과 크림	'79. 6. 1 지정
7336	철강제 난방기기 및 가열기기	'79. 6. 1 지정
8503	망간 건전지	'85. 7. 1 지정
9808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리본	'85. 7. 1 지정
9101	디지털 휴대시계	'79. 6. 1 지정
4603	농세공물	'81. 5. 30 지정

(3) 추가품목

CCCN	품 목	추 가 사 유
	('85이전 자유화품목)	
8025	프레스가공다이스 및 펀치	○ 금형국산화추진
3501	카제인	○ 우유 수급안정 ○ 낙농가 보호
	('86자유화품목)	
6601	스틱겸용 긴우산 절첩식 우산	○ 부품의 협동화 사업추진
9805	연필 및 연필의 심	
7401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동괴, 잉곳트바, 빌렛 등	○ 생산국의 저가수출 방지 ○ 웨이스트, 스크랩의 대처사용 가능
2817	액체가성소다	○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가격 경쟁 곤란
5311	모직물	○ 외제선호 ○ 수입급증 우려
8505	수지식공구(전동)	○ '84년 국내업체 집중투자 ○ 한시적보호
3902	고밀도폴리에칠렌	○ 수입급증 우려 ○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간접 보호
2842	소다회	○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으로 가격 경쟁력 결여

(4) 존치품목

○ 공산품

CCCN	품 목	CCCN	품 목
	<불요불급사치품>		
	○ 제한성		
7014	유리조명기구	6802	대리석, 화강암 등
9401	목재의 의자		(가공한 것)
9403	목재의 침대, 기타가구	7338	법랑제주방용품
6908	타일		법랑제 욕조
7006	양면연마 판유리	9025	취주악기
7007	복층절연유리	4302	모피류
2515	대리석(원석)	9027	전자오르간
2516	화강암(원석)	8513	전화기
	○ 허용성		
9003	안경태		
3907	프라스틱 주방집기		
	<산업정책등과 관련품목>		
	○ 제한성		
2831	염소산칼륨, 염소산소다	8454	인증기, 연필깎기
2915	수산	8515	위성방송수신기 튜너,
3210	수성그림물감		파라보라안테나
6603	기타 우산의 부분품	9706	정구용 라켓
	○ 허용성		
8460	금 형		
8435	윤전기		

○ 농수산물

CCCN	품 목	CCCN	품 목
	○ 제한성		
0405	조란과 난황	0919	생 강
0508	기타의 골과 호온코어	1507	피자마유
0515	동물의 피, 사체	0802	대 추
0702	죽순, 고사리, 감자, 마늘 (냉동한 것)	1702	유당, 인조꿀
		0810	냉동과실(무가당)
0703	죽순, 고사리, 마늘, 양송이 (염장한 것)	2003	냉동고실(가당한 것)
		5001	누에고치
0704	마늘, 양파, 죽순, 고사리 (건조한 것)	5005	기타의 견방사
		0901	볶은커피
2001	죽순(조제한 것)	2102	커피의 조제품
2002	죽순통조림(조제한 것)		
	○ 허용성		
2105	수우프	1701	조당, 정제당

Ⅱ- 11. 1987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상공부공고 제87-41호, '87.7.1시행)

가. 기본방향

○ 수입감시제도는 '87.7.1부터 폐지하고 산업영향조사제도에 의하여 수입개방 산업에 대한 합리적 대응

○ '87년도 자유화품목에 대한 신규 지정은 일체 하지 않고 기존품목은 전면 재검토 조정하되 수입감시의 일시적 해제에 의한 충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일부 불가피한 품목에 한하여 '88말까지 한시적 존치

○ 농가소득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품목은 수입제한 품목으로 전환 추진

나. 선정기준

○ 존치대상

- 수입급증시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신기술개발, 품질개선등 투자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잠정보호에 의한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품목
- 불요불급사치성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위화감 조성 우려가 큰 품목
- 기타 정책목적상 잠정존치가 불가피한 품목

○ 해제대상

- 대외마찰로 기해제 약속한 품목 eh는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품목
- 장기간 지정 계속 되었거나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 국내 부족 기초원자재
- 지정의 실익이 적거나 통합공고에 의해 목적달성이 간으한 품목
- 수입에 따른 국민위화감 조성우려가 적은 품목

다. 관계부처 협의

○ 일　시 : '87. 6. 29(월) 17:00

○ 장　소 : 경제기획원 차관보실

○ 참석범위

- 경제기획원 차관보 (주재)
- 농수산부 제2차관보
- 상공부 제2차관보
- 산림청 차장

○ 회의결과

- 감시해제 대상품목중 고사리는 영세산촌 채취주민 보호를 위하여 계속 존치(존치품목 숫자에는 영향 없음)
- 감시존치 대상품목중 가공한 석재류의 설화석고제의 것과 기타의 것은 감시해제(경제기획원이 동력자원부 및 산림청과 최종합의 필)

(변동내역)

구　　분	해　　제	존　　치
상 공 부 (안)	56	50
조 정 결 과	58	48
증　　감	+2	-2

라.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8단위기준)

현　　행	조　　정		결　　과
	삭　　제	신　　규	
106	58	0	48

(2) 조정내역

(가) 총 괄

구 분	존 치 품 목	해 제 품 목
농가소득 보 호	조란과 난황(3), 냉동감자·마늘·고사리, 염장마른·양송이·고사리, 건조마늘, 건조양파·고사리, 냉동과실(가당, 무가당), 대추, 생강, 피마자유, 유당, 인조꿀, 카제인(3), 누에고치, 기타의 견방사 (19)	육류스우프, 혼합스우프, (냉동 죽순), (염장죽순), (건조죽순), 죽순(조제한 것), 죽순통조림, 기타 조제죽순 (5)
산업보호	조당(2), 정제당, 소다회, 가성소다, 수산, 우산 및 부분품(3) (9)	염소산칼륨, 동괴 및 설(6),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식전동공구(4), 전화기(4), 연필깍기 (17)
사 치 성 소 비 재	대리석(원석), 화강암(원석), 석재류(4), 양면연마판유리, 복층절연유리, 의자와 기타의 걸상, 침대, 기타 가구, 정구용라켓 (12)	볶은커피, 수성그림물감, 모피류(6), 식탁, 유리 또는 주방집기, 모직물(8), 타일, 유리 조명기구,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법랑제 주방용품, 안경테(3), 리코더, 전자식오르간, 법랑제욕조, 연필, 조제한 커피, 석재류(2) (31)
기 타 행정목적상	프레스가공다이스, 윤전기(4), 기타의 무선송수신기 및 부분품(2), 염소산소다 (8)	동물의 뼈, 피, 사체, 금형(2) (5)
합 계	48	58

( ) 내는 부분해제품목임.

(나) 해제품목(58개)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농산물 : 8개>	
0508 0299	기타 동물의 뼈	84.11
0515 0301	동물의 피	83. 7
0304	동물의 사체	83. 7
(0702 0300)	냉동채소중 죽순	84. 7
(0703 0400)	염장채소중 죽순	82. 3
(0704 0299)	기타 건조채소중 죽순	84. 7
2001 0100	조제한 채소중 죽순	84. 5
2002 0105	죽순통조림	82. 5
0299	기타 조제한 죽순	84. 5
2105 0101	육류스우프	82. 7
0200	혼합스우프	
	<공산품 : 19개>	
2832 0102	염소산 칼륨	85. 7
3902 0201	고밀도폴리에틸렌	86. 7
7401 0200	동의설	86. 7
04	동의 괴 (5)	86. 7
8454 0299	인증기, 연필깍기	84.11
8460 0299	금형	82. 7
0500	금형	
8505 0199	ㄱ	86. 7
0201	ㅣ수지식 전동공구	
0202	ㅣ	
0299	ㄴ	
8513 0101	코드레스 전화기	84. 7
0102	다이알식 전화기	79. 7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853 0103	버튼식 전화기	84. 7
099	기타 전화기	84. 7
	<소비재 : 31개>	
0901 0102	볶은 커피	84. 7
2102 0100	조제한 커피	84. 7
210 0000	수성그림물감	85. 7
3907 0900	식탁 또는 주방집기	79. 6
4302	모피류(6)	84. 7
5311(전품목)	모직물(8)	86. 7
6802 0300	설화 석고제의 것	84. 8
0499	기타의 것	
6908 0100	타일	85. 7
7014 0200	유리조명기구	83. 7
0300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83. 7
7338 0102	법랑제 주방용품	84. 8
0300	법랑제 욕조	86. 7
9003(전품목)	안경테(3)	83. 7
9205 0199	리코더	85. 7
9207 0300	전자식 오르간	85. 7
9805 0100	연필과 연필의 심	86. 7

( )내는 부분해제품목임.

(다) 존치품목(48개)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농가소득보호 : 19개>	
0405(전품목)	조란과 난황(3)	81. 7
0702 0400	감자, 마늘, 고사리(냉동)	84. 7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0703 0400	마늘, 양송이, 고사리(염장)	82. 3
0704 0201	건조마늘	79. 7
0299	양파, 고사리(건조)	84. 7
0810 0000	냉동과실(무가당)	83. 7
0812 0000	대추	82. 3
0910 0100	생각	83. 5
1507 1200	피마자유	86. 1
1702 0102	유당	80. 1
0300	인조꿀	80. 7
2003 0000	냉동과실(가당)	83. 7
3501 0100	카제인	86. 7
0020	〃	
0299	〃	
5001 0000	누에고치	85. 7
5005 0200	기타의 견방사	85. 7
	<수급안정 및 산업보호 : 9개>	
7001 0101	조당	85. 7
0102	〃	
0200	정제당	
2817 0102	액체가성소다	86. 7
2842 0000	소다회	86. 7
2915 0103	수산	82. 7
6601 0100	스틱겸용 긴우산	86. 7
0200	절첩식 우산	86. 7
6603 0200	기타 우산의 부분품	85. 7

CCCN	품 목	감시지정년도
2515 0100	<소비재 : 12개>	
2516 0100	대리석(원석)	84. 8
6802 0101	화강암(원석)	84. 8
0102	연마한 대리석	84. 8
0200	기타 대리석	
0401	석회질암석의 것	
7006 0101	화강암의 것	
7007 0400	양면연마판 유리	85. 7
9401 0103	복층절연유리	85. 7
9403 0103	의자와 기타의 걸상	83. 7
9403 0202	침대	83. 7
9403 0299	기타 가구	
9706 0202	정구용 라켓	84. 8
	<기타 행정 목적 : 8개>	
2832 0101	염소산 소다	86. 7
8205 0301	프레스가공다이스 및 펀치	86. 7
8435 0101	ㄱ	85. 9
0201	ㅣ윤전기	
0301	ㅣ	
0401	ㄴ	
8515 1099	위성방송 송·수신기	84. 7
1699	위성방송 송·수신기 부문품	84. 7

마. 시 행

○ 시행일 : ’87. 7. 1

○ 예 외

시 행 일	H S	품 목
’87. 9. 1	0508 0299	기타 동물의 뼈
	0515 0301	동물의 피
’88. 1. 1	0304	동물의 사체
	5311(전품목)	모직물

Ⅱ- 12. 1988년의 수입감시제도 운용

(상공부공고 제88-15호, '88.4.1시행)

가. 기본방향

○ 공산품 및 소비재는 '88.4.1부터 감시 해제
- 단, 위성방송수신기, 파라보라안테나 및 윤전기는 제외

○ 농산물등 잔여품목은 '88년내 전면폐지하되 수입제한이 불가피한 품목은 통상마찰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로 전환 검토

나. 품목조절

(1) 조정결과

(HS 10 단위기준)

현 행	해 제	존 치
96 (48)	60 (23)	36 (25)

( )안은 CCCN 8단위기준임.

(2) 해제품목 : CCCN8단위기준 23개(HS 10단위기준60개)

H S	품 목 명	품목수	HS	품 목 명	품목수
1701	조당, 정제당	3	6603	우산의 부분품	1
2515	대리석	1	6802	가공석재류	4
2516	화강암	1	7005	판유리	1
2815	가성소다(액체의 것)	1	7008	복층절연유리	1
2829	염소산나트륨	1	8207	프레스가공다이스 및 펀치	1
2836	탄산이나트륨(소다회)	1	9401	의자(목제의 것)	1
2917	옥살산(수산)	1	9403	기타의 목제가구	2
6601	우산류	2	9506	테니스라켓	1

- 해제품목중 3개품목은 수출입공고, 염소산소다는 통합공고에서 각각 규제함.

(3) 존치품목 : CCCN 8단위기준 25개, HS 10단위기준 36개

HS	품 목 명	품목수	HS	품 목 명	품목수
0407 0408	조란과 난황	3	1515	피마자유	1
			1702	유당, 인조꿀	2
0710	내동채소중 감자, 마늘, 고사리	1	2004	냉동감자	-
			3501	카세인	3
0711	염장채소중 마늘, 양송이, 고사리	1	5001	누에고치	1
			5005	견방사	1
0712	건조채소중 양파, 마늘, 고사리	2	8443	윤전기	4
			8527	위성방송수신기	1
0811	냉동과실	2	8529	파라보라안테나 및 부분품	1
0813	대추	1			
0910	생강	1			

다. 기타 감시품목 조정

○ 감시해제

- 품목 : 냉동감자
- 사유 : '88.5 한미무역실무회담 합의사항 이행

H S	품 목	비 고
0710 10 0000	냉동감자	'88.7.1 해제
2004 10 0000	냉동감자(조제한 것)	'88.8.5 해제

라. 수입감시제도 폐지

○ 시행근거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제5조
-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상공부고시 제88-58호, '89.1.1시행)

○ 내용 : 앞의 "수입감시제도폐지에 따른 보완조치"(pp 417~419)참조

〈수입감시제도 운영경과〉

가. 의의 및 성격

○ 의의

- 자유화품목의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등을 분석 조정
- 이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및 국제수지방어에 기여

○ 성격

- 선지국 : 수입제한을 위한 전단계로서 취해짐.
- 한국 : 수입제한에서 완전한 수입자유화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임.

나. 근거 및 연혁

○ 근거

-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3 제3항 제3호
- 무역관리규정 제11-2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제5조('87.7.1이후)

○ 연혁

'78. 5. 1 최조시행, 수출입기별공고 총칙에 의거 운영요령 공고
- 무역협회에서 수입동향 감시, 상공부장관에게 보고

'79. 6. 1 본격시행, 한국무역대리범협회에 위임하여 오퍼확인

'83. 7. 1 상공부에 수입관리위원회 설치하여 수입심위기능 보강

'88.12.31 수입감시제도 폐지
- 12개품목은 수출입공고에 위거 계속 제한
- 22개품목은 자유화품목으로 환원

다. 필요성

○ 수입자유화는 관련생산업계의 저항이 크며 특히 농수산물과 사치성소비재 수입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음.

→ 수입소비재가시중에 범람하거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크게 위축될 경우 수입개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져 자유화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화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함.

○ 그러나 자유화품목은 일정기간후에야 수입동향파악이 가는하므로 사전에 수입급증품목의 수입동향 및 산업의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라. 제도운영

○ 수입절차

- 외국환은행에서 수입승인을 받기 이전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오퍼확인을 받아야 함.

○ 운영체계

구 분	담당부서및기구	내 용
품목선정, 공고	상공부	- 정기개정 : 매년 5월 31일 - 수시개정 : 수입동향분석 및 업계동향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정 보완
품목별 운영기준 설정	수입관리위원회 (상공부)	- 품목 주무부서의 의견 수집 - 수입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품목특성에 따라 지역, 물량, 규격제한등 기준설정
오파확인 및 집행	무역대리점협회	- 품목별 운영기준에 따라 오파확인 - 집행실적의 종합분석 및 건의

○ 운영현황

- 년도별 운영실적

	'82	'83	'84	'85	'86	'87	'88
CCCN 8단위	283	165	142	111	106	48	34
CCCN 4단위	44	49	56	57	55	-	-

- 신규자유화품목중 감시 품목지정

	'83	'84	'85	'86	'87	'88
전 체	165	142	111	106	48	34
신규자유화품목중 지정품목	69	24	6	24	0	0

- 감시품목의 지속기간

(CCCN 8단위기준)

	지정년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83 자유화품목	69	25	16	12	1
'84 〃	24	18	16		
'85 〃	6	4	3	6	0
'86 〃	24	13	0	0	

- 감시품목의 폐지('88.12.31.상공부고시 제88-58호)

・감시품목중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환원되는 품모 : 22개 품목 (H・S 10단위)

・ 감시품목중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승인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 : 12개 품목(H・S 10단위)

마. 문제점

○ 그동안 GATT, IMF등 국제무역관련기구가 한국의 수입감시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국제수지적자의 개도국으로서 효과적 수입자유화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으로 대처했으나, '86년이후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대외적 논거 상실

○ 통상교섭상의 수입자유화에 관한 문제 야기

○ 수입감시의 한시적 잠정적운용원칙에도 불구하고 장기감시로 인한 국내산업의 경쟁추진 저해

* 국내외 마찰사례 : 별지

바. 수입감시제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 선진국형의 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 1987.7부터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산업영향조사제도 운영

-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종전 수입감시제도는 사전적 수입규제로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절차상 명료성과 투명성을 결여하여 외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 산업영향조사제도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일반적으로 국제규범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성이 높은 선진국형의 사후적인 산업피해 구제제도임.

○ 산업영향조사제도의 운영식적

- 새우젓 : '88.7.20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
- 앙고라토끼털 및 세라믹압전찰화소자 : 현재 무역위원회에서 산업영향 조사중임.

〈국내산업 마찰사례〉

품 목 명	사 안 내 용	조 치
피마자유	○ 전기통신공사에 케이블 납품업체인 세신물산으로부터 가격, 품질상 문제로 반발	○ 국내생산업체와 수요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육류수우프	○ '82.7.1부터 감시품목으로 수입허가 ○ 육류수우프 대량수입에 따른 낙농가의 반발	○ 대미통상관계등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허용성감시로 운영
카제인	○ 우유가공품으로 낙농가보호를 위하여 감시지정 ○ 실수요업계 반발	○ 감시신규지정('86. 7. 1) - 물량규제
가성소다	○ 국내생산업계 보호를 위하여 감시지정 ○ 실수요업계 반발	○ 감시신규지정('86. 7. 1) - 실수요자에 한하여 허용
동웨이스트와 스크랩	○ 국내 동제련업계 보호를 위하여 감시지정 ○ 관련수요업계의 반발	○ 감시신규지정('86. 7. 1) ○ 고품위제품을 제외하고 감시해제('86. 7. 23)
윤전기	○ 언론, 출판업계의 균형적 발전과 영세출판업계 보호를 위하여 윤전식 인쇄기를 감시 지정 ○ 일반산업용도 감시절차를 거쳐 수입함에 따른 수요업계의 반발	○ 윤전식의 인쇄기중 윤전기만 감시로 지정하고 여타 산업용 인쇄기는 감시해제('86. 7. 1)

〈대외통상마찰 사례〉

품 목	관련국명	시 안 내 용	조 치 결 과
육류수우프	미 국	○미국의 쇠고기 개방압력과 관련하여 '82.7.1부터 허용성 감시품목으로 운용 ○소값하락에 따른 농가보호를 위하여 농수산부로부터 수입제한 요청	○대미통상관계등을 고려 현행대로 허용성 감시로 운영
소다회	미 국	○금년 개방되면서 감시지정함에 따른 비난	○완전개방시 동구 및 영국등의 저가품으로 미측이 불리함을 설득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을 최대한 협조할 것을 통보
냉동감자 (튀김감자용)	〃	○'85.7.1 감시지정제한함에 따른 비난	○'85년부터 튀김감자용 특수품종을 국내생산 시작 ○가공공장 지원건설로 튀김감자 국내생산 ○가격안정과 생산농가보호를 위하여 계속 감시품목으로 존치
카제인	뉴질랜드	○'86.7.1 신규감시지정 ○우유가공제품으로 식품과 공업용 원료로 사용 ○주수입국 뉴질랜드의 반발	○우유가공업 합작건설 조건으로 무마 ○감시로 존치
인조왁스	미 국	○감시지정 우려 표명 ○'86년 국내 신개발품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와 주무부서로부터 감시지정 요청	○대미통상관계 고려하여 감시지정 보류
유 리	서 독	○'85.7.1 감시지정에 따라 주공급국인 서독의 항의	○일부 규격은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품 목	관련국명	시 안 내 용	조 치 결 과
			○장치산업인 국내업계보호와 수입규모의 과다에 따른 국제수지 차원에서 현행대로 감시존치
안경테	서 독, 프랑스등	○'83.7.1 감시지정에 항의	○감시로 존치하되 개당 20$이하의 저급품을 제외하고 완전 수입허용
전동공구	미 국	○수입개방 압력 ○'85년 한미경제협의회시 '86년 개방을 약속	○'86.7.1 감시로 신규 지정하였으나 ○미국지역은 완전 수입 허용
정구라켓	〃	○미측 개방압력	○'84.8.18 감시지정 ○미국지역은 수입허용
석재류	이 태 리	○'84.8.18 대리석 감시지정에 따라 주공급국인 이태리로부터 항의와 차별적 수입제한인지의 여부 문의	○무차별적 제한으로서 일시적 잠정적 조치임을 통보 ○현행 감시로 존치
초코렛, 초코렛과자	미 국	○형식적인 수입자유화란 비난 ○감시품목이나 수입을 완전 허용하고 있음을 통보	○'85.9.6 감시해제
벨베틴, 골덴	〃	○'83.7.1 감시지정에 따른 개방압력	○'85.7.1 감시해제, 다변화로 전환
유리제품		○'79.6.1부터 계속 감시운영에 따른 항의	○'85.7.1 감시해제, 다변화로 전환

Ⅱ- 13. 수입감시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

(상공부고시 제88-58호, '89.1.1시행)

(1) 수입감시품목 현황

○ 근거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제5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제5조 (수입감시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동품목의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하여야 한다.

○ 목적 : 수입자유화의 본격추진에 따른 산업에의 충격완화 및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보완수단으로 '78년부터 수입감시제도운영

○ 수입절차 :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오퍼확인을 받아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 회국환은행의 장의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

○ 현황

- '88.12현재 34개품목을 수입감시품목으로 운영중

	수	품 목 내 역
농 산 물	26	조란, 난황, 마늘, 양송이, 고사리, 대추, 양파,냉동과일, 딸기, 생강, 인조꿀, 유당, 카세인, 카세인염, 피마자유, 누에고치, 견방사
공 산 품	8	윤전기,위성방송수신기 및 부품
계	34	

(2) 수입감시제도폐지에 따른 보완조치

○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농산물은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전환하여 계속 규제

○ 기타 품목은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환원하여 완전자유화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전화(12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408	조란(껍질이 붙지아니한 것)과 난황	대한양계협회추천
19 0000	난황(기타)	(계란에 한함)
99 0000	기타(기타)	
0710 80 2000	냉동마늘	농림수산부장관추천
0711 90 1000	염장마늘	
0712 20 0000	건조양파	
90 1000	건조마늘	
0811 90 0000	기타의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농림수산부장관추천 (그레 이프프루트, 레몬, 라임을 제외한 감귤류와 포도에 한함)
0813 10 2000	건조대추	산림청창추천
0910 10 0000	생강	농림수산부장관추천
1702 10 0000	유당	보건사회부장관추천
90 1000	인조꿀	축협추천
5001 00 0000	누에고치	한국생사추출조함추천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환원(22개품목)〉

H S	품 목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
00 1000	신선한 것
00 9000	기타
0408	조란(껍질이 없는 것)과 난황
11 0000	난황(건조한 것)
91 0000	기타(〃)

H S	품 목
0710 80 9000	내용고사리
0711 90 2000	염장양송이
90 5000	염장고사리
0712 90 2000	건조고사리
0811 10 0000	초본류딸기(냉동의것)
20 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가베리와 커런트 및 구즈베리(냉동의것)
1515 30 0000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3501 10 0000	카제인
90 1000	카제인산염과카제인글로우
5005 00 2000	견방사
8443 11 0000	윤전기
21 0000	
40 0000	
50 9000	
8527 90 9000	위성방송수신기 및 튜너
8292 10 9290	파라보라안테나 및 부분품
10 9290	
10 9900	

<수입감시규제의 폐지>

가. 배 경

○ 수입감시제도는 본래 수입자유화의 본격추진과 함께 산업에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보완수단으로 '7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 따라서 수입감시품목은 수입자유화 후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품목,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중 불요불급한 사치성소비재 및 수입자유화하였더라도 당분간 수입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등을 주요대상으로 운영하여 왔다.

○ 그러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감시제도에 대하여는 미국, EC등 주요교역국과 GATT,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수입자유화된 품목에 대한 불공정하고 음성적인 수입규제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통상마찰이 야기되었고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는 수입감시제도를 운영할 타당성이 없게된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서는 수입감시품목을 점차 축소시켜 왔고 최종적으로 동제도를 '88년말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수입감시제도 폐지와 함께 현행 34개의 수입감시품목도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환원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감시품목 중 농산물의 경우는 이를 일시에 완전 개방할 경우 생산농가에 상당한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감시제도폐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입공고상 수입규제품목으로 편입하여 당분간 수입을 제한키로 하고 그 외에는 완전자유화 품목으로 환원하였다.

○ 동시에 정부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환원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수입규제, 보조금지원등의 산업피해구제수단을 동원, 보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

1)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전환(12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	대한양계협회 추천
19 0000	난황(기타)	(계란에 한함)
99 0000	기타(기타)	
0710 80 2000	냉동마늘	농림수산부장관 추천
0711 90 1000	염장마늘	
0712 20 0000	건조양파	
90 1000	건조마늘	
0811 90 0000	기타의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농림수산부장관 추천 (그레이프프루트, 레몬, 라임을 제외한 감귤류와 포도에 한함)
0813 40 2000	건조대추	산림청장추천
0910 10 0000	생강	농림수산부장관추천
1702 10 0000	유당	보건사회부장관추천
90 1000	인조꿀	축협추천
5001 00 0000	누에고치	한국생사수출조합추천

2)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환원되는 품목(22개 품목)

H S	품 목	비 고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	
00 1000	신선한 것	
00 9000	기타	
0408	조란(껍질이 없는 것)과 난황	
11 0000	난황(건조한 것)	
91 0000	기타(〃)	
0710 80 9000	냉동고사리	
0711 90 2000	염장양송이	
90 5000	염장고사리	
0712 90 2000	건조고사리	
0811 10 0000	초본류 딸기(냉동의 것)	
20 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 딸기, 오디, 로간베리와 커런티 및 구즈베리(냉동의 것)	
1515 30 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3501 10 0000	카제인	
90 1000	카제인산염과 카제인글로우	
5005 00 2000	견방사	
8443 11 0000 21 0000 40 0000 50 9000	윤전기	
8527 90 9000	위성방송수신기 및 튜너	
8929 10 9210 10 9290 10 9900	파라브라안테나 및 부분품	

Ⅲ. 輸出入別途公告 및 中古品의 輸入制限

Ⅲ- 1. 1989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 '89. 2. 2 방위산업과에서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요청
- 항공기 및 동부분품의 수입(제7장)
・방위산업용 원화기재의 수입(제6장)

○ '89. 2. 15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추천업무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 이관함에 따라 개정요청

○ '89. 2. 27 무역조사관실에서 새우젓에 대해 산업영향조사 결과 구제조치키로 결정함에 따라 별도공고에 잠정수입제한조치품목으로 규제요청

○ '89. 3. 25 수입과에서 중고기중기 및 준설선 수입허용 검토결과 별도공고에 반영요청

○ '89. 3. 29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상공부고시 89-12호)하여 (4.1부로 시행 고시함)
- 개정내용 : 참고 89-3

○ '89. 7 상공부고시 89-12호로 개정한 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대상품목 HS 8702자 누락되어 자동차공업협회에서 개정요청

○ '89.10. 6 무역위원회에서 고추장에 대한 산업영향조사결과 한시적수입제한 품목으로 규제요청

○ '89.10.10 고추장을 한시적수입제한품목으로 공고(상공부고시 89-33호)
- 개정내용 : 참고 89-4

○ '89. 8.30 방위산업과에서 방위산업용원료, 기재 수입과 항공기 및 동부분품의 수입요령 개정요청

○ '89.12.19 중고승용차의 수출추천품목을 신규로 추천품목에 포함하고 방산품과 항공기의 수입요령 일부개정함(상공부고시 89-42호)(별첨 3)
- 개정내용 : 참고 89-5

〈참고 89-3〉

輸出入別途公告 改正要旨

1. 새우젓 輸入制限

○ 産業影響調査에 의한 貿易委員會의 요청에 따라 새우젓에 대한 限時的 輸入制限 實施

구 분	현 황	개 정
규제형태	잠정수입제한	한시적수입제한
품 목	새우젓(HS 0306 23 3000)	(좌 동)
수입요령	수산청장의 추천	(좌 동)
시행시기	'88. 7. 20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날
시행증기	산업영향조사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조치(한시적수입제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91.12.31까지 (무역위원회 의결)
법적근거	대외무역법 제35조(잠정조치)	대외무역법 제34조 (한시적수입제한등의 조치)

2. 中古 浚渫船 및 起重機車 輸入許容

○ 항만 준설·매립 또는 항만시설공사용의 중고장비로서 국내생산이 안되거나 생산이 되더라도 국내생산업계 및 임대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입허용

- 4,000HP 이상의 준설선
- 100톤이상의 기중기차
- 75톤이상의 무한궤도식 크레인

3. 輸出入推薦機關 變更

구 분	수출입추천권자		비 고
	현 행	개 정	
항공기 및 동부분품의 수입	상공부장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수입추천권 하부기관 위임
중고자동차 수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수출입업무 전담조합신설

상공부고시 제89-12호
수출입별도공고(상공부고시 제87-41호, '87.12.17)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89. 4. 1
상 공 부 장 관

다 음

수출입별도공고중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HS 8703 내지 8705에 해당하는 중고품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승인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제2호중 "수산청장의 수입필요성"을 "수산청장 및 기타 사업주무부처의 장의 수입필요성"으로 한다.

제6-3조중 "다만, 항공기 및 동부분품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7장을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1-3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HS 8905 해당품목중 다음의 것
○ 준설선(주기관 4,000마력이상의 펌프식의 것)

별표1-4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류 및 산업설비〕에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두, 항만시설공사용으로서 다음의 것. 단, 수입된 장비는 건설부장관의 사

전승인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HS 8426 해당품목중 무한궤도식 크레인(75톤이상의 것)

○ HS 8705 해당품목중 기증기차(100톤이상의 것)

별표 9-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1〔대외무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실 시 기 간
0306 23 3000	새우와 보리새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991. 12. 31까지

별표 9-2〔대외무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의 수입요령〕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89-4〉 고추장의 한시적 수입제한 고시 내용

상공부고시 제89-33호

수출입별도공고(상공부고시 제87-14호, '87.12.17)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89. 10. 10

상 공 부 장 관

수출입별도공고중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1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실 시 기 간
2103 90 1030	기타 혼합조미료 고 추 장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992. 12. 31까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89-5〉 승용차, 항공기 부분품, 방위산업원료기재의 수입요령 개정내용

수출입별도공고개정 검토

1. 중고수출추천품목 추가

현 행	개 정	사 유
○ 자동차공업협회 추천품목 - 승용자동차(HS 8703) - 화물자동차(HS 8704) - 특수차량(HS 8705)	 - (좌동) - (좌동) - (좌동) - 버스(HS 8702)	○중고버스의 수출질서유지 ○노후중고버스의 무분별한 수출로 인한 아국 자동차시장에의 이미지 훼손방지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요청

2. 방위산업용 원료기재의 수입

현 행	개 정	사 유
○수입신청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1부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방산전용 장비는 가격이 고가이며 -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문제작임. - 주로 수입계약서에 의해 수입되는 것이 상례임.
- 내용년수, 사용기간 및 성능보장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1부	○ 방산품은 「장비의 성능 보장」으로 충분 - 불필요한 검토사항 생략 ○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3. 항공기 및 동부분품의 수입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 항공기수입자격자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의한특정업체 또는 기술개발 업무 대행자	- (좌 동)	
- 항공사업면허자	- (좌 동)	
-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수입추천업무의 위임확대 ○ 민원업무처리의 원활화 *당부(방위산업과)와 기협의
○ 수입신청서류중 - 물품매도확약서 1부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항공기는 통상 수입계약서에 의해 수입됨.
- 내용년수, 사용기간 및 성능보장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1부	○ 항공기는 성능보장으로서 검토 가능 ○ 불필요한 검토사항 생략으로 민원인에 편의 제공

4. 기 타

현 행	개 정	사 유
제4-2조(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등의 수출입) (1) 생략 (2) (본문생략) 1. (생략)		
2.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입감시품목 또는 수입선다변화품목…	2. …수입제한승인품목, 또는 수입선다변화품목…	○ 수입감시제도폐지
○추천실적보고 요령중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은 제7-2조의 추천실적을 매분기별로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은 매분기별로 수입추천실적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현방식 및 체제 통일

〔별첨 2〕

상공부고시 제89-42호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89. 12. 17

상 공 부 장 관

수출입별도공고중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HS 8703 내지 8705”를 “HS 8702 내지 8705”로 한다.

제4-2조 제2항 2호중 “수입감시품목”을 삭제한다.

제6-4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1부(중고품의 경우에 한함)

제7-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기계공업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3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4.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1부(중고품의 경우에 한함)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추천실적보고)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은 매분기별로 수입추천실적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이전의 제7-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이 개정고시 제7-2조 제4호의 “기타 기계공업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본다.

Ⅲ- 2. 1990년의 수출입별도공고 개정

가. 특정물질의 수출입제한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해유발물질에 대한 수출입 규제움직임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의 방안을 강구하게 됨.

○ ’90.7 정밀화학과에서 CFC 등 특정물질의 수입규제를 수출입별도공고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90. 8 수출입별도공고 제11장에 신설, 신규수입제한함(상공부 고시 제90-30호 ’90.8.20 발표, 시행).

※ 특정물질의 수입제한관련 고시

〈참고 90-3 참조〉 특정물질의 수입제한 관련 고시내용(’90. 8. 20)

제11장 특정물질의 수입

제11-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정책상 필요한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별표 11-1에 게기한 특정물질의 수입승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3조(수입요령) 별표 11-1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회장의 수입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승인할 수 있다.

제11-4조(수입추천요령공고)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회장은 별표 11-1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수입추천요령을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수입추천실적의 보고)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회장은 매월 특정물질의 수입추천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1-1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

H S	품 목 명
2903 14 0000 19 1000	○ 사염화탄소 삼염화에탄중 다음의 것
2903 40 10 1010 1020 1090	○ 1, 1, 1, - 트리클로로에탄(메틸크로로포롬) 클로로플루오르메탄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 - 11) ○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 - 12) 기타중 다음의 것
2903 40 20 2010 2090	○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 - 13) 클로로플루오르에탄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CFC - 113) 기타중 다음의 것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 - 114) ○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 - 115)
2903 40 3000 9000	○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 - 111) ○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 - 112) ○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 1301) 기타중 다음의 것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alon 1211) ○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Halon 2401)
3823 90 2300	○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 - 211) ○ 헥사클로로디플루오프프로판(CFC - 212) ○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 - 213) ○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 - 214) ○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CFC - 215) ○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 - 216) ○ 크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 - 217) ○ 클로로플루오르카본을 기재로한 세정제

Ⅲ- 3. 1991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가. 특정물질(CFC등)의 수입요령 삭제

○ CFC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출입별도공고에 규정되어 있던 동 물질의 수입관련 내용을 통할공고에 반영하고 별도공고에서는 삭제함.

○ 동 내용의 삭제는 '92. 12. 19 관리규정 개정고시(상공부 고시 91-54, '91. 12. 19)하면서 부칙에서 "다 고시의 개정"으로 개정 삭제함.

나. 새우젓의 한시적 수입제한 기간 연장

○ '89년 산업피해조사 절차에 따라 '9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제한 하기로 하였던 새우젓의 수입제한기간을 '94. 12. 31까지 3년 추가 연장함.

〈참고 91-5〉 새우젓의 수입제한 기간 연장

상공부고시 제91 - 38호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1. 9. 16

상 공 부 장 관

수출입별도공고중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1 [대외무역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수입제한품목] 중 "새우와 보리새우(HS 0306 23 3000)"의 해당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실 시 기 간
0306 23 3010	새우와 보리새우 새우젓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994. 12. 31까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중고품수입요령('91. 12. 20) 1)2)3) 개정 내용

1) 현행 중고품수입제도

○ 관련규정 : 수출입별도공고

○ 신품과는 달리 중고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수입규제하에 일부품목에 한해 수입허용(Positive System)

○ 수입허용대상 및 수입요령

구 분	허 용 대 상	수 입 요 령
건설중장비	○ 건설업체가 해외에 보유한 국산 공급불가 25종 중기 ○ 간척농지개발용, 평화의댐 건설용등	건설부장관 등의 확인 후 상공부장관 추천
선 박	○ 원양어업용어선(톤수 및 선령제한) ○ 카훼리, 화물선(〃) ○ 준설선, 기중기선 등	수산청장, 항만청장 등 확인 후 상공부장관 추천
기계류 및 산업설비	○ HS 제82류 - 90류 중 국산공급불가 품목 ○ 기술개발대상 견본품 등	품목소관단체장 추천 - 30만달러 이상 일관 생산설비는 상공부장관 추천

2) 개정배경

○ 최근 연안여객 및 화물등 해운분야 수요증가로 선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중고선박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하여 업계 자금부담을 경감

- 선박화보에 관한 관련부처(EPB, 재무부, 상공부, 항만청, 산업은행) 협의 결과에 따라 항만청으로부터 개정요청

○ 해외합작사업용으로 수산청장의 양도허가를 받아 현물출자한 우리나라국적어선에 대하여 국내반입이 가능토록하여 해외합작사업 지원(수산청장 요청)

○ '90. 4 중고품 수입요령개정이후 관련업계가 개정요청한 사항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여 업체의 편의도모

3) 개정 내용

○ 상공부는 중고품 수입요령(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하여 이를 '92.1.1부로 시행키로 하였음.

○ 이번 개정은 중고선박에 대한 수입허용범위 확대가 그 주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해운분야 수요증가로 증대됨에 따라 중고선박 수입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토록하고 업계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해외합작사업용으로 현물출자한 국적어선에 대해 국내반입이 가능토록하여 수산분야의 해외합작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임.

그러나, 중고선 수입허용 범위를 확대하되 국내소형조선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00G/T 미만에 대한 수입제한은 계속 유지토록 하였음.

○ 또한, 최근 도심지하철공사 등에서 많이 사용괴고 있는 전단면굴착기(TBM)의 중고장비 수입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동장비가 국내에서 제작도지 않고 있고 중고설비가격이 신규설비의 40% 수준에 형성되고 있어 중고장비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무역수지개선과 국내건설공사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임.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음.

[주요 개정내용]

가. 중고선박

○ 수입허용기준 완화(3개 품목)

품 목 명	현 행 기 준	개 정(안)	사 유
페리보트	- 국내건조 연계용 카훼리 - 500 - 5천G/T 미만 - 선령 12년이하	- (좌동) - 500 - 15천G/T 미만 - 선령 15년 이하	- 외항여객증가에 따른 대형 카훼리선 수요증가 - 선령제한 완화로 국내 선주의 구매조건 완화하여 국내건조연계 유도
액화가스 탱크	- 75천 CBM이상 LPG선 - IMO 기준 적합 - 국내공급불가능 - (신 설)	- (좌 동) - (좌 동) - 선령 15년 이하 - 국내건조연계용	- 석유화학사업 확장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 - 국내공급불가능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선박의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국내건조연계조건 신설하여 국내건조 유도
벌크선	- 한일/동남아 항로 선대구조 개편용(500G/T - 4천G/T 미만) - (신설) - 선령 10연이하	- (좌 동) - 선대구조 개편용(10천G/T - 40천G/T 미만) - (좌 동)	- 정책적인 선복량억제 및 선사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선복량 감소 ('86 : 128척 → '90 : 91척) - 국내중형조선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천G/T - 40천G/T 이하만 수입허용

○ 중고선박의 신규도입허용(5개품목)

품목명	현행기준	개 정(안)	사 유
유조선	〈신 설〉	- 국내건조연계용 - 45천G/T 이상 - 선령 15년 이하	- 현재 국적선 적취율이 18.2%에 불과 - 국내건조연계조건 부여하여 수입허용
유류제품 운반선	〈신 설〉	- 국내건조연계용 - 20천G/T 이상 - 석유제품운반선 - 선령 15년 이하	- 석유화학 사업확장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 - 대형선박에 한하여 국내건조 연계조건으로 수입허용
냉동선	〈신 설〉	- 국내건조연계용 - 3천G/T 이상 - 선령 15년 이하	- 농산물개방에 따른 수송수요증가로 기존선박 5척으로는 부족하며 노후선 대체필요
폐기물 운반선 (탱크류)	〈신 설〉	- 자항능력을 갖춘 500G/T 이상	- 국내 해양폐기물의 처리 물량증가 추세로 보아 선복량확보가 시급하나 선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신조선 확보곤란
어 선	〈신 설〉	- 해외합작사업용으로 수산청장의 양도하가를 받아 현물출자한 국적어선으로서 수산청이 수입필요성을 확인한 분	- 현지 합작사업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시 현물 출자한 어선반입 필요

나. 기계류 및 산업설비

품목명	현행기준	개 정(안)	사 유
중대형 컴퓨터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해 수입허용 - 국산공급불가	- 업종제한폐지 - (좌 동)	- 제품특성상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일반서비스 업종에도 수요가 많음
전단면 터널굴착기 (TBM)	(신 설)	- 국산공급불가	-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고있는 장비로서 최근 도심지하철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수입실적('91.9) : 39백만불(전년 동기대비 290.6%증가) - 신규설비의 가격은 3.5m의 소구경의 경우 500만불선, 10m 이상의 대구경의 경우에는 1,500만불 수준이며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구경 TBM의 중고설비도입 가격은 신규설비의 40%수준인 200만불선에서 형성되어 있음 - TBM의 중고수입 허용시 국내건설중장비 제작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무역수지개선과 국내 건설공사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됨

<중고품제도 변천>

□ 초기(81.6.30)

o "제한조치 품목 수출입 요령"(상공부 고시 81-22)제정시 중고품 수출입요령을 포함하여 규정
- 수입가능품목 : 해운, 수산, 조선, 전자 등 37개 분야 시설 및 제품
- 수입요령 : 주무부처장 및 소관 단체장이 수입 추천

□ 1차 개정(85.4.12) - 엄격 규제

o 개정배경 : 종전제도 운용의 방만성으로 인한 중고설비 도입 급증 및 무계획적인 중고설비투자로 국내산업의 생산성 저하
o 주요골자 : 수입허용 대상의 대폭축소 및 추천업무의 상공부 일원화

□ 2차 개정(88.9.16) - 수입규제 소폭 완화

o 개정배경 : '85년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의 애로 등 중고품 수입의 엄격한 규제에 따른 불합리성 도출
o 주요골자 : 해외건설업체 유휴장비 반입허용 확대, 중고선박의 선종 및 규모의 현실화 수입추천업무 일부 위탁

□ 3차 개정(90.4.10) - 수입규제 대폭 완화

o 개정배경 : 중고설비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시설투자 애로점증과 허용대상업종 및 용도제한에 대한 업계의 불만 증가
o 주요골자 : 제조용 설비 및 기계류 수
입 기준 확대 및 특수선박의 신규도입 허용, 기계류의 추천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 4차 개정(91.12.20) - 중고선박 수입허용범위의 확대

o 개정배경 : 중고선박의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하고 업계 자금 부담을 경감

o 주요골자 : 중고선박 도입범위 확대 (유조선, 유류제품운반선, 폐기물 운반선 등) 중·대형 컴퓨터 및 전단면굴착기(TBM) 도입 허용

□ 5차 개정(93.4.15) - 중고선박 수입제한 대폭 완화

o 개정배경 : 중고선박 수입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적선 적취율 제고 및 연안운송의 활성화

o 주요골자

- 중고선박 수입시 해운항만청장, 수산청장이 직접 수입추천(종전에는 실수요자 확인후 상공부장관이 수입추천)
- 도입가능 대상 선박규모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국내건조 연계조건 및 용도제한 폐지 등 중고선박 도입기준 대폭 와뇨
- 수입을 불허하던 중고섬유기계(방직기계, 직조기등)에 대하여 업체의 설비투자 경비절감을 위해 국산불가의 경우 수입허용
- 중고의류에 대한 수입제한(방모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중고의류만 수입허용)

□ 6차 개정(93.12.23)

o 개정배경 : 국내외 취항중인 카훼리,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의 노후선박 대체를 원활히 하기 위함

o 주요골자

-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에 한해 수입서다변화품목 적용 제외, 중고 카훼리의 도입선령을 완화(10년 이하→15년 이하)
- 중고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에 대해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 제외(4000톤 이상 중고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 도입 허용)
- 철강재운반선의 중고선 도입은 선령 및 톤수제한 배제(1000톤미만도 도입허용)

□ 7차 개정(94.4.15)

o 개정배경 : 해외건설업체 등의 건의에 따라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계부청 협의를 거쳐 '94.3.18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해외 중고건설장비의 수출입규제를 완화키로 함

o 주요골자

- 해외에서 특정용도(평화의댐 건설, 간척사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장비에 대해 해외로의 재수출을 전면 허용
- 해외건설현장에 소재한 중고건설장비중 국산장비에 대해 국내수입을 전면 허용

□ 8차 개정(94.8.1)

o 개정배경

-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어업환경변화에 대비하고 특수용도선박의 수용에 부응하여 중고선박도입이 불가피한 선박의 원활한 확보
-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락된 선박의 수입추천과 관련 근거를 명백히하고 변칙적인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근거를 명시

o 주요골자

-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락된 선박도 수출입별도공고에 따라 일반 중고선박가 같이 사업주무부처장의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토록 근거 명시
- 철강어선중 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의 도입기준을 완화(현행 300G/T이상 → 200G/T 이상으로)
- FAO의 공해조업어선 규제와 관련한 협정 채택으로 공해상 조업중인 편의국적어선의 조업규제에 대비 편의국적어선의 국적취득을 위한 수입허용
- 공공목적 수행등 특수용도선박의 수입허용 범위 확대[소방선, 해난구조선, 공작선(해저케이블설치, 보수용 및 케이칼선박 수리용), 오염방제선을 추가

보도자료

자료작성 : 수입과
구　　내 : 2386
직　　통 : 503-9441

중고품 수입요령 개정

o 상공부는 중고품 수입요령(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하여 이를 '92.1.1부로 시행키로 하였음

o 이번 개정은 중고선박에 대한 수입허용범위 확대가 그 주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해운분야 수요증가로 선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중고선박 수입허용기준을 완화하여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토록하고 업계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해외합작사업용으로 현물출자한 국적어선에 대해 국내반입이 가능토록하여 수산분야의 해외합작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임.

그러나, 중고선 수입허용 범위를 확대하되 국내소형조선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00G/T 미만에 대한 수입제한은 계속 유지토록 하였음

o 또한, 최근 도심지하철공사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단면굴착기(TBM)의 중고장비 수입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동장비가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고 있고 중고설비 가격이 신규설비의 40% 수준에 형성되고 있어 중고장비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무역수지개선과 국내건설공사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임

o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음

[주요 개정내용]

가. 중고선박

o 수입허용기준 완화(3개 품목)

품 목 명	현행기준	개 정 (안)	사 유
페리보트	- 국내건조 연계용 카훼리	- (좌 동)	
	- 500-5천G/T 미만	- 500-15천G/T 미만	- 외항여객증가에 따른 대형카훼리선 수요증가
	- 선령 12년 이하	- 선령 15년 이하	- 선령제한 완화로 국내 선주의 구매조건 완화 하여 국내건조연계 유도
액화가스 탱 크	- 75천 CBM이상 LPG선	- (좌 동)	- 석유화학사업 확장에 따른 수용수요 증가
	- IMO 기준 적합	- (좌 동)	
	- 국내공급불가능	- 선령 15년 이하	- 국내공급불가능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선박의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국내건조연계조건 신설 하여 국내건조 유도
	- (신 설)	- 국내건조연계용	
벌 크 선	- 한일/동남아 항로 선대구조 개편용 (500G/T-4천/G/T 미만)	- (좌 동)	- 정책적인 선복량억제 및 선사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선복량 감소 ('86:128척→'90:91척)
	- (신 설)	- 선대구조 개편용 (10천G/T-40천G/T 미만)	- 국내중형조선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천 G/T-40천G/T 이하만 수입 허용
	- 선령 10년 이하	- (좌 동)	

o 중고선박의 신규도입 허용(5개 품목)

품 목 명	현행기준	개 정 (안)	사 유
유 조 선	< 신 설 >	- 국내건조연계용 - 45천G/T 이상 - 선령 15년 이하	- 현재 국적선 적취율이 18.2%에 불과 - 국내건조연계조건 부여하여 수입 하용
유류제품 운 반 선	< 신 설 >	- 국내건조연계용 - 20천G/T 이상 - 석유제품운반선 - 선령 15년 이하	- 석유화학 사업확장에 다른 수송수요 증가 - 대형선박에 한하여 국내건조 연계조건으로 수입 허용
냉 동 선	< 신 설 >	- 국내건조연계용 - 3천G/T 이상 - 선령 15년이하	- 농산물개방에 따른 수송수요증가로 기존선박 5척으로는 부족하며 노후선 대체 필요
폐 기 물 운 반 선 (탱커류)	< 신 설 >	- 자항능력을 갖춘 500G/T 이상	- 국내 해양폐기물의 처리물량증가 추세로 보아 선복량확보가 시급하나 선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신조선 확보 곤란
어 선	< 신 설 >	- 해외합작사업용으로 수산청장의 양도허가를 받아 현물출자한 국적어선으로서 수산청이 수입필요성을 확인한 분	- 현지 합작사업 중단 또는 종료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시 현물출자한 어선반입 필요

나. 기계류 및 산업설비

품 목 명	현행기준	개 정 (안)	사 유
중 대 형 컴 퓨 터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해 수입허용 - 국산공급 불가	- 업종제한폐지 - (좌 동)	- 제품특성상,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일반서비스 업종에도 수요가 많음
전 단 면 터널굴착기 (TBM)	< 신 설 >	- 국산공급불가	-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고 있는 장비로서 최근 도심지하철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수입실적('91.9) : 39백만불(전년동기대비 290.6% 증가) - 신규설비의 가격은 3.5m의 소규경의 경우 500만불선, 100m 이상의 대구경의 경우에는 1,500만불 수준이며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구경 TBM의 중고설비도입 가격은 신규설비의 40% 수준인 200만불선에서 형성되어 있음 - TBM의 중소수입 허용시 국내건설중장비 제작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무역수지개선과 국내건설공사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됨

중소품수입요령 개정

1. 현행 중고품 수입제도

o 관련규정 : 수출입별도공고

o 신품과는 달리 중고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수입규제하에 일부품목에 한해 수입허용(Positive System)

o 수입허용대상 및 수입요령

구 분	허 용 대 상	수 입 요 령
건설중장비	o 건설업체가 해외에 보유한 국산공급불가 25종 중기 o 간척농지개발용, 평화의 댐 건설용 등	건설부장관등의 확인 후 상공부장관 추천
선 박	o 원양어업용어선(톤수 및 선령제한) o 카훼리, 화물선(〃) o 준설선, 기중기선 등	수산청장, 항만청장 등 확인후 상공부장관 추천
기계류 및 산업설비	o HS 제82류-90류중 국산공급불가품목 o 기술개발대상 견본품 등	품목소관단체장 추천 - 30만달러 이상 일괄생산설비는 상공부장관 추천

2. 개정배경

o 최근 연안여객 및 화물등 해운분야 수요증가로 선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중고선박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하고 업계 자금부담을 경감

- 선박확보에 관한 관련부처(EPB, 재무부, 상공부, 항만청, 산업은행) 협의결과에 따라 항만청으로부터 개정 요청

o 해외합작사업용으로 수산청장의 양도허가를 받아 현물출자한 우리나라국적어선에 대하여 국내반입이 가능토록하여 해외합작사업 지원(수산청장 요청)

o '90.4 중고품 수입요령개정이후 관련업계가 개정요청한 사항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여 업체의 편의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가. 중고선박

o 수입허용기준 완화(3개 품목)

품 목 명	현행기준	개 정 (안)	사 유
페리보트	- 국내건조 연계용 카훼리 - 500-5천G/T 미만 - 선령 12년 이하	- (좌 동) - 500-15천G/T 미만 - 선령 15년 이하	- 외항여객증가에 따른 대형카훼리선 수요증가 - 선령제한 완화로 국내 선주의 구매조건 완화하여 국내건조연계 유도
액화가스 탱 크	- 75천 CBM이상 LPG선 - IMO 기준 적합 - 국내공급불가능 - (신 설)	- (좌 동) - (좌 동) - 선령 15년 이하 - 국내건조연계용	- 석유화학사업 확장에 따른 수용수요 증가 - 국내공급불가능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선박의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국내건조연계조건 신설하여 국내건조 유도
벌 크 선	- 한일/동남아 항로 선대구조 개편용 (500G/T-4천/G/T 미만) - (신 설) - 선령 10년 이하	- (좌 동) - 선대구조 개편용 (10천G/T-40천G/T 미만) - (좌 동)	- 정책적인 선복량억제 및 선사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선복량 감소 ('86:128척→'90:91척) - 국내중형조선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천G/T-40천G/T 이하만 수입 허용

o 중고선박의 신규도입 허용(5개 품목)

품 목 명	현행기준	개 정 (안)	사 유
유 조 선	< 신 설 >	- 국내건조연계용 - 45천G/T 이상 - 선령 15년 이하	- 현재 국적선 적취율이 18.2%에 불과 - 국내건조연계조건 부여하여 수입 하용
유류제품 운 반 선	< 신 설 >	- 국내건조연계용 - 20천G/T 이상 - 석유제품운반선 - 선령 15년 이하	- 석유화학 사업확장에 다른 수송수요 증가 - 대형선박에 한하여 국내건조 연계조건으로 수입 허용
냉 동 선	< 신 설 >	- 국내건조연계용 - 3천G/T 이상 - 선령 15년이하	- 농산물개방에 따른 수송수요증가로 기존선박 5척으로는 부족하며 노후선 대체 필요
폐 기 물 운 반 선 (탱커류)	< 신 설 >	- 자항능력을 갖춘 500G/T 이상	- 국내 해양폐기물의 처리물량증가 추세로 보아 선복량확보가 시급하나 선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신조선 확보 곤란
어 선	< 신 설 >	- 해외합작사업용으로 수산청장의 양도허가를 받아 현물출자한 국적어선으로서 수산청이 수입필요성을 확인한 분	- 현지 합작사업 중단 또는 종료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시 현물출자한 어선반입 필요

나. 기계류 및 산업설비

품 목 명	현행기준	개 정 (안)	사 유
중 대 형 컴 퓨 터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해 수입허용 - 국산공급 불가	- 업종제한폐지 - (좌 동)	- 제품특성상,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일반서비스 업종에도 수요가 많음
전 단 면 터널굴착기 (TBM)	< 신 설 >	- 국산공급불가	-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고 있는 장비로서 최근 도심지하철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수입실적('91.9) : 39백만불(전년동기대비 290.6% 증가) - 신규설비의 가격은 3.5m의 소규경의 경우 500만불선, 100m 이상의 대구경의 경우에는 1,500만불 수준이며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구경 TBM의 중고설비도입 가격은 신규설비의 40% 수준인 200만불선에서 형성되어 있음 - TBM의 중소수입 허용시 국내건설중장비 제작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무역수지개선과 국내건설공사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됨

4. 시행시기 : '92. 1. 1

중고선 도입 예상 선가

선 종	선대규모	척 수	도입선가(백만불)	비 고
유 조 선	125천G/T급 40천G/T급	1 1	25 25	o 선령 : 8년
L P G 선	44천G/T급	2	80	
냉 동 선	3.5천G/T급	1	5.5	
유류제품탱카선	20천G/T급	2	36	
산 물 선	13천G/T급	2	18	
계	-	11	189.5	

주) 1. 대상선박 :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에 따른 도입가능선박
(항일항로 선박 미산입)

2. 선 가 : LSE(LLOYD SHIPPING ECONOMICST) 자료 및 선사확인

3. 기계공업국(조선과) 협의물량기준 작성

- 실제도입 규모는 감소예상(유류제품탱카선 등)

※ 중고선도입에 따른 국적선 해외수출 실적

· '90 : 89,115천 $ · '91. 10 : 132,000천 $

Ⅲ- 4. 1993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1호

수출입별도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93.4.1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3년 12월 23일
상공자원부 장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1-3조(중고품의 수입)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HS 8901 10 3000 해당품목중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와 HS 8901 90 해당품목중 일반화물선(HS 8901 90 1010) 및 벌크선(HS 8901 90 1020)은 제외한다.

별표 1-3(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HS 8901 10 3000 해당품목중 1,000 G/T이상, 선령 15년 이하인 카훼리
4. HS 8901 90 해당품목중 1,000 G/T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단, HS 8901 90 1010 일반화물선중 철강재 운반선은 선령 및 톤수의 제한이 없으며, 부선은 제외)

부 칙('93.12.23)

① 이 고시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도자료

작 성 자	수입과장
전화번호	500-2386

중고선박 도입기준 완화

o 상공부는 중고 카훼리,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등의 중고선 도입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요령)를 '93.12.23일자로 개정, 고시(시행이 : '94.1.1부터) 하였다.

o 금번 수출입별도공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중 해운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한·중항로에 투입할 카훼리의 원활한 확보와 국내연안에 취항중인 카훼리의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에 한해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을 제외하고, 중고 카훼리의 도입선령을 완화(10년 이하→15년 이하) 하였으며
- 국내외 취항중인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의 노후선박 대체등 선박확보의 원활화를 위해 중고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에 대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을 제외하므로서 4,000톤이상 중고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의 도입도 허용하였음
- 아울러 수출화물의 국적선이용의무제도의 폐지와 연계하여 국적선의 1,000톤미만 화물수송의 원활화와 외국선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1,000톤미만 철강재운반선의 중고선도입에 따른 선령 및 톤수제한을 배제함으로서 제한없이 도입을 허용키로 함

o 금번 일부 중고선박의 도입기준완화는 세계해운 및 조선경기의 변화에 따른 중고선 수요의 증가와 선가의 급등으로 선박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조선, 해운)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공고를 개정·고시하게 된 것임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입) 개정 검토

1. 검토경위

o '93.6 해운항만청에서 한·중항로에 투입할 선박확보 및 국내연안 운항용 노후선박대체 등을 위해 중고선도입 규제완화를 우리부에 요청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 제기 '93. 7. 7 행정쇄신실무위원회에서 협의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및 수출입별도공고 개정 요청

o 신경제추진회의('93.11.8)에서 철강재에 대한 국적선이용 의무제도의 폐지와 연계하여 1,000톤 미만 철강재 운반선의 중고선도입을 허용키로 합의

o 동 요청(합의)에 의거 기계공업국에서 해운항만청, 선주협회, 조선공업협회등과 협의를 거쳐 중고선 도입기준 완화 의견을 제시해 옴

2. 개정사유 및 검토의견

o '92.12.27 産政番에서 국내 조선산업보호 및 선대구조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선박확보계획 물량의 30% 수준까지 중고선도입을 허용키로 합의하여 수출입별도 공고를 개정('93.4.15) 하였으나
세계해운 및 조선경기의 변화에 따라 중고선 수요 및 선가가 급등하여 10년 이하 카훼리의 확보가 어렵고, 비록 구입가능하더라도 선가가 비싸 해운업계가 채산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외국선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임

o 한·중항로의 여객 및 화물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한·중 해운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로(인천-대련, 부산-상해, 인천-청도, 부탄-연태)중 '93년중 항로개설을 추진중인 2개노선(인천-대련, 부산-상해)에 투입할 카훼리의 확보가 시급하나
- 카훼리의 신조는 막대한 자금과 건조기간이 장시간 소요(1-3년)되며, 아직까지 국내건조실적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중고선 도입이 불가피하고
- 동 선박은 고도의 건조기술 및 설비, 인도지점등을 감안할 때 일본으로부터 중고선을 도입할 수 밖에 없음

o 또한 국내연안 운항중인 노후선박의 대체와 외항선의 경우 증가하는 물동량을 수용키 위해 4,000톤 이상의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의 중고선 도입도 불가피하여 수입선다변화 적용에서 제외 필요

※ 현재는 1,000톤 이상 4,000톤 미만만 도입 가능

o 아울러 신경제추진회의('93.11.8)에서 확정된 국적선 이용의무제도의 폐지와 연계하여 국적선의 1,000톤미만 철강재 운반성의 중고선도입을 제한없이 허용함으로서 외국선사와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계공업국 검토의견]

- 1,000 G/T 미만의 중고 철강재운반선 수입은 최근의 시장개방 추세를 감안 선령, 규모, 원산지 제한없이 허용하되 전체 수입물량은 업계의 실정에 따라 해운항만청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개정내용(중고선박 도입기준 완화)

o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HS 8901 10 3000)와 일반화물선(HS 8901 90 1010) 및 벌크선(HS 8901 90 1020)을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을 제외

-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 제1-3조 제3항 단서 신설

※ 수출입별도공도 제1장 제1-3조(중고품의 수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상의 심한 입초국(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 부터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HS 8901 10 3000 해당품목중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와 HS 8901 90 해당품목중 일반화물선(HS 8901 90 1010) 및 벌크선(HS 8901 90 1020)은 제외한다.

o 중고선박의 도입기준 완화

-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 별표 1-3 개정

품 목	현행도입기준	개 정 (안)	비 고
1. 카훼리 (HS 8901 10 3000)	1,000 G/T 이상, 선령 10년 이하	1,000 G/T 이상, 선령 15년 이하	선령을 완화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HS 8901 90 해당 품목) ※ 일반화물선, 벌크선	1,000 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단, 부선은 제외)	1,000 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단, HS 8901 90 1010 일반화물선중 철강재 운반선은 선령 및 톤수의 제한이 없으며, 부선은 제외)	철강재 운반선은 선령 및 톤수 제한 배재

Ⅲ- 5. 1994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보도자료

작 성 자	수입과장
전화번호	500-2384

중고선박 수입요령 개정

o 상공자원부는 중고선박의 수입요령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별도공고(중고수출입요령)를 '94. 8. 1자로 개정·고시하였다.

o 금번 동공고의 개정은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어업환경변화에 대비하고 특수용도선박 등의 수요에 부응하여 중고선박 도입이 불가피한 선박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중고선박 도입기준의 개정을 요청한 해운항만청, 수산청, 체신부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어선중 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 도입기준을 하향 조정(현행 300톤 이상→ 200통 이상으로)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공해조업어선의 규제와 관련한 협정 채택('93.11)으로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편의국적어선의 조업규제('95상반기 발효예정)에 대비 '93.12말 이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편의국적어선(54척)의 국적취득을 위한 수입을 허용

  ※ 편의국적어선 : 선박소유권이 자국에 속해야 한다는 국제적규범을 벗어나 자국국적이 아닌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선원인건비 등 경비절감 및 세제상의 혜택등의 이점 때문에 동 제도를 이용해 왔음

- 공공목적 수행등 특수용도로 수입하는 중고선박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선, 해난구조선, 공작선(해저케이블 설치·보수용 및 케이칼선박 수리용), 오염방제선을 수입할 수 있도록 추가
- 한편,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내국인에게 경락된 외국중고선박도 외국물품으로서 수출입별도공고에 의거 일반중고선박과 같이 사업주무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토록 수출입별도공고에 근거를 명시하였음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02호

수출입별도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및 제1994-40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4년 8월 1일
상공자원부 장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1-3조(중고품의 수입) 제2항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1-3에 게기한 선박(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경락된 외국중고선박 포함)중 사업주무부처장의 수입추천을 얻은 물품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품이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공고상의 심한 입초국(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 부터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HS 8901 10 3000 해당품목중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와 HS 8901 90 해당품목중 일반화물선(HS 8901 90 1010) 및 벌크선(HS 8901 90 1020)과 HS 8902 해당품목중 철강어선(HS 8902 00 1010)으로서 별표 1-3 제5호에 의거 수입하는 공해조업 편의국적어선은 제외한다.

별표1-3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제5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HS 8902 해당품목중 다음의 것 o 철강어선중 - 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으로서 2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 -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대상 어선으로서 '93.12.31 이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편의국적어선임을 수산청장이 확인한 것(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 o 냉동운반선(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HS 8905 해당품목중 다음의 것 o 준설선 (현행과 같음) o 기중기선 (현행과 같음) o 부선거 (현행과 같음) o 소방선 (화재진압용의 것) o 해난구조선 (해난구조용의 것) o 공작선 (해저케이블 설치. 유지보수용과 케미칼선박 수리용의 것) o 기 타 (오염방제용의 것)

부　　칙('94. 8.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고선박 수입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용으로 중고선박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를 이행한 분에 한하여 수입추천(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3 제5호 HS 8902 해당품목중 철강어선으로서 공해조업 편의국적어선을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출입별도(중고품수출입) 개정내용 요약

o 법원경락 외국중고선박의 수입추천근거 명시

-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법원경락 외국중고선박의 변칙적 반입이 없도록 근원적인 방지대책의 강구를 요구해옴에 따라

- 민사소송법에 의해 내국인에게 경락된 외국중고선박도 수출입별도공고에 따라 예외없이 추천을 받아 수입하도록 수출입별도공고에 근거 명시

o 중고선박의 도입기준 완화

-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어선중 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 도입기준을 완환(현행 300톤 이상 → 200톤 이상으로)

- 편의국적어선의 국적취득을 위한 기준완화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공해조업어선의 국제적보존 및 관리조치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채택으로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편의국적어선의 조업규제에 대비하여 동 선박의 국적취득을 위한 도입기준 완화(대상선박 : 54척)

- 특수용도로 도입하는 중고선박의 대상(범위) 확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도입하는 소방선, 해난구조선, 공작선(해저케이블 설치・보수용 및 케미칼선박 수리용), 오염방제선을 추가(해운항만청, 체신부 요청)

수출입별도(중고품수출입) 개정 검토

1. 검토경위

o 감사원으로부터 법원경락 외국중고선박의 수입추천관리가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래와 같은 처분요구가 있었기 법원행정처등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처리방안으로 수출입별도공고의 개정을 추진

- 감사원 처분요구 내용
  · 중고외국선박이 법원경매를 통해 변칙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므로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입제한 외국중고선박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명백하게 보완하는 등 근원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o 수산청, 해운항만청, 체신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고선박 도입과 관련 수출입별도공고의 개정요청이 있었음

- *수산청 :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공해조업 편의국적어선 규제에 따른 선박도입 및 참치선망 조업악화 등 원양어업의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고어선 수입규제 완화(톤수 및 선령) 요청*

- 해운항만청 : 국적선사의 다양한 선박확보와 특수용도선박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별도공고 개정요청(순항선, 소방선, 해난구조선, 공작선, 해양오염방제선 등)

- 체신부 : 해저통신케이블 건설계획추진과 관련 해저통신케이블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 선박 수입을 위한 별도공고 개정 요청

2. 개정사유 및 검토의견

[법원경락 외국중고선박]

o 감사원의 지적과 이에 대한 처분요구가 있어 이의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법원행정처는 수입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수입승인(추천)을 면제토록, 해운항만청은 사업주무부처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천토록 의견을 제시해 왔기 이를 검토한바,
경락선박에 대한 예외인정은동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반수입시와의 형평성 문제, 변칙 또는 위장수입의 우려, 별도기준을 정할 경우 법체계상의 모순 등을 감안할 때 근원적인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o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락된 선박도 예외없이 수출입별도공고의 중고선박 도입요령에 적합한 것만 추천을 받아 수입하도록 동 선박의 수입추천 근거를 명백히 하고 변칙도입의 방지 등 근원적인 대책을 위해 수출입별도공고의 개정이 필요시 됨

[편의국적어선]

o 제27차 FAO총회('93.11.25)에서 "공해상 조업어선의 국제적보존 및 관리조치 준수촉진을 위한 협정(안)"이 채택되어 편의국적어선의 공해조업을 규제키로 함에 따라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편의국적어선의 국적취득이 불가피하며, 국적취득에 따른 수출증대, 국제경쟁력 제고, 국민재산의 반입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도입이 필요시 됨
- 편의국적어선중 수입허용대상 선박은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운영중인 선박에 한함(수입대상선박수 : 54척)

[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선박]

o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수제한의 완화(현행 300G/T 이상→200G/T 이상으로)는 필요시 되나, 선령의 완화는 안전성확보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존치

[특수용도선박]

o 해운항만청이 요청해 온 소방선, 해난구조선, 공작선(케미칼선박등 수리용), 해상오염방제선은 수입수요가 많지 않고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도입이 필요시 되는 선박임으로 허용하되, 순항선 및 예인선에 대하여는 국내조선업계의 개발의욕제고와 중소조선업계의 물량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제한

o 체신부가 요청한 해저케이블 설치·유지보수용 선박의 수입은 국내외 해저통신 케이블 건설계획 추진에 따라 선박확보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허용코자 함

※ 해저케이블 설치현황 및 계획(한국통신)

- 기 존 : (국내) 300㎞ (제주-고흥간 142㎞, 울릉-삼척간 158㎞)
  (국제) 4,745㎞ (한-일간, 한-일-홍콩간 등 2개 구간)
- 계 획 : (국내) 인천-서산간 등 10개 구간 1,420㎞ (검토중)
  (국제) 한-중, 한-괌 등 5개 구간 14,331㎞

3. 개정내용(중고선박 도입기준 완화)

o 법원경락 외국중고선박도 수출입별도공고에 따라 예외없이 사업주무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토록 근거를 명시

-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 제1-3조 제2항 제2호 개정

  2. 별표 1-3에 게기한 선박(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경락된 외국중고선박 포함)중 사업주무부처장의 수입추천을 얻은 품목

o 공해조업 편의국적어선으로 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하는철강어선은 수입다변화품목 적용을 제외

-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 제1-3조 제3항은 단서 신설

o 편의국적어선(철강어선) 수입시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 예외 인정(편의국적어선 도입은 국제협정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인점과 최근 원양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 수출입별도공고 부칙 개정

o 중고선박의 도입기준 완화

- 수출입별도공고 별표1-3 개정

품 목	현행도입기준	개 정 (안)	비 고
o 철강어선	- 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으로서 3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	- .... 200G/T 이상, ...	o 선령 완화
	< 신 설 >	- FAO의 공해상 조업규제대상 어선으로서 '93.12.31 이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편의국적어선임을 수산청장이 확인한 것(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	o 편의국적어선에 대해 공해상 조업규제에 대비 국적취특키 위해 중고선도입기준 완화
o 특수선박 HS 8905 해당품목중 다음의 것	- 준설선 - 기중기선 - 부선거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소방선(화재진압용의 것) - 해난구조선(해난구조용의 것) - 공작선(해저케이블 설치·유지보수용과 케이칼선박 수리용의 것) - 기타(오염방제용의 것)	┐ 공공목적수행을 위해 특수선박 도입대상 추가 │ │ │ │ ┘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40호

수출입별도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및 제1993-12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4년 4월 15일
상공자원부 장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1-2조(중고품의 수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중고품의 수출) 중고품은 수출입공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승인 할 수 있다. 단, HS 8901에 해당하는 중고선박은 자동적으로 수출승인할 수 있으며 HS 8902에 해당하는 중고어선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반입한 건설기자재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중고품의 수입)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에서 용역,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투입한 기자재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은 물품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해외건설업체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수입필요성을 확인한 물품중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것.
   단, 수입된 장비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나. 별표 1-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품

1) (현행과 같음)

2) 해외건설업 면허의 자진반납 또는 취소로 완전 철수하는 업체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한 기자재로서 건설부장관이 동 사실을 확인한 물품. 단, 대리 시공완료후 부도업체로부터 인수한 물품 또는 흡수합병되거나 인수된 업체의 소유물품은 수입승인 대사에서 제외하며 수입된 기자재중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별표 1-2에 게기한 품목중 해외건설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기자재로서 건설부장관이 평화의 댐 건설에 소요되는 장비임을 확인한 물품. 단, 수입된 장비중 사용불가능한 장비는 멸각처리하고, 잔여장비는 평화의 댐 건설에 사용하거나 국방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건설기자재로서 해외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한 것임을 건설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단, 수입된 장비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부 칙('94. 4. 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40호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4년 4월 15일

상공자원부 장관

수출입별도공고중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중고품의 수출입

제1-1조(목적) 이 장은 수출입공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품(선박의 경우는 선령 1년 이상의 것으로서 운항실적이 있는 선박)에 대한 수출승인 및 수입승인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고품의 수출) 중고품은 수출입공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승인할 수 있다. HS 8901에 해당하는 중고선박은 자동적으로 수출승인할 수 있으며 HS 8902에 해당하는 중고어선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제1-3조 제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반입한 건설기자재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중고품의 수입)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중고품 자체가 HS 10단위 독립세번으로 별도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단, HS 6309에 해당하는 품목은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고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용역,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투입한 기자재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은 물품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해외건설업자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수입필요성을 확인한 물품중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것. 단, 수입된 장비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나. 별표 1-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품

1) 해외건설사업용으로 3년이상 사용된 것임을 건설부장관이 확인하고 수입후 농림수산부장관이 간척농지 개발용으로 사용할 거임을 확인한 물품

2) 해외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완전 철수하는 업체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한 기자재로서 건설부장관이 동 사실을 확인한 물품. 단, 대리 시공완료후 부도업체로부터 인수한 물품 또는 흡수합병되거나 인수된 업체의 소유물품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입된 기자재중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별표 1-2에 게기한 품목중 해외건설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기자재로서 건설부장관이 평화의 댐 건설에 소요되는 장비임을 확인한 물품. 단, 수입된 장비는 평화의 댐 건설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완료후에는 멸각처리하거나 국방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건설기자재로서 해외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한 것임을 건설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단, 수입된 장비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별표 1-3에 게기한 선박중 사업주무부처장의 수입추천을 얻은 물품

3. 해외합작 사업용으로 수산청장의 어선 양도허가를 받아 현물출자한 우리나라국적어선중 수산청장의 수입추천을 얻은 물품

4. 별표 1-4에 게기한 기계류 및 산업설비중 국산공급이 불가능 한 품목(단, 금형은 예외로 한다) 또는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따라 수입승인(또는 추천)을 얻은 물품

가. 금형류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정밀 전자계측기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전기기기류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공작기계는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장, 기타 기계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자, 기타 기계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의 수입추천. 다만, 신청기계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각 관련 단체의 임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 수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을 추천할 수 있다.

나. 산업설비(본선인도가격으로 미화 30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 또는 추천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품이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공고상의 심한 입초국(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 부터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HS 8901 10 3000 해당품목중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와 HS 8901 90 해당품목중 일반화물선(HS 8901 90 1010) 및 벌크선(HS 8901 90 1020)은 제외한다.

④제2항 제4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술 또는 연구개발기술이 함께 이전되는 일관생산설비의 경우에는 전체설비중 일부가 국산가능품목 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되어도 동 설비의 생산공정, 기술성 및 생산성등을 고려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수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수입승인 할 수 있다.

제1-4조(구비서류) 제1-3조 제2항에 해당되는 중고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수입추천기관장에게 수입승인(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추천) 신청서 6부(임대차수출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과닐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무상기증등의 경우에는 당해사실 입증서류)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1부(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리스계약서 1부(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선박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크기, 조선자, 진수일(준공일)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에 한한다)
7. 카다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8. 기타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수입추천요령의 공고) 제1-3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한 수입추천기관의 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 수입추천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통보) ①제1-3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한 수입추천기관의 장은 매월별, 매분기별 수입추천 실적을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서식에 의해 매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수입추천기관의 장은 수입추천후 추천내용(수입추천서 사본 첨부)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및 벼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94. 4. 15)

① (시해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품목은 이 개정고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중고선박 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용으로 중고선박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를 이행한 분에 한하여 수입추천 (승인) 할 수 있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무부처장의 수입필요성 및 실수요자 확인을 받은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승인) 할 수 있다.

부 칙('93. 12. 23)

① (시해일) 이 고시는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4. 15)

① (시해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제1-3조 제2항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 기자재)

H S	품 목
8429	기계 구동식의 로우드 로울러
8413	액체 펌프와 버켓식·체인식·스크루식·밴드식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액체 엘리베이터
8414	공기압축기
8425 8426 8428	ㄱ 리프트·호이스트·원치·크레인·가반식 크레인·잭·폴리태클· ㅣ벨트·컨베이어 텔레페릭 기타 이와 유사한 권양용·하역용·적하용 ㄴ 또는 양하용의 기계 및 텔퍼와 콘베이어
8429 8430	ㄱ 메카니컬셔블·절단기·굴착기·스크레이퍼어·레벨러어·불도우저 ㄴ 기타의 굴착용 지균용·탬핑용·천공용 또는 채굴용의 기계. 제설기와 항타기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 및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교상의 토양·석·광석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처리용에 한함), 조괴기·형입기 및 성형기(부장 또는 교상의 고체 광물연료·세라믹·페스트·시멘트·석고 기타 광물성 재료의 처리용에 한함) 및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8479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함)
8701	트랙터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수용도 자동차
8904	터그보트
8905	기타 특수선박 및 작업대
8906	바지선

별표 1-2 (제1-3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기자재)

H S	품 목	규 격
8414	공기압축기	4.5㎥/분 이상
8426	크롤라 크레인	45톤 이상
	크리타 크레인	24인치 이상
8429	모터그레이더	1피트 이상
	로울러	10톤 이상
	불도저	27톤 이상
	굴삭기	2㎥ 이상
	로우더	3.5㎥ 이상
8474	콘크리트 뱃칭 프랜트	90㎥/Hr 이상
	크롤라드릴	4.5톤 이상
	파석기, 스크린프랜트	200톤/Hr 이상
	드릴링 머신	Φ100㎜ - Φ1,000㎜
8479	그라우팅기	30 - 50ℓ/분
	아스팔트 프랜트	120톤/Hr 이상
	아스팔트 휘니셔	4 - 12m
8701	트랙타	30 - 60톤
8704	시멘트 운반차	30 - 50톤
	물차, 덤프트럭	30톤 이상
8705	콘크리트 펌프카	50㎥/Hr 이상
	아스팔트 살포차	6,000㎥ℓ 이상
	타이어크레인, 유압크레인	50톤 이상
8716	트레일러	30 - 60톤

별표 1-3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1. HS 8901 10 3000 해당품목중 1,000G/T 이상, 선령 15년 이하의 카훼리
2. HS 8901 20 해당품목중 1,0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 (단, 폐기물 운반선은 자항능력을 갖춘 것으로서 500G/T 이상의 것)
3. HS 8901 30 해당품목중 1,0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
4. HS8901 90 해당품목중 1,0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단, HS 8901 90 1010 일반화물선중 철강재운반선은 선령 및 톤수의 제한이 없으며, 부선은 제외)
5. HS 8902 해당품목중 다음의 것
   - o 철강어선(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으로서 3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
   - o 냉동운반선(원양어업용으로서 4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의 것)
6. HS 8904 해당품목중 선박 이·접안용 또는 선박구난용으로서 선령 10년 이하인 예인선(단, 국내건조 연계용에 한함)
7. HS 8905 해당품목중 다음의 것
   - o 준설선(펌프식으로서 준설펌프 구동엔진 4,000마력 이상의 것)
   - o 기중기선(선박 구난용 또는 항만공사용의 것)
   - o 부선거(선박개조 또는 수리용의 것)

별표 1-4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류 및 산업설비)

1. HS 제82류 - 제90류의 것으로서 다음의 것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의 제조용 설비(치구를 포함한다)

단, HS 847 90 2000에 해당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2) 부두, 항만시설 공사용으로서 다음의 것. 단, 수입된 장비는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o HS 8426 해당품목중 무한궤도식 크레인(75톤 이상의 것)

o HS 8705 해당품목중 기중기차(100톤 이상의 것)

3) 기타의 품목으로서 다음의 것

o HS 8425 해당품목중 공장건설용의 잭과 호이스트(양하능력 500톤 이상의 것)

o HS 8604 해당품목중 철도 또는 궤도의 유지 또는 보수용의 차량

o HS 8471 해당품목중 중형 및 대형의 컴퓨터 본체와 그 주변기기

o HS 8430 31, 8430 39 해당품목중 전단면 터널굴착기(TBM)

2. 기계류·부품·소재 국산개발대상품목 또는 공업기반기술 개발대상품목중 개발을 위한 견본품

3. 수입된 기계류의 정비 또는 재생을 위하여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한 주요 부품

< 별지 1-1호 서식 >

중고품 수입추천 실적보고(　　월분)

o 총괄표

(단위 : $)

전 월 누 계		당　　월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o 추천내역

(단위 : $)

추천일자	실수요자	HS	품명	수량	금액	품목별	주생산품	거래형태	국가

※ 품 목 별 : 일반기계, 인쇄기, 공작기계, 금형, 컴퓨터, 건설장비, 전기기기

※ 주생산품 :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섬유류, 금속, 기계, 건설장비 선박, 전자, 전기, 생활용품, 기타

※ 거래형태 : 일반, 임대차수입(유상, 무상), 기타

< 별지 1-2호 서식 >

중고품 수입추천 실적보고(/4 분기)

1. 총괄표

(단위 : $)

전 분 기 누 계		당 분 기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품목별

(단위 : $)

일반기계	인쇄기	전기기기	공작기계	금형	컴퓨터	건설장비	계

3. 주요국가별

(단위 : $)

일 본	미 국	구 주	기 타	계

4. 거래형태별

(단위 : $)

일반거래	임대차 수입		기 중	기 타	계
	유 상	무 상			

수출입별도공고중 중고품 수출입요령 개정(안)

1. 개정이유

o '94. 3. 18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에서 해외건설장비의 수출입규제를 완화키로 합의

2. 개정내용

o 해외에서 수입된 중고건설장비에 대한 재수출 전면 허용
(수출입별도공고 제1-2조)

o 해외소재 중고건설장비중 국산장비에 대한 수입 허용
(동 공고 제1-3조 제1항 라목 신설)

※ 해외소재 중고 건설장비 보유현황('93. 12말 현재)

- 총 보유대수 : 17,216(운휴대수 : 6,657대)
- 국 산 장 비 : 약 2,490대(추정)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 개정 검토

1. 검토경위

o 민간단체(해외건설협회등)의 건의에 따라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EPB, 상공부, 건설부의 실무협의를 거쳐 '94. 3. 18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에서 해외 중고건설장비의 수출입규제를 완화키로 합의

※ 민간업계 건의 요지
- 해외에서 운휴대기중인 중고건설장비는 업체 자율적으로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국내반입후 해외현장에서 수요발생시 재반출 허용

o 동 합의결과에 따라 해외 중고건설장비의 수출입을 규정한 수출입별도공고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건설부도 '94.4.7일 동 공고의 개정을 요청해 옴)

2. 개정사유 및 검토의견

o 해외건설업체가 UR타결과 해외건설 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 중고건설장비의 반입 및 반출규제 완화가 필요시됨

o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의 합의결과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된 중고 건설장비에 대한 재수출과 해외소재 국산장비의 수입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3. 개정내용

o 해외에서 수입된 중고건설장비에 대한 재수출 전면 허용(수출입별도공고 제1-2조)
o 해외소재 중고건설장비중 국산장비에 대한 수입 허용(동 공고 제1-3조 제1항 라목 신설)

중고품 수입 요령

o 신품과는 달리 중고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수입규제하에 일부품목에 한해 수입허용(Positive System)

- 저가 노후화된 중고품 도입에 따른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

o 수입허용 대상 및 수입요령(수출입 별도공고)

구 분	허 용 대 상	수 입 요 령
해외에서 용역,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투입한 기자재	o 해외건설업체가 '85.12.31 이전 취득하여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국산공급이 불가한 25종 중기 o 해외건설용으로 3년간 사용후 간척농지 개발용으로 사용할 물품 o 해외건설업 철수업체가 '83.12.31 이전 취득하여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기자재 o 해외건설 사업에 3년이상 사용된 기자재로 평화의 댐 건설사업용 기자재	o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 - 건설부장관의 확인 - 건설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의 확인 - 건설부장관의 확인 - 건설부장관의 확인
선 박 (HS 8901, 8902, 8904, 8905)	o 카훼리(1,000G/T 이상, 선령15년 이하) o 탱커(1,0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 폐기물운반선은 500G/T 이상) o 냉장 또는 냉동선(1,000G/T 이상, 10년 이하 o 기타 화물선과 화객선(1,000G/T 이상, 10년 이하), 단 철강재운반선은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 o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선박	o 사업주무부처의 장 수입추천

구 분	허 용 대 상	수 입 요 령
	- 철강어선(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체용 원양어선 3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 - 냉동운반선(원양어업용으로 4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 o 예인선 (이·접안용, 선박구난용으로 선령 10년 이하) o 준설성, 기중기선, 부선거	
기계류 및 산업설비	o HS 82류~90류중 국산불가 품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의 제조용 설비 - 부두, 항만공사용 장비 (무한궤도식 크레인, 기중기차) - 공장건설용 잭과 호이스트 - 철도 또는 유지보수용 차량 - 중형 및 대형 컴퓨터 본체와 주변기기 - 전단면 터널굴착기(TBM) o 기계류·부품·소재 국산개발대상 품목 또는 공업기반기술 개발대상 품목중 개발을 위한 견본품 o 수입된 기계류의 정비 또는 재생을 위하여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한 주요 부품	o 품목별 소관단체장 추천 - 다만, 30만$(FOB) 이상 일관생산설비는 상공자원부장관 수입승인 또는 추천 ·금형류(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밀전자계측기(한국전자공업진흥협회) ·전기기기류(한국전기공업진흥협회) ·공작기계(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장) ·기타 기계류(한국기계공업진흥협회)

중고품 수입제도의 변천

o 초기(1981. 6. 30)

- “제한조치 품목 수출입 요령”(상공부 고시 제81-22)제정시 중고품 수출입 요령을 포함하여 규정(제3장)

  · 수입가능품목 : 해운, 수산, 조선, 전자 등 37개분야 시설 및 제품

  · 수입요령 : 주무부처장 및 소관 단체장이 수입 추천

o 1차 개정(1985. 4. 12) : 엄격 규제

- 개정배경 : 종전제도 운용의 방만성으로 인한 중고설비 도입 급증 및 무계획적인 중고설비 투자로 국내산업의 생산성 저하
- 주요골자 : 수입허용 대상의 대폭축소 및 추천업무의 상공부 일원화

o 2차 개정(1988. 9. 16) : 수입규제 소폭 완화

- 개정배경 : ’85년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의 애로등 중고품 수입의 엄격한 규제에 따른 불합리성 노정
- 주요골자 : 해외건설업체 유휴장비 반입허용 확대, 중고선박의 선종 및 규모의 현실화, 수입추천업무 일부 위탁

o 3차 개정(1990. 4. 10) : 수입규제 대폭 완화

- 개정배경 : 중고설비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업계의 시설투자 애로점증과 허용대상업종 및 용도제한에 대한 업계의 불만 증가
- 주요골자 : 제조용 설비 및 기계류 수입 허용범위 확대, 중고선 도입 기준확대 및 특수선박의 신규도입 허용, 기계류의 추천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o 4차 개정(1991. 12. 20) : 중고선박 수입허용범위 확대

- 개정배경 : 중고선박의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하고 업계 자금 부담을 경감
- 주요골자 : 중고선박 도입범위 확대(유조선, 유류제품운반선, 폐기물 운반선 등) 중·대형 컴퓨터 및 전단면굴착기(TBM) 도입 허용

o 5차 개정(1993. 4. 15) : 중고선박 수입제한 대폭완화

- 개정배경 : 중고선박 수입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적선 적취율 제고 및 연안운송의 활성화
- 주요골자
  - 중고선박 수입시 해운항만청장, 수산청장이 직접 수입추천(종전에는 실수요자 확인후 상공부장관이 수입 추천)
  - 도입가능 대상 선박규모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국내건조 연계조건 및 용도제한 폐지 등 중고선박 도입기준 대폭 완화
  - 수입을 불허하던 중고섬유기계(방직기계, 직조기등)에 대하여 업체의 설비투자 경비절감을 위해 국산불가의 경우 수입허용
  - 중고의류에 대한 수입제한(방모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중고의류만 수입허용)

o 제6차 개정('93. 12. 23 고시, '94. 1. 1 시행) : 중고선박 수입제한 완화

- 개정배경 : 국내외 취항중인 카훼리,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의 노후선박대체를 원활히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에 한해 수입선다변화 품목적용 제외, 중고 카훼리의 도입선령을 완화(10년 이하→15년 이하)
  - 중고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에 대해 수입선다변화 품목 적용하여(400톤 이상 중고 및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 수입을 허용)

Ⅲ- 6. 1995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보도자료

작 성 자	수입과장
전화번호	500-2384

중고선박 수입제한 완화

o 중고선박의 수입이 제한되던 순항선, 아스팔트운반선 등 10개 품목(船種)의 중고선박 수입이 허용되고 특수용도선박의 도입대상이 추가되며, 중고선 수입대상 船種制限이 완화되는 등 중고선박 수입에 따른 제한이 완화된다.

o 통상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요령)를 '95. 5. 22자로 개정·고시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o 금번 수출입별도공고의 개정은 해운산업 및 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선박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를 위해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관련부처의 요청을 반영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고선박 수입대상품목(船種) 확대

[신규로 중고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

- 순항선(선령, 톤수제한 없음)
- 아스팔트운반선(500G/T 이상, 선령제한 없음)
- 벌크선중 철강재운반선(선령, 톤수제한 없음)
-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선령, 톤수제한 없음)
-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의 예인선(선령 13년 이하, 톤수제한 없음)
- 작업대(항만공사용)
- 시추선(항만공사용)
- 원양어업대체용 어선(선령 20년 이하, 톤수제한 없음)
- 근해어업대체용 어선(선령 13년 이하, 톤수는 폐선되는 규모 이내)
- 活蘚漁(活貝類)운반선(선령 20년 이하, 톤수제한 없음)

[특수용도선박중 도입용도가 추가되는 선박]

- 기중기선(수상 양·하역용)
- 부선거(항만공사용)
- 기 타(파일항타용 또는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용)

- 중고선 도입대상 선령제한 완화
  - 탱커, 냉장·냉동선, 기타 화물선·화객선, 예인선 : 현행 10년 이하→13년 이하
  - 철강어선중 원양어선 : 현행 10년 이하→20년 이하
  - 철강어선중 근해어선 : 현행 10년 이하→13년 이하

- 카훼리, 철강어선을 중고선으로 수입시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을 제외함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수입가능(카훼리의 국제항로 다각화 운항과 어선도입의 원활화)

- 중고선 수입시 國內建造 또는 新造連繫用으로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국내 건조(또는 신조)를 이행한 분에 한하여 수입추천하는 대상선박을 예인선에만 적용하고, 카훼리 및 참치선망어선은 제외(해외 및 원양업계의 경영압박을 감안)

-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건설기계중 무한궤도식 크레인(75톤이상), 기중기차(100톤 이상), 전단면터널굴착기의 수입추천기관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로 변경

통 상 산 업 부

우) 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02)503-9441 / 전송 503-9496,3142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 일부 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중고품수출입,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제1994-40호 및 제1994-192호)중 일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한국무역협회장

제목 일간무역 게재 의뢰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중 개정·고시를 일간무역에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2부. 끝.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중 개정·고시 송부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중 개정·고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으시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1부. 끝.

// 계 속 //

우) 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02)503-9441 / 전송 503-9496,3142

수신처 건설교통부장관, 관세청장, 각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각외국환은행장,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장,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철강협회장, 한국조선공업협회장,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해외건설협회장, 대한중기협회장, 한국원양어업협회장,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장, 대한선주협회장

(제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중 개정·고시 송부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중 개정·고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수출입에 따른 확이(신고) 및 추천업무 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수입필요성 확인 및 추천후 추천내용(수입추천서 사본 첨부)을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3부. 끝.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신처 해양항만청장, 수산청장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수출입별도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제1994-40호 및 제1994-102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5년 5월 22일

통상산업부 장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형류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정밀전자계측기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전기기기류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공작기계는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장, 무한궤도식 크레인(75톤 이상의 것), 기중기차(100톤 이상의 것) 및 전단면 터널굴착기(TBM)는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장, 기타 기계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의 수입추천. 다만, 신청 기계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각 관련단체의 임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 수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공고상의 심한 입초국(원산지 기준)으로 부터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HS 8901 10 해당품목중 카훼리(HS 8901 10 3000)와 HS 8901 90 해당품목중 일반화물선(HS8901 90 1010) 및 벌크선(HS 8901 90 1020)과 HS 8902 해당품목중 철강어선(HS 8902 00 1010)으로서 별표103 제6호에 의거 수입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중고품의 수출입)중 “상공자원부장관”은 “통상산업자원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95. 5.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고선박 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용으로 중고선박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용으로 중고선박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를 이행한 분에 한하여 수입추천(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3 제7호 HS 8904 예인선에 한하며, 기타 중고선박 수입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3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HS 8901 10 1000 해당품목의 것
2. (현행 1항과 같음)
3. HS 8901 20 해당품목중 1,000G/T 이상, 선령 13년 이하의 것 (단, 폐기물 운반선과 아스팔트운반선은 자항능력을 갖춘 것으로서 500G/T 이상의 것으로 선령제한 없음)
4. HS 8901 30 해당품목중 1,000G/T 이상, 선령 13년 이하의 것
5. HS8901 90 해당품목중 1,000G/T 이상, 선령 13년 이하의 것(단, HS 8901 90 1010 일반화물선 및 HS 8901 90 1020 벌크선중 철강재운반선과 HS 8901 90 1090 기타중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은 선령 및 톤수의 제한이 없으며, 기타의 부선은 제외)
6. HS 8902 해당품목중 다음의 것
   - o HS 8902 00 1010(철강어선)중
     - 기존의 원양어업 허가어선에 대한 대체용 어선으로서 선령 20년 이하의 것
     - 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으로서 선령 20년 이하의 것
     -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대상 어선으로서 '93.12.31 이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편의국적어선임을 수산청장이 확인한 것(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
     - 근해어업구조 조정을 위하여 2척 이상의 근해어업 허가어선을 폐선 또는 수출하고 폐선된 허가업종중 1척으로 대체k는 근해어선으로서 선령 13년 이하의 것(톤수는 폐선되는 톤수의 규모이내). 다만,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동일업종의 허가어선 2척을 폐선 또는 수출한 경우에 한한다.
   - o HS 8902 00 2090(기타)중 냉동운반선(원양어업용) 및 활선어(활패류 포함) 운반선으로서 선령 20년 이하의 것

7. HS 8904 해당품목중 선박 이·접안용 및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의 예인용 또는 선박구난용으로서 선령 13년 이하의 예인선(단, 국내건조 연계용에 한함)

8. HS 8905 해당품목중 다음의 것

- o 준설선(현행과 같음)
- o 기중기선(선박구난용, 항만공사용 또는 수상 양·양하역용의 것)
- o 부선거(선박개조 또는 수리용, 항만공사용의 것)
- o 작업대(항만공사용의 것)
- o 소방선(현행과 같음)
- o 해난구조선(현행과 같음)
- o 공작선(현행과 같음)
- o 시추선(항만공사용의 것)
- o 기타(오염방제용, 파일항타용 또는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 개정내용 요약

1. 근　　거 : 수출입공고 제3조 제2항

2. 개정사유 : 해운산업등 관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선박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를 위해 해운항만청, 수산청등 관련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중고품 수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

3. 개정내용

o 중고선박 도입대상품목(船種) 확대

- 신규허용 : 순항헌, 아스팔트운반선, 벌크선중 철강재운반선,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부선 및 동부선의 예인선, 작업대 및 시추선(항만공사용), 원양어업대체용 어선, 근해어업대체용 어선, 활선어(활패류) 운반선
- 특수용도선박 도입대상 추가 : 기중기선(수상 양하역용), 부선거(항만공사용), 기타(파일항타용 또는 콘크리트배치플랜트용)

o 중고선 도입대상 선령제한 완화

- 탱커, 냉장·냉동선, 기타화물선·화객선, 예인선 : 현행 10년 이하→13년 이하
- 철강어선중 원양어선 : 현행 10년 이하→20년 이하
- 철강어선중 근해어선 : 현행 10년 이하→13년 이하

o 중고선 수입시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 제외 : 카훼리, 철강어선

o 중고선 수입시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용으로 수입한 자에 대하여 국내건조(신조)연계 이행분에 한하여 수입추천하는 대상선박을 예인선에 한하고, 카훼리 및 참치선망어선은 제외

o 중고건설기계 수입추천기관 변경 : 한국기계공업진흥회→한국건설기계고업협회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 개정 검토

1. 검토배경

o 기업화동규제 완화 및 관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 수출입요령)를 합리적으로 개정키 위해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

o 해운항만청,수산청 및 관련단체의 개정요청에 따라 관계기관(기초공업국 등)과 협의하여 수출입별도공고의 개정 추진

2. 개정요청 및 검토의견

가. 개정요청 내용

[해운항만청]

o 중고선박 도입선령 완화 : 현행 10년 이하→13년 이하

- 대상선박 : 탱커(HS 8901 20), 냉장·냉동선(HS 8901 30), 기타 화물선·화객선(HS 8901 90), 예인선(HS 8904)

(사 유) : 중고선박 도입대상 범위 확대와 국내선사에 대상선박 확보의 융통성 부여 및 일본선주의 중고선 가격횡포 제거

o 중고선 도입대상 품목(선종) 추가

- 순항선(HS 8901 10 1000)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

(사 유) : 해상운송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Cruise 사업을 위한 중고선도입 필요(사업 초기단계에는 신조선투입은 과다한 투자비와 건조기간의 장시간 소요로 중고선 확보가 불가피하며, 신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및 위험부담 완화차원에서 초기단계는 선령·규모제한 없이 허용)

- 아스팔트 운반선(HS 8901 20중) : 자항능력을 갖춘것으로서 500G/T 이상, 선령 제한 없음

(사 유) : 육상교통난에 따른 육상수송물류비용의 과다로 해상수송으로 전환을 위해 아스팔트 수송선박의 확보 필요(특수 가열장치가 필요한 선박)

- 벌크선(HS 8901 90 1020) 중 철강재운반선과 기타 화물선(HS8901 90 1090)중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선령·톤수제한 없음) 및 HS 8904 해당품목중 컨테이너 해사하역·운송용 부선의 예인선 추가

(사 유) : ·철강재운반선의 경우 해운관행대로 현실화하기 위해 벌크선 중 철강재 운반선도 중고선도입 허용

·고베항 지진피해로 부산항에 유입되는 컨테이너 환적물량의 해상하역과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한 부선과 동 부선의 예인선도입 필요

- HS 8905 중 특수용도선 도입대상 품목 신설 및 추가

·기중기선(해상하역용 및 제조업체의 중량구조물 양·하역용 추가)

·부선거(항만공사용 추가)

·작업대(항만공사용 신설)

·시추선(항만공사용 신설)

·기 타(파일항타용 또는 콘크리트배치플랜트용 추가)

(사 유) : 항만개발의 대형화 및 해상구조물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항만공사에 필요한 특수선박의 국내 절대부족으로 동 선박의 수입 필요

o 카훼리(5,000G/T 이상)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 배제 및 국내건조조건 삭제

(삭 유) : 카훼리의 국제항로를 다각화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객욕구 충족을 위한 국내연안 카훼리의 대형화를 위해 선박확보가 용이토록 다변화적용 제외

[수산청]

o 철강어선(HS 8902 00 1010) 도입허용 확대 및 선령·톤수제한 완화

- 원양어업허가 어선의 대체용 중고어선 도입 허용(선령 20년 이하, 톤수제한 없음)
- 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의 선령 완화(10년 이하→20년 이하) 및 톤수제한(현행 200G/T 이상) 폐지
- 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해 2척 이상의 근해어업허가어선을 폐선 또는 수출하고 폐선된 어선중 1척으로 대체하는 근해어선의 중고선 도입 허용(선령 13년 이하, 톤수는 폐선되는 톤수규모이내). 다만, 트롤어업, 기선저인망어업중 대형어업은 동일업종의 허가어선 2척을 폐선 또는 수출한 경우에 한함

(사 유) : 원양어선의 원활한 수급과 근해어업구조 조정의 효율적인 추진등으로 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중고어선 도입규제를 완화

o 기타 어선(HS 8901 00 2090)중 원양어업용 냉동운반선의 톤수제한(현행 400G/T 이상) 폐지 선령제한 완화(10년 이하→20년 이하), 활선어(활패류 포함) 운반선 도입 허용(선령 20년 이하, 톤수제한 없음)

(사 유) : 원양어업의 경쟁력강화와 양식어업용 종묘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활어패류 수송선박의 도입 허용

o 중고 철강어선(냉동운반선 포함)의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 배제

(사 유) : 어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중고어선 도입이 불가피함

o 참치선망어선 수입시 신조연계조건 삭제(부칙 개정)

(사 유) : 원양어업계의 생산성감소 및 조업지 연안국의 조업규제강화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조투입은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부실을 초래하므로 동 조건 삭제

[기계공업진흥회]

o 신청기계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시에만 수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토록 함

- 현행 : 2개 이상의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각 관련단체 임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 수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사 유)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계공업진흥회에서 자체 처리하고 판단이 곤라하거나 이의신청시 등 필요시에만 심의 추천토록 함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o 건설기계중 무한궤도식 크레인(75톤 이상의 것), 기중기차(100톤 이상의 것), 전단면 터널굴착기(TBM)의 수입추천기관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장으로 변경(제1-3조 제2항 제4호 가목)

(사 유) : 건설기계관련 제작업체 단체인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설립('94.9.26)에 따라 중고건설기계 수입추천기관을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로 이관

나. 검토의견

[자동차조선과]

o 중고선박 수입시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 이행조건 수입추천 폐지(참치선 망어선, 카훼리)하되 예인선은 존치

o 특수선박중 기중기선 해상하역용 추가요청은 선박제조업체의 구조물 양·하역용을 포함하여 수상 양·하역용으로 함

o 상기사항 이외에는 해운항만청, 수산청의 개정요청에 대해 이견 없음

[산업기계과]

o 건설기계(무한궤도식 크레인, 기중기차, 전단면 터널굵착기)의 수입추천기관을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로 이양함이 바람직

[종합의견]

o 중고선박의 수입제한 완화는 해운산업 및 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선박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시되므로 해운항만청 및 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기초공업국(자동차조선과)의 의견을 반영 중고선도입기준 완화

o 건설기계(무한궤도식 크레인, 기중기차, 전단면 터널굴착기)의 수입추천기관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94. 9 설립된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로 변경

o 신청기계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각 관련 단체임직원으로 구성된 수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입하던 것을 필요시에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3. 개정 내용

o 무한궤도식 크레인(75톤 이상의 것), 기중기차(100톤 이상의 것) 및 전단면 터널굴착기의 수입추천기관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장으로 변경(제1-3조 제2항 제4호 가목 개정)

o 신청기계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시에만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수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제2항 제4호 가목 단서 개정)

o 카훼리(HS 8901 10 3000) 및 철강어선(HS 8902 00 1010)을 중고선으로 수입시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 제외(제1-3조 제3항 단서 개정)

o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용으로 중고선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국내건조 또는 신조연계 이행분에 한하여 수입 추천하는 대상선박을 예인선에 한하며, 기타 선박은 제외(부칙 제2조 개정)

o 중고선박의 도입기준 완화(별표 1-3 개정)

품목(선종)	현 행	개 정(안)	비 고
- 순항선	< 신 설 >	- HS 8901 10 1000 해당품목의 것	・해상운송사업 다각화를 위한 Cruise사업용 중고선도입 허용
- 탱커 (HS 8901 20)	- 1,000G/T 이상, 선령 13년 이하	- 1,000G/T 이상, 선령 13년 이하	・선령 완화
- 아스팔트운반선 (HS 8901 20)	< 신 설 >	- 자항능력을 갖춘것으로서 500G/T 이상, 선령제한 없음	・중고선도입 대상품목 추가

품목(선종)	현 행	개 정(안)	비 고
- 냉장·냉동선 (HS 8901 30)	- 1,0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	- 1,000G/T 이상, 선령 13년 이하	·선령 완화
- 기타 화물선·화객선 (HS 8901 90)	- 1,0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	- 1,000G/T 이상, 선령 13년 이하	·선령 완화
- 벌크선, 기타	< 신 설 >	- HS8901 90 1020 벌크선중 철강재운반선과 HS 8901 90 1090 기타 중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중 부선은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음	·중고선도입 대상품목 추가
- 철강어선 (HS 8902 00 1010)	< 신 설>		
		- 기존 원양어업허가 어선에 대한 대체용 어선으로 선령 20년 이하의 것	·중고어선 도입 대상 확대 허용
		- .... 으로서 선령 20년 이하	·선령완화 및 톤수제한 폐지
		- 근해어업구조 조정을 위해 2척 이상의 근해어업 허가어선을 폐선 또는 수출하고 폐선된 허가업종중 1척으로 대체하는 어선으로 선령 13년 이하의 것. 다만,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동일업종의 허가어선 2척을 폐선 또는 수출한 경우에 한함	·중고어선 도입 대상 확대 허용

품목(선종)	현 행	개 정(안)	비 고
- 기타 어선 (HS 8902 00 2090)	- 냉동운반선(원양어업용으로 400G/T 이상, 선령 10년 이하)	- 냉동운반선(원양어업용) 및 활선어(활패류 포함)운반선으로서 선령 20년 이하의 것	·원양어업용 냉동운반선 톤수제한 폐지 및 선령 완화 ·활선어운반서 도입 허용
- 예인선 (HS 8904)	- 선박 이·접안용 또는 선박구난용으로서 선령 10년 이하(국내건조 연계용에 한함)	- 선박 이·접안용 및 컨테이너 해상하역·운송용 부선의 예인용 또는 선박구난용으로 선령 13년 이하 예인선	·예인선 도입대상 품목 확대 및
- 특수기능선박 (HS 8905)	- 기중기선(선박구난용 또는 항만공사용의 것)	- 기중기선(선박구난용, 항만공사용 또는 수상양·하역용의 것	·해상하역용 및 제조업체의 중량구조물 양·하역용 추가
	- 부선거(선박개조 또는 수리용)	- 부선거(선박개조 또는 수리용, 항만공사용의 것)	·항만공사용으로 도입 허용
	< 신 설 >	- 작업대 및 시추선 (항만공사용의 것)	·항만공사용으로 도입 허용
	- 기타(오염방제용의 것)	- 기타(오염방제용, 파일항타용 또는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용의 것)	·파일항타용 또는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용 도입허용 추가)

중고품 수입제도 전면 개편

- 현행 : “원칙금지, 부분허용”에서 “원칙허용, 부분규제”로 -

o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어 오던 중고품 수입이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자유화된다. 통상산업부는 ‘포지티브 방식(수입금지를 원칙적으로 하고 수입가능한 품목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고품 수입제도를 ‘네가티브방식(수입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규제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o 통상산업부가 금번 중고품 수입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은 내년도 WTO의 우리나라에 대한 TPRM실시 등에 따라 우리의 현행 무역제도를 국제규범에 보다 합치토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아울러 기업의 시설투자 애로 타개 및 행정규제 완화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네가티브 리스트를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o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상산업부고시인 『수출입 별도공고』중 중고품 수입제도의 개편내용을 보면, 국민보건, 위생, 산업안전 및 환경 등 국제규범상의 기준에 맞춰 중고품으로서 규제되어야 할 230개 품목(HS 6단위 및 10단위 기준)이 네가티브 리스트(수입규제 대상품목)에 선정되었는데, 이중 기계류 등 161개 품목은 항만청, 수산청 등 관련부처 또는 업종별 관련단체가 정하는 추천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추천을 통하여 수입이 가능하며, 차량 및 차량부분품중 69개 품목은 종전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다.

o 이번 제도개편으로 종전과 달리 중고품도 신품과 같이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네가티브 리스트 대상 중고품의 경우에는 신품에 적용되는 수입절차에 덧붙여, 수출입별도공고가 정한 요건들을 추가로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 첨부 >

1. 현행 중고품 수입제도

o 근 거 :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상산업부 고시 『수출입별도공고』

o 내 용 : 중고품에 대해서는 신품과 달리 전반적 수입금지하에 다음의 품목에 한하여, 관련기관의 추천(또는 확인)을 얻어 수입허용(Positive System)되어 왔음

- HS 84, 87류 등의 품목중 해외건설현장에 쓰인 기자재
- HS 8901, 8902, 8904, 8905류 선박중 선령, 용도 등이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선박
- HS 82류~90류중 국산공급이 불가능한 실수요자의 제조설비 등 기계류 및 산업설비

2. 금번 제도개편에 따른 업종별 수입규제 대상품목(Negative List)

업 종 별	대 상 품 목	추 천 기 관
수입추천품목	161개 품목	
중 고 의 류	1개 품목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
일 반 기 계	원자로, 증기터빈, 석유화학용 압력용기, 직기 등 9개 품목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공 작 기 계	금속압연기, 절삭가공용 선반, 단조기, 연삭기 등 50개 품목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건 설 기 계	크레인, 로드로울러, 쇄석기 등 22개 품목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농 기 계	이식기, 트랙터 등 5개 품목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금 형	사출식(또는 압축식) 주형 1개 품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함
선박(선령20년 초과의 것 금지)	순항선, 화물선, 탱커, 어선 등 6개 품목	수산청, 항만청
조선기자재	선박용 보일러, 터빈, 열교환기 등 28개 품목	한국조선기가재공업 협동조합
냉 동 기 계	74.6킬로와트이상의 기체압축기 2개 품목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전 기 기 기	노와 오븐, 금속의 저항용접기기 4개 품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광 학 기 기	전자식 복사기, 사진용 현상기기 2개 품목	한국광학기기협회
차 량	무한궤도식 트랙터, 농업용 살포차 등 11개 품목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수입금지품목 (차 량)	승용차, 화물차, 특수용도차, 오토바이 등 완성차량 및 기어박스, 구동차축, 방열기, 소음기 등 차량부분품 69개 품목	
총 계	230개 품목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23호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5년 12월 29일

통상산업부 장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 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중고품의 수출입

제1-1조(목적) 이 장은 수출입공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출입요령을 정한 중고품의 범위 및 이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승인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장이 적용되는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출의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수출요령을 정한 품목
2. 수입의 경우에는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

제1-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①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또는 수입승인하고자 하는 중고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공고상에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2.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수입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입공고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2. 수출입공고 제6조 제2항 1호, 2호 3호 및 5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3. 수출입공고 제7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수입

제1-4조(중고품의 수출) HS 8902에 해당하는 중고어선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반입한 건설기자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수출할 수 있다.

제1-5조(중고품의 수입)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며, 산업설비(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구비서류) 제1-5조의 수입요령에 의해 중고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수입추천기관장에게 수입승인(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추천)신청서 6부(임대차수출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무상기증등의 경우에는 당해사실 입증서류)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1부(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리스계약서 1부(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선박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크기, 조선자, 진수일(준공일)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에 한한다)
7. 카다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1-7조(수입추천요령의 공고) 별표 1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추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월별, 매분기별 수입추천 실적을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서식에 의해 매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장의 별표 9-1(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추장(HS 2103.90.1030)의 수입제한 실시기간 “1995.12.31까지”를 “1999.12.31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종전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품목은 이 개정고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수입제한승인(금지) 품목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6309. 00	00. 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1.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315 82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	┐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316. 00	00. 00	닻	① 선박용의 것
8401	10. 00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10	00. 00	원자로	┐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
20	00. 0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 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30	00. 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체(카아트리지)	│ 있음. ① 산업용 발전설비의 것
40	00. 00	원자료의 부분품	┘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1		증기발생보일러	
11	00. 00	증기발생량 매시 45톤초과의 수관보일러	┐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12	00. 00	증기발생량 매시 45톤이하의 수관보일러	│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9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 ① 선박용의 것 ┘
8406		증기터빈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8		기타터빈	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1		출력 40메가와트 초과의 것	① 산업용 발전설비의 것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1	00. 00	아우보오드 모터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99		기 타	
	30.	선박용의 것	
	30. 10	300키로와트이하 내연기관의 것	┐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30. 30	2,000킬로와트초과 내연기관의 것	┘ 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1		수력터빈과 수차	
		동력 1,000키로와트 초과	┐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
12	00. 00	10,000키로와트 이하의 것	│ 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13	00. 00	동력 10,000키로와트 초과의 것	┘ 수 있음 ① 산업용 발전설비의 것
8411		터보제트·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8		기타의 가스터빈	
81		출력 5,000킬로와트 이하의 것	
	90.	기 타	
	90. 90	기 타	
82		출력 5,000킬로와트 초과의 것	┐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
	90.	기 타	│ 흡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90. 90	기 타	┘ 수 있음 ① 산업용 발전설비의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30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매체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30. 00	선박의 것	1. 한국조선기자재고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13. 40	00. 00	콘크리트 펌프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건설기계용의 것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기 타	
	92.	기타의 기체압축기	
	92. 20	사용동력 7.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의 것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냉동공조공 ㅣ 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 ㄴ 할 수 있음 ① 74.6킬로와트 이상의 것
	92. 30	사용동력 373킬로와트 이상의 것	
8419. 50	00. 00	열 교환기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바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419. 89	90. 9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석유화학용 압력용기
8421. 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90. 00	기 타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25. 1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 호이스트 또는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11		전동식의 것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이할 수 있음
8425. 3		기타의 윈치 및 캡스턴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31	00. 00	전동식의 것	ㄴ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39	00. 00	기 타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1		천정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교각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19	0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20	00. 00	타워크레인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
3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ㄴ 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① 권양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의 것
49	00. 00	기타(자주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9		기 타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00	선박의 데릭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27. 20	10.	포크리프트 트럭	
	10. 10	적재중량 3톤 이하의 것	┐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
	0. 20	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
8429. 1		불도저와 앵글도저	| 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
11		무한궤도식의 것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00. 00	그레이더와 레벨러어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우터 그레이더
40	20. 00	로드로울러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이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1		프론트 엔드 셔블로우더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로우더
52	10. 00	엑스카베이터	1. 한국건설기계고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0. 3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단면 터널굴착기(TBM)
31	00. 00	지주식의 것	
39	00. 00	기 타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30. 4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41		자주식의 것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9		기 타	
	10. 00	유압 브레이카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우러	
30	30. 00	이식기	1.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3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40	00. 00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ㄱ 1.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ㅣ 추천을 방아 수입할 수 있음 ㄴ
51	00. 00	수확·탈곡 겸용기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10		기계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43		인쇄기와 인쇄보조용 기계	
1		옵셋인쇄기계	
19	0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쉬이트식의 것
59	10. 00	직물날염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45. 30		합사기와 연사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			
	90. 0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사기
90	10. 00	정경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46		직기(직조기)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북직기(자동직기, 반자동직기) ② 무북직기(레피어식·그리퍼식·에어제트식·워터제트식·기타의 식)
30		폭 30센티미터초과의 직기(셔틀레스의 것)	
8447		편직기·스티치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기계 및 터프팅기계	
1		원형편기	
12	00. 00	실린더 직경 165밀리미터 초과의 것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47. 20		평형편기와 스티치 본딩기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횡편기
9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레이스기 ② 자수기 ③ 결망기
854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29	9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하송 사절, 차동송은 제외 ②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③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RPM 5,000이상의 것과 스캘럽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④ 오바록, 안전봉재봉기. 다만, RPM 10,000이상 또는 상하차등송은 제외 ⑤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 (사절 포함)
8454. 30		주조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10	00. 00	관 압연기	ㄱ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ㅣ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ㄴ
20	00. 00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22	00. 00	냉간 압연기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56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마 아크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30	00. 00	방전방식에 의한 것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57. 10	00. 00	머시닝 센터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1		수평선반	
1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19	00. 00	기 타	│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		기타의 선반	│
9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99	00. 00	기 타	┘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자기계(웨이타입 유니트 헤드 머시인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볼리·밀링·나선가공 또는 탭핑요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2		기타의 드릴링 머시인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2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9		기 타	│
3		기타의 볼링 밀링머시인	│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39	00. 00	기 타	│
40		기타의 볼링 머시인	│
5		무료형 밀링 머시인	│
5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59	00. 00	기 타	│
6		기타의 밀링 머시인	│
6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69		기 타	┘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60. 1		평면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1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19	00. 00	기 타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기타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
2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29		기 타	│
3		샤프닝 머시인(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한한다)	│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39	00. 00	기 타	│
40		호닝 머시인 또는 랩핑 머시인	┘
		플레이닝 머시인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8461. 10	00. 00	쉐이핑 머시인 또는 슬로팅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머시인	│
30	00. 00	부로칭 머시인	│
40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사상기	│
50	00. 00	톱기계 또는 절단기	┘
8462. 10		단조기·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햄머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타의 단조기(프레스 포함) ② 볼트, 넛트 훠머
2		굽힘기·접음기·교정기와 평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2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29	00. 00	기 타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39	00. 00	기 타	┘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62. 4		펀칭기와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1		수치제어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치제어식의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 49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9		기 타	
91		액압 프레스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9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계식프레스 ② 공압프레스
8463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10	00. 00	드로우 벤치(봉·관·프로우필·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20	00. 00	나사 전조기	
30	00. 00	선 가공기	
8465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무릐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10		다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65. 9		기 타	
91		톱기계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목재가공의 것
92		평삭기·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 방식에 의한 것에 한한다)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3 94 95 96		연삭기·샌딩기 또는 광택기 굽힘기 또는 조립기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스플리팅·스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 | 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 수 있음 | ① 목재 가공용의 것 ┘
8474. 20		파쇄기와 분쇄기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쇄석기
31	10. 00	배처 플랜트	┐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
32	10. 00	아스팔트 플랜트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75. 10	00. 0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쉬벌브(외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77. 10 20		사출 성형기 압출기	┐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을 가진 것에 한한다)	
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기계건설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아스팔트 피니셔
81	30. 00	권선기	┐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89	90. 50	코팅머신(도포기)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9	90. 2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9	90. 99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조립기 ② 삽입기 ③ 공급기
8480. 7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71	00. 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1.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83. 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90. 90	기 타	┐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40	90. 20	기어박스	┘ 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514. 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 추천을
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515. 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 추천을
3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 아크 용접기기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3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
8726. 10	00. 00	레이다 기기	┐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91		항해용 무선기기	|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92	00. 00	무선원격조절기기	┘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고,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 기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10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	┐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10. 00	배전반	┘ 협동조합의추천을 받아 수입
	90. 00	기 타	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20. 00	자동제어반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선박용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20	00. 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1. 수입할 수 없음
30	00. 00	무한궤도식 트랙터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10. 00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1. 수입할 수 없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01. 90	91. 10	농업용 트랙터(50마력미만의 것)	┐ 1.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91. 90	농업용 트랙터(기타)	┘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9. 00	기 타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 1. 수입할 수 없음
90	00. 00	기 타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10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21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것	
22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의 것	
23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 이하의 것	
24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의 것	
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31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의 것	
32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의 것	
33		실린더용량 2,500CC 초과의 것	
90		기 타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04		화물자동차	
10	00. 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1.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2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 1. 수입할 수 없음
22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
23		총중량 20톤 초과의 것	|
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
3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
32		총중량 5톤 초과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기 타	1. 수입할 수 없음
8705		특수용도차량. 다만, 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예 :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송차)	
10	00. 00	기중기차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00. 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 1. 수입할 수 없음
30	00. 00	소방차	┘
40	00. 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1.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05. 90	10. 10	농업용 살포차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9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아스팔트 살포차
	90. 10	구난차	┐ 1. 수입할 수 없음
	90. 20	도로청소차	|
	90. 30	이동공작차	┘
	90. 40	이동방송차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
	90. 50	이동진료차	1. 수입할 수 없음
	90. 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90. 70	제설차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9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콘크리트펌프트럭
8706. 00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1. 수입할 수 없음 | | |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 |
10	00. 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
90		기 타	┘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1. 수입할 수 없음 ┘
10	00. 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1	00. 00	안전벨트	
29		기 타	
3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31	00. 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39		기 타	
40	00. 00	기어박스	
50	00. 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00. 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70	00. 00	로우드 휘일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0	00. 00	서스펜션 쇼크 업소오바	
91	00. 00	방열기	
92	00. 00	소음기와 배기관	
93	00. 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94	00. 00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99		기 타	┘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영욕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포옴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1		차 량	
11	00. 00	전기식의 것	┐ 1. 수입할 수 없음
19	00. 00	기 타	
90	00. 00	부분품	┘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아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1. 수입할 수 없음
10		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20		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30		실린더용량 250CC 초과 500CC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0		실린더용량 800CC 초과 80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50		실린더용량 800CC 초과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90		기 타	
8713		신체장애자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와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 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90	00. 00	기 타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11	00. 00	안 장	
19	00. 00	기 타	
20	00. 00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것	
9		기 타	
91	00. 00	프레임과 포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92	00. 00	휘일 림과 스로우크	
93	00. 00	허브(코오스터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및 프리 휘일스프로켓 휘일	
94	00. 00	브레이크(코오스트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95	00. 00	안 장	
96	00. 00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99	00. 00	기 타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아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1. 수입할 수 없음
10		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20		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30		실린더용량 250CC 초과 500CC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0		실린더용량 500CC 초과 80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50		실린더용량 800CC 초과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90		기 타	
8713		신체장애자용 차량(모니터를 갖추었는지와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 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90	00. 00	기 타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11	00. 00	안 장	
19	00. 00	기 타	
20	00. 00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것	
9		기 타	
91	00. 00	프레임과 포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92	00. 00	휘일 림과 스포우크	
93	00. 00	허브(코오스터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및 프리 휘일스프로켓 휘일	
94	00. 00	브레이크(코오스트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95	00. 00	안 장	
96	00. 00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99	00. 00	기 타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15. 00	00. 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탱크트레일러와 탱커세미트레일러	1. 수입할 수 없음
		기 타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타의 차량 부분품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순항성·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	1. 다음의 것은 해운항만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있 음 ① 총톤수 1,000톤 이상이면서 선령15년 이상 20년 이하의 것(단, 순항선은 선령 15년 이상)
		탱 커	
		냉장 또는 냉동선(제8901호 2의 것을 제외한다)	2.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선령 20년 초과의 것(단, 순항선은 제외)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②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것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902. 0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1. 다음의 것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령 20년 이하의 것 2.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선령 20년 초과의 것(단, 정부간 협정·국제기구의 결의 등의 사유로 수산청장이 정하는 선박은 제외)
8903		유람 또는 운동용의 요트와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우트와 카누	
10	00. 00	인플랫터블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905. 10	00. 00	준설선	1. 다음의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펌프식으로서 준설펌프 구동엔진 4,000마력 이상의 것이면서 비자항식의 것
8906. 00	20. 00	구명보트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복사기	
	00. 0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자식 복사기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 프린트 및 기타 처리용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10	9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사진용 현상기기
9014. 10		방향탐지용 콤파스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
80	00. 00	기타의 항행용 기기	ㄴ 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9031. 80	10. 00	초음파 어군탐지기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 별지 1-1호 서식 >

중고품 수입추천 실적(　　월분)

o 총괄표

(단위 : $)

전 월 누 계		당　　월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o 품목별

(단위 : $)

추천일자	실수요자	HS	품명	수량	금액	주생산품	거래형태	국　가

※ 품 목 별 : 섬유류, 일반기계, 공작기계, 공작기계, 건설기계, 해외건설용 기자재, 농기계, 금형, 선박, 조선기자재, 냉동기계, 전기기기, 광학기기, 차량

※ 주생산품 :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섬유류, 금속, 기계, 건설장비, 선박, 전자, 전기, 생활용품, 기타

※ 거래형태 : 일반, 임대차수입(유상, 무상), 기타

< 별지 1-2호 서식 >

중고품 수입추천 실적보고(/4 분기)

1. 총괄표

(단위 : $)

전 분 기 누 계		당 분 기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주요국가별

(단위 : $)

일 본	미 국	구 주	기 타	계

3. 거래형태별

(단위 : $)

일반거래	임대차 수입		기 중	기 타	계
	유 상	무 상			

※ 품 목 별 : 섬유류, 일반기계, 공작기계, 건설기계, 해외건설용 기자재, 농기계, 금형, 선박, 조선기자재, 냉동기계, 전기기기, 광학기기, 차량

Ⅲ- 7. 1996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중고품 수입제한품목 일부 축소

o 내년부터 「중고품 수입제한품목」중 일부가 수입자유화되거나 수입금지 대상 품목에서 관련단체 추천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으로 전환된다. 통상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여 「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하고 '97. 1.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이번에 수입제한이 완화되는 품목은 현행 230개 수입제한품목중 32개 품목으로서
- 기계류 등 6개 수입추천품목중 '자주식 전단면 터널굴착기(HS 8430.31.0000)'등 7개 품목이 수입자유화되고
- 수입금지된 69개 차량 및 부분품중 '세미트레일러 견인용트랙터(HS 8701.20.0000)' 등 15개 품목이 수입추천품목으로 전환된다.

※ 세부 품목리스트 별첨

o 이들 32개 품목의 선정은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무역수지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대부분 수입추천실적이 없거나 신품수입실적도 미미하고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들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o 이번의 중고품 수입제한 완화조치는 금년 1월 중고품수입제도를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제한품목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한 기본운영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 OECD가입 등으로 앞으로 우리의 중고품수입제도 운영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첨부 : 중고품 수입제한완화 세부품목 리스트 >

o 수입추천 → 수입자유화 : 17개 품목

품목번호(HS)	업 종	품 목 명
7315.82.0000	조선기자재	철강제의 체인중 용접한 링크의 것
7316.00.1000	조선기자재	닻
8401.20.0000	일반기계	동위원소분리기와 부분품
8410.12.0000	일반기계	천~1만Kw의 수력터빈
8410.13.0000	일반기계	1만Kw초과의 수력터빈
8430.31.1000	건설기계	자주식 전단면 터널굴착기
8474.31.1000	건설기계	배처 플랜트
8474.32.1000	건설기계	아스팔트 플랜트
8701.30.1000	자 동 차	무한궤뙥 트랙터
8701.90.9900	자 동 차	트랙터중 기타의 것
8704.32	자 동 차	5톤 초과의 화물차(불꽃점화식)
8705.90.1090	건설기계	아스팔트 살포차
8705.90.9060	자 동 차	이동통신차, 레이더차
8715.00.0000	자 동 차	유모차 및 부분품
8716.20.0000	자 동 차	농업용 트레일러
8901.30.0000	선 박	냉장선, 냉동선
8903.10.0000	조선기자재	인플랫터블식의 선박용보트

o 수입금지 → 수입추천 : 15개 품목(한국자동차공업협회 추천)

품목번호(HS)	업 종	품 목 명
8701.20.0000	자 동 차	세미트레일러 견인용트랙터
8702.90.0000		10인 이상 수송용의 자동차중 디젤용 이외의 것
8703.31		1,500cc 이하의 디젤승용차
8704.31		5톤 이하의 화물차(불꽃점화식)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705.90.9030		이동공작차
8705.90.9050		이동진료차
8706.00		엔진을 갖춘 샤시
8707.90		차체중 승용차용 이외의 것
8713.90.0000		신체장애자용 차량중 기타의 것
8714.11.0000		모터사이클의 안장
8714.20.0000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부분품
8716.10.0000		주거 및 캠핑용 트레일러
8716.39.0000		화물용 트레일러중 기타의 것

통 상 산 업 부

우) 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02)503-3284 / 전송 503-9496,3142 담당 : 정윤모

문서번호 수입 55250-273
시행일자 1996. 12. 27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제목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중고품의 수출입) 개정

수출입별도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제994-40호, 제1994-102호,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및 제1995-123호)중 제1장(중고품의 수출입)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요지 부.
2.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 개정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무역정과장

제목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중고품의 수출입) 개정에 따른 조치의뢰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중고품 수출입)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일간무역게재, 관계기관 송부 등 필요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 개정고시(안) 2부. 끝.

무 역 정 책 심 의 관

< 첨부 1 >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요지

o 수입추천품목중 '철강제의 체인중 용접한 링크의 것(HS 715.82.0000)' 등 17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 <별표1> 수입제한승인(금지)품목에서 17개품목의 품목의 품목번호(HS), 품목 및 수입요령을 삭제

o 수입금지품목중 '세미트레일러 견인용트랙터(HS 8701.20.0000)'등 15개 품목을 수입추천품목으로 전환

- <별표1> 수입제한승인(금지)품목에서 15개 품목의 수입요령을 현행 '1. 수입할 수 없음'에서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으로 변경

o 중고어선의 수출추천제를 폐지 [제1-4조(중고품의 수출)]

- 현행 해양수산부(구 수산청)로부터 수출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따라 이를 폐지

o 우리부가 직접 수입추천하는 중고산업설비는 당해 설비에 수입선다변화품목이 포함되더라도 우리부의 수입추천으로 수입이 허용됨을 명확히 함.

o 기타 일부자구 수정

- <별표1>에 게기된 품목이라도 일부제한의 경우 제한되는 품목(또는 용도)의 것만이 별도공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적용범위) 제2호를 '수입의 경우에는 <별표1>에 게기한 푸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에서 '------<별표1>에서 수입요령을 정한------'으로 수정
- 대외무역법개정법률안중 수출입공고 관련조항은 '97.1.1자로, 통합공고 관련조항은 '97.3.1자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수출입공고 인용조항은 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제18호 제1항'에서 '제14조'로 변경하고(제1-3조 제1호), 통합공고 인용조항은 종전대로 유지(제1-3조 제2호)

< 첨부 2 >

제1장 중고품의 수출입

제1-1조(목적) 이 자은 수출입공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출입요령을 정한 중고품의 범위 및 이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이 장이 적용되는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출의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수출요령을 정한 품목

2. 수입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수입요령을 정한 중고품

제1-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①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또는 수입승인하고자 하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공고상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2.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 또는 추천을 받은 산업설비는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수입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입공고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2. 수출입공고 제6조 제2항 1호, 2호, 4호 및 5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3. 수출입공고 제7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수입

제1-4조(중고품의 수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반입한 건설기자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수출할 수 있다.

제1-5조(중고품의 수입)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을 포함하는 산업설비(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구비서류)제1-5조의 수입요령에 의해 중고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수입추천기관장에게 수입승인(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추천)신청서 6부(임대차수출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여관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무상기증등의 경우에는 당해사실 입증서류)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1부(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리스계약서 부(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선박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크기, 조선자, 진수일(준공일) 및 국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에 한한다)

7. 카다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1-7조(수입추천요령의 공고) 별표 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추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합의)를 얻어 수입추천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통보) 별표 1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추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월별, 매분기별 수입추천 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1-2호의 서식에 의해 매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품목은 이 개정고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입추천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종전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 제1-7조에 의한 수입추천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개정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수입제한승인(금지) 품목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6309. 00	00. 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1.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10	00. 00	원자로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
30	00. 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체(카아트리지)	ㅣ 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ㅣ 수 있음
40	00. 00	원자로의 부분품	ㄴ ① 산업용 발전설비의 것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반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1		증기발생보일러	
11	00. 00	증기발생량 시간단 45톤 초과의 수관보일러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ㅣ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12	00. 00	증기발생량 시간단 45톤 이하의 수관보일러	ㅣ 수입알 수 있음 ㅣ ① 선박용의 것
19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ㅣ ㄴ
8406		증기터빈	
8		기타터빈	
81		출력 40메가와트 초과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산업용 발전설비의 것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1	00. 00	아웃보오드 모터	┐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8409		제8407호 또는 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 있음 |
		기 타	|
99	30	선박용의 것	|
	30. 10	300킬로와트 이하 내연기관의것	|
	30. 30	2,000킬로와트 초과 내연기관의 것	┘
8411		터보제트·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8		기타의 가스터빈	
81		출력 5,000킬로와트 이하의 것	
	90	기 타	
	90. 90	기 타	┐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
82		출력 5,000킬로와트 초과의 것	| 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90	기 타	| 수 있음
	90. 90	기 타	┘ ① 산업용 발전설비의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30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매체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한다)	
	30. 00	선박의 것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	00. 00	콘크리트 펌프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건설기계용의 것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기 타	
	92	기타의 기체압축기	
	92. 20	사용동력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의 것	┐ 1. 다음의 것은 한국냉동공조공 | 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
	92. 30	사용동력 373킬로와트 이상의 것	| 할 수 있음 ┘ ① 74.6킬로와트 이상의 것
8419. 50	00. 00	열 교환기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9	90. 9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석유화학용 압력용기
8421. 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9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425. 1		폴리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11		전동식의 것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25. 3		기타의 원치 및 캡스턴	
31	00. 00	전동식의 것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39	00. 00	기 타	ㄴ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1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교각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19	0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20	00. 00	타워크레인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
3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크레인	ㄴ 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양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의 것
49	00. 00	기타(자주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양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의 것
99		기 타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00	선박의 데릭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27. 20	10	포크리프트 트럭	
	10. 10	적재중량 3톤 이하의 것	┐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
	10. 20	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8429. 1		불도저와 앵글도저	|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11		무한궤도식의 것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00. 00	그레이더와 레벨러어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우터 그레이더
40	20. 00	로드로울러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51		프론트 엔드 셔블로우더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로우더
52	10. 00	엑스카베이터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03. 3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39	0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바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단면 터널굴착기(TBM)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30. 4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41		자주식의 것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9		기 타	
	10. 00	유압 브레이카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30	30. 00	이식기	1.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3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40	00. 00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 1.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51	00. 00	수확·탈곡 겸용기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기 계	
8443		인쇄기와 인쇄보조용 기계	
1		옵셋인쇄기계	
19	0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쉬이트식의 것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43. 59	10. 00	직물날염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45. 30		합사기와 연사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사기
	90. 00	기 타	
90	10. 00	정경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46		직기(직조기)	
30		폭30센티미터초과의 직(셔틀레스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북직기(자동직기, 반자동직기) ② 무북직기(레피어식·그리퍼식·에어제트식·워터제트식·기타의 식)
8447		편직기·스티치본딩기와 짐프사·튜울·레이스·자수포·트리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기계 및 터프팅기계	
1		원형편기	
12	00. 00	실린더 직경 165밀리미터 초과의 것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평형편기와 스티치 본딩기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횡편기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47. 9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레이스기 ② 자수기 ③ 결망기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개봉기용 바늘	
29	90. 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상하송 사절, 차동송은 제외 ②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③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RPM 5,000 이상의 것과 스캘럽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④ 오바록, 안전봉재봉기. 다만, RPM 10,000 이상 또는 상하차동송은 제외 ⑤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 (사절 포함)
8454. 30		주조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10	00. 00	관 압연기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21	00. 00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22	00. 00	냉간 압연기	┘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56		각종 재료의 가구공작기계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짐·이온빔·플라스마 아크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30	00. 00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방전방식에 의한 것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57. 10	00. 00	머시닝 센터	│
			│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1		수평선반	│
1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19	00. 00	기 타	│
9		기타의 선반	│
9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99	00. 00	기 타	│
			│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 (웨이타입 유니트 헤드 머시인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볼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
2		기타의 드릴링 머시인	│
2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29		기 타	│
3		기타의 볼링 밀링머시인	│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39	00. 00	기 타	│
40		기타의 볼링 머시인	│
5		무릎형 밀링 머시인	│
5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59	00. 00	기 타	│
6		기타의 밀링 머시인	│
6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69		기 타	┘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60. 1		평면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1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19	00. 00	기 타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기타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
2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29		기 타	│
3		샤프닝 머시인(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한한다)	│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39	00. 00	기 타	│
40		호닝 머시인 또는 랩핑 머시인	│
8461. 10		플레이닝 머시인	│
20	00. 00	쉐이핑 머시인 또는 슬로팅 머시인	│
30	00. 00	부로칭 머시인	│
40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사상기	│
50	00. 00	톱기계 또는 절단기	┘
8462. 10		단조기·다이스탬핑(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햄머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타의 단조기(프레스 포함) ② 볼트, 넛트 훠머
2		굽힘기·접음기·교정기와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2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29	00. 00	기 타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면,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
39	00. 00	기 타	┘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62. 4		펀칭기와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1		수치제어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수치제어식의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9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9		기 타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91		액압 프레스	
99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계식프레스 ② 공압프레스
8463		기타의 금속이나 서머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10	00. 00	드로우 벤치(봉·관·프로우필·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 | 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20	00. 00	나사 전조기	|
30	00. 00	선 가공기	┘
8465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65. 10		다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 | 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 수 있음
9		기 타	| ① 목재 가공용의 것
91		톱기계	┘
		평삭기·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방식에 의한 것에 한한다)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2		연삭기·샌딩기 또는 광택기	┐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
94		굽힘기 또는 조립기	| 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95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 수 있음
96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 ① 목재 가공용의 것 ┘
8474. 20		파쇄기와 분쇄기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쇄석기
8475. 10	00. 00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쉬벌브(외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
8477. 10		사출 성형기	|
20		압출기	┘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아스팔트 피니셔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479. 81	30. 00	권선기	┐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89	90. 50	코팅머신(도포기)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9	90. 2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9	90. 99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조립기 ② 삽입기 ③ 공급기
8480. 7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71			
	00. 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1.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83. 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90. 90	기 타	┐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40	90. 20	기어박스	┘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514. 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 추천을
20		전잔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515. 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
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
3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아크 용접기기	|
3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
8526. 10	00. 00	레이다 기기	┐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91		항해용 무선기기	|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92	00. 00	무선원격조절기기	┘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고,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 기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10		전압 1,000 볼트 이하의 것	
	10. 00	배전반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90. 00	기 타	ㄴ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20. 00	자동제어반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선박용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20	00. 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10. 00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1. 수입할 수 없음
90	91. 10	농업용 트랙터(50마력미만의 것)	ㄱ 1.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91. 90	농업용 트랙터(기타)	ㄴ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90	00. 00	기 타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10	00. 00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1. 수입할 수 없음
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21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것	
22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의 것	
23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의 것	
24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의 것	
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31		실린더용량 1,500cc 이하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2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33		실린더용량 2,500cc 초과의 것	
90		기 타	
8704		화물자동차	1.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2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22		총중량 5톤초과 20톤 이하의 것	
23		총중량 20톤 초과의 것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04. 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3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없음
90		기 타	1. 수입할 수 없음
8705		특수용도차량·다만, 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 구난차, 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송차)	
10	00. 00	기중기차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00. 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0	00. 00	소방차	1. 수입할 수 없음
40	00. 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10. 10	농업용 살포차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10	구난차	ㄱ 1. 수입할 수 없음
	90. 20	도로청소차	ㄴ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05	90. 30	이동공작차	┐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90. 40	이동방송차	│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50	이동진료차	│
	90. 70	제설차	┘
	90. 9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콘크리트펌프트럭
8706. 00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10	00. 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90		기 타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10	00. 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 1. 수입할 수 없음 │
21	00. 00	안전벨트	│
29		기 타	│
3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31	00. 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
39		기 타	│
40	00. 00	기어박스	│
50	00. 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60	00. 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70	00. 00	로우드 휘일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80	00. 00	서스펜션 쇼크 업소오바	│
91	00. 00	방열기	│
92	00. 00	소음기와 배기관	│
93	00. 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
94	00. 00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
99		기 타	┘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포옴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1		차 량	
11	00. 00	전기식의 것	┐ 1. 수입할 수 없음
19	00. 00	기 타	|
90	00. 00	부분품	|
			|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아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아드카	|
10		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20		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30		실린더용량 250cc 초과 50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40		실린더용량 500cc 초과 80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50		실린더용량 800cc 초과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90		기 타	|
			|
8713		신체장애자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와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0	00. 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
90	00. 00	기 타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11	00. 00	안 장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19	00. 00	기 타	1. 수입할 수 없음
20	00. 00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		기 타	
91	00. 00	프레임과 포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 1. 수입할 수 없음
92	00. 00	휘일 림과 스포우크	|
93	00. 00	허브(코오스터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및 프리 휘일스프로켓 휘일	|
94	00. 00	브레이크(코오스트 브레이킹 허브와 허브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
95	00. 00	안 장	|
96	00. 00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
99	00. 00	기 타	┘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10	00. 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1	00. 00	탱크트레일러와 탱커세미트레일러	1. 수입할 수 없음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39	00. 00	기 타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40	00. 0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 수입할 수 없음
80		기타의 차량	
90		부분품	ㄱ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추천을 ㄴ 받아 수입할 수 있다.
8901. 10	00. 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	ㄱ 1. 다음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 | 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 있음 | ① 총톤수 1,000톤 이상이면
20	00. 00	탱 커	| 서 선령 15년 이상 20년 | 이하의 것(단, 순항선은
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ㄴ 선령 15년 이상의 것) 2.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선령 20년 초과의 것(단, 순항선은 제외) ②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것
8902. 0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1. 다음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령 20년 이하의 것 2.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선령 20년 초과의 것(단, 정부간 협정·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의 결의 등의 사유로 수산청장이 정하는 선박은 제외)
8905. 10	00. 00	준설선	1. 다음의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펌프식으로서 준설펌프 구동엔진 4,000마력 이상의 것이면서 비자항식의 것

품목번호 (HS)		품 목	수 입 요 령
8906. 00	20. 00	구명보트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09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복사기	
12	00. 0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자식 복사기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 프린트 및 기타 처리용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10	90. 9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사진용 현상기기
9014. 10		방향탐지용 콤파스	ㄱ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
80	00. 00	기타의 항행용 기기	ㅣ 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ㅣ 수입할 수 있음
9031. 80	10. 00	초음파 어군탐지기	ㄴ ① 선박용의 것

< 별지 1-1호 서식 >

중고품 수입추천 실적(　　월분)

o 총괄표

(단위 : $)

전 월 누 계		당　　월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o 추천내역

(단위 : $)

추천일자	실수요자	HS	품명	수량	금액	주생산품	거래형태	국　가

※ 품 목 별 : 섬유류, 일반기계, 공작기계, 공작기계, 건설기계, 해외건설용 기자재, 농기계, 금형, 선박, 조선기자재, 냉동기계, 전기기기, 광학기기, 차량

※ 주생산품 :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섬유류, 금속, 기계, 건설장비, 선박, 전자, 전기, 생활용품, 기타

※ 거래형태 : 일반, 임대차수입(유상, 무상), 기타

< 별지 1-2호 서식 >

중고품 수입추천 실적(/4 분기)

1. 총괄표

(단위 : $)

전 분 기 누 계		당 분 기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주요국가별

(단위 : $)

일 본	미 국	구 주	기 타	계
건 수				
금 액				

3. 거래형태별

(단위 : $)

구 분	일반거래	임대차 수입		기 중	기 타	계
		유 상	무 상			
건 수						
금 액						

Ⅲ- 8. 1997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28호
수출입별도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60호, 제1997-34호 및 제1997-37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7월 1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7.7.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동부열대태평양산 황다랑이 수입금지조치(무정28110-268, 92.4.1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6장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

제6-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통상 및 산업정책상 필요한 물품
2.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국내 물가안정 등 원활한 물자수급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3조(수출입요령) ①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별표6에 게기된 물품은 동표의 수출·수입요령에 의한 수출·수입 승인 또는 확인(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수출·수입할 수 있다.

②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중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수입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부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수입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수출입승인등요령 공고) 별표6에 의한 수출입승인등의 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 수출입승인등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협의) 통상산업부장관은 제6-3조제2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6]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등의 수출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32 0000	황다랑이(터너스알바카레스)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것 2. 기타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0303	냉동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4	다랭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비니토우(유티너스 〈카추워누수〉 팰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42 0000	황다랭이(터너스 알바카레스)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4	다랭이·가다랭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	다랭이	
11	기름담근 것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랭이의 것 2. 기타의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12	보일드한 것	
19	기타	

황다랑이 수입금지 계속

통산부 수출입별도공고 1일고시·시행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으로 어획한 황다랑이 및 통조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통상산업부는 수출입승인제도 폐지 및 수출입공고상 관련품목의 수입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수입제한 수단을 상실한 동부열대태평양산 황다랑이에 대해 수입금지를 지속키로 수출입별도공고를 1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세부내용은 71-72면 참조〉

이에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황다랑이는 멕시코·베네수엘라 등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된 신선·냉장 황다랑이(HS 0302 32 0000), 냉동 황다랑이(HS 0303 42 0000), 다랑이 통조림(HS 1604 14 1011, HS 1604 14 1012, HS 1604 14 1019) 등 5개 품목이다.

이번에 황다랑이 수입금지를 지속키로 결정한 것은 멕시코 등이 황다랑이를 선망어업으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황다랑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해양포유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돌고래도 잡아 이에 대한 규제방안의 일환으로 동부열대태평양산 황다랑이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황다랑이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입금지된 HS 품목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검사소 지소장 또는 보건복지부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금지대상품목이 아닌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 건 복 지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 504-6206 / 전송 504-6207 / 담당 : 고송부

문서번호 식진 65433 -

시행일자 1997. 7. 9

수 신 통상산업부장관

참 조 무역정책과장

제 목 : 다랭이통병조림수입확인요령 공고 통보

---

1. 무정 55211-270호('97. 6. 30)와 관련입니다.

2. 귀부와 합의한 다랭이통병조림수입확인요령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다랭이통병조림수입승인요령(보건복지부공고 제1997-56호, 1997.7.5).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공고 제1997-56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토록 되어있는 다랭이통병조림에대한수입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다랭이통병조림수입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랭이통병조림의 수입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랭이병통조림〔HS 1604 14 1011(밀폐용기에 넣은 것/기름담근 것), HS 1604 14 1012(밀폐용기에 넣은 것/보일드한 것), HS 1604 14 1019(밀폐용기에 넣은 것/기타)〕의 수입물품에 한한다.

제3조(확인요령)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신고서류 접수시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랭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교부시 등 필증에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랭이의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확인신청서류)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류 접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청장(서울, 부산, 인천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랭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입증하는 서류(외화획득용 식품을 포함한다) 1부

제5조(수입확인의 처리기간) 수입의 확인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확인 신청내용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항공기部品 수입승인 免除

통산부 '사료용 변성유장' 수입제한대상서 해제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

앞으로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이 면제된다.

또 모조분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중 유장에서 단백질을 일부 제거한 '사료용 변성유장(HS 0404 10 2190)' 등은 수입제한대상에서 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출입별도공고를 21일자로 개정·고시했다.〈세부내용은 자료면 39-42면 참조〉

통산부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수입 규제완화 건의를 수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한국항공·서울항공·시티항공 등 정기 항공운송사업자·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와 중앙항업·대우중공업범아엔지니어링·익산등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모조분유의 긴급 수입제한조치대상품목 가운데 지난 96년 6월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조치 건의 의결시 구제조치대상이 아니었던 사료용 변성유장(유장에서 단백질을 제거한 것)은 수입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통산부 관계자는 "사료용 변성유장의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이 아니었으나 올해 1월 HS품목 분류체계의 변경으로 HS세번이 기존의 0404 10 1000에서 0404 10 2190으로 바뀌어 수입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며 "이번에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70호
수출입별도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60호, 제1997-34호, 제1997-37호 및 제1997-12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10월 21일
통상산업부 장관

수출입별도공고중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단서중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을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가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1조중 “제28조의”를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호의”로, “수입제한품목”을 “수입제한품목(이하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이라 한다)”로, “제29조의”를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호의”로, “잠정조치품목의”를 “잠정조치품목(이하 “잠정조치품목”이라 한다)의” 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은”을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은”으로, 동조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은”을 “잠정조치품목은”으로 한다.

별표 5-1중 제0404 10 2190호, 제0404 10 2900호, 제0404 90 0000호 및 제1901

90 2000호의 수입요령란의 제1호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HS 0404 10 2190 및 0404 10 2900에 해당하는 품목중 '97.1.1 HSK 개정 이전에 HS 0404 10 1000 및 0404 10 9000에 분류되었던 품목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수입제한품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1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7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수출입별도공고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2조(수입요령) 항공기 및 동 부분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제4-2조(수입요령) …… …… …… …… …… …… ……. ……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가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1.-4.(생략)	1. - 4.(현행과 같음)
제5-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목적) ……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호의 …… …… 수입제한품목(이하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이라 한다) ……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호의 …… …… 잠정조치품목(이하 “잠정조치품목”이라 한다)…… …….
제5-2조(수입요령) ①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은 별표 5-1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표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대외무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은 동 품목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별표 5-2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제5-2조(수입요령) ①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은…… …… ……. ②잠정조치품목은 …… …… …… …… …….

[별표 5-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 품목

* 금번개정시 밑줄친부분이 신설되었음.

H S	품 목	수입요령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1.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나. 변성유장	
21	(1) 유장에서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 한국유가공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 다음 각호의 것은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음.
90	(라) 기타	
2900	(2) 기타	
90 0000	2. 기타	①우유미네랄(칼슘) 농축제
1901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품(미네랄 강화식품 제조를 위한 첨가물 용도에 한함) ②유청 단백질 농축제품 및 유단백질 농축제품(단백질 강화식품 제조용 첨가물 용도에 한정) ③칠레산 특산제품 ④네슬레사의 세레락 제조를 위한 원료 ⑤HS 0404 10 2190 및 0404 10 2900에 해당하는 품목중 '97.1.1 HSK개정 이전에 HS 0404 10 1000 및 0404 10 9000에 분류되었던 품목
90	3. 기타	
2000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2. 수입제한물량은 다음 각호와 같음. ① 97.3.7~98.2 : 20,521톤 ② 98.3~99.2 : 21,691톤 ③ 99.3~2000.2 : 22,927톤 ④ 2000.3~2001.2 : 24,234톤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사유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수입 규제완화 건의(의결 제97-126호, '97.9.5)수용

○ 모조분유의 긴급 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을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조치 건의 의결시 대상품목과 일치시킴.

2. 개정내용

○ 항공기 부분품중 일부를 수입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

- 항공법에 의한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가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

  * 정기운송사업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부정기운송사업자 :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한국항공, 서울항공, 시티항공, 선진항공, 홍익항공, 헬리코리아
  * 항공기사용사업자 : 중앙항업, 대우중공업, 범아엔지니어링, (주)익산

○ 모조분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조정

- 모조분유의 긴급 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중 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 조치 건의 의결(제111차, '96.12.2)시 구제조치대상이 아닌 품목을 긴급 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에서 제외

  * HS 0404 10 2190 및 0404 10 2900의 경우 '97.1.1 HSK개정 이전에 HS 0404 10 1000 및 0404 10 9000에 분류되었던 "사료용 변성유장"등은 당초 수입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수입제한 대상에서 제외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22호

수출입별도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60호, 제1997-34호, 제1997-37호, 제1997-128호 및 제1997-17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12월 31일

통상산업부 장 관

수 출 입 별 도 공 고

제1장 중고품의 수입

제1-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을 정한 중고품의 범위 및 이의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장은 별표 1에서 수입요령을 정한 중고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1-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①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입승인하고자 하는 중고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공고상에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산업설비는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수입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입공고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2. 수출입공고 제6조 제2항 1호, 2호,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3. 수출입공고 제7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수입

③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상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

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중고품의 수입)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을 포함하는 산업설비(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구비서류) 제1-4조의 수입요령에 의해 중고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수입승인기관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무상기증등의 경우에는 당해사실 입증서류)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1부(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리스계약서 1부(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선박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크기, 조선자, 진수일(준공일)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에 한한다)
7. 카다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1-6조(수입승인요령의 공고) 별표 1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수입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통보) 별표1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매월별, 매분기별 수입승인 실적을 별지 제1-1호 및 제 1-2호의 서식에 의해 매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등의 별도조치

제2-1조(목적) 이 장은 수출입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절차등에 관한 별도조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등의 수출입)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수출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품목의 수량에 관하여 조정을 명한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하여야 한다.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원료 및 시설기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원료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2.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시설기재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중고품 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더라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된 물품을 해당업체의 공장내에서 자가생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수입통관상황, 물품관리상황등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하거나 기타 물품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 수입승인의 거부, 기 승인한 내용의 정지, 각종 행정지원에서의 제외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수출) ①해외건설현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별표 2-1의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품목별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협

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 도급허가를 받아 해외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자 또는 이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③해외건설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물품이 해외근로자용임을 명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수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청물품이 해외근로자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내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외건설협회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신청서 3부
2.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3. 공사계약서 및 현장별 인원현황 1부(필요시)

⑤해외건설협회장은 매분기별 승인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각 품목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수입

제3-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용원료·기재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승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생산이 위촉된 물자의 제조정비를 위한 원료·기자재·부분품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 시설기재 및 견품

2. 제1호 이외의 군용에만 공하는 물자의 제조·정비를 위한 원료·기자재 및 부분품

제3-3조(수입요령) 제3-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중고품 또는 수입선다변하품목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 및 동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제3-4조(수입승인 신청서류)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신청서 3부(임대차수출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3호)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1부(중고품의 경우에 한함)
4. 기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5조(승인실적의 보고)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은 매분기별 수입승인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제4-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수입요령) 항공기 및 부분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가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생산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등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3조(수입승인 신청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수입승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및 제작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중고품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4조(승인실적의 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은 매분기별로 수입승인 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산업피해조사품목의 수입

제5-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이하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이라 한다)과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이하 “잠정조치품목”이라 한다)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수입요령) ①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은 별표 5-1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 표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잠정조치품목은 동 품목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별표 5-2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제5-3조(수입승인요령의 공고) 별표5-1 및 별표5-2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 수입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

체의 경우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5-4조(승인실적의 보고) 별표5-1 및 별표5-2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입승인실적을 연도 경과후 15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

제6-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통상 및 산업정책상 필요한 물품
2.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국내 물가안정등 원활한 물자수급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3조(수출입요령) ①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중 별표6에 게기된 물품은 동표의 수출·수입요령에 의한 수출·수입 승인 또는 확인(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수출·수입할 수 있다.

②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수입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부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수입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수출입승인등요령 공고) 별표6에 의한 수출입승인등의 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 수출입승인등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협의) 통상산업부장관은 제6-3조제2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수출·수입의 승인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승인등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수출·수입승인등의 기관의 수출·수입승인등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입요령
6309 00 00 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1.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1	증기발생보일러	
11 00 00	증기발생량 시간당 45톤초과의 수관보일러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12 00 00	증기발생량 시간당 45톤이하의 수관보일러	
19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1 00 00	아웃보오드 모터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99	기타	
30	선박용의 것	
30 10	300킬로와트이하 내연기관의 것	
30 30	2,000킬로와트초과 내연기관의 것	
8419 50 00 00	열 교환기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425 3	기타의 원치 및 캡스턴	
39 00 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H S	품 목	수입요령
8426 1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천정주행 크레인, 트랜스포터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교각형 크레인,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19 00 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20 00 00	타워크레인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양하용의 것
49 00 00	기타(자주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양하용의 것
99 10 00	기타 선박의 데릭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27 20 10 10 20 8429 1 11	포크리프트 트럭 적재중량 3톤초과의 것 불도저와 앵글도저 무한궤도식의 것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입요령
8429 51	프론트 엔드 셔블로우더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로우더
52 10 00	엑스카베이터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9	기타	
10 00	유압 브레이카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기계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43	인쇄기와 인쇄보조용 기계	
1	옵셋인쇄기계	
19 00 00	기계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쉬이트식의 것
8445 30	합사기와 연사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90 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사기

H S	품 목	수입요령
8446	직기(직조기)	
30	폭30센티미터초과의 직기(셔틀레스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북직기(자동직기, 반자동직기) ② 무북직기(레피어식, 그리퍼식, 에어제트식, 워터제트식, 기타의 식)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와 짐프사, 튜울, 레이스, 자수포, 트리밍, 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기계 및 터프팅기계	
1	원형편기	
12 00 00	실린더 직경 165밀리미터 초과의 것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평형편기와 스티치 본딩기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횡편기
8447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레이스기 ② 자수기 ③ 결망기
8454 30	주조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22 00 00	냉간 압연기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입요령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1	수평선반	
19 00 00	기타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	기타의 선반	
9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99 00 00	기타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니트 헤드 머시인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 볼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2	기타의 드릴링 머시인	
29	기타	
3	기타의 볼링 밀링 머시인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39 00 00	기타	
5	무릎형 밀링 머시인	
59 00 00	기타	
6	기타의 밀링 머시인	
69	기타	
8460 1	평면연삭기(총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19 00 00	기타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기타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29	기타	
3	샤프닝 머시인(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한한다)	
39 00 00	기타	
8461 10	플레이닝 머시인	
40	기어절삭기, 기어연삭기, 기어사상기	
50 00 00	톱기계 또는 절단기	

H S	품 목	수입요령
8462 10	단조기,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햄머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타의 단조기 (프레스포함) ② 볼트, 넛트 훠머
2	굽힘기, 접음기, 교정기와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29 00 00	기타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39 00 00	기타	
9	기타	
91	액압프레스	
8463	기타의 금속이나 시멘트의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10 00 00	드로우 벤치(봉, 관, 프로우필,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75 10 00 00	전기 또는 전자램프, 튜브, 밸브 또는 플레쉬벌브(외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1. 한국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79 81 30 00	권선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9 90 50	코팅머신(도포기)	
89 90 2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9 90 99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조립기 ② 삽입기 ③ 공급기

H S	품 목	수입요령
8480 7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71 00 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1.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83 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90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40 90 20	기어박스	
8514 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8515 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3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아크 용접기기	
3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넷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고,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10	전압 1,000볼트이하의 것	
10 00	배전반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20 00	자동제어반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90 10 00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1. 수입할 수 없음.

H S	품 목	수입요령
8702	10인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90 00 00	기타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10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1. 수입할 수 없음.
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21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것	
22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의 것	
23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의 것	
24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의 것	
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31	실린더용량 1,500cc 이하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2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33	실린더용량 2,500cc 초과의 것	
90	기타	
8704	화물자동차	
10 00 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1.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입요령
8704 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2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22	총중량 5톤초과 20톤 이하의 것	
23	총중량 20톤 초과의 것	
8704 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3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기타	1. 수입할 수 없음.
8705	특수용도차량. 다만, 주로 사람 또는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예 : 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도로청소차, 살포차, 이동공작차, 이동방송차)	
30 00 00	소방차	1. 수입할 수 없음.
90 90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콘크리트펌프트럭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3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 수입할 수 없음.
31 00 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39	기타	
40 00 00	기어박스	
50 00 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00 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0 00 00	서스펜션 쇼크 업소오바	
93 00 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94 00 00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99	기타	

H S	품 목	수입요령
8709	공장, 창고,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포옴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1	차량	
11 00 00	전기식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19 00 00	기타	
90 00 00	부분품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아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10	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20	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30	실린더용량 250cc 초과 500cc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0	실린더용량 500cc 초과 800cc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기타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19 00 00	기타	1. 수입할 수 없음.
9	기타	
92 00 00	휘일 림과 스포우크	1. 수입할 수 없음.
99 00 00	기타	

H S	품 목	수입요령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탱크트레일러와 탱커세미트레일러	1. 수입할 수 없음.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 수입할 수 없음.
	부분품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 탱커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선령 20년 초과의 것 (단, 순항선은 제외) ②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것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선령 20년 초과의 것
	준설선	1. 다음의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펌프식으로서 준설펌프 구동엔진 4,000마력 이상의 것이면서 비자항식의 것

H S	품 목	수입요령
9009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복사기	
12 00 0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자식 복사기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 프린트 및 기타 처리용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10 90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사진용 현상기기

[별표 2-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H S	품 목
1212	염장미역, 건미역
6402	고무장화
6403	안전화

[별표 5-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 품목

H S	품 목	수입요령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1.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나. 변성유장	
21	(1) 유장에서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 한국유가공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 다음 각호의 것은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우유미네랄(칼슘) 농축제품(미네랄 강화식품 제조를 위한 첨가물 용도에 한함) ②유청 단백질 농축제품 및 유단백질 농축제품(단백질 강화식품 제조용 첨가물 용도에 한정) ③칠레산 특산제품 ④네슬레사의 세레락 제조를 위한 원료 ⑤HS 0404 10 2190 및 0404 10 2900에 해당하는 품목중 '97.1.1 HSK개정 이전에 HS 0404 10 1000 및 0404 10 9000에 분류되었던 품목 2. 수입제한물량은 다음 각호와 같음. ① 97.3.7~98.2 : 20,521톤 ② 98.3~99.2 : 21,691톤 ③ 99.3~2000.2 : 22,927톤 ④ 2000.3~2001.2 : 24,234톤
90	(라) 기타	
2900	(2) 기타	
90 0000	2. 기타	
1901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	3. 기타	
2000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제품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90	기타	
10	장류	
30	고추장	1.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수입제한 기간은 1999.12.31일 까지임.

[별표 5-2]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

[별표 6]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등의 수출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3	다랭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수>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바누아투, 벨리즈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것 2. 기타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32 0000	황다랭이(터너스알바카레스)	
0303	냉동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4	다랭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비니토우(유티너스 〈카추워누수〉 팰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42 0000	황다랭이(터너스 알바카레스)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4	다랭이·가다랭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	다랭이	
11	기름담근 것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바누아투, 벨리즈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랭이의 것 2. 기타의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12	보일드한 것	
19	기타	

〈별지 1-1호 서식〉

중고품 수입승인 실적보고(　　월분)

○ 총괄표

(단위 : $)

전 월 누 계		당 월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승인내역

(단위 : $)

승인일자	실수요자	H S	품 명	수 량	금 액	주생산품	거래형태	국 가

* 품 목 별 : 섬유류, 일반기계, 공작기계, 건설기계, 해외건설용 기자재, 농기계, 금형, 선박, 조선기자재, 냉동기계, 전기기기, 광학기기, 차량

* 주생산품 : 농림수산, 광산물, 화학공업, 섬유류, 금속, 기계, 건설장비, 선박, 전자, 전기, 생활용품, 기타

* 거래형태 : 일반, 임대차수입(유상, 무상), 기증, 기타

〈별지 1-2호 서식〉

중고품 수입승인 실적보고(/4분기)

1. 총괄표

(단위 : $)

전 월 누 계		당 월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주요국가별

(단위 : $)

구 분	일 본	미 국	구 주	기 타	계
건 수					
금 액					

3. 거래형태별

(단위 : $)

구 분	일반거래	임대차수입		기 증	기 타	계
		유 상	무 상			
건 수						
금 액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사유

○ 국내산업 및 국제무역환경변화 등에 따른 중고품 수입제한품목 축소

○ 수출입공고 개정 및 미국의 “국제 돌고래 보존계획법” 발효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2. 개정내용

○ 중고품에 대한 수출입제한 축소

- 해외건설현장에서 반입한 건설기자재의 수출시 건설교통부장관 신고제 폐지
- 수입제한품목을 213개품목에서 112개 품목으로 축소
  - ·수입승인품목 : (현행) 159개 → (개정) 72개
  - ·수입금지품목 : (현행) 54개 → (개정) 40개
- 중고의류의 수입승인기관 변경
  - ·(현행)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 → (개정) 한국의류산업협회

○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중 수출입공고 개정에 의하여 수출제한품목에서 해제되는 3개품목 삭제

*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의 경우 수출제한품목이더라도 수출승인기관이 아닌 해외건설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건설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 미국의 “국제 돌고래 보존계획법” 발효에 따라 수입금지대상 축소

- 현행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랑이에 대한 수입금지를 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바누아투, 벨리즈 등 6개국이 동 지역에서 어획한 황다랑이로 축소 조정

○ 기타 방산물자 지정 근거조문 정비

수출입별도공고 개정내용

1. 유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 조치경위

- 96. 5. 28 무역위원회, 축협의 신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 개시
- 96. 10. 23 산업피해 긍정 판정
- 96. 12. 2 무역위, 농림부장관에게 수량제한 건의
- 97. 1. 7 농림부는 산업피해구제조치를 결정하고 우리부 및 외무부에 수출입별도공고 개정 및 WTO 통보 요청
- 97. 1. 13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 WTO 통보문 및 협의대표단 구성
- 97.2.3.~ 4 EU, 호주, 뉴질랜드와 WTO협정에 따른 사전 협의
- 97. 2. 15 관계부처회의에서 수량제한물량에 대한 입장정립

○ 대상품목 : 유장 및 그 조제식료품(HS10 단위 4개품목)
(HS 0404 10 2190, 0404 10 2900, 0404 90 0000, 1901 90 2000)

○ 구제조치기간 : 1997. 3. 1~2001. 2. 28

○ 긴급수입제한수량 : 기준물량에 5.7%씩 연차적으로 증가

- 93. 7~96.6 3개년간 평균물량인 20,521톤을 EU측에 협상안 제시중
  * EU 불수용시 원안(93~96 3개년간 평균물량인 15,595톤)대로 실시 (97.2.15, 관계부처회의시 결정)

○ 제한물량 운영방안

- 매년도 시행이전에 실수요자에게 배분

○ 제한물량 운영기관(수입승인기관)

- 한국유가공협회

2.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출입절차 개정

○ 공고 총칙 및 발표상에 “추천”을 → “승인”으로 변경

* 수출입절차 변경내용

- (현행) 수출입추천(업종 단체) → 수출입승인(외국환은행) → 수출입신고(세관)
- (개정) 수출입승인(업종 단체) → 수출입신고(세관)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34호
수출입별도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60호, 96.12.31)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2월 28일
통상산업부 장 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 내지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중고품의 수출입

제1-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출입요령을 정한 중고품의 범위 및 이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장이 적용되는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출의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수출요령을 정한 품목
2. 수입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수입요령을 정한 중고품

제1-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①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또는 수입승인하고자 하는 중고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공고상에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2.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산업설비는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수입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입공고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2.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 1호, 2호,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3. 수출입공고 제7조의 적용을 받은 물품의 수입

제1-4조(중고품의 수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반입한 건설기자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신고수리는 이를 수출승인으로 본다.

제1-5조(중고품의 수입)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을 포함하는 산업설비(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구비서류) 제1-5조의 수입요령에 의해 중고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수입승인기관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무상기증등의 경우에는 당해사실 입증서류)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1부(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리스계약서 1부(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선박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크기, 조선자, 진수일(준공일)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에 한한다)
7. 카다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1-7조(수입승인요령의 공고) 별표 1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수입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통보) 별표1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매월별, 매

분기별 수입승인 실적을 별지 제1-1호 및 제 1-2호의 서식에 의해 매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등의 별도조치

제2-1조(목적) 이 장은 수출입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절차등에 관한 별도조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등의 수출입)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수출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품목의 수량에 관하여 조정을 명한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하여야 한다.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원료 및 시설기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원료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2.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시설기재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중고품 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더라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된 물품을 해당업체의 공장내에서 자가생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수입통관상황, 물품관리상황등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하거나 기타 물품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 수입승인의 거부, 기 승인한 내용의 정지, 각종 행정지원에서의 제외등 필요한 제

재조치를 취하거나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수출) ①해외건설현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별표 2-1의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품목별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 도급허가를 받아 해외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자 또는 이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③해외건설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물품이 해외근로자용임을 명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수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청물품이 해외근로자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내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외건설협회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신청서 3부
2.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3. 공사계약서 및 현장별 인원현황 1부(필요시)

⑤해외건설협회장은 매분기별 승인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각 품목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수입

제3-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용원료·기재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승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생산이 위촉된 물자의 제조정비를 위한 원료·기자재·부분품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 시설기재 및 견품
2. 제1호 이외의 군용에만 공하는 물자의 제조·정비를 위한 원료·기자재 및 부분품

제3-3조(수입요령) 제3-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중고품 또는 수입선다변하품목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 및 동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제3-4조(수입승인 신청서류)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신청서 3부(임대차수출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3호)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1부(중고품의 경우에 한함)
4. 기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5조(승인실적의 보고)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은 매분기별 수입승인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제4-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수입요령) 항공기 및 부분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생산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등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3조(수입승인 신청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수입승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및 제작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중고품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4조(승인실적의 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은 매분기별로 수입승인 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산업피해조사품목의 수입

제5-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수입요령) ①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은 별표 5-1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 표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대외무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은 동 품목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별표 5-2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제5-3조(수입승인요령의 공고) 별표5-1 및 별표5-2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 수입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5-4조(승인실적의 보고) 별표5-1 및 별표5-2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입승인실적을 연도 경과후 15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

제6-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공산권교역 등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2.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물자수급의 원활화, 국내물가의 안정,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3조(수출입요령) 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중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수입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수입승인할 수 있다.

제6-4조(협의) 통상산업부장관은 제6-3조의 확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의 수입요령란중 “추천을 받아”을 각각 “승인을 받아”로 한다.

[별표 5-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호 서식]중 “중고품 수입추천 실적(　　월분)”을 “중고품 수입승인 실적

보고(　　월분)”로, “추천내역”을 “승인내역”으로, “추천일자”를 “승인일자”로 한다.

[별표 1-2호 서식]중 “중고품 수입추천 실적(　/4분기)”을 “중고품 수입승인 실적 보고(　/분기)”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추천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수출·입추천기관의 수출·입추천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수출·입승인기관의 수출·입승인요령으로 본다.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22호

수출입별도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60호, 제1997-34호, 제1997-37호, 제1997-128호 및 제1997-17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12월 31일

통상산업부 장 관

수 출 입 별 도 공 고

제1장 중고품의 수입

제1-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을 정한 중고품의 범위 및 이의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장은 별표 1에서 수입요령을 정한 중고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1-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①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입승인하고자 하는 중고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공고상에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산업설비는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수입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입공고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2. 수출입공고 제6조 제2항 1호, 2호,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3. 수출입공고 제7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수입

③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상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

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중고품의 수입)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을 포함하는 산업설비(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구비서류) 제1-4조의 수입요령에 의해 중고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수입승인기관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무상기증등의 경우에는 당해사실 입증서류)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1부(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리스계약서 1부(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선박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크기, 조선자, 진수일(준공일)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에 한한다)
7. 카다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1-6조(수입승인요령의 공고) 별표 1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수입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통보) 별표1의 수입요령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매월별, 매분기별 수입승인 실적을 별지 제1-1호 및 제 1-2호의 서식에 의해 매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등의 별도조치

제2-1조(목적) 이 장은 수출입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절차등에 관한 별도조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등의 수출입)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수출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품목의 수량에 관하여 조정을 명한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하여야 한다.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원료 및 시설기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1.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원료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할 수 있다.
2.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의 시설기재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중고품 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더라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된 물품을 해당업체의 공장내에서 자가생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통 상 산 업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500-2384 / 전송503-9496, 3412 / 담당 : 방순자

문서번호 수입 55250-322
시행일자 1997. 12. 29

(제1안)

수 신 내부결제

참 조 무역정책과장

제 목 :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중고품의 수입) 개정

수출입별도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제1994-40호, 제1994-102호,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제1995-123호, 제1996-460호, 제1997-34호)중 제1장(중고품의 수입)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요지 1부.
2.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 개정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 무역정책과장
제목 :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중고품의 수입)개정에 따른 조치의뢰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중고품의 수입)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일간무역게재, 관계기관 송부등 필요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수출입별도공고중 제1장 개정고시(안) 1부 끝.

무 역 정 책 심 의 관

〈첨부 1〉

중고품수입제한품목축소조정(요약)

□ 중고품 수입제도 연혁

○ 81년 제한조치품목 수출입요령 제정시 중고품 규제(Positive 방식)

○ 96. 1 중고품수입제도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230개 품목, 수입추천 161개 품목, 수입금지 69개품목)

○ 97. 1 수입제한품목축소조정(230개 품목 → 213개 품목)

- 수입승인 : 159개 품목(금형, 공작기계, 중고선박등)
- 수입금지 : 54개 품목(중고자동차 및 그 부분품)

□ 주요개정내용

○ 수출분야

- 해외건설현장에서 반입한 건설기자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후 수출하던 중고품 수출부분 삭제

○ 수입분야

- 수입제한 품목수는 213개품목에서 112개 품목으로 축소
  - 수입승인품목 : ('97)159개품목 → ('98)72개품목
  - 수입금지품목 : ('97) 54개품목 → ('98)40개품목
  - 중고의류는 수입승인기관을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로 변경

중고품 수입제한품목 축소조정방안 보고

97. 12

통 상 무 역 실
(수 입 과)

중고품 수입제한품목 축소조정방안 보고

'97년 하반기에 국내산업 및 국제무역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고품 수입제한품목의 추가적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98년부터는 별도공고에 의한 중고품 수입제한제도를 폐지하고 통합공고에 통폐합하여 시행하기로 한 방침에 의거 동 시행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중고품 수입제도 현황

○ 중고품 수입제도 연혁

- '81년 '제한조치품목 수출입요령' 제정시 중고품수출입요령을 포함
  · Positive 방식으로 수입가능품목은 해운, 수산, 조선, 전자 등 37개 분야에서 출발하여 점차 품목확대

- '96년 1월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230개품목을 Negative 품목으로 고시(수입추천 161개품목, 수입금지 69개품목)

- '97년 1월 수입제한품목 축소조정(230개 품목→213개 품목)
  · 수입승인품목 : 159개품목(금형, 공작기계, 중고선박 등)
  · 수입금지품목 : 54개품목(중고자동차 및 그 부분품)

※ 중고품 수입제한품목의 총품목 중 비중 : 3.88%

○ 중고품의 수입비중

- 중고품의 수입비중

(단위 : 천불, %)

기 간	대상품목 총 수입실적(A)	중고품 수입		중고품 수입 비중(B/A)
		건 수	수입액(B)	
'96년	11,656,439	1,154건	257,723	2.2
'97. 1~6	4,324,769	546건	83,232	1.9

* 대상품목 총수입실적은 실수입기준이며, 중고품수입은 승인실적 기준임.
(무역통계상 중고품에 대해 별도 산정은 불가함)

- 품목별로는 중고선박, 금형, 인쇄기계, 공작기계 등의 수입이 높으며,
- 수입국별로는 일본(39%), EU, 미국 등의 순임.

2. 중고품 수입제도 운영여건상의 문제점

□ 대외적으로는 일본, EU 등 이해당사국들은 WTO/TPR, OECD/무역위등과 양자채널을 통해 우리 중고품수입제도의 부당성을 거론

○ 종전보다 개선되었으나, 국제규범 위배요소가 상존한다는 지적임

□ 대내적으로는,

○ 특정산업보호위주로 운영되는 중고품수입제도로 인하여 소규모자본에 의한 시설투자 장애요인의 발생과 고가의 외제신품구매로 인하여 무역수지에 악영향 우려

○ 중복규제로 인한 과도보호 우려

- 별도공고에 의한 중고품의 수입제한을 받는 외에,
  - 수입선다변화로 지정된 품목 : 33개품목(기계 및 수송기계)
  -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 : 70개품목(건설기계 및 수송기계)
  - 다변화, 통합공고 동시 해당 : 16개품목

○ 일부품목의 경우 수입제한 행정절차의 미비

- 중고청바지의 경우 수입승인기관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어 비정상적인 수입업자만 고가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

○ 수입승인기관별 승인조건상의 문제점

- 중고품수입제도 운영목적이 사실상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수량규제에 있으나,

- 형식상으로는 승인조건으로 국제규범상 양해될 수 있는 보건, 위생, 안전, 품질, 환경보호 등을 도입(국내 생산 가능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채택시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려움)하고 있으나,

- 개별법에 의한 법적기준이 미약함(통합공고 대상품목과 차별성이 없음)

3. 중고품 수입제한 완화품목 선정

○ 완화대상품목 선정 원칙

- 수입액에 비해 수출액이 월등히 높아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품목

-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고품으로 전환시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 수입액이 미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

- 차량의 경우 중고완성차가 수입금지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부분품은 수입제한 완화

○ 상기 원칙에 따라 품목소관 부서와의 협의 결과 109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50.7% 완화)

- 수입승인품목 159개품목중 90개품목 자유화(56.6%)

- 중고의류중 중고청바지는 수입승인기관을 추가지정(한국의류산업협회)

- 수입금지품목 54개품목중 16개품목 자유화(29.6%)
  2개품목은 승인으로 전환(3.7%)

○ 이에 따라 수입제한품목수는 : 213개품목→112개품목(52.9%)으로 축소

- 수입승인품목 : ('97) 159개품목→('98) 72개품목
- 수입금지품목 : ('97) 54개품목→('98) 40개품목

* 중고의류는 중고청바지의 수입승인기관 추가지정으로 완화되더라도 품목수의 변화는 없음

* 중고선박은 선령 20년이상, 천톤 미만은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의 것은 자유화이므로 승인품목에서 제외되고 금지품목에 추가됨

* 자동제어반(HS 8537 10 2000)중 공작기계용의 것은 수입을 자유화하고 선박용의 것은 승인품목으로 존치

4. 향후추진계획

○ '98. 1. 1부로 '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고시하여 시행

○ 수입제한품목 축소조정내용에 맞춰 수입승인기관별 수입승인요령 개정 추진

○ '98하반기중 추가적인 품목축소를 추진하되, 잔여품목은 통합공고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첨부〉 1. 업종별 중고품 수입제한 완화품목 현황
2. 중고품 수입제한해제 및 완화품목별 세부자료

[별표 1]

수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입요령
6309 00 00 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1.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1	증기발생보일러	
11 00 00	증기발생량 시간당 45톤초과의 수관보일러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12 00 00	증기발생량 시간당 45톤이하의 수관보일러	
19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1 00 00	아웃보오드 모터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99	기타	
30	선박용의 것	
30 10	300킬로와트이하 내연기관의 것	
30 30	2,000킬로와트초과 내연기관의 것	
8419 50 00 00	열 교환기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8425 3	기타의 원치 및 캡스턴	
39 00 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H S	품 목	수입요령
8426 1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천정주행 크레인, 트랜스포터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교각형 크레인,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19 00 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20 00 00	타워크레인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양하용의 것
49 00 00	기타(자주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양하용의 것
99 10 00	기타 선박의 데릭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27 20 10 10 20 8429 1 11	포크리프트 트럭 적재중량 3톤초과의 것 불도저와 앵글도저 무한궤도식의 것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입요령
8429 51	프론트 엔드 셔블로우더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로우더
52 10 00	엑스카베이터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31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9	기타	
10 00	유압 브레이카	1.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기계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43	인쇄기와 인쇄보조용 기계	
1	옵셋인쇄기계	
19 00 00	기계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쉬이트식의 것
8445 30	합사기와 연사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90 0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권사기

H S	품 목	수입요령
8446	직기(직조기)	
30	폭30센티미터초과의 직기(셔틀레스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북직기(자동직기, 반자동직기) ② 무북직기(레피어식, 그리퍼식, 에어제트식, 워터제트식, 기타의 식)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와 짐프사, 튜울, 레이스, 자수포, 트리밍, 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기계 및 터프팅기계	
1	원형편기	
12 00 00	실린더 직경 165밀리미터 초과의 것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평형편기와 스티치 본딩기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횡편기
8447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레이스기 ② 자수기 ③ 결망기
8454 30	주조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22 00 00	냉간 압연기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입요령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1	수평선반	
19 00 00	기타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	기타의 선반	
9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99 00 00	기타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 유니트 헤드 머시인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 볼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2	기타의 드릴링 머시인	
29	기타	
3	기타의 볼링 밀링 머시인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39 00 00	기타	
5	무릎형 밀링 머시인	
59 00 00	기타	
6	기타의 밀링 머시인	
69	기타	
8460 1	평면연삭기(총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19 00 00	기타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기타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29	기타	
3	샤프닝 머시인(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한한다)	
39 00 00	기타	
8461 10	플레이닝 머시인	
40	기어절삭기, 기어연삭기, 기어사상기	
50 00 00	톱기계 또는 절단기	

H S	품 목	수입요령
8462 10	단조기,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햄머	1. 다음의 것은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기타의 단조기 (프레스포함) ② 볼트, 넛트 훠머
2	굽힘기, 접음기, 교정기와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29 00 00	기타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31 00 00	수치제어식의 것	
39 00 00	기타	
9	기타	
91	액압프레스	
8463	기타의 금속이나 시멘트의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	
10 00 00	드로우 벤치(봉, 관, 프로우필,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1.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75 10 00 00	전기 또는 전자램프, 튜브, 밸브 또는 플레쉬벌브(외피가 유리제의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1. 한국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79 81 30 00	권선기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9 90 50	코팅머신(도포기)	
89 90 2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1.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9 90 99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조립기 ② 삽입기 ③ 공급기

H S	품 목	수입요령
8480 7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71 00 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1.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83 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90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40 90 20	기어박스	
8514 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8515 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3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아크 용접기기	
3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넷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고,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10	전압 1,000볼트이하의 것	
10 00	배전반	1. 다음의 것은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선박용의 것
20 00	자동제어반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90 10 00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1. 수입할 수 없음.

H S	품 목	수입요령
8702	10인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90 00 00	기타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웨곤과 경주용자동차를 포함한다)	
10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1. 수입할 수 없음.
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21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것	
22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의 것	
23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의 것	
24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의 것	
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31	실린더용량 1,500cc 이하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2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33	실린더용량 2,500cc 초과의 것	
90	기타	
8704	화물자동차	
10 00 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1.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입요령
8704 2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2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22	총중량 5톤초과 20톤 이하의 것	
23	총중량 20톤 초과의 것	
8704 3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3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기타	1. 수입할 수 없음.
8705	특수용도차량. 다만, 주로 사람 또는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예 : 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도로청소차, 살포차, 이동공작차, 이동방송차)	
30 00 00	소방차	1. 수입할 수 없음.
90 90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콘크리트펌프트럭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3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 수입할 수 없음.
31 00 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39	기타	
40 00 00	기어박스	
50 00 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0 00 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0 00 00	서스펜션 쇼크 업소오바	
93 00 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94 00 00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99	기타	

H S	품 목	수입요령
8709	공장, 창고,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포옴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1	차량	
11 00 00	전기식의 것	1. 수입할 수 없음.
19 00 00	기타	
90 00 00	부분품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아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10	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20	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30	실린더용량 250cc 초과 500cc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0	실린더용량 500cc 초과 800cc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	기타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19 00 00	기타	1. 수입할 수 없음.
9	기타	
92 00 00	휘일 림과 스포우크	1. 수입할 수 없음.
99 00 00	기타	

H S	품 목	수입요령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탱크트레일러와 탱커세미트레일러	1. 수입할 수 없음.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 수입할 수 없음.
	부분품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 탱커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선령 20년 초과의 것 (단, 순항선은 제외) ②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것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 선령 20년 초과의 것
	준설선	1. 다음의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펌프식으로서 준설펌프 구동엔진 4,000마력 이상의 것이면서 비자항식의 것

H S	품 목	수입요령
9009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복사기	
12 00 0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전자식 복사기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 프린트 및 기타 처리용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10 90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사진용 현상기기

<별지 1-1호 서식>

중고품 수입승인 실적(　　월분)

○ 총 괄 표

(단위 : $)

전 월 누 계		당　　월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승인내역

(단위 : $)

승인일자	실수요자	HS	품　명	수량	금액	주생산품	거래형태	국 가

* 품 목 별 : 섬유류, 일반기계, 공작기계, 건설기계, 해외건설용 기자재, 농기계, 금형, 선박, 조선기자재, 냉동기계, 전기기기, 광학기기, 차량

* 주생산품 : 농림수산, 광산물, 화학공업, 섬유류, 금속, 기계, 건설장비, 선박, 전자, 전기, 생활용품, 기타

* 거래형태 : 일반, 임대차수입(유상, 무상), 기증, 기타

<별지 1-2호 서식>

중고품 수입승인 실적(　/4 분기)

1. 총 괄 표

(단위 : $)

전 월 누 계		당　　월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주요국가별

(단위 : $)

구　분	일　본	미　국	구　주	기　타	계
건　수					
금　액					

3. 거래형태별

(단위 : $)

구　분	일반거래	임대차수입		기　증	기　타	계
		유　상	무　상			
건　수						
금　액						

『첨부』

2. 중고품수입제한해제 및 완화품목별 세부자료

○ 수입승인품목→수입자유화품목 : 90개품목

(단위 : 천불)

품목번호 (HS)	품 목 명	업 종	무역통계상 수입실적	무역특화 지 수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로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10 0000	원자로	일반기계	230,084	0.98
30 0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체(카아트리지)	〃	5,672	-1.00
40 0000	원자로의 부분품	〃	27,101	-0.83
8406	증기터빈			
81	출력 40메가와트 초과의 것	〃	105,505	-1.00
8411	터보제트, 터보 플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81	출력 5,000킬로와트이하의 것			
9090	기타	〃	6,756	-1.00
82	출력 5,000킬로와트초과의 것			
9090	기타	〃	158,551	-1.00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토			
30 3000	선박의 것	조선 기자재	44,474	-0.90
40 0000	콤크리트 펌푸	건설기계	27,101	-0.83
8414	기체 또는 진공펌므, 기체압축기와 펜, 펜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0 92	기타의 기계압축기			
9220	사용동력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의 것	냉동기계	46,555	-0.82
30	사용동력 373킬로와트 이상의 것	〃	191,226	-1.00
8419 89 9090	기타	일반기계	226,022	-0.79

품목번호 (HS)	품 목 명	업 종	무역통계상 수입실적	무역특화 지 수
8421 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9000	기타	조선기자재	18,512	-0.97
8425 1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 또는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11	전동식의 것	일반기계	13,016	-0.53
8425 3	기타의 윈치 및 캡스턴			
31 0000	전동식의 것	조선기자재	14,858	-0.11
8426 3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크레인	건설기계	10,483	-0.84
8427 20 10	포크리프트 트럭			
1010	잭재중량 3톤이하의 것	〃	2,410	0.97
8429 20 0000	그레이더와 레벨러어	〃	959	-0.48
40 2000	로드로울러	〃	10,174	-0.93
8430 3	석탄 또는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39 0000	기타	〃	7,087	-0.73
4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41	자주식의 것	〃	51,764	-0.97
8432 30 3000	이식기	농기계	112	0.67
8433 40 000	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 (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	11,240	-0.98
51 0000	수확, 탈곡겸용기	〃	7,273	-0.82
8443 59 1000	직물날염기	일반기계	1,498	0.71
8445 90 1000	정경기	〃	5,656	-1.00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밑판·덥개와 재봉기용 바늘			
29 9000	기타	〃	16,580	0.57
8455 10 0000	관 압연기	공작기계	3,231	-0.72
21 0000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	214,918	-0.99

품목번호 (HS)	품 목 명	업 종	무역통계상 수입실적	무역특화 지 수
8456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스마 아크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30 0000	방전방식에 의한 것	공작기계	36,967	-1.00
8457 10 0000	머시닝 센터	〃	60,375	0.04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1	수평선반			
11 0000	수치제어식이 것	〃	46,677	0.66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웨이타입유니트 헤드머시인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볼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2	기타의 드릴링 머시인			
21 0000	수치제어식의 것	〃	12,185	-0.97
40	기타 볼링 머시인	〃	16,681	-0.94
5	무릎형 밀링 머시인			
51 0000	수치제어식의 것	〃	4,810	-0.99
6	기타의 밀링머시인			
61 0000	수치제어식의 것	〃	31,240	-0.96
8460 1	평면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11 0000	수치제어식의 것	〃	6,160	-0.88
2	기타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21 0000	수치제어식의 것	〃	82,442	-1.00
3	샤프닝 머시인(공구 또는 커터를 연삭하는 것에 한한다)			
31 0000	수치제어식의 것	〃	15,110	-0.99
40	호닝머시인 또는 랩핑 머시인	〃	20,963	-0.87

품목번호 (HS)	품 목 명	업 종	무역통계상 수입실적	무역특화 지 수
8461 20 0000	쉐이핑머시인 또는 슬로팅머시인	공작기계	2,266	-0.93
30 0000	부로칭머시인	〃	13,528	-0.98
862 2	굽힘기·접음기·교정기와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21 0000	수치제어식의 것	〃	36,359	-0.91
8462 4	펀칭기와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달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1	수치제어식의 것	〃	37,929	-0.94
49	기타	〃	7,794	0.05
99	기타	〃	140,131	-0.59
8463 20 000	나사전조기	〃	3,104	-0.61
30 0000	선 가공기	〃	10,530	-0.50
8465 10	다작업기계(공구의 교환없이 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10,747	-0.59
9	기타			
91	톱기계	〃	8,814	-0.42
92	평삭기·밀링기 또는 몰딩기(절단방식에 의한 것에 한하다)	〃	4,542	-0.53
93	연삭기·샌딩기 또는 광택기	〃	4,414	0.15
94	굽힘기 또는 조립기	〃	968	0.70
95	드릴링 또는 모티싱기	〃	30,790	-0.88
96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	1,581	-0.38
8474 20	파쇄기와 분쇄기	건설기계	37,452	-0.53
8477 10	사출성형기	일반기계	77,317	-0.23
20	압출기	〃	91,826	-0.32
8479	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10	토목공사·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건설기계	32,272	-0.67
8526 10 0000	레이다기기	조선기자재	84,285	-10.00
91	항행용무선기기	〃	34,620	-0.50
92 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	11,130	0.73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고,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를 제외한다)			
10 2000	자동제어반	〃	155,734	-0.75
9000	기타	〃	95,768	-0.75

품목번호 (HS)	품 목 명	업 종	무역통계상 수입실적	무역특화 지 수
8701 20 00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트랙터	차 량	4	0.93
90 9110	농업용트랙서(50마력미만의 것)	농기계	2,087	0.58
9190	농업용트랙터(기타)	〃	97,569	-0.99
8705	특수용도차량. 다만, 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소d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 : 구난차 · 기중기차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송차)			
10 1000	기중기차	건설기계	71,685	-0.95
20 0000	이동식시추용의 데릭차	차 량	0	1.00
40 0000	콘크리트믹서운반차	〃	182	0.99
90 1010	농업용살포차	〃	490	-1.00
9030	이동공작차	〃	0	1.00
40	이동방송차	〃	8,936	-1.00
50	이동진료차	〃	0	-
70	제설차	〃	5,527	-1.00
8706 00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	164	0.91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90	기타	〃	846	0.94
8713	신체장애자용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와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0 0000	기타	〃	658	0.78
8714	부분품과 부속품I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1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11 0000	안장	〃	46	-1.00
20 0000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것	〃	195	0.77

○ 수입금지품목→수입자유화품목 : 16개품목

(단위 : 천불)

품목번호 (HS)	품 목 명	업 종	무역통계상 수입실적	무역특화 지 수
8705 90 9010	구난차	차 량	1,113	-0.94
9020	도로청소차	〃	8,172	-0.97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10 0000	제87-3호의 차량용의 것	〃	3,990	-0.90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10 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	9,452	-0.07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그 부속품			
21 0000	안전벨트	〃	14,343	-0.88
29	기타	〃	198,442	-0.38
70 0000	로오드휘일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26,683	0.23
91 0000	방열기	〃	2,019	0.83
92 0000	소음기와 배기관	〃	3,998	0.64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트카			
50	실린더용량 800cc초과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	6,201	-0.99
8713	신체장애자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와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것	〃	823	0.61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91 0000	프레임임과 포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	4,818	-1.00
93 0000	허브(코스터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및 프리 위일스프로켓 휘일	〃	5,018	-0.98
94 0000	브레이크(코오스트브레이킹 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	900	0.60
95 0000	안장	〃	531	-0.79
96 0000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	1,639	-0.28

품목번호 (HS)	품 목 명	업 종	무역통계상 수입실적	무역특화 지 수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10 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용의 것으로서 주거 및 캠핑용의 것)	차 량	24	-0.37
39 0000	기타	〃	428	0.40
80	기타의 차량	〃	5,731	-0.04
8901 10 000	순항성·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	선 박	26,639	-1.00
20 0000	탱거	〃	579,166	0.60
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1,098,231	0.62
8902 00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29,537	-0.45
8906 00 2000	구명보트	조선기자재	14,923	-0.76
9014 10	방향탐지용 콤파스	〃	12,649	-1.00
80 0000	기타의 항행용기기	〃	36,776	-0.79
9031 80 1000	초음파 군탐지기	〃	4,656	-0.85

ㅇ 수입금지품목→수입승인품목 : 2개품목

(단위 : 천불)

품목번호 (HS)	품 목 명	업 종	무역통계상 수입실적	무역특화 지 수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40	실린더용량500㏄초과 800㏄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차 량	4,441	-1.00
90	기 타	〃	584	-0.95

Ⅲ- 9. 1998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문서번호	5250-
보존기간	
보고일자	'98.11.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폐지계획 보고

1998년 11월

수 입 과

Ⅰ.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국내유치산업(특히 자본재산업) 보호

□ 연혁

○ '75.5월 Positive 방식으로 출발

○ '96.1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총 230개품목 ; 승인 161, 금지 69)

※ 형식 : '75.5(최초) 중고기계류수출입요령 → '81.6 제한조치품목수출입요령 → '86.1~현재 수출입별도공고

□ 현황

○ 수입제한품목('98.11월 현재) : 총 112개
- 수입승인품목 : 72개 품목(금형, 공작기계, 일반기계 등)
- 수입금지품목 : 40개 품목(중고자동차 및 그 부분품 등)

○ 승인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승인품목 관련단체 11개

○ 승인기준 : 현재 주로 환경, 안전측면을 기준으로 책정, 운영

□ 제도운영 평가

○ 그 동안 동 제도는 국내 자본재산업의 성장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 최근들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외부로부터는 '국제규범 위배'안으로는 '유명무실한 규제' 혹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비난에 직면하는 등 동 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Ⅱ.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폐지(계획) 배경

1. 폐지방침 확정 경과

○ '96. 1월 '97년말 폐지방침 수립
○ '96.12월 상기방침 재확인
○ '97.12월 폐지시기 1년 연장조치 및 대외적 공표
○ '98.3~4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결과 : '98말 폐지방침에 동의)
○ '98.11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부 규제개혁과제로 채택, '98년말 폐지방침 확정

2. 폐지사유

□ 국제무역규범 준수 필요성 증대

국제기구 등에서 문제점 제기

○ WTO 체제 출범, OECD 가입 이후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 등에서 동제도의 국제무역규범에의 위배 가능성 거론 및 개선 요구

※ '96.4 OECD/무역위, '96.6 일본 대한투자환경조사단,
'96.9 WTO/TPR, '96.10 한·EU 각료회담 등에서 문제점 거론

자발적 개선을 통한 대외 신인도 향상

○ 신품은 수입이 자류로움에도 중고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GATT협정」(수입수량제한 금지원칙) 및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수입허가절차협정」에 위배될 수 있음

○ 따라서 외부의 압력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 소지를 제거하고 대외신인도 향상을 도모

□ 중고품 수입규제지속으 타당성 상실

규제지속의 명분 미흡

○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 수입제한품목중 조선기자재,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조선 세계1~2위, 자동차 세계 5~6위), 기타 각종 기계류도 이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정부 정책방향과 불부합

- 전지구적 경쟁시대 도래, 신정부의 시장경제원리도입 확대방침 등을 감안, 「보호를 통한 경쟁력 향상」보다는 「경쟁을 통한 경쟁력향상」을 도모함이 바람직

규제의 실익 미미

○ 사실상의 자유화

- 승인대상품목의 경우 일단 구비서류만 갖추면 수요자의 수입승인 신청시 거의 전부 수입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자유롭게」 수입

○ 중고품 수요도 미미

- '97 기준으로 규제대상 중고품에 대한 신품 대 중고품간의 수입비율은 98 : 2, 총수입에 대한 중고품 비중은 0.1%로 매우 미미한 상태임

규제의 실익 미미

○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

- 중고품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사항 없이 서류(해외공관장 확인서) 등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소요

-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는 통합공고상의 개별법 혹은 수입선다변하제도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42개 품목)

○ 시장진입장벽으로도 가능

-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을 수입제한함으로써 고가의 신품수입 또는 수입중고품 시장의 비경쟁성 등을 초래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해 사실상 시장진입을 제약

대외적으로 세계 제12위의 무역국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 동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내대적으로 중고품 수입제한제도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완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Ⅲ.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의 보완대책강구 요청

- 중고 수입품으로 인하여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환경, 안전 측면에서의 위해를 예방키 위하여 관련부처에 중고품 수입자유화 방안을 사전 통고

※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기통보 조치('98.11.25)

○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폐지 조치 시행

- '99.1.1부로 중고품 수입제한 근거 폐지(수출입별도공고 개정)

▲ 첨부 1 : 업종별 중고품 수입제한 품목현황

▲ 첨부 2 : 중고품 수입실적

『첨부 1』

□ 업종별 중고품 수입제한 품목현황

업 종 별	계	HS 6단위	HS 10단위	승 인 기 관
수입승인품목	72	25	47	
중고의류	1	-	1	의류산업협회
일반기계	13	6	7	기계공업진흥회
공작기계	21	7	14	공작기계공업협회
건설기계	8	2	6	건설기계공업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금 형	1	-	1	금형공업협동조합
선 박	1	-	1	건교부(준설선)
조선기자재	15	1	14	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전기기기	4	4	-	전기공업진흥회
광학기기	2	-	2	광학기기협회
차 량	6	5	1	자동차공업협회
수입금지품목 (차량, 선박)	40	20	20	-
총 계	**112**	**45**	**67**	

『첨부 2』

□ 중고품의 수입비중

○ '97년의 경우, 신품 수입실적을 포함한 중고품 수입제한 대상품목의 총 수입실적 78억4천만$에 대한 중고품 비중은 2.0%(974건, 154백만$)에 불과

<중고품 수입중>

(단위 : 천불, %)

기 간	대상품목 총수입실적(A)	중고품 수입		중고품 수입 비중(B/A)
		건 수	수입액(B)	
'96년	11,656,439	1,154건	257,723	2.2
'97년	7,843,483	974건	154,773	2.0
('97.1~9월)	-	(755건)	(104,371)	-
'87.1~9월	-	426건	26,416	-

* 대상품목은 총수입실적은 신품과 중고품을 모두 포함한 실수입기준이며, 중고품 수입은 수입승인실적 기준임

- '97년 총수입실적 1,446억$중 중고품 수입비중은 0.1%(154백만$)에 불과

- 품목별로는 중고선박, 공작기계, 금형, 일반기계 등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수입국별로는 일본(승인건수의 64%, 금액기준으로 54%), EU, 미국 등의 순서

○ '98~9월의 경우, 동기간의 총수입액 691억$중 중고품 수입비중은 0.04%에 불과하고, 이는 전년동기대비 총 349건, 77백만$이 감소된 수치임

※ HS 10단위 기준 총 11,012개 전체 품목중 중고품 수입제한 품목수(112개)의 비중 : 1.02%

□ 업종별 중고품 수입제한 품목현황

업 종 별	규제대상 품목
수입승인품목	
중고의류	청바지
일반기계	제본기, 인쇄기, 연사기, 직기, 자수기, 주조기, 코팅머신 등
공작기계	압연기, 선반, 드릴링머시인, 밀링머시인, 연삭기, 절삭기, 단조기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불도우저, 로우더, 엑스카베이터,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금 형	사출식 주형, 압축식 주형 등
선 박	준설선
조선기자재	증기발생보일러, 선박용 내연기관, 열교환기, 선박크레인, 선박용 전동축 등
전기기기	노와 오븐,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금속용접기기 등
광학기기	전자식 복사기, 사진용 현상기기
차 량	모터사이클(500cc~800cc), 5톤이타 엔진, 1,500cc 이하 디젤엔진
수입금지품목 (차량, 선박)	트렉터, 상용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수용도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각종 부품, 선령 20년 초과/총톤수 1000톤미만의 순항선·유람선·화물선·화객선 등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사유

○ 국내산업 및 국제무역환경변화 등에 따른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폐지

○ 중고품 및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자유화에 따른 방위산업용원료·기재수입대상품목 승인제 폐지

○ 수출입공고 개정에 따른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수출관련 규정 삭제

2. 개정내용

○ 중고품에 대한 수입제한제도 폐지에 띠라 제1장 중고품의 수입조항을 삭제하여 중고품도 일반수입요령에 따라 자유롭게 수입허용

○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중 수출입공고 개정에 의하여 수출제한품목에서 해제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의 경우 수출제한품목이더라도 수출승인기관이 아닌 해외건설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록 해외건설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 중고품 및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자유화에 따라 제3장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수입조항 삭제

○ 기타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조문 정비

산 업 자 원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02) 500-2384 / 전송 (02)503-9438

문서번호 수입 55250-292
시행일자 1998. 12. 26
(제1안)
받음 내부결재
참조

제목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

국내산업 및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고품의 수입자유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출입별도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제1994-40호, 제1997-102호,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제1995-123호, 제1996-460호, 제1997-34호, 제1997-37호, 제1997-128호, 제1997-170호, 제1997-222호, 제1998-2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요지 1부.
2.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제목 :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 관보게재 의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수출입별도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고시의 관보게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수출입별도공고개정고시
나. 구 분 :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2호
다. 근 거 : 법제업무운영규정

붙 임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 2부. 끈.

// 계 속 //

우) 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02) 500-2384 / 전송 (02)503-9438

(제3안)

받음 : 수신처참조
제목 :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 통보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별도공고 개정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제1994-40호, 제1994-102호,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제1995-123호, 제1996-460호, 제1997-34호, 제1997-37호, 제1997-128호, 제1997-170호, 제1997-222호, 제1998-20호)를 붙임과 통보 하오니 관련업무 수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출입별도 공고 개정고시 1부. 끝.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받 음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각세관장),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장,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장,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호장, 한국의류산업협회장,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광학기기협회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장, 한국우주산업진흥협회장, 해외건설협회장

산업정책국장, 산업기술국장, 자본재산업국장, 생활산업국장, 무역조사실장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32호

수출입별도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제1994-40호, 제1994-102호,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제1995-123호, 제1996-460호, 제1997-37호, 제1997-128호 및 제1997-170호, 제1997-222호 제1998-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12월 2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중고품의 수입을 삭제한다.

제2장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등의 별도조치중 제2-2호 ①항중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으로 하고 제②항 및 제④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③항중 "미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를 "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로 한다.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가 수출자유지역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및 시설기재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더라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수일할 수 있다.

④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수출)을 삭제한다.

제3장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수입을 삭제한다.

제4장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중 제4-2조 1호 및 제4-3조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3. 제4-2조에서 규정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분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수출·수입의 승인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승인등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수출·수입승인등의 기관의 수출·수입승인등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32호
수출입별도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호, 제1993-121호, 제1994-40호, 제1994-102호,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49호, 제1995-123호, 제1996-460호, 제1997-34호, 제1997-37호, 제1997-128호, 제1997-170호, 제1997-222호, 제1998-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12월 2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 출 입 별 도 공 고

제1장 중고품의 수입<삭제, 1999.1.1>

제2장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등의 별도조치

제2-1조(목적) 이 장은 수출입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절차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승인절차등에 관한 별도조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등의 수출입) ①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수출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품목의 수량에 관하여 조정을 명한 물품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하여야 한다.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가 수출자유지역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및 시설기재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더라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된 물품을 해당업체의 공장내에서 자가

생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수출) <삭제, 1999.1.1>

제3장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수입

제4장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제4-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수입요령) 항공기 및 부분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다.

1. 항공기·우주비행제·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자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등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3조(수입승인 신청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제4-2조에서 규정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및 제작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중고품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4조(승인실적의 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은 매분기별로 수입승인 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산업피해조사품목의 수입

제5-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이하 “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이라 한다)과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이하 “잠정조치품목”이라 한다)의 수입승인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수입요령) ①한시적 수입제한품목은 별표 5-1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 표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잠정조치품목은 동 품목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별표 5-2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제5-3조(수입승인요령의 공고) 별표5-1 및 별표5-2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 수입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주무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5-4조(승인실적의 보고) 별표5-1 및 별표5-2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입승인실적을 연도 경과후 15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

제6-1조(목적) 이 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수출입공고 제6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통상 및 산업정책상 필요한 물품
2.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국내 물가안정등 원활한 물자수급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3조(수출입요령) ①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중 별표6에 게기된 물품은 동표의 수출·수입요령에 의한 수출·수입 승인 또는 확인(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수출·수입할 수 있다.

②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수입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부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수입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수출입승인등요령 공고) 별표6에 의한 수출입승인등의 기관의 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 수출입승인등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협의) 통상산업부장관은 제6-3조제2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수출·

수입의 승인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승인등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한 수출·수입승인등의 기관의 수출·수입승인등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5-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수입제한 품목

H S	품 목	수입요령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1.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나. 변성유장	
21	(1) 유장에서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 한국유가공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 다음 각호의 것은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음. ①우유미네랄(칼슘) 농축제품(미네랄 강화식품 제조를 위한 첨가물 용도에 한함) ②유청 단백질 농축제품 및 유단백질 농축제품(단백질 강화식품 제조용 첨가물 용도에 한정) ③칠레산 특산제품 ④네슬레사의 세레락 제조를 위한 원료 ⑤HS 0404 10 2190 및 0404 10 2900에 해당하는 품목중 '97.1.1 HSK개정 이전에 HS 0404 10 1000 및 0404 10 9000에 분류되었던 품목 2. 수입제한물량은 다음 각호와 같음. ① 97.3.7~98.2 : 20,521톤 ② 98.3~99.2 : 21,691톤 ③ 99.3~2000.2 : 22,927톤 ④ 2000.3~2001.2 : 24,234톤
90	(라) 기타	
2900	(2) 기타	
90 0000	2. 기타	
1901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	3. 기타	
2000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제품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90	기타	
10	장류	
30	고추장	1.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수입제한 기간은 1999.12.31일 까지임.

[별표 5-2]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품목

[별표 6]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등의 수출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3	다랭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수>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바누아투, 벨리즈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것 2. 기타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32 0000	황다랭이(터너스알바카레스)	
0303	냉동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4	다랭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비니토우(유티너스 〈카추워누수〉 팰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42 0000	황다랭이(터너스 알바카레스)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4	다랭이·가다랭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	다랭이	
11	기름담근 것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바누아투, 벨리즈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랭이의 것 2. 기타의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12	보일드한 것	
19	기타	

산 업 자 원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전화(02)500-2384/전송 503-9438

문서번호 수입 55250-84
시행일자 1998. 4. 8

(제1안)

받음 내부결재

참조

제목 수출입별도공고(제1장 중고품의 수입 개정·고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4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별도공고(제1장 중고품의 수입)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①제1-4조(중고품의 수입)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1-4조(중고품의 수입)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을 포함하는 산업설비(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중고품의 수입) ---------- ---------- ---------- ----------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

②제1-1조, 1-3조, 1-5조, 1-6조, 1-7조, 2-2조, 3-5조, 4-4조, 5-3조, 5-4조, 6-3조, 6-4조, 6-5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8. 4. 10일부터 시행한다. 끝.

// 계 속 //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전화(02)500-2384/전송 503-9438

(제2안)

수신 한국무역협회장

제목 일간무역 게재 의회

다음과 같이 일간무역 게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 수출입별도공고(제1장 중고품의 수입) 개정고시

①제1-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②제1-1조, 1-3조, 1-5조, 1-6조, 1-7조, 2-2조, 3-5조, 4-4조, 5-3조, 5-4조, 6-3조, 6-4조, 6-5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8. 4. 10일부터 시행한다.

2. 구분 : 고시

3. 근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 4호

4. 거재일자 : 1998. 4. 10. 끝

(제3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수출입별도공고(제1장 중고품의 수입) 개정고시 통부

1. 수출입별도공고(제1장 중고품의 수입) 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①제1-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②제1-1조, 1-3조, 1-5조, 1-6조, 1-7조, 2-2조, 3-5조, 4-4조, 5-3조, 5-4조, 6-3조, 6-4조, 6-5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8. 4. 10일부터 시행한다.

// 계 속 //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전화(02)500-2384/전송 503-9438

2.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개정된 별도공고 내용에 따른 수출입승인요령개정(안)을 마련하여 4.11일까지 우리부에 승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신처 자본재산업국장, 생활산업국장,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20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별도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4월 1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 출 입 별 도 공 고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1-4조(중고품의 수입)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1-4조(중고품의 수입)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품을 포함하는 산업설비(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중고품의 수입) ---------- ---------- ---------- ----------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

②제1-1조, 1-3조, 1-5조, 1-6조, 1-7조, 2-2조, 3-5조, 4-4조, 5-3조, 5-4조, 6-3조 6-4조, 6-5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도공고상의 중고품 수입제한품목 자유화방안 보고

'98. 4

무 역 정 책 실
(수 입 과)

최근 국내산업 및 국제무역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98년 하반기에 별도공고에 의한 중고품 수입승인 및 금지품목을 자유화하되, 수입금지품목중 자동차관련 부분은 수입선다변화제도와 일정을 같이하여 '99.6월말까지만 운영토록 하는 「자유화방안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현황

□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연혁

○ **'81년 '제한조치품목 수출입요령'** 제정시 중고품에 대한 수출입요령을 포함

- 최초에는 수입가능 품목을 해운, 수산, 조선, 전자 등 37개 분야로 설정하고, 이후 점차로 품목 확대(Positive 방식)

○ **'96.1월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230개의 수입제한 품목 고시(수입추천 161개, 금지 69개 품목)

○ **'97.1월 수입제한품목 축소** 조정(230개 → 213개 품목)

○ **'98.1월 수입제한품목 축소** 조정(213개 → 112개 품목)

- 수입승인품목 : 72개 품목(금형, 공직기계, 일반기계 등)
- 수입금지품목 : 40개 품목(중고자동차 및 그 부분품 등)

※ HS 10단위 기준 총 11,012개 품목중 중고품 수입제한품목의 비중 : 1.02%

□ 중고품의 수입비중

<중고품 수입중>

(단위 : 천불, %)

기 간	대상품목 총수입실적(A)	중고품 수입		중고품 수입 비중(B/A)
		건 수	수입액(B)	
'96년	11,656,439	1,154건	257,723	2.2
'97년	7,843,483	974건	154,773	2.0

* 대상품목은 총수입실적은 신품과 중고품을 모두 포함한 실수입기준이며, 중고품 수입은 수입승인실적 기준임

○ '97년의 경우 총 78억4천만$에 상당하는 수입제한 대상품목 총수입실적에 대한 중고품수입 비중은 **2.0%(974건, 154백만$)**에 불과

- '97년 총수입실적 1,446억$중 중고품수입비중은 **0.1%(154백만$)**에 불과
- 품목별로는 **중고선박, 공작기계, 금형, 일반기계** 등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수입국별로는 **일본32%, EU, 미국** 등의 순서

2.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대외적으로는,**

○ **일본, EU** 등 이해당사국들이 WTO/TPR, OECD/무역위 등과 양자채널을 통해 우리 **중고품 수입제한제도의 부당성 거론**

- WTO 수입허가절차협정에는 중고품수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규칙의 적용은 중립·공정·공평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중고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제한은 동 협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담됨**

□ **대내적으로는,**

○ 첫째, 고가의 신품구매로 인한 **무역수지 악영향**이 우려되고, 또한 값싼 외국산 중고기계를 활용하는 **소자본 시설투자가 어려워져** 벤처기업 활성화 등 소규모 창업지원이라는 **정부시책에 배치**

○ 둘째, 별도공고에 의한 수입제한 이외에도 **수입선다변하 및 통합공고에 의해 중복규제** 되는 품목이 **22개 품목**에 해당

・수입선다변화로 지정괸 품목 : 5개 품목(건설 및 수송기계)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 : 15개 품목(건설 및 공작기계)
・수입선다변화 및 통합공고 동시 해당 : 2개 품목(엑스카베이터 등)

○ 셋째, **수입승인기관별 승인조건상의 문제점**으로서 중고품 수입규제가 형식상으로는 승인조건으로 국제규범상 양해될 수 있는 **보건, 위생, 안전, 품질,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 중고품수입제도 운영목적이 사실상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수량규제**에 있으며, **개별법에 이한 법적기준이 미약**(통합공고 대상품목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을 해야할 차별성 부재)

○ 넷째, 중고품 수입승인제도가 불필요한 중고품 수입을 **승인단계 이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이나,

- 일단 구비서류만 갖출 경우 사실상 전부 수입승인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비춰질 우려가 큼

3. 개선방안 검토

□ **제1안 :** 당초 **'97.12월에 제시**되었던 방안으로서, '98년 하반기에 중고품 수입제한 품목수를 대폭 축소・조정하고, 존치품목은 **통합공고에 통폐합**시켜 운영

□ **제2안 : '98년내에 자유화를 추진**하되, **자동차관련 품목**은 수입선다변화제도와 일정을 같이하여 **'99.6월말까지만 존치**

▲ 제2-1안 : **'98.7.1일자**로 수입승인 및 금지품목을 자유화하되, 자동차관련 부분만 '99.6월말까지 존치

▲ 제2-1안 : **'99.1.1일자로** 수입승인 및 금지품목을 자유화하되, 자동차관련 부분만 '99.6월말까지 존치(제2-2안을 채택하는 경우, **'중고품을 포함하는 산업설비에 대한 수입승인'**을 산업자원부에서 기계공업진흥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병행추진)

검토결과 ⇒ 제2-2안 채택

○ **제1안을 채택하는 경우,** 별도공고상의 수입제한대상이 되는 중고품목들이 개별법령에 의한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합공고로의 단순한 통합은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제2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부 품목담당과 및 관련업계에서도 중고품 수입제한제도의 **연내 자유화 방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단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주장하고 있음

- 우리부 공업국 및 관련업계에서는 '98.1.1일 대폭적인 품목자유화(47% 축소) 추진시, 추가적 자유화조치를 금년 하반기중 실시 할 것을 이미 대외적으로 약속한 바 있고,

- 또한 내수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현 경기침체 상황하에서, 품목에 따라서는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도 있음을 강조

○ **결국, 중고품 수입제한제도의 '98년 하반기 자유화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신뢰성을 훼손해가면서 그 시기를 6개월 정도 앞당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2-2안을 채택함**

4. 향후 추진 일정

- ㅇ '98.4 별도공고상의 **'중고품을 포함하는 산업설비'**의 수입승인 기관을 산업자원부에서 **기계공업진흥회**로 변경·고시
- ㅇ '98.12 **'제2-2안'**에 따라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작업 추진
- ㅇ '99.1.1 중고품 수입자유화 시행(단, 수입선다변화품목과 일치하는 자동차 관련 품목은 '99.6월까지만 금지품목으로 존치

『첨부』

<현행 업종별 중고품수입제한품목 현황>

업 종 별	계	HS 6단위	HS 10단위	승 인 기 관
수입승인품목	72	25	47	
중고의류	1	-	1	의류산업협회
일반기계	13	6	7	기계공업진흥회
공작기계	21	7	14	공작기계공업협회
건설기계	8	2	6	건설기계공업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금 형	1	-	1	금형공업협동조합
선 박	1	-	1	건교부(준설선)
조선기자재	15	1	14	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전기기기	4	4	-	전기공업진흥회
광학기기	2	-	2	광학기기협회
차 량	6	5	1	자동차공업협회
수입금지품목 (차량, 선박)	40	20	20	-
총 계	**112**	**45**	**67**	

중고품 수입제도의 변천

○ 초기(1981. 6. 30)

- “제한조치 품목 수출입 요령”(상공부 고시 제81-22)제정시 중고품 수출입 요령을 포함하여 규정(제3장)

  · 수입가능품목 : 해운, 수산, 조선, 전자등 37개분야 시설 및 제품
  · 수입요령 : 주무부처장 및 소관 단체장이 수입추천

○ 제1차 개정(1985.4.12) : 엄격 규제

- 개정배경 : 종전제도 운용의 방만성으로 인한 중고설비 도입 급증 및 무계획적인 중고설비 투자로 국내산업의 생산성 저하
- 주요골자 : 수입허용 대상의 대폭축소 및 추천업무의 상공부 일원화

○ 제2차 개정(1988.9.16) : 수입규제 소폭 완화

- 개정배경 : ’85년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의 애로 등 중고품 수입의 엄격한 규제에 따른 불합리성 노정
- 주요골자 : 해외건설업체 유휴장비 반입허용 확대, 중고선박의 선종 및 규모의 현실화, 수입추천업무 일부 위탁

○ 제3차 개정(1990.4.10) : 수입규제 대폭완화

- 개정배경 : 중고설비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업계으 시설투자 애로점증과 허용대상업종 및 용도제한에 대한 업계의 불만증가
- 주요골자 : 제조용 설비 및 기계류 수입 허용범위확대, 중고선 도입 기준확대 및 특수선박의 신규도입 허용, 기계류의 추천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 제4차 개정(1991.12.20) : 중고선박 수입허용범위 확대

- 개정배경 : 중고선박의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하고 업계 자금 부담을 경감
- 주요골자 : 중고선박 도입범위 확대(유조선, 유류제품운반선, 폐기물 운반선 등) 중·대형 컴퓨터 및 전단면굴착기 (TBM) 도입허용

○ 제5차 개정(1993.4.15) : 중고선박 수입제한 대폭완화

- 개정배경 : 중고선박 수입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적선을 적취율 제고 및 연안운송의 활성화
- 주요골자 :
  - 중고선박 수입시 해운항만청장, 수산청장이 직접 수입추천(종전에는 실수요자 확인후 상공자원부장관이 수입추천
  - 도입가능 대상 선박규모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국내건조 연계조건 및 용도제한 폐지 등 중고선박 도입기준 대폭완화
  - 수입을 불허하던 중고섬유기계(방직기계, 직조기등)에 대하여 업체의 설비투자 경비절감을 위해 국산불가의 경우 수입허용

○ 제6차 개정(1993.12.23고시, '94.1.1시행)

- 개정배경 : 국내외 취항중인 카훼리,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의 노후선박 대체를 원활히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 한·중항로 투입용 카훼리에 한해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 제외, 중고 카훼리의 도입선령을 완화(10년이하 → 15년이하)
  - 중고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에 대해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 제외(4,000톤이상 중고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 도입 허용)
  - 철장재운반선의 중고선 도입은 선령 및 톤수제한 배제(1,000톤미만도 도입허용)

○ 제7차 개정(1994.4.15 고시・시행)

- 개정배경 : 해외건설업계등의 건의에 따라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94.3.18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 해외 중고건설장비의 수출입규제를 완화키로 함
- 주요골자 :
  ・해외에서 특정용도(평화의 댐건설, 간척사업용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장비에 대해 해외로의 재수출을 전면 허용
  ・해외건설현장에 소재한 중고건설장비 중 국산장비에 대해 국내수입을 전면 허용

○ 제8차 개정(1994.8.1 고시・시행)

- 개정배경 :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어업환경변화에 대비하고 특수용도선박의 수요에 부응하여 중고선박도입이 불가피한 선박의 원활한 확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락된 선박의 수입추천과 관련 근거를 명백히 하고 변칙적인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근거를 명시
- 주요골자 :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락된 선박도 수출입별도공고에 따라 일반 중고선박과 같이 사업주무부처장의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토록 근거 명시
  ・철강어선중 원양유잠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의도입기준을 완화
  (현행 300G/T이상 → 200G/T이상으로)
  ・FAO의 공해조업어선 규제와 관련한 협정 채택으로 공해상 조업중인 편의국적어선의 조업규제에 대비 편의국적어선의 국적취득을 위한 수입허용
  ・공공목적 수행등 특수용도선박의 수입허용 범위 확대[소방선, 해나나구조선, 공작선(해저케이블설치・보수용 및 케이칼선박 수리용), 오염방제선을 추가

중고품 수입제도 및 장·단점 검토

1. 중고품 수입제도 개요

○ 근거 : 대외무역법 제18조에 의한 수출입공고 제3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중고품의 수출입)

○ 목적 : 저가 노후화된 중고품도입에 따른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국내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품에 대하여는 신품과 달리 전반적인 수입규제하에서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을 허용(Positive System)

2. 수입허용 대상 및 수입요령

구 분	허 용 대 상	수 입 요 령
해외에서 용역,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투입한 기자재		○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
	○ 해외건설업체가 '85.12.31 이전 취득하여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국산공급이 불가한 25종 중기	- 건설부장관의 확인
	○ 해외건설용으로 3년이상 사용후 간척농지 개발용으로 사용할 물품	- 건설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의 확인
	○ 해외건설업 철수업체가 '83.12.31이전에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기자재	- 건설부장관의 확인
	○ 해외건설사업에 3년이상 사용된 기자재로 평화의탬 건설사업용 기자재	- 건설부장관의 확인
선 박 (HS 8901, 8902, 8904, 8905)	○ 카훼리(1,000G/T이상, 선령 15년 이하) ○ 탱커(1,000G/T이상, 선령 10년이하 폐기물운반선은 500G/T이상) ○ 냉장 또는 냉동선(1,000G/T 이상 선령 10년이하) ○ 기타화물선과 화객선(1,000G/T 이상 선령 10년이하) 단, 철강재운반선은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음	○ 사업주무부처장의 수입추천

구 분	허 용 대 상	수 입 요 령
	○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선박 - 철강어선(원양유자망어업 전업대책용 원양어선 300G/T이상, 선령 10년이하) - 냉동운반선(원양어업용으로 400G/T이상, 선령 10년이하) ○ 예인선(이·접안용, 선박구난용으로 선령 10년이하) ○ 준설선, 기중기선, 부선거	
기계류 및 산업설비	○ HS 82류~90류중 국산불가품목 - 제조업을 여위하는 실수요자의 제조용 설비 - 부두, 항만공사용 장비 (무한궤도식 크레인, 기중기차) - 공장건설용 잭과 호이스트 - 철도 또는 유지보수용 차량 - 중형 및 대형 컴퓨터 본체와 주변기기 - 전단면 터널굴착기(TBM) ○ 기계류·부품·소재 국산개발대상 품목 또는 공업기반기술 개발대상 품목중 개발을 위한 견본품 ○ 수입된 기계류의 정비 또는 재생을 위하여 재반입조건으로 반출한 주요부품	○ 품목별 소관단체장 수입추천 - 다만, 30만불이상 일관생산설비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 또는 추천 ·금형류(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밀전자계측기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기기기류(한국전기공업진흥협회) ·공작기계(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기타기계류(한국기계공업진흥회)

3. 현행 제도 유지시 장·단점 검토

<장 점>

○ 저가 노후화된 중고품 수입에 따른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저하 방지
○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혁신 및 효율적인 투자촉진과 경쟁력제고 저해요인을 방지하여 관련산업의 보호
○ 중고소비재등 수입제한으로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유통질서 유지

<단 점>

○ 중고품 수입에 대한 규제로 업계의 시설투자 애로 및 허용대상 품목 및 용도 제한등에 따른 업계 불만 증가

4. 현제도 폐지시 장·단점 검토

<장 점>

○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중고품을 수입할 수 있어 시설투자 애로 및 업계 불만 해소

<단 점>

○ 국내기업의 단기적인 투자비 절감만을 중시한 외국의 저가 노후화된 중고품 수입으로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저하 및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 소비재등 무분별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요통질서 혼란예상
○ 저가의 외국중고품과 가격면에서 경쟁불가능한 국내 관련산업의 국산개발의욕 저하 및 국산화계획 차질
○ 에너지 다소비형산업, 경쟁력 상실업종등에 대한 무계획적인 중고설비 투자로 인한 국민경제 및 국내산업기반의 취약성 우려

Ⅲ- 10. 1999년의 수출입별도공고 운영

산 업 자 원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02) 500-2384 / 전송 (02)503-9438

문서번호 수입 55250-113
시행일자 1999. 5. 12

받음 기획관리실장
참조 기업규제심의담당관

제목 규제심사 요청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중인 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코자 하니 이에 대한 규제심사위원호의 사전심사를 행정규제기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붙임 1. 수출입별도공고 중 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대미 황새치 수출요령 신설을 위한 별도공고 개정 검토 보고서 사본 1부. 끝.

무 역 정 책 심 의 관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호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별도공고(제1998-132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5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 출 입 별 도 공 고 중 개 정 고 시

수출입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등의 수출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3	다랭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수> 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32 0000	황다랭이(터너스알바카레스)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바누아투, 벨리즈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것 2. 기타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6 69 9090	기타어류.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기타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3	냉동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4	다랭이(터너스 속의 것)와 가다랭이 또는 줄무늬 비니토우(유티너스 〈카추워누수〉 팰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42 0000	황다랭이(터너스 알바카레스)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바누아투, 벨리즈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랭이의 것 2. 기타의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7 79 9090	기타 어류.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기타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4	어패류의 피레트와 기타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0	신선 도는 냉장한 피레트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90	기타	
9000	기타	
20	냉동한 피레트	
9000	기타	
90 9000	기타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4	다랭이·가다랭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①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바누아투, 벨리즈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황다랭이의 것 2. 기타의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다랭이	
11	기름담근 것	
12	보일드한 것	
19	기타	
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다랭이	
11	기름담근 것	
12	보일드한 것	
19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6]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제한 품목

HS	품 목	현행 수출입요령	개정 수출입요령(안)
0302 32 0000	황다랭이(티너스알바카레스)	1. (생략) ①(생략) 2. (생략)	1. 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69 9090	기타	<신 설>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3 42 0000	황다랭이(티너스알바카레스)	1. (생략) ①(생략) 2. (생략)	1. 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79 9099	기타	<신 설>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4 10 1090 9000 20 9000 90 90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신 설>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604 14 1011 1012 1019	기름담근 것 보일드한 것 기타	1. (생략) ①(생략) 2. (생략)	1. 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9 1090 9090	기타 기타	<신 설>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대미 황새치 수출요령 신설을 위한 별도공고 개정 검토

□ 검토 배경

○ 미 상무성 국립수산국이 ICCAT(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협약에 근거, 일정 규모 이하의 황toco수입 금지규정(Swordfish Import Monitoring ProgramO을 마련 '99.6.14.부터 시행키로 함.

- 동 규정에 따르면, 33파운드 미만의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33파운드 미만의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수입이 금지되고,
- 수입가능 품목의 경우도 어획수역 및 어획어선 등이 명시되고, 수출국 정부관리 또는 정부 피위임자가 서명한 적합증명서(COE : Certificate of Eligibility) 첨부 의무 부과

○ 이에 따라 황새치 대미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증명서 발급절차 등의 수출요령 신설 필요

□ 해양수산부 요청 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내 어족자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수산업법 등에 동 사안을 담기에는 부적절 한다는 견해 표명

○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 제6장(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에 황새치 수출 요령을 신설해 줄 것을 우리 부에 요청

□ 검토 결과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4호의 “통상정책상 필요”의 개념을 외국의 국내법적 제한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절차 신설이 양국간 통상협력 증진 및 지속적 무역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또한 현행 수출입별도공고 제6장에는 황새치건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황다랑이 수입확인요령’이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중임

*** 황다랑이 수입확인요령 운영 배경**

- 현행 수출입별도공고 제6장에는 동부열대 태평양에서 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등의 6개국이 선망어법으로 포획한 황다랑이의 수입금지 규정 운영중
- 이는 선망어법으로 포획한 동부열도 태평양산 황다랑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대비 황다랑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내 규정(해양포유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임)

□ 향후 조치 계획

○ 수출입별도공고 제6장을 개정, 황새치에 대한 대미 수출요령 신설

<적용대상 품목 및 수출요령>

적용대상 품목	수 출 요 령
0302 69 9090(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3 79 9099(냉동한 것) 0304 10 1090(신선·냉장한 필레트) 10 9000(필레트 아닌 어육) 20 9000(냉동한 필레트) 90 9000(기타) 1604 19 1090(통조림) 19 9090(통조림 아닌 조제식품)	1.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서양산 황새치 또는 대서양산 황새치로부터 추출된 어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미국내 규정이 ’99.6.14. 발효 예정이고 배를 통한 대미수출기간이 약 1개월 소요되므로, 최소한 5월 중순까지는 별도공고 개정완료 필요

- 별도공고 개정이후 해양수산부는 적합증명서(COE) 양식, 발급절차 세부확인요령을 작성, 우리 부 합의를 얻어 확인업무 수행 예정

산업자원부고시 2000-100호(2000.9.25)

수출입 별도공고 개정(안)

□ 배 경

○ 일본은 '99.11월 제16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벨리즈 및 온두라스에 대한 ICCAT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대서양 황새치 수입을 금지키로 함 "

- 수입금지 조치 시행을 위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000. 8. 1부터 황새치 적합성확인서(Swordfish 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수출품에 부착하도록 함

○ 따라서 황새치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이 필요함

□ 개정(안)

○ 일본으로 수출되는 황새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제8조 및 별표 3)

- 현행 미국에 수출하는 황새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본을 추가함.

□ 국내업계의 영향

○ 국내 업계에서는 대서양산 황새치 어획량은 없으므로 수출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총어획량	태 평 양	인 도 양	기 타
474t	445t	25t	4t

- 황새치 적합성 확인서를 부착하지 않는 제품은 일본으로 수출할 수 없으므로 국내업계 지원업무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00호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수출입공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별도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0년 9월 25일
산업자원부 장관

수출입 별도공고중 개정(안)

수출입 별도공고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HS 제3002.69.9090호, 제0303.79.9090호, 제0304.10.1090호, 제0304.10.9000호, 제0304.90.9000호, 제1604.19.1090호 및 제1604.19.1090호의 수출요령중 “미국으로 수출되는 황새치”를 “미국, 일본으로 수출되는 황새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인등 세부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에 의한 수출입승인 등의 세부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Ⅳ. 輸入先다변화제도

Ⅳ- 1.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실시

(1) 수입선다변화제도 도입

○ 근거 : 상공부공문 수입 1311-3814('77. 12. 31)

○ 운영 : 동남아지역산의 다음 물품수입시 한국수출입오퍼협회의 오퍼확인을 받아 외국환은행의 수입승인

○ 대상품목

CCCN	품 목
3205	유기합성연료(Vat Blue 1에 한함)
3907	불소수지제의 Tape, Film, Ring 봉 및 관
7315	합금동의 박판중 Stainless Steel Sheet 및 Strip
8202	고속도강의 Hack Saw Blade
8206	베니아절단용 Blade 중 rotary knife
8448	Drill chuck, Chuck Lathe
9024	냉장고용 Thermostat

(2) 제도운영

(가) 5.1 조치(상공부공문 수입 1311-953)

○ 1978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상공부고시 제78-8호, '78.5.1)에 의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변경되는 전품목에 대해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

- 대상품목 : CCCN 4단위 기준 100개(앞의 수입자유화품목 참고)

(나) 5.12 조치(상공부공문 수입 1311-1050)

○ 품목추가

CCCN	품 목
2901	스티렌모노마
2902	Freon-12
7315	고탄소강 및 합금강의 봉강
8523	전력케이블

(다) 5.20 조치(상공부공문 수입 1311-1142)

○ 수입허용품목 통보

- 대상품목 : 1978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개정으로 추가로 지정된 100개 품목중 16개 품목

  · 벤젠, 향료, PVA 섬유, 합성고무 중 IR고무, 어망용 PVA 방적사, 유리, 빌레트, 펄프, 곡물건조기, 파종기, 이앙기, 탈곡기, 사료절단기, 콤바인, 8톤이상의 화물차, 악기용의 현 등

(라) 6.14 조치(상공부장관 수입 1311-1396)

○ 운영방식 변경

- 품목지정을 수입자유화되는 전품목에 대하여 지정하던 방식을 지양하여 수입규제품목과 수입허용품목을 구분하여 수입규제품목에 한하여 수입선 다변화품목 운영

○ 수입선제한내용

- 수입선제한은 일본에 한정함.
- 수입선이 일본이라 함은 원산지가 일본인 경우를 지칭하며 다만, 원산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선적지가 일본인 경우도 이에 해당함.
- 본 수입선제한조치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일수입규제품목중 수입허가기준

대 상	허 용 기 준
유지보수용 시설 또는 부품	○ 기존보유시설의 유지보수용으로서 이의 도입없이는 공정에 대한 성능보장과 제품에 대한 품질보장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부품
수출용 또는 외화획득용 기자재	○ 수출품의 품질향상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기자재로서 대일 수입이 불가피한 것

대 상	허 용 기 준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기자재	○ 일본의 특허품(특허원은 불포함) ○ 일본에서 개발된 고유의 기자재로 타지역에의 수입선 전환이 곤란한 것(신청인이 공적으로 입증한 것에 한함)
합작투자, 기술제휴 또는 차관협정상 수입이 제한된 기자재	○ 정부인가서(합작투자사업계획서, 기술도입계약서, 차관협정서 포함)상 수입선이 일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기 타	○ 한해, 수해 및 기타 물가인정상 긴급 대일수입이 불가피한 기자재

○ 품목추가(CCCN 4단위 기준, 78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0506	원피의 설	3503	제라찐, 아교
0515	우혈분(午血紛)	3807	테레핀유(油)
0904	후추	3808	로진
1302	생송지(生松脂)	4001	생고무 및 라텍스
1510	粗製올레인산	4428	기타 목제품
1512	동식물성유지	4807	바라이다지(紙)
2804	아르곤	4819	판지제의 레이블
2817	가성소다	5101	합성섬유의 장섬유사
2818	산화마그네슘		(나이론 F사, 폴리에스텔 F사, 폴리프로필렌 F사 제외)
2823	적색산화철		
2830	염화칼슘	5309	기타 수모사
2832	염소산칼륨	5310	〃
3213	형광잉크, 카본잉크, 인쇄회로기판제조용잉크	5503	설면(屑綿)
		6111	의류의 부속품등

CCCN	품 목	CCCN	품 목
6301	중고의류, 모제의 설등	8418	여과용, 청정용기기
6302	넝마, 로프의 설등	8421	분무용기기
7020	유리섬유사 및 동제품	8422	Hoist, 유압식 Jack
7302	ferro-silicon Alloy	8423	불도저, 굴착기, 로더
7303	일반고철	8431	섬유소펄프제조기계, 지・판지제조용기계
7310	Ulbon P.C용 wirerod		
7312	냉간압연 강대	8435	옵셑 Printing m/c
7313	A. G. 강판	8444	rolling mill for metal working
7318	철강의 강과 소관	8452	회계기
7321	철구조물등	8453	자동자료처리기계
7331	철강제의 못등	8454	등사기등 사무용기기
7332	철강제의 볼트・너트	8455	탁상전자계산기의 부분품
7335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8459	기타의 기계류
7336	발전소용 burner, mantle	8461	보일러용 증기트랩, 보일러용 안전판
7338	철강제의 가정용품		
7418	동제 가정용 위생용품	8463	발전소에 사용하는 기어
7604	의약품 포장용 알미늄박	8464	gasket 등
7608	알미늄제의 구조물	8517	전기식 벨, 싸이렌 등
8204	모루류, 수작업용의 나사송곳, 나이프류, 바늘류, 대패류	8520	휠라멘트전구, 방전등구
		8524	아아크등용 탄소봉, 축전지용 탄소봉
8209	칼날		
8210	나이프류	8701	농업용이외의 일반트랙터
8214	스푼, 포크, 국자등	8703	조명차, 공작차, 방사선차
8301	자석식, 전자식의 실린더 및 동 부분품	9009	Slide projector
		9804	만년필펜촉용 볼포인트
8406	디젤엔진(50 BHP이상), 가솔린엔진(20HP 이상), 자동차용엔진(300HP 이상)	9805	샤프페슬용 연필심
		9810	압전기식 또는 밧데리식 라이타제조용 점화장치
8410	액체펌프	2813	화이트카본중 Aerosil, Syloid
8411	발전소용 gas turbin에 사용되는 콤프레서	8447	목재가공기계

○ 수입허용품목

DMT, TPA, 인쇄회로기판제조용잉크중 Etching ink, 섬유제조용 PVA, 섬유제조용 초산염 셀룰로오즈, 주물용 목형, 저탄소강판 및 대, 알루미늄설, 곡물건조기의 부품, 초예기, 농기계부분품, 섬유기계, 자동차용 gasket·glow plug·배전반·Diod, 미조립의 트럭트랙터

(마) 8. 14조치(상공부공문 수관 1311-2016)

○ 품목조정

구 분	CCCN	품 목	비 고
추 가	8702	8t 이상의 완전조립된 화물자동차	
해 제	4009	자동차용 brake hose	부분삭제
	4403	삼제원목(ceder)	〃
	7310	ulbon p.c. 용 wire rod	
	7312	냉간압연강대 (두께 0.18㎜ 이하)	
	7335	코일스프링용 자동차용의 것	〃
	8424	농업용 트랙터	〃
	8464	자동차용 brake packing	〃

(바) 9. 16 조치(상공부공문 수관 1311-2230)

○ 품목추가 : 35개(CCCN 4단위 기준)

CCCN	품 목	CCCN	품 목
28.04	적린	37.02	사진용 필름중 흑백
28.13	화이트카본		카메라용 롤상필름
28.25	산화티타늄중 Anatase형	39.01	불포화 Polyester
28.31	아염소산소다		Resin
28.42	소다회	39.02	PVC Sheet
32.05	염료, 안료	40.11	래디얼 타이어
32.09	도료	41.02	우혁(갑피)
32.13	인쇄용 잉크	44.21	목상자
33.04	식품 및 사료용 향료	48.07	아트지

CCCN	품 목	CCCN	품 목
48.11	벽 지	82.04	수도구와 공인용구
48.15	화장지	82.06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48.20	종이제의 권사구류		나이프와 블레이드
58.03	테피스트리직물	83.01	Door Lock
59.04	끈 및 망	83.15	용접용
59.05	어망등	83.21	Water Jet Cleaner
60.03	양말류(편물제)	84.54	수동식 천공기, 지철기
61.10	봉제의 양말 및 장갑류		(Stapler)
62.05	Dress pattern 등	84.61	발브류, 전(栓) 등
	기타 섬유제품류	85.03	망강건전지
65.03		85.04	축전기
65.04	모자류	85.05	전기톱, 전기대패,
65.05			전기목공구
65.06		85.06	전기가위, 환풍기
73.11	형강	85.07	전기식 이발기
73.14	흑칠선, 아연도철선	85.12	가정용 커피포트
73.16	경레일	85.15	일반라디오, 디지털클럭
73.25	와이어로프 등		라디오
73.36	석유스토브	85.19	콘센트, 템블러스위치,
74.01	동괴		소켓트
74.17	등산용 버너	85.20	형광전구, 백열전구
76.03	알미늄판과 대	85.23	전선중 10개
	(알미늄박 제조용 Strip)	87.02	고속도로용 버스
82.03	공인용구	96.06	수동식의 체

Ⅳ- 2. 1979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1) 1. 1.조치 (상공부공문 1314-2901)

○ 해제품목 : CCCN 4011 래디얼 타이어

○ 추가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3901	에폭시 수지	6106	솔, 스카프 등
4005	천연고무의 판·시트	6202	베드리넨
4007	고무사 및 고무끈	6204	텐트, 차양, 캠핑용품
4420	목재의 틀	7337	방열기(라지에타)
4422	목재의 용기	7403	동형재
4425	목재의 공구	8211	이발면도기
4426	목재의 권사구류	8305	피팅, 클립등 비금속제의 사무용품
4801	인쇄용지, 필기용지, 박엽지, 중질지	8412	농업용 방제기, 스프링 클러헤드
4807	등사원지, 카본지	8415	쇼케이스
4814	봉투, 엽서, 카드	8441	가정용 재봉기
4815	인쇄용지, 필기용지	8461	단조밸브
4816	골판지상자	8512	전기식 순간탕비기
5607	인조섬유의 단섬유 또는 웨이스트의 직물	8513	다이얼식 전화기
5810	자수포	8518	전력용 컨덴서
5908	접착테이프	8710	원동기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거
5910	방직용 섬유를 기포로 하여 만든 물질	9009	Overhead Projector
6004	메리야스 편물 남자용 내의	9016	Micrometer, Caliper
6103	남자용 내의	9601	비와 브러쉬

(2) 2. 26 조치(상공부공문 수관 1311-393)

○ 운 영

- 원자재, 중간재 및 기계류중 수출증진,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을 위하여 대일 수입이 필요한 물품은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삭제
- 수입선제한은 일본에 한함.
- 수출용원자재, 관광용 기자재, 방위산업용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치 않음.

○ 추가품목

CCCN	품 목
3306	치약
3506	Quick set strong adhesive

○ 해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804	아르곤		잉크중 plating resistink,
2817	가성소다		카본잉크
2818	산화마그네슘	3901	알키드 수지, 불포화
2823	적색산화철		polyester resin,
2830	염화칼슘		에폭시 수지
2832	염소산칼륨	4001	천연고무
2838	Aluminium sulphate	4701	펄프
	황산아연	4801	인쇄용지, 필기용지,
2842	중탄산나트륨		박엽지, 중질지
2845	규산알미늄	4807	바라이다지
2914	Formic Acid	4816	골판지상자
3102	공업용 유안	4820	Cores Cylindrical
3213	인쇄회로기판제조용	5101	합성섬유의 장섬유사

CCCN	품 목	CCCN	품 목
5503	설면(屑綿)	7608	알미늄제의 구조물
5908	접착테이프	8215	비금속제자루
6111	드레스	8302	앵글의 경첩
6205	보자기류	8315	비금속제의 선, 봉, 관, 판
6301	중고의류	8406	디젤엔진의 부분품
6302	넝마		(50BHP 이상)
7004	무늬유리	8410	펌프
7005	착색유리	8411	발전소용 gas turbin에
7006	연마유리		사용되는 콤프레서
7007	서리유리	8416	로올기
7008	강화유리	8417	전기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7301	선철		기기
7302	Ferro-sillicon Alloy	8418	여과기, 청정기
7311	형강과 강시판	8419	각종 용기의 충전, 세척
7313	A. G. 강판		기기
7314	철강의 선	8421	분무용 기기
7315	합금강의 박판	8422	hoist, 유압식 jack
7316	경레일	8423	준설기, 천공기
7321	철구조물	8424	농업용, 원예용 기계
7323	맥주관(罐)	8430	식품가공기계
7324	L. P. gas용기	8431	섬유펄프제조기계,
7331	철강의 못		지와 판지의 제조용
7334	철강제의 핀		기계
7335	스프링	8433	지와 판지의 절단기
7337	라지에타	8435	옵셑 프린팅 머신
7603	알루미늄의 판과 대	8444	rolling mill for
7604	의약품 포장용 알미늄박		metal working

CCCN	품 목	CCCN	품 목
8447	목재가공기계	8523	Stub Cable 연결용
8448	drill chuck, chuck		PEF Cord, 전선,
	lathe		케이블
8455	탁상전자계산기의	8524	아아크등용 탄소봉
	부분품	9010	영화용의 감광, 현상,
8456	광물성재료의 처리용		프린트등 처리기기
	기계	9016	정밀측정기기
8463	발전소용 기어	9027	온도계
8464	가스켓, 조인트	9025	속도계 부분품
8501	전동기(150kw 이하)	9804	만년필 펜촉용 볼포인트
8505	전기톱, 전기대패,	9805	샤프펜슬용 연필심
	전기목공구	9810	라이타제조용 점화장치
8519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접속용의 기기		

(3) 수입선다변화품목 관리대책

(가) 문제점

○ '78년이후 수입자동승인품목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Plant 또는 생산공정 중 일부만이 규제되어 여타 전체공정을 무용화하게 하는 결과초래(일관성 결여)

○ 원자재와 중간재 및 기계류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와 내수용 원가인상 요인화

○ '79년도 외화대부집행상 문제점

- '79년도 외화대부한도 18억불중 당부 추천분(2억불)에 대하여 수입선이 일본인 다변화품목은 추천을 배제한다는 기준이 없어 각 공업국에서 수입선이 일본인 다변화품목도 추천하고 있어 혼선 야기

(나) 대 책

○ 현 수입선다변화품목중 원자재, 중간재, 기계류 및 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수출증진,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을 위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

○ 금후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은 최종 소비재에 한하여 수입선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자유화와 동시에 다변화품목으로 추가

○ '78년 이전 기 수입자동승인품목은 공업국과 협의하여 다변화가 가능한 최종 소비재에 한하여 다변화품목으로 점차적 추가

○ '79년도 당부 소관 외화대부(2억불) 추천분에 대하여는 당부의 추천을 받은 것을 산하기관인 OFFER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이 상실될 뿐 아니라 추천분의 대부분이 외화획득용이고 일본지역의 비중이 적으므로 수입선다변화조치 적용의 배제

Ⅳ- 3. 1980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가. 농기계 완제품의 대일수입 허용

○ 근거 : 상공부공문 수관 1311-346('80. 2. 20)

○ 배경

- '79. 12. 8. 농기계 국산화추진을 위하여 대일수입규제
- 국산화지연 및 '80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농수산부로부터 농기계 대일수입허용 요청

○ 내용

- 이앙기, 파종기, 콤바인, 예취기는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
- 바인다는 '80년도 5월까지의 소요량 3,000대에 한하여 공급업체가 농수산

부의 추천을 거쳐 상공부에 수입요청시 이를 확인하여 수입 허용

- 바인다 잔량(12,000대)은 5월말까지, 방제기는 3월말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존속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되 국산화공급불가시기는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

○ 기타

- 선박용 보일러(CCCN 8401), 선박용 발전기(CCCN 8501)는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
- 자기나침의 (CCCN 9014), 문방구용 칼(CCCN 8213)는 신규규제
- 상공부에서 확인한 국산화계획서상의 부품은 수입선다변화품목 적용배제

나. 6. 27조치(상공부 공문 수관 1131-1393)

○ 사유 : '80. 7. 1부터 수출입기별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

○ 해제품목

CCCN	품 목
8411	공기압축기(400HP 이하의 Oilfree type)
8454	자동복사기
8431	판지제조기
9024	열량계, 압력조정기
9029	냉장고용 Thermosstat의 부분품

다. 고시체계 정비

○ 근거 : 상공부공문 수관 1311-2249('80. 11. 3)

○ 배경 : 무역거래법 시행령 개정('80. 11. 1) 및 무역관리규정 제정 (상공부고시 제80-29호, '80. 11. 1)으로 수출입기별공고중 일부사항을 흡수

○ 내용 :

- 종전 : 수출입기별공고 총칙 제5조에 의거 대외비공문으로 시행
- 개정 : 무역관리규정 별표에 게기하여 공개적으로 (고시로) 운영

Ⅳ- 4. 1982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가. 운 용

○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 3 및 무역관리규정 제11-3조에 의거 별도 공고로서 운용

○ 상공부 공고 제81-41호 ('81. 5. 30)로서 시행

나. 신규지정

○ 수입제한 → 수입선 다변화(앞의 수입자유화 내용 참고)

○ 수입자동 → 수입선 다변화 : 6개(세분류 : 17개)

CCCN	품 목
2806	염산
(3901)	불포화 Polyester Resin
(7315)	스테인레스강판(두께 0.3㎜~3㎜, 폭 1,000㎜ 초과 1,250㎜ 이하)
8212	가정용 보통가위 및 재단용 가위(180~300㎜ 이하)
(8417)	해태 자동건조기
8418	해태 자동탈수기
8429	가정용 소형도정기(시간당 능력 800㎏ 이하)
(8450)	자동가스절단기
8456	Concrete Vibrator
(8459)	해태 자동절단 세정기, 해태 자동조합기
(8461)	황동제 LPG용기용 Valve, 황동제 Ball Valve (단조품 포함)
(8501)	기어모타
(9016)	나사한계 게이지(Max M 300이하)

다. 해제품목

CCCN	품 목
2843	시안화소다
(3209)	은분
(3902)	아세탈 튜브
(8203)	Socket Wrench (반제품의 것)
(8205)	Side Milling Cutter
(8206)	Slitter Knife (전자기기 기록필름 절단용)
(8416)	캘린더기 및 롤(다음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 직물, 가죽, 목재용 - 고무 또는 인조프라스틱용중 롤 직경 28 이상
(8477)	곡물건조기
(8422)	로다(다음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 휠로다(81-335 FHP) - 크로라로다(130~150 FHP)
(8459)	사출성형기(60온스 이하의 것)
(8501)	Concrete Vibrator 1,500kw이하의 교류발전기 (단,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결합된 것은 제외)

* ( )안은 부분해제된 품목임.

Ⅳ- 5. 1982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상공부공고 제82-22호, '82. 7. 1시행)

가. 선정기준

○ 추가대상

- 기별공고상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중 대일지역으로부터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 중화학공업의 생산초기단계제품으로 대일무역 역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철강산업, 기계공구류)
- 연구개발품, 신기술 도입품으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한 품목
- 중소기업의 초기개발제품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
- 일본의 덤핑수출 방지
-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나 대일지역 수입이 증가되고 있어 국내시장의 정착시까지 보호가 필요한 품목

○ 해제대상

- 전략적인 부분개발품목으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제3국공급이 곤란한 것

나. 품목조정

○ 추가품목(14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3207	형광등 원료	7610	식품포장용 알미늄봉투
4807	NCR지	8205	기어커팅 호프
6903	흑연도가니, 탄소도가니	8506	가정용 전기기기
7311	H형강, C형강, 강시판	9007	사진용 삼각대, 섬광기구
7335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9016	눈금이 든 자
7406	동의분과 플레이크	9017	이온수기
7605	알미늄 분	9028	자동차용 제동시험기

CCCN	품 목	CCCN	품 목
(2813)	불화수소산	(8205)	다이아몬드 다이스의
(7318)	계목합금강관		부분품
(7329)	Stand roller 체인	(8461)	황동제 LPG 발브의
			부분품, 주강제 밸브

* ( )안은 부분추가된 품목임.

○ 해제품목(13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2901	톨루엔	8459	해태자동 절단세정기,
2906	석탄산		조합기
2913	아세톤	9024	각종 기계류
3209	Nitro Cellulose	9028	〃
	lacover	(2806)	염산
3902	Polyvinyl Alconol	(3901)	불포화 Polyester
	Sponge Sheet		Resin
8416	비데오테이프 제조용 롤	(8205)	탭 및 체이스
8417	해태자동 건조기	(8301)	Door Lock 및 동부분품
8418	해태자동 탈수기	(8712)	자전거부품
8447	각종 공구류	(9601)	산업용 브러쉬
8454	화폐자동 지불기	(9602)	〃

* ( )안은 부분해제품목임.

Ⅳ- 6. 1983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상공부공고 제83-22호, '83. 7. 1시행)

가. 기본방향

수입자유화의 기본방향에 따라 기존 다변화품목으로서 대일 역조시정을 위하여 실효성이 적은 품목은 해제하고 실효성이 큰 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선정기준

○ 추가대상
- 대일 역조시정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 국내기술개발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

○ 해제대상
- 국내생산불가품목이나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품목

다.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4단위기준)

현 행	조 정		조 정 결 과
	해 제	추 가	
209	53	17	173

(2) 추가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1510	조스테아린산	9101	시계
2817	가성칼륨	9815	보온병
3907	합성수지제품	8501	직류전동기
6107	넥타이(견제)	(7329)	닻줄
6910	설겆지통, 세면대, 변기등	(7332)	철강제의 볼트·너트
8424	이앙기	(8302)	door closer 부분품
8430	제빵기계	(8422)	계선기, 양묘기, 양화기
8434	사진식자기(수동식)	(8425)	콤바인
8440	가정형 전기세탁기	(8450)	수동식용접장치
8462	유니트 볼베아링	(8461)	공기작동식 밸브, 증기트랩,
8463	축계		LP 가스조정기
8465	프로펠라 : 자동차기름유출	(8519)	선박용 배전반 및 조절반
	방지용 링	(9014)	접음자
8501	훼라이트 코아	(2107)	기타의 조제식료품
8522	의료물질생성기(이온수기)		(아이스크림)
9018	안마용기기		

* ( )안은 부분추가품목임.

(3) 해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838	황산닉켈, 황산소다(망초)	5305	양모와 기타의 수모
3702	사진용 필림중 흑백카메라 용 롤상필름(ASA 200 이하)	5308	방모사와 소모사
		5309	마모사와 기타 수모사
4005	천연고무의 판, 입, 마스터 뱃치	5310	양모, 마모, 기타의 수모사
4007	고무사, 고무끈	6401	신발류
4009	고무관	6405	신발류의 부분품
4102	소가죽	6406	각반, 경보호구
4103	면양가죽	7325	철강선재의 연선, 케이블, 밧줄
4104	산양가죽		
4105	기타가죽	7333	철강제의 수봉침
4106	세미가공한 가죽	7338	부엌용 하수대, 세면대, 욕조등
4108	patent leather		
4403	원목	7403	크롬동봉
4801	벽지	7418	동의 가정용품류
4814	봉투류	8214	식탁용구, 주방용구
4816	지대	8305	크립, 스테이플
4819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	8424	경운기
5301	양모	8453	전자계산기등
5302	기타의 수모	8501	변압기
5303	양모 또는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	8507	전기식이발기
		8523	특수전선, 케이블
5304	양모 또는 기타 수모의 웨이스트	8701	트랙터
		8707	지게차(10톤이상)

CCCN	품 목	CCCN	품 목
9203	오르간	(8519)	방폭형 스위치, 배전반
9208	뮤지칼박스	(9016)	에어게이지용의 제트 및 마스타게이지
9606	수동식의 체		
9806	흑판류		
9816	마네킹인형		
(2914)	Benzoyl Peroxide		
(3209)	Enamel Varnish		
(3213)	인쇄용 잉크		
(3807)	테레핀 유		
(3901)	페놀수지, 알키드수지, 합성수지의 성형제품		
(3903)	연초제조용 셀로판		
(4011)	모터싸이클용의 타이어, 튜브, 기타 재생공기타이어		
(5104)	폴리프로필렌계 장섬유 직물		
(6903)	인조흑연도가니		
(7315)	스텐레스 강판		
(8415)	쇼케이스		
(8425)	탈곡기		
(8506)	가정용 전기기기		
(8512)	전기식 순간탕비기		

* ( )안은 부분해제품목임.

Ⅳ- 7. 1984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상공부공고 제84-24호, '84.7.1 시행)

가. 기본방향

○ 대일무역역조의 확대경향에 따른 다변화제도의 실효성 제고

○ 수입자유화품목에 대한 보완적 수단 강구

○ CCCN 4단위 → 8단위 기준으로 세분화, 명확화

나. 선정기준

(1) 추가대상

○ '84신규 자유화품목중 대일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서
- 대일무역 역조시정에 크게 기여 가능품목(인조섬유의 장섬유사등 6개 품목)
- 국내산업의 한시적 보호가 필요한 품목(활동의 봉과 형재등 9개 품목)

○ 기존 자유화품목중 대일수입비중이 크거나 국내기술개발과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
- 기타 비금속제 조명기구 등 5개 품목

(2) 해제대상

○ 일정기간 보호로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무늬강판 등 14개 품목)

○ 국내생산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수입수요가 미미하여 제한의 실효성이 적은 품목(공작차등 11개 품목)

○ 기타 품목분류의 변경등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품목(인산에스테르 및 그 염중 일부)

다.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4단위 기준)

현 행	조 정		조 정 결 과
	해 제	추 가	
174	26	20	168 (590)

( )안은 CCCN 8단위 기준임

(2) 추가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902 0204	freon-gas	8508 0299	글로우 프러그
5101 0204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8513 0701	인터폰
	(108-200데니어)	8523 0301	전력케이블
0206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0302	통신케이블
	(810데니어 이상)	0500	
0301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8701 0300	농업용 트랙터
	(63데니어 이상)	8705 0202	ㄱ
0302	폴리아미드계 비텍스춰드사	0203	ㅣ차 체
	(기타)	0299	ㄴ
1204	비스코스레이온사	8714 0401	트레일러의 부분품
	(180-800데니어)	0201	ㄱ 시력보호용 안경
1205	비스코스레이온사	0299	ㄴ
	(800데니어 이상)	9026 0102	적산전력계
1303	아세테이트사	9107 0101	ㄱ 조립된 전자시계
	(130데니어 이상)	0102	ㄴ 무브먼트
6109 0100	브레이저	9111 0401	벽시계 및 탁상시계용의
7327 0100	클로오드		부분품
7403 0102	황동의 봉과 형재	9211 0599	자동차용 녹음재생기
8307 099	기타 비금속제 조명기구	9810 0100	가스라이타
805 0104	ㄱ	0200	기타 라이타
0105	ㅣ증기터빈	(7329 0320)	동력전달용 체인의 부분품
0106	ㄴ	(8406 0899)	가솔린엔진(1-3BHP)
8412 0101	ㄱ	(8407 0100)	워터터빈
0102	ㅣ자장식 공기조절기	(8415 0304)	쇼우케이스(개방형)
0103	ㄴ	(8417 0701)	기타용도의 가열기

CCCN	품 목	CCCN	품 목
(0702)	기타용도의 냉각기		
(8449 0202)	스크류 드라이브		
(0203)	그라인더		
(8452 0103)	형광식 전자계산기		
	(17단위 미만)		
(8501 0102)	발전기		
(0305)			
(8515 0101)	진공소제기		
(8505 0501)	자동차 전용라디오 수신기		
(0599)	자동차 전용라디오 수신기		
(0701)	기타 라디오		
(1002)	로랑리시버		
(0301)	칼라 TV		
(8522 0304)	이퀄라이저		
(8702 0603)	덤프트럭(10-20톤)		
(9007 0402)	사진기부분품		
(0301)	사진용 섬광기구		
(9017 0389)	기타의 기기		
(9027 0201)	시계식의 속도계		
(9028 0499)	전자식 택시미터기		

( )안은 부분추가 품목임.

(3) 해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1804 0000	코코아 버터	8206 0100	리파이너 블레이드
1805 0000	코코아 분	0200	종이, 직물 등의 절단기날
2919 0199	인삼에스테르 및 그염	0300	베니어 절삭기용 날
3506 0100	Quick set strong Adhesive	0400	금속절삭기용 날
3807 0299	테레핀유	0500	농업용 기계의 날
3808 0101	로진	8212 0100	ㄱ 가정용 가위, 재단용
6202 (8)	베드리닌, 테이블리닌 등	0201	ㄴ 가위
6503 0000	펠트제의 모자	8416 0104	ㄱ
6505 (7)	모자	0101	ㅣ캘린더기 및 roll기
7017 0101	ㄱ 이화학 유리제품	0300	ㄴ
0102	ㄴ	8454 0100	등사기
7313 1002	무늬강판	0201	제판기
7417 0700	태양열집열기(동제)	0299	펀치, 천공기
0100	난로(동제)	8463 0202	축계
0300	오븐(동제)	8502 0299	Permanent Magnet Rubber Plastic
0500	레인지(동제)	8503 0201	망간건전지
820 0101	보통삽	8510 0100	ㄱ
0102	가정용 부삽	0199	ㅣ휴대용 램프
0103	접는 삽	0200	ㄴ
0401	낫	8518 0199	고정식 축전지
8204 0100	유리칼	8703 0800	공작차
0200	모루	0900	조명차, 방사선차
0300	바이스 및 클램프	9024 0200	산소압력조정기
0400	해머		
1401	스크류 드라이버		

CCCN	품 목	CCCN	품 목
(2914 0599)	Dibasic lead stearate		
(3819 1600)	부식억제제		
(3907 1000)	단추제조용 반제품		
(4815 0499)	인쇄용지, 필기용지		
(8205 0799)	Reamer		
(8410 0401)	유압프란자펌프		
(8422 0900)	양묘기		
(8452 0402)	회계기		
(8459 1000)	가습기		
(8461 0101)	공기작동식 Valve		
(8506 0201)	가정용 선풍기		
(0202)	환풍기		
(8519 0602)	전화교환용 스위치		
(0201)	실휴즈 및 고리휴즈		
(0305)	가정용의 콘센트		
(0304)	가정용의 소켓트		
(8520 0199)	백열전구		
(0101)	장식용 전구		
(9007 0403)	카메라 삼각대		
(0302)	사진용 섬광전구		
(9009 0104)	Slide Projector		
(9027 0104)	택시미터기		
(9028 0499)	ㄱ 자동차용 사이드슬립		
(0799)	ㄴ 측정기		
(9201 0101)	자동피아노		

( )안은 부분해제 품목임.

Ⅳ- 8. 1985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상공부공고 제85-42호, '85.7.1 시행)

가. 기본방향

○ 전체적인 품목규모에 있어서는 대외통상과 수입자유화의 기본취지에 따라 년차적으로 축소하되 다변화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둠.

○ 기존 다변화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조정하고 특히 장기간 보호되어온 품목중 경쟁력이 확보되었거나 다변화의 실효성이 적은 품목은 새로운 품목의 다변화 적용 또는 당해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점진적 해제

○ 신규추가요청품목에 대하여는 수입규모 또는 특정지역의 수입비중상 특정지역의 무역수지개선 기대효과, 수입대체 또는 신기술 개발보호를 위한 한시적 관리등을 위한 다변화의 실효성 기대품목에 한하여 추가

○ 특히 '85하반기 자유화품목중 신규추가요청품목에 대해서는 막연한 우려나 국내산업보호만을 위한 적용을 지양하고 수입선전환효과, 수입대체 및 신기술보호 등 실효성제고차원에서 검토 선정

○ 수입선다변화 전품목에 대하여 다변화해제 검토시기를 설정하여 수입선다변화의 한시적관리를 통한 당해품목의 경쟁력제고를 촉진

○ 다변화품목의 선정방법은 현행과 같이 CCCN 4단위 기준으로 선정 공고하되, 다변화품목의 수입동향점검 및 효과분석과 엄격한 수입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8단위별 내부자료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

나. 선정기준

(1) 해제대상

○ 5년이상 다변화품목으로 지정운영되어온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였거나 다변화의 실익이 적은 품목. 다만, 최근 1-2년내에 신기술개발등(신규투자 포함)으로 수입대체 또는 경쟁력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시적

관리(2년 범위내)가 필요하거나 지역별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현저히 큰 품목은 예외 가능

○ 일정기간의 다변화 운영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었거나 다변화존치의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서에서 삭제키로 요청된 품목

○ 국내생산이 없는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품질, 가격 등의 측면에서 특정지역의 수입이 국내산업의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저히 유리한 경우

○ 당해 품목의 수입규모 또는 국내수요가 경미하여 수입관리(무역수지개선 또는 수입절감 측면)의 실익이 없는 품목

(2) 추가대상

○ 당해품목의 수입규모면에서 특정지역의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품목

○ 국내생산 가능품목으로서 당해품목의 육성 또는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지역의 수입편중이 높은 품목

○ 최근 1-2년내에 국내에서 신기술개발 또는 신규투자등 경쟁력향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시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

○ 기타 산업정책 또는 수입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품목

다.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4단위 기준)

현 행	조 정		조 정 결 과
	해 제	추 가	
168 (590)	52 (254)	44 (129)	160 (465)

( )안은 CCCN 8단위 기준임.

(2) 추가품목

(가) 신기술개발등에 따른 한시적 보호필요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915 0199	후말산	7304 0101	┐쇼트 및 그리트
3212 0399	실리콘 실란트	0102	┘
4002 0101	합성고무의 라텍스	8202 0203	원형톱날
5805 0104	합성섬유제(타자기 및 컴퓨터 리본제조용)	8444 0201	주조제의 로울
		8459 1414	자동차 세척기
6807 0199	Ceramic Fiber 제품	1416	자동도어작동기
6903 0206	┐슬라이딩 노즐 및	8518 0102	고정식 자기축전기
0299	┘플레이트	9028 0401	수소이온측정기

(나) 수입대체 또는 수입선지원효고가 기대되는 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1001 0101	밀가루	7407 0101	┐동의 관 및 소관
3708 0102	사진현상제	0102	┘
3819 1700	복합경화제	7604 0200	알루미늄 박
3600	조제유기과산화물	8413 0103	┐노용오일버너 및 부분품
3901 0317	포화폴리에스테르필름	0301	┘
3902 0204	풀리스티렌 공중합물	8418 0201	내연기관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3903 0101	셀로판		
0301	셀로판 테이프	8422 0104	엘리베이터
4821 0200	종이컵	8448 0299	금속가공기계의 부분품
5902 0299	기타의 펠트 및 제품	8451 0102	전자식 타자기
5908 0201	PVC 레더	8456 0299	기타 파쇄기와 분쇄기
0299	인조피혁	8461 0301	밸브부품
6001 0301	┐합성장섬유사 편직물	8462 0201	베아링 볼
0302	ㅣ	8463 0201	차량용 부품
0304	┘	8465 0302	메카니칼 시일
6006 0299	기타 편물제품	8508 0204	자동차용 시동전동기
6109 0300	기타 직물의 부속의류	8512 0400	이동용 기기
7008 0101	평면의 강화유리	8514 0300	콘덴서 마이크로유니트
7013 0101	┐유리제의 식탁 및 부엌	8515 0899	무선통신 수신기
0102	ㅣ용품	1199	송수신의 부분품
0199	┘	8714 0100	주거 및 캠프용 트레일러
7403 0202	┐황동의 선, 기타의 선	0200	화물수용용의 트레일러
0299	┘	0399	기타의 피견인차량
7405 0200	기타의 동박	9001 0102	프라스틱제 안경용렌즈

CCCN	품 목	CCCN	품 목
9002 0201	카메라렌즈	9016 0103	제도기 소품세트
9005 0200	굴절식 쌍안경	9028 0410	어군탐지기
9007 0499	기타 사진기의 부품	9605 0000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9010 0200	복사기 부품	9704 0500	기타의 유희용구
9010 0399	사진용 감광, 현상,프린트 인화에 사용되는 기기	9808 0100	타자기용 리본

(다) 기타 대일 수입증대 및 덤핑예상

CCCN	품 목	CCCN	품 목
2210 0100	양조식초	6201 0201	모포
0200	식초와 그 대용품	6601 0400	파라솔
3903 0102	ㄱ	0500	우산텐트, 비치파라솔
0103	ㅣ질산섬유소	7403 0201	동선
0302	ㅣ	7407 0103	동관 및 소관
0303	ㄴ	8418 0401	오일여과기용 롤형
4813 0102	등사원지		필리엘리멘트
4818 0200	지·판지제의 문방구	8445 0302	보통선반
5101 1201	비스코스레이온사	0404	무릎형 밀링반
	(110데니어 미만)	0503	직접드릴링반
1202	비스코스레이온사	0902	스크류커팅반
	(110-130데니어)	8452 0101	전자계산기(액정식 17단위
1203	비스코스레이온사		미만)
	(130-180데니어)	8506 0101	면도기

CCCN	품 목	CCCN	품 목
8509 0101	조명 및 조명식 신호기기	9211 0602	카세트식 녹음기와 음성
8512 0500	전기다리미		재생기
8515 0202	폐쇄회로식 흑백수상기	0702	테이프 렉
8519 0100	자동차용 계전기	9808 0400	기타의 리본
0602	개폐기		
8523 0101	고무 또는 합성고무		
	절연전선		
0102	인조플라스틱 절연전선		
0202	절연도료 피복권선용 전선		
8701 0299	기타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		
	로주행식 트랙터		
8702 0502	화물자동차(8-10톤)		
0801	구급차		
8703 0100	구난차		
0300	도로청소차, 제설차		
8707 0100	차량의 부분품		
0201	포크리프트트럭(3t 이하)		
0299	기타 운반하역장비		
8712 0100	자동이륜차의 부분품		
9107 0199	조립된 전자시계 무브먼트		
	(디지탈의 것)		

(3) 해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1512 0101	고래기름	4909 0000	그림엽서, 크리스마스카드
0102	면실유	5101 0204	ㄱ
0103	참기름	0301	ㅣ
0104	대두유	0302	ㅣ
0105	유채류	1204	ㅣ인조섬유의 장섬유사
0106	낙화생유	1205	ㅣ
0108	해바라기유	1303	ㄴ
0109	야자유	5104 501	ㄱ
0111	옥수수유	1502	ㅣ비스코스레이욘장섬유
1907 0100	미과	1503	ㅣ직물
0200	식빵	1800	ㄴ
0300	건빵	0302	ㄱ
0400	빵	0304	ㅣ폴리에스터계 장섬유
2107 0101	콜라베이스	0305	ㅣ직물
0102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0306	ㄴ
0401	라면	0202	ㄱ
0900	아이스크림	0203	ㅣ폴리아미드계 장섬유
3907 0301	목욕통	0204	ㅣ직물
0302	대야	0205	ㅣ
0303	변기	0206	ㅣ
0304	비누갑	0207	ㅣ
0399	기타	0800	ㄴ
0400	신변용, 장식용 및	1601	ㄱ 아세테이트 장섬유
	기타의 장신구	1602	ㅣ직물
1000	고밀도폴리에틸렌시트	5104 1900	ㄴ

CCCN	품 목	CCCN	품 목
5509 (30)	면직물	8448 0201	금속가공기계의 툴홀더
5603 0100	합성섬유의 웨이스트	0101	가공홀더
0200	재생섬유의 웨이스트	8461 0301	고압밸브중 Solenoid Air
5607 0201	ㄱ		Control Valve
0203	ㅣ	9009 0101	Overhead project
0301	ㅣ	9101 0202	전자시계(디지탈)
0303	ㅣ합성단섬유직물	9206 0400	기타(탬버린)
0401	ㅣ	9601 0200	칫솔 및 솔류
0402	ㅣ	1510 0101	오레인산
0403	ㅣ	2827 0100	산화연
0501	ㅣ	0200	연단
0503	ㄴ	294 0605	스테아린산연
0602	재생단섬유직물	0606	스테아린산 바륨
5803 0000	고우벌린직, 프란더즈직 등	0608	스테아린산 칼슘
5904 0100	ㄱ 끈, 코오드지, 로우프 및	2923 0501	글루타민산
∫	ㅣ케이블	2925 0104	디메틸포름 아마이드
0400	ㄴ	3306 0301	치약
6107 0100	넥타이류(견제_	3503 0399	아교
7020 0101	ㄱ 유리섬유사	3901 0213	요소수지
0102	ㄴ	3902 0212	아크릴 폴리머 에멜존
8211 0100	이발면도기	3907 0201	운반용기 또는 포장용기
8424 0204	이앙기	0202	〃
8425 0301	바인더	0700	전기조명기기
		15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CCCN	품 목	CCCN	품 목
4420 0000	목제의 틀	7406 0100	동의 분
4421 0000	목제의 케이스상자	0200	동합금의 분
4815 0200	화장지	7605 0200	알루미늄 합금의 분
5910 0000	리놀륨과 유사물품	8213 0400	사무용 칼붙이
7009 0100	판유리거울	8301 0102	door lock.
0200	화장거울	0302	부품
8423 0108	콤팩트	8415 0304	개방형 쇼우케이스
8520 0201	형광램프	8422 0499	기관실 크레인
9106 0100	냉장고 제상용 타이머	8501 1399	훼라이트 코아
9111 0401	벽시계 및 탁상시계용의 것	8504 0199	니카드 알카리축전지
2806 0100	염산	8515 0702	기타 라디오(시계내장)
3213 0399	형광잉크	0799	기타 라디오
3815 600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8522 0304	이퀄라이저
3503 0100	젤라틴	9014 0102	자기나침의
5905 0101	폴리아미드섬유의 것	9018 0200	안마용 기기
0102	기타 합성섬유의 것	9023 0100	비중계
0199	기타 섬유의 것	0299	온도계
0201	폴리아미드섬유의 것	2507 0102	고령토
0202	기타 합성섬유의 것	0103	벤토나이트
0299	기타 섬유의 것	0101	산성백토
6109 0100	브래지어	0201	홍주석
6910 0200	설거지통	0202	남정석
0600	시스턴	0303	규선석
7335 0101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0205	다이나 스너트

CCCN	품 목	CCCN	품 목
4422 0100	ㄱ		
0200	ㅣ목제의 통		
0300	ㄴ		
4425 0100	ㄱ 목재의 공구, 공구손잡이		
0200	ㄴ		
4426 0100	ㄱ 스톨, 보빈		
0200	ㄴ		
4428 0202	ㄱ		
∫	ㅣ이쑤시계, 포장용 목재		
0299	ㄴ 블록		
6504 0101	ㄱ		
∫	ㅣ모자, 밀짚모자		
0300	ㄴ		
6506 0100	ㄱ		
∫	ㅣ모피제모자, 가죽제모자		
0600	ㄴ		
8209 0100	칼, 칼날		

Ⅳ- 9. 1986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상공부공고 제86-32호, '86. 7. 1 시행)

가. 선정기준

(1) 해제품목 : 144개 품목(4단위 : 26개 품목)

○ 엔고등으로 가격경쟁 확보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입선전환 가능품목
- 스테아린산, 고밀도포리에칠렌, 수공구류, 에어히터 등 69개 품목

○ 경쟁력 확보 품목
- 안료, 면직물, 봉강, Rock Wool, 금속용 나사못, 라디오 수신기, 트레일러 등 43개 품목

○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나 기술, 특성 등에 의하여 사실상 다변화 곤란 품목
- 황동의 선, 워터터빈, 도정기, 수지식 공구,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 등 32개 품목

(2) 존치품목 : 321개 품목(4단위 : 134개 품목)

○ 수입선전환 및 수입대체가능품목으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 기여품목
- 오르트인산, 폴리스티렌 수지, 증기터빈, 굴착기 등 240개 품목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근 신기술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 대일 수입급증 및 덤핑우려품목
- 스테아린산, 후말산, 흑연 도가니, 장섬유사, 진공소제기 등 81개 품목

(3) 기존자유화 품목중 추가 : 30개 품목(4단위 : 13개 품목)

○ 수입대체(역조개선) 및 수입선전환 기대품목
- 아세칠렌, 블랙, 황산바륨제제, 가스압축기 등 23개 품목

○ 부품, 소재의 신기술개발, 대일 수입급증 및 덤핑예상으로 한시적 보호필요 품목
- 타코그라프, 망간 건전기, 자동자료처리용 리본 등 7개 품목

(4) '86수입자유화품목중 추가 : 59개 품목(4단위 : 12개 품목)

○ 부품·소재의 신기술개발 및 신규투자로 한시적보호 필요품목
- 유압식 잭, 굴착기 및 불도자 부분품 등 5개 품목

○ 수입대체(역조개선) 및 수입선 전환 기대품목
- TPA, 염료, 석도강판, 자동포장기 등 47개 품목

○ 대일 수입급증 및 덤핑 예상품목
- 아세트알데히드, 스파크 플러그, 고속버스 등 17개 품목

※ 신규추가 요청품목중 미반영 품목 : 16개 품목(4단위 :4개 품목)
○ 국내 미생산 수요업계 불편초래 혹은 지정시 관련산업 경쟁력 악화 초래 품목
- 사화 안티몬, 에소부칠케론 등 11개 품목
○ 총수입 수요미미 및 수입선 전환 곤란 혹은 불리로 실효성 없는 품목
- 간장, 된장, 메칠에칠케톤 등 5개 품목

나. 품목조정

(1) 조정결과

(CCCN 4단위 기준)

현 행	조 정		조 정 결 과
	해 제	추 가	
160 (465)	26 (144)	25 (89)	159 (410)

( )안은 CCCN 8단위 기준임.

(2) 해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914 0601	스테아린산	7310 0205	ㄱ 봉강
3205 0700	황화염료	0206	ㄴ
1100	유기용제 용해염료	7329 0302	동력전달용 체인의 부분품
3206 0201	레이크 안료	7332 0103	너트
0299	기타 레이크 안료	0201	금속용 나사못
3207 0200	무기루미노피	0299	기타 나사못
3902 0301	고밀도 폴리에틸렌	0600	기타
0303	폴리프로필렌	7337 0300	에어히터
0304	폴리스티렌수지 및 폴리스티렌 공중합수지	0400	온풍분배기
		0503	에어히터 부분품
0305	염화비닐수지	0504	온풍배분기용 부분품
0801	고밀도폴리에틸렌의 판, 시트, 스트립	7401 0300	정제하지 아니한 동의 괴
		7403 0202	황동의 것
0803	폴리프로필렌	0299	기타의 것
3907 1300	탁상보	7405 0200	기타
5306 (7)	방모사	7407 0103	청동의 것
5307 (16)	소모사	7610 0401	알미늄 봉투
5509 (7)	염색한 면직물	7901 0100	아연의 웨이스트
5805 0104	타자기 및 컴퓨터리본용 나이론 원단	8203 0101	몽키렌치
		0102	소텟렌치
6001 0301	ㄱ	0104	스패너
0302	ㅣ합성장섬유사의 편직물	0201	톱날의 줄
0304	ㄴ	0299	기타의 줄
6006 0299	탄성편물	0302	집게
6109 0300	코르셋, 브래지어	0303	벤치
6201 0201	모제의 것	0304	폴라이어
6807 0102	Rock Wool		

CCCN	품 목	CCCN	품 목
0305	니퍼	8710 0102	화물용 자전거
0308	함석가위	0199	기타의 자전거
0399	기타의 수공구	8712 0201	자전거의 차체
8302 0400	door closer	0202	자전거의 브레이크
8406 0904	자동차용 노즐	0299	기타의 자전거부품
8407 0100	워터 터빈	8714 0100	이동주거형 트레일러
8418 0201	차량내연기관의 여과용	0200	화물용 트레일러
	또는 청정용 기기	0399	기타의 피견인식차량
8421 0699	방제기	9005 0200	굴절식 쌍안경
8425 0200	콤바인	9007 0301	사진용 섬광기구
8429 0202	가정용 소형도자기	0402	사진기의 부품
8450 0101	수동식 용접기	0499	사진기의 부품
0200	수동식 절단용 토치	9010 0200	복사기 부분품
0198	flame cutting M/C	9016 0103	제도기 소품셋트
8461 0201	가정용 LPG조정기	0299	나사한계 게이지
0301	밸브부분품	9026 0101	적산전력계
8501 0400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9026 0102	기타전력계
8504 0200	열 축전지	9028 0407	ㄱ 자동차용 제동시험기기
8505 0299	기타의 수지식 공구	0707	ㄴ
8512 0500	전기다리미	0409	ㄱ 자동차용 속도시험기기
8514 0202	13㎝이하의 콘스피커	0709	ㄴ
8514 0401	흑백TV	0499	전자식 택시미터기
0599	자동차전용의 라디오수신기	9211 0599	자동차용 녹음기
0699	휴대형 라디오수신기	9808 0400	기타의 리본
8519 0100	계전기	2210 0100	양조식초
0399	전기접속용 터미널	0200	기타
8703 0300	도로청소차와 제설차	2854 0100	고형 과산화수소
		0200	기타 과산화수소
		2914 0604	스테아린산 아연

(3) 추가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803 0101	아세틸렌 블랙	0600	송풍기, 휀
2821 0102	3산화크롬	8459 1599	금형자동교환장치
2843 0101	시안화소다	2831 0203	치아염소산 칼슘
2901 0407	스티렌	2916 0804	파라하이드록시안식 향산
0408	〃	9027 0201	타코그라프
2902 0102	3염화에틸렌	3405 0203	광택용의 납과 크림
2906 0107	노닐페놀	8503 0201	망건건전지
2915 0105	아디핀산	9808 0300	자동자료처리기용 리본
0302	디이소프로필말로네이트	8422 1600	잭
3003 1600	정제대우유함유 주사제	8423 0302	굴착기 부분품
3005 0401	황산바륨제제	0303	불도자 부분품
3708 0400	조색제	8451 0200	수동식 타자기
3803 0100	활성탄소	8520 0199	자동차 전조등용의 것
3901 0306	불포화포리에스테르의 판, 시이트	2915 0203	테레프탈산
3902 0203	폴리프로필렌	3205 0400	ㄱ
7020 0399	유리섬유 매트	0700	ㅣ염료
7336 0101	철강제 레인지	0800	ㄴ
0201	석유난방기구	4009 0100	고무관
0202	가스난방기구	5903 0101	인조피혁
0300	가정용 철강제 가열기구의 부분품	7313 0503	색도강판
8411 0501	가스압축기	8406 0505	압축점화식의 내연기관
		8410 0100	염료 또는 윤활유급유용의 펌프

CCCN	품 목	CCCN	품 목
8410 0499	수중펌프	9024 0601	ㄱ 온도자동조정기기
8411 0599	공기압축기	0699	ㄴ
8412 0102	공기조절기	9028 0102	온도자동조정기기
8415 0301	흡수식 냉동기	0499	자동차 배기가스
0399	원심식 냉동기	9029 0000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8419 0200	ㄱ		열전대
0300	ㅣ	2911 0403	아세트 알데히드
0499	ㅣ세척, 충전, 포장용기계	4801 0300	크라프트라이너
0500	ㅣ	8207 0199	텅스텐 카바이트 투울팁
0701	ㅣ	8503 0103	ㄱ 알카리 망간건전기
0702	ㅣ	0202	ㄴ
0799	ㄴ	8505 0205	스파크 프러그
8422 0201	블록과 체인블록	8702 0301	찝형 자동차(1,000cc 이하)
0299	기타외 폴리태클과 호이스트	0402	고속도로용 버스
8441 0101	담침직진형 재봉기	0499	버스
8459 0599	사출성형기	0701	냉동 및 냉장차
1499	제습기	0702	탱크차
8509 0200	자동차 및 자전거용 기기의 부분품	0799	기타외 화물차
		0899	기타
8514 0101	가청주파증폭기	8703 0900	기타의 특수용도자동차
0102	스피커시스템	8706 0201	ㄱ 승용차의 부분품과 부속품
8515 0302	ㄱ 칼라TV	0202	ㄴ
0303	ㄴ	9104 0101	기타전자식 시계
8519 0601	차단기		
0602	전자개폐기		

다. 수입선다변화제도 개선방안

(1) 문제점

○ 현행 무역거래 제도상 예외수입의 과다
- 시행령에 의한 수입
  · 외화획득용,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등
- 기별공고총칙에 의한 예외
  · 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부분품, 유지보수용 등 30개항

○ 수입선다변화품목중 원재재의 경우 70% 이상이 수출용 수입
- 대일 총수입중 수출용 수입 : 49.5%
- 대일 다변화품목의 수출용 수입 : 54.5%

(2) 운영방향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의 예외수입 최소화
- 기계류 국산화계획에 의해 수입되어온 부품도 경쟁력보유 및 수입선전환 가능품목은 예외수입 불허
  · 84기계류 국산화부품 수입실적 : 1,687백만불
- 수출용 수입도 경쟁력 있는 품목 혹은 수입선전환 가능품목은 대일수입 불허
  · 수입선다변화품목의 대일 수입실적

	'84	'85
대일 다변화품목 수입	1,121 백만불	1,128백만불
(수출용)	(640)	(614)

○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우회수입 방지
- 수입선다변화품목을 동남아로부터 수입시 원산지증명(주재국 한국영사 확인) 제출 의무화

Ⅳ- 10. 1987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상공부공공 제87-40호, '87. 7. 1 시행)

가. 기본방향

○ 대일역조 5개년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및 가전제품의 수출호조와 기계류의 국산화를 위한 부품, 소재 수입증가로 대일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

○ 대일역조개선 5개년계획의 1차년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중에 수출의 지속적 증대와 수입의 축소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증가율과 수입규모가 큰 품목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금까지의 대일수입으로부터의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책외에 대일수입 비중이 큰 품목의 수입선 전환에 의한 실질적 수입선다변화를 중점 반영

- 기존 다변화품목에 경쟁력확보 또는 수입규모가 미미하여 수입선다변화의 실효성이 적은 품목은 삭제하여 동 제도의 대외적 인식 개선
- 대일 수입 비중이 큰 품목중 수입대체 또는 수입선전환 가능품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대일수입 급증품목 등 대일수입 제한이 불가피하고 제한의 실효성이 기대되는 품목에 국한

- 수입서다변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품목중 구간대체 또는 기타지역 수입선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용에 대한 별도 제한방안 강구

나. 추가품목

(1) 해제대상 : 43개(8단위 : 136개)

○ 기술개발등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 해외의존이 불가피한 원자재 및 부품으로서 사실상의 수입선다변화가 곤란한 품목

○ 수입수요 및 수입의존도가 미미하고 단순한 국내산업확보만을 위해 상당기간 운영되어온 품목

(2) 추가대상 : 28개(8단위 : 101개)

○ 부품·소재 및 기계류 국산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품목

○ 대일수입규모 및 증가율면에서 실질적으로 대일역조 개선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신기술개발(특히 종전 일본의 기술이전 기피품목 등) 및 신규투자 등에 따라 대일수입으로부터 한시적 보호가 필요한 품목

다. 품목조정

(1) 조정결과

	현 행	조 정		조 정 결 과
		해 제	추 가	
CCCN 4 단위	162	43	28	147
CCCN 8 단위	414	136	101	379

(2) 해제품목(43개)

CCCN	품 목	CCCN	품 목
1510 0102	스테아린산	5104 010	┐타이어코드지
2810 0201	오르트인산	0102	┘
2817 0200	가성칼륨	0900	폴리에스테르계 장섬유직물
2821 0102	삼산화크롬	0201	┐태피터
2831 0100	아염소산소다	0301	┘
3205 0100	직접염료	5509 0307	포프린 및 브로오드
3209 0502	조제수성안료	5605 0103	┐아크릴 방적사
3803 0100	활성탄소	0104	┘
3901 0317	포화폴리에스테르 필름	5607 0502	합성단섬유직물
3902 0302	┐기타의 폴리에틸렌	6910 0100	목용통
0802	┘	0300	세면대
3907 0500	사무용품	0400	비데
1000	인조수지의 제품	7008 0100	평면의 강화유리
1400	레이블 및 태그	7013 0102	커피포트 및 커피여과기
4011 0200	┐타이어	7311 0701	강시판
0300	┘	7329 099	로울러 체인
4807 0200	클레이를 도포한 판지	0202	닻줄
4813 0102	등사원지	7322 0101	볼트, 너트세트
4818 0200	공책, 바인더, 수첩	0102	볼트
4821 0200	종이컵	7337 0101	┐철강제 중앙난방 보일러
5101 0400	폴리에스테르계 텍스춰드사	0299	┘
5104 0299	┐	7605 0100	알미늄의 분
0304	ㅣ인조섬유의 장섬유직물	8203 0103	파이프렌치
0399	ㅣ	0301	파이프절단기
1599	┘	0307	천공펀치

CCCN	품 목	CCCN	품 목
8203 0199	기타의 렌치	8445 1899	유압식 다목적 가공기계
0306	크리퍼	8450 0103	가스자동절단기
8205 0600	탭췌이서	8451 0200	수동식타자기
8307 0299	기타의 비금속제 조명기	8458 0101	식품자동판매기
8401 0103	ㄱ 증기발생보일러	0103	음료수 자동판매기
0199	ㄴ	8461 0199	증기트랩
0200	과열수 보일러	0399	증기트랩부품
0303	증기발생보일러부분품	7501 1399	훼라이트코아
0304	과열수보일러부분품	0305	발전기
8405 0104	ㄱ	8507 0101	전기면도기
0105	ㅣ증기터빈	8508 0299	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0106	ㄴ	0204	시동전동기
8406 0503	ㄱ 디젤기관	8509 0200	윈드스크린와이퍼의 부분품
0505	ㄴ	8512 0400	이용용기기
8415 0101	ㄱ 가정용 전기냉장고	8513 0701	인터폰
0102	ㄴ	020	전화교환기
8418 0401	오일여과기용 롤형 필터엘리멘트	8514 0300	콘덴서, 마이크로폰 유니트
8419 0703	진공포장기	8515 0201	폐쇄회로식 칼라TV 수상기
8422 0104	엘리베이터	0202	폐쇄회로식 흑백TV 수상기
2200	크로라로우더	1001	무선방향탐지기
8426 0100	착유기	8517 0201	전기식의 벨
8430 0101	빵성형기계	0202	싸이렌
8445 0302	보통선반		
0503	직접드릴링선반		
0902	파이프나사가공기		

CCCN	품 목	CCCN	품 목
8517 0204	도난경보기	9016 0203	눈금이 있는 줄자
0205	화재경보기	9024 0601	ㄱ 온도자동조정기기
0299	기타의 신호기기	0699	ㄴ
8701 0299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렉터	9107 0101	ㄱ
0300	농업용 트렉터	0102	ㅣ전자시계무브먼트
8702 0604	덤프트럭(20톤 이상)	0199	ㄴ
0701	냉동 및 냉장차	9202 0201	기타
0799	기타의 화물차	9204 0400	멜로디카
0801	구급차	9605 0000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0899	기타의 자동차	9808 0100	타자기용 리본
8703 0100	구난차	0300	자동자료처리기용 리본
0202	화학소방차	9815 0100	보온병
8706 0201	ㄱ 승용차 샤시부분품	0200	기타의 진공용기
0202	ㄴ	0300	부분품
8707 0100	포크리프트럭 부분품		
0299	기타 운반하역장비		
8707 0101	경기용 2륜자전거		
8712 0100	자동 2륜차의 부분품		
8714 0401	트레일러 부분품		
9001 0102	프라스틱 안경용 렌즈		
9004 0201	귀금속사용 안경		
0299	기타 안경		
9007 0201	사진기		
9810 0100	가스라이타		

(3) 추가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803 0199	카본블랙	7314 0299	알미늄 복강선
2844 0100	시안산염	7404 0299	활동의 판, 대
2915 0102	무수바레인산	7405 0101	동박적층판
2923 0203	2. amino-p-cresol	8302 0400	door closer
2931 0999	에디펜	8406 0904	차량용 내연기관부분품
2935 1699	기타	0999	엔진부분품
3207 0199	기타	8410 0304	차량용 내연기관의 액체펌프
3209 0306	불소수지도료	8411 0401	카쿨러용 냉매압축기
3209 0503	스템프용 박	8413 0102	노용 오일버너
3210 0000	수성그림물감	8421 0500	스프레이 건
3703 0202	흑백사진용의 인화지	0602	도장기
0700	인쇄제판용 인화지	0699	에어브라스터
3819 0800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	8423 0299	유압브레타
3902 0211	메필메타아크릴수지	8437 0201	래피어식의 면직기
0212	폴리아크릴아미드	0299	래피아직기
0511	메틸메타아크릴수지필름	8438 0301	스핀들
3902 0214	석유수지 및 쿠바론인 필름	8445 1200	호우닝반
0599	기타의 폴리프로필렌필름	0403	메드형 밀링반
3806 0100	알긴산 염	8447 0113	ㄱ 목공용 공작기계
3907 0101	보빈, 스풀, 릴	0199	ㄴ
4813 0199	감염기록지	9802 (6)	슬라이드 화스너
5602 0202	아세테이트 토우	9803 (5)	필기용구
7011 0101	칼라브라운관용 유리		
7107 0103	반도체제조용 금선		
7301 0202	제가용 선철		

CCCN	품 목	CCCN	품 목
8453 0203	디지털 자동처료처리	0102	승용차(2,000cc 초과)
0299	기계	0199	〃 (〃)
8454 0299	연필깎기	0201	쬡형자동차(1,000~2,000cc)
8459 1403	압축기	0302	승용차(1,000cc 이하)
1409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0399	〃 (〃)
	도포기	0401	마이크로버스
1413	기타 고무산업용 기계	0501	화문차(4톤 이하)
0499	수도용 감압밸브	0601	덤프트럭(4톤 이하)
8501 0101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0602	〃 (4-10톤)
	결합된 발전기	8709 0201	자동이륜차(260-1,000cc)
8501 1000	정지식 콘버터	0301	〃 (100cc 이하)
8505 0199	ㄱ	9003 0101	ㄱ
0201	ㅣ수지식 전동공구	0199	ㅣ안경테, 부분품
0202	ㅣ	0200	ㄴ
0299	ㅣ	9010 0102	전자식 복사기
0399	ㄴ	9010 0200	복사기용 셀레늄드럼
8513 0600	모사전송기	9022 0102	경도시험기
0807	공중통신용 전자교환기	9026 0201	가스미터
	부부품	9028 0199	보일러 및 로용 공연비제어
8513 0802	사설교환기부분품		장치
0806	모사전송기부분품	9101 0201	기타의 휴대시계
8515 1003	레이다	9207 0300	전기식 오르간
8515 1699	기타의 무선기기부분품		
8520 0200	나트륨 램프		
8702 0101	쬡형자동차(2,000cc 초과)		

Ⅳ- 11. 1988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상공부공시 제88-16호, '88.4.1 시행)

가. 기본방향

○ 대상품목의 대폭적 축소
- 실효성 없는 품목, 장기보호품목, 경쟁력 확보품목, 예외수입 과다품목 등

○ 신규자유화품목의 다변화품목으로의 전환 억제
- 자유화에 대응하는 국내업체의 의식 변화
- 제도적 보호에 안주하는 타성 개선

○ 행정지도로 수입선전환 확대 보안
- 대일 통상마찰 심화현상 방어
- 유리한 수입선정보의 활용도 제고

나. 선정기준

(1) 해제대상(HS 6단위 268개)

○ 장기보호, 엔화강세등에 의해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예 : 합성단섬유 직물)
○ 수출용, 국산개발 소요원료등 예외수입이 과다한 품목(예 : 가열기구 부품)
○ 국내수요 및 수입실적이 극소한 품목(예 : 만년필)
○ 국제적인 공급부족으로 원자재 수급원활화(예 : 스틸렌)
○ 경쟁력 촉진이 필요한 품목(예 : 유리제식기류)
○ 주수요자가 정부기관인 물품(예 : 텔레비젼 기타 송수신기) 등

(2) 추가품목(HS 6 단위 47개)

○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시설분야에의 노력으로 일정기간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예 : 프린터)
○ 중소기업 주종품목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예 : 기계식 프레스)
○ 국내산업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구체적 수입선전환이 가능한 품목(예 : 방전가공기)
○ 대일의존도, 선호도가 높고 수입규모가 큰 품목(예 : 세단)
○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품목(예 : 프로피디스크드라이브)

다. 품목조정

(1) 조정결과

	현 행	조 정		조 정 결 과
		해 제	추 가	
CCCN 4 단위	147	56	7	98
H S 6 단위	447	268	47	226

(2) 해제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803 00 1010	아세칠렌블랙	3901 90 0000	기타 에틸렌의 중합체
2811 11 9000	화이트카본	3902 10 0000	폴리프로필렌
2811 22 1000	기타불화수소산	3903 (5)	스틸렌수지
2823 00 1000	이산화티타늄	3907 30 0000	기타의 에폭시수지
2836 40 0000	탄산칼륨	3909 40 0000	페놀수지
2837 11 1000	시안화소다	3213 90 2000	기타 수성물감
2902 50 0000	스틸렌	90 3000	기타 유성물감
2903 22 0000	삼염화에틸렌	3214 10 1090	실리콘실란트
(40 103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3912 20 0000	질산셀루로오스
2907 13 2000	노닐페놀	3916 90 9000	〃
2917 12 1000	아디프산	3919 10 0000	셀로판 테이프
(2918 29 909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의 알키레스터	3920 30 0000	폴리스탈렌 및 폴리스틸렌 공중합수지재 판, 쉬이트, 필름, 박, 스트립
2934 20 2000	메카프로 벤조티아졸	41 0000	경질의 염화비닐수지제의 판, 쉬이트, 필름, 박, 스트립
20 3000	디벤조티아졸릴셀펜 아미드	42 0000	연질의 염화비닐수지제의 판, 쉬이트, 필름, 박, 스트립
20 9000	엔 씨이크로 벤조티아질 센펜아미드	3921 11 0000	3920 30과 동일
3204 (5)	염료, 안료	12 0000	3920 41. 42 와 동일
3206 10 0000	티타늄화이트	90 3000	3920 30과 동일
3208 (9)	와니쉬, 래커	90 4010	3920 41과 동일
3209 (9)	〃	90 4020	3920 42과 동일
3212 10 0000	스탬프용의 박	90 5010	폴리메틸메타 아크릴수지제 필름
3215 11 0000	인쇄용잉크(흑백)		
19 0000	〃 (기타)		
3901 30 0000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CCCN	품 목	CCCN	품 목
3921 90 6030	유리섬유가 콤파운딩된 불포화 폴리에스테이트의 판, 쉬이트	5602 29 0000	기타 섬유제의 펠트
		5801 (6)	파일직물
		6601 99 2000	파라솔
3923 40 0000	스플, 콥, 릴, 기타 유사한 물품	99 9000	우산, 텐트
		6903 10 2000	도가니
4009 20 0000	고무관중 편상식 고무판	6910 10 3000	
50 2000	4009 20과 동일	10 9000	위생도기류
4010 10 0000	V형 벨트와 벨팅	90 0000	
91 0000	평펠트와 벨팅	7013 (8)	유리제 식기류
91 9000	기타의 벨트	7019 31 0000	유리섬유 매트
99 1000	기타의 평벨트와 벨팅	7201 10 2000	제강용 선철
99 9000	기타벨트	7216 50 0000	ㄷ 형강
4804 11 0000	크라프트라이너 (표백한 것)	7216 12 0000	주석도강판
		7212 10 2000	〃
19 0000	크라프트라이너(기타)	7226 92 0000	
41 9000	기타의 크라프트라이너와 판지	91 0000	탄소공구강대
51 0000	〃	93 0000	
29 0000	지대용 크라프트지(기타)	7304 10 0000	
2933 59 2090	Disodiun-5-Ribonucl-eotide	20 0000	소관 및 무계목강판
5212 13 0000	면직물	31 0000	
5213 23 0000	〃	41 0000	
5512 (4)	합성단섬유직물	51 0000	
5513 (12)	〃	90 0000	
5513 (12)	〃	7305 11 0000	
5516 (4)	재생단섬유직물	19 0000	스텐레스 용접강관
		31 0000	

CCCN	품 목	CCCN	품 목
7306 10 0000		8450 19 0000	가정용 기타 세탁기
20 0000	스텐레스 용접강관	8470 10 1000	액정식 17단위미만의
40 1090			전자계산기
40 2090		21 1000	형광식 17단위미만의
90 1000	이중권 강관		전자계산기
7314 11 0000	클로오드	8502 13 400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7407 21 0000	황동의 봉과 형재		을 갖춘 발전세트
7409 21 9000	동의판과 대중 황동의	20 20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코일	20 3090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29 9000	동의 판과 대중 황동의	20 5000	
	코일 이외의 것	20 6000	
7411 10 0000	동의 관	8506 11 1000	망간건전지
21 0000		20 1000	
7410 21 1000	동박적층판	(11 2000)	알카리 망간건전지
22 0000		(20 9000)	
8415 10 1010		8509 10 0000	진공소제기
10 1020	원도우타입 공기조절기	8512 20 1000	조명용기구
10 2010		8516 71 1000	커피탕기
10 2020		8517 90 1000	공중통신용 전자식
8418 10 1030	가정용 냉장냉동고		자동교환기 부분품
21 3000	압축식의 가정용 냉장고	90 9300	기타의 공중통신용 부분품
61 0000	압축식냉장 또는 냉동기구	90 9500	사설교환기의 부분품
8450 11 0000	가정형 완전 자동전기	8518 50 0000	음향증폭세트
	세탁기	8525 10 2000	텔레비전
12 0000	가정형 원심탈수기 내장	10 9000	기타 송수신기
	세탁기	20 5000	〃

CCCN	품 목	CCCN	품 목
8525 20 6010	워키토키 셋트	8201 31 0000	원형톱날
20 6090	기타 트랜시버	91 1000	Hack-Saw blade
20 7020	모빌 델리포운	8206 00 0000	〃
20 7090	기타 무선전화기	8207 20 1000	선인발용 다이스
8526 91 4000	로오랑 리시이버	20 2000	금속압출용 다이스
8527 90 1000	장중단파수신기(고정식)	8209 00 1090	텅크스텐 카바이드튜울립중
90 2000	초단파수신기(고정식)		용접용 튜울립
8529 90 9200	라디오방송 또는 TV송신용	8302 41 1000	Floor Hinge
	부분품	8403 10 3000	가스보일러
8532 23 0000	고정식 자기축전기	90 0000	보일러부분품
24 0000	〃	8409 99 3010	선박용의 것으로서 300kw
8543 80 1010	이온정수기		이하 내연기관
8544 41 2000	프라스틱 절연전선	8413 70 1000	
41 9000	기타 전선	70 2000	농업용 양수기
49 2000	프라스틱 절연전선	70 9000	
49 9000	기타 전선	8414 40 0000	공기압축기 및 기체압축기중
51 1000	고무절연 전선		가스압축기
51 2000	프라스틱 절연전선	59 0000	송풍기 및 휀
51 9000	기타	60 0000	〃
59 1000	고무절연 전선	80 9900	〃
59 2000	프라스틱 절연전선	8415 10 1010	자장식 공기조절기 원도우
59 9000	기타 전선		타입
9031 80 1000	어군탐지기	10 1020	
7321 81 0000	가스난방기구	10 2010	〃 월타입
90 0000	가정용 철강제 가열기구의	10 2020	
	부분품		

CCCN	품 목	CCCN	품 목
8415 81 0000	냉장유니트의 냉열순환	8459 69 1000	베드형 밀링머신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8465 93 1000	프로필 샌더
	공기 조절기	95 1000	다축드릴링 머신
82 0000	기타 공기조절기	99 1000	목재 가공용 기계
8418 61 0000	콘덴싱유니트	8466 20 0000	가공물 홀더
69 3000	냉동기	30 0000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8422 20 0000	병 또는 기타용기 세정용		특수부착물
	기계	8467 11 2000	스크류 드라이버
8424 20 2000	도장기	11 3000	그라인더
8424 20 0000	윈치와 캐스탄	19 9000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타
31 0000	〃	8474 20 9000	파쇄기와 분쇄기
42 9000	잭	8477 20 1000	압출기
8426 49 1000	크롤라 크레인	8479 89 9010	
8427 10 0000	자주식트럭	8477 40 0000	기타 고무산업용 기계
20 9010	휠로우더	59 0000	
20 9020	크롤라우더	8479 82 1000	혼합기
8429 19 0000	불도우저와 앵글도우저	82 2000	파쇄기와 분쇄기
20 0000	그레이더	8418 20 0000	유압밸브
40 0000	로우드로울러	80 1090	수동식의 볼밸브
40 2000	크롤라로우더	8483 10 9000	차량용 전동축
8431 42 0000	불도저의 부분품	20 9000	차량용 베아링 하우징
49 0000	굴착기부분품	40 9010	차량용 기어
8452 10 1010	가정형 직진형의 재봉기	40 9020	기어박스
10 2000		40 9030	무단변속기
8455 30 1000	주조제 롤	40 9090	기타 차량의 것
8459 59 0000	무릎형 밀링머신	50 0000	플라이휠과 풀리

CCCN	품 목	CCCN	품 목
8483 60 9000	클러치	8703 31 4000	1000cc이하 스테이션웨곤
90 9000	차량의 부분품	31 6000	″호움카
8525 20 6010	트랜시버	32 4000	스테이션웨곤(2000
20 6090			~2500)
20 7020	카폰	32 6000	호움카(″)
20 7090		32 9000	기 타(″)
8526 10 0000	레이다기기	33 1000	세단형(2500cc 초과)
91 4000	로오랑 리시버	33 3000	케리올트럭형(″)
8527 21 0000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33 4000	스테이션웨곤(″)
	수신기기	33 6000	호움카(″)
8527 90 1000	장·중·단파 수신기	33 9000	기타(″)
90 2000	(고정식)	90 1000	기타세단형(1000~2000)
8529 90 9200	무선송수신기 부분품	90 2000	기타찝형(″)
8539 10 0000	차량용의 전조등용 필라	90 3000	기타케리올트럭형(″)
	멘트 램프	90 4000	기타스테이션웨곤(″)
8539 21 0000	차량용의 텅스텐 할로겐	90 6000	기타 호움카(″)
	램프	90 9000	기타(″)
8543 80 1010	의료용 물질생성기	8704 10 0000	덤프차
8703 21 4000	스테이션 웨곤	21 9020	탱크차
21 6000	호움카	23 1000	일반화물자동차(20톤초과)
23 6000	″	23 9020	탱크차(″)
8703 24 2000	찝형자동차(3000cc초과)	31 1000	일반화물자동차(5톤이하)
24 3000	케리올트럭형(″)	31 9020	탱크차(″)
24 6000	호움카(″)	32 1000	일반화물자동차(5톤초과)
24 9000	기타(″)	32 9020	탱크차(″)
31 3000	1000cc이하 케리올트럭형	90 1000	일반화물자동차(기타)

CCCN	품 목	CCCN	품 목
8704 90 9020	탱크차(기타)	9504 90 3000	기타의 게임용구 및 유희
8705 20 00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90 9010	용구
40 0000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90 9090	기타
8711 10 1000	모터싸이클(50cc 이하)	9608 39 1000	만년필
10 2000	모페드(〃)	40 2090	기타의 스라이딩 펜슬
8908 00 0000	해체용 선박과 기타구조물	40 1000	프로펠링 펜슬
9003 11 0000	플라스틱제 안경테	9609 90 2000	파스텔
19 1000	안경테 및 자루		
19 9000			
90 0000	안경의 부분품		
9009 90 0000	복사기용 셀레늄 드럼		
9018 19 4000	혈압계		
9024 10 1000	경도시험기		
9025 19 0000	온도기록계		
9027 80 2010	P.H Meter		
9028 10 1010	가스미터		
9031 80 1000	어군탐지기		
9032 10 1010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10 1090			
10 2000			
9101(7)	귀금속 시계		
9102(3)	〃		
9105(3)	전자식 전기기계		
9616 10 0000	에어로솔 전기사례		
9504 30 0000	기타의 게임용구		
40 0000	유희용 카드		

(3) 추가품목

CCCN	품 목	CCCN	품 목
2915 31 0000	초산에틸	8452 29 9000	기타 재봉기
2929 10 1000	TDI	8456 30 0000	전기·전자식 방전가공기
3823 90 9090	PPG	8457 10 0000	머시닝센타
3907 20 2000		8458 11 0000	NC 수평선반
5111 11 1000		19 0000	자동선반
11 2000	양모 및 섬수모직물	8459 51 0000	NC 무릎형 밀링머신
19 1000		61 0000	NC 밀링
19 2000		8461 30 0000	브로칭기
5111 30 0000	모혼방직물	8462 99 0000	기계식 프레스
90 0000		8471 92 2010	프린터
5112 (6)	양모 및 섬수모직물	93 2010	프로피디스크 드라이브
7219 33 0000		8482 10 0000	단열깊은 홈 볼베어링
34 0000	스텐레스냉연강판	20 0000	단열테이프 롤러베어링
35 0000		8502 13 1010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400kw 이상)
7220 20 0000	스텐레스강대	13 2000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750-1,500KVA)
7326 90 1000	철강제 보빈	8502 13 3000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1,500-3,500KVA)
7616 90 1000	알루미늄제 보빈	8519 21 1000	레코드플레이어
8408 10 1000		99 9000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를 가진 음성 재생기기
10 2000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8521 10 1000	
10 3000		10 9010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 용기기(가정용에 한함)
8409 99 3020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	10 9020	
8414 10 0000	진공펌프		
8414 30 2000	냉매압축기		
80 9220	기체압축기		
8423 81 0000	중량측정기기		
8445 11 0000	방적카아드기		
8447 20 1090	기타 횡편기(장갑편직)		

CCCN	품 목	CCCN	품 목
90 1000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디스크형의 것)	8902 00 1010	어선류(철강어선)
8525 30 1000	텔레비전 카메라(녹화기능으로 가정용의 것)	00 1020	에프·알·피선
		00 1090	기타 어선
		00 2000	어획물의 가공 및 저장선박
8703 22 1000	개솔린 1000-1500cc 세단	9006 51 0000	35㎜롤필림용 사진기
22 3000	〃 캐리올트럭	53 0000	
22 4000	〃 스테이션웨곤	9102 11 9000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22 9000	〃 기타	2811 19 9000	붕불화수소산
8705 10 0999	기중기차	2914 11 0000	아세톤
8708 21 0000	안전벨트	3204 11 0000	분산성 염료
29 0000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3204 16 0000	반응성 염료
		3910 00 9000	실리콘에멀젼
39 0000	기타의 제동장치와 부품	9018 90 5000	인공실장기용 분석여과기
50 0000	자동장치를 갖춘 구축자동		
8901 10 1000	여객선류(순항선)		
8901 10 2000	유람선		
10 3000	페리보우트		
10 9000	기타		
8901 90 1010	일반화물선		
90 1020	벌크선		
90 1030	콘테이너선		
90 1090	기타		
90 2000	화객선		

라. 기타 수입선다변화품목 운용

(상공부공고 제88-23호, '88. 5. 4 시행)

○ 본문개정

- 수출입별도공고 제3장 기계류의 국산개발소요부품과 제4장 국가안보시설소요물품의 수입절차 등을 이 공고에 통합
- 수출입별도공고의 정비에 따른 수입선다변화품목예외수입에 관한 일부규정 이관

○ 해제품목

H S	품 목
7219 3 7220 20	스텐레스냉연강판 및 강대
(8442)	사진식자기(신문제목식자사용에 한함)
(8445 11)	방적카아드기(Tandem카아드기에 한함)
8447 20	기타 횡편기
8477 51	기타 고무산업용 기계

- 사 유

· 스텐레스냉연가안 및 강대 : 수급의 원활화
· 탄템카드기 : 국산공급 및 수입선전환불가
· 사진식자기 : 언론기관용은 예외 수입
· 기타 횡편기 : 수입선전환 가능국가의 생산중단
· 기타 고무산업용기계 : HS 8477 80. 으로 중복제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경과>

가. 목 적

수입초과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중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미지역으로 수입선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별도공고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무역역조시정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함.

나. 근거 및 연혁

○ 근 거

- 무역거래시행령 제 21조의 3 제2항 제4호
- 무역관리규정 제 11-3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항('87.7.1 이후)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예외수입 조치

○ 연 혁

'77.12.31 최초시행, 7개품목
대외비로 운영(수입승인은행에 공문으로 통보)
'78. 5.20 본격시행 99개품목 추가
'80.11. 3 품목공개(무역관리규정에 근거한 별도공고)

다. 제도운영

(1) 수입절차

○ 대상품목을 심한 입초국으로부터 수입(원산지 또는 선적기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가 확인한 물품도매확약서를 첨부하여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외국환은행의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

- 심한 입초국 :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

○ 예외수입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기계류 국산화부품의 수입
- 방위산업용 원료기재의 수입
- 유리보수용 부품의 수입
- 견본, 시약의 수입
- 기타 상공부장관의 별도인정하는 사항

(2) 운영현황

○ 연도별 운영실적

(CCCN 4단위기준)

'80	'81	'82	'83	'84	'85	'86	'87	'88
195	205	209	174	168 (590)	160 (465)	162 (414)	147 (379)	98 (246)

* 1. ( )안은 CCCN 8 단위기준임.
2. '88년은 HS 6 단위로는 222개, HS 10 단위로는 344개임.

*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불)

	'82	'83	'84	'85	'86	'87	'88
전 체	-2,594	-1,764	-1,036	-19	4,206	7,659	8,886
대 일	-1,988	-2,880	-3,038	-3,017	-5,443	-5,220	-3,925

○ 신규자유화품목중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

(CCCN 8 단위기준)

	'83	'84	'85	'86	'87	'88
전 체		590	465	414	379	344
신규자유화품목중 지정품목	13	44	73	59	56	58

라. 문제점

○ 제도운영에 의한 대일역조개선의 한계

-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도 불구, 대일무역적자폭의 확대
- 무리한 수입선전환유도시 산업경쟁력의 향상측면에서 불리

○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약요인

- 외화획득용에 의한 예외수입과다로 실효성 반감

(단위 : 백만불)

	계	원 자 재	자 본 재	소 비 재
대 일 수 입	1,922	582	1,149	190
수출용수입	842	421	278	143
비 중	43.8	72.3	24.2	75.3

- 품목선정상의 문제
  - 제도취지인 대일역조개선위주보다 상당부분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선정
  - 자유화와 동시 다변화지정 및 장기간 다변화품목의 경우 다변화 지정효과 의문

○ 국제규범상 존립근거 약화

-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점에서GATT 제 1조(일반적 최혜국 대우) 및 제13조(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위배

마. 향후 운용방향

○ 흑자기조가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대일역조도 점차 개선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운영 필요

○ 일본이 수입선다변화제도운영에 대하여 GATT 제소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무리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업계에 대하여 수입선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incentive 제공으로 대일수입의존 탈피

○ 앞으로 대일역조개선추세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상품목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며 아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 및 역할증대에 따라 수년내 동 제도완전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Ⅳ- 12. 1989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가. 1차 개정

○ '89. 3. 24(상공부 공고 제89-6호) 발표한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는 일부품목만 해제되고 신규추가된 품목은 없음.
〈참고 89-9〉

나. 2차 개정

○ '89. 3. 31 일부품목 수정 보완
〈참고 89-10〉

다. 3차 개정

○ '89. 7. 31 일부품목조정
〈참고 89-11〉

〈참고 89-9〉

상공부 공고 제 89-6호

수입선다변화품목개정공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 품목 공고(상공부공고 제88-23호 및 제88-4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89년 3월 24일

상 공 부 장 관

다 음

별 첨

부 칙

1. 이 공고는 1989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상공부 공고 제88-23호 및 제88-48호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을 심한 입초국으로부터 수입(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또는 계약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에 의한 수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승인)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 1kg 이하이고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단,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추천하는 경우
5. 별표2에 게기된 기계류(전자 및 전기제품 포함)의 국산개발 대상품목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부품에 대해 해당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6. 별표2에 게기되지 아니한 HS 72류 내지 HS 92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중 상공부 장관이 국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7.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무기류 제외) 체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8.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의 시험 또는 연구용의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하는 경우

제4조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 신청서류) 국산개발 소요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추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제 제1호에 의한 국산화 추진세부계획서(최초 1회에 한함)
2. 별지 제2호에 의한 부품 수입추천 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 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의 수립)
①추천기관은 국산개발 대상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품목별, 업체별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계류의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년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
②추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산 개발 대상품목별로 관련 생산업계, 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화계획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추천기준 및 유효기간)
①추천기관은 부품 수입추천 시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 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추천은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④부품 수입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제7조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수입승인 등)

①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심한 입초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제외)승인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외국환 은행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수입승인 기관의 장은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 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 확인서상에 수입승인일자, 수입승인 수량 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통계보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심한 입초국으로 부터의 수입추천 확인 및 수입승인 실적을 매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재) ①국산화추진 세부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수입추천 신청서상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가루
2803 00 9010	○ 카아본블랙(RCF에 한함)
2811 19 9000	○ 붕불화수소산
2912 12 0000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2914 11 0000	○ 아세토
2915 31 0000	○ 초산에틸
2917 19 4000	○ 말론산 디에틸
19 5000	○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19 9000	○ 후말산
2918 29 9030	○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2922 42 2000	○ 그루탐산나트륨
2929 10 1000	○ 톨루엔 디 이소시이네이트
2930 90 9090	○ 에디펜
2933 59 3010	○ 5-이노신산나트륨과 5-구아닐산나트륨
90 9000	○ 베나솔
3003 90 9900	○ 자양강장변질제중 정제대두유 함유주사제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나트륨, 주석산제제
3204 11 0000	○ 분산성염료 중 다음의 것 - Red 73 (11116) - Red 50 - Red 167
16 0000	○ 반응성염료 중 다음의 것 - Orange 16 (17757) - Yellow 105 - Red 120 - Blue 21

H S	품 목 명
20 0000	○ 합성유기형광증백제중 다음의 것 - Fluorescent Bright Agent 90 - Fluorescent Bright Agent 135 - Fluorescent Bright Agent 216 - Fluorescent Bright Agent 220
3405 30 0000	○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금속용 광택제는 제외)
3703 10 9090	○ 인쇄제판용 인화지(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90 9000	○ 씨트상의 사진식자용 인화지 및 인쇄제판용 인화지 (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3707 90 2910	○ 기타의 현상제중 흑백필름용의 사진현상제
90 9200	○ 조색제(전자복사기용 건식2성분계토너에 한함)
3818 00 1000	○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823 90 9090	○ 합성복합조미료(핵산을 둘 또는 셋을 혼합한 복합조미료 및 동품목에 구루탐산나트륨을 혼합한 조미료)
3906 10 0000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90 0000	○ 폴리메타크릴산메틸
3907 20 2000	○ 기타중 폴리아크릴아마이드
3910 00 9000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3911 10 1000	○ 실리콘에멀젼
10 2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이 1이상의 것
	○ 쿠마론, 인덴 또는 쿠마론 인덴수지중 비중(20/20℃)이 1이상의 것

H S	품 목 명
3912 31 1000	○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스소다(CMC)
3913 10 2000	○ 알긴산프로필렌그리콜
3920 20 0000	○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15μ - 60μ의 것 (식품포장 Retort Pouch용의 것은 제외)
71 0000	○ 셀로판
3921 90 7000	○ 셀로판 및 셀로판테이프
4002 11 0000	○ 폴리부타디엔 스티렌(SBR)의 라텍스중 카복시 변성 (Carboxy Modified)의 것
4809 90 9000 4816 90 9000	○ 기타중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5111 11 1000	○ 양모직물
11 2000	○ 섬수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19 2000	○ 기타 섬수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1 2000	○ 섬수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19 2000	○ 기타 섬수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208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32 0000	1㎡당 중량이 100g 이하의 것)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00g 초과의 것)

H S	품 목 명
33 0000	○ 염색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5209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것)
32 0000	○ 염색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것)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것)
5210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32 0000	○ 염색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이 함유랭이 전중량의 85/100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5403 31 0000	○ 비스코레이온의 장섬유사(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m당 120회 이하의 것)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515 13 1000 9000	○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기타 직물중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H S	품 목 명
5603 00 1010	○ 인조피혁(폴리우레단 섬유제의 것)
6860 10 3000	○ Ceramic Fiber 제품중 다음의 것
	- Loose wool (Bulk)
	- Falt (Sheet 포함)
	- Blanket
	- Board and Block
90 0000	○ 암면천정판(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20 9050	○ 기타슬라이딩 노즐
90 9090	○ 기타슬라이딘 플레이트
7019 20 0000	○ 유리섬유직물(동박적층판 제조용은 제외)
7205 10 1000	○ 쇼트
10 2000	○ 그리트
7211 30 0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중 탄소공구강대 (JISG 3311 해당품) SK3M, SK5M우로서 두께 0.1-4.0m/m 폭 4-350m/m의 것에 한함.
7216 33 1000 33 2000	○ H형강중 다음의 것(단, KSD 3542, 3529 및 3515 중 SWS58 해당 품목 제외) - 등변의 것으로서 100×100 - 350×350mm 해당품 - 부등변의 것으로서 600×300mm 이하의 것
7311 00 2000	○ 무계목 고압가스용기(밸브 삽입부분 탭 가공하지 않은 것 포함)중 용적 33.4 - 46.7l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	○ 석유난방기구
7326 90 1000	○ 철강제 보빈

H S	품 목 명
7607 11 9000	○ 알미늄 박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
19 9000	- 알미늄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미늄순도 99.4% 이상이며 Cu 0.23% 이상의 것
	- Al Clad와 Etched Aluminium Foil
7616 90 1000	○ 알루미늄제의 보빈
8207 50 1000	○ 드릴(테이퍼 생크드릴 및 스트레이트 생크드릴에 한함) 단, 텅그스텐 카바이드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드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
70 2000	○ 밀링커터중 다음의 것(단, 텅그스텐 카바이드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드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
	- Side Milling Cutter (단, Con Cave Cutter는 제외)
	- Metal Slitting Saw
	- Plain Milling Cutter
	- End Mill(2-Fluter, 4-Flute)
	- Staggered Tooth Side Milling Cutter
70 3000	○ 기어커팅 보호
	- Module or D.P, 1-25에 한함(단, 텅그스텐 카바이드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드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
8302 60 0000	○ 도어클로저(유압기구를 갖춘 Floor Hinge 포함)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 BHP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 엔진(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kw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0kw 초과의 것)
90 9000	○ 디젤엔진(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H S	품 목 명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것)
99 3030	○ 〃 (출력 2,000kw 초과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1 0000	○ 공기압구동유압펌프(Air Operated Hydraulic Pump)중 다음의 것 - 사용공기압 10kg/㎠ 이하이고 최대사용압력 700kg/㎠ 이하의 것
8414 10 0000	○ 진공펌프 중 다음의 것 - 최대진공도 5Torr, 배기량 2,000-50,000ℓ/m 인 수봉식 진공펌프 - 최대진공도 1×10^{-5} Torr, 배기량 2,000-40,000ℓ/m 인 메카니칼부스타 - 벨트구동의 오일로타리식 진공펌프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kw 미만의 것)
30 2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kw 이상의 것)
80 9210	○ 공기압축기(사용동력 74.6kw 미만의 것)
80 9220	○ 공기 및 개스압축기(사용동력 74.6kw 이상 373kw 미만의 것)
80 9230	○ 개스압축기(사용동력기 373kw 이상의 것)
8416 10 1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이하의 것)
10 2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를 초과하고, 1,500ℓ미만의 것)
8418 69 2000	○ 흡수식냉동기(50RT 미만의 유니트형 제외)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쿨러

H S	품 목 명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기계(주사약 충전기 제외)
30 2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30 9000	○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것
40 1000	○ 자동포장기계
40 2000	○ 자동결속기
40 9000	○ 기타 포장기계
8423 81 0000	○ 최대측정용량 30kg이하의 중량측정기기(Bar Code 저울, Label Printing 저울 및 정도 1/5000보다 높은 것은 제외)
8424 20 1000	○ 스프레이건 (도장용의 것으로 노즐 경 0.6㎜ 이상의 것에 한함)
89 0000	○ 에어브라스터(분립체의 싸이로나 흡파등의 막힌 부분을 고압의 공기를 분출시켜 뚫어 주는 장치)
8425 11 1010	○ 체인블럭(전동식의 10M/T 이하의 것)
11 1090	○ 폴리테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M/T 이하의 것)
19 0000	○ 기타의 블록과 체인불럭 및 폴리테클과 호이스트 (10M/T 이하의 것에 한함)
39 0000	○ 원치와 캡스탄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이하)
8429 51 1000	○ 휠로우더 (휠로우더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 포함)
52 1000	○ 굴착기(굴착기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0 49 9000	○ 유압브레카
8442 10 0000	○ 사진식자기(신문제목 전용 식자기는 제외)

H S	품 목 명
8446 30 1010	○ 래피어식의 면직기
30 1020	○ 래피어식의 견직기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48 33 9010	○ 스핀들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상하송사철, 차동송, 종합송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사절장치 부착형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RPM 5,000이상의 것과 스캘럽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인타록 재봉기(RPM 10,000이상 또는 상하차동송 제외)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직경 0.5㎜이하의 세공가공용의 것은 제외) - 수치제어식의 것으로 테이블 이동거리 800×600㎜이하의 것(와이어 커트식 제외) - 와이어 커트식의 것으로 테이블 이동거리 300×450㎜, 최대 가공물 두께 170㎜이하의 것 ○ 머시닝 센타로서 다음의 것(주축회전 12,000RPM 초과의 것은 제외)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000×1,0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2,000×800㎜이하의 것 - 프라노밀러형 4축제어이하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200×2,500m/m-2,500×7,000m/m이내의 것(신설)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단축으로서 주축회전 8,000RPM 이상의 것은 제외) - 스윙 700㎜, 중심간 거리 2,100㎜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8 19 0000	○자동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캠식 자동선반으로 가공물직경 25㎜이하의 것 (주축이동형은 가공물직경 15㎜이하의 것) - 단능반(유압자동선반)으로 스윙 600㎜, 주축경 120㎜이하의 것
8459 51 0000	○수치제어식의 무릎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주축을 경사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 - 단축으로 테이블 크기 1,400×310㎜이하의 것
61 0000	○수치제어식의 베드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으로 테이블크기 3,200×870㎜ 이하의 것 (모방형의 것은 테이블크기가 2,000×800㎜ 이하의 것)
8460 40 1000	○호닝반(내면형으로서 Bore 직경 300㎜이하의 것으로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8461 30 0000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가압력 30톤, 스트로크 2,000㎜ 이하의 것
8462 99 0000	○용량 2,000톤, SPM 400 이하의 기계식프레스 단, 다음의 것은 제외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8465 92 1000	○N.C 루우터(테이블이동거리 3,300㎜×2,400㎜, 테이블수 2 이하의 것) ○모울더(가공폭 250㎜이하로서 가공축수 8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71 20 9000	○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MB 이하의 것)
92 2010	○ 프린터(Serial Dot Matrix Type으로 300CPS 이하의 것에 한함)
93 2010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디스크직경 8인치 이상의 것은 제외)
8472 90 9000	○ 연필깎는 기계
8477 10 1000	○ 고무공업용의 사출성형기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로서 1회 사출용량 33㎤ - 4,500㎤ 의 것에 한함(2색사출성형기는 제외)
80 0000	○ 기타고무산업용 기계(40″이상의 가류기는 제외)
90 0000	○ 금형자동교환장치
8479 89 9020	○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9 9050	○ 코팅머신(렌즈, 수정진동자, 알루미늄, 진동코팅기에 한함)
89 9060	○ 자동도어 작동기
89 9099	○ 자동차 세척기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6014 - NO. 6200-6214 - NO. 6300-6314
20 0000	○ 단열 페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 (인치계열의 경우 내경 3/4″- 2 3/4″의 것) 단,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 32014 - NO. 33004 - 33014
80 0000	○ 유니트 보울 베어링(내경 12-75㎜의 것)

H S	품 목 명
8483 30 9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베아링 하우징(보올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아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플레인 샤프트베아링(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85 10 0000	○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90 9020	○ 내경 20-200㎜의 메카니컬 시일(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502 11 1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VA 이하의 것)
11 2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VA 초과 75KVA 이하의 것)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것)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단, 출력 75KVA 이하의 것에 한함)
8504 40 2000	○ 인버어터(단상 0.5KVA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이상 750KVA이하의 무정전 전원장치와 삼상 0.5KVA이상 400KVA 이하의 전동기 속도제어 장치에 한함)
8508 10 1000	○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10 9000	○ 기타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20 0000	○ 전기톱
80 1000	○ 전기그라인더, 센더, 폴리셔와 부러셔어
80 2000	○ 대패와 그루버
80 3000	○ 정타기
80 9000	○ 기타의 수치식 전동공구

H S	품 목 명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 포함)
79 1000	○ 전기밥통
8517 82 1000	○ 모사전송기기
90 9500	○ 모사전송기기의 부분품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가정용으로 진공관식은 제외)
8519 21 1000	○ 레코드플레이어(신호처리가 디지털 방식의 것으로 확성기를 감추지 않은 것에 한함)
99 9000	○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를 가진 음성재생기기
8521 10 1000	○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10 2000	(가정용에 한함)
8525 30 1000	○ 녹화용 텔레비전카메라(가정용에 한함)
8527 90 9000	○ 기타의 무선수신용기
8529 10 9210	○ 위성방송 수신용의 안테나 및 동부분품
8535 21 1000	○ 진공차단기(정격전압 7.2KV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000A이하의 것)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이하용으로 정격용량 375k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중 선박용의 것과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
8539 39 2000	○ 나트륨 램프

H S	품 목 명
8544 11 1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
20 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60 2010	○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 10KV 초과 100KV이하의 것)
60 2090	○ 기타전선(전압 10KV 초과 100KV이하의 것으로서 Bus Duct는 제외)
60 3010	○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 100KV초과의 것)
60 3090	○ 기타전선(전압 100KV 초과 것으로서 Bus Duct는 제외)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93 21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2000	○ 쿱형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1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2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초과)
22 2000	○ 쿱형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3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3 2000	○ 쿱형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H S	품 목 명
24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24 4000	○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1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500cc 이하)
31 2000	○ 쯮형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이하)
31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500cc 이하)
32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2000	○ 쯮형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3 2000	○ 쯮형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적재중량 5톤 이하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적재중량 5톤초과, 20톤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차(25톤이상 75톤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0000	○ 차체(운전실 포함)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50 000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711 2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1000	○ 순항선
10 2000	○ 유람선
10 3000	○ 페리보우트(3,000 G/T 미만은 제외)
10 9000	○ 기타

H S	품 목 명
90 1010	○일반화물선(4,000 G/T 미만은 제외)
90 1020	○벌크선(4,000 G/T 미만은 제외)
90 1030	○콘테이너선
90 1090	○기타
90 2000	○화객선
8902 00 1010	○철강어선
00 1020	○F.R.P 선
00 1090	○기타
00 2090	○기타(어획물운반선 포함)
9002 11 1000	○카메라렌즈중 35㎜카메라의 표준렌즈 및 교환렌즈(망원, 줌)
9006 51 9000 53 9000	○35㎜ 롤필름용의 사진기(1회용의 것은 제외)
9009 12 0000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 및 복사속도 A4기준 50매/분 이상의 것은 제외)
9010 10 9000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or : 처리능력 35㎜ 사진기용 필름 24매 기준 100롤/시간 이하의 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ter : 3″×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이하의 것
9033 00 0000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융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102 11 9000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H S	품 목 명
9207 10 1000	○ 전자식 올겐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19 9000	○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20 2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20 9000	○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09 10 1000	○ 연필
10 2000	○ 색연필
20 0000	○ 연필심
90 1000	○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참고 89-10〉

상공부 공고 제 89-10호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중 일부수정

'89년 3월 24일자 상공부공고 제89-6호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공고 발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989년 3월 31일

상 공 부 장 관

다 음

별 첨

부 칙

이 공고는 1989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별 첨〕

○ 〔별표 1〕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당 초		수 정	
H S	품 명	H S	품 명
2803 00 1090	○ 카아본블랙 (RCF에 한함)	2803 00 9010	좌 동
8446 30 2010	○ 래피어식의 견직기	8446 30 1020	좌 동
30 901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 직기	30 1090	〃
8448 33 1000	○ 스핀들	8448 33 9010	〃
8479 89 9090	○ 자동차세척기	8479 89 9099	〃
8502 11 1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VA 이하의 것)	좌 동	좌 동
11 2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출력 750VA 초과 75KVA이하의 것)	좌 동	좌 동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것)	좌 동	좌 동

당 초		수 정	
H S	품 명	H S	품 명
-	-	8502 13 10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출력 400KW에 상응하는 이상 750KVA이하의 것)
-	-	13 2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출력 750KVA 초과 1500KVA 이하의 것)
-	-	13 3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출력 1500KVA초과 3500KVA 이하의 것)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단, 출력 75KVA 이하의 것에 한함)	좌 동	좌 동
8521 10 1000 10 9010 10 902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가정용에 한함)	8521 10 1000 10 2000	〃
9006 51 0000 53 000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1회용의 것은 제외)	9006 51 9000 53 9000	〃

〈참고 89-11〉

상공부 공고 제 89-30호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중 일부개정

1989년 3월 24일자 상공부공고 제89-6호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공고 별표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9년 7월 31일

상 공 부 장 관

다 음

별 첨

부 칙

1. 이 공고는 1989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이전의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공고에 의하여 한국전자공업진흥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하여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 첨〕

○ 〔별표 2〕 국산개발대상품목 및 부품수입추천기관

당초			개정		
추천기관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	국산개발대상품목	
	H S	품 명		H S	품 명
한국전자공업진흥회	8471	컴퓨터, 단말기기(키입력장치, 광학신인식장치, 음극선관단말기, 도형장치등), 보조기억장치(FDD, HDD, MTU스트리머), 프린터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8476	자동판매기			
	8517	전자식교환기, 반송장치, 모사전송기, 기타의 유선통신기기			
	8525	방송용기기, 무선전화기, 녹화용카메라, M/W장비, 기타의 무선기기(PAGER, 무선원격조정기등)		좌동	좌동
	8526				
	8527				
	8528				
	8537	콘트롤러(NC, CNCN, ROBOT 등)			
	9018	전기식 의료기기			
	9022	X선 또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전기식 의료기기, 화물검색기			
	9031	어군탐지기			
	8521	VTR			

Ⅳ- 13. 1990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1. 개　요

상공부는 입초가 가장 심한 지역(현재는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규제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상여건을 고려, 22개품목을 해제하는 한편 18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하여 전체적으로는 4개품목을 축소조정(증전 262 → 개정 258)하여 '90. 3. 20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2. 조정배경

○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80년대 들어 무역수지를 점진적인 개선추이와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따라 품목수가 점차 축소되어 왔으며,

특히 '86년에 국제수지가 흑자를 시현한 이후로는 축소추세가 가속화된 바 있음.

○ 금번의 품목조정에서는 심각한 수출부진과 개선되지 않는 대일적자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2-3년간 유지해온 품목축소의 속도를 불가피하게 수정, 무역수지와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보다 강화하여,

품목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경쟁력제고가 긴요한 품목, 불요불급 소비재로서 과소비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일부품목을 새로이 지정하였음.

○ 금번의 조치는 최근 2-3년간의 운영방향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긴 하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반적 운영기조(지속적 축소방향)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

○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저 차원에서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 노력등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대일통상차원에서의 배려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수입선다변화품목과는 별도로 업계에 권장되고 있는 수입선전환가능품목(현재 429개)에 대해, 그간 일본측의 폐지요구를 감안하여 금년부터 추가적인 발굴·보급을 중단키로 하였음.

3. 품목조정내용

○ 산업별 품목조정 내역(상세품목내역 : 별첨 1)

(HS 10단위 기준)

	현 행	조 정		조정후(증감분)
		해 제	지 정	
기 초	31	3	1	29(-2)
기 계	127	9	6	124(-3)
전 자 전 기	41	4	8	45(+4)
섬 유 생 활	57	4	3	56(-1)
기 타	6	2	-	4(-2)
계	262	22	18	258(-4)

○ 품목조정기준

〈해 제〉

- 기술개발, 공급안정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 수입수요가 없거나 국산공급이 곤란한 품목등

〈지 정〉

- 국내산업상 비중이 큰 유망품목으로 대일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품목
- 대일수입이 큰 품목, 불요불급 소비재등

4. 기대효과가 향후 대일역조 개선방안

○ 기대효과

22개 품목의 다변화 해제에 따른 대일수입 증가와 18개 품목 신규지정에 따른 대일수입 감소를 종합할 때 다소의 대일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되나 당장의 물리적인 가시효과 보다는 산업의 내실화를 통한 잠재효과가 클 것임.

- 신규지정 품목 :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한확보
- 해제 품목 : 국내공급 원활화로 수요업체의 애로타개

○ 대일역조개선 방향

우선 수입선전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대일수출의 촉진을 통해 확대균형을 도모하는 자연스런 방법으로 역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국내적으로는 기계류, 부품등의 국산화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임.

〈참 고〉

○ 수입선다변화품목수 및 대일무역수지 년도별 추이

	단 위	'77	'81	'86	'87	'88	'89
품 목 수	CCCN4 H S 10	4	208	159	632	344	262
대 일 무역수지	억 불	△18	△29	△54	△52	△39	△40

○ 수입선전환 추이

(단위 : 백만불, %)

	'86	'87	'88	'89
대 일 수 입	10,869 (34.4)	13,657 (33.3)	15,929 (30.7)	17,449 (28.4)
대 미 수 입	6,545 (20.7)	8,758 (21.4)	12,757 (24.6)	15,911 (25.9)
대구주수입	3,913 (12.4)	5,481 (13.3)	7,026 (1.6)	7,629 (12.4)

주 : ( )내는 비중

첨 부

1. 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내역 1부.

2. 수입선다변화품목의 규격조정내역 1부.

〈별첨 1〉

해제품목(22개)

H S	품 명	H S	품 명
2803 00 9010	카본블랙	2930 90 9090	에디펜
2933 90 9000	베나솔	3204 20 0000	합성형광유기증백제
3703 10 9090	인쇄제판용 인화지	3707 20 2910	흑백필름용사진현상제
3920 71 0000	셀로판	3921 90 7010	셀로판테이프
7019 20 0000	유리섬유직물	7326 90 1000	철강제 보빈
8414 80 9220	공기 및 개스압축기	8414 80 9230	개스압축기
8422 40 2000	자동결속기	8479 89 9060	자동도어작동기
8485 90 9020	메카니칼 씰	8502 11 1000	출력 750VA 이하의 발전세트
8508 80 3000	정타기		
8544 60 2010	프라스틱 절연전선	8544 60 2090	기타의 전선
8703 31 2000	디젤 1500cc이하 찝	8902 00 1090	기타 어선
8703 31 9000	〃 기타		

지정품목(18개)

H S	품 명	H S	품 명
2934 20 9000	고무가황촉진제	3920 99 0000	PVDC 랩
7011 20 1000	칼라브라운관용 유리 (21″용에 한함)	7323 92 0000	가정용 법랑제품
		7323 94 0000	〃
8413 70 9000	양수기	8433 51 0000	수확, 탈곡 겸용기
8521 90 1000	디스크형의 영상기록기(VDP)	8528 10 9040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21″이상)
8519 91 2010	디지털 음성기록기 (DAT)	8708 99 9000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2020			
8520 31 2020		8711 10 1000	모터사이클(50cc 이하)
99 1040		9017 10 0000	제도기
8527 21 1090		9102 19 0000	아나디지 손목시계

〈별첨 2〉

다변화품목 규격조정

H S	당 초	개 정
7607 11 9000	○알루미늄의 박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 - 알미늄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미늄순도 99.4% 이상이며 Cu 0.23% 이상의 것 - Al Clad 와 Etched Aluminium Foil	좌 동 〃 〃 - Etched Aluminium Foil
8207 50 1000	드릴(테이퍼 생크드릴 및 스트레이트 생크드릴에 한함) 단, 텅스턴 카이바이트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	드릴(좌 동) 단, 다음의 것은 제외 - 텅스텐 카바이트팁이 부착된 것 - 직경 0.8㎜이하의 세공가공용 - 시계용 2중 드릴
8458 11 0000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단축으로서 주축회전 8,000RPM 이상의 것은 제외) - 스윙 700㎜, 중심간거리 2,100㎜ 이하의 것	좌 동 (주축회전 8,000RPM 이상의 것은 제외) - 단축으로서 스윙 …… …… 이하의 것 - 2축으로서 스윙 330㎜, 중심간거리 210㎜이하의 것
8471 92 2010	프린터(Serial Dot Matrix Type 으로 300CPS 이하의 것에 한함)	프린터(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인자수 영문 60자 이상으로 300CPS 이하의 것에 한함)
8901 10 3000	페리보우트 (3,000G/T 미만은 제외)	페리보우트 (5,000G/T 미만은 제외)

H S	당 초	개 정
9009 12 0000	전자식복사기중 보통용지복사기 (복사원고크기 A2이상의 것 및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은 제외)	좌 동 (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 / 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참고 90-4〉

상공부 고시 제90-1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년 3월 20일

상 공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2)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의는 1kg 이하이고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단,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조선기자제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품목의 수입
6. 별표2의 게기되지 아니한 HS 72류 내지 HS 92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중 상공부장관이 국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의 소요부품 수입
7.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물품(무기류 제외)으로소 체신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전한 품목의 수입
9. 천재지변·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신설)
10.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KOTRA, KOEX가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자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신설)

제4조(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 (1) 제3조 제5조 및 제6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 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국산화추진세부계획서(최초1회에 한함)
2.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부품 수입추천 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 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 은 국산개발 대상품목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품목별, 업체별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계류의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국별 수입계획
3. 년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

(3) 추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산개발 대상품목별로 관련 생산업계, 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화계획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5) 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면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추전의 유효기간) (1)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은 추천 (또는 인정)일로부터 30일로 한다.

(2)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추천(또는 인정) 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6조(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승인등)

(1)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대회무역관리규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이 승인한다.

(2)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확인서에 수입승인일자, 수입승인 수량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보고)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 또는 수입승인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또는 수입승인 실적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1) 국산화추진 세부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수입추천 신청서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199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수입승인의 유효기간)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품품에 대하여는 이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즌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시행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타공고의개정)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상공부 공고 제89-6호, 제89-10호 및 제89-30호는 이를 폐지한다.

(4)(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상공부 공고 제89-6호, 제89-10호 및 제89-30호에 의한 수입추천, 확인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추천, 확인등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가루
2811 19 9000	○ 붕불화수소산
2912 12 0000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2914 11 0000	○ 아세톤
2915 31 0000	○ 초산에틸
2917 19 4000	○ 마론산 디에틸
19 5000	○ 마론산 디이소프로필
19 9000	○ 후말산
2918 29 9030	○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2922 42 2000	○ 글루탐산나트륨
2929 10 1000	○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2933 59 3010	○ 5-이노신산나트륨과 5-구아닐산나트륨
2934 20 9000	○ N-Oxydiethy lene-Benzothiaayl-Sulfenamide
3003 90 9900	○ 자양강장변질제중 정제대두유 함유주사제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나트륨, 주석산제제
3204 11 0000	○ 분산성염료중 다음의 것
	- Red 73 (11116)
	- 〃 50
	- 〃 167
16 0000	○ 반응성염료중 다음의 것
	- Orange 16 (17757)
	- Yellaw 105
	- Red 120
	- Blue 21

H S	품 목 명
3405 30 0000	○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체품 (금속용 광택제는 제외)
3703 90 9000	○ 쉬이트상의 사진식자용 인화지
3707 90 9200	○ 조색제(전자복사기용 건식2성분계토너에 한함)
3818 00 1000	○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823 90 9090	합성복합조미료(핵산을 둘 또는 셋을 혼합한 복합조미료 및 동품목에 글루탐산나트륨을 혼합한 조미료)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3906 10 0000	○ 폴리메타클릴 산메틸
90 1000	○ 폴리아크릴아미드
3907 20 2000	○ 폴리프로필렌 그리콜(PPG)
3910 00 9090	○ 실리콘에멀젼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C)이 1이상의 것
10 2000	○ 쿠마론, 인덴 또는 쿠마론 인덴수지중 비중(20/20。C)이 1이상의 것
3912 31 1000	○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나트륨(CMC)
3913 10 2000	○ 알긴삼프로필렌극리콜
3920 20 0000	○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15μ-60μ의 것(식품포장 Retort Pouch용의 것은 제외
99 0000	○ PVDC랩(Poly Vinylidene Chrolide)
4002 11 0000	○ 폴립타디엔 스티렌(SBR) 의 라텍스중 카복시 변성 (Carboxy Moditied)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4816 90 2000	
90 3000	○ 인쇄용 재판용지(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H S	품 목 명
5111 11 1000	○ 양모직물
11 2000	○ 섬수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19 2000	○ 기타 섬수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1 2000	○ 섬수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19 2000	○ 기타 섬수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208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100g초과의것)
32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100g초과의것)
33 0000	○ 염색한 3올 또는 4올의 증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이 전중량이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것
5209 31 0000	○ 염색한 평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것)
32 0000	○ 염색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것

H S	품 목 명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것)
5210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32 0000	○ 염색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소 1㎡당 중량이 200g이하의것)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200g이하의 것)
5401 31 0000	○ 비스코스레이온의 장섬유사(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m당 120회 이하의 것)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515 13 1000 9000	○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기타 직물중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5603 00 1010	인조피혁(폴리우레탄 섬유제의 것)
6806 10 3000	○ Ceramic Fiber 제품 중 다음의 것 - Loose wool(Buil) - Felt(Sheet포함) - Blamket - Board and Block
90 9000 6903 20 5000	○ 암면천정판(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20 9000	○ 슬라이딩 노즐
90 905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90	○ 기타슬라이딩 노즐 ○ 기타슬라이딩 플레이트

H S	품 목 명
7011 20 1000	○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벨브(TV 기준 21″에 한함)
7205 10 1000	○ 쇼트
10 2000	○ 그리트
7211 30 0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중 탄소공구강대 (JISG 3311해당품) SK3M, SK5M으로서 두께 0.1-4.0m/m 폭 4-350m/m의 것에 한함.
7216 33 1000 33 2000	○ H형강중 다음의 것(단,KSD 3542,3529 및 3515중 SWS58 해당품목 제외) - 등변의 것으로서 100×100-350×350㎜ 해당품 - 부등변의 것으로서 600×300㎜이하의 것
7311 00 2000	○ 무계목 고압가스용기(밸브 삽입부분 탭 가공하지 않은 것 포함) 중 용적 33.4-46.7ℓ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	○ 석유난방기구
7323 92 0000 94 0000	○ 법랑제품
7607 11 9000 19 9000	○ 알루미늄 박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알루미늄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루미늄순도 99.4% 이상이며 Cu 0.23% 이상의 것 - Etched Aluminium Foil
7616 90 1000	○ 알루미늄제의 보빈
8207 50 1000	○ 드릴(테이퍼 생크드릴 및 스트레이트 생크드릴에 한함) 단, 다음의 것은 제외 - 텅그스텐 카바이트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트팁이 부착된 것 - 직경이 0.8㎜이하의 세공가공용 - 시계용 2중 드릴

H S	품 목 명
70 2000	○ 밀링커터중 다음의 것(단, 텅그스텐 카바이드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드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 - Side Milling Cutter (단, Con Cave Cutter는 제외) - Metal Slitting Saw - Plain Milling Cutter - End Mill(2-Fluter, 4-Flute) - Staggered Tooth Side Milling Cutter
70 3000	○ 기어커팅 보호 - Module or D.P, 1-25에 한함(단, 텅그스텐 카바이드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드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
8302 60 0000	○ 도어클로저(유압기구를 갖춘 Floor Hinge 포함)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 BHP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 엔진(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kw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0kw 초과의 것)
90 9000	○ 디젤엔진(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것)
99 3030	○ 〃 (출력 2,000kw 초과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70 9000	○ 양수기(펌프)

H S	품 목 명
81 0000	○ 공기압구동유압펌프(Air Operated Hydraulic Pump)중 다음의 것 - 사용공기압 10kg/㎠ 이하이고 최대사용압력 700kg/㎠ 이하의 것
8414 10 0000	○ 진공펌프 중 다음의 것 - 최대진공도 5Torr, 배기량 2,000-50,000ℓ/m 인 수봉식 진공펌프 - 최대진공도 1×10^{-5} Torr, 배기량 2,000-40,000ℓ/m 인 메카니칼부스타 - 벨트구동의 오일로타리식 진공펌프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kw 미만의 것)
30 2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kw 이상의 것)
80 9210	○ 공기압축기(사용동력 74.6kw 미만의 것)
80 9220	○ 공기 및 개스압축기(사용동력 74.6kw 이상 373kw 미만의 것)
80 9230	○ 개스압축기(사용동력기 373kw 이상의 것)
8416 10 1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 이하의 것)
10 2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를 초과하고, 1,500ℓ미만의 것)
8418 69 2000	○ 흡수식냉동기(50RT 미만의 유니트형 제외)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8422 30 1000	○ 밀크쿨러
30 2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기계(주사약 충전기 제외)
30 9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것

H S	품 목 명
40 1000	○ 자동포장기계
40 9000	○ 기타 포장기계
8423 81 0000	○ 최대측정용량 30kg이하의 중량측정기기(Bar Code 저울, Label Printing 저울 및 정도 1/5000보다 높은 것은 제외)
8424 20 1000	○ 스프레이건 (도장용의 것으로 노즐 경 0.6㎜ 이상의 것에 한함)
89 0000	○ 에어브라스터(분립체의 싸이로나 홉파등의 막힌 부분을 고압의 공기를 분출시켜 뚫어 주는 장치)
8425 11 1010	○ 체인블럭(전동식의 10M/T 이하의 것)
11 1090	○ 폴리테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M/T 이하의 것)
19 0000	○ 기타의 블록과 체인불럭 및 폴리테클과 호이스트 (10M/T 이하의 것에 한함)
39 0000	○ 원치와 캡스탄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이하)
8429 51 1000	○ 휠로우더 (휠로우더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 포함)
52 1000	○ 굴착기(굴착기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0 49 9000	○ 유압브레카
8433 51 0000	○ 수확, 탈곡겸용기
8442 10 0000	○ 사진식자기(신문제목 전용 식자기는 제외)
8446 30 1010	○ 래피어식의 면직기
30 1020	○ 래피어식의 견직기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48 33 9010	○ 스핀들

H S	품 목 명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상하송사철, 차동송, 종합송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사절장치 부착형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RPM 5,000이상읙 것과 스캘럽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인타록 재봉기(RPM 10,000이상 또는 상하차동송 제외)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직경 0.5㎜이하의 세공가공용의 것은 제외) - 수치제어식의 것으로 테이블 이동거리 800×600㎜이하의 것(와이어 커트식 제외) - 와이어 커트식의 것으로 테이블 이동거리 300×450㎜, 최대 가공물 두께 170㎜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타로서 다음의 것(주축회전 12,000RPM 초과의 것은 제외)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000×1,0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2,000×800㎜이하의 것 - 프라노밀러형 4축제어이하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200×2,500m/m - 2,500×7,000m/m이내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주축회전 8,000RPM 이상의 것은 제외) - 단축으로서 스윙 700㎜, 중심간 거리 2,100㎜ 이하의 것 - 2축으로서 스윙 330㎜, 중심간 거리 21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8 19 0000	○ 자동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캠식 자동선반으로 가공물직경 25㎜이하의 것 (주축이동형은 가공물직경 15㎜이하의 것) - 단능반(유압자동선반)으로 스윙 600㎜, 주축경 120㎜이하의 것
8459 51 0000	○ 수치제어식의 무릎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주축을 경사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 - 단축으로 테이블 크기 1,400×310㎜이하의 것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베드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으로 테이블크기 3,200×870㎜ 이하의 것 (모방형의 것은 테이블크기가 2,000×800㎜ 이하의 것)
8460 40 1000	○ 호닝반(내면형으로서 Bore 직경 300㎜이하의 것으로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8461 30 0000	○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가압력 30톤, 스트로크 2,000㎜ 이하의 것
8462 99 0000	○ 용량 2,000톤, SPM 400 이하의 기계식프레스 단, 다음의 것은 제외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8465 92 1000	○ N.C 루우터(테이블이동거리 3,300㎜×2,400㎜, 테이블수 2 이하의 것) ○ 모울더(가공폭 250㎜이하로서 가공축수 8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71 20 9000	○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MB 이하의 것)
92 2010	○ 프린터(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인자수 영문 60자 이상으로 300CPS 이하의 것에 한함)
93 2010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디스크직경 8인치 이상의 것은 제외)
8472 90 9000	○ 연필깎는 기계
8477 10 1000	○ 고무공업용의 사출성형기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로서 1회 사출용량 33㎤ - 4,500㎤의 것에 한함(2색사출성형기는 제외)
80 0000	○ 기타고무산업용 기계(40″이상의 가류기는 제외)
90 0000	○ 금형자동교환장치
8479 89 9020	○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9 9050	○ 코팅머신(렌즈, 수정진동자, 알루미늄, 진동코팅기에 한함)
89 9060	○ 자동도어 작동기
89 9099	○ 자동차 세척기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6014 - NO. 6200-6214 - NO. 6300-6314
20 0000	○ 단열 페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 (인치계열의 경우 내경 3/4″- 2 3/4″의 것) 단,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 32014 - NO. 33004 - 33014
80 0000	○ 유니트 보올 베어링(내경 12-75㎜의 것)
8483 30 9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베아링 하우징(보올베어링 또는 로울러베아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플레인 샤프트베아링(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85 10 0000	○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H S	품 목 명
8502 11 2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VA 초과 750KVA 이하의 것)
12 0000	○ 압축전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것)
13 10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400KW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것)
13 2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KVA 초과 1500KVA 이하의 것)
13 3000	○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1500KVA 초과 3500KVA 이하의 것)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단, 출력 750KVA이하의 것에 한함)
8504 40 2010	○ 무정전 전원장치(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
40 2090	○ 전동기 속도제어장치(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
8508 10 1000	○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10 9000	○ 기타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20 0000	○ 전기톱
80 1000	○ 전기그라인더, 센더, 폴리셔와 부러셔어
80 2000	○ 대패와 그루버
80 9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79 1000	○ 전기보온밥통
8517 82 1000	○ 모사전송기기
90 9500	○ 모사전송기기의 부분품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가정용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21 0000	○ 레코드플레이어(신호처리가 디지털 방식의 것으로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519 91 2010	○ 기타의 음성재생기중 디지털식의 것(자동차용의 것)
91 2020	○ 〃 (휴대용의 것)
93 3010	레이저과학 판독장치를 가진 음성제생기기(확성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020	
3090	
8520 31 2020	○ 디지털식 테이프녹음기(휴대용의 것)
90 1040	○ 디지털식 카세트형의 데크
8521 10 1000	○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가정용에 한함)
10 2000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 30 1000	○ 녹화기용 텔레비전카메라(가정용에 한함)
8527 11 200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한다)
21 1090	○ 아나로그식이 아닌 기타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21 200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한다)
21 3000	
31 1210	
31 1310	
8528 10 4000	○ 비디오 튜너(칼라용의 것)
10 904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내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이상의 것에 함함)
20 3000	○ 비디오 튜너(흑백 또는 단색용의 것)

H S	품 목 명
8529 10 9210	○ 위성방송 수신용의 안테나 및 동부분품
8535 21 1000	○ 진공차단기(정격전압 7.2K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000A 이하의 것)
8538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가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중 선박용의 것과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
8539 39 2000	○ 나트륨 램프
8544 11 1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
20 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60 3010	○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 100KV초과의 것)
60 3090	○ 기타전선(전압 100KV 초과 것으로서 Bus Duct는 제외)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1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이하)
21 2000	○ 쾁형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이하)
21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000cc이하)
22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2000	○ 쾁형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H S	품 목 명
2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3 1000	○ 새단형의 것(시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이하)
23 2000	○ 쬡형자동차(실린더요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24 4000	○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1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500cc 이하)
32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200	○ 쬡형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3 2000	○ 쬡형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적재중량 5톤 이하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적재중량 5톤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타(25톤이상 75톤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0000	○ 차체(운전실 포함)의 기타부분과 부속품
50 000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99 9000	○ 기타(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한하며 한국농기구공업 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1000	○ 순항식
10 2000	○ 유람선
10 3000	○ 폐리보우트(5,000G/T 미만은 제외)
10 9000	○ 기타
90 1010	○ 일반화물선(4,000 G/T 미만은 제외)
90 1020	○ 벌크선(4,000G/T 미만은 제외)
90 1030	○ 콘테이너선
90 1090	○ 기타
90 2000	○ 화객선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 선
00 2090	○ 기타(어획물운반선 포함)
9002 11 1000	○ 카메라렌즈 중 35㎜카메라의 표준렌즈 및 교환렌즈(망원.줌)
9006 51 9000	○ 35㎜를 필름용의 사진기(1회용의 것은 제외)
53 9000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지(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 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0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dr : 처리능력 35㎜사진기용 필름 24매 기준 100/시간 이하의 것 - pao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 /시간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 Photo Printer : 3″×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이하의 것
9017 10 000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제도판의 포함여부를 불문)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102 11 900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0000	○ 일반용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전자식 올겐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19 9000	○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20 2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20 9000	○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09 10 1000	○ 연필
10 2000	○ 색연필
20 0000	○ 연필심
90 1000	○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Ⅳ- 14. 1991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가. 1차 개정('91. 5. 13)

○ 조정내용

- 상공부는 국가별 수출,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91. 5. 13자로 개정 시행키로 공고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현행 총 268개 품목에서 30개 품목을 해제하는 한편 20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여 전체적으로 10개 품목이 축소된 258개 품목이 됨

○ 조정내용

-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80년대 들어 무역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추이와 대외통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수를 점차 축소하여 왔으며, 특히 '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를 이루었던 4년간은 축소추세를 가속화한 바 있음

- 이번의 조정에서는 '90년도에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일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코자 하는 동제도의 운영방향에 따라 조정하였음

- 따라서 이번 품목조정에서는 양국간의 수출·수입의 균형을 감안하여 일부 소비제품목을 조정하는 한편

  · 장기간 보호되었거나 기술개발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과 수입수요가 적고 국산공급이 곤란한 지정실익이 적은 품목은 해제하고

  · 국산개발된 생산초기단계 제품이거나 산업피해 구제조치 품목으로서 산업육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등은 신규로 지정을 하였음

〈참 고〉

○ 년도별 수입선다변화 품목수

구 분	단 위	'77	'81	'86	'87	'88	'89	'90
품목수	CCCN	4	203	159				
	HS 10				632	344	262	263

* '90년 품목수는 HS Code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품목수임
(개정전은 258개 품목)

○ 년도별 대일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86	'87	'88	'89	'90
수 출	54	84	120	134	126
수 입	108	136	159	174	185
무역수지	-54	-52	-39	-40	-59

첨 부 : 1. 수입선다변화 신규지정품목
2.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H S	품 목	H S	품 목
2917 19 4000	말론산디에틸	2917 19 5000	말론산디이소프로필
2922 42 2000	글루탐산 나트륨	2929 10 10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3911 10 2000	쿠마론인덴 또는 쿠마론 인덴수지	3912 31 1000	카르복시메틸셀롤로스 나트륨
3913 10 2000	알긴산프로필렌 글리콜	5111 11 2000	섬수모직물(카드한 것)
5111 19 2000	기타 섬수모직물 (카드한 것)	5112 11 2000	섬수모직물(코움한 것)
5112 19 2000	기타 섬수모직물 (코움한 것)	5209 31 0000	염색한면의 평직물 (1m 당중량 200g 초과)
5209 32 0000	염색한면의 3올 또는 4올 능직물 (1m당 중량이 200g초과)	5209 39 0000	염색한 기타 면직물 (1m 당중량 200g 초과)
5210 32 0000	염색한면의 3올 또는 4올 능직물 (1m당 중량이 200g이하)	5515 13 1000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기타면직
7205 10 1000	쇼 트	7205 10 2000	그리트
7607 19 9000	알루미늄박	8207 50 1000	드 릴
8207 70 2000	밀링커터	8413 81 0000	공기압구동 유압펌프
8423 81 0000	최대측정용량 30kg 이하 중량측정기기	8442 10 0000	사진식자기
8477 90 0000	금형 자동교환장치	8802 11 200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VA 초과 75KVA 이하)
9523 20 3000	비디오튜너(흑백, 단색용)	9901 10 1000	순항선
9307 20 9000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09 10 2000	색연필

〈수입선다변화 신규지정품목〉

H S	품 목 명
2831 10 1000	아이티온산 나트륨
2905 32 0000	프로필렌 글리콜
3924 10 0000	플라스틱제 식탁주방용품
4818 40 0000	위생용타올과 탐폰, 유아용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6814 10 0000	판, 쉬트 및 테이프의 집성운모절연제품(집성운모박은 제외)
6911 10 1000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자기제)
6911 10 3000	대접 또는 공기(자기제)
6911 10 9000	기타 식탁, 부엌용품(자기제)
6912 00 1020	접시 및 쟁반(도자제)
6912 00 1030	대접 또는 공기(도자제)
6912 00 1090	기타식탁, 부엌용품(도자제)
7013 29 0000	기타의 음료용 유리컵제
7013 39 0000	기타의 식탁용 및 부엌용 유리제품
7315 39 0000	Load Chain(체인선재의 직경이 5㎜-20㎜의 것)
8589 31 0000	형광램프(얼음극형의 것)
8543 00 0000	모사전신기용 Thermal Printer Head
9404 90 0000	기타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자기침구류 포함)
9405 60 9000	기타의 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0	비디오게임 용구
9506 31 0000	골프채

〈참고 91-6〉 '91년 1차 개정 수입선 다변화 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1991. 5

상 공 부

상공부 공고 제91-2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1년 5월 13일

상 공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2) 별표1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 1kg 이하이고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단,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품목의 수입
6. 별표2에 게기되지 아니한 HS 72류 내지 HS 92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중 상공부장관이 국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의 소요부품 수입
7.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9.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 별표2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제4조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생산요소품의 수입) (1) 제3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제 제1호서식에 의한 국산화추진세부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품 수입추천 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 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추천기관 (또는 인정기관)은 제1항의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추천기관이 정한 당해물품의 최저국산화율 적합여부 또는 국산화를 요하는 중요부품의 국산화여부
4. 년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

(3) 추천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산개발 대상품목별로 관련 생산업계, 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화계획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5) 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추천의 유효기간) (1)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수입추천(인정 포함) 및 [별표 1]에 의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추천(인정 포함)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로 한다.

(2)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추천(또는 인정)일부터 6월까지로 한다.

제6조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승인 등)

(1)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외국환 은행의 장이 승인한다.

(2)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확인서에 수입승인일자, 수입승인 수량 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등) (1)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 또는 수입승인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수입승인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또는 계약서) 확인요령을, 그리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하는 기관 및 별표 1에 의하여 확인을 하는 기관의 장은 추천 또는 확인요령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수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상공부장관은 역조개선,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요령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1) 국산화추진 세부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 추천신청서상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상공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추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시행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이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수입추천 또는 확인요령(물품매도확약서확인요령은 제외)의 보고는 제4조 제3항에 의한 국산화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고시 시행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고후 추천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다.

4.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상공부고시 제90-15호는 이를 폐지한다.

5.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상공부고시 제90-15호에 의한 수입추천, 확인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추천, 확인등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가루
2811 19 9000	○ 붕불화수소산
2831 10 1000	○ 아이티온산 나트륨
2905 32 0000	○ 프로필렌 글리콜
2912 12 0000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2914 11 0000	○ 아세톤
2915 31 0000	○ 초산에틸
2917 19 9000	○ 후말산
2918 29 9030	○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2933 59 3010	○ 5-이노신산나트륨과 5-구아닐산나트륨
2934 20 9000	○ N-Oxydiethy lene-Benzothiaayl-Sulfenamide
3003 90 9900	○ 자양강장변질제중 정제대두유 함유주사제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나트륨, 주석산제제
3204 11 0000	○ 분산성염료중 다음의 것 - Violet 26 - Red 50 - 〃 167
3204 16 0000	○ 반응성염료중 다음의 것 - Orange 16 (17757) - Yellaw 105 - Red 120 - Blue 21
3405 30 0000	○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금속용 광택제는 제외)

H S	품 목 명
3703 90 9000	○ 쉬이트상의 사진식자용 인화지
3707 90 9200	○ 조색제(전자복사기용 건식2성분계토너에 한함)
3818 00 1000	○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823 90 9090	○ 합성복합조미료(핵산을 둘 또는 셋을 혼합한 복합조미료 및 동품목에 글루탐산나트륨을 혼합한 조미료)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3906 10 0000	○ 폴리메타클릴 산메틸
90 1000	○ 폴리아크릴아미드
3907 20 2000	○ 폴리프로필렌 그리콜(PPG)
3910 00 9090	○ 실리콘에멀젼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C)이 1이상의 것
3920 20 0000	○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15㎛-60㎛의 것
99 0000	○ PVDC랩(Poly Vinylidene Chrolide를 원료로 한 두께 10㎛-20㎛의 것)
3924 10 0000	○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4002 11 0000	○ 폴립타디엔 스티렌(SBR) 의 라텍스중 카복시 변성(Carboxy Moditied)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4816 90 2000	
90 3000	○ 인쇄용 재판용지(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4818 40 000	○ 위생용 타올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H S	품 목 명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208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00g 이하의 것)
32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100g 초과의 것)
33 0000	○ 염색한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하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5209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32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5403 31 0000	○ 비스코스레이온의 장섬유사(꼬임이 m당 120회 이하의 것, 다만 꼬임이 없는 것은 제외)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515 13 9000	○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기타 직물중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5603 00 1010	○ 인조피혁(폴리우레탄 섬유제의 것)
6806 10 3000	○ Ceramic Fiber 제품중 다음의 것 - Loose wool (Buik) - Felt (Sheet 포함) - Blamket - Board and Block

H S	품 목 명
90 9000	○ 암면천정판(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6814 10 0000	○ 판, 쉬트 및 테이프의 집성운모 절연제품(집성운모박은 제외)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50	○ 기타슬라이딩 노즐
90 9090	○ 기타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3000	○ 자기제의 대접 또는 공기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 부엌용품,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접시 및 쟁반
00 1030	○ 도자제의 대접 또는 공기
00 1090	○ 기타 자기제의 식탁, 부엌용품,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7011 20 1000	○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벨브(TV 기준21"에 한함)
7013 29 0000	○ 기타 음료용의 유리컵류
39 0000	○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의 유리제품
7211 30 0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중 탄소공구강대(JISG 3311해당품) SK3M, SK5M으로서 두께 0.1-4.0m/m, 폭 4-350m/m의 것에 한함
7216 33 1000 33 2000	○ H형강중 다음의 것(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SWS 58 해당품목 제외) - 등변의 것으로서 100×100-350×350㎜ 해당품 - 부등변의 것으로서 600×300㎜이하의 것
7311 00 2000	○ 무계목 고압가스용기(밸브 삽입부분 탭 가공하지 않은 것 포함) 중 용적 33.4-46.7ℓ의 것
7315 12 0000	○ Load Chain(체인선재의 직경이 5mm-20mm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	○ 석유난방기구
7323 92 0000 94 0000	○ 법랑제품

H S	품 목 명
7607 11 9000	○ 알루미늄 박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9 9000	- 알루미늄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루미늄순도 99.4% 이상이며 Cu 0.23% 이상의 것
	- Etched Aluminium Foil
7616 90 1000	○ 알루미늄제의 보빈
8207 70 3000	○ 기어커팅 호브중 Module 또는 D.P, 1-25에 한함(다만, 텅그스텐 카바이드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드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함)
8302 60 0000	○ 도어클로저(유압기구를 갖춘 Floor Hinge 포함)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 BHP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 엔진(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kw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0kw 초과의 것)
90 9000	○ 디젤엔진(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것)
99 3030	○ 〃 (출력 2,000kw 초과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70 9000	○ 양수기(펌프)
8414 10 0000	○ 진공펌프 중 다음의 것
	- 최대진공도 5Torr, 배기량 2,000-50,000ℓ/m 인 수봉식 진공펌프
	- 최대진공도 1×10^{-5} Torr, 배기량 2,000-40,000ℓ/m 인 메카니칼부스타
	- 벨트구동의 오일로타리식 진공펌프

H S	품 목 명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kw 미만의 것)
30 2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kw 이상의 것)
80 9210	○ 공기압축기(사용동력 74.6kw 미만의 것)
8416 10 1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 이하의 것)
10 2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를 초과하고, 1,500ℓ미만의 것)
8418 69 2000	○ 흡수식냉동기(50RT 미만의 유니트형 제외)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쿨러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기계(주사약 충전기 제외)
30 2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30 9000	○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것
40 1000	○ 자동포장기계(다만, Panty Hose 기준 80 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는 제외)
40 9000	○ 기타 포장기계
8424 20 1000	○ 스프레이건(도장용의 것으로 노즐 경 0.6㎜ 이상의 것에 한함)
89 0000	○ 에어브라스터(분립체의 싸이로나 홉파등의 막힌 부분을 고압의 공기를 분출시켜 뚫어 주는 장치)
8425 11 1010	○ 체인블럭(전동식의 10M/T 이하의 것)
11 1090	○ 폴리테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M/T 이하의 것)
19 0000	○ 기타의 블록과 체인불럭 및 폴리테클과 호이스트 (10M/T 이하의 것에 한함)
39 0000	○ 윈치와 캡스탄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이하)
8429 51 1000	○ 휠로우더(휠로우더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 포함)
52 1000	○ 굴착기(굴착기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1 49 0000	○ 유압브레카

H S	품 목 명
8433 51 0000	○ 수확, 탈곡겸용기
8446 30 1010	○ 래피어식의 면직기
30 1020	○ 래피어식의 견직기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48 33 9010	○ 스핀들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상하송사철, 차동송, 종합송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사절장치 부착형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RPM 5,000이상의 것과 스캘럽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인타록 재봉기(RPM 10,000이상 또는 상하차동송 제외) - 단침환봉 단추달이 재봉기 - 포스트베드형 침송 재봉기(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직경 0.5㎜이하의 세공가공용의 것은 제외) - 수치제어식의 것으로 테이블 이동거리 800×600㎜이하의 것. 다만 수치제어 와이어커트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 350×500㎜ 이하 및 최대 가공물 두께 320㎜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타로서 다음의 것(주축회전 12,000RPM 초과의 것 및 로타리 테이블형의 것은 제외)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200×1,2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2,000×800㎜이하의 것 - 프라노밀러형 4축제어이하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200×2,500m/m - 3,000×7,000m/m이내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주축회전 8,000RPM 이상의 것은 제외) - 단축으로서 스윙 740㎜, 중심간 거리 2,100㎜ 이하의 것 - 2축으로서 스윙 330㎜, 중심간 거리 210㎜ 이하의 것
19 0000	○ 자동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캠식 자동선반으로 가공물직경 25㎜이하의 것 (주축이동형은 가공물직경 15㎜이하의 것) - 단능반(유압자동선반)으로 스윙 600㎜, 주축경 120㎜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9 51 0000	○ 수치제어식의 무릎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주축을 경사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 - 단축으로 테이블 크기 1,400×310㎜이하의 것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베드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으로 테이블크기 3,200×870㎜ 이하의 것 (모방형의 것은 테이블크기가 2,000×800㎜ 이하의 것) - 4축제어 이하의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로서 테이블크기 1,200×2,500㎜-3,000×7,000㎜ 이내의 것(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0 40 1000	○ 호닝반(내면형으로서 Bore 직경 300㎜이하의 것으로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8461 30 0000	○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가압력 30톤, 스트로크 2,000㎜ 이하의 것
8462 99 0000	○ 용량 2,000톤, SPM 400 이하의 프레스. 단, 다음의 것은 제외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8465 92 1000	○ N.C 루우터(테이블이동거리 3,300㎜×2,400㎜, 테이블수 2이하의 것) ○ 모울더(가공폭 250㎜이하로서 가공축수 8 이하의 것)
8471 20 9000	○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MB 이하의 것)
90 2010	○ 프린터(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인자수 영문 60자 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60자 이내의 것에 한함)
93 2010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디스크직경 8인치 이상의 것은 제외)
8472 90 9000	○ 연필깎는 기계
8477 10 1000	○ 고무공업용의 사출성형기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로서 1회 사출용량 33㎤ - 4,500㎤의 것에 한함(2색사출성형기는 제외)

H S	품 목 명
80 0000	○ 기타고무산업용 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40″이상의 가류기 - 용량 200ℓ 이상의 Rubber Mixer (고무혼합기) - Tire Bead M/C (비드제조기)
8479 89 9020	○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9 9050	○ 코팅머신(렌즈, 수정진동자, 알루미늄, 진동코팅기에 한함)
89 9099	○ 자동차 세척기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6014 - NO. 6200-6214 - NO. 6300-6314
20 0000	○ 단열 페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 (인치계열의 경우 내경 3/4″- 2 3/4″의 것) 단,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 32014 - NO. 33004 - 33014
80 0000	○ 유니트 보올 베어링(내경 12-75㎜의 것)
8483 30 9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베아링 하우징(보올베어링 또는 로울러 베아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플레인 샤프트베아링(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85 10 0000	○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8502 12 0000	○ 압축전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것)
13 10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400KW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것)
13 2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KVA 초과 1500KVA 이하의 것)
13 3000	○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1500KVA 초과 3500KVA 이하의 것)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다만, 출력 75KVA이하의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504 40 2010	○ 무정전 전원장치(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
40 2090	○ 전동기 속도제어장치(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
8508 10 1000	○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10 9000	○ 기타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20 0000	○ 전기톱
80 1000	○ 전기그라인더, 센더, 폴리셔와 부러셔어
80 2000	○ 대패와 그루버
80 9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79 1000	○ 전기보온밥통
8517 82 1000	○ 모사전송기기
90 9500	○ 모사전송기기의 부분품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가정용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21 0000	○ 레코드플레이어(신호처리가 디지털 방식의 것으로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함)
8519 91 2010	○ 기타의 음성재생기중 디지털식의 것(자동차용의 것)
91 2020	○ 〃 (휴대용의 것)
99 3010 3020 3090	○ 레이저과학 판독장치를 가진 음성제생기기(확성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0 31 2020	○ 디지털식 테이프녹음기(휴대용의 것)
90 1040	○ 디지털식 카세트형의 데크
8521 10 1000 10 2000	○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에 한함)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 30 1000	○ 녹화기용 텔레비전카메라(가정용에 한함)
8527 11 200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한다)
21 1090	○ 아나로그식이 아닌 기타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H S	품 목 명
21 200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21 3000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한다)
31 1210	
31 1310	
8528 10 4000	○ 비디오 튜너(칼라용의 것)
10 904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내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이상의 것에 함함)
8529 10 9210	○ 위성방송 수신용의 안테나 및 동부분품
8535 21 1000	○ 진공차단기(정격전압 7.2K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000A 이하의 것)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가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중 선박용의 것과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
8539 31 0000	○ 행광램프(열음극형의 것)
8539 39 2000	○ 나트륨 램프
8544 11 1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
20 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60 3010	○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 100KV초과의 것)
60 3090	○ 기타전선(전압 100KV 초과 것으로서 Bus Duct는 제외)
8548 00 0000	○ 모사전신기용 Thermal Printer Head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1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이하)
21 2000	○ 찝형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이하)
21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000cc이하)
22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2000	○ 찝형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H S	품 목 명
2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3 1000	○ 새단형의 것(시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이하)
23 2000	○ 쬡형자동차(실린더요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24 4000	○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1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500cc 이하)
32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200	○ 쬡형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3 2000	○ 쬡형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적재중량 5톤 이하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적재중량 5톤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타(25톤이상 75톤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0000	○ 차체(운전실 포함)의 기타부분과 부속품
50 000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99 9000	○ 기타(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한하며 한국농기구공업 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1000	○ 유람선
10 3000	○ 폐리보우트(5,000G/T 미만은 제외)
10 9000	○ 기타
90 1010	○ 일반화물선(4,000 G/T 미만은 제외)
90 1020	○ 벌크선(4,000G/T 미만은 제외)
90 1030	○ 콘테이너선
90 1090	○ 기타
90 2000	○ 화객선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 선
00 2090	○ 기타(어획물운반선 포함)
9002 11 1000	○ 카메라렌즈 중 35㎜카메라의 표준렌즈 및 교환렌즈
9006 51 9000	○ 35㎜를 필름용의 사진기(1회용의 것은 제외)
53 9000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지(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 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0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dr : 처리능력 35㎜사진기용 필름 24매 기준 100/시간 이하의 것 - pao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 /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ter : 3″×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털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102 11 900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0000	○ 일반용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전자식 올겐
9404 90 0000	○ 기타의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자기침구류 포함)
9405 60 9000	○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0	○ 비디오게임용구
9506 31 0000	○ 골프채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19 9000	○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20 2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09 10 1000	○ 연필
20 0000	○ 연필심
90 1000	○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나. 2차개정(91. 10. 28)

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

○ 조정내용

- 상공부는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91. 10. 28자로 개정시행키로 공고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두 번째 개정임

- 이번 개정은 신규로 8개품목을 지정하고 기존품목을 해제하여 현행의 총 258개 품목수는 변동이 없음

○ 조정배경

- 90년도부터 적자로 반전된 무역수지는 금년도에 들어와 특히 대일지역에서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어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품목수를 변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였음

○ 조정내용

- 신규지정품목은 국산공급으로 대일수입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이거나 대일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고

- 지정해제품목은 장기지정 또는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었거나 해제시에도 내수용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해제하였음

- 또한 기존 지정품목중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애매한 품목표시를 정리하였음

〈참 고〉

○ 연도별 수입선다변화 품목수

	단 위	'77	'81	'86	'87	'88	'89	'90	'91
품 목 수	CCCN4	4	208	159					
	H S 10				632	344	262	268	258

○ 연도별 대일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86	'87	'88	'89	'90	'91.1-9
수 출	54	84	120	134	126	89
수 입	108	136	159	174	185	156
무 역 수 지	-54	-52	-39	-40	-59	-67

첨 부 : 1. 수입선다변화 신규지정 품목

2.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3. 지정품목 내용변경

수입선다변화 신규지정품목

H S	품 목	H S	품 목
4802 52 1000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8427 20 1020	포크리프트트럭 (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47 90 2000	자수기(다두식 전자자수기에 한함)	8469 10 0000	워드프로세싱머시인
8525 20 7020	모빌텔리폰	8525 20 7090	휴대용 무선전화기
8540 11 0000	21″이상천연색텔레비젼용 음극선관 및 14″영상모니터용 음극선관(0.28 Dot Pitch 및 0.41 Strip Pitch에 한함)	9018 19 8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칼라혈류영상진단기 (Color Flow Mapping)는 제외]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H S	품 목	H S	품 목
2918 29 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2933 59 3010	5-이노신산나트륨과 5-구아닐산나트륨
3906 10 0000	폴리메타크릴산메틸	5208 33 0000	염색한 면의 3올 또는 4올 능직물
8535 21 1000	진공차단기		
8539 39 2000	나트륨 램프	8544 60 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703 31 1000	디젤 1500cc 이하, 세단		

지정품목 내용변경

HS(10단위)	현 행	개 정
3920 20 0000	폴리프로필렌필름중 두께 5~60μ의 것	폴리프로필렌필름중 두께 5~60μ의 것. 다만 15μ 미만의 Hazy Type의 것은 제외함
8471 92 2010	프린터(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인자수 영문 60자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60자 이내의 것)	프린터중 다음의 것 - 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인자수가 영문 60자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60자 이내의 것 - Laser Beam Type으로 단색용이며, 인쇄용지규격은 B4이하의 것
8482 10 0000	○ 단열 깊은 홈볼베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6014 - No 6200-6214 - No 6300-6314	○ 좌 동 ○ 유니트용 볼베어링 (내경 12-75㎜의 것)
8521 10 1000 2000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에 한함)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8525 30 1000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가정용에 한함)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참고 91-7〉 '91년 2차개정 수입선 다변화 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1991. 10. 28

상 공 부

상공부 공고 제91-4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1년 10월 28일

상 공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2) 별표1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 1kg 이하이고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단,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품목의 수입
6. 별표2에 게기되지 아니한 HS 72류 내지 HS 92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중 상공부장관이 국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의 소요부품 수입
7.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9.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 별표2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제4조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생산요소품의 수입) (1) 제3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제 제1호서식에 의한 국산화추진세부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품 수입추천 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 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추천기관 (또는 인정기관)은 제1항의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추천기관이 정한 당해물품의 최저국산화율 적합여부 또는 국산화를 요하는 중요부품의 국산화여부
4. 년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

(3) 추천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산개발 대상품목별로 관련 생산업계, 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화계획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5) 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추천의 유효기간) (1)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수입추천(인정 포함) 및 [별표 1]에 의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추천(인정 포함)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로 한다.

(2)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추천(또는 인정)일부터 6월까지로 한다.

제6조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승인 등)

(1)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외국환 은행의 장이 승인한다.

(2)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확인서에 수입승인일자, 수입승인 수량 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등) (1)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 또는 수입승인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수입승인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또는 계약서) 확인요령을, 그리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하는 기관 및 별표 1에 의하여 확인을 하는 기관의 장은 추천 또는 확인요령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수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상공부장관은 역조개선,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요령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1) 국산화추진 세부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 추천신청서상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상공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추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시행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상공부고시 제91-21호는 이를 폐지한다.

4.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상공부고시 제90-15호 및 제91-21호에 의한 수입추천, 확인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추천, 확인등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가루
2811 19 9000	○ 붕불화수소산
2831 10 1000	○ 아이티온산 나트륨
2905 32 0000	○ 프로필렌 글리콜
2912 12 0000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2914 11 0000	○ 아세톤
2915 31 0000	○ 초산에틸
2917 19 9000	○ 후말산
2934 20 9000	○ N-Oxydiethy lene-Benzothiaayl-Sulfenamide
3003 90 9900	○ 자양강장변질제중 정제대두유 함유주사제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나트륨, 주석산제제
3204 11 0000	○ 분산성염료중 다음의 것 - Violet 26 - Red 50 - 〃 167
3204 16 0000	○ 반응성염료중 다음의 것 - Orange 16 (17757) - Yellaw 105 - Red 120 - Blue 21
3405 30 0000	○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금속용 광택제는 제외)
3703 90 9000	○ 쉬이트상의 사진식자용 인화지
3707 90 9200	○ 조색제(전자복사기용 건식2성분계토너에 한함)

H S	품 목 명
3818 00 1000	○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823 90 9090	○ 합성복합조미료(핵산을 둘 또는 셋을 혼합한 복합조미료 및 동품목에 글루탐산나트륨을 혼합한 조미료)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아미드
3907 20 2000	○ 폴리프로필렌 그리콜(PPG)
3910 00 9090	○ 실리콘에멀젼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C)이 1이상의 것
3920 20 0000	○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5㎛-60㎛의 것. 다만 15㎛미만의 Hazy Type의 것은 제외함
99 0000	○ PVDC랩(Poly Vinylidene Chrolide를 원료로 한 두께 10㎛-20㎛의 것)
3924 10 0000	○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4002 11 0000	○ 폴립타디엔 스티렌(SBR) 의 라텍스중 카복시 변성(Carboxy Moditied)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4816 90 2000	
90 3000	○ 인쇄용 재판용지(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4818 40 000	○ 위생용 타올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H S	품 목 명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208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00g 이하의 것)
32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100g 초과의 것)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5209 31 0000	○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39 0000	○ 염색한 기타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5403 31 0000	○ 비스코스레이온의 장섬유사(꼬임이 m당 120회 이하의 것, 다만 꼬임이 없는 것은 제외)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515 13 9000	○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기타 직물중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5603 00 1010	○ 인조피혁(폴리우레탄 섬유제의 것)
6806 10 3000	○ Ceramic Fiber 제품중 다음의 것 - Loose wool (Buik) - Felt (Sheet 포함) - Blamket - Board and Block

H S	품 목 명
90 9000	○ 암면천정판(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6814 10 0000	○ 판, 쉬트 및 테이프의 집성운모 절연제품(집성운모박은 제외)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50	○ 기타슬라이딩 노즐
90 9090	○ 기타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3000	○ 자기제의 대접 또는 공기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 부엌용품,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접시 및 쟁반
00 1030	○ 도자제의 대접 또는 공기
00 1090	○ 기타 자기제의 식탁, 부엌용품,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7011 20 1000	○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벨브(TV 기준21"에 한함)
7013 29 0000	○ 기타 음료용의 유리컵류
39 0000	○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의 유리제품
7211 30 0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중 탄소공구강대(JISG 3311해당품) SK3M, SK5M으로서 두께 0.1-4.0m/m, 폭 4-350m/m의 것에 한함
7216 33 1000 33 2000	○ H형강중 다음의 것(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SWS 58 해당품목 제외) - 등변의 것으로서 100×100-350×350㎜ 해당품 - 부등변의 것으로서 600×300㎜이하의 것
7311 00 2000	○ 무계목 고압가스용기(밸브 삽입부분 탭 가공하지 않은 것 포함) 중 용적 33.4-46.7ℓ의 것
7315 12 0000	○ Load Chain(체인선재의 직경이 5mm-20mm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	○ 석유난방기구
7323 92 0000 94 0000	○ 법랑제품

H S	품 목 명
7607 11 9000	○ 알루미늄 박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알루미늄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루미늄순도 99.4% 이상이며 Cu 0.23% 이상의 것 - Etched Aluminium Foil
7616 90 1000	○ 알루미늄제의 보빈
8207 70 3000	○ 기어커팅 호브중 Module 또는 D.P, 1-25에 한함(다만, 텅그스텐 카바이드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드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함)
8302 60 0000	○ 도어클로저(유압기구를 갖춘 Floor Hinge 포함)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 BHP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 엔진(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kw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0kw 초과의 것)
90 9000	○ 디젤엔진(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출력 300kw 초과, 2,000kw 이하의 것)
99 3030	○ 〃 (출력 2,000kw 초과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70 9000	○ 양수기(펌프)
8414 10 0000	○ 진공펌프 중 다음의 것 - 최대진공도 5Torr, 배기량 2,000-50,000ℓ/m 인 수봉식 진공펌프 - 최대진공도 1×10^{-5} Torr, 배기량 2,000-40,000ℓ/m 인 메카니칼부스타 - 벨트구동의 오일로타리식 진공펌프

H S	품 목 명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kw 미만의 것)
30 2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kw 이상의 것)
80 9210	○ 공기압축기(사용동력 74.6kw 미만의 것)
8416 10 1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 이하의 것)
10 2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를 초과하고, 1,500ℓ미만의 것)
8418 69 2000	○ 흡수식냉동기(50RT 미만의 유니트형 제외)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쿨러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기계(주사약 충전기 제외)
30 2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30 9000	○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것
40 1000	○ 자동포장기계(다만, Panty Hose 기준 80 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는 제외)
40 9000	○ 기타 포장기계
8424 20 1000	○ 스프레이건(도장용의 것으로 노즐 경 0.6㎜ 이상의 것에 한함)
89 0000	○ 에어브라스터(분립체의 싸이로나 홉파등의 막힌 부분을 고압의 공기를 분출시켜 뚫어 주는 장치)
8425 11 1010	○ 체인블럭(전동식의 10M/T 이하의 것)
11 1090	○ 폴리테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M/T 이하의 것)
19 0000	○ 기타의 블록과 체인불럭 및 폴리테클과 호이스트 (10M/T 이하의 것에 한함)
39 0000	○ 윈치와 캡스탄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이하)
8429 51 1000	○ 휠로우더(휠로우더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 포함)
52 1000	○ 굴착기(굴착기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1 49 0000	○ 유압브레카

H S	품 목 명
8433 51 0000	○ 수확, 탈곡겸용기
8446 30 1010	○ 래피어식의 면직기
30 1020	○ 래피어식의 견직기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48 33 9010	○ 스핀들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상하송사철, 차동송, 종합송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사절장치 부착형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RPM 5,000이상의 것과 스캘럽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인타록 재봉기(RPM 10,000이상 또는 상하차동송 제외) - 단침환봉 단추달이 재봉기 - 포스트베드형 침송 재봉기(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직경 0.5㎜이하의 세공가공용의 것은 제외) - 수치제어식의 것으로 테이블 이동거리 800×600㎜이하의 것. 다만 수치제어 와이어커트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 350×500㎜ 이하 및 최대 가공물 두께 320㎜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타로서 다음의 것(주축회전 12,000RPM 초과의 것 및 로타리 테이블형의 것은 제외)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200×1,2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2,000×800㎜이하의 것 - 프라노밀러형 4축제어이하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200×2,500m/m - 3,000×7,000m/m이내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주축회전 8,000RPM 이상의 것은 제외) - 단축으로서 스윙 740㎜, 중심간 거리 2,100㎜ 이하의 것 - 2축으로서 스윙 330㎜, 중심간 거리 210㎜ 이하의 것
19 0000	○ 자동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캠식 자동선반으로 가공물직경 25㎜이하의 것 (주축이동형은 가공물직경 15㎜이하의 것) - 단능반(유압자동선반)으로 스윙 600㎜, 주축경 120㎜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9 51 0000	○ 수치제어식의 무릎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주축을 경사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 - 단축으로 테이블 크기 1,400×310㎜이하의 것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베드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으로 테이블크기 3,200×870㎜ 이하의 것 (모방형의 것은 테이블크기가 2,000×800㎜ 이하의 것) - 4축제어 이하의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로서 테이블크기 1,200×2,500㎜-3,000×7,000㎜ 이내의 것(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0 40 1000	○ 호닝반(내면형으로서 Bore 직경 300㎜이하의 것으로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8461 30 0000	○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가압력 30톤, 스트로크 2,000㎜ 이하의 것
8462 99 0000	○ 용량 2,000톤, SPM 400 이하의 프레스. 단, 다음의 것은 제외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8465 92 1000	○ N.C 루우터(테이블이동거리 3,300㎜×2,400㎜, 테이블수 2이하의 것) ○ 모울더(가공폭 250㎜이하로서 가공축수 8 이하의 것)
8469 10 0000	○ 웨드프로세싱머신
8471 20 9000	○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MB 이하의 것)
90 2010	○ 프린터(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인자수 영문 60자 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60자 이내의 것에 한함)
93 2010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디스크직경 8인치 이상의 것은 제외)
8472 90 9000	○ 연필깎는 기계
8477 10 1000	○ 고무공업용의 사출성형기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로서 1회 사출용량 33㎤ - 4,500㎤의 것에 한함(2색사출성형기는 제외)

H S	품 목 명
80 0000	○ 기타고무산업용 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40″이상의 가류기 - 용량 200ℓ 이상의 Rubber Mixer (고무혼합기) - Tire Bead M/C (비드제조기)
8479 89 9020	○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9 9050	○ 코팅머신(렌즈, 수정진동자, 알루미늄, 진동코팅기에 한함)
89 9099	○ 자동차 세척기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6014 - NO. 6200-6214 - NO. 6300-6314
	○ 유니트용 볼베어링(내경 12-75㎜의 것)
20 0000	○ 단열 페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 (인치계열의 경우 내경 3/4″- 2 3/4″의 것) 단,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 32014 - NO. 33004 - 33014
80 0000	○ 유니트 보올 베어링(내경 12-75㎜의 것)
8483 30 9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베아링 하우징(보올베어링 또는 로울러 베아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플레인 샤프트베아링(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485 10 0000	○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8502 12 0000	○ 압축전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것)
13 10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400KW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것)
13 2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KVA 초과 1500KVA 이하의 것)
13 3000	○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1500KVA 초과 3500KVA 이하의 것)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다만, 출력 75KVA이하의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504 40 2010	○ 무정전 전원장치(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
40 2090	○ 전동기 속도제어장치(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
8508 10 1000	○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10 9000	○ 기타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20 0000	○ 전기톱
80 1000	○ 전기그라인더, 센더, 폴리셔와 부러셔어
80 2000	○ 대패와 그루버
80 9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79 1000	○ 전기보온밥통
8517 82 1000	○ 모사전송기기
90 9500	○ 모사전송기기의 부분품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가정용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21 0000	○ 레코드플레이어(신호처리가 디지털 방식의 것으로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함)
8519 91 2010	○ 기타의 음성재생기중 디지털식의 것(자동차용의 것)
91 2020	○ 〃 (휴대용의 것)
99 3010 3020 3090	○ 레이저과학 판독장치를 가진 음성제생기기(확성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0 31 2020	○ 디지털식 테이프녹음기(휴대용의 것)
90 1040	○ 디지털식 카세트형의 데크
8521 10 1000 10 2000	○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에 한함)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 30 1000	○ 녹화기용 텔레비전카메라(가정용에 한함)
8527 11 200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한다)
21 1090	○ 아나로그식이 아닌 기타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H S	품 목 명
21 200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21 3000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한다)
31 1210	
31 1310	
8528 10 4000	○ 비디오 튜너(칼라용의 것)
10 904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내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이상의 것에 함함)
8529 10 9210	○ 위성방송 수신용의 안테나 및 동부분품
8535 21 1000	○ 진공차단기(정격전압 7.2K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000A 이하의 것)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가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중 선박용의 것과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
8539 31 0000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
8539 39 2000	○ 21″이상 천연텔레비젼용 음극선관 및 14″영상모니터용 음극선관 (0.28 Dot Pitch 및 0.41 Strip Pitch 에 한함)
8544 11 1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
20 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60 3010	○ 기타전선(전압 100KV 초과 것으로서 Bus Duct는 제외)
60 3090	○ 모사전신기용 Thermal Printer Head
8548 00 0000	○ 마이크로버스
8702 10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이하)
8703 21 1000	○ 찝형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이하)
21 2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3000	○ 기타(실린더용량 1,000cc이하)
21 9000	

H S	품 목 명
8703 22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2000	○ 쯮형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3 1000	○ 새단형의 것(시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이하)
23 2000	○ 쯮형자동차(실린더요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9000	○ 기타(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24 4000	○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2 1000	○ 세단형의 것(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2000	○ 쯮형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3 2000	○ 쯮형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적재중량 5톤 이하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적재중량 5톤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타(25톤이상 75톤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0000	○ 차체(운전실 포함)의 기타부분과 부속품
50 000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99 9000	○ 기타(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한하며 한국농기구공업 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1000	○ 유람선
10 3000	○ 폐리보우트(5,000G/T 미만은 제외)
10 9000	○ 기타
90 1010	○ 일반화물선(4,000 G/T 미만은 제외)
90 1020	○ 벌크선(4,000G/T 미만은 제외)
90 1030	○ 콘테이너선
90 1090	○ 기타
90 2000	○ 화객선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 선
00 2090	○ 기타(어획물운반선 포함)
9002 11 1000	○ 카메라렌즈 중 35㎜카메라의 표준렌즈 및 교환렌즈
9006 51 9000	○ 35㎜를 필름용의 사진기(1회용의 것은 제외)
53 9000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지(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 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0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dr : 처리능력 35㎜사진기용 필름 24매 기준 100/시간 이하의 것 - pao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 /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ter : 3″×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털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102 11 900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0000	○ 일반용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전자식 올겐
9404 90 0000	○ 기타의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자기침구류 포함)
9405 60 9000	○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0	○ 비디오게임용구
9506 31 0000	○ 골프채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19 9000	○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20 2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09 10 1000	○ 연필
20 0000	○ 연필심
90 1000	○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다. 수입선다변화품목 변동 추이

1) 년도별 품목변화추이

	단 위	현 행	지 정	해 제	조정결과
'77. 12. 31	CCCN 4		7		
'78. 5. 1	〃		100		
5. 12	〃		4		
5. 20	〃			16	
6. 14	〃		78		
8. 14	〃		1	7	
9. 16	〃		35		
'79. 1. 1	〃		36	1	
2. 26	〃		2	85	
'80. 6. 27	〃			5	
'81. 5. 30	〃		18	11	208
'82. 7. 1	〃	208	14	13	209
'82. 7. 1	〃	209	18	53	174
'84. 7. 1	CCCN 4	174	20	26	168
	CCCN 8				590
'85. 7. 1	CCCN 4	168	44	52	160
	CCCN 8	590	129	254	465
'86. 7. 1	CCCN 4	160	25	26	159
	CCCN 8	465	89	144	465
'87. 7. 1	CCCN 4	162	28	43	147
	CCCN 8	414	101	136	379
	H S 6				447
	H S 10				632
'88. 7. 1	H S 6	447	47	268	222
	H S 10	632			344
'89. 7. 1	H S 6	222		37	185
	H S 10	344		82	262
'90. 3. 20	H S 10	268	18	22	
'91. 5. 13	H S 10	258	20	30	
'91. 10. 28	H S 10	258	8	8	

2) 산업별 품목 내용('92. 8 현재)

〈산업별 품목수〉

(HS10 단위 기준)

기 초	기 계	전자전기	섬유생활	기 타	계
21	118	60	55	4	258

〈용도별 품목수〉

원 자 재	시 설 재	소 비 재			계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소 계	
75	103	59	21	80	258

〈연도별 지정 품목수〉

연 도	'79-'81	'82-'84	'85	'86	'87	'88	'89	'90	'91
품목수	10	11	22	29	72	68	-	18	28

〈지정범위별 품목수〉

- HS 10단위 전체지정 : 149개 품목
- HS 10단위 부분지정 : 109개 품목

보도자료

자료작성 : 수입과
전 화
구내 : 2386
직통 : 503-9440
9441

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

○ 조정개요

- 상공부는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국가별 수출,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91.10.28자로 개정시행키로 공고 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두번째 개정임

- 이번 개정은 신규로 8개품목을 지정하고 기존품목중에서 8개품목을 해제하여 현행의 총 258개 품목수는 변동이 없음

○ 조정배경

- '90년도부터 적자로 반전된 무역수지는 금년도에 들어와 특히 대일지역에서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어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품목수를 변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였음

○ 조정내용

- 신규지정품목은 국산공급으로 대일수입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이거나 대일품목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고

- 지정해제품목은 장기지정 또는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었거나 해제시에도 내수용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해제하였음

- 또한 기존 지정품목중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애매한 품목표시를 정리하였음

< 참 고 >

○ 연도별 수입선다변화 품목수

구 분	단 위	'77	'81	'86	'87	'88	'89	'90	'91
품 목 수	CCN 4 H S 10	4	208	159	632	344	262	268	258

○ 연도별 대일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86	'87	'88	'89	'90	'91.1-9
수 출	54	84	120	134	126	89
수 입	108	136	159	174	185	156
무역수지	-54	-52	-39	-40	-59	-67

첨 부 : 1. 수입선다변화 신규지정 품목
2.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3. 지정품목 내용변경

수입선다변화 신규지정품목

H S	품 명	H S	품 명
4802 52 1000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8427 20 1020	포크리트트릭 (적재중량 3톤초과의 것)
8447 90 2000	자수기 (다투식 전자자수기에 한함)	8469 10 0000	워드프로세싱머신인
8525 20 7020	모빌텔리폰	8525 20 7090	휴대용 무선전화기
8540 11 0000	21“ 이상천연색텔레비전용음극선관 및 14”영상모니터용음극선관(0.28 Dot Pitch 및 0.41 Strip Pitch에 한함)	3018 19 8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칼라혈류영상진단기(Color Flow Mapping)는 제외]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H S	품 명	H S	품 명
2918 29 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2933 59 3010	5-이노신산나트륨과 5-구아닐산나트륨
3906 10 0000	폴리메타크릴산메틸		
		5208 33 0000	염색한 면의 3을
8535 21 1000	진공차단기		또는 4을 능직물
8539 39 2000	나트륨 램프	8544 60 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703 31 1000	디젤 1500cc이하 세단		

지정품목 내용변경

HS (10단위)	현 황	개 정
3920 20 0000	폴리프로필렌필름중 두께 5~60μ의 것	폴리프로필렌필름중 두께 5~60μ의 것, 다만 15~μ미만의 Haxy Type의 것은 제외함
8471 92 2010	프린터(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인자수 영문 60자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때 최대속도가 초당 360자이내의 것)	프린터중 다음의 것 - 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이s자수가 영문 60자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60자이내의 것 - Laser Beam Type으로 단색용이며, 인쇄용지규격이 B4이하의 것
8482 10 0000	ㅇ단열 깊은 홈볼베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6014 - No 6200-6214 - No 6300-6314	ㅇ좌동 ㅇ유니트용 볼베어링 (내경 12 - 75㎜의 것)
8521 10 1000 2000	ㄱ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ㄴ (가정형에 한함)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8525 30 1000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가정형에 한함)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상공부부 고시 제 91-45 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 10월 28일

상 공 부 장 관

수 입 선 다 변 화 품 목 공 고

제1조 (목적)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2)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 (원산지 또는 선적지 기준)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 (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 1㎏이하이고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 (다만,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 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동 기계. 장비의 해당단체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품목의 수입
6. 별표2에 게기되지 아니한 HS 72류 내지 HS 92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중 상공부장관이 국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의 소요부품 수입
7.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9.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 (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제4조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생산소요 부품의 수입)(1) 제3조 제5호 및 6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언기관 (또는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산화추진세부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품 수입추천 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 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추천기관 (또는 인정기관)은 제1항의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추천기관이 정한 당해물품의 최저국산화율 적합여부 또는 국산화를 요하는 중요부품의 국산화여부
4. 년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

(3) 추천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산개발 대상품목별로 관련 생산업계, 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화계획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추천기관 (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5) 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추천의 유효기간)(1)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수입추천 (인정 포함) 및 [별표1]에 의한 확인의 유효기관은 추천 (인정 포함)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로 한하.

(2)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관은 추천 (또는 인정)일부터 6월까지로 한다.

제6조(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승인등)

(1)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이 승인한다.

(2)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확인서에 수입승인일자, 수입승인 수량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등) (1)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 또는 수입승인한 기관의 장은 매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수입승인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확인요령을, 그리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하는 기관 및 별표1에 의하여 확인을 하는 기관의 장은 추천 eh는 확인요령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수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상공부장관은 역조개선, 경쟁력 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정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요령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1)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 추천신청시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상공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추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상공부자오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199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다러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고시의 시행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타공고의 폐지)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상공부고시 제91-21호는 이를 폐지한다.

4.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상공부고시 제90-15호 및 제91-21호에 의한 수입추천, 확인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추천, 확인등으로 본다.

[별 표 1]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ㅇ 밀가루
2811 19 9000	ㅇ 붕불화수소산
2831 10 1000	ㅇ 아이티온산 나트륨
2905 32 0000	ㅇ 프로필렌 글리콜
2912 12 0000	ㅇ 에탄알 (아세트알데히드)
2914 11 0000	ㅇ 아세톤
2915 31 0000	ㅇ 초산에틸
2917 19 9000	ㅇ 후말산
2934 20 9000	ㅇ N- Oxydietylene-Benzothiazyl-Sulfenamide
3003 90 9900	ㅇ 자양강장변질제중 정제대두유 함유주사제
3006 30 1000	ㅇ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비륨제제 및 탄산수소나트륨, 주석산제제
3204 11 0000	ㅇ 분산성염료중 다음의 것 - Violet 26 - Red 50 - 〃 167
3204 16 0000	ㅇ 반응성염료중 다음의 것 - Orange 16 (17757) - Yellow 105 - Red 120 - Blue 21
3405 30 0000	ㅇ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금속용 광택제는 제외)
3703 90 9000	ㅇ 쉬이트상의 사진식자용 인화지
3707 90 9200	ㅇ 조색제 (전자복사기용 건식조색제에 한함)

H S	품 목 명
3818 00 1000	○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 (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823 90 9090	○ 합성복합조리료 (색산을 둘 또는 셋을 혼합한 복합조미료 및 동품목에 글루탐산나트륨을 혼합한 조미료)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PPG)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아미드
3907 20 2000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PPG)
3910 00 9090	○ 실리콘에멀젼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 (20/20℃)이 1이상의 것
3920 20 0000	○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5㎛-60㎛의 것, 다만 15㎛ 미만의 Hazy Type의 것은 제외함
99 0000	○ PVDC랩 (Ploy Vinylidene Chrolide를 원료로 한 두께 10㎛-20㎛의 것)
3924 10 0000	○ 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4002 11 0000	○ 폴리부타디엔 스티렌 (SER)의 라텍스중 카복시 변성 (Cargoxy Modified)의 것
4802 52 1000	○ 인쇄용지와 필기용지(1㎡당 중량이 40g이상 150㎡이하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4816 90 2000	
90 3000	○ 인쇄용 제판용지 (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4818 40 0000	○ 위생용 타올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0000	○ 기타 양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H S	품 목 명
5112 11 1000	ㅇ 양모직물
19 1000	ㅇ 기타 양모직물
30 0000	ㅇ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ㅇ 기타 모혼방직물
5208 31 0000	ㅇ 염색한 평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00g이하의 것)
32 0000	ㅇ 염색한 평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00g이하의 것)
39 0000	ㅇ 염색한 기타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이하의 것)
5210 31 0000	ㅇ 염색한 평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이하의 것)
39 0000	ㅇ 염색한 기타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이하의 것)
5403 31 0000	ㅇ 비스코스레이온의 장섬유사 (꼬임이 m당 120회 이하의 것 , 다만 꼬임이 없는 것은 제외)
5502 00 2010	ㅇ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 (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515 13 9000	ㅇ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기타 직물중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의 혼방한 것
5603 00 1010	ㅇ 인조피혁 (폴리우레탄 섬유제의 것)
6806 10 3000	ㅇ Ceramic Fiber제품중 다음의 것 - Loose Wool (Bullk) - Felt (Sheet 포함) - Blanket - Board and Block

H S	품 목 명
90 9000	○ 암면천정판 (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6814 10 0000	○ 판, 쉬트 및 테이프의 집성운모 절연제품 (집성운모박은 제외)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50	○ 기타슬라이딩 노즐
90 9090	○ 기타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3000	○ 자기제의 대접 또는 공기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 부엌용품,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접시 및 쟁반
00 1030	○ 도자제의 대접 또는 공기
00 1090	○ 기타 도자제의 식탁. 부엌용품.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7011 20 1000	○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TV기준 21“에 한함)
7013 29 0000	○ 기타 음료용의 유리컵류
39 0000	○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의 유리제품
7211 30 0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중 탄소공구강대 (JISG 3311해당품) SK3M, SK5M으로서 두께 0.1-4.0㎜, 폭 4-350㎜의 것에 한함
7216 33 1000 33 2000	┌ ○ H형강중 다음의것 (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 SWS 58 해당품목은 제외) - 등변의 것으로서 100×100㎜-350×350㎜의 것 - 부등변의 것으로서 6000×300㎜ 이하의 것
7311 00 2000	○ 무계목 고압가스용기 (밸브 삽입부분을 탭 가공하지 않은 것 포함)중 용적 33.4-46.7ℓ의 것
7315 12 0000	○ Load Chain (체인선재의 직경이 5㎜-20㎜의 것)

H S	품 목 명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	○ 석유난방기구
7323 92 0000 94 0000	○ 법랑제품
7607 11 9000	○ 알루미늄 박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 - 알루미늄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루미늄순도 99.4% 이상이며 Cu 0.23%이상의 것 - Etched Aluminium Foil
7616 90 1000	○ 알루미늄제의 보빈
8207 70 3000	○ 기어커팅 호브중 Module 또는 D.P, 1-25에 한함 (다만, 텅그스텐 카바이드제이거나 텅그스텐 카바이드팁이 부착된 것은 제외함)
8302 60 0000	○ 도어클로저 (유압기구를 갖춘 Floor Hinge 포함)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 BHP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 엔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300kw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300kw 초과 2,000kw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2,000kw 초과의 것)
90 9000	○ 디젤엔진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 (출력 300kw 초과 2,000kw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99 3030	○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 (출력 2,000kw초과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70 9000	○ 양수기 (펌프)
8414 10 0000	○ 진공펌프중 다음의 것 - 최대진공도 5 Torr, 배기량 2,000-50,000 ℓ/min인 수봉식 진공펌프 - 최대진공도 1×10 Torr, 배기량 2,000-40,000 ℓ/min인 메카니칼부스타 - 벨트구동의 오일로타리식 진공펌프
30 1000	○ 냉매압축기 (사용동력 11kw 미만의 것)
30 2000	○ 냉매압축기 (사용동력 11kw 이상의 것)
80 9210	○ 공기압축기 (사용동력 74.6kw 미만의 것)
8416 10 1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 이하의 것)
10 2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ℓ를 초과하고, 1,500ℓ 미만의 것)
8418 69 2000	○ 흡수식냉동기 (50 RT 미만의 유니트형 제외)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쿨러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기계 (주사약 충진기 제외)
30 2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30 9000	○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것
40 1000	○ 자동포장기계 (다만, Panty Hose 기준 80 Doz/H이상의 여자용

H S	품 목 명
	-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는 제외)
40 9000	○ 기타 포장기계
8424 20 1000	○ 스프레이건 (도장용의 것으로 노즐 경 0.6㎛이상의 것에 한함)
89 0000	○ 에어브라스터 (분립체의 싸이로나 흡파등의 막힌부분을 고압의 공기를 분출시켜 뚫어 주는 장치)
8425 11 1010	○ 체인블록 (전동식 10 M/T 이하의 것)
11 1090	○ 풀리테클과 호이스트 (전동식으로 10 M/T이하의 것)
19 0000	○ 기타의 블록과 체인블록 및 풀리테클과 호이스트 (10 M/T 이하의 것에 한함)
39 0000	○ 원치와 캣스탄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 (적재중량 3톤이하의 것)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 (적재중량 3톤초과의 것)
8429 51 1000	○ 휠로우더 (휠로우더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 포함)
52 1000	○ 굴착기 (굴착기 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1 49 0000	○ 유압브레카
8433 51 0000	○ 수확, 탈곡 겸용기
8446 30 1010	○ 래피어식의 면직기
8446 30 1020	○ 래피어식의 견직기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47 90 2000	○ 자수기 (다두식 전자자수기에 한함)
8448 33 9010	○ 스핀들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8452 29 9000	- 담침직진형 재봉기 (상송사절, 차동송, 종합송은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H S	품 목 명
	- 지그재그형 재봉기 (RPM 5,000이상의 것과 스캘럽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인타록 재봉기 (RPM 10,000이상 또는 상하치동송은 제외) - 단침환봉 단추달이 재봉기 -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 (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식이 아닌 것 (직경 0.5㎜이하의 세공가공용의 것은 제외) - 수치제어식의 것으로 테이블 이동거리 800×600㎜이하의 것, 다만 수치제어 와이어커트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 350×500㎜이하 및 최대가공물 두께 320㎜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타로서 다음의 것 (주축회전 12,000 RPM 초과의 것 및 로타리 테이블형의 것은 제외)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200×1,2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2,000×800㎜이하의 것 - 프라노밀러형 4축제어 이하의 것으로 테이블크기 1,200×2,500㎜-3,000×7,000㎜이내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주축회전 8,000 RPM 이상의 것은 제외) - 단축으로서 스윙 740㎜, 중심간거리 2,100㎜이하의 것 - 2축으로서 스윙 330㎜, 중심간거리 210㎜이하의 것
19 0000	○ 자동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캠식 자동선반으로 가공물직경 25㎜이하의 것 (주축이동형은 가공물직경 15㎜이하의 것) - 단능반 (유압자동선반)으로 스윙 600㎜, 주축경 120㎜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9 51 0000	○ 수치제어식의 무릎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주축을 경사 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 - 단축으로 테이블 크기 1,400×310㎜이하의 것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으로서 테이블크기 3,200×870㎜ 이하의 것 (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크기가 2,000×800㎜이하의 것) - 4 축제어 이하의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로서 테이블 크기 1,200×2,500㎜-3,000×7,000㎜이내의 것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0 40 1000	○ 호닝반 (내면형으로서 Bore 직경 300㎜이하의 것으로 수치 제어식이 아닌 것)
8461 30 0000	○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 (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가압력 30톤, 스트로크 2,000㎜이하의 것
8462 99 0000	○ 용량 2,000톤 또는 SPM 400이하의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8465 92 1000	○ N.C 루우터 (테이블이동거리 3,000㎜×2,400㎜, 테이블수 2이하의 것) ○ 모울더 (가공폭 250㎜이하로서 가공축수 8 이하의 것)
8469 10 0000	○ 워드프로세싱머신
8471 20 9000	○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 MB이하의 것)
92 2010	○ 프린터중 다음의 것 - Impact Dot Matrix Type으로 행당인자수가 영문 60자

H S	품 목 명
	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60자 이내의 것 - Laser Beam Type으로 단색용이며, 인쇄용지규격이 B4이하의 것
93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디스크 직경 8“이상의 것은 제외)
8472 90 9000	○ 연필깍는 기계
8477 10 1000	○ 고무공업용의 사출성형기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로서 1회 사출용량 33㎤-4,500㎤의 것에 한함 (2색사출성형기는 제외)
80 0000	○ 기타 고무산업용 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40“이상의 기류기 - 용량 200ℓ 이상의 Pubber Mixer (고무혼합기) - Tire Bead M/C (비드제조기)
8479 89 9020	○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9 9050	○ 코팅머신 (렌즈, 수정진동자, 알루미늄 진공코팅기에 한함)
89 9099	○ 자동차 세척기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형번의 것 - NO. 6000-6014 - NO. 6200-6214 - NO. 6300-6314 ○ 유니트용 볼베어링 (내경 12-75㎜의 것)
20 0000	○ 단열 테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 (인치계열의 경우 내경 3/4“-2 3/4”의 것) 다만,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32014

H S	품 목 명
	- NO. 33004-33014
80 0000	○ 유니트 보울 베어링 (내경 12-75㎜의 것)
8483 30 9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베어링 하우징 (볼베아링 또는 로울러베아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폴레인샤프트베어링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85 10 0000	○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KVA초과 375KVA 이하의 것)
13 10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400KW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것)
13 2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750KVA초과 1,500KVA 이하의 것)
13 3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출력 1,500KVA초과 3,500KVA 이하의 것)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다만, 출력 75KVA이하의 것에 한함)
8504 40 2010	○ 무정전 전원장치 (단상 0.5KVA 이상 50KVA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이하의 것)
40 2090	○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이상 400KVA이하의 것)
8508 10 1000	○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제외)
10 9000	○ 기타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제외)
20 0000	○ 전기톱
80 1000	○ 전기그라인더, 샌더, 폴리셔와 부러셔어
80 2000	○ 대패와 그루버
80 9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8516 60 2000	○ 전기밥솥 (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H S	품 목 명
8516 79 1000	○ 전기보온밥통
8517 82 1000	○ 모사전신기기
90 9500	○ 모사전신기기의 부분품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21 0000	○ 레코드플레이어 (신호처리기 디지털 방식의 것으로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한함)
8519 91 2010	○ 기타의 음성재생기중 디지털식의 것 (자동차용의 것)
91 2020	○ " (휴대용의 것)
99 3010 3020 309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음성재생기기 (확성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0 31 2020	○ 디지털방식 테이프녹음기 (휴대용의 것)
90 1040	○ 디지털식 카세트형의 데크
8521 10 1000 10 2000	○마이크네틱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 20 7020	○ 모빌텔리폰
20 7090	○ 휴대용 무선전확기
30 1000	○ 녹화기용 텔레비젼카메라
8527 11 200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함)
21 1090	○ 아나로그식이 아닌 기타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8527 21 2000 21 3000 31 1210 31 1310	○ 레이저광학 판독장치 또는 디지털형과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전원 및 용도와 형태의 불문함)

H S	품 목 명
8528 10 4000	ㅇ 비디오 튜너 (칼라용의 것)
10 9040	ㅇ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이상의 것에 한함)
8529 10 9210	ㅇ 위성방송 수신용의 안테나 및 동부분품
8536 20 0000	ㅇ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 (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 (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ㅇ 전자개폐기 (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이하의 것)
8537 10 2000	ㅇ 자동제어반증 선박용의것과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
8539 31 0000	ㅇ 형광램프 (얼음극형의 것)
8540 11 0000	ㅇ 21“이상 천연색텔레비전용 음극선관 및 14” 영상모니터용 음극선관 (0.28 Dot Pitch 및 0.41 Strip Pitch에 한함)
8544 11 1000	ㅇ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
20 0000	ㅇ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60 3090	ㅇ 기타전선 (전압 100㎸ 초과 것으로 Bus Duct는 제외)
8548 00 0000	ㅇ 모시전신기용 Thermal Printer Head
8702 10 1000	ㅇ 마이크로버스
8703 21 1000	ㅇ 세단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 이하)
21 2000	ㅇ Jeep형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 이하)
21 3000	ㅇ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 이하)
21 9000	ㅇ 기타 (실린더용량 1,000㏄ 이하)

H S	품 목 명
8703 22 1000	○ 세단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이하)
22 2000	○ Jeep형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 이하)
2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이하)
22 9000	○ 기타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이하)
23 1000	○ 세단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3 2000	○ Jeep형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3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3 4000	○ 스테이션웨곤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3 9000	○ 기타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4 1000	○ 세단형의 것 (실린더용량 3,000cc초과)
24 4000	○ 스테이션웨곤 (실린더용량 3,000cc초과)
32 1000	○ 세단형의 것 (실린더욜양 1,500cc초과 2,500cc이하)
32 2000	○ Jeep형 자동차 (실린더욜양 1,500cc초과 2,500cc이하)
32 3000	○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것 (실린더욜양 1,500cc초과 2,500cc이하)
33 2000	○ Jeep형 자동차 (실린더용량 2,500cc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차 (25톤이상 75톤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0000	○ 차체 (운전실 포함)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50 0000	○ 자동차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변동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99 9000	○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한하여 한국농기구공업

H S	품 목 명
	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것은 제외)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 (실린더용량 50㏄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 (실린더용량 50㏄초과 250㏄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2000	○ 유람선
10 3000	○ 페리보우트 (5,000 G/T 미만은 제외)
10 9000	○ 기타
90 1010	○ 일반화물선 (4,000 G/T 미만은 제외)
90 1020	○ 벌크선 (4,000 G/T 미만은 제외)
90 1030	○ 콘테이너선
90 1090	○ 기타
90 2000	○ 화객선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선
00 2090	○ 기타 (어획물운반선 포함)
9002 11 1000	○ 카메라렌즈중 35㎜ 카메라의 표준렌즈 및 교환렌즈
9006 51 9000 53 9000	○ 35㎜롤필름용의 사진기 (1회용의 것은 제외)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복시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9010 10 9000	- Film Processor : 처리능력 35㎜사진기용 필름24매 기준 100롤/ 시간 이하의 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 m/시간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 Photo Printer : 3“×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이하의 것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 (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털식 또는 다이일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9018 19 80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칼라혈류영상진단기 (Color Flow Mapping)는 제외]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 (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102 11 900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0000	○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전자식 올겐
9404 90 0000	○ 기타의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자기침구류 포함)
9405 60 9000	○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0	○ 비디오게임용구
9506 31 0000	○ 골프채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19 9000	○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20 2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09 10 1000	○ 연필
20 0000	○ 연필심
90 1000	○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기계공업진흥회	8407 8408	┐ 산업용 내연기관 ┘
	8422	충전기, 자동포장기
	8426	크레인
	8428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8429	로우드로울러, 로우더, 도우저, 굴착기 그레이더
	8445	카아드기, 정방기, 권사기
	8446	래피어 직기
	8469	전자식 타자기
	8477	사출성형기
	8705	트럭 크레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8407 8408	┐ 자동차 및 포크리프트 트럭용 ┘ 내연기관
	8409	자동차용 내연기관 부분품
	8413	자동차용 펌프
	8414	카쿨러용 냉매압축기
	8427	포크리프트 트럭
	8601	철도용 전기기관차
	8602	철도용 디젤기관차
	8603	자주식 철도 및 궤도용 객화차
	8701	트랙터 (농업용 이외의 것)

Ⅳ- 15. 1994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4-157 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년 12월 16일

상 공 자 원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 (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상공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다만,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 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 기계. 장비의 해당단체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O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6. [별표2]에 게기되지 아니한 HS 72류 내지 HS 92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중 상공자원부 장관이 국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의 소요부품 수입
7.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체신부 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과학기술처 장관이 인정한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9.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으 LTKXO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 (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상공자원부 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1. 외자도입법 제14조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영위 하는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별표3]의 생산시설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4조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생산소요 부품의 수입) ① 제3조 5호 및 6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산화추진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추천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제1항의 국산화추진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국산화율 및 수량등의 적정여부 또는 국산화를 요하는 중요부품의 국산화 여부
4. 연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

③ 추천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학계 및 생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화계획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추진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 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추천의 유효기간)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확인, 제3조에 의한 수입추천, 인정, 확인 및 [별표1]에 의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추천(인정 또는 확인포함, 이하 같음)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추천(또는 인정)일부터 6월까지로 한다.

② 추천, 인정 또는 확인기관의 장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수입승인시 수량 확인) 수입선다변화품목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국산개발소요부품의 수입승인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 확인서에 수입승인일자, 수입승인 수량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등) ①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또는 계약서) 확인 요령을, 그리고 제3조 각호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하는 기관 및 [별표1]에 의하여 확인을 하는 기관의 장은 추천 또는 확인요령을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수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상공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요령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① 국산화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 추천신청시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 장관은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공자원부 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추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공고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3-127호는 이를 폐지한다)

4,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127호에 의한 수입추천, 획안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 추천. 확인 등으로 본다.

[별 표 1]

수입선다변화 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가루
2106 90 9090	○ 기타의 조제식료품.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여 품목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체가 당해 품목의 원료로서 국산공급이 불가능함을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2831 10 1000	○ 아이티온산 나트륨
2905 32 0000	○ 프로필렌 글리콜
2914 11 0000	○ 아세톤
2926 90 9090	○ 클로로타로닐 (Tetrachloro Isophthalonitrile) (순도 90%이상의 것에 한함)
2929 10 2000	○ 디페닐메탄디이소아네이트(M-MDI) 다만, 후레이크 타입은 제외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명제중 황산마륨제제 및 탄산수소나트륨, 주석산제제
3707 90 9200	○ 조색제 (전자복사기용 건식조색제에 한함)
3818 00 1000	○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 (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 아미드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 (20/20℃)이 0.96 이상의 것
3920 20 0000	○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7μ-60μ의 것. 다만 15μ 미만의 Hazy Type의 것은 제외함
3923 10 0000	○ 플라스틱제의 상자, 케잇,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924 10 0000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90 9000	○ 플라스틱제의 기타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4011 10 1000	○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표 53 (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타이어)중 30×9.50R 15LT 6PR 및 31×10.50R 15LT 6PR 포함)
4802 52 1000	○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1㎡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롤상의 것은 폭이, 직사각형의 것은 한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한 것)

H S	품 목 명
4816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HS 4809호 이외의것)
90 3000	○ 인쇄용 제판용지 (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4818 40 0000	○ 위생용 타올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다만, 아기기저귀는 제외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90 0000	○ 기타 양모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30 0000	○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208 32 0000	○ 염색한 평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 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00g 초과의 것)
5210 31 0000	○ 염색한 평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603 00 1010	○ 폴리우레탄 인조피혁
6806 90 9000	○ 암면천정판 (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90	○ 기타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00 1090	○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H S	품 목 명
7011 20 1000	ㅇ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TV기준 21“에 한함)
7013 29 0000	ㅇ 기타 음류용의 유리컴퓨
39 0000	ㅇ 기타 식탁용 및 부첵용의 유리제품
7016 90 1000	ㅇ 유리타일 (결정화유리)
7216 33 1000	ㅇ H형강중 다음의 것. 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SWS58 해당품목은 제외
33 2000	- 등변의 것으로 100×100㎜-350×350㎜의 것 - 부등변의 것으로 600×300㎜ 이하의 것
7315 12 0000	ㅇ Load Chain (체인선재으 lwlrrud이 5㎜-20㎜의 것)
7321 11 0000	ㅇ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	ㅇ 석유난방기구
7607 11 9000	ㅇ 알루미늄 박.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알루미늄 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루미늄 순도 99.4%이상이며 Cu 0.23% 이상의 것 - Etched Aluminium Foll
8302 60 0000	ㅇ 도어클로저 (유압기구를 갖춘 Floor Hinge 포함)
8407 90 9000	ㅇ 최대출력 20 BHP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고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ㅇ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300㎾ 이하의 것)
10 2000	ㅇ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10 3000	ㅇ 선박추진용 내연기과 (출력 2,000㎾ 초과익 것)
90 9010	ㅇ 기타의 선박용 내연기관
90 9090	ㅇ 기타의 디젤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고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1 1000	ㅇ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99 2000	ㅇ 제87류의 차량용의 기타 엔진 부분품.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409 99 3020	ㅇ 선박용 내연기관부품 (출력 300㎾ 초과 2,000㎾이하의 것)
8413 30 4000	ㅇ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펌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70 9000	ㅇ 양수기 (펌프)
8414 10 0000	ㅇ 진공펌프중 다음의 것 - 최대진공도 5 Torr, 배기량 2,000-50,000ℓ/min인 수봉식 진공펌프 - 최대진공도 1×10 Torr, 배기량 2,000~40,000ℓ/min인 메카니칼부스타 - 벨트구동의 오일로타리식 진공펌프
30 1000	ㅇ 냉매압축기 (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30 2000	ㅇ 냉매압축기 (사용동력 11㎾ 이상의것)
80 9210	ㅇ 공기압축기 (사용동력 74.6㎾ 미만의 것)
8418 61 1000	ㅇ 압축식유니트의 냉장 또는 냉동ㅇ기구중 다음의 것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쿨러
8418 69 2090	ㅇ 흡수식냉동기. 다만, 50RT 미만의 유니트형은 제외
8419 89 9090	ㅇ 석유화학용 압력용기 (압력이 150㎏/㎠ 이상이고 중량이 1,000톤 미만이며 본체두께가 200㎜이상 360㎜이하의 것에 한함)
8422 30 1000	ㅇ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다만, 주사약충진기는 제외
30 1000	ㅇ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30 2000	ㅇ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30 9000	ㅇ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충전, 봉합, 주입등의 기계

H S	품 목 명
8422 40 100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 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40 9000	○ 기타 포장기계
8425 11 1090	○ 폴리태클 호이스트 (전동식을 10M/T 이하의 것)
39 0000	○ 원치와 캡스탄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 (적재중량 3톤 이하의 것)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 (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29 51 1000	○ 휠로우더 (휠로우더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 포함
52 1000	○ 굴삭기 (국살기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1 49 0000	○ 유압브레카
8433 51 0000	○ 수확, 탈곡 겸용기
8443 19 0000	○ 옵셋인쇄기(쉬이트식의 것으로 쉬이트크기가 390㎜×540㎜ 이하의 것에 한함)
8443 50 1000	○ 직물날염기 (색도가 10도 이하의 것에 한함)
8446 30 1010	○ 래피어식의 면직기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은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PPM 5,000 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PPM 10,000 이상 또는 상하 차동송은 제외 -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 (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 이하로서 폭방향 350㎜ 이하의 것. 다만, 수중침적가공방식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 이하로서 폭방향 600㎜ 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200㎜ 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케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이하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 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 이하의 것
8459 51 0000	○ 수치제어식 무릎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으로 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1,400㎜이하로서 폭방향 310㎜ 이하의 것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 이하로서 폭방향 870㎜ 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 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0 40 1000	○ 호닝반. (내면형으로서 Bore직경이 300㎜이하의 것에 한함)
8461 30 0000	○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 다만, 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최고 가압력 30톤 이하로서 스트로크 2,00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62 99 1020	○ 최고가압 30메트릭톤 초과 1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80메트릭톤 이상의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99 1090	○ 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2,0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8465 92 1000	○ 테이블수 2개이하의 N.C루우터로서 다음의 것 -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3,300㎜ 이하로서 폭방향 2,400㎜ 이하의 것 ○ 모울더. 다만, 가공폭 250㎜ 이하로서 가공축수 8이하의 것
8471 20 9000	○ 디지털형 자동자료 처리기계. (개인용 컴퓨터에 한함)
92 2010	○ 프린터중 다음의 것 - Impact Dot Matrix Type (행당인자수가 영문 60자 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 기준일 때 최대속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다가 초당 360자 이내의 것에 한함) - Laser Beam Type (단색용이며 낱장용지 공급방식으로 인쇄용지 규격이 B4 이하의 것에 한함)
93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두께가 0.7“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격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472 90 1010	ㅇ 현금자동지불기
90 4000	ㅇ 기연필절삭기
8477 10 2000	ㅇ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 (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8479 89 9020	ㅇ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482 10 0000	ㅇ 단열깊은 홈 볼 메이러이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20 0000	ㅇ 유니트용 볼베이링 (내경 12 - 75㎜의 것) ㅇ 단열 테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 (인치계열의 경우는 내경 3/4“-2 3/4”의 것). 다만,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 32014 - NO. 33004 - 33014
8485 10 0000	ㅇ 선박 또는 보우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8502 12 0000	ㅇ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13 1010	ㅇ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400㎾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ㅇ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10	ㅇ 무정전 전원장치 (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에 한함)
40 2090	ㅇ 전동기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이상 400KVA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ㅇ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는 제외

H S	품 목 명
8508 20 0000	○ 전기톱
80 0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및 고주파전동공구는 제외
8516 60 2000	○ 전기밥솥 (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7 82 1000	○ 모사전신기기
90 9500	○ 모사전신기기의 부분품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 다만,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91 1000	○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데크메카니즘 포함, 아나로그식에 한함)
8519 99 3010	○ 자동차용 디드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9 3020	○ 휴대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9 3090	○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8521 10 2000	○ 마스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폭 12.7㎜ 이하)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숑용기기
8525 20 7020	○ 자동차용의 무선전화기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
30 1000	○ 녹화기용 텔레비젼 카메라
8527 11 2000	○ 디스크형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8527 21 1000	○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아나로그식은 제외
21 2000	○ 디스크형의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자동차용 라디오방송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31 1200	○ 디스크형의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기타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31 130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아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H S	품 목 명
8528 10 905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이상 63.50㎝ 미만의것)
8528 10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 이상의 것)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 (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것) - 누전차단기 (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6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 이하의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1,000볼트 이하의 것)중 다음의 것 - 프로그래머블콘트롤러 - 수치제어장치중 동시제어 축수가 2축의 것
8539 31 0000	○ 형광램프 (열음극형의 것). 다만, 특수용도 형광등으로서 자외선차단용 (미술관,박물관, 인쇄공장등의퇴색방지용), 복사용, 칼라스라이드용, 전자사진용, 광화학반응용, 살균용, 식물재배용, 앞담배등 농업용, 의료용, 식육점(Red Color) 및 과일, 생선, 야채등의 쇼케이스용과 관경이 22㎜이하의 것으로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8540 11 0000	○ 21“이상 천연색텔레비전용 음극선관 및 14” 영상모니터용 음극선관 (0.28 Dot Pitch 및 0.41 Strip Pitch에 한함)
8544 11 1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 전선
20 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제
60 3090	○ 전압 100㎸ 초과의 기타전선. 다만, Bus Duct는 제외
8548 00 0000	○ 모사전신기용 Thermal Printer Head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0 1000	○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 이하)

H S	품 목 명
8703 21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9000	ㅇ 기타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8703 22 1000	ㅇ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3000	ㅇ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4000	ㅇ 스테이션 웨곤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9000	ㅇ 기타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3 1000	ㅇ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3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3 3000	ㅇ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3 4000	ㅇ 스테이션웨곤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폭 12.7㎜ 이하)
23 9000	ㅇ 기타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4 1000	ㅇ 세단형의자동차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24 4000	ㅇ 스테이션웨곤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2 1000	ㅇ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3000	ㅇ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3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ㅇ 일반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22 1000	ㅇ 일반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ㅇ 기중기차 (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 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ㅇ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9000	ㅇ 차체(운전실포함)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50 0000	ㅇ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H S	품 목 명
8708 99 9000	○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셔스팬션 쇽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및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711 11 1000	○ 모터사이클 (실린더용량 50㏄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 (실린더용량 50㏄ 초과 250㏄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3000	○ 페리보우트. 다만, 5,000G/T 미만은 제외
10 9000	○ 기타의 선박
90 1020	○ 벌크선. 다만, 4,000G/T 미만은 제외
90 1030	○ 콘테이너선
90 1090	○ 기타의 화물선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선
8905 10 0000	○ 준설선
9006 51 900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53 909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 (기타의 것)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 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0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or ・35㎜ 사진기용 필름현상용의 것은 24매 기준처리능력이 100롤/시간 이하의 것 ・X-Ray 필름현상용의 것은 1매당 현상소요시간이 90초이상 180초 이하의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er : 3″×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 (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엽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털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9018 19 50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만, 칼라혈류영상진단기 (Color Flow Mapping)는 제외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 (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102 11 900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0000	○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오르간 (신디사이저를 포함)
9407 90 0000	○ 기타의 침구 및 이와유사한 물품 (자기침구류 포함)
9405 60 9000	○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0	○ 비디오게임용구
9506 31 0000	○ 골프채
9506 93 1000	○ 골프채의 부분품 (다만, 샤프트는 제외)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19 9000	○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17 00 1000	○ 보온병
00 2000	○ 보온도시락

Ⅳ- 16. 1995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보도자료
수 입 과 500-2386 503-9441

내년 1월부터 26개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

○ '95년 1월 1일부터 워드프로세싱머신, 실리콘 에멀젼등 26개품목이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되어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 상공자원부가 15일 발표한 『'95년도 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계Ghlr』에 따르면, 현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상 10단위 기준으로 230개 수입선다변화품목중에서 △HS 10단위 전체가 해제되는 품모은 워드프로세성머신, 실리콘 에멀젼등 26개품목이고, △HS 10단위중 품목의 일부가 해제되는 것은 방전가공기등 4개 품목이다

○ 상공자원부가 이번에 해제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은 지정기간이 장기이고,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해제기준에 따라 내수와 수입규모가 큰 원자재와 자본재로 포함된다.

○ 그러나, 소비재의 경우에는 내수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금년 5월 한·일통상장관 회담시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한 약속과 양국간 통상협력관계를 고려하여 품목을 새로 지정하거나, 규격을 추가한 품목은 없다.

○ 향후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98년까지 매년 10%씩 품목을 해제하여 '98년에는 '93년기준(258개)의 50% 수준인 129개 품목으로 줄이고, '99년이후에는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95. 2)를 토대로 대일무역적자규모 및 산업경쟁력,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등을 감안하여 수입선다변화제도의존치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 붙였다.

'95년도 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계획

1. 수입선다변화품목 현황

○ '93. 12월 258개품목 → '94. 12월현재 230개푸목

- 지 정 년 도 : 10년이상(25), 5년이상(146), 5년미만(59)
- 용 도 별 : 소비재(98), 원자재(25), 자본재(107)
- 산업별품목수 : 기계·소재(112), 전자·정보(84), 섬유·화학(61), 기타(3)

2. '93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방안

가. 전체해제

○ '95해제품목수 : 26개품목 ('94년 230 → '95년 204개품목)

- 해제기준
  - 10년이상 장기지정품목 및 5년이상 지정된 소비재중 독과점 품목
  - 5년이상 지정된 품목중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
  - 신대체품개발 또는 다기능·고성능제품 개발로 지정 실효성이 낮은품목 등

- 대상품목(26)
  - 소비재 : 35㎜용 카메라 렌즈, 자동차 차체용 광택제(금속용 제외), (11) 인조섬유와 혼방직물, 주철제 법량제품, 철강제 법량제품, 워드프로세싱머신, 연필,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휴대용 디지털 테이프 녹음기, 디지털식 카세트형데크, VCR(폭 12.7㎜초과)
  - 원자재 : 반응성염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실리콘 에멀젼, (4) 집성운모절연제품

・자본재 : 액체연료용노용버너, 차량용베아링, 위성방송수신용안테나
(11) 및 동부분품, 스프레이건, 기타의 블록과 체인블록, 코팅머신, 자동선반, 래피어식의 견직기, 다두식 전자자수기,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출력 2,000㎾ 초과), 일반화물선(4,000G/T미만 제외)

나. 부분해제

○ 대상품목 (자본재 : 4개품목)

- 기타의 재봉기(단침환봉단추달이 재봉기), 방전가공기(수중침적가공방식), 기타 수지식전동공구(함마, 고주파 전동공구), 기타의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셔스팬션 쇽 압쇼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3. 향후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 방향

가. '98년 까지

○ 매년 10%(26개품목)씩 계속 해제하여 '98년까지 129개 품목으로 축소

나. '99년 이후

○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95. 2)를 토대로 대일무역적자규모 및 산업경쟁력 양국간 산업기술협력등을 감안하여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존치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 참고자료 > 1. 전체해제대상품목 1부.
2. 부분해제대상품목 1부.
3. 한국의 총교역중 대일교역비중 추이 1부.

< 별첨 >

1. 전체 해제대상 품목 (26개)

H S	품 명	H S	품 명
3206 10 0000	반응성 염료	8458 19 0000	자동선반으로 다음의것
3405 30 0000	자동차 차체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금속용 광택제는 제외)		-단축캠식 자동선반으로 가공물직경 25㎜이하의 것 다만, 주축 이동형은 가공물 직경 15㎜이하의 것
3907 20 2000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단능반(유압자동선반)으로 스윙 600㎜이하로서 주축경 120㎜이하의 것
3910 00 9090	실리콘에얼젼		
5111 30 0000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8469 10 0000	워드프로세싱머신
6814 10 0000	판, 쉬트 및 테이프의 집성운모 절연제품. 다만, 집성운모박은 제외	8479 89 9050	코팅머신(렌즈, 수정진동자, 알루미늄 지공코팅기에 한함)
7323 92 0000	법랑제품 (주철제의 것)	8483 30 9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베아링 하우징(볼베아링 또는 로울러베아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플레인샤프트 베아링. 다만, 한국농기구 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94 0000	법랑제품 (철강제의 것)		
8409 99 3030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 (출력 2,000㎾ 초과)		
8416 10 1000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 (시간당 최대연료 소비량이 200ℓ 이하의 것)	8520 10 1000	휴대용의 카세트형 녹음기 (디지탈식에 한함)
8424 20 1000	스프레이건(도장용의 것으로 노즐경 0.6㎜이상의 것에 한함)	90 1040	카세트형의 데크 (디지탈식에 한함)
8425 19 0000	기타의블록과 체인블록 및 폴리태클과 호이스트 (10M/T이하의 것에 한함)	8521 10 100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폭 12.7㎜초과)
8446 30 1020	래피어식의 견직기	8529 10 9210	위성방송수신용 안테나 및 동부분품
8447 90 2010	다두식전자수기. 다만, 최대 PPM이 800이상인것과 Taping & Cording 전자자수기 제외	8901 90 1010	일반화물선. 다만, 4,000G/T미만은 제외
		9002 11 1000	카메라렌즈중 35㎜카메라의 표준렌즈 및 교환렌즈
		9609 10 1000	연필
		90 1000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2. 부분 해제 대상 품목 (4개)

현 행		조 정 (안)	
H S	품 명	H S	품 명
8452 29 0000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단침직진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쌍침직진형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지그재그형재봉기 다만, PPM 5,000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PPM 10,000이상 또는 상하차동송은 제외 -단침환봉단추달이 재봉기. 단침,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포스트베드형 침송 재봉기 (사절포함)	8452 29 0000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단침직진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쌍침직진형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지그재그형재봉기 다만, PPM 5,000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PPM 10,000이상 또는 상하차동송은 제외 (삭 제) -포스트베드형 침송 재봉기 (사절포함)
8456 30 000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이하로서 폭방향 350㎜이하의 것 다만, 수중침적가공방식의 것은 길이방향 450㎜미만으로서 폭방향 300㎜미만의 것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이하로서 폭방향 600㎜이하의 것	8456 30 000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이하로서 폭방향 350㎜이하의 것 (삭 제)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이하로서 폭방향 600㎜이하의 것

현 행		조 정 (안)	
H S	품 명	H S	품 명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는 제외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는 제외
8708 99 9000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8708 99 9000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3. 韓國의 總交易중 對日交易 比重推移

(단위 : 백만불)

년 도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총수출	대일수출	비 중	총수입	대일수입	비 중	총교역	대일교역
'65		44			167			-123
'66	250	66	26.4	716	294	41.1	-466	-228
'67	320	85	26.6	996	443	44.5	-676	-358
'68	455	100	22.0	1,463	624	42.7	-1,007	-524
'69	623	133	21.3	1,824	754	41.3	-1,201	-621
'70	835	234	28.0	1,984	809	40.8	-1,149	-575
'71	1,068	262	24.5	2,394	954	39.8	-1,326	-692
'72	1,624	408	25.1	2,522	1,031	40.9	-898	-623
'73	3,225	1,242	38.5	4,240	1,727	40.7	-1,015	-485
'74	4,460	1,380	30.9	6,852	2,621	38.3	-2,391	-1,241
'75	5,081	1,293	25.4	7,274	2,434	33.5	-2,193	-1,141
'76	7,715	1,802	23.4	8,774	3,099	35.3	-1,297	-1,297
'77	10,046	2,148	21.4	10,811	3,927	36.3	-1,779	-1,779
'78	12,711	2,627	20.7	14,972	5,981	39.9	-2,661	-3,354
'79	15,055	3,353	22.3	20,339	6,657	32.7	-5,283	-3,304
'80	17,505	3,039	17.4	22,292	5,858	26.3	-4,787	-2,819
'81	20,993	3,444	16.4	26,131	6,374	24.4	-5,139	-2,930
'82	21,616	3,314	15.3	24,251	5,305	21.9	-2,635	-1,991
'83	24,223	3,358	13.9	26,192	6,238	23.8	-1,970	-2,880
'84	29,245	4,602	15.7	30,631	7,640	24.9	-1,387	-3,038
'85	30,283	4,543	15.0	31,136	7,560	24.3	-853	-3,017
'86	34,714	5,425	15.6	31,585	10,869	34.4	3,129	-5,444
'87	47,281	8,437	17.8	41,020	13,657	33.3	6,261	-5,220
'88	60,696	12,004	19.8	51,811	15,929	30.7	8,886	-3,925
'89	62,377	13,457	21.6	61,465	17,449	28.4	912	-3,992
'90	65,016	12,638	19.4	69,844	18,574	26.6	-4,828	-5,936
'91	71,870	12,356	17.2	81,525	21,120	25.9	-9,655	-8,764
'92	76,632	11,599	15.1	81,775	19,458	23.8	-5,144	-7,859
'93	82,236	11,564	14.1	83,800	20,016	23.9	-1,564	-8,452
'94.10말	76,176	10,902	14.3	82,144	20,568	25.0	-5,967	-9,666
누 계	784,331	135,859	17.3	830,763	228,137	27.5	-48,083	-92,278

'95수입선다변화(해제대상품목) 해제시 예상 수출입현황

(단위 : 천불)

H S	품 목 명	수 출			수 입		
		'94	'95	'96	'94	'95	'96
3204 16 0000	반응성 염료	2,330	4,780	4,750	1,170	835	930
3405 30 0000	자동차 차제용 광택제	90	100	120	2,709	3,100	3,560
3907 20 2000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31,620	33,000	36,000	13,600	15,500	18,200
3910 00 9090	실리콘에멀젼	10,000	12,000	14,000	8,518	12,500	13,500
5111 30 0000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12,000	10,000	7,500	1,750	300	5,000
6814 10 0000	판, 쉬트 및 테이프의 집성운모 적연제품. 다만, 집성운모박은 제외	1,000	1,000	1,000	6,500	7,500	1,100
7323 92 0000	법량제품 (주철제의 것)	1,000	1,500	2,000	3,000	3,500	4,200
94 0000	법량제품 (철강제의 것)						
8409 99 3030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 (출력 2,000㎾ 초과)	13,560	9,000	9,000	67,800	59,000	83,000
8416 10 1000	액체연료용의 노용버너 (시간당 최대연료 소비량이 200ℓ 이하의 것)	375	500	700	3,740	4,500	5,000
8424 20 1000	스프레이건(도장용의 것으로 노즐경 0.6㎜이상의 것에 한함)	100	100	100	3,000	4,500	4,500
8425 19 0000	기타의 블록과 체인블록 및 폴리태클과 호이스트(10M/T 이하의 것에 한함)	1,780	1,200	880	4,000	6,000	7,000
8446 30 1020	래피어식의 견직기	8,000	10,000	9,000	25,000	3,000	6,000
8447 90 2010	다두식전자수기. 다만, 최대 PRM이 800이상인것과 Taping & Cording 전자자수기 제외	500	600	800	44,800	50,000	55,000

(단위 : 천불)

HS	품 목 명	수 출			수 입		
		'94	'95	'96	'94	'95	'96
8458 19 0000	자동선반으로 다음의 것 -단축캠식 자동선반으로 가공물직경 25㎜이하의 것 다만, 주축 이동형은 가공물 직경 15㎜이하의 것 -단능반(유압자동선반)으로 스윙 600㎜이하로서 주축경 120㎜이하의 것	-	-	-	2,500	2,500	2,500
8469 10 0000	워드프로세싱머신	5,000	3,000	3,000	1,200	1,500	1,500
8479 89 9050	코딩머신 (렌즈, 수정진동자, 알루미늄 지공코팅기에 한함)	374	560	670	910	1,670	2,640
8483 30 9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베아링 하우징(볼베아링 또는 로울러베아링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플레인샤프트 베아링,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7,400	8,500	9,900	17,000	20,700	23,600
8520 31 2000	휴대용의 카세트형 녹음기 (디지탈식에 한함)	764	1,800	1,636	92	1,300	1,547
90 1040	카세트형의 데크 (디지탈식에 한함)	20,822	20,822	22,904	28,000	30,474	33,889
8521 10 100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폭 12.7㎜ 초과)	-	-	-	2,500	2,920	3,100
8529 10 9210	위성방송수신용 안테나 및 동부분품	83,500	100,000	100,000	5,000	12,469	18,703
8901 90 1010	일반화물선. 다만, 4,000G/T미만은 제외	26,100	28,760	24,500	27,900	22,300	26,800
9002 11 1000	카메라렌즈중 35㎜ 카메라의 표준렌즈 및 교환렌즈	7,500	7,500	5,300	5,300	6,700	10,100
9609 10 1000	연필	1,930	1,800	1,600	1,130	2,000	2,400
90 1000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3,540	3,540	3,200	56	70	200
합 계		239,785	260,062	258,560	254,675	277,538	343,869

심의관	실 장	차 관

장 관

보고자 : 수입과장

【 보도자료 】

'95 7월부터 21개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

(완전해제 17개품목, 부분해제 4개품목)

○ 오는 7월부터 현행 204개 수입선다변화품목중 캐리올 트럭형 자동차등 17개품목은 완전해제되고 개인용 컴퓨터등 4개품목은 부분해제되어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해제품목 : 별첨 참조)

○ 통상산업부는 최근 대일무역적자가 늘어나는등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무역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년초의 26개품목 해제에 이어 이번에 다시 추가로 일부품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해제 조치는 '93. 7월에 마련된 현행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덧붙여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 만큼 WTO 체제등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의지표명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의 추가적인 축소 개선노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 관련업계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 앞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은 '98년 7월의 당초 방침대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10%씩 해제해 나가되 대일무역적자등 국제수지 개선상황, 우리산업의 경쟁력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해제폭을 조정하는등 점진적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수입선다변화 해제대상품목 현황

○ 전체해제 대상품목 (17개)

H S	품 명	H S	품 명
2831 10 1000	아이티온산 나트륨지	8527 11 2000	디스크형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3924 10 0000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8703 22 3000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이하)
90 9000	플라스틱제의 기타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23 3000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5112 30 0000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직물	32 3000	케리올트럭형, 세단데리버리형 및 이와 유사한 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초과 2,500cc이하)
5210 31 0000	염색한 평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당 중량이 200g 이하의것)	8901 10 3000	페리보우트. 다만, 5,000 G/T미만은 제외
7013 29 0000	기타 음료용의 유리컵류	90 1030	콘테이너선
8425 39 0000	원치와 캡스탄	9506 39 1000	골프채의 부분품 (다만, 샤프트는 제외)
8517 90 9500	모사전신기기의 부분품	9607 19 9000	기타 슬라이드화스너
8519 99 3020	휴대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 부분해제 대상품목 (4개)

H S	품 명	H S	품 명
8443 19 0000	옵셋인쇄기중 양면옵셋인쇄기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중 충전식 드릴
8471 20 9000	개인용 컴퓨터(휴대용 제외)	8539 31 0000	현광램프(열음극형의 것)중 선박용

[별첨 2]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60 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7월 1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 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 (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상공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다만,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 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 기계. 장비의 해당단체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6. [별표2]에 게기되지 아니한 HS 72류 내지 HS 92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중 통상산업부 장관이 국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의 소요부품 수입
7.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과학기술처 장관이 인정한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9.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 (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1. 외국인 전용공단내 외국인 투자업체와 3천만불이상 수이(전년도 수입실적 기준)된 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체(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생산시설재 및 소요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4조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생산소요 부품의 수입) ① 제3조 5호 및 6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산화추진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추천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제1항의 국산화추진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국산화율 및 수량등의 적정여부 또는 국산화를 요하는 중요부품의 국산화 여부
4. 연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

③ 추천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학계 및 생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화계획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추진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 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추천의 유효기간)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확인, 제3조에 의한 수입추천, 인정, 확인 및 [별표1]에 의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추천(인정 또는 확인포함, 이하 같음)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추천(또는 인정)일부터 6월까지로 한다.

② 추천, 인정 또는 확인기관의 장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수입승인시 수량 확인) 수입선다변화품목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국산개발소요부품의 수입승인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 확인서에 수입승인일자, 수입승인 수량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등) ①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또는 계약서) 확인 요령을, 그리고 제3조 각호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하는 기관 및 [별표1]에 의하여 확인을 하는 기관의 장은 추천 또는 확인요령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수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상산업부 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요령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① 국산화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 추천신청시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 장관은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 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추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공고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4-157호는 이를 폐지한다

4,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57호에 의한 수입추천, 획안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 추천. 확인등으로 본다.

[별 표 1]

수입선다변화 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ㅇ 밀가루
2106 90 9090	ㅇ 기타의 조제식료품.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여 품목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체가 당해 품목의 원료로서 국산공급이 불가능함을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2905 32 0000	ㅇ 프로필렌 글리콜
2914 11 0000	ㅇ 아세톤
2926 90 9090	ㅇ 클로로타로닐 (Tetrachloro Isophthalonitrile) (순도 90%이상의 것에 한함)
2929 10 2000	ㅇ 디페닐메탄디이소아네이트(M-MDI) 다만, 후레이크 타입은 제외
3006 30 1000	ㅇ 엑스선검사용 조명제중 황산마륨제제 및 탄산수소나트륨, 주석산제제
3707 90 9200	ㅇ 조색제 (전자복사기용 건식조색제에 한함)
3818 00 1000	ㅇ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 (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906 90 1000	ㅇ 폴리아크릴 아미드
3911 10 1000	ㅇ 석유수지중 비중 (20/20℃)이 0.96 이상의 것
3920 20 0000	ㅇ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7μ-60μ의 것. 다만 15μ 미만의 Hazy Type의 것은 제외함
3923 10 0000	ㅇ 플라스틱제의 상자, 케잇,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4011 10 1000	ㅇ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표 53 (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타이어)중 30×9.50R 15LT 6PR 및 31×10.50R 15LT 6PR 포함)

H S	품 목 명
4802 52 1000	○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1㎡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롤상의 것은 폭이, 직사각형의 것은 한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한 것)
4816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HS 4809호 이외의 것)
90 3000	○ 인쇄용 제판용지 (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4818 40 0000	○ 위생용 타올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다만, 아기기저귀는 제외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90 0000	○ 기타 양모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208 32 0000	○ 염색한 평직물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 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00g 초과의 것)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603 00 1010	○ 폴리우레탄 인조피혁
6806 90 9000	○ 암면천정판 (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90	○ 기타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H S	품 목 명
6912 00 1020	ㅇ 도자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00 1090	ㅇ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7011 20 1000	ㅇ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TV기준 21“에 한함)
7013 39 0000	ㅇ 기타 식탁용 및 부철용의 유리제품
7016 90 1000	ㅇ 유리타일 (결정화유리)
7216 33 1000	ㅇ H형강중 다음의 것. 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SWS58 해당품목은 제외
33 2000	- 등변의 것으로 100×100㎜-350×350㎜의 것 - 부등변의 것으로 600×300㎜ 이하의 것
7315 12 0000	ㅇ Load Chain (체인선재으 lwlrrud이 5㎜-20㎜의 것)
7321 11 0000	ㅇ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	ㅇ 석유난방기구
7607 11 9000	ㅇ 알루미늄 박.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알루미늄 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루미늄 순도 99.4%이상이며 Cu 0.23% 이상의 것 - Etched Aluminium Foll
8302 60 0000	ㅇ 도어클로저 (유압기구를 갖춘 Floor Hinge 포함)
8407 90 9000	ㅇ 최대출력 20 BHP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고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ㅇ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300㎾ 이하의 것)
10 2000	ㅇ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10 3000	ㅇ 선박추진용 내연기과 (출력 2,000㎾ 초과익 것)
90 9010	ㅇ 기타의 선박용 내연기관
90 9090	ㅇ 기타의 디젤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고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기타 엔진 부분품.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부품 (출력 300㎾ 초과 2,000㎾이하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펌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70 9000	○ 양수기 (펌프)
8414 10 0000	○ 진공펌프중 다음의 것 - 최대진공도 5 Torr, 배기량 2,000-50,000ℓ/min인 수봉식 진공펌프 - 최대진공도 1×10 Torr, 배기량 2,000~40,000ℓ/min인 메카니칼부스타 - 벨트구동의 오일로타리식 진공펌프
30 1000	○ 냉매압축기 (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30 2000	○ 냉매압축기 (사용동력 11㎾ 이상의것)
80 9210	○ 공기압축기 (사용동력 74.6㎾ 미만의 것)
8418 61 1000	○ 압축식유니트의 냉장 또는 냉동ㅇ기구중 다음의 것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쿨러
8418 69 2090	○ 흡수식냉동기. 다만, 50RT 미만의 유니트형은 제외
8419 89 9090	○ 석유화학용 압력용기 (압력이 150㎏/㎠ 이상이고 중량이 1,000톤 미만이며 본체두께가 200㎜이상 360㎜이하의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다만, 주사약충진기는 제외
30 2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30 9000	○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충전, 봉합, 주입등의 기계
8422 40 100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 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40 9000	○ 기타 포장기계
8425 11 1090	○ 폴리태클 호이스트 (전동식을 10M/T 이하의 것)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 (적재중량 3톤 이하의 것) ○ 포오크 리프트 트럭 (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20 1020	○ 폴리태클 호이스트 (전동식을 10M/T 이하의 것)
8429 51 1000	○ 휠로우더 (휠로우더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 포함
52 1000 8431 49 0000	○ 굴삭기 (국살기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3 51 0000	○ 수확, 탈곡 겸용기
8443 19 0000	○ 옵셋인쇄기(쉬이트식의 것으로 쉬이트크기가 390㎜×540㎜ 이하의 것에 한함)
8443 50 1000	○ 직물날염기 (색도가 10도 이하의 것에 한함)
8446 30 1010	○ 래피어식의 면직기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H S	품 목 명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은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PPM 5,000 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PPM 10,000 이상 또는 상하 차동송은 제외 -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 (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 이하로서 폭방향 350㎜ 이하의 것. 다만, 수중침적가공방식의 것은 제외 -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 이하로서 폭방향 600㎜ 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200㎜ 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케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이하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 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9 51 0000	○ 수치제어식 무릎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으로 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1,400㎜이하로서 폭방향 310㎜ 이하의 것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 이하로서 폭방향 870㎜ 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 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0 40 1000	○ 호닝반. (내면형으로서 Bore직경이 300㎜이하의 것에 한함)
8461 30 0000	○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 다만, 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최고 가압력 30톤 이하로서 스트로크 2,000㎜ 이하의 것
8462 99 1020	○ 최고가압 30메트릭톤 초과 1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80메트릭톤 이상의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H S	품 목 명
8462 99 1090	○ 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2,0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8465 92 1000	○ 테이블수 2개이하의 N.C루우터로서 다음의 것 -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3,300㎜ 이하로서 폭방향 2,400㎜ 이하의 것 ○ 모울더. 다만, 가공폭 250㎜ 이하로서 가공축수 8이하의 것
8471 20 9000	○ 디지털형 자동자료 처리기계. (개인용 컴퓨터에 한함)
92 2010	○ 프린터중 다음의 것 - Impact Dot Matrix Type (행당인자수가 영문 60자 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 기준일 때 최대속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다가 초당 360자 이내의 것에 한함) - Laser Beam Type (단색용이며 낱장용지 공급방식으로 인쇄용지 규격이 B4 이하의 것에 한함)
93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두께가 0.7“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격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
8472 90 1010	○ 현금자동지불기
90 4000	○ 연필절삭기
8477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 (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H S	품 목 명
8479 89 9020	ㅇ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
8482 10 0000	ㅇ 단열깊은 홈 볼 메이러이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ㅇ 유니트용 볼베이링 (내경 12 - 75㎜의 것)
20 0000	ㅇ 단열 테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 (인치계열의 경우는 내경 3/4“-2 3/4”의 것). 다만,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 32014 - NO. 33004 - 33014
8485 10 0000	ㅇ 선박 또는 보우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8502 12 0000	ㅇ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13 1010	ㅇ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400㎾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ㅇ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10	ㅇ 무정전 전원장치 (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에 한함)
40 2090	ㅇ 전동기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이상 400KVA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ㅇ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는 제외
8508 20 0000	ㅇ 전기톱
80 0000	ㅇ 기타의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및 충전식드릴은 제외

H S	품 목 명
8516 60 2000	○ 전기밥솥 (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7 82 1000	○ 모사전신기기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 다만,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91 1000	○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데크메카니즘 포함, 아나로그식에 한함)
8519 99 3010	○ 자동차용 디드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9 3090	○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8521 10 2000	○ 마스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폭 12.7㎜ 이하)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숑용기기
8525 20 7020	○ 자동차용의 무선전화기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
30 1000	○ 녹화기용 텔레비젼 카메라
8527 11 2000	○ 디스크형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8527 21 1000	○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아나로그식은 제외
21 2000	○ 디스크형의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자동차용 라디오방송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31 130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아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28 10 905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이상 63.50㎝ 미만의것)
8528 10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 이상의 것)

H S	품 목 명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 (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것) - 누전차단기 (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6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 이하의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1,000볼트 이하의 것)중 다음의 것 - 프로그래머블콘트롤러 - 수치제어장치중 동시제어 축수가 2축의 것
8539 31 0000	○ 형광램프 (열음극형의 것). 다만, 특수용도 형광등으로서 자외선차단용 (미술관,박물관, 인쇄공장등의퇴색방지용), 복사용, 칼라스라이드용, 전자사진용, 광화학반응용, 살균용, 식물재배용, 앞담배등 농업용, 의료용, 식육점(Red Color) 및 과일, 생선, 야채등의 쇼케이스용과 관경이 22㎜이하의 것으로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8540 11 0000	○ 21“이상 천연색텔레비전용 음극선관 및 14” 영상모니터용 음극선관 (0.28 Dot Pitch 및 0.41 Strip Pitch에 한함)
8544 11 1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 전선
20 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제
60 3090	○ 전압 100㎸ 초과의 기타전선. 다만, Bus Duct는 제외
8548 00 0000	○ 모사전신기용 Thermal Printer Head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1 1000	○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 이하)

H S	품 목 명
8703 21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9000	ㅇ 기타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8703 22 1000	ㅇ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4000	ㅇ 스테이션 웨곤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2 9000	ㅇ 기타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 이하)
23 1000	ㅇ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3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3 4000	ㅇ 스테이션웨곤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폭 12.7㎜ 이하)
23 9000	ㅇ 기타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 이하)
24 1000	ㅇ 세단형의자동차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24 4000	ㅇ 스테이션웨곤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2 1000	ㅇ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2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3 2000	ㅇ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ㅇ 일반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22 1000	ㅇ 일반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ㅇ 기중기차 (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 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ㅇ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9000	ㅇ 차체(운전실포함)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50 0000	ㅇ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8708 99 9000	ㅇ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셔스팬션 쇽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및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 (실린더용량 50㏄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 (실린더용량 50㏄ 초과 250㏄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9000	○ 기타의 선박
90 1020	○ 벌크선. 다만, 4,000G/T 미만은 제외
90 1090	○ 기타의 화물선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선
8905 10 0000	○ 준설선
9006 51 900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53 909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 (기타의 것)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 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0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or ・35㎜ 사진기용 필름현상용의 것은 24매 기준처리능력이 100롤/시간 이하의 것 ・X-Ray 필름현상용의 것은 1매당 현상소요시간이 90초이상 180초 이하의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er : 3″×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 (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엽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털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9018 19 50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만, 칼라혈류영상진단기 (Color Flow Mapping)는 제외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 (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102 11 900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0000	○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오르간 (신디사이저를 포함)
9404 90 0000	○ 기타의 침구 및 이와유사한 물품 (자기침구류 포함)
9405 60 9000	○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0	○ 비디오게임용구
9506 31 0000	○ 골프채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17 00 1000	○ 보온병
00 2000	○ 보온도시락

[별표 2]

국산개발대상품목 및 부품수입추천기관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기계공업진흥회	8407	┐ 산업용 내연기관
	8408	┘
	8422	충전기, 자동포장기
	8443	옵셋인쇄기
	8445	카아드기, 정방기, 권사기
	8446	래피어 직기
	8469	전자식 타자기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8407	┐ 포크리프트 트럭용 내연기관
	8408	┘
	8426	크레인
	8427	포크리프트 트럭
	8429	로우드로울러, 로우더, 도우저, 굴삭기 그레이더
	8705	트럭크레인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8414	압축기 (선박용 제외)
	8415	자장식 공기조절기
	8418	냉동기기
	8479	카쿨러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6845	┐
	8457	|
	8458	| 금속공작기계, 금속가공기계
	8459	|
	8460	|
	8461	|
	8462	|
	8463	┘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광학기기협회	9006	사 진 기
	9009	복 사 기
	9010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기계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36	전자개폐기
한국재봉기공업협회	8452	재 봉 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8462	반도체 제조용 성형기계(Molding M/C, Triming/Forming M/C)
	9031	웨이퍼 검사기 (Wafer Prober)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8407	┐자동차용 내연기관
	8408	┘
	8409	자동차용 내연기관 부분품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8413	자동차용 펌프
	8601	철도용 기관차(전기)
	8602	철도용 기관차(디젤)
	8603	자주식철도 또는 궤도용객차 및 화차
	8701	트랙터 (농업용 이외의 것)
	8702	버 스
	8703	승용차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 장 차
	8708	자동차용 샤시부품
	8711	자동이륜차
	8716	트레일러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8407	┐자동차용 내연기관
	8402	┘
	8432	관리기, 이앙기, 작업기, 벼직파기
	8433	콤바인, 바인다
	8701	농업용 트랙터
	8705	농업용 다목적 동력운반차 (고속살포차)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8407	┐
	8408	|선박용 내연기관
	8409	┘
	8414	선박용 압축기
	8418	선박용 냉동기기
	8419	선박용 공기냉각기 및 조수기, 선박 열교환기
	8425	┐
	8426	|선박용 갑판기관
	8428	┘
	8479	선박용 어업용기기
	8529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8535	┐
	8536	|선박용 전기조절장치
	8537	|
	8538	┘
	8901	┐
	8902	|선 박
	8903	|
	8906	┘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8904	다른선박을 밀거나 끌기위한 선박
	8905	특수선박과 부선거, 시추대, 작업대
	8907	선박 이외의 부구조물
	9014	┐자동차용 내연기관
	9015	┘
	8471	컴퓨터, 단말기기(키입력장치, 광학식 인식장치, 음극선관단말기, 도형장치등) 보조기억장치(FDD, HDD, MIU 슽MFLAJ), 프린트
	8472	현금자동지불기
	8476	자동판매기
	8517	모사전신기
	8519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및 복합제품 카세트방식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 (데크메타니즘 포함)
	8521	VTR, 디스크형의 영상기록 및 재생용기기
	8525	
	8526	┐ |선박용 전기조절장치
	8527	| ┘
	8528	
	8537	콘트롤러 (NC, CNC, ROBOT등)
	8548	모사전신기용 Thermal Printer Head
	9018	전기식 의료기기
	9504	비디오 게임용구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8477	합성수지 가공기계

Ⅳ- 17. 1996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과 장	심 의 관

보도자료
작 성 자 : 안성준
소 속 : 수입과
전화번호 : 500-2386

'96. 1월부터 25개 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

○ 통상산업부는 '93년. 7월에 마련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96년도 해제대상품목 25개를 선정, 이를 '96. 1. 1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수는 현재 187개에서 내년 1월부터는 162개로 줄어들게 된다.

○ 이번 해제대상품목은 스테이션웨곤(3,000cc초과), 휴대용 컴퓨터 등 25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은 장기간 지정되어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 되었거나, 현재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또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국내시장규모가 작아 해제시 대일수입증가가 미미한 품목등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서 지정실효성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앞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은 '93. 7월의 당초 방침대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10%씩 해제해 나가되 대일무역적자등 국제수지 개선상황, 우리 산업의 경쟁력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별첨 >

개 정 내 용

○ 완전해제 대상품목 (25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3923 10 0000	플라스틱제의 상자, 케이스,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8422 30 9000	과자,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충전, 봉함, 주입 등의 기계
4816 90 3000	인쇄용 제판용지 (Master Paper에 한하며, 은염이 도포된 것은 제외함)	8429 51 1000	휠로우더(휠로우더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5208 32 0000	염색한 평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100이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100g초과의 것	8446 30 1010	래피어식의 면직기
8302 60 0000	도어클로저(유압기구를 갖춘 Floor Hinge 포함)	8462 99 1020	기계식프레스(30~100톤)
8414 10 0000	진공펌프	92 2010	디지털형 자동자료 처리기계(휴대용 컴퓨터에 한함)
80 9210	공기압축기(사용동력 74.6㎾ 미만의 것)	8479 89 9020	선박용 또는 어업용기기
8418 69 2090	흡수식 냉동기 다만, 50RT미만의 유니트형은 제외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8525 20 7020	자동차용의 무선전화기	8703 21 4000	스테이션웨곤 (실린더용량 3,000㏄초과)
8527 21 1000	카셋트형의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아나로그식은 제외	32 1000	세단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초과 2,500㏄이하. D)
8540 11 0000	21“이상 천연테레비젼용 음극선관 및 14”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0.28 Dot Pitch 및 0.41 Strip Pitch에 한함)	8446 30 1010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8901 90 1020	벌크선. 다만, 4,000G/T미만은 제외
8544 20 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9404 90 0000	기타의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자기침구류 포함)
60 3090	전압100㎸초과의 기타전선. 다만, Bus Duct는제외	9617 00 2000	보온도시락

○ 부분해제 대상품목 또는 지정내용 변경

세 번	현 행	개 정	비 고
9010 10 9000	사진현상 인화기	사진현상인화기중 (X선 자동필름현상기 제외)	부분해제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제외)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및 함마드릴 제외)	부분해제
8525 20 7030	휴대용의 무선전화기	휴대용의 무선전화기 (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차량용 무선전화기의 해제에 따른 통관상의 품목분류 업격적용

세 번	현 행	개 정	비 고
8539 31 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 다만, 특수용도 형광등으로서 자외선 차단용, ---------- 야채 등의 쇼케이스용과 관경이 22MM 이하의 것으로서 FDL형 및 28W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 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지정내용만 한 정표기
4011 10 1000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M 6750의 부표 53(소형트럭용 ---------- ---------- ----------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M 6750의 부속서 부표 22(소형트럭용 ---------- ---------- ----------	공진청고시 제 93-633호('95.12.6)의 개정에 따른 KS 규격의 부표번호변경

'96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방안

1. 완전 해제 대상품목 (25개)

① 현재 국내생산이 없고 당분간 국산개발계획이 없는 품목 (3)
- 스테이션웨곤(3,000cc 초과), 세단형자동차(1,500~2,500cc. D)
- 카셋트형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② 15년이상 지정되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춘 품목 (2)
- 염색한 평직물(순면직물), 휘로우더

③ 10년이상 지정된 독과점 품목중 내수시장규모가 작고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 (2)
- 선박용 또는 어업용기기, 기타전선

④ 5년이상 지정된 품목중 국산화율이 높고 경쟁력을 어느정도 확보하여 해제시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 (9)
- 진공펌프, 래피아식 면직기, 공기압축기, 충전. 봉함. 주입기, 도어클로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축, 기계식 프레스(30~100톤)

⑤ 대미 통상마찰 관련품목 (2)
- 노우트북 컴퓨터, 프린터(DOT식 및 LBP)

⑥ 일본으로 부터의 예외수입이 많아 다변화 지정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 (2)
- 벌크선, 프라스틱제 상자

⑦ 기타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 해제시 대일수입증가가 미미하거나 경쟁력이 확보되어 다변화 지정 실익이 없는 품목 (5)
- 기타 침구류, 보온도시락, 음극선관, 동축케이블, 차량용의 무선전화기

2. 부분해제 대상품목 또는 지정내용 변경

세 번	현 행	개 정	비 고
9010 10 9000	사진현상 인화기	사진현상인화기중 (X선 자동필름현상기 제외)	부분해제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제외)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및 함마드릴 제외)	부분해제
8525 20 7030	휴대용의 무선전화기	휴대용의 무선전화기 (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차량용 무선전화기의 해제에 따른 통관상의 품목분류 업격적용
8539 31 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 다만, 특수용도 형광등으로서 자외선 차단용, ---------- 야채 등의 쇼케이스용과 관경이 22MM 이하의 것으로서 FDL형 및 28W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 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지정내용만 한정표기
4011 10 1000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M 6750의 부표 53 (소형트럭용 ---------- ---------- ----------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M 6750의 부속서 부표 22(소형트럭용 ---------- ---------- ----------	공진청고시 제93-633호('95.12.6)의 개정에 따른 KS 규격의 부표번호변경

3. [별표 2]의 국산개발 대상품목 및 부품수입추천기관 지정

추 천 기 관	국산개발 대상품목		비 고
	H S	품 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16	전기밥솥	국산화개발 초기단계에서 핵심부품의 수입허용을 통한 국내업체의 국산개발의 욕 지원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9405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리에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

4.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3조(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의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사 유
제3조(수입선다변화푸목의 예외조치) 1~11.(생 략) (신 설)	제3조(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1~11.(현행과 같음) 12. HS 8902 중고철강 어선으로서 수산청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ㅇ중고품 수입제도(수출입별도공고)가 현행 Positive 방식에서Negative 방식으로 개편('96.1.1)됨에 따라 기존의 수출입별도공고상 예외수입이 인정되던 것을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상에도 예외조치 인정

수입선다변화품목 운영 현황

○ 현　　황

- '95년중 수입선다변화 43개품목을 축소하여 현재 187개 품목 지정 운영중
  · 지정년도 : 10년이상(20개), 5년이상(132개), 5년미만(35개)
  · 용 도 별 : 원자재(18개), 자본재(118개), 소비재(51개)
  · 산 업 별 : 기계·자동차·소재(97개), 섬유·화학·전자(87개), 기타(3개)

○ 운영방침

- '93. 5월 한·일 통상회담에서 양국간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수를 축소키로 합의함에 딸 '93. 7월에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10%씩 축소하여 '98년에는 '93년기준 절반 수준으로 축소키로 하는 기본방향을 확정 시행중
- '96. 1월 25개품목 해제 예정

○ 추진계획

- 기본방침에 의거 수입선다변화 품목수를 계속 해제해 나가되
- WTO체제 출범등 변화된 국제무역환경에 부응하고
- 대일무역적자등 국제수지 개선상황, 우리산업의 경쟁력 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목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신축적 운용 도모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126 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12월 30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 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 (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다만,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 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동 기계. 장비의 해당단체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6. [별표2]에 게기되지 아니한 HS 72류 내지 HS 92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중 통상산업부 장관이 국산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의 소요부품 수입
7.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9.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 (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국산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1. 외국인 전용공단내 외국인 투자업체와 3천만불이상 수이(전년도 수입실적 기준)된 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체(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생산시설재 및 소요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12. HS8902 중고철강어선으로서 수산청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제4조 (국산개발 대상품목의 생산소요 부품의 수입) ① 제3조 5호 및 6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산화추진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추천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제1항의 국산화추진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국산화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국산화율 및 수량등의 적정여부 또는 국산화를 요하는 중요부품의 국산화 여부
4. 년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

③ 추천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학계 및 생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산화계획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추진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 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추천의 유효기간)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확인, 제3조에 의한 수입추천, 인정, 확인 및 [별표1]에 의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추천(인정 또는 확인포함, 이하 같음)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추천(또는 인정)일부터 6월까지로 한다.

② 추천, 인정 또는 확인기관의 장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수입승인시 수량 확인) 수입선다변화품목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국산개발소요부품의 수입승인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 확인서에 수입승인일자, 수입승인 수량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등) ①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또는 계약서) 확인 요령을, 그리고 제3조 각호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하는 기관 및 [별표1]에 의하여 확인을 하는 기관의 장은 추천 또는 확인요령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수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상산업부 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요령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① 국산화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 추천신청시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추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공고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60호는 이를 폐지한다

4,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60에 의한 수입추천, 획안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 추천. 확인 등으로 본다.

[별표 1]

수입다선변화 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가루
2106 90 9099	○ 기타의 조제식료품.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여 품목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체가 당해 품목의 원료로서 국산공급이 불가능함을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확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2905 32 0000	○ 프로필렌 글리콜
2914 11 0000	○ 아세톤
2926 90 9090	○ 클로로타로닐(Tetrachloro Isophthalonitrile) (순도 90%이상의 것에 한함)
2929 10 2000	○ 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테이트(M-MDI) 다만, 후레이크 타입은 제외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나트륨, 주석산제제
3707 90 9200	○ 조색제(전자복사기용 건식조색제에 한함)
3818 00 1000	○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구셩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 아미드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이 0.96이상의 것
3920 20 0000	○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7μ의 것. 다만 15μ미만의 Hazy Type의 것은 제외함
4011 10 1000	○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속서 1 부표 22(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 플라이타이어)중 30 X 9.50R 15LT 6PR 및 31 X 10.50R 15LT 6PR 포함]

H S	품 목 명
4802 52 1000	○ 인쇄용지와 필기용지(1㎡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롤상의 것은 폭이, 직사각형의 것은 한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는 것)
4816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HS 4809호 이외의 것)
4818 40 0000	○ 위생용 타올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다만, 아기기저귀는 제외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무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 필라멘트토우(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603 94 0000	○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평방미터당 150g 초과
6806 90 9000	○ 암면천정판(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90	○ 기타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00 1090	○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7011 20 1000	○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TV기준 21″에 한함)
7013 39 0000	○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의 유리제품
7016 90 1000	○ 유리타일(결정화유리)

H S	품 목 명
7216 33 100 33 2000	] ○ H형강중 다음의 것. 다만, KSD 3542, 3529 및 3515 중 SWS 58 해당품목은 제외 - 등변의 것으로서 100×100mm-350×350mm의 것 - 부등변의 것으로서 600×300mm이하의 것
7315 12 0000	○ Load Chain(체인선재의 직경이 5mm-20mm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0	○ 석유난방기구
7607 11 9000	○ 알루미늄 박.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알루미늄 순도 99.6% 이상의 것 - 알루미늄 순도 99.4% 이상이며 Cu 0.23% 이상의 것 - Etched Aluminium Foil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BHP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지.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초과 2,000㎾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0㎾초과의 것)
90 9010	○ 기타의 선박용 내연기관
90 9090	○ 기타의 디젤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기타 엔진 부분품.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부품(출력 300㎾초과 2,000㎾이하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펌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413 70 9090	○ 양수기(펌프)
8414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30 2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이상의 것)
8418 61 1000	○ 압축식유니트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중 다음의 것 - 왕복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쿨러
8419 89 9090	○ 석유화학용 압력용기(압력이 150㎏/㎠ 이상이고 중량이 1,000톤 미만이며 본체두께가 200mm이상 360mm 이하의 것에 한함)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다만, 주사약충진기는 제외
30 2000	○ 병 또는 기타용기의 봉함용 또는 봉지용 기계
8422 40 901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40 9090	○ 기타 포장기계
8425 11 1090	○ 폴리태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M/T 이하의 것)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이하의 것)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29 52 1000	○ 굴삭기(국삭기 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1 49 1000	○ 유압브레카
8433 51 0000	○ 수확, 탈곡 겸용기

H S	품 목 명
844. 19 0000	○ 옵셋인쇄기(쉬이트식의 것으로 쉬이트크기가 390mm ×540mm이하의 것에 한함) 다만, 양면옵셋인쇄기는 제외
59 1000	○ 직물날염기(색도가 10 이하의 것에 한함)
8446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RPM 5,000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RPM10,,000이상 또는 상하 차동송은 제외 -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mm이하로서 폭방향 350mm이하의 것. 다만, 수중침적가공방식의 것은 제외 -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mm이하로서 폭방향 600mm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200mm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mm이하로서 폭방향 800mm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mm이하로서 폭방향 3,000mm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mm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mm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mm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mm이하의 것
8459 51 0000	○ 수치제어식의 무릎형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으로 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1,400mm이하로서 폭방향 310mm이하의 것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mm이하로서 폭방향 870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mm이하로서 폭방향 800mm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mm이하로서 폭방향 3,000mm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0 40 1000	○ 호닝반(내면형으로서 Bore 직경이 300mm 이하의 것에 한함)
8461 30 0000	○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 다만, 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최고 가압력 30톤 이하로서 스트로크 2,000mm이하의 것
8462 99 1090	○ 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2,0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H S	품 목 명
8465 92 1000	○ 테이블 2개이하의 N.C루우터로서 다음의 것 -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3,300mm이하로서 폭방향 2,400mm이하의 것 ○ 모울더. 다만, 가공폭 250mm이하로서 가공축수 8 이하의 것
8471 70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두께가 0.7″이상이면 디스크 직경이 3″이상 6″이하의 것에 한함)
8472 90 1010	○ 현금자동지불기
90 4000	○ 연필절삭기
8477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번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 유니트용 볼베어링(내경 12-75mm의 것)
20 0000	○ 단열 테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mm의 것(인치계열의 경우는 내경 3/4″-2 3/4″의 것) 다만, 다음 형번의 것은 제외 - N . 32004 - 32014 - N . 33004 - 33014
8485 10 0000	○ 선박 또는 보우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초과 375KVA이하의 발전세트
13 10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400㎾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이하의 발전세트

H S	품 목 명
8504 40 2010	○ 무정전전원장치(단상 0.5KVA이상 50KVA이하 및 삼상 10KVA이상 750KVA이하의 것에 한함)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삼상 0.5KVA이상 400KVA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함마드릴은 제외
20 0000	○ 전기톱
80 0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및 충전식드릴은 제외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7 21 0000	○ 팩시밀리
90 9500	○ 팩시밀리용 Thermal Printer Head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 다만,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93 1000	○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데크메카니즘 포함, 아나로그식에 한함)
99 3010	○ 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9 3090	○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8521 10 2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폭 12.7mm이하)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30 1000	○ 녹화기용 텔레비젼 카메라
8527 13 2000	○ 디스크형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21 2000	○ 디스형의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자동차용 라디오방송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527 31 103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아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28 12 905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이상 63.50㎝미만의 것)
12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이상의 것)
8536 20 0000	○ 전압 1,000V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이하용의 정격용량 375㎾이하의 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1,000볼트 이하의 것)중 다음의 것 - 프로그래머블콘트롤러 - 수치제어장치중 동시제어 축수가 2축의 것
8539 31 0000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8544 11 1000	○ 절연도료 피복권선용 전선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1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H S	품 목 명
8703 22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이하)
2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이하)
22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초과 1,500cc이하)
23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3 4000	○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3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초과 3,000cc이하)
24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3,000cc초과)
3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초과 2,500cc이하)
3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이하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차(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 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9000	○ 차체(운전실포함)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99 9000	○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셔스팬션 쇽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및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초과 250cc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H S	품 목 명
8901 10 0000	○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 (순항선, 유람선 및 페리보우트 제외)
90 1000	○ 화물선(일반화물선, 콘테이너선 및 벌크선 제외)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선
8905 10 0000	○ 준설선
9006 51 9000	○ 35mm롤필름용의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53 9090	○ 35mm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9090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9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or ・35mm 사진기기용 필름현상용의 것은 24매 기준처리능력이 100롤/시간 이하의 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ter : 3″×4×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 이하의 것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털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불할헤드를 갖춘 것으로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H S	품 목 명
9018 12 00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만, 칼라혈류영상진단기(Color Flow Mapping)는 제외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 부분품
9102 11 901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0000	○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
9405 60 9000	○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	○ 비디오게임용구
9506 31 0000	○ 골프채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17 00 1000	○ 보온병

[별표 2]

국산개발대상품목 및 부품수입추천기관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기계공업진흥회	8407	산업용 내연기관
	8408	
	8422	충전기, 자동포장기
	8443	옵셋인쇄기
	8445	카아드기, 정방기, 권사기
	8469	전자식 타자기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8407	포크리프트 트럭용 내연기관
	8408	
	8426	크레인
	8427	포크리프트 트럭
	8429	로우드로울러, 도우저, 굴삭기, 그레이더
	8705	트럭 크레인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8414	압축기(선박용 제외)
	8415	자장식 공기조절기
	8418	냉동기기
	8479	카쿨러
한국공장기계공업협회	8456	금속공장기계, 금속가공기계
	8457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광학기기협회	9006	사 진 기
	9009	복 사 기
	9010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기계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16	전기밥솥
	8536	전자개폐기
한국재봉기공업협회	8452	재 봉 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8462	반도체 제조용 성형기계(Molding M/C, Triming/Forming M/C)
	9031	웨이퍼 검사기 (Wafer Prober)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8407	
	8409	자동차용 내연기관 부분품
	8413	자동차용 펌프
	8601	철도용 기관차(전기)
	8602	철도용 기관차(디젤)
	8603	자주식철도 또는 궤도용객차 및 화차
	8701	트랙터 (농업용 이외의 것)
	8702	버 스
	8703	승용차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 장 차
	8708	자동차용 샤시부품
	8711	자동이륜차
	8716	트레일러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8407	┐농업용 내연기관
	8408	┘
	8432	관리기, 이앙기, 작업기, 벼직파기
	8433	콤바인, 바인다
	8701	농업용 트랙터
	8705	농업용 다목적 동력운반차 (고속살포차)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8407	┐
	8408	|선박용 내연기관
	8409	┘
	8414	선박용 압축기
	8418	선박용 냉동기기
	8419	선박용 공기냉각기 및 조수기, 선박 열교환기
	8425	┐
	8426	|선박용 갑판기관
	8428	┘
	8529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8535	┐
	8536	|선박용 전기조절장치
	8537	|
	8538	┘
	8901	┐
	8902	|선 박
	8903	|
	8906	┘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8904	다른선박을 밀거나 끌기위한 선박
	8905	특수선박과 부선거, 시추대, 작업대
	8907	선박 이외의 부구조물
	9014	┐자동차용 내연기관
	9015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8471	컴퓨터, 단말기기(키입력장치, 광학식 인식장치, 음극선관단말기, 도형장치등) 보조기억장치(FDD, HDD, MIU 슽MFLAJ), 프린트
	8472	현금자동지불기
	8476	자동판매기
	8517	모사전신기
	8519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및 복합제품 카세트방식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 (데크메타니즘 포함)
	8521	VTR, 디스크형의 영상기록 및 재생용기기
	8525	
	8526	┐ |선박용 전기조절장치
	8527	| ┘
	8528	
	8537	콘트롤러 (NC, CNC, ROBOT등)
	9018	전기식 의료기기
	9504	비디오 게임용구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9405	기타의 조명용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8477	합성수지 가공기계

[별지 제1호 서식]

국산화추진 계획서

1.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자 등록번호

3. 주 소 (전화번호)

4. 생산품목 (HS, 품명, 규격)

5. 연도별 생산계획

연 도	계	내 수 용	수 출 용
199 반기 199 반기 199 반기			

6. 연도별 국산화 추진계획

구 분	199		199	
	반기	반기	반기	반기
○ 수입선다변화품목수입금액(A) ○ 수입자동승인품목수입금액(B) ○ 국산부품 사용금액(C)				
○ 국산화율 [C/(A+B+C)] (%)				

가. 국산화 대상품목

(수입자동승인품목)

구 분	H S (10단위)	품명 및 규격	단 가	대 당 소요량	금 액	수입지역
199 반기 국산화품목 소 계						
199 반기 국산화품목 소 계						
199 반기 국산화품목 소 계						
199 반기 국산화품목 소 계						
계						

(수입자동승인품목)

구 분	H S (10단위)	품명 및 규격	단 가	대 당 소요량	금 액	수입지역
199 반기 국산화품목 소 계						
199 반기 국산화품목 소 계						
199 반기 국산화품목 소 계						
199 반기 국산화품목 소 계						
계						

나. 국산완료 부품

품 명 및 규 격	단 가	대당소요량	금 액
계			

[별지 제2호 서식]

부품 수입추천 신청서

1. 추천번호 :
2. 추천근거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3조 5호
3. 수입선다변화품목 추천내역

HS (10단위)	품명 및 규격	대 당 소요량	추천수량	단 가	금 액
계					

위와 같이 기계류의 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추천을 신청합니다.

199 .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199 . . .

추천기관 : (인)

첨부 : 수입승인확인서

[첨 부]

수 입 승 인 확 인 서

ㅇ 추천번호 :　　ㅇ 추천기관　　(인)

승인기관명	승인일자	품 명 및 규 격	수 량	금 액	확 인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선다변화품목 수입추천 실적보고

○ 단 체 명 :

근거조항	HS (10단위)	품 명	업 체 수		수 량		금액(천불)	
			/4	누계	/4	누계	/4	누계
제3조 1호	(소 계)							
· · · · · ·								
· · · · · ·								
제3조 1호	(소 계)							
합 계								

(주) 근거조항은 당해 추천단체에 해당되는 조항만 기재

보 도 자 료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안

- 금년 7월에는 1월의 25개품목에 이어 10개 품목 추가해제

- 수입선다변화제도 '99년말까지 완전폐지

□ 금년 7월부터 년초의 25개품목 해제에 이어 전기톱, 기타혼방 방모직물 등 10개품목을 추가 해제하여 수입선다변화 품목수는 현행 162개 품목에서 152개로 줄어들게 됨.

□ 또한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대일무역조 개선을 위한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던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99년말까지 완전 폐지키로 함.

□ 구체적 해제일정은 '98년까지 '93년 품목수 기준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기로한 당초계획에 덧붙여 매년 7월에 추가로 한차례 더 해제해 나감으로써 '99년말 까지 자동적으로 완전 해제되도록 함.

○ 오는 7월부터는 현행 162개 다변화품목중 전기톱, 기타혼방방모직물은 10개 품목은 완전해제하고 형광램프, 자동차용 부품등 5개품목은 부분해제하여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자유로워짐.

○ 이번 해제대상품목은 장기간 지정되어 경쟁력이 어느정도 확보되었거나 내수시장규모가 작아 해제시 대일수입증가가 적은 품목 또는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제3국수입이 과다한 품목등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서 지정 실효성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게 됨.

○ 또한 해제품목수는 현재의 어려운 무역수지 상황을 감안하여 작년 7월의 추가 해제품목수 17개보다는 다소 적은 10개품목으로 한정하게 됨.

○ 한편 통상산업부는 대내외 무역환경변화와 국내업계의 경쟁력 실태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수입선다변화제도를 '99년말까지 완전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함.

○ '99년말까지 연도별 품목축소는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Tlr 해제해 나가되 매년 1월에는 25개품목을 해제하고 매년 7월에는 그 당시 무역수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제품목수를 신축적으로 정해나감.

○ 이러한 조치는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시대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국내관련업계에 대해서는 다변화제도의 폐지일정을 밝힘으로써 자생력이 있는 경쟁력제고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것임.

○ 다만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제품목수는 대상 품목의 경쟁력실태 및 무역수지 관련 효과 등을 감안 매년 두찰PTlr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기로 함.

○ 이러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제한 요소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우리업계는 수입선다변화 품목해제일정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경쟁력제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 이와함께 정부는 자본재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촉진시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입선다변화 해제대상 푸목에 우선순위를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시책을 추진해 나갈계획임.

< 첨 부 >

'96. 7월 수입선다변화 해제대상 품목

○ 완전해제 대상품목 (10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106 90 9099	기타조제식료품	8508 20 0000	전기톱
5111 90 0000	기타혼방방모직물	8517 90 9500	팩시밀리용 TPH
7607 11 9000	알루미늄박	8544 11 1000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
8459 51 0000	무릎형밀링머신	8905 10 0000	준설선
8460 40 1000	호닝반	9506 31 0000	골프채

○ 부분해제 대상품목 또는 지정내용 변경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8525 30 1000	텔레비전카메라	8525 40 9000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재경원의 품목분류변경('96.1.1)에 따른 세번병경
8539 31 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좌 동	형광램프(열음극형의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다만, 콤펙트형 중 관경이 22W 이하의 것으로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95.12.30 다변화품목 공고시 품목간소화 작업중 다변화해제품목이 신규로 다변화 품목에 포함됨에 따른 지정내용 정정
8409 91 1000	제87류 차량용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좌 동	제87류 차량용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는 제외	국내생산이 안되거나 어느정도 경쟁력이 확보되어 다변화 품목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부분품의 부분해제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99 2000	제87류 차량용의 기타엔진부분품 다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조용의 것은 제외	좌 동	제87류 차량용의 기타엔진부분품 다만, 오일팬, 오일클러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
8708 29 9000	차체(운전실 포함)의 가타 부분품과 부속품	좌 동	차체(운전실 포함)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도어몰딩, 창고무, 암레스트, 라디에터그릴, 선바이저는 제외	"
8708 99 9000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팬션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좌 동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팬션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프로펠러 샤프트, 변속기 케이스, 페달(악셀레이터용,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주차브레이크 레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안

'96. 6

통 상 무 역 실
(수 입 과)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안

1. 해제대상품목 선정기준

○ 장기간 지정되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품목

○ 수출비중이나 국산화율이 높아 어느정도 대외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해제시 대일 수입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

○ 예외수입이나 제3국 수입이 많아 해제시 영향이 비교적 작고 지정효과가 미미한 품목

○ 해제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수 있는 독과점 소비재 품목

※ 상기 기준과 공업국이 작성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 우선 순위를 선정함.

2. 연도별 해제품목수

년 도	'94	'95	'96	'97	'98	'99
해제품목수	1월 : 28 (230)	1월 : 26 (204)	1월 : 25 (162)	1월 : 25 (127)	1월 : 25 (85)	1월 : 25 (42)
		7월 : 17 (187)	7월 : 10 (152)	7월 : 17 (110)	7월 : 18 (67)	7월 : 23 (19)
						12월 : 19 (0)

(주) : 1. ( )는 잔여품목수임

2. '94.1～'98.1까지 5년간 매년 1월에 '93년 품목수 기준으로 10%씩 해제해 나가는 것은 당초의 기본방침임.

3. '96.7월 해제대상품목

ㅇ 완전해제 대상품목(10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106 90 9099	기타조제식료품	8508 20 0000	전기톱
5111 90 0000	기타혼방모직물	8517 90 9500	팩시밀리용 TPH
7607 11 9000	알루미늄박	8544 11 1000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
8459 51 0000	무릎형밀링머신	8905 10 0000	준설선
8460 40 1000	호닝반	8506 31 0000	골프채

○ 완전해제 대상품목(10개)

현행		변경		변경사유
HS	품 목 명	HS	품 목 명	
8525 30 1000	텔레비젼카메라	8525 40 9000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제경원의 품목분류변경('96.1.1)에 따른 세번변경
8539 31 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트(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좌 동	형광램프(열음극형의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다만, 콤팩트형중 관경이 2㎜ 이하의 것으로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95.12.30 다변화품목 공고시 품목 간소화 작업중 다변화해제 품목이 신규로 다변화 품목에 포함됨에 따른 지정내용 정정
8409 91 1000	제87류 차량용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좌 동	제87류 차량용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는 제외	국내상산이 안되거나 어느정도 경쟁력이 확보되어 다변화품목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부분품의 부분해제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HS	품 목 명	HS	품 목 명	
99 2000	제87류 차량용의 기타엔진부분품 다만, 한국농기계공업협ㅈ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좌 동	제87류 차량용의 기타엔진부분품 다만, 오일팬, 오일클러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708 29 9000	차체(운전실 포함)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좌 동	차체(운전실포함)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도어몰딩, 창고무, 암레스트, 라이에터그릴, 선바이저는 제외	
8708 99 9000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팬션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좌 동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팬션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프로펠러 사프트, 변속기 케이스, 페달(알셀레이터용, 브레이크용, 클러치용)주차 브레이크 레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도합이 확인한 농업기계제조용의 것은 제외	

4.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중 일부내용 변경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3조의 예외수입허용조항중 국산개발을 전제로 소요부품의 예외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WTO 무역관련투자조치(TRIM) 협정상 Local Content에 해당되어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용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함.

- 국산개발대상품목→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 국산화추진계획서→부품조달계획서
- 국산화계획심의회→부품조달계획심의회

5. 조치계획

○ '96. 7. 1자로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공고

○ 향후 수입선다변화 제도운영방안에 대한 홍보계획

1안 : 상기 연도별 해제품목수을 언론에 일괄발표

2안 : '99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해제해 나가되 매년 1월에는 25개 품목을 해제하고 매년 7월에는 무역수지등을 감안하여 해제품목수를 신축적으로 정함으로써 '99년말까지 완전폐지하는 것으로 대언론 발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3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6년 7월 1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수입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kg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다만,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보수를 위

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6.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7.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9.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외국인 전용공단내 외국인 투자업체와 3천만불이상 수입(전년도 수입실적기준) 된 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체(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생산 시설재 및 소요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11. HS 8902 중고철강어선으로서 수산청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제4조(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 ①제3조 5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천 기관(또는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품조달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추천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제1항의 부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생산기술개발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부품의 적정성 여부

③추천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생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품조달계획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조달계획을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계의 6개월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추천 유효기간) ①제2조 제2항에 의한 확인, 제3조에 의한 수입추천, 인정, 확인 및 [별표1]에 의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추천(인정 또는 확인포함, 이하 같음)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추천(또는 인정)일부터 6월까지로 한다.

②추천, 인정 또는 확인기관의 장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보고등) ①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또는 계약서) 확인 요령을, 그리고 제3조 각호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하는 기관 및 [별표1]에 이하여 확인을 하는 기관의 장은 추천 또는 확인요령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수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통상산업부 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요령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제재) ①부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될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

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추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승인의 유효기간)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공고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2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④(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26호에 의한 수입추천·확인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 추천·확인 등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 가 루
2905 32 0000	○ 프로필렌 글리콜
2914 11 0000	○ 아 세 톤
2926 90 9090	○ 클로로타로닐(Tetrachloro Isophthalonitrile) (순도 90% 이상의 것에 한함)
2929 10 2000	○ 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M-MDI) 다만, 후레이크 타입은 제외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 나트륨, 주석산제제
3707 90 9200	○ 조색제(전자복사기용 건식조색제에 한함)
3818 00 1000	○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 아미드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이 0.96 이상의 것
3920 20 0000	○ 폴리프로필렌 필름중 두께 7μ-60μ의 것, 다만 15μ미만의 Hazy Type의 것은 제외함
4011 10 1000	○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속서 1 부표 22 (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 플라이타이어(중 30 × 9.50R 15LT 6PR 및 31 × 10.50R 15LT 6PR 포함]
4802 52 1000	○ 인쇄용지 와 필기용지 (1㎡당 중량이 60g이상 150g이하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롤상의 것은 폭이, 직사각형의 것은 한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는 것)

H S	품 목 명
4816 90 2000	○ 인쇄하지 하니한 감열기록지(HS 4809호 이외의 것)
4818 40 0000	○ 위생용 타올과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다만, 기기기저귀는 제외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44,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5603 94 000	○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평방미터당 150그램 초과
6806 90 9000	○ 암면천정판(요철무늬의 것은 제외)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90	○ 기타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00 1090	○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7011 20 1000	○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TV기준 21”에 한함)
7013 39 0000	○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의 유리제품
7016 90 1000	○ 유리타일(결정화유리)
7216 33 1000 33 2000	○ H형강중 다음의 것, 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SWS 58 해당품목은 제외 - 등변의 것으로 100 × 100㎜ - 350 × 350㎜의 것 - 부등변의 것으로 600 × 30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7315 12 0000	○ Load Chain(체인선재의 직경이 2㎜-20㎜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2 0000	○ 석유난방기구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BPH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0㎾ 초과의 것)
90 9010	○ 기타의 선박용 내연기관
90 9090	○ 기타의 디젤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는 제외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 기타 엔진부분품. 다만, 오일팬, 오일쿨러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부품(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의 해당하는 차량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펌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13 70 9090	○ 양수기(펌프)
8414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30 2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이상의 것)

H S	품 목 명
8418 60 0000	○ 압축식유니트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중 다음의 것 - 왕복 동식 냉동기 - 스크류식 냉동기 - 원심식 냉동기 - 밀크쿨러
8419 89 9090	○ 석유화학용 압력용기(압력이 150㎏/㎠ 이상이고 중량이 1,000톤 미만이며 본체두께가 200㎜ 이상 360㎜ 이하의 것에 한함)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다만, 주사약충진기는 제외
30 2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봉지용 기P
8422 40 901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 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40 9090	○ 기타 포장기계
8425 11 1090	○ 폴리태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M/T 이하의 것)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략 3톤 이하의 것)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29 52 1000	○ 굴삭기(굴삭기 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1 49 1000	○ 유압크레카
8433 51 0000	○ 수확, 탈곡 겸용기
8443 19 0000	○ 옵셋인쇄기(쉬이스트식의 것으로 쉬이트크기가 390㎜ × 540㎜ 이하의 것에 한함) 다만, 양면옵셋인쇄기는 제외
59 1000	○ 직물날염기(색도가 10도 이하의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446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RPM 5,000 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RPM 10,000 이상 또는 상하 차동송은 제외 -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 이하로서 폭방향 350㎜이하의 것 다만, 수중침적가공방식의 것은 제외. -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 이하로서 폭방향 600㎜ 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0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의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 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9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 이하로서 폭방향 870㎜ 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 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1 30 0000	○ 브로칭기로서 다음의 것. 다만, 수치제어식은 제외 - 수평식 또는 수직식으로 최고 가압력 30톤 이하로서 스트로크 2,000㎜ 이하의 것
8462 99 1090	○ 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2,0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8465 92 1000	○ 테이블수 2개이하의 N.C루우터로서 다음의 것 -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3,300㎜ 이하로서 폭방향 2,400㎜ 이하의 것 ○ 모울더. 다만, 가공폭 250㎜ 이하로서 가공축수 8 이하의 것
8471 70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두께가 0.7” 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경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472 90 1010	○ 현금자동지불기
90 4000	○ 연필절삭기
8477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변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 유니트용 볼베어링(내경 12 - 75㎜의 것)
20 0000	○ 단열 테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인치계열의 경우는 내경 3/4"-2 3/4"의 것). 다만,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32014 - NO. 33004 -33014
8485 10 0000	○ 선박 또는 보우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13 101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400㎾에 상응 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10	○ 무정전 전원장치. (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에 한함)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508 10 0000	○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함마드릴은 제외
80 0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및 충전식드릴은 제외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7 21 0000	○ 팩시밀리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 다만,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93 1000	○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데크메카니즘 포함, 아나로그식에 한함)
99 3010	○ 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9 3090	○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8521 10 2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폭 12.7㎜ 이하)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40 9000	○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27 13 2000	○ 디스크형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21 2000	○ 디스크형의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자동차용 라디오방송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8527 31 103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아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28 12 905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 이상 63.50㎝ 미만의 것)
12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이상의 것)

H S	품 목 명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여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0A 이하의 것)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 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 이하의 것)
8537 10 2000	○ 자동제어반(1,000볼트 이하의 것)중 다음의 것 - 프로그래머블콘트롤러 - 수치제어장치중 동시제어 축수가 2축의 것.
8539 31 0000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다만, 콤팩트형중 관경이 22㎜ 이하의 것으로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OL형의 것은 제외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1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이하)
21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이하)
21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이하)
8703 22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2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3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이하)

H S	품 목 명
2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4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이사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차(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 이하의 것에 한함)
90 9090	○ 기타 특수용도차
8708 29 9000	○ 차체(운전실포함)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도어몰딩, 창고무, 암레스트, 라이에터그릴, 선바이저는 제외
99 9000	○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펜션 쇽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프로펠러샤프트, 변속기케이스, 페달(알섹레이터용,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주타브레이크레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0000	○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순항성, 유람선 및 페리보우트 제외)
90 1000	○ 화물선(일반화물선, 콘테이너선 및 벌크선 제외)

H S	품 목 명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50	○ F.R.P 선
9006 51 900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53 909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9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or · 35㎜ 사진기용 필름현상용의 것은 24매 기준처리능력이 100롤/시간 이하의 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ter : 3” × 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 이하의 것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탈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9018 12 00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만, 칼라혈류영상진단기(Color Folw Mapping)는 제외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H S	품 목 명
9012 11 901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1000	○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
9405 60 9000	○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0	○ 비디오게임용구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17 00 1000	○ 보온병

Ⅳ- 18. 1997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보 도 자 료

'97.1월부터 258개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

○ 통상산업부는 '96. 6월에 마련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96년 7월에 10개 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97년 1월 해제대상품목수 25개를 선정, 이를 '97.1.1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품목수는 현재 152개 품목에서 내년 1월부터 127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번 해제대상인 25개 품목은 종이제 위생용품, 폴리프로필렌 필림, 기타특수용도차 등이며 그밖에 방송용카메라 및 VCR등 5개품목은 부분 해제된다. 내년부터 다변화품목대상에서 해제되는 이들 품목들은 장기간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거나, 현재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또는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 해제시 대일수입 증가가 미미한 품목 등 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할 실효성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 완전해제 대상품목(25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905.32.0000	PG(프로필랜 글리콜)	8422.40.9090	기타 포장기계
3707.90.9200	조식제(전자복사용 건조식에 한함	8461.30.0000	브로우칭기
3818.00.1000	반도체제조동 실리콘웨이퍼(5", 6")	8465.92.1000	NC루우터 및 모울더
3920.20.0000	폴리프로필렌 필름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4818.40.0000	종이제 위생용품	8485.10.0000	선박 또는 보우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6806.90.9000	암면천정판	8502.13.1010	압축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기 400 kW 750KVA
7011.20.1000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8527.13.2000	디스크형의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
7315.12.0000	로드체인	8527.21.2000	디스크형의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
7321.82.0000	석유난방기구	8537.10.2000	자동제어반
8408.90.9090	기타의 디젤엔진	8705.90.9090	기타 특수용도차
8414.30.2000	냉매압축기(11㎾ 이상)	9405.60.9000	기타의 조명사인,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품목
8418.61.0000	압축식 냉장·냉동기구	9504.10..0000	비디오 게임용구
8422.30.2000	봉함용, 봉지용기계		

○ 부분해제 대상품목(5개)

현 행		변 경		해 제 사 유
H S	품 명	H S	품 명	
5603.94.0000	부직포중 기타 제의 것으로서 150g/㎡ 초과	좌 동	부직포중 기타 제의 것으로서 150g/㎡ 초과 **(폴리우레탄 이조피혁에 한함)**	○재경원 '96.1.1자 HS품목 변경(5603.00.1010→5503.94.4000)에 다른 신규지정 효과발생으로 일본과의 통상마찰이 야기됨에 따라 당초 지정내용대로 정정
8508.10.0000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함마드릴은 제외	좌 동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함마드릴 및 **드릴구경 25㎜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이상의 것** 제외	○드릴구경 25㎜ 제품은 국내 생산이 없고 32㎜는 수요미미
8508.8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 전동공구 및 충전식 드릴은 제외	좌 동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 전동공구, 충전식 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국내 생산이 없고 예외수입 과다

현 행		변 경		해 제 사 유
H S	품 명	H S	품 명	
8525.40.9000	기타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좌 동	기타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정용에 한함)	○방송용카메라는 첨단고도기술로 이루어져 국내업체의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준의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고 ○수요자인 방송사의 일본제품 선호로 인한 국산개발제품의 신뢰성확보 어려움등에 따른 국산품의 수요미미 등을 감안하여 부분해제
8521.10.200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 또는 재생용기기	좌 동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 또는 재생용기기(가정용에 한함)	○방송용VCR은 첨단고도기술로 이루어져 국내업체의 국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준의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고 ○수요자인 방송사의 일본제품 선호로 인한 국산개발제품의 신뢰성확보 어려움등에 따른 국산품의 수요미미 등을 감안하여 부분해제

통 상 산 업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 (02)500-2386 전송 : 503-8438 담당 : 안성준

문서번호 수입 558250-272
시행일자 1996. 12. 27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장 관	
보존			
차 관			
실 장		차관보	
심의관		통상협력심의관 기초공업국장 생활공업국장	
과 장			
기안	안 성 준	법무담당관	협조

제목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수입선사변화품목공고를 별첨과 같이 개정 공고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내용 1부.
2. 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송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별첨과 같이 개정(시행일 : '97. 1. 1)하였기 알려드리니 수입승인(추천)등 관련업무 수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 (02)500-2386 전송 : 503-8438 담당 : 안성준

수신처 : 재정경제원, 국방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수산청, 해운항만청, 조달청, 각 시·도지사, 관세청(각 제관장),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대리점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가재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가스기기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산업기술진흥협회, 각 외국환은행,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제3안)

수신 : 한국무역협회장
제목 : 일간무역제재 의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간무역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수입선다변화품목개정공고
○ 구　분 :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55호)
○ 근　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0-2조

첨부 : 개정고시 3부. 끝.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 (02)500-2386 전송 : 503-8438 담당 : 안성준

(제4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별첨과 같이 개정공고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고시 1부. 끝.

무 역 정 책 심 의 관

수신처 : 통상정책심의관, 통상협력심의관, 산업정책국장, 기초공업국장, 생활공업국장

개 정 내 용

ㅇ 완전해제 대상품목(25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905.32.0000	PG(프로필랜 글리콜)	8422.40.9090	기타 포장기계
3707.90.9200	조식제(전자복사용 건조식에 한함	8461.30.0000	브로우칭기
3818.00.1000	반도체제조동 실리콘웨이퍼(5", 6")	8465.92.1000	NC루우터 및 모울더
3920.20.0000	폴리프로필렌 필름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4818.40.0000	종이제 위생용품	8485.10.0000	선박 또는 보우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6806.90.9000	암면천정판	8502.13.1010	압축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기 400
7011.20.1000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8527.13.2000	디스크형의 KW=750KVA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
7315.12.0000	로드체인	8527.21.2000	디스크형의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
7321.82.0000	석유난방기구	8537.10.2000	자동제어반
8408.90.9090	기타의 디젤엔진	8705.90.9090	기타 특수용도차
8414.30.2000	냉매압축기(11㎾ 이상)	9405.60.9000	기타의 조명사인,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품목
8418.61.0000	압축식 냉장·냉동기구	9504.10.000	비디오 게임용구
8422.30.2000	봉함용, 봉지용기계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905.32.0000	PG(프로필랜 글리콜)	8422.40.9090	기타 포장기계
3707.90.9200	조식제(전자복사용 건조식에 한함	8461.30.0000	브로우칭기
3818.00.1000	반도체제조동 실리콘웨이퍼(5", 6")	8465.92.1000	NC루우터 및 모울더
3920.20.0000	폴리프로필렌 필름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4818.40.0000	종이제 위생용품	8485.10.0000	선박 또는 보우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6806.90.9000	암면천정판	8502.13.1010	압축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기 400㎾-750KVA
7011.20.1000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8527.13.2000	디스크형의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
7315.12.0000	로드체인	8527.21.2000	디스크형의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
7321.82.0000	석유난방기구	8537.10.2000	자동제어반
8408.90.9090	기타의 디젤엔진	8705.90.9090	기타 특수용도차
8414.30.2000	냉매압축기(11㎾ 이상)	9405.60.9000	기타의 조명사인,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품목
8418.61.0000	압축식 냉장·냉동기구	9504.10..0000	비디오 게임용구
8422.30.2000	봉함용, 봉지용기계		

○ 부분해제 대상품목(5개)

현 행		변 경	
H S	품 명	H S	품 명
5603.94.0000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50g/㎡ 초과	좌 동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50g/㎡ 초과 **(폴리우레탄 이조피혁에 한함)**
8508.10.0000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함마드릴은 제외	좌 동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함마드릴 및 **드릴구경 25㎜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이상의 것** 제외
8508.8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 전동공구 및 충전식 드릴은 제외	좌 동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 전동공구, 충전식 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8525.40.9000	기타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좌 동	기타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정용에 한함)**
8521.10.200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 또는 재생용 기기	좌 동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 또는 재생용 기기**(가정용에 한함)**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7조(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수입)의 일부변경**

관련조항	현 행	개 정
제3조 4호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품목의 수입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보수 및 시험가동을 위하여 ----------
제4조 ⑤	부품수입 추천수량은 신청업체의 6개월간의 생산되는 소요량을 ---------- 수입 추천하여야 한다	부품수입 추천수량은 신청업체의 1년간의 ----------

○ **[별표 2]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추가**

추 천 기 관	H S	품 명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8429 8430	**휠로우더** **유압천공기**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5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7년 1월 1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3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6년 7월 1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 하는 자는 수입승인 신청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수입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kg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다만, 추천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보수 및 시험가동을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6.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7.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9.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추천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외국인 전용공단내 외국인 투자업체와 3천만불이상 수입(전년도 수입실적 기준) 된 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체(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생산 시설재 및 소요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11. HS 8902 중고철강어선으로서 수산청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제4조(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 ①제3조 5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추천 기관(또는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품조달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추천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제1항의 부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생산기술개발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부품의 적정성 여부

③추천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생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품조달계획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추천기관(또는 인정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조달계획을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계의 1년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추천 유효기간) ①제2조 제2항에 의한 확인, 제3조에 의한 수입추천, 인정, 확인 및 [별표1]에 의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추천(인정 또는 확인포함, 이하 같음)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또는 인정)의 유효기간은 추천(또는 인정)일부터 6월까지로 한다.

②추천, 인정 또는 확인기관의 장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보고등) ①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추천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수입추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또는 계약서) 확인 요령을, 그리고 제3조 각호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하는 기관 및 [별표1]에 이하여 확인을 하는 기관의 장은 추천 또는 확인요령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수입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통상산업부 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요령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제재) ①부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될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에 대하여는 추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추천한 추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추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수입신용장의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공고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31호는 이를 폐지한다.
4.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31호에 의한 수입추천·확인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 추천·확인 등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품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 가 루
2914 11 0000	○ 아 세 톤
2926 90 9090	○ 클로로타로닐(Tetrachloro Lsophthalonitrile) (순도 90% 이상의 것에 한함)
2929 10 2000	○ 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M-MDI) 다만, 후레이크 타입은 제외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 나트륨, 주석산제제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 아미드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이 0.96 이상의 것
4011 10 1000	○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속서 1 부표 22 (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 플라이타이어(중 30 × 9.50R 15LT 6PR 및 31 × 10.50R 15LT 6PR 포함]
4802 52 1000	○ 인쇄용지 와 필기용지 (1㎡당 중량이 60g이상 150g이하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롤상의 것은 폭이, 직사각형의 것은 한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는 것)

H S	품 목 명
4816 90 2000	○ 인쇄하지 하니한 감열기록지(HS 4809호 이외의 것)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90 0000	○ 기타 모혼방직물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
5603 94 0000	○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50g/㎡초과(폴리우레탄 인조피혁에 한함)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90	○ 기타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00 1090	○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7013 39 000	○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의 유리제품
7016 90 1000	○ 유리타일(결정화유리)
7216 33 1000 33 2000	○ H형강중 다음의 것, 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SWS 58 해당품목은 제외 - 등변의 것으로 100 × 100㎜ - 350 × 350㎜의 것 - 부등변의 것으로 600 × 300㎜ 이하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BPH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0㎾ 초과의 것)
90 9010	○ 기타의 선박용 내연기관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는 제외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 기타 엔진 부분품. 다만, 오일팬, 오일쿨러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부품(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의 해당하는 차량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펌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13 70 9090	○ 양수기(펌프)
8414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8419 89 9090	○ 석유화학용 압력용기(압력이 150㎏/㎠ 이상이고 중량이 1,000톤 미만이며 본체두께가 200㎜ 이상 360㎜ 이하의 것에 한함)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다만, 주사약충진기는 제외
8422 40 901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 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H S	품 목 명
8425 11 1090	○ 폴리태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M/T 이하의 것)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략 3톤 이하의 것)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29 52 1000	○ 굴삭기(굴삭기 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1 49 1000	○ 유압크레카
8433 51 0000	○ 수확, 탈곡 겸용기
8443 19 0000	○ 옵셋인쇄기(쉬이스트식의 것으로 쉬이트크기가 390㎜ × 540㎜ 이하의 것에 한함) 다만, 양면옵셋인쇄기는 제외
59 1000	○ 직물날염기(색도가 10도 이하의 것에 한함)
8446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RPM 5,000 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RPM 10,000 이상 또는 상하 차동송은 제외 -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 이하로서 폭방향 350㎜이하의 것 다만, 수중침적가공방식의 것은 제외. -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 이하로서 폭방향 60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2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 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 이하의 것
8459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 이하로서 폭방향 870㎜ 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 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2 99 1090	○ 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2,0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H S	품 목 명
8471 70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두께가 0.7” 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경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
8472 90 4000	○ 연필절삭기
8477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변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 유니트용 볼베어링(내경 12 - 75㎜의 것)
20 0000	○ 단열 테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인치계열의 경우는 내경 3/4”-2 3/4”의 것). 다만,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32014 - NO. 33004 -33014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10	○ 무정전 전원장치. (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에 한함)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H S	품 목 명
8508 10 0000	○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함마드릴 및 드릴구경 25㎜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 이상의 것은 제외
80 0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7 21 0000	○ 팩시밀리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 다만,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 93 1000	○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데크메카니즘 포함, 아나로그식에 한함)
99 3010	○ 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9 3090	○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8521 10 2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에 한함)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40 9000	○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정용에 한함)
8527 31 103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아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28 12 905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 이상 63.50㎝ 미만의 것)
12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이상의 것)

H S	품 목 명
88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여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0A 이하의 것)
8536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 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 이하의 것)
8539 31 0000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다만, 콤팩트형중 관경이 22㎜ 이하의 것으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1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이하)
21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이하)
21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이하)
8703 22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2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3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이하)
2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이하)
23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이하)
23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3,000㏄ 초과)
3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2,500㏄ 이하)

H S	품 목 명
3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이사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	○ 기중기차(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 이하의 것에 한함)
8708 29 9000	○ 차체(운전실포함)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도어몰딩, 창고무, 암레스트, 라이에터그릴, 선바이저는 제외
99 9000	○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펜션 쇽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프로펠러샤프트, 변속기케이스, 페달(알섹레이터용,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주타브레이크레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확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0000	○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순항성, 유람선 및 페리보우트 제외)
90 1000	○ 화물선(일반화물선, 콘테이너선 및 벌크선 제외)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 선
9006 51 9000	○ 35㎜ 롤필름용으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53 909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H S	품 목 명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9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or · 35㎜ 사진기용 필름현상용의 것은 24매 기준처리능력이 100롤/시간 이하의 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ter : 3" × 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 이하의 것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탈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9018 12 00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만, 칼라혈류영상진단기(Color Folw Mapping)는 제외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012 11 901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1000	○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17 00 1000	○ 보온병

통 상 산 업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전화(02)500-2384 전송 : 503-9496 담당 : 안성준

문서번호 수입 55250-55
시행일자 1997. 3. 8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장 관	
보존		김상열	
심의관	전결		
과 장	신동식	무역정책과장 아주통상1과장	
기안	안 성 준	법무담당관	협조

제목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추가 개정고시

1. 수입 55250-45('97.2.28)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호로 이미 개정고시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추가로 개정 고시코저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고시 내용 1부.
2. 개정 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고시 송부

1. 수입 55250-45('97.2.29)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로 이미 개정고시한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추가로 별첨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에 송부하오며, 금번 개정고시에 의하여 수입승인요령을 제정하는 단체는 해당수입승인오령 제정(안)을 작성,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 고시 1부. 끝.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전화(02)500-2384 전송 : 503-9496 담당 : 안성준

수신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대리점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가재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가스기기협회, 산업기술진흥협회

(제3안)

수신 : 한국무역협회장
제목 : 일간무역제재 의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간무역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수입선다변화품목개정공고
○ 구 분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39호
○ 근 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2조

첨부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고시 3부. 끝.

(제4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고시 송부

1. 수입 55250-45('97.2.29)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로 이미 개정고시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별첨과 같이 추가 개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전화(02)500-2384 전송 : 503-9496, 3412 담당 : 안성준

첨부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고시 1 부. 끝.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신처 : 재정경제원, 국방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각 시·도지사, 관세청(각 세관장),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제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

(제5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고시

1. 수입 55250-45('97.2.29)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로 이미 개정고시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별첨과 같이 추가 개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구시 1부. 끝.

무 역 정 책 심 의 관

수신처 : 통상정책심의관, 통상협력심의관, 산업정책국장, 기초공업국장, 생활공업국장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내용

관련조항	현 행	개 정
제3조 제1호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법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의 경우 [별표2]에 게기된 품목은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수입승인 기관의 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입승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39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통상산업부고시 제1997-35호(97.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3월 8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중 개정고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의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법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의 경우 [별표2]에 게기된 품목은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수입승인 기관의 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입승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기관 선정 문제검토

○ 중기청(행정관리) 및 내무부(자치기획과)에 전화협의한 결과 업무 과다와 인력 부족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는 곤란

- 시·도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중기청은 사전업무협의후 결정(시일과다 소요예상)

○ 시·도 및 중기청의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과 중복됨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수출입기별공고에서도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업무는 각 품목단체에 업무를 위임('97. 3. 1자)하고 있음

○ 우선 각 품목단체(한국무역협회)에 업무위임을 하고 차후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될시에는 타공고와 함께 무역정책과, 수출과와 협의하여 일괄 검토하여 처리함이 바람직 할 것임

<참 고>

○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시신청서류

-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신청서 1부
- 오파 1부

○ 외화획득용으로 사후관리 신청구비서류

- 외화획득이행신고서 1부
-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반입증명서)
-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 고시품목(2,971개) : 업체 자체적으로 발급
- 비고시품목 :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장 등
  · 현실적으로 소요량증명 대상품목이 거의 다 고시품목에 포함됨으로 시·도지사 등에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건수는 미비함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 얻어야

관장기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通産部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改正

외화획득용 원료일지라도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경우 수입승인을 얻어야 수입이 가능해 진다.

통상산업부는 8일 그동안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을 면제해 주던 것을 승인을 받도록 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를 개정·고시했다.

수입선다변화품목 중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기관은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수입승인기관이며 수입승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全鍾贊기자>

"인위적 경기부양책 지양"

姜부총리, 경제장관조찬간담회서

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경제운용은 국제수지 방어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으며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오전 상의클럽에서 개각후 처음 개최된 경제장관조찬간담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최근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경제현안의 대처방안을 협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全鍾贊기자>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39호

대외무역법시행령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하품목공고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35(97.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3월 8일
통상산업부장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중 개정고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의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다만, 대외무역법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의 경우 [별표2]에 게기된 품목은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수입승인 기관의 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하며, 수입승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7년 3월8일부터 시행한다.

보 도 자 료

'97.7월부터 14개 품목을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

□ 통상산업부는 '96. 6월에 마련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96년 7월 10개 품목과 '97. 1월에 25개 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97년 7월 해제대상 품목수 14개을 선정, 이를 '97. 7. 1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서 다변화품목수는 현재 127개 품목세서 금년 7월부터 113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번 해제대상인 14개 품목은 Jeep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G), 유압브레이카, 감열기록지 등이며 그밖에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등 2개 품목은 부분해제된다.

□ 금년 7월부터 수입선다변화 폼목에서 해제되는 이들 품목들은 장기간 지정되었거나 수출비중 또는 국산화율이 높아 어느정도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현재 국내 생산이 되지않는 품목 또는 내수시장 규모 및 국내수요가 미미하여 대일수입증가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등 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할 실효성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개 정 내 용

○ 완전해제 대상품목(14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929 10 2000	M-MDI(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8504 40 2010	무정전 전원장치
4816 90 2000	감열기록지	8519 93 1000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 (데크메카니즘 포함)
5112 90 0000	기타 모혼방직물	8703 21 2000	Jeep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G)
7016 90 1000	유리타일(결정화유리)	8703 22 9000	기타형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000-1,500CC, G)
8419 89 9090	석유호학용 압력용기	8703 23 9000	기타의 자동차 (실린더용량 1,500-3,000CC, G)
8431 49 1000	유압브레이카	8901 90 1000	화물선(일반화물선, 콘테이선 및 벌크선 제외)
8472 90 4000	연필절삭기	9033 00 0000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저 맺 동부분품

○ 부분해제 대상품목(2개)

현 행		변 경	
H S	품 명	H S	품 명
8422.30.1000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다만, 주사약 충진기는 제외	좌 동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다만, 주사약 충진기 및 LPG 디스펜서는 제외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는 제외	좌 동	제87류의 차량용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 푸얼튜브는 제외

○ 세번변경 품목(1개)

현 행		변 경	
H S	품 명	H S	품 명
8536.50.9000	전자개폐기(전자접촉기 포함) 600V, 375㎾이하	8536.50.4000	전자개폐기(전자접촉기 포함)600V, 375㎾이하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19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7년 7월 1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 하는 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수입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의 경우 [별표2]에 게기된 품목은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수입승인기관의 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입승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kg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다만, 승인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 보수 및 시

험가동을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6.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7.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9.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외국인 전용공단내 외국인 투자업체와 3천만불이상 수입(전년도 수입실적기준) 된 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체(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생산 시설재 및 소요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1. HS 8902 중고철강어선으로서 수산청장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제4조(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 ①제3조 5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승인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품조달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추천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승인기관은 제1항의 부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생산기술개발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부품의 적정성 여부

③승인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생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품조달계획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조달계획을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계의 1년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추천 유효기간) ①제2조 제2항, 제3조 각호 및 [별표1]에 의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보고 및 승인) ①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승인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수입승인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조 제2항, 제3조 각호 및 [별표1]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요령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대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재) ①부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될 날로부터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승인한 승인기관에 대하여는 승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승인한 승인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승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35호는 이를 폐지한다.
3.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35호에 의한 수입추천·확인등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 승인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품목현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 가 루
2914 11 0000	○ 아 세 톤
2926 90 9090	○ 클로로타로닐(Tetrachloro Lsophthalonitrile) (순도 90% 이상의 것에 한함)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 나트륨, 주석산제제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 아미드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이 0.96 이상의 것
4011 10 1000	○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속서 1 부표 22 (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 플라이타이어(중 30 × 9.50R 15LT 6PR 및 31 × 10.50R 15LT 6PR 포함]
4802 52 1000	○ 인쇄용지 와 필기용지 (1㎡당 중량이 60g이상 150g이하의 것)
4809 90 2000	○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롤상의 것은 폭이, 직사각형의 것은 한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는 것)
5111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H S	품 목 명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
5603 94 0000	○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50g/㎡초과(폴리우레탄 인조피혁에 한함)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90 9090	○ 기타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00 1090	○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7013 39 0000	○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의 유리제품
7216 33 1000 33 2000	○ H형강중 다음의 것, 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SWS 58 해당품목은 제외 - 등변의 것으로 100 × 100㎜ - 350 × 350㎜의 것 - 부등변의 것으로 600 × 300㎜ 이하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BPH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10 3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2,000㎾ 초과의 것)

H S	품 목 명
8408 90 9010	○ 기타의 선박용 내연기관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 푸얼튜브는 제외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 기타 엔진 부분품. 다만, 오일팬, 오일쿨러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부품(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8413 30 4000	○ 제87류의 해당하는 차량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펌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13 70 9090	○ 양수기(펌프)
8414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8422 30 1000	○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다만, 주사약충진기 및 LPG 디스펜스는 제외
8422 40 901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 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8425 11 1090	○ 폴리태클과 호이스트(전동식으로 10M/T 이하의 것)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이하의 것)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29 52 1000	○ 굴삭기(굴삭기 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33 51 0000	○ 수확, 탈곡 겸용기

H S	품 목 명
8443 19 0000	○ 옵셋인쇄기(쉬이스트식의 것으로 쉬이트크기가 390㎜ × 540㎜ 이하의 것에 한함) 다만, 양면옵셋인쇄기는 제외
59 1000	○ 직물날염기(색도가 10도 이하의 것에 한함)
8446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RPM 5,000 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RPM 10,000 이상 또는 상하 차동송은 제외 -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 이하로서 폭방향 350㎜이하의 것 다만, 수중침적가공방식의 것은 제외. -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 이하로서 폭방향 600㎜ 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2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 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 이하의 것
8459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 이하로서 폭방향 870㎜ 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 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2 99 1090	○ 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2,0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8471 70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두께가 0.7” 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경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
8477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H S	품 목 명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변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 유니트용 볼베어링(내경 12 - 75㎜의 것)
20 00000	○ 단열 테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인치계열의 경우는 내경 3/4"-2 3/4"의 것). 다만,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32014 - NO. 33004 -33014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함마드릴 및 드릴구경 25㎜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 이상의 것은 제외
80 0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7 21 0000	○ 팩시밀리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 다만,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H S	품 목 명
8519 99 3010	○ 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9 3090	○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8521 10 2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에 한함)
90 1000	○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40 9000	○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정용에 한함)
8527 31 103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아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28 12 905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 이상 63.50㎝ 미만의 것)
12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이상의 것)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여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0A 이하의 것)
8536 50 4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 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539 31 0000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다만, 콤팩트형중 관경이 22㎜ 이하의 것으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1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1 9000	○ 기타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8703 22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3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8703 3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이사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차(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 이하의 것에 한함)
8708 29 9000	○ 차체(운전실포함)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도어몰딩, 창고무, 암레스트, 라이에터그릴, 선바이저는 제외
99 9000	○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펜션 쇽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프로펠러샤프트, 변속기케이스, 페달(알섹레이터용,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주타브레이크레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H S	품 목 명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
2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 초과 250㏄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8901 10 0000	○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및 각종의 페리보우트(순항성, 유람선 및 페리보우트 제외)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 선
9006 51 9000	○ 35㎜ 롤필름용으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53 909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010 10 9090	○ 사진용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 인화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 - Film Processor · 35㎜ 사진기용 필름현상용의 것은 24매 기준처리능력이 100롤/시간 이하의 것 - Paper Processor : 처리능력 300m/시간 이하의 것 - Photo Printer : 3” × 4” 기준처리능력 10,000매/시간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Drafting Machines), 제도판의 포함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탈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서 자기부상장치가 부착된 것
9018 12 00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만, 칼라혈류영상진단기(Color Folw Mapping)는 제외
9012 11 901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19 1000	○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20 1000	○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9607 00 1000	○ 보온병

Ⅳ- 19. 1998년의 수입선다변화제도

과 장	심 의 관

'98. 1월부터 25개품목 수입선다변화 해제

○ 통상산업부는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중 25개품목을 '98. 1.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수는 현재 113개품목에서 88개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번 해제되는 품목은 1,000cc이하의 소형자동차, 모터싸이클(50-250cc), 사진현상인화기, 자동차용음성재생기기(디스크형), 초음파영상진단기, 슬라이드파스너 부분품(비금속제의 것)등이다.

○ 내년 1월부터 해제되는 이들 품목은 수출비중이 크거나 국산화율이 높아 어느 정도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현재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내수시장 규모 및 국내수요 측면에서 대일수입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 통상산업부는 세계경제의 개방화·자유화추세에 다라 '99년말까지 동 제도를 폐지키도 WTO에 통보한 일정에 따라 매년 2차례씩 대상품목을 축소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지난 7월 14개 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금번 25개 품목을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해제대상품목 >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4809 90 2000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8703 21 1000	세단형의 자동차,G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5111 11 1000	양모직물	8703 21 9000	기타의 자동차,G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6903 90 9090	기타 슬라이딩 플레이트	8703 22 2000	Jeep형의 자동차,G (실린더용량 1,000-1500cc)
7013 39 0000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 유리제품	8708 29 9000	차체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8408 10 3000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2,000㎾초과)	8711 20 1000	모터싸이클(50-250cc)
8422 30 1000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8901 10 0000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선박 및 각종의 페이보우트
8425 11 1090	폴리태클과 호이스트 (전동식으로 100M/T 이하의 것)	9010 10 9090	사진현상 인화기
8433 51 0000	수확, 탈곡 겸용기	9017 10 000	만능제도기
8443 59 1000	직물 날염기	9018 12 0000	초음파영상진단기
8502 20 10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75KVA이하)	9102 19 1000	일반아나디지 손목시계
8519 99 3010	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	9607 20 1000	비금속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부분품
8519 99 3090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617 00 1000	보온병
8521 90 1000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통 상 산 업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500-2384 전송 503-9496, 3412

문서번호 수입 55250-245
시행일자 1997. 12. 20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제목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별첨과 같이 개정 공고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내용 1부.
2. 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송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한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별첨과 같이 개정(시행일 : '98. 1. 1)하였기 알려드리니 수입승인등 관련업무 수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통상산업부고시 각 1부. 끝.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 (02)500-2386 전송 : 503-9438

수신처 : 재정경제원, 국방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각 시·도지사, 관세청(각 제관장),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대리점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구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가재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가스기기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산국기술진흥협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제3안)

수신 : 한국무역협회장
제목 : 일간무역제재 의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간무역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수입선다변화품목개정공고
○ 구　분 :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12호)
○ 근　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2조

첨부 : 개정고시 3부. 끝.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 (02)500-2386 전송 : 503-9438

(제4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별첨과 같이 개정공고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고시 1부. 끝.

무 역 정 책 심 의 관

수신처 : 통상정책심의관, 통상협력심의관, 산업정책국장, 기초공업국장, 생활공업국장

개 정 내 용

○ 해제대상품목(25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4809 90 2000	인쇄하지 아니한 감열기록지	8703 21 1000	세단형의 자동차, G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5111 11 1000	양모직물	8703 21 9000	기타의 자동차, G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6903 90 9090	기타 슬라이딩 플레이트	8703 22 2000	Jeep형의 자동차, G (실린더용량 1,000-1,500CC)
7013 39 0000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 유리제품	8708 29 9000	차체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8408 10 3000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2,000㎾초과)	8711 20 1000	모터싸이클(50-250㏄)
8422 30 1000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8901 10 0000	순항선,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선박 및 각종의 페이보우트
8425 11 1090	폴리태클과 호이스트 (전동식으로 100M/T 이하의 것)	9010 10 9090	사진현상 인화기
8433 51 0000	수확, 탈곡 겸용기	9017 10 0000	만능제도기
8443 59 1000	직물날염기	9018 12 0000	초음파영상진단기
8502 20 10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75KVA이하)	9102 19 1000	일반 아나디지 속목시계
8519 99 3010	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607 20 1000	비금속제의 슬라이드 화스너 부분품
8519 99 3090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9617 00 1000	보온병
8521 90 1000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1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8년 1월 1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 하는 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수입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의 경우 [별표2]에 게기된 품목은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수입승인기관의 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입승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kg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다만, 승인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 보수 및 시

험가동을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품목의 수입

5.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6.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7.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의 수입
8.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9.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2]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장이 추천한 품목의 수입
10. 외국인 전용공단내 외국인 투자업체와 3천만불이상 수입(전년도 수입실적기준) 된 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체(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생산 시설재 및 소요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1. HS 8902 중고철강어선으로서 수산청장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제4조(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 ①제3조 5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승인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품조달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추천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승인기관은 제1항의 부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생산기술개발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부품의 적정성 여부

③승인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생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품조달계획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은 부품 수입추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조달계획을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부품 수입추천 수량은 신청업계의 1년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추천 유효기간) ①제2조 제2항, 제3조 각호 및 [별표1]에 의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보고 및 승인) ①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승인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수입승인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조 제2항, 제3조 각호 및 [별표1]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요령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대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재) ①부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될 날로부터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승인한 승인기관에 대하여는 승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승인한 승인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승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품목현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 가 루
2914 11 0000	○ 아 세 톤
2926 90 9090	○ 클로로타로닐(Tetrachloro Lsophthalonitrile) (순도 90% 이상의 것에 한함)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 나트륨, 주석산제제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 아미드
3911 10 1000	○ 석유수지중 비중(20/20℃)이 0.96 이상의 것
4011 10 1000	○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속서 1 부표 22 (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 플라이타이어(중 30 × 9.50R 15LT 6PR 및 31 × 10.50R 15LT 6PR 포함]
4802 52 1000	○ 인쇄용지 와 필기용지 (1㎡당 중량이 60g이상 150g이하의 것)
5111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5112 11 1000	○ 양모직물
19 1000	○ 기타 양모직물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

H S	품 목 명
5603 94 0000	○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50g/㎡초과(폴리우레탄 인조피혁에 한함)
6903 20 5000	○ 슬라이딩 노즐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1000	○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6912 00 1020	○ 도자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00 1090	○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7216 33 1000	○ 기타 식탁용 및 부엌용의 유리제품
33 2000	○ H형강중 다음의 것, 다만, KSD 3542, 3529 및 3515중 SWS 58 해당품목은 제외 - 등변의 것으로 100 × 100㎜ - 350 × 350㎜의 것 - 부등변의 것으로 600 × 300㎜ 이하의 것
7321 11 0000	○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BPH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8 10 1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이하의 것)
10 200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8408 90 9010	○ 기타의 선박용 내연기관

H S	품 목 명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 푸얼튜브는 제외
99 2000	○ 제87류의 차량용 기타 엔진 부분품. 다만, 오일팬, 오일쿨러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9 3020	○ 선박용 내연기관부품(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8143 30 4000	○ 제87류의 해당하는 차량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펌프. 다만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13 70 9090	○ 양수기(펌프)
8414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8422 40 901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 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8427 20 101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이하의 것)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29 52 1000	○ 굴삭기(굴삭기 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8443 19 0000	○ 옵셋인쇄기(쉬이스트식의 것으로 쉬이트크기가 390㎜ × 540㎜ 이하의 것에 한함) 다만, 양면옵셋인쇄기는 제외

H S	품 목 명
8446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52 29 9000	○ 기타의 재봉기중 다음의 것 - 단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상하송사절, 차동송은 제외 - 쌍침직진형 재봉기. 다만, 사절장치 부착형은 제외 - 지그재그형 재봉기. 다만, RPM 5,000 이상의 것과 스캘럽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 - 오바록, 안전봉 재봉기, 다만, RPM 10,000 이상 또는 상하 차동송은 제외 - 포스트베드형 침송재봉기(사절포함)
8456 30 0000	○ 방전가공기로서 다음의 것 - 수치제어와이어커트식 방전가공기는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500㎜ 이하로서 폭방향 350㎜이하의 것 다만, 수중침적가공방식의 것은 제외. - 기타의 수치제어식의 것은 테이블 이동거리가 길이방향 800㎜ 이하로서 폭방향 600㎜ 이하의 것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2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 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 이하의 것
8459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 이하로서 폭방향 870㎜ 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 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62 99 1090	○ 최고가압 100메트릭톤 초과 2,000메트릭톤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SPM 400 초과의 프레스 - Fine Blanking Press - 단조용 프레스 - 트랜스퍼 프레스 - 금속분말성형 프레스
8471 70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두께가 0.7” 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경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
8477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H S	품 목 명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변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 유니트용 볼베어링(내경 12 - 75㎜의 것)
20 0000	○ 단열 테이퍼 롤러베어링중 내경 20-70㎜의 것(인치계열의 경우는 내경 3/4"-2 3/4"의 것). 다만, 다음형번의 것은 제외 - NO. 32004 -32014 - NO. 33004 -33014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함마드릴 및 드릴구경 25㎜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 이상의 것은 제외
80 0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7 21 0000	○ 팩시밀리
8518 40 0000	○ 가청주파증폭기. 다만,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H S	품 목 명
8521 10 2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에 한함)
8525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40 9000	○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정용에 한함)
8527 31 103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아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28 12 905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 이상 63.50㎝ 미만의 것)
12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이상의 것)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여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0A 이하의 것)
8536 50 4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 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539 31 0000	○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콤팩트형 포함)에 한함. 다만, 콤팩트형중 관경이 22㎜ 이하의 것으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8702 10 1000	○ 마이크로버스
8703 22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3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3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4 21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이사의 것)
22 1000	○ 일반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의 것)
8705 10 0000	○ 기중기차(최대정격 총하중이 25톤이상 75톤 이하의 것에 한함)
8708 99 9000	○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펜션 쇽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프로펠러샤프트, 변속기케이스, 페달(알섹레이터용,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주타브레이크레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711 10 1000	○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cc 이하의 왕복식 피스톤식 내연기관)

H S	품 목 명
8902 00 1010	○ 철강어선
00 1020	○ F.R.P 선
9006 51 9000	○ 35㎜ 롤필름용으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53 909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102 11 901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9207 10 1000	○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
9607 11 0000	○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별표 2]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및 부품수입승인기관

승 인 기 관	생 산 기 술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기계공업진흥회	8407	산업용 내연기관
	8408	
	8422	충전식, 자동포장기
	8443	옵셋인쇄기
	8445	카아드기, 정방기, 권사기
	8469	전자식 타자기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8407	포크리프트 트럭용 내연기관
	8408	
	8426	크 레 인
	8427	포크리프트 트럭
	8429	로우드로울러, 도우저, 굴삭기, 그레이더, 휠로우더
	8430	유압천공기
	8705	트럭 크레인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8414	압축기(선박용 제외)
	8415	자장식 공기조절기
	8479	카 쿨 러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8456	금속공작기계, 금속가공기계
	8457	
	8458	
	8459	
	8460	
	8462	
	8463	

승 인 기 관	생 산 기 술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광학기기협회	9006	사 진 기
	9009	복 사 기
	9010	감광재료의 현상, 프린트기계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깃 hr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16	전기밥솥
	8536	전자개폐기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8452	재 봉 기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8462	반도체 제조용 성형기계(Molding M/C, Triming/Forming M/C)
	9031	웨이퍼 검사기(Wafer Prober)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8407 8409	자동차용 내연기관 부분품
	8413	자동차용 펌프
	8601	철도용 기관차(전기)
	8602	철도용 기관차(디젤)
	8603	자주식철도 또는 궤도용객차 및 화차
	8701	특랙터(농업용 이외의 것)
	8702	버 스
	8703	승 용 차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 장 차
	8708	자동차용 샤시부품
	8711	자동이륜차
	8716	트레일러

승 인 기 관	생 산 기 술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8407 8408	농업용 내연기관
	8432	관리기, 이앙기, 작업기, 벼직파기
	8433	콤바인, 바인다
	8701	농업용 트랙터
	8705	농업용 다목적 동력 운반차(고속살포차)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8407 8408 8409	선박용 내연기관
	8414	선박용 압축기
	8419	선박용 공기냉각기 및 조수기, 선박 열교환기
	8425 8426 8428	선박용 갑판기기
	8529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8535 8536 8537 8538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8901 8902 8903 8906	선 박

승 인 기 관	생 산 기 술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8904	다른선박을 밀거나 끌기 위한 선박
	8905	특수선박과 부선거, 시추대, 작업대
	8907	선박 이외의 부구조물
	9014 9015	선박용 항법장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8471	단말기기(키입력장치, 광학식 인식장치. 음극선관단말기, 도형장치등), 보조기억장치(FDD, HDD, MIU 스트리머)
	8476	자동판매기
	8517	모사전신기
	8519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및 복합제품 카세트방식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데크메타니즘 포함)
	8521	VTR, 디스크형의 영상기록 및 재생용기기
	8525 8526 8527 8528	방송용기기, 녹화용카메라, M/W장비
	9018	전기식의료기기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8477	합성수지 가공기계

[별지 제1호 서식]

부품조달 계획서

1.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자 등록번호

3. 주 소 (전화번호)

4. 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HS, 품명, 규격)

5. 연도별 개발계획

연 도	계	내 수 용	수 출 용
199 199 199 199			

6. 연도별 생산기술개발 추진계획

구 분	199	199
○ 수입선다변화품목수입금액(A) ○ 수입선다변화품목수입금액(B) ○ 기타부품 사용금액(C)		
○ 합 계(A+B+C)		

<첨 부 1>

부품조달 세부계획서

번호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구분	수입 지역	199		199		비고
								수입	기타	수입	기타	
합 계												

* (주)작성요령 ① 구분(수입부품에만 해당) : 수입선다변화품목(A), 수입자동승인품목(B)
② 기타 : 조달 가능시기에 ○ 표시

[별제 제2호 서식]

부품 수입승인 신청

1. 승인번호 :

2. 승인근거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3조 5호

3. 수입선다변화품목 승인내역

HS(10단위)	품명 및 규격	대 당 소요량	승인수량	단 가	금 액
계					

위와 같이 기계류의 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승인을 신청합니다.

199 .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199 . . .

승인기관 : (인)

[별제 제3호 서식]

수입선다변화품목 수입승인 실적보고

○ 단 체 명 :

근거조항	HS(10단위)	품 명	업 체 수		수 량		금액(천불)	
			/4	누계	/4	누계	/4	누계
제3조 1호	(소 계)							
· · · ·								
· · · ·								
· · · ·	(소 계)							
합 계								

(주) 근거조항은 당해 승인단체에 해당되는 조항만 기재

개 정 내 용

○ '98.6월 해제품목

- 완전해제품목(40개)

H S	품 목	H S	품 목
2926 90 9090	클로로타로닐	8443 19 0000	옵셋인쇄기
3911 10 1000	석유수지	8452 29 9000	기타의 재봉기
4802 52 1000	인쇄용지와 필기용지	8456 30 0000	방전가공기
5111 19 1000	기타 양모직물	8462 99 1090	기계식 프레스(100메트릭톤 초과 2,000메트릭톤 이하)
5112 11 1000	양모직물	8482 20 0000	단열테이퍼 롤러베어링
19 1000	기타 양모직물	8504 40 2090	전동기속도제어장치
6903 20 5000	슬라이딩 노즐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
6911 10 1000	자기제의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8517 21 0000	팩시밀리
6912 00 1020	도자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8518 40 0000	가청주파증폭기 (가정형)
00 1090	기타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8528 12 9050	칼라텔레비젼수상기 (21" 이상 25" 미만)
7216 33 1000	H형강	8536 50 4000	전자개폐기
33 2000	H형강	8539 31 0000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7321 11 0000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8702 10 1000	마이크로버스
8408 10 1000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300㎾이하)	8704 21 1000	일반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이하)
10 2000	선박추진용 내연기관 (출력 300㎾ 초과 2,000㎾ 이하	22 1000	일반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
8408 90 9010	기타의 선박용 내연기관	8705 10 0000	기중기차(총하중이 25톤 이상 75톤 이하)
8409 99 2000	차량용의 기타 엔진 부분품	8711 10 1000	모터사이클(실린더용량 50㏄이하)
8413 30 4000	차량의 피스톤식 내연 기관용 펌프	8902 00 1020	F.R.Ptjs
70 9090	양 수 기 (펌 프)	9207 10 1000	오르건(신디사이저 포함)
8427 20 1010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이하)	9607 11 0000	비철금속제의 체인스쿠우프가 부착된 슬라이드화스너

- 부분해제품목(40개)

HS	현 행	개 정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그루버·정타기·함마·고주파전동공구·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전기식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그라인터, 샌더, 베벌러, 폴리셔)에 한함
8429 52 1000	굴삭기(굴삭기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굴삭기(굴삭기 본체에 타용도 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다만, 45톤 이상의 전방향굴착형은 제외

○ '98.12월 해제 예시품목(32개)

H S	품 목	H S	품 목
1101 00 1000	밀가루	8471 70 2010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2914 11 0000	아세톤	8477 10 2000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
3006 30 1000	엑스선감사용 조영제	8482 10 0000	단열깊은 홈 볼 베어링
3906 90 1000	폴리아크릴 아미드	8502 12 000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5502 00 2010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5603 94 0000	폴리우레탄 인조피혁	8525 40 9000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정용)
6903 20 9000	슬라이딩 플레이트	8527 31 1030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6911 10 2000	자기제의 공기,대접 및 접시	8536 20 0000	자동차단기
10 9000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8703 22 4000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이하)
8407 90 9000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23 2000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이하,G)
8409 99 3020	선박용 내연기관 부품(출력 300㎾초과, 2,000㎾이하)	32 2000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2,000㏄이하,D)
8414 30 1000	냉매압축기(11㎾미만)	8902 00 1010	철강어선
8422 40 9010	자동포장기계	9006 51 9000	35㎜롤필름용의 사진기
8427 20 1020	포오크리프트 트럭(적재중향 3촌 초과)	9009 12 0000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8446 30 1090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9102 11 9010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8459 61 0000	수치제어식 밀링머신	9607 19 1000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 '96.6월 해제 예시품목(16개)

H S	품 목	H S	품 목
4011 10 1000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8528 12 9060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25"이상)
8409 91 1000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8703 22 1000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8429 52 1000	굴삭기	23 1000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8457 10 0000	머시닝 센타	23 4000	스테이션웨곤(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8458 11 0000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24 1000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8516 60 2000	전기밥솥	33 2000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D)
8521 10 2000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	8708 99 9000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8525 20 7030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의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9006 53 9090	35㎜롤필름용의 사진기 (기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59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아울러 98년 12월 32일 및 99년 6월 30일자로 해제되는 품목도 별첨 1 및 2와 같이 예시합니다.

1998년 6월 3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별표1], [별표2]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 하는 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수입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의 경우 [별표3]에 게기된 품목은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수입승인기관의 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하며, 수입승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kg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3]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다만, 승인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승인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 보수 및 시험가동을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경우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품목의 수입
5. [별표3]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6.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7.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승인한 품목의 수입
8.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3]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9.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3]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장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10. 외국인투자업체가 생산시설재 및 소요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조(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 ①제3조 5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승인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품조달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승인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승인기관은 제1항의 부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생산기술개발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부품의 적정성 여부

③승인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생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품조달계획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은 부품 수입승인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조달계획을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부품 수입승인 수량은 신청업계의 1년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인 유효기간) ①제2조 제2항, 제3조 각호 및 [별표1], [벽표2]에 의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보고 및 승인) ①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승인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수입승인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조 제2항, 제3조 각호 및 [별표1], [별표2]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요령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대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재) ①부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될 날로부터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승인한 승인기관에 대하여는 승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승인한 승인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승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1의 품목은 1998년 12월31일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한다.

3. 별표1의 품목은 1998년 12월31일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한다.

4.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1887-212호는 이를 폐지한다.

5.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212호에 의한 수입승인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품목현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 가 루
2914 11 0000	○ 아 세 톤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 나트륨, 주석산제제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 아미드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
5603 94 0000	○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50g/㎡초과(폴리우레탄 인조피혁에 한함)
6903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BPH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다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9 302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8414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H S	품 목 명
8422 40 901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 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8427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46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59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 이하로서 폭방향 870㎜ 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 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71 70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두께가 0.7” 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경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
8477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변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 유니트용 볼베어링(내경 12 - 75㎜의 것)

H S	품 목 명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A 초과 375㎸A 이하의 발전세트
8508 80 0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전기식으 연마기 또는 광택기(그라인더, 샌더, 베벌러, 폴리셔)에 한함
8525 40 9000	○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정용에 한함)
8527 31 103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하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여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0A 이하의 것)
8703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이하)
3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2,500㏄ 이하)
8902 00 1010	○ 철강어선
9006 51 900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102 11 901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9607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별표 2]

수입선다변화 품목현황

○ '99.6.30일 해제품목

H S	품 목 명
4011 10 1000	○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속서 1 부표 22 (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 플라이타이어(중 30 × 9.50R 15LT 6PR 및 31 × 10.50R 15LT 6PR 포함]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 푸얼튜브는 제외
8429 52 1000	○ 굴삭기(굴삭기 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다만, 45톤 이상의 전방향굴착형은 제외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2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 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21 10 2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에 한함)
8525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8528 12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이상의 것)
8703 22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3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8 99 9000	○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펜션 쇽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프로펠러샤프트, 변속기케이스, 페달(알섹레이터용,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주타브레이크레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9006 53 909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59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아울러 98년 12월 32일 및 99년 6월 30일자로 해제되는 품목도 별첨 1 및 2와 같이 예시합니다.

1998년 6월 3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품목 및 수입절차)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별표1], [별표2]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심한 입초국(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함)으로부터 수입하고 하는 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서 “심한 입초국”이라 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무역통계연보 기준)을 비교하여 무역 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제3조(수입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의 경우 [별표3]에 게기된 품목은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수입승인기관의 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하며, 수입승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단위가 1kg 이하인 화학적 순수등급 이상의 시약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약의 수입
3. [별표3]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다만, 승인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승인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

4.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및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의 유지 보수 및 시험가동을 위하여 동 기계·장비의 해당단체(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장이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곤란한 경우 등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품목의 수입
5. [별표3]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요부품으로서 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6. 국가안보시설에 소요되는 통신용 물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7.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 또는 연구용 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승인한 품목의 수입
8. 천재지변, 노사분규 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로서 [별표3]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장(해당기관이 없는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9. 국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기계류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제품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별표3]의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승인기관장이 승인한 품목의 수입
10. 외국인투자업체가 생산시설재 및 소요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조(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 ①제3조 5호에 의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승인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품조달 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수입 승인신청서
3. 공장등록증 또는 당해기계류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승인기관은 제1항의 부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기계류의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2. 부품의 생산기술개발계획과 품목별, 국별 수입계획

3.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부품의 적정성 여부

③승인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생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품조달계획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은 부품 수입승인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조달계획을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부품 수입승인 수량은 신청업계의 1년간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선전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승인 유효기간) ①제2조 제2항, 제3조 각호 및 [별표1], [벽표2]에 의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보고 및 승인) ①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승인한 기관의 장은 매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수입승인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조 제2항, 제3조 각호 및 [별표1], [별표2]에 의한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요령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내용을 변경한 대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재) ①부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될 날로부터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승인한 승인기관에 대하여는 승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를 승인한 승인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승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1의 품목은 1998년 12월31일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한다.

3. 별표1의 품목은 1998년 12월31일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한다.

4. (타공고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1887-212호는 이를 폐지한다.

5. (타공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212호에 의한 수입승인은 이 고시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선다변화 품목현황

H S	품 목 명
1101 00 1000	○ 밀 가 루
2914 11 0000	○ 아 세 톤
3006 30 1000	○ 엑스선검사용 조영제중 황산바륨제제 및 탄산수소 나트륨, 주석산제제
3906 90 1000	○ 폴리아크릴 아미드
5502 00 2010	○ 초산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토우
5603 94 0000	○ 부직포중 기타제의 것으로서 150g/㎡초과(폴리우레탄 인조피혁에 한함)
6903 20 9000	○ 슬라이딩 플레이트
6911 10 2000	○ 자기제의 공기, 대접 및 접시
10 9000	○ 기타 자기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8407 90 9000	○ 최대출력 20BPH 이하의 단기통 가솔린 및 석유엔진, 다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8409 99 3020	○ 선박추진용 내연기관(출력 300㎾ 초과 2,000㎾ 이하의 것)
8414 30 1000	○ 냉매압축기(사용동력 11㎾ 미만의 것)

H S	품 목 명
8422 40 9010	○ 자동포장기계.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 Panty Hose 기준 80Doz/H 이상의 여자용 Stocking 포장용 PPB Bag 제조, 포장 및 봉합기능을 갖춘 포장기. - 포장능력 1000pcs/min이상의 Automatic Taping M/C
8427 20 1020	○ 포오크 리프트 트럭(적재중량 3톤 초과의 것)
8446 30 1090	○ 기타의 화섬사용 래피어직기
8459 61 0000	○ 수치제어식의 밀링머신으로 다음의 것 - 단축베드형 밀링머신은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3,200㎜ 이하로서 폭방향 870㎜ 이하의 것 - 단축모방형의 것은 주테이블 크기가 길이방향 2,000㎜ 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수치제어식 프라노밀러는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다만, 모방형의 것은 제외
8471 70 2010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두께가 0.7” 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경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
8477 10 2000	○ 프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형체력이 10톤이상 2,000톤 미만의 것에 한함) 다만, 2색 사출성형기는 제외
8482 10 0000	○ 단열깊은 홈 볼 베이링중 밀봉형의 것을 포함하는 다음 형변의 것 - NO. 6000 - 6018 - NO. 6200 - 6217 - NO. 6300 - 6316 ○ 유니트용 볼베어링(내경 12 - 75㎜의 것)

H S	품 목 명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A 초과 375㎸A 이하의 발전세트
8508 80 0000	○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전기식으 연마기 또는 광택기(그라인더, 샌더, 베벌러, 폴리셔)에 한함
8525 40 9000	○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정용에 한함)
8527 31 1030	○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하나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여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0A 이하의 것)
8703 22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2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이하)
32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 초과 2,500㏄ 이하)
8902 00 1010	○ 철강어선
9006 51 900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
9009 12 0000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고크기 A2 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102 11 9010	○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9607 19 1000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화스너

[별표 2]

수입선다변화 품목현황

○ '99.6.30일 해제품목

H S	품 목 명
4011 10 1000	○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KS M 6750의 부속서 1 부표 22 (소형트럭용 하이푸로테이션 래디알 플라이타이어(중 30 × 9.50R 15LT 6PR 및 31 × 10.50R 15LT 6PR 포함]
8409 91 1000	○ 제87류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다만, 오일팬, 로커커버, 타이밍벨트커버, 푸얼튜브는 제외
8429 52 1000	○ 굴삭기(굴삭기 본체에 타용도부착물을 부착한 장비포함) 다만, 45톤 이상의 전방향굴착형은 제외
8457 10 0000	○ 머시닝 센터로서 다음의 것. - 수평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 및 폭방향으로 각각 1,200㎜이하의 것 - 수직형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2,000㎜이하로서 폭방향 800㎜ 이하의 것 - 문형(쌍주식)의 것으로 테이블크기가 길이방향 7,000㎜ 이하로서 폭방향 3,000㎜ 이하의 것
8458 11 0000	○ 수치제어식 수평선반으로 다음의 것. - 단축의 것은 스윙 1,70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6,000㎜ 이하의 것 - 2축의 것은 스윙 330㎜ 이하로서 중심간거리 410㎜ 이하의 것

H S	품 목 명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21 10 2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가정용에 한함)
8525 20 7030	○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8528 12 9060	○ 칼라텔레비젼 수상기(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이상의 것)
8703 22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23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3 4000	○ 스테이션 웨곤(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24 1000	○ 세단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33 2000	○ Jeep형의 자동차(실린더용량 2,500cc 초과)
8708 99 9000	○ 기타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다만, 서스펜션 쇽 압소바, 방열기, 소음기와 배기관의 부분품, 프로펠러샤프트, 변속기케이스, 페달(알섹레이터용,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주타브레이크레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농업기계 제조용의 것은 제외
9006 53 9090	○ 35㎜ 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산 업 자 원 부

우)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전화(02) 500-2386/ 전송 503-9438, 3412
수입과 과장 김은규 사무관 최철우 담당 김성수

문서번호 수입 55250-165
시행일자 1999. 6. 23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장 관	
보존		박봉규	
심의관	전결		
		법무담당관	
과 장	김은규		
기안	★ 최철우		협조

제목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 폐지

대외무역법개정(1999. 2. 8)으로 수입선다변하제도가 1999년 6월 3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59호('98. 6. 30)로 시행중인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1999년 6월 30일자로 폐지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 폐지

1. 대외무역법개정(1999. 2. 8)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1999년 6월 3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59호('98. 6. 30)로 시행중인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폐지 고시코자 하오니 이를 1999년 6월 30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재구분 : 고시

3. 건 명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폐지

4. 게재내용 :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폐지내용

첨부 : 수입선다변화품목 폐지공고

산 업 자 원 부 장 관

Ⅴ. 統合公告制度

Ⅴ- 1. 특별법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의 통합운용

가. 개 념

무역거래법이외 각종 법률에 의한 각부처의 개별적 품목별 제한내용을 통합고시하여 수출입 허가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

나. 연 혁

'80.10. 8 특별법 각종고시 통합에 대한 상공부 내부방침 확정
'81.12.12 국무총리실에서 각부처에 작업지시
'82. 2. 2 작업계획수립 및 통합작업
'82. 7. 1 통합고시공고

다. 운 영

○ 각부처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일정한 체제에 의해 단순히 통합

○ 규제품목 및 운영은 특별법 관장 각부처에서 운영

라. 내 용

○ 특별법에 의한 수입관리는 원칙적으로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 및 안전, 국가안보, 공중도덕보호 등을 위하여 사전검사, 요건확인 등 최소한의 사전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다만, 국내유치산업(특히 농업) 보호육성과 식량, 사료 등 주요물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물량제한등 최소한의 조정실시

유 형	목 적	해 당 특 별 법	품목수
⟨ 순수절차적관리 사전검사, 요건심사등 사전절차이행 ⟩	· 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동·식물 포함)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 · 공중도덕보호 · 금 수출입 규제 등	· 마약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등 20개법 · 군수조달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3개법 · 음반에 관한 법률 등 3개법 · 외환관리법 등 2개법	875 110 29 69
국내산업보호 및 수급안정 (물량조절)	· 국내산업보호육성 및 물량수급, 가격안정 · 전매수익 확보	· 양곡관리법, 비료관리법 · 담배전매법 등 3개법	73 78
과도기적으로 두기능 혼재 (1) + (2)	· 국내산업보호육성 및 국민보건·위생 등	· 약사법 · 사료관리법	727 49
계		35개법	2,010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물품

부 처 명	특 별 법 령	수 입 규 제 대 상 품 목	품목수	규제내용요지
농 수 산 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	84	가축전염병예방 목적
	비료관리법	비료	31	비료수급조정
	사료관리법	사료	53	사료수급조정
	양곡관리법	양곡	46	양곡 〃
	주요농작물종자법	종자	18	우량종자육성 보호목적
	종묘관리법	종묘	3	우량종묘육성 보호목적
	잠업법	잠종·뽕나무	2	잠업보호목적
	농약관리법	농약	5	농약안전관리
	검역법	검역	17	동물전염병예방 목적
	식물방역법	식물방역	54	〃
보건사회부	약사법	의약품	1,093	국민보건관리 목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동물약품		
	대마관리법	대마	4	
	마약법	마약	20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185	식품위생관리
전 매 청	담배전매법	담배	21	전매사업목적
	인삼사업법	인삼	29	
	홍삼전매법	홍삼	28	
환 경 청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독극물	38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부 처 명	특 별 법 령	수 입 규 제 대 상 품 목	품목수	규제내용요지
동력자원부	석유사업법	석유제품	36	석유제품수급조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	5	에너지이용효율 증대
과학기술처	원자력법	원자력물질	30	원자물질의 안전 관리
문화공보부	영화법	영화필름	11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	13	미풍양속보호
	배포에 관한 법률			
	음반에 관한 법률	음반	5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출)	0	문화재보호
산 림 청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조수	13	조수보호목적
재 무 부	외환관리법	금·화폐	28	외환관리목적
내 무 부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총포·도검·화약	49	안전관리
공업진흥청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제품	303	전기용품의 안전 관리
국 방 부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수물자	23	군수물자관리
수 산 청	수산업법	어류	23	수산자원보호
	어선법	어선	0	수산업관리
해운항만청	해상운송사업법	선박	0	해상운송안전관리
관 세 청	관세법		0	미풍·양속보호
15부처	35개법		2,271	

Ⅴ- 2. 1983년의 통합고시 운용

가. 기본방향

○ 신규 수입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검역·예방·안전·위생등 사회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국내산업과 관련한 특별법상 수입제한은 수출입기별공고 개정지침에 준함.
○ 형식적인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자유화
○ 수입허가 및 통관기관의 업무처리 신속성을 고려한 수입제한
○ 수출입기별공고와 2중 수입제한품목의 합리적 조정

나. 조정내용

○ 총 괄

현행 수입 제한	개정		개정후수입제한
	자유화	신규제한	
1,973	390	17	1,600

○ 수입자유화물품(390)

관련법	품목수	자유화사유
사료관리법	6	수입수요 경미
약사법	342	약사법상 수입관리 불요
원자력법	9	원자력법상 수입관리 불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	수입수요 경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32	내의류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적용불요

○ 신규 규제품목(17)

관련법	품목수	자유화사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형식승인대상품목 추가
독물및극물에관한법	5	유해물질로 환경청의 수입관리 필요

〈참고〉

화장품수입개방예시계획

년 도	화장품 분류군	내 용
'83	4개군 (11)	○ 눈화장용 제품류 : 아이샤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아이펜슬 ○ 방향용 제품류 : 향수, 오데콜론 ○ 두발용 제품류 : 헤어틴트, 정발료,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 염모류 제품류 : 염모료
'83	7개군 (34)	○ 어린이용 제품류 : 어린이용샴푸, 어린이용로숀, 어린이용오일, 어린이용크림, 기타 어린이용 제품류 ○ 눈화장용 제품류 : 아이로숀, 아이메이컵리무버,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 ○ 방향용 제품류 : 분말향, 향낭, 기타 방향용 제품류 ○ 두발용 제품류 : 헤어컨디쇼너, 헤어스트레트너, 린스, 샴푸, 토닉, 드레싱, 헤어구루밍에이드, 웨이브셋트, 퍼머넌트웨이브, 기타 두발용 제품류 ○ 염모용 제품류 : 헤어칼라스프레이, 기타 염모용 제품류 ○ 매니큐어용 제품류 : 베이스코트 및 언더코트, 네일크림, 네일로숀, 네일익스탠더, 네일폴리쉬, 네일에너멀, 네일폴리쉬무버, 네일 에나멜리무버, 기타 메니큐어용 제품류 ○ 기초화장품 제품류 : 팩, 영양오일

년 도	화장품 분류군	내 용
'85	4개군	○ 메이컵용 제품류 ○ 목욕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류 ○ 기초화장품 제품류
'86	5개군	○ 메이컵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류 ○ 기초화장품 제품류 ○ 기타화장품 제품류 ○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류

GATT예외조치조항과 국내법과의 관계

가. GATT예외조치조항의 개념

○ 일반적 예외조치 : 제20조
국별 차별 및 부당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GATT협정에 불구하고 자국무역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

○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치
자국의 안전보장 및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나. GATT예외조치와 국내법과의 비교

GATT	국 내 법
○ 일반적 예외조치 : 제20조	
- 공중도덕 보호	- 영화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 인간,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	- 약사법, 식품위생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수산업법, 어선법, 해상운수사업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GATT	국 내 법
	검역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 주요농작물종자법
- 금·은의 수출입	- 와환관리법
- 관세의 실시,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 관세법
- 교도소 노동산품	
- 미술·역사적 가치물품의 보호	
- 유한천연자원의 보존	
- 정부간 상품협정에 의한 것	
- 저렴한 국내원료의 수출제한	
- 지역적 공급불균형상태에 있는 물품의 분배를 위한 것	
○ 안전보장예외조치 : 제21조	
- 안전보장상 중대한 정보	
-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보호	- 원자력법, 총포·도검·화약규단속법, 군수조달에관한법률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 GATT협정과 관계없는 법률(4개) 담배전매법, 인삼사업법, 홍삼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Ⅴ- 3. 1984년의 통합고시 운용

가. 기본방향

○ 수출입기별공고와의 보완성 제고

- 국민보건, 안전, 공중도덕보호 등 질적 측면의 관리보완(기별공고는 수입개방여부만 결정)

○ 실질적 수입자유화 및 경쟁촉진

- 국내산업보호 및 수급안정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수입규제 되어온 일부 품목(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규제의 점진적 완화
- 수입자격제한의 완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

○ 수입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등 보완대책 강화

- 불량·저질상품의 국내시장유입 및 염가투매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품질식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화

나. 주요내용

(1) 수입제한의 실익이 없거나 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자유화

○ 수입자유화

- 원료의약품 : 327품목(CCCN 8단위 기준)
- 화장품 : 3품목(보사부기준 : 9품목)
- 에너지이용기기 : 2품목(유류사용 중앙난방보일러, 기타 증기발생보일러)
- 사료 : 5품목(옥수수·쌀·콩의 강피류, 밀기울, 기타강피류)
- 수산물 : 5품목(돌가사리, 뜬세모가사리, 불등가사리, 도박, 진도박)
- 기타 : 2품목(라아드, 메탄)

구 분	품 목 내 용
원료의약품 (327 품목)	가성칼륨, 과산화소다, 황산철, 소다회, 부틸알코올, 장뇌, 구연산, 능금산, 글루타민산, 설파민 등
화 장 품 (9 품목)	향수, 오데콜론, 분말향, 향낭, 기타 방향용 제품류, 헤어틴트, 헤어칼라스프레이, 기타 염모용 제품류, 팩

○ 수입금지해제 (수입금지 → 수입허가 또는 추천)

- 의약품 : 46품목
- 화장품 : 20품목

구 분	품 목 내 용
의 약 품 (46 품목)	전신마취제, 각성제, 동맥경화용제, 남성호르몬제, 자율신경제, 자국수축제, 치질용제, 당뇨병용제, 치과구강용약, 반창고, 자양강장변질제, 모잘용제(발모, 탈모, 염색, 양모), 비뇨기생식기관용제, 거어즈, 붕대, 모기향, 탐폰, 생리용나프킨 등
화 장 품 (20 품목)	○ 목욕용제품류 : 목용용오일, 목용용정제, 목용용캅셀, 기타 목용용 제품류 ○ 메이컵제품류 : 볼연지, 메이컵획사티브, 메이컵베이스, 립그로스, 루즈, 기타 메이컵제품류 ○ 기초화장품제품류 : 크린싱제품, 주름제거제, 스킨라이트너, 스킨후레쉬너 ○ 면도용제품류 : 남성용탈쿰, 프리쉐이브로숀, 쉐이빙크림, 아프터쉐이브로숀, 수염유연제, 기타 면도용제품류

(2)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 강구

(가) 수입품 사전품질검사 의무화

○ 목 적

- 국내산업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
- 불량상품의 국내시장 유입 및 덤핑의 근원적 방지
- 국산제품과 동일수준의 품질검사 실시

○ 주요내용

- 사전시료검사에 합격된 동일규격의 제품에 한하여 수입 허용
- 수입후 합격증지를 부착시켜 유통시킴

○ 대상품목 : 83품목

- 수입자유화된 품목중 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거나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
- 안전위해 및 품질불량 우려가 큰 소비자 생활용품

구 분	품 목 내 용
생 활 용 품	유모차, 유아용 삼륜차, 압력솥, 우산 및 양산, 프라스틱제 공기주입보우트, 수경, 롤라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보행기, 프라스틱제 공기주입수상 물놀이기구, 연필깎기, 전기면도기, 완구, 도어클로져, 보온용기, 라이타, 스테플러 등
공 구 류	몽키스패너, 파이프렌지, 뻰지, 플라이어, 니퍼, 쇠톱날 등
기타공산품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용 안전벨트, 자동차용 휴대용 잭, 접착테이프, 그리스, 프로세스유, 부동액 등

(나) 수입상품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화

○ 목 적

- 소비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제공
- 무조건적인 외제선호성향 불식
- 불량품일 경우 아프터서어비스 등 크레임제기 편의 제공
- 국산제품과 동일수준의 품질표시 의무부과

○ 주요내용

- 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공진청장이 고시)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자 할 때는
- 수입자는 수입상품에 수입자, 수입년월을 포함하여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재질, 성능,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한글로 알기쉽게 표기하여 국내판매하여야 함.

○ 대상품목(CCCN 8단위 기준 820 품목)

- 외견상으로 소비자의 품질식별이 어려운 상품
- 비교적 소비자의 외제선호도가 크며 정확한 품질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품목(특히 국내제품의 품질이 더 우수한 경우)
-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품목
- 생활용품줄 품질불량품의 유입우려가 큰 품목

품 질 표 시 상 품

부 분 별	품 질 표 시 상 품
화학제품 (27)	합성세제, 세탁용 또는 주방용의 비누, 주택용 또는 가구용의 세정제, 마루용 또는 가구용의 왁스, 구두약, 도료, 화장지, 원지, 화장비누, 보통판유리, 강화판유리, 무늬판유리, 망유리,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복층유리, 세면기, 양동이, 애기용 목용통, 수통, 폴리에틸렌필름, 바구니, 쟁반, 대야, 애기용 물통, 고업용 석화, 가정용 고무장갑, 농업용 염화비닐(PVC)필름, 연질염화비닐(PVC)호스

분 분 별	품 질 표 시 상 품
석유제품 (29)	실, 원단, 기성신사복, 기성숙녀복, 스커어트, 드레스, 쉐타, 자켓 또는 잠바, 와이셔츠, 드레스셔어츠, 플로셔어츠, 부라우스, 중고등학생복, 코오트류, 아동복, 내의, 잠옷, 양말류, 수영복, 모포, 융단, 넥타이, 타올, 이불, 이불솜, 마후라, 스카프, 숄, 장갑, 모기장
귀금속가공품 (3)	목걸이, 반지, 수저
잡화제품 (12)	책가방, 스케치북, 색종이, 합성수지자, 학생공책용지, 가방, 구두, 혁제의 상의 및 코오트, 가정용 취사용 취사기구, 사진첩, 포리프로필렌제 포대, 가구

(3) 곡물(사료용) 수입에 종합무역상사 참여허용

○ 종전 제분공업협회, 옥수수가공협회등 실수요자단체에 한하여 수입 허용 → 종합무역상사 참여 허용

(4) 수입추천기능의 대폭적인 민간기관이양

○ 목적 : 점진적인 민간주도의 수입관리제도 확립

○ 대상품목 및 주요내용

구 분	대상품목	주 요 내 용
원료약품	65	·보사부장관 → 의약품수출입협회장 ·농수산부장관 → 동물약품협의회장(동물약품의 경우)
농 산 물	33	농수산부장관 → 관련단체장

Ⅴ- 4. 1985년의 통합고시 운용

가. 기본방향

○ 국내산업보호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중 경쟁력보유품목의 자유화

○ 수입절차상의 경쟁제한요소 제거

○ 불요불급저질상품 수입억제를 위한 품질검삼 강화

○ 정부수입추천업무의 민간기관이양으로 민간주도 수입관리 촉진

○ 수출입기별공고와의 보완성 제고

나. 주요내용

(1) 화장품 수입자유화의 완성

○ 총괄

(보사부 품목분류기준)

	'85(현재)	'85. 7. 1	'86. 1. 1
자 유 화 품 목	9	61 (+52)	74 (+13)
자 유 화 율	12.2%	82.4%	100%

( ) 내는 신규자유화 품목수

○ '85. 7. 1 자유화품목

- 두발용제품류 : 헤어콘디쇼너,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트레이트너, 퍼머넌트웨이브, 린스, 토닉, 샴푸 등
- 눈화장용제품류 : 아이샤도우, 아이라니나, 마스카라, 아이브라우펜슬, 아이로션, 아이메이컵리무버 등
- 매니큐어용제품류 : 베이스코트 및 언더코트, 네일크림 및 로션 등

- 어린이용제품류 : 어린이용 로션, 오일, 샴푸, 크림 등
- 목용용제품류 : 목용용오일, 정제캅셀 등
- 메이컵제품류 : 불연지, 메이컵획사티브, 메이컵베이스, 립그로스, 루즈 등
- 면도용제품류 : 남성용 탈쿰, 프리쉐이브로션, 아프터쉐이브로션, 쉐이빙크림, 수염유연제 등
- 기초화장품제품류 : 크린싱제품, 주름제거제, 스킨라이트너, 스킨후레쉬너 등

○ '86. 1. 1 자유화품목(13개)
- 메이컵제품류 : 훼이스파우다, 립스틱, 화운데이션
-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류 : 썬탄겔, 썬탄크림, 썬탄리퀴드 등
- 기초화장품 제품류 : 얼굴, 신체 및 손제품, 홀몬제품, 모이스춰라이진제품, 나이트제품
- 기타 화장품류

(2) 의약품등의 수입개방

○ 총 괄

구 분	총 품 목	자 유 화 품 목		자유화계획
		현 행	개정('86.1.1)	
전 제	2,149	2,025 (94.2%)	2,066 (96.1%)	잔여 : 83개 ('87 : 96.7% 계획)
원료의약품	1,823	1,172 (97.2%)	1,783 (97.8%)	잔여 : 40개 ('87 : 21개, '88 : 19개 예정)
완제의약품	161	96 (59.6%)	119 (73.9%)	잔여 : 42개 ('87 : 25개, '88이후 : 17개 예정)

구 분	총 품 목	자 유 화 품 목		자유화계획
		현 행	개정(86.1.1)	
의 료 용 구	116	109 (94.0%)	115 (99.1%)	잔여 : 1개 ('88 이후 예정)
위 생 용 품	33	33 (100.0%)		
의약부외품	16	15 (93.8%)	16 (100.0%)	

○ '86. 1. 1 자유화품목

- 원료의약품 : 카페인, 건조수산화알루미늄겔, 아세트아미노펜, 설피린, 니코틴산아미드, 살리실아미드, 건조효모, 판토탄산칼슘, 아미노카프로익애시드, 트라넥사믹산, 염산피페사네이트 등 11개
- 완제의약품 : 정신신경통제, 안과용제, 이비과용제, 강심제, 혈압강하제, 호흡기관용약, 이담제, 관장제, 난포호르몬제, 통경제, 항문용약, 학농성질환용제, 피부연화제, 비타민제, 무기질제제, 혈액대용제, 지혈제, 체액용약, 간장질환용제, 백신류 등 23개
-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 가정용적외선사우나기, 가정용 전기치료기, 주사기, 주사침, 수액셋, 진료용 X선장치, 생리용나프킨

(3) 밀가루, 야자유박등 경쟁력 보유품목의 자유화(13개)

CCCN	품 목	관 련 법
2304 0200	낙화생유박	ㄱ
0300	면실유박	ㅣ
0400	아마인유박	ㅣ
0500	해바라기유박	ㅣ사료관리법
0600	체종 및 콜자유박	ㅣ
0700	야자유박	ㅣ
0800	다알닛 및 핵유박	ㄴ
1101 0101	밀가루	ㄱ 양곡관리법
0102	메슬린의 가루	ㄴ
6816 0200	기타내화물	ㄱ
6902 0201	내화벽돌	ㅣ에너지이용관리법
7337 0200	헤어히타(펜코닐 유니트)	ㄴ

(4) 수입검사품목 확대

○ 신규추가 : 35개 품목

CCCN	품 목	관 련 법
2710 1111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석유사업법
3907 0500	필통, 연필지우개	ㄱ 공산품품질관리법
4014 0302	연필지우개	ㄴ
4202 0201	여행용가방	
4203 0501	ㄱ 야구장갑	
0599	ㄴ	

CCCN	품 목	관 련 법
8205 0401	드릴	
9004 0201	귀금속사용 안경테	공산품품질관리법
9702 0100	ㄱ 완구	
0500	ㄴ	
9704 0100	탁구공	
9706 0101	골프공	
0201	정구공	
0500	야구공	
0600	기타운동용구	
7320 0201	ㄱ	
007	ㅣ나사식 가단주철관 이음쇠	
0299	ㄴ	
8507 0101	전기면도기	
8706 0201	ㄱ 자도차용 안전벨트	
0202	ㅣ자동차용 온수식 난방기	
0299	ㄴ	

(5) 양곡수입에 종합상사 참여허용

○ 목 적 : 민간상사의 수입능력 제고

○ 양곡관리법에 의한 수입추천대상자 추가

Ⅴ- 5. 1986년의 통합고시 운용

가. 적용법률의 변동

(1) 신규 추가

(가) 전기통신기본법

- ○ 품목 : 다이알전화기 등 6개
- ○ 근거 : 전기통시기본법 제30조 제2항
- ○ 절차 : 전기통신기자재는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사유 : 체신부장관이 정한 기술규격에 불적합한 기자재를 수입, 판매한 경우 통신질서유지가 곤란

(나) 전파관리법

- ○ 품목 : 무선전화기 등 6개
- ○ 근거 : 전파관리법 제7조, 제29조의 2
- ○ 절차 : 무선통신기기는 체신부장관의 무선국 허가 또는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사유 : 체신부장관의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사용할 경우 전파질서유지곤란, 전파의 불법사용으로 안보위해의 문제가 있음.

(다) 공업표준화법

- ○ 품목 : 평판강화유리 등 15개
- ○ 근거 :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4
- ○ 절차 : KS표시명령 품목은 공진청장의 KS표시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 ○ 사유 : 국내제품에 적용하는 KS표시제도를 수입품에도 적용하여 KS표시의 국산화를 도모하고 저급품의 수입제한으로 소비자보호

(2) 삭제

- ○ 법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사유 : 통합고시적용품목인 열사용기자재의 기자유화

나. 개정내용

(1) 개별법

(단위 : 개, CCCN 8단위)

구 분	현 행	개 정 후	비 고
개 별 법	38	40	삭제 : 1 추가 : 3

(2) 개정내역

구 분	법 명	품목수	품 목
1. 추가품목		136	
가. 신규품목		127	
	식품위생법	7	염소, 에티핀산 등
	약사법	24	염산라니티딘, 환자운반차등
	전화통신기본법	6	전화기, 인쇄전신기 등
	전파관리법		무선전화기, 레이다 등
	전기용품	9	고주파웰더, 전기스텐드 등
	안전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20	재봉사, 확성기 등
	공업표준화법	15	전압조정기, 형광등구등
	독・극물에 관한 법률	40	비소, 톨루엔 등
나. 기존수입 요령에 품목추가		9	
	식품위생법	2	구연산칼륨 등
	약사법	4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온열암치료기 등
	공업품 품질관리법	2	아동이륜자전차 등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1	서각

구 분	법 명	품목수	품 목
2. 자유화품목		30	
가. 완전자유화		6	
	사료관리법	3	애완동물용 사료, 비타민 등 조제품
	식품위생법	1	후말산 1나트륨
	약사법	1	환자투여용 이외의 조제시약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	전기스텐드 등
나. 부분자유화		24	
	식품위생법	1	염화칼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3	전기맛사지기 등
3. 수입제한 완화(수입금지 추천품목)		20	
	농약관리법	1	생장억제약으로서 시엠액제
	약사법	19	염산테트라싸이클린, 중추신경계 용약 등

Ⅴ- 6. 1987년의 통합공고 운용

(상공부고시 제87-33호, '87. 9. 26 시행)

가. 명칭변경 : 각종 규정에 의한 수출입요령의 통합공고 → 통합공고(대외무역법 제18조)

나. 주요개편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공산품품질관리법	○ 국산(내수)검사와 수입검사를 구분하여 실시 ○ 검사품목수 : 71개 ○ 매수입시마다 수입검사(시료검사) 실시	○ 사전·사후검사로 구분, 검사제도의 일원화 - 사전검사에 포함 ○ 44개로 축소('87.10말까지 32개 품목에 대한 축소를 재검토) ○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해 시료검사, 이후 동일규격품의 검사는 신고로써 면제 ○ 검사 면제범위 확대 및 명시 - 해외유명규격품(UL, JIS 등 9개) - 상호인증협정 체결기관이 검사한 상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형식승인 대상품목 : 357개 ○ 최초수입시 형식승인후 유효기간내 동일제품 수입은 형식승인 면제	○ 좌 동 ○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구비서류 축소) ○ 형식승인 면제범위 확대 - 시설, 보수용 전기용품 - 제조업자의 자가수요용은 면제 - 외국유명공인기관 형식승인품

구 분	현 행	개 선
공업표준화법	○ KS 표시명령품목 : 17개	○ KS표시명령품목을 전부 해제
계 량 법	○ 검정 대상품목 : 29개 ○ 동일제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국내판매 이전에 구조검정, 기차검정 실시	○ 16개로 축소 ○ 최초수입한 계량기 검정결과 합격된 것은 이후 동일제품은 구조검정 면제, 기차검정 생략 ○ 전수검정을 표본검정으로 개선

다.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상공부고시 제87-46호, '87. 12. 30 시행)

○ 농업용비료 수입제한 완화

- 그동안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어온 농업용비료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및 비료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함('87.12.21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 1990년 이후부터는 전면 자유화 예정

Ⅴ- 7. 1988년의 통합공고 운용

가. 4.1 통합공고 개정

(상공부고시 제 88-13호, '88.4.1 시행)

(1) 기본방향

○ 흑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법령에 의한 수입규제 완화
- '88.2.16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합의

○ 통상마찰의 소지 제거 및 수입업계의 비용부담 감소

(2) 개정내용

○ 39개법 2,078개(HS 10단위) →39개법 2,021개
- HS 10단위 완전삭제 : 57개(약사법 : 6개, 원자력법 : 11개, 공산품품질관리법 : 40개)

○ 개별법별 개정내용

구 분	개정내용 및 사유	비 고(HS 10단위)
공산품품질관리법	○ 사전검사 품목의 축소 43개 → 25개 (18개 해제)	- 온도계, 욕조등 40개
원자력법	○ 방사선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입절차 완화 - 방사성동위원소 협회 추천 → 신고	- 27개
	○ 과기처장관 허가 → AA	- 중수, 중수소등 안정성 동위원소 7개
	○ 방사성동위원소협회 추천 → AA	- X선용 스크린, 고압발생기 등 4개

구 분	개정내용 및 사유	비 고
약 사 법	○ 원료의약품의 약사법 규제해제 - 의약품수출입협회 추천 → AA	- 요소, 암모늄 등 공업용 원료의 범용성이 큰 품목 24개
	○ 원료의약품의 수입절차 간소화 - 의약품수출입협회추천 → 신고	- 33개
약 사 법	○ 의료용구의 수입절차 간소화 - 의료용구협동조합추천 → 신고	- 의료용원심분리기, 보육기등 6개
	○ 보건사회부허가 → 의료용구 공업협동조합추천	- 코발트치료기, 자궁암치료기 등 5개
총포도검화 약류단속법	○ 감시해제품목의 통합공고에 반영	- 염소산나투륨의 폭약용원료로 사용규제(내무부장관허가)
	○ 6㎝이상 칼날이 있고 흉기로 사용가능한 도검류	- 치안관계상 흉기단속 강화(4개)

○ 규제해제

CCCN	품 목	CCCN	품 목
(약사법대상)			
2304 00 0000	대두유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유박	60 0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2834 29 9000	질산칼슘마그네슘	70 0000	칼슘 시아나미드
2922 50 2000	파라아미노 살리실산과 그염 기타	80 000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2934 90 9090	디기탈리스글리코	90 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2938 90 1000	시드		
90 3000	사포닌	90 9000	기타
2938 90 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40 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3101 10 0000	요소	29 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21 0000	황산암모늄		
29 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과 겹염	3301 90 3000	정유의 에쿠어스 솔루어션
29 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3305 90 0000	기타
30 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40 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50 1000	천연의 것		
50 9000	기타		

H S	품 목	H S 품 목
(원자력법대상)		(공산품품질관리법)
2845 10 0000	중수(산화중수소)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 펠트,
90 1000	중수소	전기장판, 욕조, 재생타이어,
90 2000	탄소의 동위원소	옥외용 안테나, 합성수지제관 및
90 9000	기타	이음관, 사무의자용 및 여행가방용 캐스터,
2846 10 0000	세륨화합물	전기요, 분뇨정화조,
90 1000	산화이트륨	이화학용유리기구, 헤드폰,
90 9000	기타	자동차용 안전벨트, 일반방독면,
9022 90 1020	X선용의 스크린	합성수지제필름 알루미늄 압출형제,
90 1030	X선용의 고압발생기	집어등, 온도계
90 1090	기타	
90 9000	부속품	

나. 7.1 통합공고 개정

(상공부고시 제88-27호, '88.7.1 시행)

(1) 개별법별 개정내용

(가) 공산품품질관리법

○ 사전검사 품목의 축소 : 가정용 고무장갑, 재봉사, 왁스 등 7개 품목의 규제해제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절차완화 : 형식승인시 외국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국내지정기관이 확인한 경우 시험검사를 면제

(다) 약사법

○ 수입절차 완화를 위해 수입용령 변경

- 원료의약품 등 추천품목을 신고품목으로 전환 : 84개
- 수입 금지물질의 수입을 가능하도록 허가(추천)품목으로 변경
  : 원료의약품 7종, 완제의약품 5종

- 의료용구의 수입절차 완화

・추천에서 신고로 변경 : Dental Unit Chair 등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 초음파영상진단촬영기 등 9개 고가 의료장비(8.1 시행)

(라)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 산화크롬, 플르오그화물 등 사후관리체제가 이루어진 80여종 물질에 대한 규제해제

(마) 외국환관리법

○ 금 관련제품 18개 품목의 외국환관리법상 규제해제

(바) 식품위생법

○ 수출입공고에서 “상공부장관 별도공고” 품목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 금지된 지타 조제식료품(HS 2106 90 9090)을 자유화하고 식품위생법의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해 추출, 농축, 혼합된 특수식품(영양등 식품)은 식품 공업협회에 신고를 필하도록 함.

(사) 환경보전법

○ 환경보전을 위해 성상 및 안정성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할 합성화학 물질 53종을 신규로 규제

(아) 총포도검 화학류 단속법

○ 신호용 경기용총 및 레이저 광학기기등이 당해법률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규제해제

○ 규제대상인 “6㎝이상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의 범위가 모호하여 “주방용, 식탁용, 등산・낚시용 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자) 기타

○ 전리선 검출기(원자력법)를 당해법률에서 삭제, CCCN/HS 연계 전환과정에서의 착오(덱스트린, 아밀로겐의 양곡관리법 대상)를 수정

(2) 품목별 변경내용

(가) 규제해제

CCCN	품 목	CCCN	품 목
(독물 및 극	물에 관한 법률)	2933 69 9090	기타(아사조포스)
2809 20 2090	기타(피로인산 동,	90 9000	기타
	피로인산 제 1석)	2934 90 9090	기타(포사놀, 이소사치온)
2819 90 1010	산화 제이크롬	20 9000	기타(메치오디치온,
2825 10 9030	히드록실 아민		트리싸이클아졸)
10 9040	히드록실 아민의	30 9000	기타(디조미트)
	무기염	(공산품품질	관리법)
50 1000	산화 동	2712 20 0000	파라핀 왁스
50 2000	수산화 동	90 1010	슬랙왁스 및 케일왁스
90 1030	산화 석	90 1020	마이크로 크리스틸린 왁스
90 1090	기타	90 1090	기타(왁스)
2826 19 2000	플루오르화 안티몬	3402 11 0000	음 이온성의 것
19 9000	기타(불화황산염)		(합성세제)
90 2000	플루오르화 규산	12 0000	양 이온의 것
	칼슘		(합성세제)
2840 20 0000	기타 봉산염	20 0000	소매용조제품
2921 42 1000	아딜린의 니트로 할로겐화		(합성세제)
	유도체		
2928 00 9090	기타(벤조씨미트)		
2931 00 9090	기타(비스옥사이드 등		
	6종)		

HS	품목	HS	품 목
3905 11 0000	초산비닉 종합제	10 9000	기타(재봉사)
	(목재용 접착제)	5508 10 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19 0000	기타(목재용 접착제)		(재봉사)
3906 90 0000	기타(목재용 접착제)	10 9000	기타(재봉사)
3909 10 1000	요소수지(목재용 접착제)	9004 90 9090	기타(수경)
20 0000	메라민 수지(목재용 접착제)	9506 99 0000	기타(롤러스케이트)
40 0000	페놀수지(목재용 접착제)	(외국환관리법)	
4015 19 0000	기타(가정용 고무장갑)	7108 11 0000	분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2 1000	럼프, 빌레트 및 입반도체
5204 11 0000	100분의 85이상인 것(재봉사)		제조용의 것
	기타(재봉사)	13 1010	기타
19 0000	소매용의 것	13 1090	봉과 형재
	(재봉사)	13 9010	파느 쉬트 및 대
20 0000	나이롱 또는 기타	13 9020	기타(금 또는 금의
5401 10 1000	폴리아미드의 것	13 9090	가공품)
	(재봉사)	20 0000	화폐용의 것
10 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7113 19 2000	금제의 것
	(재봉사)	7114 19 1000	식탁용의 것
		19 2000	화장실용의 것
		19 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19 4000	끽연용의 것
		19 9000	기타(금 또는 금의 기공품)
		19 9030	관

H S	품 목	H S	품 목
19 9090	기타(금 또는 금의 가공품)	(원자력법) 9030 10 000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20 0000	화폐용의 것		
7115 90 9010	금제의 것		
(석유사업법)			
2715 00 3000	매스틱		
00 9000	기타		

(나) 신규제한

H S	품 목	H S	품 목
(약사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0511 99 9090	기타(오공, 金蛙)	2827 39 9000	삼염화 안티몬
1207 91 0000	양귀비 씨	2841 90 3000	안티몬산염
99 0000	기타(대마종자)		
1209 30 0000	화초용초본식물의 종자(아편앵속)	(식품위생법) 2106 90 9090	추출·농축·혼합된 영양 등 식품
2903 59 0000	기타(BHC, 린데인, 헵타클로로알드린 메틸브로마이드)		
9001 30 0000	콘텍트 렌즈		
9019 10 2000	맛사아지용 기기 (물리치료용 견인장치)		
9402 90 1000	수술대(의료용)		

HS	품목	HS	품목
(환경보전법)			
0106 00 3000	양서류(뱀)	2908 10 9000	기타(데카브로모디페
00 4000	파충류(뱀)		페닐 옥사이드
2826 11 2000	플루오르화 나트륨		등 7개)
2902 90 9000	기타(탄소수 9개인 방향족	2909 19 0000	기타(메틸클로로 메틸
	탄화수소류)		에텔, 암페프
2903 19 1000	삼염화 에탄		라몬)
19 9000	기타(펜타클로로에탄)	30 9000	기타(니트로펜, 1,2-
			비스 - 에탄)
19 9000	기타(비닐플로오라이드,	2910 20 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
	테드라플루오르		옥사이드)
	에텐헥사플루오르	2914 70 9000	기타(클리오 퀴놀)
	프로펜)	2915 90 0000	기타(2 - 에틸헥사니
			옥산)
40 9090	기타(클로로플루오르	2916 39 9000	기타(알프(크)로 페낙)
	카본류)	2918 19 3090	기타(클로로 벤질레이트)
59 0000	기타(미렉스)		
61 1000	클로로 벤젠	29 9090	기타(3.5 - 디클로로
69 9000	기타(PCB 동족 화합물)		살리실산)
		90 0000	기타(실벡스(페노프)
2904 20 9090	기타(펜타크로로니트로벤젠)		릅. 2,4,5 -
			TP, 2.4.5 -
2907 22 1000	히드로 퀴논		트리클로도폐
23 1000	4.4- 이소프르 필리		녹시아세틱산,
	덴티페놀(비스		클로피브레이드)
	페놀에이)		

H S	품 목	H S	품 목
2921 45 9010	1 - 나프틸아민(알파 나프틸아민)	20 0000	스트렙토마이신과 그 유도체. 염
2921 59 9010	벤지 딘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2922 49 9000	기타(우레탄)		
2924 10 9000	기타(헥사메틸포스프로아미드, 프락토콜)	3201 90 2000	탄닌산과 그 염 (탄닌프리퍼 레이션)
29 9090	기타(페나세틴, 알리스틴)		
2933 19 9010	페닐 부타존		
59 1990	기타(누아리몰)		
59 2010	피페라진		
90 9000	기타(아미트롤, 카벤다짐)		
2937 10 0000	뇌하수체호르몬 등과 그 유도체		
99 2090	기타(디. 엠. 피. 에이)		
2940 00 2090	기타(아자리빈)		
2941 00 9020	페니실린 브이		
00 9090	기타(벤질페니실린 나트륨)		

다. '89. 1.1 통합공고 개정(산업폐기물 수입관리요령 개정)

(상공부고시 제 88-56호, '89.1.1 시행)

(1) 추진경위

○ 환경청에서 유해폐기물의 수입제한 요청('88.7.29)
-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PCB 함유 폐기물 등 50 여종

○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에 의견문의 및 관계자 회의('88.8.26 ~ '88.10.13)

○ 산업폐기물 수입관리요청(안) 작성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88.11)

○ 최종안 마련을 위한 관자계 회의('88.12.23)

(2) 기본방향

(산업 폐기물의 문제는 수입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유입된 폐기물의 처리 등 사후관리 문제임)

○ 수출입별도공고에서 규제하던 품목을 통합공고로 이관(광재, 재생 프라스틱 등 13개)하고 신규로 27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0개품목의 산업폐기물에 대해 통합공공에 의한 수입관리

○ 독성여부와 무역거래 유무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수입관리
- 무역거래 가능성은 희박하나 국내 유입되어서는 안될 유해산업폐기물은 수입금지
- 무역거래 가능성은 적으나 국내유입되어 재생·이용 가능한 산업폐기물은 환경청의 승인
- 무역거래가 빈번하고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산업폐기물은 최소한 규제(신고·추천)로 함.
  · 수입자·수입실적 등 통계를 분기별로 환경청에 보고토록 하여 사후관리자료로 사용

(3) 관리대상품목의 분류

구 분	규 제 대 상 품 목	비 고
수입금지 (15개)	○ 분진류, 수은함유 오니 및 오수, PCB가 함유된 폐기물, 수은제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동이 함유된 오니, 카드뮴이 함유된 오니 등	무역거래 가능성은 희박하나 국내에 유입되어서는 안될 유해쓰레기 등 폐기물
승 인 (재생이용) (5개)	○ 재정제용 폐유, 동의 인발에서 발생한 슬러지, 폐절 연전선, 카드뮴함유 폐건전지 스크랩, 폐건전지의 스크랩	무역거래 가능성은 적으나 재생·이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의무)
신 고 (11개)	○ 슬랙 및 드로스등, 타르매캐담, 철강의 슬랙등, 용광로 슬랙등(5), 광재 ○ 폐절연 전선, 전해액이 제거된 폐밧데리	무역거래도 빈번하고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 국제적 NARI - SPEC으로 거래되고 공업용 원료로 사용
추 천 (9개)	○ 재생 프라스틱류(9)	

Ⅴ- 8. 1989년의 통합공고 운용

가. 1차개정('89. 3. 8)

1) 추진배경

○ 정부는 경제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과제별 실무대책반"의 하나로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해소와 흑자관리를 위한 수입확대추진을 위해 "특별법상 수입제한제도 개선대책반"을 구성('88. 12. 26)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끝에 30개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9. 2. 17 관련부처 장·차관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발표한 바 있다.

○ 상공부는 동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공부 고시("통합공고")로써 우선 반영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약사법, 담배사업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수산산업법등의 품목 및 수입요령을 '89. 3. 8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하였다.

○ '89. 2. 17 관계부처간에 합의사항중 금번 통합공고 개정내용에 반영될 수 없는 부처별 법령 및 고시·공고 등의 개정사항은 각 부처별로 대부분 '89 2/4 분기중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인바 상공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방안의 조기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통합공고 개정 내용

가) 약사법

〈대책반 합의〉

○ 111개 원료의약품(의약품수출입협회 추천품목) 및 4개 의료용구(의료용구공업 협동조합 추천품목)를 신고품목으로 전환하여 절차 간소화(별첨1 참조)

○ 수입금지된 83종의 한약재(통합공고 품목지정 19개(HS기준 9개), 별도의 보사부고시로 지정된 품목 63개(HS 기준 1개)중 9개를 완전자유화하고 나머지 74개를 의약품수출입협회 추천으로 변경(별첨2 참조)

-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목은 추천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수급물량을 협의조정키로 하고 총칙에 근거조문 규정

○ 수입금지된 원료의약품 12종 및 완제의약품(2개 약효군)의 단계적 개방(신고, 허가)년도 예시(별첨 3 참조)

○ 최초수입시에 한하여 수입추천, 허가를 받도록하고 2번째 수입부터는 신고후 수입토록함(조문신설 : 제17조)

○ 의약품등 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의무부과 폐지(기존 제17조 삭제)

〈기 타〉

○ 치과용 재료의 품목지정 오류를 개선(별첨 4 참조)

- 치과용물품을 재질개선으로 분류하여 잘못 지정된 HS 2843(금, 은, 백금화합물 등) 11개 품목을 삭제하고 HSK에 치과용 물품으로 세분류된 HS 300640.1000(치과용시멘트), HS 300640.2000(치과용 충전제), HS 340700.2000(치과용 인상재료등), HS 390610.390690(의치등의 재료)등 5개 품목으로 지정품목을 변경

나) 독극물법

○ 환경청의 특정독물 및 극물의 지정과 해제에 따른 품목의 요건변경(별첨품목 참조)

○ 독극물법 적용 시험연구용 시약의 품목등록, 허가, 면제(대책반 합의)(제8조 기반 조치 '88.12.30)

다) 담배사업법, 인삼사업법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제조담배 11종의 전면 수입자유화(별첨품목 참조)(대책반 합의)

○ 식품위생법 대상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삼류 1종(HS 2106 90 3019 기타)삭제

라) 비료관리법

○ 상공부 장관 추천품목 2개(요소, 황산칼륨)을 비료공업협회에 추천으로 위임

○ 농업용 비료('87.12 산정심에서 '90자유화 의결)외의 공업용비료는 비료공업협회의 추천 폐지

- "요소, 황산칼륨, 질산암모늄" 3개품목은 농업용비료로 전용이 가능하므로 사후관리 목적으로 비료공업협회의 추천품목으로 존치

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농가입식용 여우"는 사양의 것이므로 야생의 조수에 대해 적용되는 조수보호법 대상이 아니고, 입식농가의 판단으로 질좋은 여우를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도록 동품목의 규제해제

○ 조수보호법 대상품목으로 별표Ⅴ에 지정되고 있으나 수입요령에 HSK 품목지정이 누락된 품목을 추가(야생여우, 야생토끼, 다람쥐, 상아)

바) 수산업법

○ 금잉어, 열대어, 초어, 성게, 파래, 우뭇가사리, 말 등은 수산청장의 이식승인 및 추천제 폐지(별첨품목 참조) 〈대책반 합의〉

- 대신 수산물에의 병충해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식을 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관전에 국립수산진흥원의 검사(원산지의 전문기관 발행 병충해 미감염증명서 첨부)를 거치도록 함.

사) 공산품품질 관리법

○ 안전과 관련되는 품목으로 사전검사품목 축소(17개→12개)(별첨품목 참조) 〈대책반 합의〉

- 사전검사 해제품목 : 골판지용 라이너, 골판지용 골심지, 등산용버너, 직물제포대, 아동용 이륜자전거

〈첨부 : 통합공고 수입요령 변경대상품목〉

〈별첨 : 1〉 (약사법 : 추천→신고 111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921 41 2000	아닐린의 염	2937 29 1000	코르티코스 테론
42 9000	기 타	29 9000	기 타
43 9090	기 타	2939 21 0000	키닌과 그 염
49 0000	기 타	29 9000	기 타
2922 49 6000	페닐글리신	30 0000	카페인과 그염
2924 21 9000	기 타	50 0000	테오피린 아미노피린(오피린 에틸렌아민) 및 그들의 염
		60 0000	맥각 알카로이와 그 유도체
2924 29 9010	염산리도카인		이들의 염
9090	기 타	70 0000	니코틴과 그염
2933 11 1000	(1)메틸렌비스	90 1000	아트로핀과 호미트로핀
	(1-페닐-2, 3-	2000	아레코린
	…… 조론 -5)	2941 10 9020	페니실린 브이
	(2)기타	9090	기 타
9010	아미노 페나존	20 0000	스트렙토 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염
9030	설피린		
9040	이소프로 안티피린		
9090	기타(아미노티피린)	30 1000	클로로테트라 사이클린
19 9000	페닐 부타존	2000	염산 옥시 테트라 사이클린
9090	기 타		
31 1000	피리딘	9000	기 타
2000	피리딘의 염	30 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 사이클린
39 1000	이소니코틴산 하이드라짓드	40 0000	4. 클로람 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3 40 9000	기 타	50 0000	5. 에리즈로 마이신과 그 유도체 및 그들의 염
2933 90 3020	메벤다졸		
9000	기 타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933 59 3090	기 타	2941 90 9020	레더 마이신
		2941 10 1000	페니실린 G 칼륨
		9010	페니실린 G 나트륨
2935 00 6000	술파 메톡사졸	2942 90 9030	황산 겐다 마이신
8090	기 타	9040	로이코 마이신
9090	기 타	2939 90 3000	피페린
2937 10 0000	뇌하수체 호르몬과 이와 유사한 호르몬	9000	기 타
		3001 10 9000	기 타
21 1000	코르티손	20 1000	선 추출물
2000	하이드로 코티손	2000	간장 추출물
3000	프레드 니손	3000	담낭 추출물
4000	프레드 니손론	4000	췌장 추출물
22 1000	덱사메타손	5000	위장 추출물
2000	플루시놀론 아세토 니이드	9000	기 타
		90 9090	기 타
		3002 10 1000	혈액 분획물등
		9020	혈청과 혈장
9000	기 타	3002 10 9010	면역혈청
91 1000	인슐린	20 0000	백신(인체 의약용의 것)
2000	인슐린의 염	31 0000	구제역 백신
92 1000	에스트로 겐	39 0000	기 타
2000	프로 게스트겐	90 1000	인 혈
99 1100	에티닐 에스트 라디올	2000	동물의 피(치료용 예방용 또는 전단용으로 조제한 것)
1200	리네스트레놀	3000	독소, 톡소오이, 크리프독소 및 항독소
1310	우선성…놀게	4000	미생물 배양체
1320	좌선성…놀게	5000	바이러스 및 항 바이러스
	스트렐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937 99 1400	노리에티 스테론	3002 90 6000	살균소
	아세테이트엠투오	9000	기 타
1500	노래 친드론	3003	완제의약품중 원료용
2937 99 3000	뇌하수체 후엽	3004	완제의약품중 원료용
	호르몬	3006 20 0000	혈액형 분류형 약제
2937 99 2010	에스트론	3306 90 1000	구강 위생제품류
2020	프로 게스테론	2000	치과 위생제품류
2090	기 타	3502 90 2000	기타 알부민
2937 99 4000	갑상선 호르몬	3504 90 2000	핵산 단백질
5000	부신수질 호르몬	2030	유리 단백질
6010	테스토 스테론	2090	기 타
6020	안드로 스테론	3822 00 1000	진단용 조제시약
6090	기 타	2390 2400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9000	기 타		중간 생성물
〈의료용구 : 추천→신고〉			
9010 90 1000	자기 치료기		
9018 39 1000	수액 수혈셋트(정맥유도관은 '90.3까지 추천제 존치)		
9021 40 0000	보청기		
9022 11 1090	방사선 진단장치		

〈별첨 2〉

수입요령 변경 한약재

가. 약사법상 규제해제품목 : 9개

○ 1211909090 (능실, 목통, 당약, 인진호, 도엽, 차전초, 위령선)

○ 1404101000 (오배자)

나. 수입금지→추천 품목 : 74개

○ 0510009090 기타(해구신, 백강잠, 복령)
0511999090 기타(건사)
0714909000 기타(갈근)
0814001000 감귤류와 껍질(진피)
2000 멜론의 껍질(진피)
0904120000 분쇄한 것(산초)
1008900000 기타곡물(의이인)
1211905000 두충(두중)
1104291000 율무의것(의이인의 것)

1211909090 기타

(1)치자 (2)고삼 (3)구기엽 (4)오미자 (5)대황 (6)만형자 (7)목과
(8)방풍 (9)백출 (10)대정광 (11)세신 (12)시호 (13)오가피 (14)우슬
(15)자소엽 (16)차전자 (17)택사 (18)황국(감국) (19)황기 (20)현호색 (21)강활
(22)괄루인 (23)길경 (24)당귀 (25)옥죽 (26)만삼 (27)후박 (28)백작약
(29)사삼 (30)소자 (31)연교 (32)은행엽 (33)결명자 (34)이의인 (35)지황
(36)창출 (37)패모 (38)황백 (39)향부자 (40)복분자 (41)고분 (42)구기자
(43)낭탕근 (44)맥문동 (45)독활 (46)목단피 (47)반하 (48)백지 (49)백하수오
(50)산약 (51)시엽 (52)천궁 (53)용담 (54)음양곽 (55)애엽 (56)지모
(57)천마 (58)황금 (59)황정 (60)현삼 (61)산수유 (62)적작약 (63)형개

〈별첨 3〉 수입금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개방예시

HS번호	품 목 명	개방(신고,허가)예시일	비 고
2842 90 9000	기타(히드로탈사이트)	'90. 1. 1. 신고	원료의약품
2906 13 2000	이노시톨	'90. 1. 1. 신고	〃
2924 21 9000	기타(프로클루마이드)	'90. 1. 1. 신고	〃
2930 90 9090	기타(S-카복시메칠시스테인)	'90. 1. 1. 신고	〃
2932 90 9000	기타(염산 라니티딘)	'90. 6. 1. 신고	〃
2939 90 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디젤염산 에칠		
2000	아레코린 에페드린)	'90. 1. 1. 신고	〃
3000	피페린		
9000	기 타		
2941 90 9010	황산가나마이신	'90. 1. 1. 신고	〃
2941 90 9090	기타		
	(1)염산세프메심	'89. 3. 1. 신고	〃
	(2)세포페라존나트륨	'89. 9. 1. 신고	〃
	(3)리팜피신	'90. 1. 1. 신고	〃
3003, 3004	완제의약품(기타순환계용약)	'90. 1. 1. 신고	완제의약품
3003, 3004	완제의약품(캅셀류)	'90. 1. 1. 신고	〃
3507 90 9000	기타(세라치오펩티다제)	'90. 7. 1. 신고	원료의약품
9602 00 1000	젤라틴 캡슐	'90. 1. 1. 신고	원료의약품

〈별첨 4〉 치과용 재료의 품목지정 변경

가. 품목지정의 해제 : 11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2843 10 1000	콜로이드 은	2843 21 1000	반도-은화합물
2000	콜로이드 금	21 9000	기타 은 화합물
3000	콜로이드 백금	30 1000	반도-청산칼륨
9000	기 타	30 9000	기타 금 화합물
90 1000	귀금속-아말감	90 9090	기 타
90 9010	백금 화합물		

나. 품목지정 신규 : 5개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3006 40 1000	치과용 시멘트	3906 10 0000	플리매타-메칠
2000	치과용 충전제	90 0000	기 타
3407 00 2000	치과용왁스 및 인상재료		

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신설 : 4개품목, 삭제 : 1개품목)

H S	품목명	수 입 요 령	H S	품목명	수 입 요 령
0106 00 1020	토 끼	시, 도지사 허가	0106 00 1080	다람쥐	시, 도지사 허가
0507 10 1000	상 아	시, 도지사 허가	0507 10 9000	기 타	시, 도지사 허가
0106 00 1060	여 우	(삭제 : 농가입식용)			

3.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요령조정 품목수 : 9개, 신규 : 5개, 삭제 : 1개)

H S	품 목 명	수 입 요 령 조 정 내 용	
		현 행	개 정
2848 90 1000	인화알루미늄		품목등록
2930 90 2090	기타(알파나프틸티오우레라)		품목등록
2903 40 1090	기타(디브로모클로로프로판)		품목등록
19 9000	기타(클로로 피크린)	품목등록	품목등록(추가)
2932 90 9000	기타(이소벤잔)		품목등록
2910 30 0000	클로로-히드린(에피클로로하이드린)		품목등록
2801 30 2000	브롬(취소)	수출입업등록	품목등록
2811 19 9000	기타(시안화수소, 붕불화수소산)	품목등록	품목등록
			(적용범위 구체화)
2833 29 9000	기타(황산카드뮴등)	품목등록	수출입업등록
2841 50 9000	기타(중크롬산알미늄등)	품목등록	수출입업등록
2903 30 1000	브로모 메탄(취화메탄)	수출입업등록	품목등록
2000	브로모 에탄(취화에탄)	수출입업등록	품목등록
2909 19 0000	기타(비스클로로에틸에테르)	신고	품목등록
2924 10 9000	기타(플로로아세트아미드)	수출입업등록	품목등록
2811 19 0000	기타	수출입업등록	AA

4. 수산업법(삭제 : 7개품목)

H S	품 목 명	수 입 요 령	H S	품목명	수 입 요 령
0301 10 1000	금 잉 어	이 식 승 인	1212 20 4010	파 래	이 식 승 인
10 2000	열 대 어	이 식 승 인	6000	우뭇가사리	이 식 승 인
90 9010	성 게	이 식 승 인	8030	말	이 식 승 인
99 3000	초 어	이 식 승 인			

5. 인삼사업법(추천→AA : 1개품목)

담배사업법(추천→AA : 11개품목)

H S	품 목 명	수입요령	H S	품목명	수 입 요 령
2106 90 3019	기 타	인삼사업법	2402 10 1000	엽권련	담배사업법
			2000	엽권련형 권련	
			3000	소형엽권련	
			20 1000	필터담배	
			9000	기 타	
			2403 10 1000	파이프 담배	
			9000	기 타	
			99 1000	씹는 담배	
			2000	코 담배	
			3000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9000	기 타	

6.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해제 품목

법 률 명	H S	품 목 명	사전검사상품명	비 고
공산품품질	4802 60 9000	기 타	(골판지용 골심지)	'89.7.1부터
관리법	4804 11 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골판지용 라이너)	검사의 해
(15개품목)	19 0000	기 타	(〃)	제를 시행
	4805 10 0000	반화학 후로팅지	(〃)	
	70 9000	기 타	(〃)	
	21 0000	각층을 표백한 것	(〃)	
	22 0000	외부의 …한 것	(〃)	
	23 0000	3층이상의 …것	(〃)	
	29 0000	기 타	(〃)	
	6305 90 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직물제포대)	
	7321 11 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	(등산용버너)	
		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	(〃)	
	2000	액체 연료용의 것	(〃)	
	7417 00 9040	알콜 및 …온기	(〃)	
	8712 00 9090	기 타	(아동용이륜자전거)	
	9501 50 8000	기 타	(아동용이륜자전거)	

나. 2차개정('89.7.1시행)

1) 개정배경

○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입 자유화 예시 계획발표('89.4.8) 내용중

- 일부는 "수출입공고"에 의해 가히 자유화 또는 자유화 예시조치된 바 있으나('89.6.9)
- 일부 개별법 관련품목에 대하여 금번 "통합공고"개정을 통해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임

* 년도별 개방 예시계획

구 분	'89	'90	'91	계
계	82	76	85	243
수출입공고 대상	74	65	76	215
통합공고 대상	8	11	9	28

○ 이와함께 일부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의 해제와 농약에 대한 추가수입자유화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형식승인 규정의 신설등에 따라 통합공고를 개정하게 되었음.

2) 주요개정 내용

○ 양곡관리법 및 사료관리법

- 양곡관리법 : 이집트콩 등 3개 자유화
- 사료관리법 : 들깨유박 등 5개 자유화
  (이중 수지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지역제한은 현형태로 존치되며 기타 배합사료 중 대용유는 해제보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89.2.17 관계장관회의시 합의사항)

- 전기앙카등 18개품목에 대한 형식승인 해제
- 전자식 네온 변압기 1개품목 추가(누락분 추가)

○ 농약관리법('89.2.17 관계장관회의시 합의사항)

- Acephate 등 59개 품목 자유화(현행 19개→78개)

○ 자동차관리법

- 117개 품목의 형식승인 추가(HS기준 변동없음)

* 환경보전법에 의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검사등 기실시

3) 향후 개별법 개선 추진계획

- 관계장관 회의시 합의사항('89.2.17)중 미개선사항 및 한미통상 협상결과 합의사항에 대한 조기개선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추가개선 작업 추진

○ 추진일정

- 관련부처별로 개선사항에 대한 작업추진현황 점검 및 이행촉구
  : '89. 6. 공문 기발송
- 부처별 작업추진현황 및 개선계획 자료취합(필요시 수입관련 단체방문조사 병행) : '89. 7~8
- 「개선대책반」작업을 통해 종합개선안 마련 : '89. 9~10
- 개선안 시행추진 : '89. 12

○ 주요개선 계획

〈'89년내 개선〉

○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 허가제폐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로 단일화)

○ 석유사업법 : 원유, 윤활유등 일부 유종에 대한 석유수출입업 신고제 폐지

○ 축산법 : 종축, 종돈 등 10개품목에 대한 추천 또는 쿼타제 폐지

○ 잠업법 : 상묘 수입 허가제 폐지

〈'90년이후 개선〉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축소조정(안전도에 따라 1.2종으로 구분)

○ 영화법 및 음반법 : 공연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단심으로 함.

○ 주요농작물 종자법 및 종묘관리법 :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개방예시(90-92)

○ 농약관리법 : '89년부터 5년에 거쳐 수입가능 완제품 확대(20개→416개)

○ 전파관리법 : 무선기기 형식점검 규칙 개정

○ 식품위생법 : 수입가능 첨가물의 확대

* 개별법상 수입제한 현황

유 형	품목수	규 제 목 적	해 당 법 령 명
1. 순수절차적 관리	1,797	○국민보건 및 안전유지 등	○약사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등 25개
		○공중도덕 보호	○음반법, 영화법 등 3개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 등	○전파관리법, 원자력법 등 4개
2. 물량규제	177	○부족자원의 확보	○석유사업법, 조수보호법
		○기타 관세행정 등	○관세법, 문화재보호법
		○국내유치산업 보호 및 수급안정	○양곡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전매수익 확보	○담배사업법, 인삼사업법
계	1,974		40개 법령

Ⅴ- 9. 1990년의 통합공고 운용

○ 상공부는 주요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완화와 GATT 등 국제관행과의 합치를 위해 지난 '87년이래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종법률에 의한 수입제한 제도의 개선을 국내무역제도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음.

○ 금번에는 현행 약사법등 12개법률에 근거한 수입제한 품목중 기발표된 수입자유화 계획에 의거 년도별로 자유화 하기로 예시된 품목등을 수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민보건 위생이나 환경오염 방지등을 위하여 수입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신규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행 통합공고의 개정을 통해 약 200여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한 수입절차 및 요령등을 '90.1.1부터 변경시행키로 함.

○ 상공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개방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생활이나 환경보전등에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등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GATT등 국제관행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종 규격, 기준의 명료화등을 통해, 수입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임.

가. 국민보건 위생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수입제한

○ 금번 통합공고의 개정을 통해 신규로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은 국민보건위생이나 환경오염등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 합성화학물질 및 산업폐기물등으로서 그 세부 현황은,

- 환경청장에서 사전신고후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수입가능한 품목 : 헥산, 벤젠등 30개 품목(환경보전법 대상)
- 신규수입 금지품목 : 폐황산, 폐염산, 폐질산 등 12개 품목(폐기물 관리법 대상)

- 환경청장에게 재생·이용승인을 받은 자만이 수입가능한 품목 : 고무스크랩, 폐산화철등 4개품목(폐기물관리법 대상)
- 관련단체에 신고 또는 추천을 득한 후 수입가능한 품목 : 11개품목(약사법 대상)
-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가능한 품목 : 전기펌프 등 3개품목(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89. 4. 8)의 이행

○ 현재 수입제한을 받고 있는 일부품목중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등의 이행을 위해 금번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품목은,

· 귀리, 호밀 등 18개 품목(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대상)
· 상치류 종자등 1개 품목(품목기준 3개, 종묘관리법 대상)
· 아시트 입제(살충제)등 농약 3개품목(농약관리법 대상)

다. 인체유해 또는 환경오염등의 우려가 적어 수입절차등이 간소화 되는 품목

- 한·미 통상협상결과 합의사항의 이행등을 중심으로 -

· 사전신고 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 췌장, 담즙 등 동물약품 및 원료의약품 63개 품목(약사법 대상)

· 추천대상에서 신고로 그 절차가 완화되는 품목 : 피페린, 나르코틴 등 원료의약품 37개(약사법 대상)

· 수입지역 제한이 완화되는 품목(탈모후 산처리한 품목은 지역제한 완화) : 소원피 등 17개(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상)

· 사전승인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 슬랙, 드로스 등 11개 품목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대상)

* 개정 내용 요약

(단위 : HS 10단위 품목수)

개 선 내 용	품목수	관 련 법 령 상	비 고
1. 신규수입제한	60		
○ 환경청장 사전신고	30	환경보전법	
○ 환경청장 사전승인	4	폐기물관리법	
○ 수입금지	12	〃	
○ 사전추천, 신고	11	약사법	
○ 형식승인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 기수입 자유화 예시된 품목의 해제등	22		
○ 추천해제	19	양곡, 사료관리법, 종묘관리법	
○ 수입금지→등록후수입	3	농약관리법	
3. 수입절차 간소화	129		
○ 사전신고등 해제	63	약사법	
○ 수입추천 → 신고	37	약사법	
○ 지역제한 완화	17	가축전염병 예방법	
○ 사전승인 해제	6	폐기물관리법	
○ 신고면제	5	환경보전법	
○ 기 타	1	석유사업법	
계	211		

* 일부품목은 중복계산

1) 국민보건 위생 및 공해방지등을 위한 신규수입규제 : 60개

(HS 10단위 기준)

관련법령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환경보전법	2848909000	기타(알킬아릴포스핀)	2909440000	에틸렌 글리콜
- 사전신고대상	2901102000	헥 산		(디 엘렌틸 글로콜 부
(30개)	2903161000	1.2.-이염화프로판		틸 에테르)
	230000	사염화 에틸렌	2902200000	벤 젠
		(트리콜로로에탄)	2909509000	기타(테트라등)
	309000	기타(클로로푸루오	2910900000	기 타 (헵 타 글 로 로 부
		르카본류 등)		틸에테르 등)
	2903621000	헥사클로로벤젠	2914900000	기타(메시톨옥사이드 등)
		(기타 품목)	610000	안트라 퀴논
	699000	기타(디디디 등)	2914709000	기타(클로로데콘 등)
	2905500000	비환식 알콜의	2915399000	기타
		할로겐화유도체	909000	기 타 (초 산 디 에 칠 렌
		(프로파놀 등)		글로콜 부틸에테르)
	2907139000	기타(노닐페놀 등)	2917199000	기타(디클로로프로프)
	2908109000	기타(브로몰등)	2919001090	기타(퓨미론)
	2908901000	니트로화유도체	2921199000	기 타 (인 산 브 로 모 에
		(니트로 페놀)		틸 등)
	2920109000	기타(프레이트)	599090	기타(마젠타)
	2921291000	디엘틸렌 트리	2924109000	기타(알리클로로)
	2922499090	기타(데칸산)		
	2926909000	기타(마르노니트린)		
폐기물관리법	2806100000	염화 수소	2837111000	시안화 나트륨
(12개)		(폐 염산)		(폐시안화물)
- 수입금지	200000	클로르 황산	191010	시안화 칼륨
		(폐클로로황산)		(폐산화 시안화물)
	2807001000	황산(폐황산)		
	2000	발 연 황 산 (발 연 황 산	191020	시안화 동
		폐액)		(폐시안화착염)
	2808001000	질산(폐질산)	1030	시안화 아연
	2811119000	기타(페플루오르화	2815111000	가성소다(고체)(폐액)
		수소산)	120000	가성소다(액체)(폐액)

관련법령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 사전승인 대상(4개)	3823907800 4017001000 2000	폐 산화철 경질고무 경질고무의 제품	271390000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
약사법 - 추천・신고 대상(11개)	2934909020 2915901000 2922412000 3000	7-아미노디아 세록시세팔로스 네오 테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 클로라이드 리신의에스테르 리신의 염과 리신 에스테르의 염	2924291020 291090 2922504000 2930909060 2934909090 2941509000 9018201000	아세테아미노펜 기 타 디알파 히드록시페닐 히드록 8-클로로-6 토시록탄산 에틸 에스테르 기 타 기 타 자외선, 적외선 기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형식승인 대상(3개)	8413810000 8539393000	펌프(전기펌프, 전기우울펌프) 메탈할 라이트 램 프	8414590000	기타(씨큐레이트, 송풍기, 환풍기, 선풍기)

2) 기 수입자유화 예시된 품목의 해제등 : 22개(HS 10단위 기준)

관련법령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양곡관리법 (7개)	1001100000 901000 1001909000 1002000000	두럼종의 밀 메슬린 기 타 호 밀	1004000000 1102100000 200000	귀 리 호밀가루 옥수수가루
사료관리법 (16개)	1001100000 901000 9000 1002000000 1004000000 1214100000 1214909000	두럼종의 밀 메슬린 기 타 호 밀 귀 리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페리트 기 타 (알팔파큐브, 알팔파 베일)	2309901030 2308900000 3103100000 200000 901000 2000 3000 4000 9000	어류용의 것 기타(아몬드훨) (면실 피) 과린신 석회 염기성 슬랙 소성 인산석회 오르트 인산 기타 인산석회 혼합 인산질비료 기타
종묘관리법 (1개)	1209919000	채소종자(상치류, 양배추, 부추)		
농약관리법 (3개)	3808100000 3808301000	살충제 (아세트입계등) 제초제 (알라입제 등)	3808200000	살균제 (캡탄 등)

_____친 품목은 중복

3) 수입절차 간소화 등 : 129개(HS 10단위 기준 : 일부품목 중복)

관련법령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약사법	0510009010	췌 장	3307410000	아가바티와
- 추천, 신고등	9020	담 즙		기타 분향
해제(63개)	1108110000	밀의 것	490000	기 타
	140000	매니옥의 것	901000	탈모제
	1302120000	감초의 것	2000	향 낭
	2710007320	유동 파라핀	3000	콘텍즈 렌즈 또는
	2921412000	아닐린의 염		의인의 액
	439000	기 타	9000	기 타
	2933119010	아미노 페나존	3502101000	난 백
	199010	페닐 부타존	901000	알부민산 염
	211000	히단토인	2000	기타 알부민
	2933391010	이소니코틴 산	3503002000	아이징 글라스
	2533903020	메벤다 졸	3000	기타 동물성 글로우
	2934909010	피란텔파모에이트	3504002010	케리틴
	2939292000	산코닌과 그 유도체	2020	핵산 단백질
	3000	신코니딘과 그 유도체	2030	유리 단백질
	9000	기 타	3000	하이드 파우더
	600000	맥각 알칼로이드와	3505102000	가용성 전분
		그들의 유도체 및	3000	배소 전분
		그들의 염	4000	프리젤라티 나이지드
	700000	니코틴과 그 염	5000	에테르화
	3002102010	헤모글로빈	9000	기 타
	2020	글로부린	201000	전분 그로우
	9020	기 타	2000	덱스티린 글로우
			9000	기 타
			3507907000	펙틴 효소

관련법령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약사법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3507908000	시토크롤 씨
		습포제	4030	피 신
	9000	기타의위생용품	3808200000	살균제
	3303001000	향 수	400000	소독제
	2000	화장수		
	3306902000	치과위생용품류	3917101000	경화 단백질의 것
	3307101000	아프터 세이빙	2000	셀롤 로오스의 것
		로션	4818400000	위생용 타올
	9000	기 타	3307302000	기타 목욕용 제품류
	200000	인체탈취제	301000	가향한 목욕용염
- 추천대상에서 신고로 완화 (37개)	1302199090	기 타	2939901000	아드로핀과호마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2000	아레코틴
		한 것	3000	피페린
	3030	미량 광물질을 주로	9000	기 타
		한 것	2941909010	황산 카나 마이신
	2530904000	주 사	9000	기 타
	2842909000	기 타	2939400000	에페드린과 그염
	2903590000	기 타	3001901000	피부 및 뼈
	2906110000	박하뇌 및 박하환	9010	해파린과 그염
	2906132000	이노시톨	9090	기 타
	2909509000	기 타	2939106000	나르코틴
	609000	기 타	9000	기 타
	2924219000	기 타	4823904000	리트마스 시험지 및
	2930909090	기 타		기타 유사한 시험지
	2932909000	기 타	3808100000	살충제
	2933512000	바로미탈	9602001000	젤라틴 캡슐
	903010	디아제팜	2939104000	에필모르핀
	2939101000	모르핀	5000	인산코데인
	2000	염산 모르핀	7000	파파베린 및 코타르
	3000	황산모르핀		딘과 그들염
			1302120000	감초의 것

관련법령	H S	품 목 명	H S	품 목 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 지역제한 완화(17개)	4101100000 301010 1020 1030 1040 1050 1090 2010 2020	전신 소 원피 카후 스킨 카후 하이드 스티어 하이드 옥스 하이드 불 하이드 기 타 카후 스킨 카후 하이드	4101302030 2040 2050 2090 4102210000 4103100000 901000 9000	스티어하이드 옥스하이드 불 하이드 기 타 산 처리한 것 산양의 것 돼지의 것 기 타
폐기물관리법 (6개)	2618000000 2619001010 1090	철강의 제조시 생기는 슬랙 용광로 슬랙 기 타	2619002000 3000 9000	도로스 스케일링 기 타
석유사업법 - 추천기관 위임(1개)	2710005020	윤활유기유		
환경보전법 - 신고면제 (5개)	2903409000 3808100000 200000	기타(클로로플루오르카본류등) 살충제 (프루발리네이등) 살균제 (새니타이즈드큐에이씨 등)	3808303000 3811900000	식물성장조절제 (와이에스피등) 기 타 (방부제 중 코피등)

〈참고자료〉

통합공고 개정 배경

1. 기 수입 자유화 예시된 품목의 반영

○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예시계획(농림수산부 : '89. 4. 8 발표)
- 양곡관리법 : 귀리등 8개품목에 대한 수입추천해제
- 사료관리법 : 호밀등 16개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해제
  (비농산물 7개 품목 포함)

○ 관계장관회의 합의사항('89. 2. 17)
- 종묘관리법 : 상치류종자등 1개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해제
- 농약관리법 : 수입금지된 아시트 입제등 3개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2. 인체유해여부 검토 및 공해방지등 환경보전을 위한 신규 수입규제

○ 폐기물관리법
- 수입금지 : 폐황산등 12개
- 환경청장의 재생·이용승인을 받은자에 한하여 수입허용 : 고무스크랩등 4개

○ 환경보전법
- 환경청장에게 신고후 수입허용 : 헥산, 벤젠등 30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형식승인 대상품목 추가 : 전기펌프 등 3개

3. 수입절차 간소화 등

○ 한·미통상협상결과 합의사항등의 이행
- 약사법
  · 사전신고대상품목의 축소 : 향수등 원료의약품 및 위생용품 52개
  · 추천대상품목을 신고대상으로 절차완료 : 모르핀 등 36개
  · 기타 원료동물의약품에 대한 추천해제 : 췌장, 담즙 등 22개
    (원료의약품과 일부중복)

○ 수입지역제한완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 탈모후 산처리한 것은 지역제한대상에서 제외 : 소원피 등 17개

주요개정 내용

［총괄］

(HS 10단위)

관련법령	추천등 →해제	추 천 →신고	신 규 규 제	절 차 간소화	비 고
〈수 출〉					
수산업법	3	-	-	-	* 수출 추천대상에서 제외
사료관리법	2	-	-	-	〃
〈수 입〉					
약사법					
- 원료약품	48	36	12	5	한미합의사항이행(사전신고품목해제) HS세분화등으로 신고, 추천품목 추가
- 동물약품	22	2	-	-	국산품경쟁력향상으로 자유화
- 위생용품	4	-	-	-	한미합의사항이행(사전신고품목해제)
양곡관리법	8	-	-	3	수입자유화예시
사료관리법	16	-	-	-	〃 (8개 포함)
종묘관리법	1(3)	-	-	-	관계장관회의 합의사항
농약관리법	3(100)	-	-	-	〃 (수입금지→등록후수입)
가축전염병	1	-	-	16	절차완화(탈모후 산처리한 것 지역제한
석유사업법	-	-	-	1	동자부추천→협회 추천 해제)
공산품품질	-	-	-	2	HS 분류번호 변경
관리법					
전기용품	-	-	3(7)	-	형식승인추가(현행법상의 승인대상
안전관리법					품목과 일치시킴)
폐기물관리법	6	-	16	-	폐황산 등 16개 수입금지 또는 승인
환경보전법	-	-	30	-	신규개발합성화학물 “신고”후 수입허용

( )내는 품목단위 기준임

〔세부내역〕

1. 약사법

○ 주요개정 내용

- 추천 또는 허가 → 해제(61개) : 한미합의사항의 이행등
- 추천 → 신고(36개) : 수입절차 간소화(원료약품)
- 신설 → ┌신고(10개) : HS변동(세분화)으로 품목 추가됨(원료약품)
  └추천(2개) : 리신의 에스테르 및 그 염 추천 추가(동물약품)
- 요령변경(5개) : 오미자(보사부→협의추천), 기타 HS 분류변경 등

○ 세부 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0510009010	췌 장	추천	해제	동물약품
9020	담 즙	〃	〃	〃
1108110000	밀의 것	신고	〃	원료약품
140000	매니옥의 것	〃	〃	〃
1211909090	기타(오미자)	보사부허가	협회추천	연초제조용
1302120000	감초의 것	추천	해제	동물약품
199090	기 타	추천	신고	원료약품
1923909010	7-아미노디아세톡시 세팔로스	-	신고	원료약품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추천	신고	동물약품
3030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			〃
2530904000	주 사	추천	〃	의료용구
2710007320	유동 피라핀	추천	해제	동물약품
2842904000	기 타	금지	신고	원료약품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2903590000	기 타	추천	신고	원료약품
2906110000	박하뇌 및 박화환	추천	신고	〃
2906132000	이노시톨	금지	신고	〃
2909509000	기 타	추천	신고	〃
2909609000	기 타	추천	신고	〃
2915901000	비오테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	신고	동물약품
2921412000	아닐린의 염	신고	해제	원료약품
439000	기 타	〃	〃	〃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	추천	〃
3000	리신의 염과 리신 에스테르의 염	-	추천	〃
2922504000	디엘 하이드록 시페닐 그리신	-	신고	원료약품
2924219000	기 타	금지	〃	〃
291020	인세트 아미노펜	-	〃	〃
1090	기 타	-	〃	〃
2930909000	기 타	금지	〃	〃
9060	8-클로로-6 토시록틴산 에틸	-	〃	〃
2932909000	기 타	금지	〃	〃
2933119010	아미노페나존	신고	해제	〃
199010	페닐부타존	〃	〃	〃
211000	히단토인	추천	해제	동물약품
512000	바로미탈	〃	신고	원료약품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2933391010	이소니코틴산	신고	해제	원료약품
903010	디아제팜	추천	신고	〃
903020	메벤다졸	신고	해제	〃
2934909010	피란텔 파모에이트	〃	〃	〃
909090	기 타	-	신고	원료약품
2939101000	모르핀	추천	〃	〃
2000	염산모르핀	〃	〃	〃
3000	황산모르핀	〃	〃	〃
4000	에필모르핀	〃	〃	〃
5000	인산코데인	〃	〃	〃
6000	나르코틴	〃	〃	〃
9000	기 타	〃	〃	〃
292000	신코닌과 그 유도체	신고	해제	〃
3000	신코니딘과 〃	〃	〃	〃
9000	기 타	〃	〃	〃
400000	에페드린과 그 염	추천	신고	〃
600000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및 그들의 염	추천	해제	동물약품
700000	니코틴과 그 염	신고	해제	원료약품
901000	아드로핀과 호마	금지	신고	〃
2000	아레코린	〃	〃	〃
3000	피페린	〃	〃	〃
9000	기 타	〃	〃	〃
2941509000	기 타	-	신고	원료약품
909010	황산카나마이신	금지	〃	〃
9090	기 타	〃	〃	〃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3001901000	피부 및 뼈	추천	신고	원료약품
9010	해파린의 그 염	〃	〃	〃
9090	기타	〃	〃	〃
3002	동물의 피, 면역혈청	-	허가	HS 통합
3002109010	면역혈청	허가	해제	〃
906000	살균소	〃	〃	〃
9000	기 타	〃	〃	〃
10100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	〃	〃
109020	혈청과 혈장	〃	〃	약품
3002102010	헤모글로빈	허가	해제	동물약품
2020	글로부린	〃	〃	〃
9090	기 타	〃	〃	〃
3002200000	백 신	〃	〃	약품
3003	의약품	허가	허가	요령변경
3004	〃	〃	〃	〃
3005904000	조제드레싱과 습포제	신고	해제	위생용품
9000	기타의 위생용품	〃	〃	〃
3303001000	향 수	추천	신고	의약품
2000	화장수	〃	〃	〃
3305	두발용 제품류	-	허가	HS 통합
3305100000	샴 푸	추천	해제	〃
3306902000	치과위생용품류	신고	〃	위생용품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3307101000	아프터세이빙 로션	신고	해제	위생용품
9000	기 타	〃	〃	〃
200000	인체탈취제	〃	〃	〃
301000	가향한 목욕염	〃	〃	〃
2000	기타 목욕염 제품류	〃	〃	〃
410000	아가바티와 기타분향	〃	〃	〃
490000	기 타	〃	〃	〃
901000	탈모제	〃	〃	〃
2000	향 낭	〃	〃	〃
3000	콘텍즈렌즈	〃	〃	〃
9000	기 타	〃	〃	〃
3502101000	난 백	〃	〃	〃
901000	알부민산염	〃	〃	〃
2000	기타 알부민	추천, 신고	해제	약품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신고	〃	원료약품
3000	기타동물성 글로우	〃	〃	〃
3504002010	케라틴	〃	〃	〃
2020	헥산단백질	〃	〃	〃
2030	유리단백질	〃	〃	〃
3000	하이드 파우더	〃	〃	〃
3505102000	가용성 전분	〃	〃	〃
3000	배소전분	〃	〃	〃
4000	프리젤라티나이지드	〃	〃	〃
5000	에데로화	〃	〃	〃
201000	전분그로우	〃	〃	〃
2000	텍스트린 글로우	〃	〃	〃
9000	기 타	〃	〃	〃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3507907000	팩틴효소	신고	해제	원료약품
8000	시토크롤씨	〃	〃	〃
4030	피 신	〃	〃	〃
3808100000	살충제	〃	〃	〃
200000	살균제	〃	〃	〃
400000	소독제	〃	〃	〃
3917101000	경화 단백질의 것	〃	〃	〃
2000	셀롤로오스의 것	〃	〃	〃
4818400000	위생용 타올	〃	〃	위생용품
4823904000	리트마스 시험지 및 기타 유사한 시험지	〃	신고	의약품
9018201000	자외선, 적외선기기	-	〃	의료용구
9602001000	젤라틴 캡슐	금지	〃	원료약품

2. 양곡관리법

○ 주요개정 내용

- 추천 → 해제(8개) :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에 의거
- 추천기관 변경(3개) : 농협중앙회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세부 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0713310000	녹두	농협추천	유통공사 추천	기타의 것
320000	팥	〃	〃	〃
1001100000	두럼종의 밀	추천	해제	〃
901000	메슬린	〃	〃	〃
9000	기 타	〃	〃	〃
1002000000	호 밀	〃	〃	〃
1004000000	귀 리	〃	〃	HS 삭제
1008100000	메 밀	〃	〃	기타의 것
1102100000	호밀가루	〃	〃	HS 삭제
200000	옥수수 가루	〃	〃	〃
1201000000	대 두	농협추천	유통공사 추천	

3. 사료관리법

○ 주요개정 내용

- 추천 → 해제(16개) :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의거한 8개품목 포함

○ 세부 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1001100000	두럼종의 밀	추천	해제	사료용
901000	메슬린	〃	〃	〃
9000	기 타	〃	〃	〃
1002000000	호 밀	〃	〃	〃
1004000000	귀 리	〃	〃	〃
121410000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페리트	〃	〃	HS 삭제
1214909000	기 타	〃	〃	부분해제
2304901030	어류용의 것	〃	〃	HS 삭제
2308900000	기 타	〃	〃	부분해제
3103100000	과린산 석회	〃	〃	사료용
200000	염기성 슬랙	〃	〃	〃
901000	소성 인산석회	〃	〃	〃
2000	오르트 인산	〃	〃	〃
3000	기타 인산석회	〃	〃	〃
4000	혼합 인산질 비료	〃	〃	〃
9000	기 타	〃	〃	〃

4. 종묘 관리법

○ 주요내용 : 추천 및 종묘업허가 대상품목 → 추천제도 폐지(3개)

○ 세부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1209919000	채소 종자	종묘협회 추천 및 종묘업허가 획득	종묘업허가자에 한하여 수입가능(양배추, 상치류, 부추)	추천폐지

5. 농약관리법

○ 주요내용

- 수입금지 → 농약 수출입등록업자에 한하여 수입가능(아세트입제등 100개)

6. 석유사업법

○ 주요내용 : 동자부 장관 추천 → 윤활유 협회장 추천(윤활유기유 1개)

○ 세부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2710005020	윤활유기유	동자부장관 추천	윤활유협회 추천	

7. 가축전염 예방법

- 현행 지역제한을 받고 있는 품목중 탈모후 산처리한 것은 지역제한을 해제함(17개)

○ 세부 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4101100000	전신 소 원피	지역제한	지역제한 (탈모후 산처리한 것은 제외)	일부변경
4101301010	카후 스킨	〃	〃	〃
1020	카후 하이드	〃	〃	〃
1030	스티어 하이드	〃	〃	〃
1040	옥스 하이드	〃	〃	〃
1050	불 하이드	〃	〃	〃
1090	기 타	〃	〃	〃
2010	카후 스킨	〃	〃	〃
2020	카후 하이드	〃	〃	〃
2030	스티어 하이드	〃	〃	〃
2040	옥스 하이드	〃	〃	〃
2050	불 하이드	〃	〃	〃
2090	기 타	〃	〃	〃
4102210000	산처리한 것	〃	〃	〃
4103100000	산양의 것	〃	〃	〃
901000	돼지의 것	〃	〃	〃
9000	기 타	〃	〃	〃

8. 공산품 품질관리법

○ 주요내용 : HS 품목분류 변경 2개(실제 변동 없음)

○ 세부 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3918101000 2000	염화 비닐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의 것	품질검사	해제 (공기주입보트, 공기주입물놀이기구)	HS변경삭제
3926909000 8903100000	기 타 인플렛 터블식의 것	-	품질검사 (공기주입보트, 공기주입물놀이기구)	HS변경추가

9.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주요내용 : 형식승인 대상품목 7개 추진(현행법상의 승인대상품목과 일치시킴)

○ 세부 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8413810000	펌프	-	형식승인 (전기펌프, 전기우물펌프)	부분추가
8414590000	기타	-	형식승인 (씨큐레이트, 송풍기, 환풍기, 선풍기)	〃
8539393000	메탈할라이트 램프	-	형식승인	〃

10. 폐기물 관리법

○ 주요내용

- 승인 → 해제(6개)
- 신설 : 폐황산 등 12품목 수입금지, 4개 재생·이용 수입

○ 세부 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2618000000	철강의 제조시 생기는 슬랙	환경청 이용신고	해 제	HS 삭제
2619001010	용광로 슬랙	〃	〃	〃
1090	기 타	〃	〃	〃
2000	드로스	〃	〃	〃
3000	스케일링	〃	〃	〃
9000	기 타	〃	〃	〃
2709002000	역청유(원유)	석유협회 추천	환경청 승인후 석유협회 추천	일부 변경
271390000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	환경청 이용승인	HS추가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	수입금지(폐염산)	부분 제한
200000	클로로 황산 (설폰산)	-	수입금지 (페클로로황산)	〃
2807001000	황 산	-	수입금지(폐황산)	〃
2000	발연 황산	-	수입금지 (발연황산폐액)	〃
2808001000	질 산	-	〃 (폐질산)	HS추가
2811119000	기 타	-	〃 (폐플루오르화 수소산)	부분 제한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2281511000	가성소다(고체)	-	수입금지(폐액)	부분 제한
120000	가성소다(액체)	-	〃	〃
2837111000	시안화 나트륨	-	수입금지(폐시안화물)	부분 제한
191010	시안화칼륨		〃 (폐산화시안화물)	〃
1020	시안화 동		〃 (폐시안화착염)	
1030	시안화 아연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신고	환경청장 승인	일부 변경
4017001000	경질 고무	-	환경청장 승인(웨이스트 및 스크랩)	HS 추가
2000	경질고무의 제품			〃

11. 환경보전법

○ 주요 내용

- 신설 : 환경청장 신고(30개) - 신규규제대상 합성화합물에 대한 심사등 필요
- 신고면제 : 유행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미미한 22개품목 신고면제

○ 세부 내용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2848909000	기타(알킬아릴포스핀)	-	환경청장 신고	HS 추가
2901102000	헥 산	-	〃	부분추가
2902200000	벤 젠	-	〃	HS 추가
2903161000	1.2-이염화 프로판	-	〃	〃
230000	사염화 에틸렌	-	〃	〃
309000	기 타 (디브로모 메탄등)	환경청 신고	〃	부분추가
409000	기 타(클로로 푸루오르카 본류 등)	-	〃	〃
2903621000	헥사 클로로 벤젠 (기타 품목)	환경청장 신고	〃	〃
699000	기 타(디디디 등)	〃	〃	〃
2905500000	비환식 알콜의 할로겐화 유도체 (프로파놀)	-	〃	〃
2907139000	기 타 (노닐페놀 등)	-	〃	〃
2908109000	기 타 (브로몰 등)	-	환경청장 신고	부분 추가

H S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2908901000	니트로화 유도체 (니트로화 페놀등)	-	환경청장 신고	부분추가
2909190000	기타	-	〃	HS 추가
440000	에틸렌 글리콜 (디에틸렌글로콜부틸 에테르)	-	〃	〃
2909509000	기타(테트라 등)	-	〃	부분추가
2910900000	기타(헵타클로로에폭 사이드 등)	-	〃	〃
2914900000	기타(메시톨 옥사이드)	-	〃	HS 추가
610000	안트라 퀴논	-	〃	〃
2914709000	기타(클로르테르)	-	〃	부분 추가
2915399000	기타(초산디에칠렌 글로콜 부틸에테르)	-	〃	〃
909000	기타(에틸헥산시옥산)	환경청장 신고	〃	〃
2917199000	기타(퓨미론)	-	〃	〃
2919001090	기타	-	〃	HS 추가
2920109000	기타	-	〃	부분 추가
2921199000	기타(올리아민)	-	〃	HS 추가
291000	디에틸렌 트리	-	〃	〃
2921599090	기타(마젠타)	-	〃	〃
2922499090	기타(데칸산)	환경청장 신고	〃	부분 추가
2924109000	기타(알라클로르)	〃	〃	〃
2926909000	기타(마르노니트린)	-	〃	〃

Ⅴ- 10. 1991년의 통합공고 운용

가. 개정배경

○ UR 협상 진전에 따른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아국의 지위향상에 따른 역할에 부응하기 위하여,

- 통합공고와 관련된 각종 개별법률상의 수입제도 중 국제규범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품목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 보건, 위생 및 안전에 관계되는 품목중 개별법에 의하여 위생검사 또는 형식승인 품목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품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

○ 이와 함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91.1.1부터 자유화하기로 예시된 품목중 통합공고와 관련된 일부 품목을 수입자유화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1) 관련법령 : 약사법 등 14개 법령

2) 관련품목수 : 약 280개(HS 10단위 기준)

○ 신규로 수입절차규정을 적용 받게되는 품목 : 92개
○ 기존의 수입절차규정 적용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 : 52개
○ 수입요령 일부변경 : 77개
○ HS 체계 변경 : 71개

3) 개정 요지

○ 국민보건, 위생 및 안전보호등을 위하여 수입검사, 형식승인등 실시
- 일부 위생용품, 유아용 완구등에 대한 위생검사 또는 품질관리 실시
  · 위생검사대상 : 젓가락, 숟가락, 이쑤시게, 위생종이, 위생용 물 컵, 세척제, 수처리제 등 19개 품목
  · 품질검사대상 : 유아용 작동완구, 재생타이어, 방향제등 23개 품목
  · 품질표시예시 : 모직물, 모혼방직물 등 21개 품목
- 소비자 안전 보호등을 위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검정 실시

· 캠핑용 트레일러, 휴대용 무선전화기, 무선원격조절기기등 24개 품목

- 야생 조수보호등을 위하여 일부 동물성 원료 가공품을 수입허가 대상품목으로 운영

· 상아제품 및 동물의 원피(코끼리 및 꼬뿔소 가죽등) 등 1개 품목

○ 안전성등에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을 기존의 형식승인 또는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

- 일부 전기용품등에 대하여 수입승인전에 실시하던 형식승인절차를 수입후 단순 신고절차로 완화

· 사무용 인쇄기, 전동미싱, 전자후레쉬, 휴대용 전등, 인터폰, 벨, 부쟈, 차임벨, 방범경보기 등 30개 품목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을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

· 일부 공기주입놀이기구(고무제의 베개, 큐션, 매트 등) 및 소형사이클 등 11개 품목

- 수입자유화계획등에 의거 '91.1.1부터 수입자유화되는 품목

· 완두, 강낭콩, 기타콩, 수수, 조, 곡물의 배아, 대두유박등 9개 품목

· 채소종자(무우, 시금치, 당근, 배추), 알파스린유제등 106개 농약품종

4) 법령제 개정내역

관련법령	주 요 개 정 내 용	비 고
약 사 법	○ 동물약품 및 한약재에 대한 통관전 수입신고 의무화 - 한약재 : 의약품수출입협회장 - 동물약품 : 가축위생연구소장	○ 통관전 수입자의 확인으로 통관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의료용구등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품목 추가(HS 불변)	○ 의료용구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각종 구비서류 장비 및 법령 관련조문 정비 - 제조품목증명서등에 대한 주재국 공관장 확인제도 폐지등	○ 불필요한 절차 폐지

관련법령	주 요 개 정 내 용	비 고
공중위생법	○ 수입검사대상품목 추가(HS 19개) - 공중위생용품 - 수처리제, 세척제 등	○ 공중위생용품 등에 대한 검사철저
식품위생법	○ 식품포장, 용기, 기구에 대한 수입검사 의무화	○ 발암물질등 함유용기의 검사강화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강화 - 신고대상품목의 범위 확대	○ 건강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공업용 원료나 식용이 아닌 품목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규제 강화 등(2개) - 식용의 골분, 췌장, 도토리 열매 등	○ 식용원료에 대한 사후 관리강화
	○ 동일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 면제기간 설정 - 초기검사이후 1년범위내에서 검사 면제	○ 검사유효기간 설정으로 검사 강화
식물방역법	○ 수입검사 규정수정 보완 - 수입금지품목이외에 수입검역대상품목에 대한 규제 절차 구체화	○ 식물방역법과 일치
	○ 수입식물의 검역대상품목 추가(2개) - 사탕수수, 기타식물 등	○ 검역대상품목추가
자동차관리법	○ 형식승인 대상품목 확대(9개) - 캠핑용 트레일러 - 화물수송용 트레일러 등	○ 이동식 주택등 사치성 품목에 대한 관리강화
	○ 형식승인 대상품목 면제(4개) - 이륜자전거 등	○ 소형자전거 등 형식승인 해제
양곡관리법	○ 수입추천 면제(9개) - 완두, 강낭콩, 수수, 조, 대두유박 등	○ 수입자유화예시 품목
사료관리법	○ 수입추천 면제(2개) - 수수, 대두유박 등	○ 수입자유화예시 품목
	○ 수입추천 단체 변경(HS 불변) - 배합사료(대용유) ·축협 → 유가공협회	○ 추천단체의 전문성 확보

관련법령	주 요 개 정 내 용	비 고
종묘관리법	○ 채소종자 수입추천 면제(HS 불변) - 무, 배추, 시금치, 당근의 종자	○ 추천품목 축소
농약관리법	○ 수입금지품종을 등록대상으로 완화 - 알파스린 유제등 106개 품종	○ 등록대상품목 확대
공산품품질관리법	○ 사전검사대상품목 추가(23개) - 유아용 작동완구, 재생타이어 등 ○ 사전검사대상품목 면제(7개) - 공기주입놀이기구(고무제의 베개, 쿠션, 매트등 ○ 품질표시대상품목 신설 추가(21개) - 모직물, 모혼방직물 등	○ 유아용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 안전도에 문제없는 품목 면제 ○ 통관전 품질표시확인으로 소비자 보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형식승인대상품목 면제(30개) - 인터폰, 재봉기, 손전등, 인쇄기계 등	○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일부품목을 신고대상으로 완화
조수보호법	○ 수입허가대상품목 추가(1개) - 상아제품, 코끼리 및 꼬뿔소의 가죽	○ 야생동식물 보호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수입허가 대상품목 추가(HS 불변) - 가스총, 모의총기 등	○ 가스총등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전파관리법	○ 형식검정대상품목 추가(15개) - 통신기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등	○ 형식검정품목의 추가

○ 법령별 수입절차관리품목 변경 현황

(HS 10 단위 기준)

대상 법령	구분				비 고
	신규수입 절차관리	수입절차 관리해제	일부요령 변 경	HS 체계 변 경	
공중위생법	19	-	5	-	위생검사대상
공산품품질관리법	44	7	3	-	품질검사대상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30	41	29	형식승인대상
전파관리법	15	-	-	-	형식검정대상
자동차관리법	9	4	3	-	형식승인대상
조수보호법	1	-	1	4	사전허가대상
식물방역법	2	-	-	11	지역제한 또는 검역대상
식품위생법	2	-	9	6	위생허가대상
총포도검화약류법	-	-	2	1	사전허가대상
약사법	-	-	8	1	사전허가대상
양곡관리법	-	9	-	2	추천대상
사료관리법	-	2	1	1	추천대상
가축전염병법	-	-	-	2	지역제한
종묘관리법	-	-	1	-	추천대상
농약관리법	-	-	3	-	등록대상
환경보전법	-	-	-	5	사전신고대상
수산업법	-	-	-	7	이식승인대상
액화가스관리법	-	-	-	2	사전신고대상
계	92	52	77	71	

다. 미반영 현황

관련법령	주 요 개 정 내 용	비 고
양곡관리법	○ 쌀, 보리, 옥수수(팝콘용) 등의 일차가공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요청	○ 농산물등에 대하여 신규 수입규제 곤란
식품위생법	○ 수입수량규제 요청 - 더덕, 양파, 도라지등	〃
조수보호법	○ 산양, 곰등의 가죽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요청 - 시·도지사 허가대상으로 규제요망	○ 가죽가공품 수출업계에 막대한 타격 예상 - 수출산업에 영향이 적은 코끼리 및 꼬뿔소 가죽만 규제
환경보전법	○ 클로로 플루오르 카본류에 대한 신고대상품목 지정 ○ 통합공고에 게기된지 아니한 합성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가능토록 별도규정 신설 요망	○ 별도공고에 의거 규제하고 있음('90. 8. 20) ○ 통합공고에 게기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관리가능 - 필요시 세부품목별로 통합공고에 게기필요
약사법	○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아니한 의약품등에 대해서도 수입제한가능토록 지정변경 요망 ○ 국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수입자에 대한 수입제한 요청	○ 통합공고에 게기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관리가능 - 수입자격규정만 반영 ○ 통합공고상에 반영할 사항은 아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형식승인 대상품목 추가요청 - 플라스틱 전선관류	○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전기용품의 부품형태로서 수입물량도 많지 않음
액화가스법 및 고압가스법	○ 액화가스 및 고압가스 용기등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품목 추가	○ 추후 품목별로 정밀 검토가 필요

라. 각 개별법의 영문명칭

1. 약사법	(pharmaceuticals Act)
2. 마약법	(Narcotics Act)
3. 대마관리법	(Cannabis Control Act)
4.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Psychotropic Substances Control Law)
6. 검역법	(Quarantine Act)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Law)
8. 양곡관리법	(Grain Management Act)
9. 사료관리법	(Animal Feed Management Act)
10. 비료관리법	(Fertilizer Management Act)
11. 농약관리법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12. 가축전염병예방법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Control Act)
13. 식물방역법	(Plant Protection Act)
14. 주요농작물종자법	(Agricultural Seed Act)
15. 종묘관리법	(Seeding Management Act)
16. 잠업법	(Sericulture Act)
17. 축산법	(Livestock Business Act)
18.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Law Concerning Protection of wild Life and Game)
19. 수산업법	(Fisheries Act)
20. 외환관리법	(Foreign Act)
21. 담배사업법	(Tobacco Business Act)
22. 인삼사업법	(Ginseng Business Act)
23. 관세법	(Customs Law)
24. 공산품품질관리법	(Industrial Goods Quality Control Act)
2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Electrical Appliance Safety Control Law)
26. 계량법	(Measuring Act)
27. 석유사업법	(Petroleum Industry Act)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Liquified Petroleum Act)

2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High-pressure Gas Safety Act)
30.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31. 전파관리법 (Radio Waves Regulation Act)
32. 전기통신기본법 (Basic Telecommunication Act)
33.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Law on Import and Distribution of Foreign Publications)
34. 영화법 (Motion Picture Act)
35.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Law on Audio & Video Products)
36. 문화재보호법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37.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Firearms, Gold Steels and Explosive Materials Control Act)
38.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Special Measure Act on the Defense Industry)
39. 환경보전법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40. 폐기물관리법 (Waste Management Law)
41. 자동차관리법 (Motor Vehicle Administration Law)
42. 공중위생법 (Public Health Act)
43. 산업안전보건법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44. 소음진동규제법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4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에 관한 법률
(Law on Manufacture-Restrictions of Controll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 ○ 특허법 (Patent Law)
- ○ 실용신안법 (Utility Model Law)
- ○ 상표법 (Trademark Law, Design Law)
- ○ 저작권법 (Copyright Act)
- ○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Computer Progrm Protection Act, etc)
- ○ 대외무역법 (Foreign Trade Law)

〈참고자료〉

법령별 개정대상품목 내역(품목기준)

1. 신규수입절차규정 적용 대상품목

법 령 명	대 상 품 목 명	비 고
공중위생법	· 세척제 · 수처리제 · 위생용품(젓가락, 숟가락, 이쑤시게, 위생종이, 일회용물품)	위생검사실시
공산품품질관리법	· 방향제 · 재생타이어 · 유아용 작동완구	품질검사실시
	· 모직물 및 모혼방직물	품질검사실시
조수보호법	· 코끼리등의 가죽 · 상아제품	시·도지사 허가
식품위생법	· 식용의 도토리 · 기타의 물	수입금지, 수입검사
전파관리법	· 휴대용무선전화기 · 송신기기 · 무선원격 조절기기	형식검정실시
자동차관리법	· 트랙터 및 트레일러와 그 부분품	형식승인실시
식물방역법	· 사탕수수 · 기타의 식물	지역제한

2. 통합공고상 주요 수입절차변경 내용

법 령 명	대 상 품 목 명	비 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사무용 인쇄기 ·전동미싱 ·전자후레쉬 ·휴대전등 ·인터폰 ·벨 ·차임벨 ·부 쟈 ·방범경보기	형식승인해제(통관 이후 단순 신고 대상품목으로 전환)
공산품품질관리법	·무선원격 조절기기	품질검사해제
자동차관리법	·소형 모터 사이클 ·소형 모페드	형식승인해제
농약관리법	·알파스린 유제등 106개 품종	수입금지품목을 등록대상으로 완화
공중위생법	·세척제 ·수처리제 ·위생용품(젓가락, 숟가락, 이쑤시게 위생종이, 일회용물컵)	위생검사실시
공산품품질관리법	·방향제 ·재생타이어 ·모직물 및 모혼방직물	품질검사실시 품질표시실시
조수보호법	·코끼리등의 가죽 ·상아제품	시·도지사 허가
전파관리법	·휴대용무선전화기 ·송신기기 ·무선원격 조절기기	형식검정실시
자동차관리법	·트랙터 ·트레일러	형식승인실시

Ⅴ- 11. 1992년의 통합공고 운용

상공부고시 제1992-7호('92.3.12)

통합공고 개정내용 요약

1. 개정배경

통합공고와 관련된 각종 개별법상의 수출입절차 관리품목중 근거법 또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그 수출입절차가 변경된 품목을 통합공고에 새로이 반영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대상

○ 약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농약관리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나. 주요 개정내용

관련법령	개 정 내 용	사 유
약사법	○수입허가 대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 - 마약류(64개→73개) - 향정신성의약품(93개→137개) ○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금속 및 합금에 대해 통관시 검정을 받도록 함 ○ 의약품의 통관후 관리사항(국내유통, 판매)에 관한 규정 삭제	○UN마약위원회에서 국제간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품목임. ○ 치과용 금속 및 합금은 구강내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국민보건. 위생과 직결된 품목으로 수입관리 필요 ○ 국내유통, 판매 관련사항은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보사부)에 의거 관리토록 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합성수지제 전선관등 3개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토록 함 ○ 형식승인 면제(연구용품등) 확인기관의 전자공업진흥회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로 변경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1종전기용품의 조정 ○ 전기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가 확인토록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관련법령	개 정 내 용	사 유
공산품 품질관리법	○ 등산용 로우프, 양탄자, 할로겐전구, 유리세정액등 4개품목을 사전품질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	○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대상품목의 조정
농약관리법	○ 디메톡시 벤전에 대해 수입제한	○ 동물질은 골프장에서 농약으로 사용될 경우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 야기시킬 우려 있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음반외에 비디오물도 수출입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 - 수출 : 한국음반협회 추천 - 수입 : 문화부 장관 추천	○ “음반에 관한 법률”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비디오물이 동법 적용대상에 추가

상공부고시 제1992-29호('92. 8. 20)

통합공고 개정내용 요약

1. 개정배경

통합공고와 관련된 각종 개별법상의 수출입절차 관리품목중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그 수출입절차가 변경된 품목을 통합공고에 새로이 반영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대상

○ 약사법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수산업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나. 주요 개정내용

【수출부문】

관련법령	개 정 내 용	사 유
약사법	○ 의약품수출입업 허가제 폐지 ○ 의약품, 한약재에 대한 수출요령 변경 - 의약품수출입협회등의 추천 → 신고	○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을 완화하여 수출촉진 및 민원인 편의 도모
수산업법	○ 치어에 대한 수출금지 범위 축소 - 농어 30㎝ → 20㎝ - 능성어 20㎝ → 15㎝	○ 치어에 대한 수출제한 완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야생조수에 대한 수출허가권자 범위 확대 - 시·도지사→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포함)	○ 민원인에 대한 편의 도모

【수입부문】

관련법령	개 정 내 용	사 유
약사법	○ 의약품수출입업 허가제 폐지 - 의약품 수입자확인으로 대체 ○ 동물용 의약부외품의 수입허가 절차 신설 - 농림수산부장관의 수입허가	○ 민원인 편의도모 ○ 동물용 의약부외품에 대한 수입관리 필요성 대두 - 구중청량제, 탈모방지제, 염색제, 영양제, 축사소독제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 핀란드산 가축 및 육류 수입금지 해제 - 현재 수입가능 국가 : 미국, 카나다등 10개국 ○ 프랑스산 원피수입 금지 해제 - 현재 수입가능 국가 : 미국, 카나다등 10개국	○ 통상마찰 완화, 수입선의 다변화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형식승인 대상품목 확대 (현 304개) - 전동타자기, 프린터, 모니터 (3개 품목)	○ 소비자 보호 - 최근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품목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야생조수에 대한 수입허가권자 범위확대 - 시·도지사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포함)	○ 민원인에 대한 편의도모
IWC(국제포경위원회) 협약	○ 고래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 IWC 협약상 고래고기의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음 (특히 비회원국으로 부터의 수입금지)

3. 홍보계획

- 보도자료 작성하여 주요일간지에 보도
- “일간무역”에 개정고시 전문 게재

상공부고시 제1992-49호('92.12.28)

통합공고 개정고시

〈통합공고 개정〉

○ 국민보건위생, 안전, 공중도덕, 환경보호등을 위하여 각종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절차 및 요건의 변경사항을 통합공고에 규정하여 수출입관리의 적정을 기함

○ 금번 통합공고 개정에서는 일부무선기기 및 전자파장해 검정대상기기에 대한 수입확인 권한위임(체신부장관→전파연구소장), 유독물 수입등록을 매년 1회로 한정하는 등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승인대상 동·식물을 추가지정하고, 1, 2종 전기용품 수입시 사후봉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동차용 안전유리 수입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 전자파 장해검정 대상품목확대등을 통해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쌀가루, 보리가루 혼합물에 대한 수입추천을 신설하였음.

첨부 : 통합공고상 주요 수출입절차 변경 1부

〈첨부〉

통합공고상 주요 수출입절차 변경

〈수출부문〉

관 련 법 령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자연환경보전법	○ 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요하는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규제대상 품목 추가지정 - 고래류, 파충류, 용설란, 수선화 등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
	○ 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요하는 특정 야생 동·식물을 별표 Ⅷ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식물류	○ 보호대상 국내 동·식물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관리협회장에 대한 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추가지정 및 삭제 - 추가지정(5개품목) :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유도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등 - 삭제(1개품목) : 테레프탈산 디메탈	○ 유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수입부문〉

관 련 법 령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자연환경보존법	○ CITES 규제대상품목에 대한 지방환경청장의 수입승인을 통합공고 수입요령(별표Ⅱ)에 품목별로 명시 - 연체동물, 조개류 등	○ '93년중 CITES 가입에 대비하여 국제적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수입관리 강화
	○ 지방환경청장의 수입승인을 요하는 자연생태계 위해 동·식물을 구체적으로 지정 - 개구리목, 거북목, 뱀목	○ 국내 자연 생태계 보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경처장관에게 수입품목등록을 요하는 유독물질 추가지정 및 삭제	○ 유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한 수입관리 강화

관 련 법 령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 추가지정(5개품목) : 방향족에데르와 그들의 할로겐유도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등 - 삭제(1개품목) : 테레프탈산 디메틸	
	○ 동일성분 및 동일함량 유독물에 대한 수입등록을 매년 1회로 한정	○ 수입절차간소화
전파법	○ 형식검정시료용 무선기기 및 전자파장해검정대상기기, 시험·연구용 무선기기 및 전자파 장해검정대상기기에 대한 수입확인 권한을 체신부 장관에서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	○ 권한의 위임
	○ 전자파장해검정대상품목 추가지정 - 모니터, 키보드, PC용 마더보드, PC용 전원공급기, PC용 입출력 인터페이스 중 모니터용 카드	○ 소비자보호
전기통신기본법	○ 형식승인대상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형식승인 면제대상지정포함), 수입결과 신고를 체신부장관에서 전파연구소장으로 변경	○ 기관변경
	○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 추가 지정 - 음극선관 단말기, 인터폰 등	○ 소비자보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1,2종 전기용품 수입을 위한 형식승인을 요청할시 사후봉사체제계획서 제출 의무화	○ 소비자보호
공산품품질관리법	○ 사전검사 대상품목 추가지정 - 자동차용 안전유리	○ 소비자보호
양곡관리법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쌀가루, 보리가루의 혼합물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수입 추천 신설	○ 기초식량 혼합물에 대한 수입관리 강화
농약관리법	○ 수입허용품목을 게기한 통합공고 부표를 폐지하고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의 고시로 대체	○ '93년부터 국내사용 농약에 대한 수입자유화

Ⅴ- 12. 1993년의 통합공고 운용

상공부고시 제1993-2호('93.1.14)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상공부고시 제91-53호, 동 개정고시 제1992-7호, 제1992-29호, 제1992-49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993년 1월 14일
상 공 부 장 관

통합공고중개정고시

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품목별 수입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품목번호 (HS)	품 목	현 행		개 정(안)	
		수입요령	관련법령	수입요령	관련법령
0507 10 2000	서각	수입할 수 없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수입할 수 없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약사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공부고시 제1993-10호('93.4.9)

개정대상법령 및 주요개정 내용

* 3개부처 7개법령

대 상 법 령	주 요 개 정 내 용
1.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환경처)	○ 환경처의 수입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 승인 포함) 업무를 국립환경연구원에 위임
2. 자연환경보존법 (환경처)	○ 수출시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요하는 특정 야생동·식물의 추가지정(북방산개구리등 86종)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업진흥청)	○ 전압조정기 수입시 공진청장의 형식승인을 거치도록 규정
4. 공산품품질관리법 (공업진흥청)	○ 수입시 사전품질검사 대상품목에 외줄로울러스케이트 추가
5. 식물방역법 (농림수산부)	○ 수입식물(용기 및 포장포함)에 대한 수출국의 검사증명서 면제대상 추가 - 냉동처리된 식물로서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한 식물 -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수입식물 ○ 병해충별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일부조정
6.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부)	○ 꿀벌의 수입가능지역지정(미국, 카나다등 17개국)

상공부고시 제1993-45호('93. 7. 1)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주요내용

1. 관련법령 : 약사법등 19개 법령

2. 시행일(예정) : '93. 7. 1

3. 주요개정 내용

〈수출부분〉

관련법령	현 행	개 정	사 유
(1) 석유사업법	○ 등산버너용 가스, 실린더에 충전된 가스에 대한 대한석유협회의 수출 추천	○ 수출추천 절차폐지	○ 수출 원활화
(2) 주요농작물 종자법	○ 기장식물(조, 수수)등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수출추천	○ 조 이외의 기장식물에 대한 수출추천 절차폐지	○ 조 이외의 품목은 주요 농작물 종자가 아님

〈수입부분〉

관련법령	현 행	개 정	사 유
(1)약사법	○ 인공신장기, 보청기 등 33개 의료용구(HS 10단위) 수입시 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수입신고	○ 수입신고 대상품목 확대 -인공관절, 분만대등 29개품목(HS 10단위) ○ 비신고 대상 의료용구도 수입통관후 검정실시 -불합격품은 판매·유통금지	○ 수입의료용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2)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은 환경처장관의 재생·이용승인을 필한 후 수입	○ 승인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 위임	○ 수입절차 간소화

관련법령	현 행	개 정	사 유
(3)가축전염병예방법	○ 벨기에는 소원피, 면양, 산양의 원피, 양모 등의 수입금지 지역	○ 벨기에를 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	○ 벨기에를 악성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으로 분류
(4)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저장용기에 함유되어 있는 Halon은 별도 수입요건이 없음	○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후 수입	○ 저장용기에 함유된 Halon도 특정물질로 지정하여 수입관리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등 8개물질(CFC, Halon)은 몬트리얼 의정서 가입국에 대해서만 수출입 가능	○ 사염화탄소등 12개품목을 추가지정	○ 몬트리얼 의정서 준수
(5)종묘관리법	○ 종묘업 허가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귤나무 수입가능	○ 한국과수묘목 협회장이 국내재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품종에 한해 수입가능	○ 농가피해 방지
(6)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CD-ROM, CD-Ⅰ등 신종영상·음향매체에 대한 별도 수입허가 절차 없음	○ CD-ROM, CD-Ⅰ중 영화, 음악, 오락물이 수록된 것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 미풍양속 보호
(7)전기통신기본법	○ 다변화품목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전파연구소의 이중적인 수입추천 필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수입추천 일원화	○ 절차간소화

상공부고시 제1993-57호('93.8.2)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주요내용

1. 관련법령 : 약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 시행일(예정) : '93. 8. 2

3. 주요 개정내용

○ 외화획득용 한약재의 국내 불법유출 및 위장수출등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동 한약재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적용을 배제
- 외화획득용 한약재의 수입신고(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폐지(제8조 제2항)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종별 허가대상품목인 경우 개별품목신고를 폐지하고 종별 허가로 갈음
- 종별허가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동 기준에 적합치 않은 화장품에 한해서만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규정(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2항)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에 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정한 "마약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화학물질(22개)"을 규정하고, 수출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제18조, 별표 Ⅳ-1 신설)

○ 마약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마약합성원료약품(92개 품목)을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품목에서 제외, 마약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규정(별표 Ⅲ 다.호 삭제)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품목 추가(별표 Ⅳ)

○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정리(제20조)
- 화장품 수출입허가 → 화장품수입자 확인

○ 신약개발과 원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환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공고 제14조 제1항(취급자등) 및 별표 Ⅱ의 품목별수입요령에 불구 제조품목허가 없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이 가능토록 수입특례 규정(제21조 제5항 신설)

상공부고시 제1993-86호('93.10.4)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주요내용

1. 관련법령 : 약사법 등 11개 법령

2. 시행일 : '93. 10. 4

3. 주요개정 내용

수출부문

【석유사업법】

○ 석유아스팔트 관련 3개품목 석유수출입신고 생략, 수출자유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가입에 따라 야생조수중 수출허가 대상품목 확대
- 골소와 뼈, 소·면양·산양의 지방 등 34개품목(HS 6단위기준) 신설 및 추가

※ 현재 수출허가대상품목 : 55個

【ICCAT 협약】

○ 참다랭이 수출입시 통계서류 확인을 받아 수출(수입시는 선적국 정부기관 확인)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결의사항 이행

수입부문

【약 사 법】

○ 의료용구(치과재료 포함) 검정대상품목을 보건사회부장관이 별도공고토록 하여 검정대상품목 축소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품질상태가 우수한 것은 제외

○ CITES 가입에 따라 원료의약품 및 한약재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조수포함) 및 가공품 수입시 수출국발행 수출증명서 사본 및 계획서 첨부

○ 원료동물약품용 수입추천대상품목에 술파민등 13개품목, 동물용의료기기 신고대상품목에 치과용시멘트, 심전계, 뇌파기 등 16개품목 추가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추천 또는 신고를 받아 수입

(현재 추천대상약품 194개 품목, 신고대상기기 9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야생조수의 수출입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종전에는 수입요령만 명시)

- 수출입관련 용도, 허가절차, 구비서류 등

○ 야생조수 범위를 CITES 규정과 부합되도록 명시(별표 Ⅴ)

- 종전의 한글명 “종” 단위에서 → “목, 과” 단위로 확대하고 한글명과 학명 표기

○ 야생조수에 포함되어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 추가

- 사슴, 돼지고기, 소, 산양, 돼지의 가죽 등 92개 품목(HS 10단위)

※ 현재 규제품목 : 68개 품목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와 가공품 범위를 확대하여 CITES 내용과 부합되도록 규정(별표Ⅴ의 2호 및 3호)

【자연환경보전법】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 규제대상품목)을 CITES 규정 내용과 일치시켜 명시(별표 Ⅵ)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통관시 수출증명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 산동물, 육과 가금육, 기타 동물성 생산품, 원피 및 가죽, 모피, 양모, 마모 등의 수입대상 지역 중 북미주를 미국(본토, 하와이, 푸에르토리코)과 카나다로 제한

【비료관리법】

○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농업용비료를 시험연구용으로 제한
- 농협중앙회장, 화학비료제조업허가받은 자는 추천없이 수입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수입시 배출가스 소음인증면제대상 자동차에 소방용자동차 및 자동차 제작자, 연구기관등이 개발 또는 주행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를 추가
* 현행 면제대상 : 군용 및 경호용, 주한외교관용, 외국군대용, 박람회전시용, 여행자가 반출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 인쇄서적, 소책자,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수입은 상기법률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자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었으나, 대외무역법등의 개정에 따라 무역업등록을 한자와 실수요자(2천불 이상)도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토록 함.

【석유사업법】

○ 윤활유기유 수입시 석유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한국윤활유공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종묘관리법】

○ 채소종자는 종묘업허가를 받은자가 국내적응성 검정을 필한 것에 한하여 수입하였으나 수출용종자를 추가
- 수출용의 경우 국내재배가능 여부는 불요하고 국내개발 종자의 수출촉진을 위함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부속서A에 속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비가입국으로 부터 수입금지(자동차 및 트럭 공기조절장치등 6개장치)

Ⅴ- 13. 1994년의 통합공고 운용

상공부고시 제1994-2호('94. 1. 8)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주요내용

1. 관련법령 : 약사법 등 9개 법령

2. 고시일자 : '94. 1. 8 (동일자 시행)

3. 주요 개정 내용

수출부문

【약사법】

○ 치과용재료, 의료용품, 의료용기기류등 42개품목(HS 6단위 기준) 수출신고제 폐지
-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축산법】

○ 종우등 3개품목의 추천기관을 농림수산부장관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변경(단,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

수입부문

【약사법】

○ 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을 재수입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수입신고 하던 것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신고토록 함(백신, 약용비누, 향수, 살균제 등 36개 품목)

○ 수입의료용구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함

○ 우수의약품제조기준(GMP : Good Manufacture Practise)의 제정·시행에 따

라 수입의약품에 대하여도 국내제조 의약품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의약품만 수입·유통되도록 관계서류 징구를 의무화

- 생산국법규에 의한 GMP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CITES 가입에 따라 야생동·식물 가공품중 의약품으로 수입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예 : 사향, 우황)

○ 수입의료용구에 대한 통관이후 절차는 수입의료용구관리규정(93.10.4 시행)을 준수하도록 하고 통합공고 관련조항 삭제

- 검정기관의 품질관리시험 실시후 보고 절차등

○ 혈액의 공공관리를 위해 혈액 및 혈액제제류의 수입을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혈장 등 3개 품목)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마약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입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 동 화학물질 수입자는 통관후 10일이내 수입면장 사본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

【축산법】

○ 축산물중 젖소, 육우, 종돈, 종계등 10개품목의 수입시 추천기관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변경(단,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농림수산부장관 추천)

【가축전염병예방법】

○ 쇠고기, 소의원피등 31개품목의 수입대상지역에 멕시코를 추가하고, 토끼육 수입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토끼육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토록 함

* 토끼육의 수입위생조건 : 야토병, 점액종증, 바이러스 출혈병등의 질병, 위생점검실시, 잔유물질 함유가 없어야하는 것등 10개 조건

【수산업법】

○ 관상용 금붕어, 열대어의 활어 수입은 수산청장의 이식승인(시, 도지사 경유)을 받아 수입토록 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기용품수입요령을 변경

- 형식승인(공업진흥청장)에서 신고로 전환 : 합성수지제 전선관, 전기육묘기, 전기가위, 전기화로 등 12개품목
- 형식승인 대상품목 추가 : 가정용전동재봉기, 커피분쇄기, 레이져디스크 플레이어 가요반주기, 전기녹즙기, 교류아크용접기 등 10개품목
- 형식승인 범위(소비전력등) 조정 : 전기냉장고, 프린터, 모니터, 전기드릴, TV수상기 등 14개 품목
- 신고대상품목 추가 : 사무용인쇄기, 전동식천공기, 전기문서재단기, 휴대전등, 전기칼, 전자후레쉬등 32개품목

* 형식승인 : 물품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맞는 경우 이를 승인
* 신고 : 제조된 물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신고(수입후 30일 이내)

【공산품품질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개정('93.12.26)에 따라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조정 : 방향제, 보온용기, 할로겐전구, 유아용삼륜차, 작동완구 등 5개품목 제외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통합공고상 수입요령을 변경

- 동 법률에 의거 등록을 받은 자,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등록을 한자 및 실수요자(수입가액 2,000$ 이하)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심의)를 받아 수입

상공부고시 제1994-39호('94. 4. 15)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1. 근거 :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2. 개정이유

○ 각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요령 및 절차 등 개정내용을 통합하여 고시

- '93년부터 매분기(년 4회) 마다 개정 추진
  - '93 4/4분기 개정 : '94. 1. 8 개정 고시
  - '94 1/4분기 개정 : '94. 4. 개정 고시

3. 주요 개정 내용

가. 규제완화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넙 치	○ 수출제한 체장 길이 35㎝이하	○ 수출제한 체장길이 25㎝이하 - 어민 소득증대 및 수출증대	수 산 청
일반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신고를 필한 후 수출 - 일반의약품 : 페니실린, 백신, 면역혈청, 지혈재, 스트렙트마이신등 62개품목 (HS 6단위 기준) - 한약재 : 인삼, 감초, 생강, 심황(강황) 등 8개품목 - 화장품 : 향수 및 화장수, 샴푸, 치약, 입술화장용제품류, 면도용제품류등 19개 품목	○ 수출신고제 폐지	보건사회부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동물의약품	○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를 필한 후 수출 - 페니실린, 백신, 살충제, 살균제, 제조제등 47개품목	○ 수출신고제 폐지	농림수산부
담배류	○ 한국담배인삼공사 또는 동 공사의 위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국산제조담배등 6개 품목	○ 수출자격제한 폐지(자유화)	재 무 부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원료의약품	○ CITES 관련 품목 수입시 제출서류(수출증명서사본 및 사용계획서)가 유보되는 품목 - 생약명이 웅담, 사향인 경우	○ 유보대상품목을 명확히 함 - 생약명이 웅담, 사향으로서 별표 Ⅴ의 2항에 게기된 부속서 Ⅱ의 곰과 전종 및 사향노루속 전송	보건사회부
	○ 통관후 수입승인서 및 수입면장 사본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	폐 지	〃
완제동물의약품	○ 수입시 제조 및 판매증명서 원본 제출	폐 지	농림수산부
	○ 기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대한 시험기관의 검사 생략	○ 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거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기준 및 시험방법등의 검사 면제	〃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체외진단용 의약품 (예:각종시약)	○ 완제의약품, 의약부외품 등 수입시 검정기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세관장이 확인 후 통관. 단, 검정기관에서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국립보건원장에게 통관예정보고서 제출	○ 검정이 면제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검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각각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교부받아 세관장에게 제출	농림수산부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수입은 담배인삼공사 또는 동 공사의 위탁을 받은 자에 한해 수입	○ 수입자격제한 폐지(자유화) (HS 10단위 기준 11개품목)	재 무 부
야생조수	○ CITES에 게기된 조수의 수입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제출	폐 지	산 림 청
비 료	○ 공업용비료수입시 한국비료공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공업용비료 : 3개품목)	○ 질산암모늄, 황산칼륨등 2개 품목 추천제 폐지 - '94. 4부터 수입자유화	상공자원부

나. 규제강화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특정물질	○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현행 4개품목)	○ 브로모메탄, 살균제, 살충제 등 4개품목 추가(8개품목)	상공자원부
유독물	○ 유독물관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출(현행 169개 품목)	○ 아크릴산 글리시딘, 클로르벤젠아민 등 26개품목 추가(195개 품목)	환 경 처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곡물조제 식료품	○ 곡물조제식료품중 쌀의 것 (예:찐찹쌀, 볶은찹쌀)은 제한없이 수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	농림수산부
유독물	○ 환경처장관에게 품목등록을 한 후 수입 (현재 277개 품목)	○ 브르모크로로에탄등 27개 품목 추가(254개 품목)	환 경 처
특정물질	○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현재 30개 품목)	○ 브로모메탄, 살충제, 하이드로브르모플루오르카본 등 3개 품목 추가(33개 품목)	상공자원부
컴퓨터전용 근거리통신 카드 (LAN Card)	(신 설)	○ 전파연구소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	체 신 부
비디오 폰	(신 설)	○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다. 기타(통합공고에 미반영분, 수입요령변경 등)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주 류	(신 설)	○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수출요령 및 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맥주 등 16개품목) - 주류수출은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수출	국 세 청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주 류	(신 설)	○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수입 요령 및 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맥주등 40개 품목) - 주류수입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수입 · 예외 : 한국관광공사, 특수용도 또는 음식료제조	국 세 청
폐절연전선 (NARI-DRUID)	○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신고를 필한 후 수입 (1개 품목)	○ 한국신동공업협동조합에 신고를 필한 후 수입 - 품목관장단체 변경	환 경 처

상공부고시 제1994-96호('94. 7. 12)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1. 근거 :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2. 개정이유

○ 각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요령 및 절차 등 개정내용을 통합하여 고시

- '93년부터 매분기(년 4회) 마다 개정 추진
  - '93 4/4분기 개정 : '94. 1. 8
  - '94 1/4분기 개정 : '94. 4. 15
  - '94 2/4분기 개정 : '94. 7.

3. 주요 개정 내용

가. 규제완화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관련법령)
유독물질	○ 유독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 신고대상품목에서 황화아연을 삭제, 자유화	환 경 처 (유독물질 관리법)
수산물 (활어등)	○ 수산청장의 이식승인(시·도지사 경유)을 받아 수출	○ 수산청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 -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반영 * 송어, 뱀장어, 바다가재, 새우, 게, 굴, 오징어, 문어, 해조류등 17개품목 (HS 6단위 기준)	수 산 청 (수산업법)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관련법령)
인 삼	○ 수출금지 품목 ① 4년근 미만의 수삼으로 제조한 백삼류 ② 파삼 ③ 25편급(30g)을 포함한 그 이상의 대편급 고려태극삼	○ 인삼에 대한 편급제도개선으로 25편급(30g)을 포함한 그 이상의 대편급 고려태극삼은 수출금지품목에서 삭제, 수출허용	재 무 부 (인삼사업법)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관련법령)
의료용구	○ 의료용구 수입시 검정기관을 5개기관으로 규정 -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연세대학교치과대학	○ 수입의료용구 수입시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3개기관(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을 추가 지정(5개기관→8개기관으로 확대)	보건사회부 (약사법)
	○ 의료용구를 수입한 자는 국문표시검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판매·양도·사용하여야 함	○ 국문표시검토서 제출기관을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변경(수입자의 편의 도모)	
동물용 의약품	○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3일전까지 통관예정신고서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확인후 통관해야 함	○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만 통관예정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통관예정신고를 면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절차 간소화)	농림수산부 (약사법)
석유류	○ 윤활유기유 수입추천대상자는 윤활유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로 함	○ 윤활유기유에 대한 수입추천제 폐지로 삭제	상공자원부 (석유사업법)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관련법령)
석유류	○ 윤활유기유는 한국윤활유공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	○ 윤활유기유에 대한 수입추천제 폐지로 삭제	상공자원부 (석유사업법)
	○ 석유류중 검사품목을 수입한자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윤활유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품질검사 면제	
	○ 조제절삭유는 품질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수입	○ 조제절삭유등에 품질검토 삭제(수입검사대상에서 제외)	상공자원부 (석유사업법)
사료첨가제	○ 동물용의약품의 것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	○ 수입추천제를 신고제로 완화 - 동물약품협회에 신고를 필한 후 수입	농림수산부 (약사법)
원피, 양모등	○ 수입지역을 제한 - 미국등 15개국에서만 수입허용	○ 수입허용국가에 독일을 추가(수입허용국 16개국) * 소원피, 면양원피, 섬수모, 조수모, 양모등 44개품목(HS 10단위 기준)	농림수산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유독물질	○ 환경처장관에게 품목등록을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황화아연을 품목등록대상에서 삭제, 자유화	환 경 처 (유독물질관리법)
수산물	○ 양식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산청장의 이식승인(시·도지사 경유)을 받아 수입	○ 수산청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입 -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반영 * 자라, 활어, 새우, 전복, 소라, 피조개, 해초류등 37개품목(HS 10단위 기준)	수 산 청 (수산업법)
외국간행물	○ 실수요자가 외국간행물 수입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 (가액 2,000$ 이상)	○ 수입추천대상 범위 축소 (가액 5,000$ 이상)	문화체육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

나. 규제강화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관련법령)
유독물질	○ 유독물질수출시 유독물관리협회장에게 신고후 수출	○ 신고대상품목 추가 - 아민, 황산테트라키스포스포늄등 2개 품목	환 경 처 (유독물질 관리법)
주 류	(신 설)	○ CITES 규정에 부합되도록 야생조수를 재료로 한 주류의 수출규제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출(예:곰쓸게주, 사주등)	산 림 청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 법률)
참다랭이	(신 설)	○ 국립수산물검사소장(지소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 (ICCAT 회원국에만 수출)	수 산 청 (ICCAT협약)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관련법령)
의료용구	(신 설)	○ 의료용구수입시 수출국으로부터 발행한 제조·판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수출국으로부터 제조 및 판매허가를 받지 못한 의료용구 수입제한	보건사회부 (약사법)
향정신성 의약품	(신 설)	○ 향정신성의약품에 졸피뎀(진정제)을 추가 - 통합공고 별표Ⅳ에 반영 보사부장관의 품목허가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	보건사회부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관련법령)
유독물질	○ 환경처장관에게 품목등록을 한 후 수입	○ 품목등록대상품목 추가 - 아민, 황산테트라키스포스포늄 등 2개 품목	환 경 처 (유독물질 관리법)
전자출판물	(신 설)	○ 시디롬을 수입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함.	

다. 기타(통합공고반영, 수출입요령 변경등)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관련법령)
공산품	○ 수입시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정리 - 품질검사 → 안전검사	공업진흥청 (품질경영 촉진법)
건설기계	(신 설)	○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요건 및 절차 규정 -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요건 및 절차를 규정 - 국립건설시험소장의 확인검사 - 형식승인 면제대상기계 규정(견본건설기계등) - 신청시 구비서류등	건 설 부 (건설기계 관리법)
영화용필름	○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입(학술연구용 제외)	○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 - 영화법 규정과 일치	문화체육부 (영화법)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30호('94.10.15)

統合公告 改正告示

○ 상공자원부는 電氣用品安全管理法등 11개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출입요령이 변경되는 품목등 統合公告의 일부를 '94. 10. 15일자로 개정·고시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금번 통합공고의 개정은 각 個別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령 및 절차의 개정 또는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무역질서의 유지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가 '93년부터 매분기마다 이를 개정·고시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후 '94년에 들어 네 번째로 개정·고시하는 것임.

○ 금번 통합공고 개정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령 및 절차를 UR등 國際規範과 일치시키기 위한 個別法의 整備計劃 推進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입요령 및 절차가 개선·변경된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종전기용품으로 수입시 형식승인대상 품목인 가정용온열처리기등 9개품목을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식승인대상품목중 전기시트, 전기조끼등 41개 품목을 신고대상품목(2종)으로 전환

  · 1종 전기용품(형식승인대상) : 306개 품목 → 256개 품목으로 감축
  · 2종 전기용품(신고대상) : 45개 품목 → 86개 품목으로 확대

  * 형식승인 제외품목(9개) : 가정용온열치료기, 기타가정용전열치료기, 가정용전동력응용치료기, 가정용광선치료기, 가정용전위치료기, 가정용전력치료기, 가정용저주파치료기, 가정용초음파치료기, 가정용초단파치료기

【肥料管理法】

- 공업용비료중 “요소” 비료의 輸入推薦制 폐지, 공업용비료의 수입을 완전자유화 함.

【外國換管理法】

- 귀금속, 주화, 금, 우표, 수입인지등을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판매용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허용금액을 종전의 미화 1,000$ 상당액(판매업자 3,000$상당액) 이하→ 미화 10만불 이하로 완화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환경처 고시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된 부틸펜에틸퀴나졸린 등 5개 품목을 수출시 신고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수입시 품목등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대상품목 459개 품목→464개 품목)

【自然環境保全法】

- 嫌惡食品 규제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이 첨가된 리쿠르류(주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토록 함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 CITES협약 준수를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野生鳥獸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하던 것을, 야생조수중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허가대상 품목수 : 수출 87개 품목(HS 6단위), 수입 183개 품목(HS 10단위)

  ※ CITES :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

【原子力法】

-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시 요건확인사항(허가 또는 신고)를 추가 규정하고 수입시 신고대상품목에 평량측정기등 3개 품목을 추가함.

【産業安全保健法】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설비등의 수입요건을 추가 규정

  ·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 합격품목에 한해 수입(검사대상품목 : 호이스트, 천정크레인, 타워크레인등 8개 품목)

【其他 法令關聯】

- 산약(산마)의 HS품목번호 변경 : 1211.90.9090 → 0714.90.9000으로(약사법 관련)

- 옥수수의 수입추천기관 명칭 변경 : 한국옥수수가공협회 → 한국전분·당협회 (양곡관리법 관련)

Ⅴ- 14. 1995년의 통합공고 운용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4호('95. 1. 16)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1. 근　거 :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2. 개정이유 : 각 개별법상 수출입요령 및 절차의 개정내용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수출입관련 개별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한 내용을 통합하여 고시
   - '93년부터 통합공고를 매분기(년 4회)마다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제완화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양곡류	○ 수출추천제 - 양곡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목적	○ 수출추천제 폐지, 자유화 : 6개 품목	농림수산부 (양곡관리법)
잠　종	○ 보통 잠종 : 수출추천제	○ 수출추천제 폐지, 자유화	〃
	○ 원원잠종, 원잠종 : 수출금지	○ 수출금지 해제, 도 잠업사업소 검사후 수출	(잠업법)
주요농작물 종자	○ 수출추천제	○ 수출추천제 폐지, 자유화 : 1개 품목 ○ 수출신고제로 전환 : 19개 품목(별첨)	〃 (주요농작물종자법)
종　축	○ 수출추천제	○ 수출신고제로 전환 : 3개 품목	〃 (축산법)
인삼제품 (식・음료)	○ 수출추천제	○ 수출추천대상품목 제외, 자유화 : 인삼경옥고차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양곡류	○ 수입추천제 - 농수산부장관, 농협중앙회장, 농수산물유통공사장 등	○ 관세화가 유예된 미곡(14개 품목을 제외한 양곡류의 수입추천제 폐지, 자유화 : 57개 품목(HS 10단위기준)	농림수산부 (양곡관리법)
종 축	○ 수입추천제 - 축협중앙회장 또는 농림수산부장관	○ 수입신고제로 전환 : 10개 품목	〃 (축산법)
사 료	○ 수입추천제	○ 수입추천제 폐지, 자유화 : 32개 품목	〃 (사료관리법)
잠종·상묘	○ 수입추천제	○ 수입추천제 폐지, 자유화 : 2개 품목 - 단, 잠종은 수입시 검사를 거쳐 수입	〃 (잠업법)
주요농작물 종자	○ 수입추천제	○ 수입추천제 폐지, 자유화 : 3개품목 ○ 수입신고제로 전환 : 27개 품목	〃 (주요농작물종자법)
동물용 의약품	○ 완제약품, 의약부외품 : 농림수산부장관 허가 ○ 원료약품 : 한국동물약품협회추천	○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재수입시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 ○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	농림수산부 (약사법)
공산품	○ 수입시 안전검사	○ 안전검사에 대한 절차, 시료검사, 검사면제대상범위 변경 - 면제대상에 상호인증제도 도입	공업진흥청 (품질경영촉진법)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 안전검사대상품목 삭제 : 1개 품목(보온용기)	
전기통신 기자재	○ 수입시 형식승인	○ 형식승인대상품목 삭제 : 1개 품목(LAN 카드)	정보통신부 (전기통신 기본법)
석유류	○ 수출입추천대상자를 油種별로 규정	○ 수출입 추천대상자 요건을 석유사업법과 일치시키고, 추천대상자 세부적으로 명시 - 연료유 및 나프타의 수입승인 폐지	통상산업부 (석유사업법)
	○ 수입시 품질검사	○ 품질검사 대상품목에서 삭제 : 1개품목(항공기용 기관요일)	
폐기물	○ 수입시 지방환경청장에게 재생·이용승인을 받아 수입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은 재생·이용승인 폐지 : 13개 품목 - 재정제용 폐유, 역청유, 경질고무, 경질고무제품, 타르매카담, 고무의 웨이스트, 커드뮴 웨이스트 등	환 경 부 (폐기물관리법)
의약품	○ 수입추천 또는 수입신고	○ 약사법관계규정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통합공고상 수입추천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절차간소화 및 업무중복을 배제)	보건복지부 (약사법)

나. 규제강화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유독물	○ 수출시 신고 (유독물관리협회)	○ 신고대상품목 추가 : 기타 아미노수지등 2개 품목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공산품	○ 수입시 안전검사	○ 안전검사대상품목 추가 : 4개 품목 - 건전지, 양식용부자, 유아용침대, 공기주입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공업진흥청 (품질경영 촉진법)
전기통신 기자재	○ 수입시 형식승인	○ 형식승인대상품목 추가 : 1개 품목(유선방송전송선로 증폭기)	정보통신부 (전기통신 기본법)
석유류	○ 수입시 품질검사	○ 품질검사대상품목 추가 : 1개 품목(역청유)	통상산업부 (석유사업법)
유독물	○ 수입시 품질등록	○ 품질등록대상 추가 : 2개 품목(기타 아미노수지 등)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수산물	○ 이식용으로 수입시 수산청장의 이식승인	○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어획금지어종과 금지시기를 규정(이식용은 현행과 같음) - 어획금지 어종(치어) : 방어, 돔, 붕장어, 볼락, 농어 - 어획금지시기 제한 어종 : 닭새우류, 대게, 꽃게	수산청 (수산업법)
야생조수	○ 수입시 시·도지사 허가	○ 호랑이 생모피, 가공모피, 모피의류 수입금지 - 멸종위기에 있는 호랑이보호를 위함	산림청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다. 기타(수출입요령 변경등)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인삼제품 (식·음료)	○ 인삼드링크류는 수출시 추천을 받음	○ 인삼드링크의 명칭을 인삼음료로 변경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의료용구	○ 수입시 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신고	○ 수입신고 대상품목중 기타 의료용구로 지정된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52개품목 - 근전도계, 내압계, 폐기능측정기, 채혈셋트, 천삭기, 혈액회로, 의료용확장기, 청진기, 의료용광원장치, 체액검사기, 의료용침대, 진료대, 치료대 등	보건복지부 (약사법)
생 약	○ 수입추천대상 품목인 '복령'을 동물성생약으로 분류	○ 식물성생약으로 분류 HS를 0510.00.9090 → 1211.90.9090으로 변경(관세청건의)	〃 (약사법)
공중위생용품	○ 관계규정에 의거 기준과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수입시 신고	○ 대상품목중 세척제 및 위생종이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	〃 (공중위생법)
야생조수	○ 별표 V 야생조수의 범위를 규정 - 총 39목 165과 · 조수 : 24목 95과 · 수류 : 15목 70과	○ 야생조수의 범위 개정 - 科 단위 → 種 단위로 - 총 39목 167과 2,499종 · 조수 : 24목 97과 1,867종 · 수류 : 15목 70과 632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35호('95. 4.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1. 근거 :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2. 개정이유 : 각 개별법상 수출입요령 및 절차의 개정내용과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수출입관련 개별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한 내용을 통합하여 고시

3.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제완화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인 삼	○ 수출추천제 - 한국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	○ 수출추천제 폐지, 신고제로 전환	재정경제원 (인삼사업법)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원료의약품, 한약재	○ 수입추천제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신고제로 전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품목수 : 37개 품목) * HS 10단위 기준	보건복지부 (약사법)
	○ 한약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추천물량을 관계부처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제한규정 삭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약사법)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품을 원료, 완제동물용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요령 규정	○ 원료동물용의약품, 완제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단일화	농림수산부 (약사법)
	○ 완제약품, 의약부외품, 부외품, 위생용품 : 농림수산부장관 허가, 재수입시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	○ 허가제 폐지, 신고제로 전환 - 품목수 : 47개 품목 * 생물학적제제 및 항생물질제제는 농림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 수입	
	○ 원료약품, 의료용구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추천	○ 추천제 폐지, 신고제로 전환 - 품목수 : 211개 품목	
인삼류	○ 수삼, 백삼, 인삼잎, 인삼종자, 기타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시험연구용 제외)	○ 수입추천제 폐지, 신고제로 전환(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 - 품목수 : 7개 품목	재정경제원 (인삼사업법)
	○ 홍삼류 및 홍삼제품 : 수입금지	○ 수입금지 해제, 자유화 (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후 수입) - 품목수 : 12개 품목	
대구머리 (수산물)	○ 수입특허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검사표준 미제정	○ 수입허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검사표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수입	수 산 청 (식품위생법)
아스팔트 (석유제품)	○ 석유수출입 신고를 한 자가 대한석유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	○ 추천제 폐지, 자유화 - 석유아스팔트등 2개품목	통상산업부 (석유사업법)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먹는샘물	○ 수입불허 * 수입허용 근거규정 미제정	○ 수입허용 -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해 환경관리청장에게 신고 후 수입('95. 5. 1부터)	환 경 부 (먹는물관리법)
유독물질	○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품목마다 매년 환경부에 등록	○ 유독물중 시약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시 등록대상에서 제외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신고대상화학물질(제외)	○ 화학물질중 통관전 신고 및 유해성심사 제외 대상을 규정 -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 농약, 비료, 향정신성의약품등 6개 물질	○ 신고대상 제외물질 추가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사료, 화약류, 독성가스 등 4개 물질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나. 규제강화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유독물	○ 수출시 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	○ 신고대상품목추가 : 1개 - 비스(2-에틸핵실) 아민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유독물	○ 수입시 품목등록 (환경부장관)	○ 품목추가 : 1개품목 비스(2-에틸핵실)아민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전기용품	○ 1종 : 공업진흥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 수입 ○ 2종 : 수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	○ 형식승인대상품목 추가 : 전기정미기, 전기주름펴기 등 2개 품목 - 품목수 : 258개 품목 ○ 신고대상품목 추가 : 전자식금전등록기 - 품목수 : 87개 품목	공업진흥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다. 기타(수출입요령 변경등)

【수출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유독물	○ 수출시 유독물관리협회장에게 신고	○ 신고기관 명칭 변경 - 유독물관리협회장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입부문】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수처리제	○ 공중위생법에 의거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해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후 수입	○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해 환경관리청장에게 신고후 수입 - 액화염소, 이산화탄소, 수산화나트륨액체, 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황산알루미늄, 황산동, 활성탄등 12개품목 *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 변경	환 경 부 (먹는물관리법)

분야(품목)	현 행	개 정	관련부처 (법령)
참다랭이 (수산물)	○ 수입시 어획선적국 정부기관으로부터 통계서류 확인을 받은분에 한해 수입	○ 수입시 어획선적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통계서류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분에 한해 수입	수 산 청 (ICCAT협약)
야생조수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거 야생조수의 범위를 정함	○ CITES 부속서 개정으로 야생조수 및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범위를 개정 - 야생조수 : · 조수 : 1,866종 · 수류 : 629종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 조수 : 1,504종 · 수류 : 568종	산 림 청 (조수보호 및수렵에관 한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품목 규정 (1,037개 품목)	○ 20개 품목 추가 (1,057개 품목)	환 경 부 (자연환경 보전법)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40호('95. 4. 8)

통합공고중 개정고시('95. 1/4분기 추가)

1. 개정이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95. 4. 1)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95. 4. 8 시행)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수입시 수입요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통합공고에 반영하려는 것임

- 변경 내용(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음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품목 규정 : 불도저등 21개 품목

2. 개정내용

○ 통합공고 별표Ⅱ(품목별수입요령) 건설기계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품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삭제(별첨 참조)

- 형식승인 삭제 품목 : 불도저 등 20개 품목

- 형식승인 존치 품목 : 굴삭기 등 9개 품목

수입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품목

HS 8414. 40. 0000 80. 0000	① 공기압축기
8426. 49. 0000	① 기증기(무한궤도식에 한함)
8427. 10. 0000 20. 1010 20. 1020	① 지게차
8429. 11. 0000 19. 0000 20. 0000 30. 0000 40. 0000 51. 0000 51. 9000 52. 1000 59. 1000	① 불도저(무한궤도식, 타이어식) ② 스크레이퍼 ③ 로울러 ④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함) ⑤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함)
8430. 10. 0000 31. 0000 39. 0000 41. 0000 49. 0000	① 항타 및 항발기 ②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함)
8474. 20. 0000 20. 9000 31. 1000 32. 1000	① 쇄석기 ②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③ 아스팔트믹싱프랜트
8479. 10. 1000 10. 2000 10. 9000 82. 3000	① 콘크리트살포기 ② 콘크리트휘니셔 ③ 노상안정기 ④ 아스팔트휘니셔
8705. 10. 0000 40. 0000 90. 1090	① 골재살포기
8905. 10. 0000 90. 9000	① 준설선 ② 사리채취기
계	20개 품목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8호('95. 7.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95. 2/4분기)

1. 제한완화

【수출부문】

○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귤나무 등 묘목 및 채소종자 수출시 자격제한(종묘업허가 받은 자) 폐지, 자유화(종묘관리법)

○ 주요농작물종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호밀, 수수, 메밀, 조, 유채(사료용) 수출시 신고제 폐지, 자유화(주요농작물종자법)

【수입부문】

○ 주요농작물의 범위에서 조, 수수, 메밀, 호밀, 유채(사료용) 등 5개품목을 제외함에 따라 동 품목 수입시 신고제 폐지, 자유화(주요농작물종자법)

○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요농작물의 수출입시 구비서류 간소화

- 수입시 제출서류중 시험연구성적서, 피해보상에 대한 연대보증서 폐지

○ 자동차 형식승인 면제대상 확대(추가) (자동차관리법)

-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성능시험 시료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일정사업장 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면제대상 확대(추가) (전기통신기본법)

-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제조·수입포함)
- 전송망사업자(예 : 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제조·수입포함)

- 판매목적이 아닌 전시회 또는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전기통신기자재
- 여행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신이 사용키 위해 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 형식승인면제 대상인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중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 폐지

○ 전기통신기자재 수입시 형식승인 대상품목 제외(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지침 개정)
- 반송통신용의 기타기기중 중계장치,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중 중계장치, 광섬유전용시스템 중 광중계장치, 유선전화용 기기중 선로이득장치, 선로집중장치등 7개품목

○ 종묘수입시 수입자격제한(종묘업 허가받은 자)과 추천제를 폐지하고, 국내재배농가보호를 위해 국내적응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해 수입토록 함(종묘관리법)
-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귤나무등 6개 품목과 채소종자(무, 배추, 고추, 토마토 등 14개 품목)

○ 국내수산자원보호와 번식을 위해 산란기 수입을 금지하던 “닭새우류(Rook Lobster)”의 수입제한 완화(수산업법)
- 뉴질랜드, 호주등 주요수출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닭새우중 ‘파누리루스종’만 산란기(6.1-8.31)에 수입금지

○ 수입위생조건고시 개정에 따라 돼지고기, 면양 또는 새끼양 원피, 돼지원피 등 19개 품목(HS 10단위기준)의 수입허용대상 국가에 ‘화란’을 추가(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허용대상국가 : 미국등 11개국 → 12개국으로 확대

○ 유독물 수입시 품목등록 신청서류 제출간소화(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허가증사본 제출 폐지

○ 화학물질중 수입시 신고가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범위 확대(추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을 인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수입완제품으로서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학물질 중 다음의 물질
  · 특정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되며, 사용중 화학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플라스틱등 고체물질
  · 풀, 물감등 문방용 또는 화방용 화학물질
- 기계장치류 수입시 내장되어 있거나 시험연구용으로 첨부되어 있는 화학물질

○ 수출입특례규정중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시 대외무역관리규정상 특례조항을 준용할 수 있는 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시 예외인정(수입승인 및 수량제한 등)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유해위험물질(황린성냥, 벤지딘과 그 염등)은 적용 제외

○ 의료용구 수입시 구비서류 간소화(약사법)
- 의료용구의 수입신고시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 면제
-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폐지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입시 경찰서, 지방경찰청을 경유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수입하던 것을 경찰청장에게 직접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토록 절차 간소화(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슘, 니트로톨루엔, 폭약 등 26개 품목(HS 10단위기준)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페어링과 스크랩중 연료용 및 연료용으로 가공한 것 이외의 것은 한국재생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였거나, 바젤협약에 의거 규제대상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통합공고에서 삭제(폐기물관리법)

2. 요령추가등

【수출부문】

○ 수출시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 추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
- m-아미노클로로벤젠, 트리페닐포스핀(2개품목)

○ CITES 규정에 따라 야생조수 및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가공품이 포함된 것은 수출시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토록 함(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회화장식판, 오리지날판화, 오리지날 조각, 조상등 6개품목

【수입부문】

○ 산업안전을 위해 설계검사를 받아야 할 품목 추가(산업안전보건법)

- 화학설비중 압력을 받는 용기와 공기저장탱크등
- 호이스트(장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 CITES 규정에 따라 야생조수 및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가공품범위를 확대하여 조수의 부분품 및 파생품이 포함된 것도 수입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함(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예술품(회화, 뎃상, 파스텔, 조각, 판화등), 그림틀, 사진틀, 녹용, 녹각등

○ 수입시 품목등록을 해야 할 대상 추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엠-아미노클로로벤젠, 트리페닐포스핀(2개품목)

3. 기타(수입요령 변경등)

○ 자연환경보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정리

- 제출서류등 시행규칙의 규정과 일치시킴(CITES 협약에 의거)

○ 유해화학물질 수입시 품목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으로 변경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93호('95. 10. 2)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95. 3/4분기)

1. 제한완화

○ 식품 수입시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의 범위 확대(추가) (식품위생법)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 채취하여 국내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등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등에 사용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첨가물중 화학적합성품을 제조하는 원료(혼합제제성분이 되는 것 제외)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농작물의 수출입시 신고기관이 농림수산부장관 →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
- 수출 : 종자용감자, 고구마, 밀, 보리, 보리등 16개 품목(HS 6단위 기준)
- 수입 : 종자용감자, 고구마, 옥수수, 벼, 밀, 보리등 23개 품목(HS 10단위 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소시지 및 기타 유사한 조제식료품 수입시 수입제한지역이던 '네덜란드'를 해제, 동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을 허용

○ 수출용 및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윤활유'에 대하여 품질검토 및 품질검사를 면제하고, 동일규격제품을 반복수입시에는 종전의 품질검토결과서로 수입승인 및 세관통관신청이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석유사업법)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지침 개정에 따라 수입요령 변경(자구수정)

○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외국간행물 수입시 자체관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한 특수자료 취급인가기관)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 면제
- 특수자료취급인가기관 : 167개 기관

○ 품질경영촉진법 관련 고시의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대상품목중 ‘보온용기’를 삭제

* 현행 사전검사대상품목 : 18개, 사후검사대상품목 : 32개

2. 수출입요령 변경 및 추가

○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는 ‘복어’의 무분별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입허용품종을 정하고 수입시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신고토록 함(식품위생법)

- 수입허용품종 : 복섬, 흰점복, 검복, 황복, 까치복, 자주복, 가시복등 21종

○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이 종전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이관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관광업무가 교통부→문화체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카지노시설, 기구등의 수입요령상 관련조항을 변경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삭제, 관광진흥법 추가

Ⅴ- 15. 1996년의 통합공고 운용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호('96. 1. 19)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95. 4/4분기)

1. 제한완화

【수출부문】

○ 인삼분, 인삼캡슐 등 인삼제품 수출추천제(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 추천) 폐지(식품위생법)

○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및 주화 등 내국지급수단 수출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외국환관리법)

【수입부문】

○ 살균처리된 유가공품에 해당되는 밀크와 크림, 치즈 및 커드에 대한 수입지역 제한 해제(가축전염병예방법)

○ 내국지급수단 수입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외국환관리법)

○ 식품수입시 수출국검사증명서 제출면제대상에 포장·가공식물로서 국립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한 식물을 추가(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수입 지정장소(공항) 확대
- (현행) 김포, 김해, 제주 → (개정) 대구, 광주 추가

○ 공륜심의용으로 수입하는 2매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사전허가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2. 요령 신설 및 추가

【수출부문】

○ 재배지 검사를 요구하는 식물수출시 사전식물검역 실시(식물방역법)

○ 국제수산기구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결의에 의해 신선·냉동·냉장 참다랭이를 수출시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 품목으로 추가(수산업법)

○ 유독물 추가지정고시에 따라 티오인산에스테르등의 일부품목을 수출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추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입부문】

○ 국제수산기구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결의에 의해 냉동·냉장 참다랭이 수입시 통계서류를 첨부토록 함(수산업법)

○ 식물수입시 수출국검사증명서 제출면제대상 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물가조절을 위해 긴급수입하는 경우를 삭제(식물방역법)

○ 만두, 피자 등 지정검역물과 혼합한 수육가공물을 검역대상으로 지정(가축전염병예방법)

○ 소, 말, 돼지 등 3두이상의 동물수입시 사전신고제 신설(가축전염병예방법)

○ CITES 규제대상품목중 코스타리카의 보호요청에 따라 먹구슬나무과(MELIACEAE) 식물을 추가(자연환경보전법)

○ 유독물 추가지정고시에 따라 티오인산에스테르등의 일부품목을 수입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추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야생조수및멸종위기에처한조수의 고시 개정에 따라 종전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을 적용제외하던 것을 삭제(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3. 요령의 정비

【수출부문】

○ 천연가스수출계약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명문화

【수입부문】

○ 중고품수입제도의 Negative 방식으로의 개편(수출입별도공고 제1장 개정)으로 중고품수입시 신품과 같이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령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 현 통합공고상의 수출입특례조항중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을 제외하여 별도공고와 조화시킴

○ 이식용 수산물 수입시 이식승인절차와 대상범위를 명료화(수산업법)

○ 칡뿌리를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식물방역법)

○ 설계검사 대상품목이 아닌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캐리어를 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산업안전보건법)

○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라 전자파장해검사를 받아야 할 범용, 미니, 사무용 및 공업용 컴퓨터를 검사대상품목으로 명시(전파법)

○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중 거북알, 부화용알 등, 그리고 CITES 국제대상품목중 침엽수류 등의 목재 등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추가(자연환경보전법)

○ 천연가스수입계약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명문화

○ 검정대상 검사용계기품목중 '적산식가솔린미터'를 '연료유미터'로 명칭 변경

○ 기타 표현이 불분명하던 일부의 수입요령의 자구수정

4. 기 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대폭적인 개정('96. 1. 1부터 시행)으로 품목분류가 세분화, 변경, 삭제 및 신설됨에 따라, 통합공고상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이에 맞추어 정비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5호('96. 4.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96. 1/4분기)

1. 수출입절차 및 요건완화

【수입부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96. 1. 26)에 따라 전기용품중슬라이드 영사기,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 등 31개 형식승인대상품목을 신고대상품목으로 전환 및 8mm 영사기, 전자식 금전등록기 등 52개 신고대상품목을 자유화

* 품목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품목기준으로 HS 품목분류기준이 아님

○ 소, 면양, 산양 등 우제류 동물의 육류 및 소 수정란, 정액의 수입허용지역에 화란추가(가축전염병예방법)

* 종전 수입허용지역 : 미국, 카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일본, 대만,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HS 0201, 0202류의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는 멕시코 포함)

* 우제류 동물의 육류중 돼지고기는 화란이 기포함됨

○ 위생용품 수입위탁자의 자격제한규정 폐지(약사법)

- 종전의 의약품 도매업자 및 위생용품 판매업자 등에 한하여 수입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의료용구 수입위탁자 규정에 정부기관, 검사기관 및 연구기관 포함(약사법)

2. 수출입절차 및 요건 신설 또는 추가

【수출부문】

○ 환경부 유독물 지정고시에 따라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HS 2841.90)', '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HS 2924.29)' 등 일부품목에 포함되는 유독물 추가지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입부문】

○ 밀크와 크림(HS 0401)을 살균처리된 유가공품으로 간주, 지난 '95. 4/4분기 통합공고 개정고시('96. 1. 19)로 수입지역제한을 해제한 바 있으나,
- 살균처리되지 않은 원유(原乳)가 동 세 번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살균처리되지 않은 원유등에 한하여 수입지역제한 신설

○ '파이와 케이크(HS 1905.90.1030)' 수입요령에 완전멸균되지 아니한 우제류동물의 육류가 포함된 것에 대한 수입지역제한규정 신설을 요청

○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95.12.30)에 따라 한약재 수입시 의약품도매업자는 규격품으로 지정된 한약재 이외의 것만 수입위탁할 수 있도록 함(약사법)
* 규격품으로 지정된 한약재가 제조되지 아니하고 한의원, 한약방으로 직접 판매를 방지

○ 환경부 유독물 지정고시에 따라 '탄화수소와 할로겐화유도체(HS 2903.49.9000)', '니트릴관능화합물(HS 2926.90.9090)' 등 일부품목에 포함되는 유독물 추가지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계부처 요청사항중 특이사항〉

(1) 건설교통부 요청사항(자동차관리법 관련)

○ 주한미군잉여재산으로 도입되는 자동차가 통합공고 제8조(수출입특례)규정에 의거 형식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형식승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특례규정에서 제외토록 개정요청

○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리의 관련부처인 보훈처에 의견문의결과
- 기수입되어 판매된 자동차 구매자로부터 민원제기, 형식승인검사를 위한 자료확보곤란, 검사비용의 과다 등으로 어려운 입장이나,
- 공동도로주행을 위한 차량에 대한 형식승인에는 원칙동의
- 다만 형식승인절차의 완화 및 간소화를 위한 단서규정이 통합공고에 포함되기를 희망

○ 조치사항

- 자동차수입자가 통관후 공공도로를 운행하기 위하여는 차량등록이 필요하며, 형식승인이 등록의 전제조건이므로 공동도로를 운행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잉여재산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건교부 요청내용을 반영
- 보훈처가 요청하는 형식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단서규정은 성격상 통합공고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이는 건교부의 검사절차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건교부측으로 동 요청사항을 전달하여 절차간소화를 위한 협조를 구할 예정임

(2) 문화체육부 요청사항(관광진흥법 관련)

○ HS 9504류의 '게임용구'중 카지노시설을 현행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허가를 받은자가 카지노관광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요청사유 : 카지노기구의 선상 카지노 및 사설도박장 유입을 방지

○ 조치사항

- 개정요청 사유는 납득할 만하나, 문체부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반영

3. 기타 수출입절차 및 요건정비

【수입부문】

○ 공업진흥청 업무기능의 국립기술품질원 이관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형식승인, 신고 및 품질경영촉진법상의 안전검사 관련 행정기관을 종전 "공업진흥청"에서 "국립기술품질원"으로 변경

○ 통합공고의 품목별 수입요령에는 농업용 동식물성비료 수입절차(농림수산부장관 추천)가 명시되어 있으나, 총칙에는 화학비료만 명시되어 있어, 총칙중 동식물성비료 수입절차를 명시(비료관리법)

* 농림수산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감귤재배용으로 골분수입요청에 따라 수입 가능토록 통합공고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통합공고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 추천요령의 합의를 요청하여 옴.

○ 계량법상 검정대상기기인 '전자식체온계'를 검정대상기기로 통합공고에 명시 (계량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96. 1. 4)으로 식품,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물 등의 표시기준 변경내용 반영

- 종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뿐만아니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물 등에 대해서도 획일적 표시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물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식품과 차별화

○ 수입가능 복어중 '물밀복'을 어류학회의 공식명명에 따라 '블록복'으로 명칭 변경(수산업법)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36호('96. 7.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96. 2/4분기)

1. 수출입 절차간소화 및 요건완화

【수출부문】

○ 인삼사업법(재정경제원)이 폐지되고 인삼산업법(농림수산부)이 제정시행(7. 1)됨에 따라 수출규제 완화

- 4년근 미만의 것은 수출이 금지되던 백삼과 담배인삼공사 지정업자에 한하여 수출이 허용되던 홍삼 등이 신고만으로 수출가능
- 홍삼정, 홍삼차 등에 대한 수출자격제한 폐지로 수출자유화
- 인삼류의 수출입신고기관 변경
  · 인삼협동조합중앙회 → 국립농산물검사소

○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 제정·시행(7. 1)으로 국산영화에 대한 수출추천(문화체육부) 폐지

○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수출추천(한국영상음반협회) 폐지(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 허가(한국은행)를 요하지 않는 내국지급수단의 휴대반출 한도를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여 규제완화
  * 내국지급수단 : 원화표시 우표, 화폐, 수입인지, 유가증권 등

- 미화 10만불이하의 내외국통화의 수출시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도를 5만불이하로 강화하여 이를 보완(한도이상의 것은 한국은행 허가사항)
  * '통화의 수출입' 은 통화를 지급수단이 아닌 기념용, 화폐수집용 등으로 매매함을 의미

○ 넙치의 치어(稚漁)의 수출금지 체장(體長)기준 완화(25㎝ → 20㎝)

【수입부문】

○ 양탄자 수입시 사전품질검사제를 수입후 사후검사제(유통단계)로 전환하여 규제완화(품질경영촉진법)

○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항생제 등 '국가검정 동물약품'의 수입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유통기한제한(물품선적시 유효기한의 1/4을 경과하지 않을 것) 폐지

- 검정합격(수의과학연구소) 후 다시 동물약품협회의 확인을 거쳐야 수입할 수 있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검정합격통보서(수의과학연구소 또는 동물약품협회 발행)만으로 수입가능하도록 개선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돼지고기 수입허용지역에 벨기에를 추가

* 종전 수입허용지역 : 미국, 카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일본, 대만,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및 화란

○ 음반 및 비디오물의 수입규제 완화(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문화체육부의 허가제에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제로 전환
- 추천면제범위를 확대
  - 전량수출목적으로 국내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포함
  - 영리목적이 아닌 자기수요용으로 추천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를 5매에서 20매로 확대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수출규제 완화의 경우와 같이

- 허가를 요하지 않는 내국지급수단의 휴대반입 한도를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고, 통화 수입시의 인증제도를 신고제로 간소화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입절차 명료화

- 원자력법에 의해 수입시 갖춰야 할 시설검사합격, 안전관리규정승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의 이행기간이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것을 "통관전", "통관후" 등으로 구체화

- 원자력법 적용 제외대상인 일정능력 이하의 방사선 발생장치는 수입신고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2. 수출입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

【수출부문】

○ 냉동명태 등 13종의 수산물을 미국 등으로 수출시 검사(국립수산물검사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수산물검사법 관련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

* 수출시 검사대상품목
  - 대미수출용 : 굴, 바지락, 홍합, 피조개, 가리비, 개아지살, 명태, 오징어, 찐어묵(이상 냉동품)
  - 대일수출용 : 북어, 명란(이상 냉동품)
  - 대EU 수출용 : 고등어, 정어리(이상 통조림품)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수출시 허가(환경관리청)를 받도록 하고 있는 '특정야생동식물'에 24종의 어류를 추가지정

* 특정야생동식물 지정어류 : 무태장어(천연기념물), 금강모치(금강에 서식하는 경우만 해당) 등 24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수출신고(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및 수입품목등록(환경관리청)의 대상이 되는 유독물질로

- '비환식알콜의 할로겐화유도체'의 기타품목(HS 2905.50.9000)중 2-브로모에탄올(2-Bromoethanol)을 추가지정

【수입부문】

○ 신개발품으로서 사용이 빈번하고 안전성이 요구되어 지난 '96.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던 전기침대, TV 영상프로젝터 등 7개 품목의 '전기용품기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 이들 품목의 수입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통합공고에 반영

* 형식승인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품목 : 전기침대, 전기등밀이기, 전기국수제조기, 형광등용전자식스타터, 전기공기청정기(전동기가 없는 것), TV영상프로젝터, 전자식고압방전등용안정기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지방식품의약품청’이 신설('96. 4)됨에 따라

- 의약품 검정기관을 국립보건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변경
- 의약품등 수입, 세척제 등 공중위생법상의 신고대상물품 수입 및 식품·식품첨가물 등 수입시의 허가(또는 신고)기관에 지방식품의약품청 포함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3호 ('96. 10.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96. 3/4분기)

1. 일부 수출용원자재의 수입규제 완화

○ 구소련산 원피수입 허용(가축전염병예방법)

- 우제류동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의 원피 등 축산물은 구제역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수입가능국가를 제한(우피의 경우 미국, 카나다, 일본 등 16개국)
- 관련업계 건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 4개국으로부터의 원피수입을 허용하여 주요 수출용원자재인 원피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국내피혁산업의 경쟁력향상과 수출촉진에 기여토록 함

  * 원피는 국내수요량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피혁원단, 혁제품, 혁제신발 등 가공품의 80%를 수출

  * 구소련산 원피는 국내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산 원피보다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짐

○ 새우 및 게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수입금지기간 적용을 배제

* 수입금지기간 : 닭새우 : 6. 1~8. 31, 대게 : 6. 1~10. 31, 꽃게 : 7. 1~8.31

○ 의약품 등을 전량 수출목적으로 수입시 검정면제(약사법)

- 수입후 2~3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요구되는 검정절차(보건환경연구원)를 거쳐야 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을 전량 수출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검정을 면제하여 수출촉진에 기여토록 함

2. 기타 수출입 절차 간소화, 신설 등 변경사항

○ 동물용의약품의 수입절차 간소화

- 동물용의약품중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수입시 허가(농림부), 기타의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신고(한국동물약품협회)로 이원화 되었던 절차를 신고(한국동물약품협회)로 일원화

- 수입되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검정을 위한 발췌의뢰서 제출기관(종전은 국립동물검역소)에 한국동물약품협회를 추가

○ 개정된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 시행('96. 6월)으로 총포·도검·화학류 중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수출입허가권이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품목의 수출입요령을 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지정고시에 따라 '질소헤테고리화합물(HS 2933.39.9000)', '아민관능화합물(HS 2921.44.9000)' 등 일부품목에 포함되는 유독물을 추가지정

* 유독물 지정시 수출신고(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및 수입품목등록(시도지사,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또는 수입금지대상품목이 됨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수산부" 및 "수산청" 관련규정을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로 변경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58호('97. 1.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1. 대외무역법개정시행에 따른 통합공고 관련규정 개정

가. 개 요

○ 대외무역법개정법률안중 수출입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규정이 '97. 1.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각 개별법상의 수출입절차의 적용을 받는 품목들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맞춰 통합공고 관련규정을 개정

나. 주요개편내용

○ 통합공고 제규정중 수출입승인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통합공고 대상품목이 수출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품목별 수출입절차에 의한 요건확인의 유효기간 설정시 대외무역법 시행령상의 수출입승인 유효기간(1년)을 준용토록 제도를 보완(종전은 30일을 원칙으로 함)

- 종전과 같이 요건확인후 당해 물품통관시까지 1년의 유효기간을 보장

○ 수출입승인면제 대상물품은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절차를 면제해 주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 마약법, 자연환경보전법,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 등 일부 개별법령 관련물품은 수출입승인면제대상일 경우에도 개별법상의 요건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

  * 관세청이 운용중인 '관세법 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와 일치시킴

○ 기타 수출입요건확인을 위한 신청서식으로서 종전의 수출입승인신청서를 이용하거나, 통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건확인절차 운영여건에 따라 별도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수출입요령의 변경, 신설 등

○ 비료관리법 개정시행('97. 1. 1)에 따라 농업용비료의 자격제한 및 추천제를 폐지하여 「수입업등록제」로 전환하고, 유해성비료의 「중금속검사절차」 신설

- 화학비료는 농협 및 비료제조업자만이, 농업용비료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등록을 하여 수입허용
- 토양환경과 식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및 원료수입시 위해성검사(농업기술과학원)를 받도록 하고, 수출국검사성적서 제출시 이를 면제

○ WTO/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병해충위험분석제도」 등을 도입한 식물방역법의 개정시행('97. 12월)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중 병해충위험분석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 조건부 수입을 허용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지정고시에 의거 '무기니켈산화물'등 17개 품목을 유독물로 추가지정

- 유독물로 지정된 품목은 수출시에는 신고(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수입시에는 품목등록(시·도지사, 환경관리청)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 됨.

○ 일부어류의 치어(稚漁)의 수입금지 체장(體長) 기준 및 수입금지기간 변경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 수입금지 체장기준 완화
  - 참돔 : 15㎝ → 20㎝
  - 볼락 : 10㎝ → 15㎝
  - 농어 : 10㎝ → 20㎝
- 꽃게의 수입금지기간 확대 : 7.1~8.31 → 6.16~9.15

○ 기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97.1.1일 시행)으로 일부품목의 분류가 세분화, 신설됨에 따라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이에 맞춰 정비, 신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또는 신고)대상품목으로 '커피분쇄기' 및 '얼음분쇄기'(HS 8509.80.1000 및 2000으로 품목신설)를 추가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모뎀카드' 및 '통신접속카드'(HS 8473.30.4040 및 4050으로 품목신설)를 추가

Ⅴ- 16. 1997년의 통합공고 운용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7호('97. 4. 15)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총괄)

1.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 운영근거 명시

○ 일정품목의 수출입 요령 및 절차를 정한 대외무역법이외의 개별법령이 그 시행일전에 통합공고를 통하여 고시되도록 한 통합공고제도의 운영 근거(대외무역법 제15조 명시)

○ 통합공고상 요건확인기관으로 규정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이 소관물품의 수출입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그 시행일전에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합의(승인)을 받아 공고토록 명시

(수입)

2.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납부대상물품의 수입 관련규정 신설

○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시행(별표 3-7『수입승인시 폐기물예치금·부담금』삭제, '97. 3. 1)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예치금·부담금 납부대상품목의 수입 관련규정 신설(제28장)

- 대상품목(동법시행령 개정) : HS 10단위기준 1,150품목

1) 추가품목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 선박용, 어선용, 농업기계용 윤활유
- 농업기계용 부동액
- 제조담배

2) 삭제품목
- 망간전지 및 알카리·망간전지

3) 부담금대상에서 예치금대상으로 전환

· 부탄가스용기

- 대상품목은 환경관리청장(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입

- 수입물품 폐기물예치금·부담금징수관련 고시제정 작업중(환경부)

· 반복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절차 간소화

· 예치금·부담금 비대상물품에 대한 관리

· 수출용 면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관련부처 : 환경부

3. 석유류의 수출입요령 개정

○ 석유사업법개정시행('97.1.1)으로 원유수출입계약승인제가 석유수출입업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추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

- 통상산업부장관이 수립한 연도별석유수급계획전망(법 제3조)을 고려한 대한석유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
- 포괄수출추천제 도입으로 수출절차 간소화
- 소량수입에 대한 수입추천 면제
- 통관시 품질결과검토서(한국석유품질검사소발행) 확인절차 생략

* 관련과 : 석유정책과

4. 게임기류에 대한 수입요령 개정

○ 비디오게임용기, 전자식게임기 및 기타의 게임용구 등 게임기류(HS 9504)에 대한 수입요령을 용도별, 품목별로 세분하여 명시

- 영상물 등의 내용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가정용)

· 공중위생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사(업소용)

- 전기적 안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 카지노 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 관련부처 :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국립기술품질원

5. 특정물질의 수입 요령 확인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특정물질 또는 특정물질포함제품을 수입시 통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통관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

* 수입금미납통관사례에 대한 검사원지적사항('96. 10) 후속조치
* 관련과 : 화학생물공업과

6.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육류 수입허용지역 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농림부고시에 따라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설육 등 육류 수입허용 지역에 프랑스, 멕시코 추가

* 관련 기관 : 농림부

7. 농약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농약류 수입요령 개정

○ 농약 및 농약원제의 수입요령 확인
- 종전 농약제조업자도 수입가능하던 것을 농약수입업등록을 한 자로 한정
- 수입가능품목은 농촌진흥청 등록품목에 한함
  · 예외 : 시험용, 학술연구용, 수출용(인축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농약이나 원제 제외)
  · 개별품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삭제(HS 2909.30.9000)
  · 등록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 반복수입시는 신고로 대체

* 관련 기관 : 농림부

8. 무선기기 등의 수입요령 개정

○ 전파법(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는 종전 모두 전파연구소의 형식검정을 필한 후 수입하도록 하였으나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명·안전과 관계가 적은 일부품목은 형식등록으로 전환(무선기기형식검정및형식등록규칙, '97. 4. 1 시행)

- 대상품목
  -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등(HS 8525)
  - 레이다기기·항해용무선기기 등(HS 8526)

○ 무선기기 수입시 전파연구소장의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자가사용목적 1대)에 대한 근거 신설(전파연구소, 수입확인처리지침)

○ 전파법개정으로 전자파장해검정을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변경

- 대상품목 : 타자기(HS 8469), 자료처리기계등(HS 8471), 자료처리기계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HS 8473) 중 해당품목

○ 자료처리기계등(HS 8471)의 품목중 전자파적합등록이 필요한 품목의 수입요령 개정

- 대상품목조정 : 종전 품목별 규정을 기기류별로 구분규정
  (전자파적합등록대상기기에 관한 정통부고시 개정, '96. 11. 8)
  1. 컴퓨터
  2. 컴퓨터주변기기
  3.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4. 유선통신단말기기
  5. 기타
- 다른 법에 의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구

○ 카드 및 보드(HS 8473. 3040)의 세번신설에 따른 비데오 카드, 멀티미디어카드의 수입요령 신설

- 전자연구소장의 확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 무선전화기중 발신전용전화기 세번신설(HS 8525.20.7040)에 따라 수입요령 신설

-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의 가허가, 전파연구소장의 확인, 형식검정합격 또는 형식등록 필요
- 전파연구소장의 확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필요

* 관련 기관 : 정보통신부

9. 의약품 등의 수출입요령 개정(제14조)

가. 원료의약품중 CITES 대상물품의 수입요령 및 통관절차 개정

○ CITES 비가입국으로부터 대상물품 수입요령 및 통관절차 개정(제14조 및 제16조)

-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시 종전 복지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수출국의 수출증명서를 제출토록 개정
  · 개정사유 : 협약해석상 비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증명서 필요(약사법시행규칙제47조 개정예정)
- 사용계획서 제출생략(수입허가신청서에 기재토록 간소화)

○ 웅담 및 사향(CITES 대상품목)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 수입허가신청서 복지부장관에게 수출국 발행 수출증명서 제출

※ CITES가입시 우리나라의 웅담 및 사향에 대한 유보기한 만료('96.10.7)

나. 소분용완제의약품의 수입요건 개정

○ (종전) 제조 및 판매증명서
→ (개정) 완제의약품구비요건과 동일한 요건

○ 개정사유 : 약사법상 소분용완제의약품도 완제의약품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보건복지부)

※ 관련규정 : 약사법 제26조, 제34조, 시행규칙 제23조, 제27조

다.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요령 확인

1) 의료물질을 포함한 탈지면・거즈 등(HS 3005), 구강 또는 치과위생용제품류 등 (HS 3306)의 수입요령 확인

○ 의약부외품, 위생용품은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 신규원료 함유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품목은 복지부장관의 허가 필요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
- 허가품목 반복수입시는 한국수출입협회장에게 신고 필요(복지부고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2) 탐폰 등(HS 4818. 40)의 수입요령 확인

○ 탐폰중 생리처리용은 의약부외품에 해당(복지부고시,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하며 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신고 필요

라. 화장품 등의 수입요령 개정

○ 해당품목
- 향수 및 화장수(HS 3303)
-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제품류 등(HS 3304)
- 두발용 제품류(HS 3305) 중 화장품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탈취제 등(HS 3307) 중 화장품

○ 보건복지부관련고시(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화장품에 대한 기준 개정

①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부적합한 품목

② 화장품 배합금지원료를 함유한 품목

③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를 그 한도를 초과 함유한 품목

마. 화장품 포함 세번에 대한 화장품 수입요령 명시

○ 대상세번 :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HS 3307)
- 화장품의 일종으로 상기 세번에 포함되는 분말향 및 향낭에 대한 수입요령 명시(개정 화장품수입요령과 같음)

바. 살충제에 대한 수입요령 신설

○ 살충제(HS 3808. 10)는 함유성분 및 용도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부외품으로 구분, 관리되나 이에 대한 수입요령 불비

○ 신설 수입요령

- 의약품인 살충제 : 복지부장관의 허가(반복수입시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 대한 신고)
- 의약부외품인 살충제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 대한 신고
(복지부 고시「살충제성분함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필요)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10.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비해당물품의 수입요령 개정

○ 가스마스크, 장갑차량등 방산특조법상 국방부장관 수입허가 대상품목(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이 아닌 물품에 대한 수입요령 삭제

(수출)

11. 수산업법령 개정에 따른 치어의 수출제한 신설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치어의 수출제한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양식어업의 진흥위한 뱀장어 치어(산것)의 수출제한 신설

- 기간별 제한대상
  - 1. 1~6. 30 : 100g 이하
  - 7. 1~12.31 : 4g 이하~ 100g 이하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수출신고대상 유독물 추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로 추가 지정·고시된 “유기-황화합물중 4-메르캅토페닐 메탄 술폰산” 등 3개화합물을 수출신고대상에 추가

13. 기 타

○ 대외무역법령 및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및 조문정리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6호('97. 7. 28)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총칙)

1.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총칙)

가. 수입승인기관의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규정(제5조 제1항) 삭제

- 개정법하에서 통합공고 물품은 수입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승인기관(종전의 은행)의 요건확인 규정삭제

나.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절차 정비

○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수입부담금납부, 승인, 인증등)이 면제되는 사례는 연구시험용, 교육기관용등 개별법마다 다양하나 대표적인 경우는 수출용에 대한 요건면제임.

○ 대외무역법개정으로 이러한 요건면제수입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절차 및 사후관리제도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규정(제1장 제2절) 신설

-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확인기관이 요건면제수입확인서 발급
- 민원인은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신속통관 가능
- 세관도 면제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어 업무부담 축소
- 대응수출여부등 필요한 경우 요건면제확인기관이 사후관리

2. 개별법령 관련사항

가. 화학무기생산과 관련된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 제도 신설

○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 등의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및 동 협약의 국내이행법률이 발효(97.4.29)에 따라 화학무기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 제도 신설 내용 반영

○ 주요내용

-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입허가 및 인도·인수의 신고
- 연간 수출입실적신고
- 수출관련사항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적용 등

* 관련 부서 : 기초화학과

나. 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97. 7월부터 염 수입을 자유화하되 국내 천일염전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수입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염수입시 대한염업조합에 신고
- 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 이외의 염은 염업조합이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내외가격차액(67,440원/톤) 범위내의 수입부담금 부과징수
- 수입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염 수입 및 사용실적 제출 등

* 관련 부서 : 화학생활공업과

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대상 일부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제 폐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사항 반영)

○ 전기용품의 구분(법 제2조) 및 수입절차(제9조 및 제9조의4)

- 1종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전기용품으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 형식구분별, 제조업자별로 국립기술품질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
- 2종전기용품 : 1종전기용품외의 것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 수입개시 30일 이내에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제60조의5)

- 2종전기용품에 대한 수입신고제 폐지
- 대상품목 : 배선기구류, 소형교류전동기 등 66품목

* 관련 부서 : 품질안전과

라.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군용이외의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하던 질산셀롤로스의 질소함량기준 조정 : (종전) 12%이상 → (개정) 12.2%이상

○ 연발권총과 단발권총의 수출허가권자 변경 : (종전) 지방경찰청장 → (개정) 경찰청장

마. 석유류 수입부과금 관련사항

○ 관세청 고시개정으로 통관시 석유수입부과금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하고 수입하여야함을 조문에 명시

○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과금 면제품목 삭제(노멀오레핀, 알파올레핀)

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유독물 수출입제도 변경사항

○ 유독물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품목등록 후 수출입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 대한 신고로 완화

○ 대상 유독물에 “오산화인” 등 신규지정 25개물질 추가

* 관련 기관 : 환경부

사. 먹는물관리법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 먹는물관리법 관련고시인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처리제로 신규지정된 물품의 수입요령 반영

- 수처리제로 지정된 물질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가 규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시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련 기관 : 환경부

아.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수입요령 개정

○ 전자파적합등록규칙 개정(제5조 제2항) 및 관련고시(정통부고시 제1997-46호)

제정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이 필요한 물품중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지정 : 퍼스널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 자가사용기기 : 1대
- 외국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기 : 5대 이하
- 전시용 또는 제품 성능 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기기 : 5대이하

○ 정보기기류중 전자파적합등록이 필요한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정

- (종전) 모니터, 프린터 등 13개 지정 품목 →
  (개정)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
- 다만, 종전 13개품목외에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로 추가된 기기중 97.6.30 이전에 제작된 기기는 97. 12. 31까지 시행 유보

* 관련 기관 : 정보통신부

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육류 수입허용지역에서 대만 삭제

○ 구제역이 발생, 확산되고 있는 대만을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소고기, 식용설육 등 육류 수입허용 지역에서 제외

* 관련 기관 : 농림부

차. 종묘관리법에 의한 버섯종균의 수입절차 명시

○ 판매를 목적으로 한 버섯종균은 품종등록이 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품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종묘를 최초로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적응시험을 거쳐 수입하도록 명시

○ 대상품목 : 양송이버섯, 느타리 버섯 등 10종

* 관련 기관 : 농림부

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결의사항에 따른 어류 수입요령 개정

○ 참다랭이(Thunnus thynnus)는 97. 8. 4부터 벨리제와 온두라스로 부터는 수

입할 수 없으며 국립수산물검사소장(지소장포함)의 확인을 받아 ICCAT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제10차특별회의(96. 11) 결의사항 준수의무 이행

타. 약사법령 개정사항

○ 보건복지부고시 수입의료용구관리규정등 개정에 따른 의료용구에 관한 수입요령 개정사항 반영(97. 9. 1 시행)

- 의료용구를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따라 3개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절차를 차등화
  - · 1등급 의료용구 수입은 품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 · 2, 3등급 의료용구 수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체제 보완

○ 대외무역법 개정(수입승인제 폐지)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요령 정비

- (종전) 의약품등의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청,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으로 부터 약사법에 의한 허가사실을 1차확인(수입추천 또는 신고)을 받은 후 은행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 →
  (개정) 약사법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하도록 절차 간소화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26호(97.12.3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수입요건강화

○ 종전에 3톤이상의 호이스트, 천정크레인, 타워크레인등의 수입에 대해서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여건 강화

○ 종전에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30톤이상의 프레스수입시에 한해서만 설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전품목으로 확대적용

* 관련 부서 : 노동부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승강기부품의 수입요령 신설

○ 승강기부품의 수입에 관한 요령중 형식승인대상품목의 신설과 형식승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관련 부서 : 품질안전과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관련 조문정리

○ 전기용품의 수입시 안전검사를 위한 형식승인대상에서 2종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완화

○ 형식승인면제대상을 방송국의 자기 수요를 위한 수입, 산업박람회전시용을 위한 수입, 특수설계에 의해 제작된 전기용품등으로 면제범위 확대

* 관련 부서 : 품질안전과

4.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 개정에 따른 직물등 수입요령 삭제

○ 모직물 및 모혼방직물의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이 개정되어 이들 직물의 수입요령을 삭제

* 관련 부서 : 품질안전과

5. 영화진흥법 개정사항 반영

○ 영화용 필름의 수출추천제 폐지

○ 영화용 필름의 수입추천권을 문화체육부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하여 수입규제 완화

* 관련 부서 : 문화체육부

6. 석유류 수출입절차 간소화

○ 석유사업법개정에 따라 석유류의 수출추천제를 폐지

○ 수입추천제를 개선하여 포괄수입추천제 도입으로 수입절차를 간소화함

* 관련 부서 : 석유정책과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수입요령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수입신고검토 대상품목의 정비

* 관련 부서 : 가스안전과

8. 전기통신기본법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수입요령개정

○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시 형식승인 면제대상범위에 수출용을 포함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면제대상을 현행화함.

* 관련 부서 : 정보통신부

9. 전파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무선기기의 수입요건 정비

* 관련 부서 : 정보통신부

10.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결의사항에 따른 어류수입 요령 개정

○ 참다랭이(Thunnus thynnus)는 98.1.1부터 파나마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1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기준·규격고시 개정에 따른 대구머리의 수입요령 정비

○ 대구머리의 별도 검사기준을 폐지하고 식품의 기준·규격고시에 따르도록 함

* 관련 부서 : 농림부

1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육류 수입허용지역에서 영국삭제 및 헝가리 추가

○ 구제역이 발생, 확산되고 있는 영국을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소고기, 식용설육 등 육류수입허용지역에서 제외하고, 헝가리를 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거 시험·연구용,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되어 있는 포장용기에 의한 휴대수입 등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예외조치 규정

○ 가축의 수입장소 추가지정
- 항구 : 평택항 추가
- 공항 : 청주공항 추가

* 관련 부서 : 농림부

13. 식물방역법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생약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 냉동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 또는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

* 관련 부서 : 농림부

14. 약사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정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수입제도 정비

○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확인 및 수입품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동물협회장에게 수입품목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토록 함

○ 동물용의약품을 원료, 완제, 부외품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수입요령 규정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간소화(물품매도확약서 및 품목허가증사본제출의무 면제)

* 관련 부서 : 농림부

16. 원자력법 개정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요령 개정

○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 대행 근거규정 마련 및 수출입 대행자의 의무 명시

* 관련 부서 : 과학기술처

Ⅴ- 17. 1998년의 통합공고 운용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33호('98. 5.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수출부문】

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반영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이 '98.1.1을 기해 시행(시행규칙 '98.4.1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 반영
- 야생동·식물 분류개편에 따라 특정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구분하여 관리
· 뱀장어, 자라 등 9개종이 규제대상에서 제외(203→194종으로 축소)

* 관련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과

2. 수산물검사법에 의한 수산물검사대상 품목 개정

○ 미국 FDA 규정에 따라 수출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던 대상품목이 13개에서 7개 품목으로 축소(명태, 어묵, 명란 등 6개품목 제외)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3. 주요농작물종자법·종묘관리법 폐지 및 종자산업법 제정사항 반영

○ 법령개정과 함께 수출신고 대상작물(종자)이 15개 작물에서 5개 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로 축소
- 밀, 들깨, 고무마 등 10개 품종 제외

* 관련 부서 : 농림부 생산지원과

4.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원국 변경(22개국→26개국)

○ 신규가입(5) :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이태리, 중국
○ 탈퇴(1) : 베넹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수입부문】

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반영

○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이 '98. 1. 1 개정·시행(시행규칙 '98. 4. 1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 반영

-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동·식물을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반영하고,
- 법령개정 이전에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던 203종의 국내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구분하여 총 194종으로 축소지정·관리하며,
- 법령개정 이전에 국내 토착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18개 품종의 동·식물도 황소개구리 등 3개 품종만을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로 축소지정·관리하는 등 야생동·식물 관리를 체계화

* 관련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과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수입요령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 반영

- 유해화학물질 수입시 유독물에 대한 품질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신고로 대체하며, 관리대상 유독물질도 500여개에서 470여개로 축소

* 관련 부서 : 환경부 유해물질과

3. 수산업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산물수입요령 개정

○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수입수산물에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서식환경, 산란시기 등이 다른 외국산 수산물에 국내법적용이 곤란하여 수입요령 완화 및 삭제(방어, 돔, 붕장어 등 13개 품종에 해당)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4. 종자산업법 시행에 의한 수입요령 개정

○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한 종자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종자관리체계를 일원화

○ 또한 내년도 가입예정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협약 기준에 맞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종자제도 국제화 및 종자산업 활성화
- 법령개정과 함께 수입신고 대상작물(종자)이 15개 작물에서 5개 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로 축소
- 다만,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수입되는 종자의 경우는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도록 규정

* 관련 부서 : 농림부 생산지원과

5. 방위산업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용수입품목 확인기관 변경

○ 군사목적으로 생산하거나 혹은 연구개발중인 총포, 도검, 화약류에 대한 원부자재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시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받던 것을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이관

* 관련 부서 : 국방부 획득지원과

6. 전파법상 전자파적합등록(EMI) 대상품목 축소

○ 전파법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은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 대상품목중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와 관련된 유사기능을 가진 기기의 구성품'처럼 범위가 명확치 않은 품목을 제외

* 관련 부서 : 정보통신부 감리과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면제대상 확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형식승인 면제대상 규정중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 수입하는 전기용품' 조항을 '학교·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 수입하는 전기용품'으로 개정하여 면제대상을 확대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8.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육류수입 허용지역에서 아일랜드, 네덜란드 삭제 및 멕시코 추가

○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하여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를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소고기, 식용설육 등 육류수입 허용지역에서 제외하고, 반면 멕시코를 허용지역으로 추가

○ 육류수입 지정장소에 광양항 추가

* 관련 부서 : 농림부 가축위생과

9. 약사법에 의한 수입요령 개정

○ 수입한약재에 대하여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입하던 것을 국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통관전 품질검사(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를 받아 통관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의약품 관련 요건확인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확인으로 변경함

*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89호('98. 9. 16)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요약)

【수출부문】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수출신고대상 유독물의 추가지정

○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고시의 변경에 따라 수출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유독물의 추가지정
- 니트로펜, 퀴노클라민 등 13개 품목

* 관련 부서 : 환경부 유해물질과

2. 수산업법 및 수산물검사법에 의한 승인 및 검사대상 품목 개정

○ 활어, 냉동바지락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대상 품목 및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의 검사확인 품목 추가지정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수입부문】

1. 통합공고상의 요건면제수입확인 적용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동일회사, 동일제품이 수출용원자재로서 수시·반복적 수입이 되는 경우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일괄해서 발급하도록 절차 간소화

○ 요건면제수입확인 적용범위에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을 포함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수입과

2. 약사법 적용 물품에 대한 수입요령 개정

○ 한약재 수입시 요건확인제도를 폐지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신고규정 삭제

○ 화장품의 병행수입시, 제조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

○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시, 의약품 개발국의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개발국 이외의 사용국이 있는 품목으로서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발간된 의약품집(일본의약품집, 스위스의약품집 등)에 수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

○ 의약품 최초수입시 국문표시검토의뢰서 제출의무조항 폐지

○ 매년 의약품 등의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던 의무조항을 폐지

*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의약품관리과

3.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된 폐기물에 대한 수입요령 일원화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적색·황색폐기물)의 변경고시 및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수입요령 삭제

* 관련 부서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4.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사항 변경

○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축산물 가공관리에 관한 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 됨으로써 수입축산물의 적용범위, 허용기준, 수입신고, 수입축산물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 및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이 신규로 반영

* 관련 부서 : 농림부 축산위생과

5. 공중위생법에 근거한 게임용구의 이관

○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개정에 따라 공중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던 게임용구 등의 품목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으로써 이에 따른 수입요령 개정

- 추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장

* 관련 부서 : 문화관광부 영상음반과

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사항 반영

○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견된 신규 종의 추가

- 검은해오라기 등 18종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회의에서 변경된 사항 반영(138종 신규지정)

- 신규지정 : 아프리카 코끼리 등 219종
- 지정삭제 : 팔색조 등 81종

* 관련 부서 :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7.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육류수입 허용지역에 오스트리아 추가

○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를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설육 등 육류수입 허용지역으로 추가

* 관련 부서 : 농림부 축산위생과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수입요령개정 사항 반영

○ 수입금지 화학물질 축소 및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입신고대상 유독물의 신규 지정

- 수입금지 품목에서 삭제 : 퀴노클라민
- 수입신고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 : 삼산화비소 등 22개 품목

* 관련 부서 : 환경부 유해물질과

9.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수입요령 개정

○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 이식승인 대상이던 품목들을 통합공고에 추가 지정(갯지렁이 등 29개 품목)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10.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요령 개정

○ 염관리법으로 운영되던 재제·가공소금 등이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요령 신설

○ 통합공고상 식품첨가물로 구분되던 브롬화칼륨, 사카린, 글리세린 등 27종을 식품첨가물 범위에서 삭제(식품첨가물 공전에서는 이미 제외)

*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1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면제대상 확대

○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한 차량의 형식승인 면제

* 관련 부서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수입신고 검토대상에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정압기용 필터품목 포함) 및 가스안전계량기 등 2개 품목 추가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과

Ⅴ- 18. 1999년의 통합공고 운용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45호('99. 5.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

【수입부문】

1. 약사법 적용 물품에 대한 수입요령 개정

○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의 수입절차에 대한 수입자 확인증 발급제도 폐지를 통한 절차간소화 도모

*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형식승인제도 폐지

○ 규제완화 차원에서 승강기부품에 대한 수입시의 형식승인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관련규정 삭제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기업이 연구용 견본품으로 수입하는 제품·재료·용기의 경우 예치금·부담금 납부를 면제하고, 매 수입시가 아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치금·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완화

○ 그 동안 원료수입 단계 및 제품수입 단계에 2중적으로 예치금·부담금이 납부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PET병 등의 원료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 관련 부서 :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 기구 등의 수입요령 삭제

○ 그동안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만 카지노시설, 기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통합공고상의 관련규정을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여 불필요한 수입제한적 규정 폐지

* 관련 부서 : 문화관광부 관광시설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수입요령 변경

○ 규제완화 차원에서 형식승인 면제대상 전기통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전파연구소장에게 신고하던 절차를 폐지하여 수입요령을 간소화

○ 법적근거없이 운영되던 형식승인 면제시의 수입신고서 작성, 세관장 확인 및 전파연구소 제출 등의 수입요령 및 절차규정을 삭제

* 관련 부서 : 정보통신부 산업지원과

6. 품질경영촉진법(안전검사제도 운용요령) 개정 사항 반영

○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입제한적 요소로 작용하던 시료검사 이전단계에서의 AS계획서 제출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본 제품에 대한 통관전 안전검사(확인검사)를 통관후 안전검사(확인검사)로 절차 완화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7. 검역법에 의한 수입요령 정비

○ 개의 수입시 제출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을 '9개월이내'에서 '6개월이내'로 단축

○ 동물의 모피, 모발로 제조된 가공품을 수입하는 경우 탄저균 검사제도가 폐지된 바,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요령 삭제

*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방역과

8.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요령 개정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상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HCFC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도를 시행하도록 결정(제9차 당사자 총회, '97. 9)됨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HCFC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를 2004년말까지 유예하게 되어 동 품목들을 수입허가대상에서 제외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및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사항 반영

○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별 누적총량이 10톤 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심사 면제 규정 신설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입 신고대상 유독물 추가지정
- 2개 품목 추가지정에 따라 유독물은 총 495개 품목으로 증가

* 관련 부서 : 환경부 유해물질과

1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사항 반영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게임물의 수입요령을 추가('99. 5. 9 시행)

○ 또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수입추천기관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천경로를 다원화
- 예술원회장이 심의위원(15인) 추천 → 예술원회장, 방송위원회, 대한변협, 게임·비디오물 관련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심의위원(15인) 추천

* 관련 부서 : 문화관광부 영상음반과

11. 영화진흥법 개정 사항 반영

○ 영화수입 등록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사항 및 수입추천기관 변경내용(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 → 영상물등급위원회) 반영
- '99. 5. 9부터 시행

* 관련 부서 : 문화관광부 영화진흥과

12.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절차 신설

○ 황산아연, 초산, 각종 비타민류 등 130여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사료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의 수입신고 절차규정 신설
- 수입신고기관 : 축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시행시기 : 배합사료제조업자는 '99.7.1부터 신고 후 수입허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사료수입업자는 2001.1.부터 신고후 수입허용

* 관련 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1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입자동차 형식승인 대상 정비

○ 적재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샤시상태의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의 형식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공고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완성차로 분류되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지난 1/4분기 통합공고 개정고시 때 일부 자동차품목(HS 8702~8704)에 대해 예외조항을 둔 바 있는데, 이번 개정고시 때 예외적용을 자동차 전품목(HS 87류)으로 확대

* 관련 부서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14.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 범위 정비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규율하는 축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용조란, 가금지, 커피크리머, 젤라틴 등 일부 품목을 동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식품위생법과의 소관범위를 명확히 구분

* 관련 부서 : 농림부 축산위생과

15. 식품위생법 소관품목 범위 정비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규율되는 축산물 이외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품위생법상의 수입요령 정비

*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16. 소음진동규제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 수입요령 변경사항 정비

○ '98. 7.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인증기관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있는 현실을 통합공고에 반영

- 개정이전 : 인증신청, 시험, 인증서 교부 → 국립환경연구원
- 개정이후 : 인증신청, 인증서교부 → 환경부/시험 → 국립환경연구원

* 관련 부서 : 환경부 교통공해과

17. 원자력법 개정 사항 반영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품목의 수입시 신고면제기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본안전기준(BSS : Basic Safety Standard)에 부합되게 완화하는 등 재조정

* 관련 부서 :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18.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거 자기수요 목적의 실수요자 범위 명시

○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이 필요한 자기수요 목적의 실수요자 범위를 미화 5,000$ 이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실수요자인 민원인의 편의도모

* 관련 부서 : 문화관광부 출판진흥과

19. 택시미터 수입에 대한 소관법령 변경 사항 반영

○ 그 동안 수입시 시·도지사에게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미터의 소관법령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법 제33조)에서 자동차관리법(법 제47조)으로 변경

* 관련 부서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2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면제규정 정비

○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상의 형식승인 면제사유 중, 그 동안 통합공고에 누락되어 있던 '수출전용을 위하여 수입되는 전기용품의 경우'를 명시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21. 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고시) 개정 사항 반영

○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외래동·식물 범위에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2종을 추가 지정

* 관련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계

2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입허용지역 정비

○ 그동안 통합공고상의 쇠고기 수입허용지역 범위에 누락되어 있던 멕시코를 추가

* 관련 부서 : 농림부 축산위생과

2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 추가

○ 연결구류 중 세이프티커플링, 로딩암 등 2개 품목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 품목으로 추가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과

24. 통합공고 총칙상의 개정내용

○ 제8조(수출입특례) 제1항 중 나호 내지 라호를 실효성없는 조항 정비차원에서 삭제

○ 제10조(요건확인실적보고)를 삭제하고 제9조(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 등)를 개정하여 실효성없게 유지되어 오던 매분기별 요건확인서 발급실적제출 의무조항을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 간소화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수입과

【수출부문】

1. 수산업법(치어및치패의수출제한고시)에 의한 개정사항 반영

○ 국내의 수산자원보호 및 양식용 종묘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출금지품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 넙치, 참돔, 돌돔, 조피볼락(우럭) 등 4품종을 제외하고, 고막 1품종을 추가

○ 또한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인공부화생산 품목 범위에 치패도 포함(현재 치어만 해당)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2.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수출시 등록말소 확인대상 품목의 명시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수출 방지 및 차량소유자 보호 등을 위해 수출시 등록말소 여부 확인대상 품목을 HS세번별로 통합공고에 명시

- 자동차 : HS 8701~8705, 8709, 8713류
-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등 26개 품목

* 관련 부서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건설기재과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사항 반영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 신고대상 유독물 추가지정

- 2개 품목 추가지정에 따라 유독물은 총 495개 품목으로 증가

* 관련 부서 : 환경부 유해물질과

'99. 2/4분기 통합공고 개정고시의 법령별 주요 변경내용(요약)

* ▭ 항목은 당초 IMF에 제출한 '수입증명절차 투명성제고 및 절차간소화' 계획의 이행사항임.

유형	법 령	현 행	개 정
규제 폐지	약사법	의약품, 화장품 등 수입시의 수입자 확인증 발급	수입자확인증 발급제도 폐지
	승강기제조…	승강기부품 수입시 형식승인	형식승인제도 폐지
	자원의절약…	폴리에스테르수지 수입부담금 납부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관광진흥법	카지노업 허가자만 수입가능	동 규정 폐지
	전기통신…	형식승인 면제대상 전기용품 수입시 전파연구소장에게 신고	동 신고제도 폐지
	품질경영…	시료검사 전 AS 계획서 제출의무	AS 계획서 제출의무조항 폐지
	검역법	모피가공품의 탄저균 검사제도 시행	모피가공품에 대한 탄저균 검사제도 폐지
	오존층보호…	HCFC 34개 품목에 대해 수출승인 및 수입허가	동 품목들에 대해 수출승인 및 수입허가 대상품목에서 삭제
규제 완화	자원의절약…	연구용 견본품도 예치금·부담금 납부 매 수입시마다 예치금·부담금 납부	연구용 견본품의 경우 예치금·부담금 납부면제 매 수입시가 아닌 월별·분기별 납부 가능
	품질경영…	본 제품에 대한 통관전 안전검사 실시	통관 후 안전검사로 절차 변경
	유해화학…	수출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특혜규정이 없음	수출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10톤 이하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 면제
	영화진흥법	영화수입 등록제	영화수입 신고제
	원자력법	수입시 신고면제기준이 높음	IAEA 기준에 맞춰 면제기준 하향조정
	통합공고총칙	분기별 요건확인실적보고제도 운영	분기별 실적보고제도 삭제

유형	법 령	현 행	개 정
규제 강화 (추가)	검역법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을 9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유해화학…	수출입신고대상 유독물 493개 품목	2개 품목 추가로 495개 품목 지정
	사료관리법	수입요령이 미비	수입신고 절차 신설
	자연환경…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3종 지정	2종 추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액화석유…	연결구류 관련품목이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	2품목 추가 (세이프티커플링, 로딩암)
투명성 제고 및 법령 정비 등	음반·비디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추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로 개정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
	영화진흥법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수입추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
	자동차…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비완성 수입차의 범위를 HS 8702~8704로 설정	비완성 수입차의 범위를 HS 87류 전체로 확대
	축산물가공…	법령소관 품목 범위가 불명확	법령소관 품목 범위를 명확히 규정
	식품위생법	법령소관 품목 범위가 불명확	법령소관 품목 범위를 명확히 규정
	소음/대기…	인증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인증기관이 환경부로 변경
	자동차/계량…	택시미터의 소관법령 : 계량및측정에 관한법률	소관법령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형식승인 면제사유 중 '수출용' 누락	면제사유에 '수출용'을 명시적으로 표시
	외국간행물…	문화부장관 추천이 필요한 실수요자 범위 불명확	실수요자 범위 규정 (미화 5,000$ 이상으로 규정)
	가축전염…	쇠고기 수입허용지역에 멕시코 누락	멕시코 추가
	통합공고총칙	수출입특례조항(제8조) 운영	수출입 특례조항중 제8조 나호 내지 라호 삭제
	수산업법…	수출금지품목(10개품목) 지정 운영	수출금지품목을 7개품목으로 조정
	자동차/건설…	수출시 등록말소 확인대상 품목 불명확	HS 세번별로 명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2호('99. 7. 30)

통합공고 개정고시 주요내용

【수입부문】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과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 등의 수입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 프로판, 부탄 등 액화석유가스 수입시의 계약승인 및 수입신고 절차 폐지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에너지안전과

2. '비료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비료수입법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그 동안 비료관리법 적용대상이던 공업용·사료용 비료를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관련 부서 : 농림부 생산지원과

3. '종자산업법' 개정사항 반영

○ 판매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모든 종자용 품종에 대해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던 규정(Negative system : 면제대상 68개 작물)을 개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작물(Positive system : 109개 작물/HS기준으로 50여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적응성시험을 받도록 규제 완화

○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종자 수출입신고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제출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신용장(또는 수입계약서) 제출규정을 폐지하여 서류를 간소화

* 관련 부서 : 농림부 농산과

4. ‘인삼산업법’ 개정사항 반영

○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삼, 백삼, 홍삼 등 인삼제품에 대해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에게 신고 후 수입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폐지

* 관련 부서 : 농림부 채소특작과

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그 동안 산업자원부장관을 통해 신청·발급 받던 폐기물의 수입이동서류를 수입허가자가 직접 작성·보관토록 절차를 간소화

* 관련 부서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6. ‘문화재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를 수출하는 경우 반출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국내로의 문화재 수입(반입 포함)시 문화재 반출국에서 적법하게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현행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

* 관련 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

7.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한 형식승인 대상품목 조정

○ 전기통신기본법상 형식승인 대상품목이던 유선방송 수신용 컨버터를 법령미근거 규제폐지 및 업계의 자율적인 제품관리 장려 차원에서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부서 : 정보통신부 기술지원과

8. ‘석유사업법’ 개정사항 반영

○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간 부과금 납부 후 수입이 가능하던 자동차·선박 기관용 오일, 실린더 오일 등 윤활유 제품들(HS 10단위 기준으로 29개 품목)을 부과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9. ‘원자력법’ 및 ‘방사선량등을정하는기준’ 개정사항 반영

○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 품목들의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던 것을, 사용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이동사용 항목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입시 시설검사 합격,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작업종사자 보상기준인가 등의 구비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설검사만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관련 부서 :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10.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그 동안 별도 운영되던 주류수출업면허와 주류수입업면허를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로 통합함에 따라 주류 완제품의 수입·판매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 대신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발급 받는 것으로 변경

○ 별도 운영되던 주류수출중개업면허와 주류수입중개업면허도 주류중개업면허로 통합

* 관련 부서 : 국세청 소비세과

11. ‘잠업법’ 폐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도 잠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잠종이 아니면 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잠업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됨으로써 동 규정이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 반영되어, 정부(민간의 수입은 제외)가 수입하는 누에씨에 대하여는 시·도 잠업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 부서 : 농림부 과수화훼과(잠업법), 식품산업과(농수산물품질관리법)

12. ‘수산물검사법’ 개정사항 반영

○ 그 동안 양식용 수산물의 경우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이식승인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이식승인 뿐만 아니라 병충해 검사도 아울러 받도록 규정을 강화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1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사항 반영

○ 법령에 의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자)의 판매·사용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업자가 동 기기를 수입·판매함에 따라 오수의 오염도를 증가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7조) 및 환경부고시(제95-69호)를 개정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까지 금지하는 규정 신설

* 관련 부서 : 환경부 생활오수과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사항 반영

○ ’99.4.1. 국립환경연구원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구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입이 가능한 유독물(테트라클로로테트라히드로티오펜)과 수입금지품목(폴리염소화비페닐)이 각 1개씩 추가 지정되어 유독물은 총 503개 품목, 수입금지품목은 총 29개 품목으로 증가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

15. ‘약사법시행규칙’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그 동안 서류로 행하던 의약품과 의료용구에 대한 수입요건확인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 system)에 의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료용구는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도록 절차 변경

○ 해외에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미시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지난 ’99. 1. 1 통합공고 개정시 반영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에는 판매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미시판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로 조문 정리

*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의료기기과

16.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인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대

○ 전자출판물 기준을 정하고 있는 문화관광부고시가 개정(제1995-15호, ’99.5.1)됨에 따라 「CD-ROM 등의 형태로 발행되고,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으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HS 852431.1000, 852431.9000)」을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적용 대상품목으로 확대

* 관련 부서 :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1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및 반입추천을 받아야 하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해 추천없이 수입 및 반입이 가능한 예외 사유 5가지 사항을 각각 명시

수입추천 예외	반입추천 예외
- 전량 외국에 수출할 목적의 수입 - 고전·가곡·종교음악류의 외국음반 - 수입추천받은 외국영화가 수록된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 - 방송법에 의해 수입추천을 받고 방송한 프로그램의 비디오물 제작차 수입시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국제전시회 등에 참가한 자가 연구목적 수입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 - 교육·연수기관이 교육·연수 목적으로 반입시 - 자기수요를 위한 20개 이내의 음반·비디오물 및 10개 이내의 게임물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산업진흥 및 연구목적상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부서 :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18. '전파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부고시' 개정사항 반영

○ 전자파적합등록(EMI 검정) 시료용 기기, 자가사용 목적의 PC, 프린터 등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1대에 한함), 외국기술자가 반출조건부로 수입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5대 이하), 전시용·제품평가용 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등 전자파적합등록 면제대상 품목을 통합공고에 명시하고, 근거법령이 이미 없어진 무선기기 가허가 규정과 전자파적합등록 합격증 등 관련서류의 세관 제출규정 등 실효성없는 조항 삭제

* 관련 부서 : 정보통신부 전파감리과

19. '식품위생법' 관련사항 정비

○ 원토인 규조토(HS 2512.00.0000)는 굽는(소성) 과정을 거쳐야만 활성규조토(HS3802.90.1010)로 전환되어 식품첨가물로 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식품첨가물 대상품목에서 규조토를 삭제하고 대신 활성규조토를 포함

○ 식품위생법 대상 품목들의 목록인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상에는 누락되어 있던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 800여개(HS 10단위 기준)를 추가로 통합공고에 명시함으로써 수입시 관련법령 및 수입요건 적용상의 혼란방지

○ 그 동안 적용대상 법령 및 수입절차 등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 식품 수입에 대해 무상공급 목적으로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신고면제 규정을 수입식품등검사지침에 신설하여 동 품목의 수입절차를 정비

*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20.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수입제한지역 변경사항 반영

○ 젖소, 육우, 사슴, 면양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 중 남위 22도 이남지역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되던 호주에 대해 동 위도제한을 폐지하고, 면양육, 산양육 등의 수입 허용국에서 벨기에, 프랑스, 멕시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며, 산양과 돼지의 원피 수입 허용국에 벨기에를 추가

○ 서커스 등을 위한 흥행장용품으로 수입되는 동물들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규정을 신설

* 관련 부서 : 농림부 축산위생과

21.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대상 품목 추가

○ 그 동안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이던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중 ‘조제분유의 것(HS 1806.90.2111)’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우유와 크림 등)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HS 1806.90.2920)’ 등 2개 품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으로 변경분류

* 관련 부서 : 농림부 축산위생과

22. ‘식물방역법’ 개정사항 반영

○ 시험연구 목적 이외에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한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품목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 목록에 나무딸기와 히말라야시다 2종을 추가하는 등 통합공고 별표 9 ‘수입금지식물 및 수입금지지역’을 개정

* 관련 부서 : 농림부 환경농업과

23. ‘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 반영

○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에 따라 우표·수입인지·각종 유가증권 등의 수입요령을 정비

* 관련 부서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수출부문】

1.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그 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주류수출업면허와 주류수입면허를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로 통합함에 따라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출업면허 대신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변경

* 관련 부서 : 국세청 소비세과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 사항 반영

○ ’99. 4. 1. 국립환경연구원고시가 개정되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구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한 유독물(테트라클로로테트라히드로티오펜)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유독물은 503개 품목으로 증가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

3. ‘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에 근거한 ‘치어및치패의수출제한고시’ 개정사항 반영

○ 수출시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이식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산물 중에서 관상용 활어, 잉어, 넙치, 참돔, 돌돔, 우럭 등 6개 품종을 제외
- 현행 이식승인 대상 품목 : 뱀장어, 방어, 농어, 볼락 등 8개 품목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4. ‘잠업법’ 폐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도잠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잠종이 아니면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잠업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됨으로써 동 규정이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 반영되어, 정부(민간 수출은 제외)가 수출하는 누에씨에 대하여는 시·도잠업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 부서 : 농림부 과수화훼과(잠업법), 식품산업과(농수산물품질관리법)

5. ‘인삼산업법’ 개정사항 반영

○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삼, 백삼, 홍삼 등 인삼제품에 대한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에게 신고 후 수출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폐지

* 관련 부서 : 농림부 채소특작과

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그 동안 산업자원부장관을 통해 신청·발급 받던 폐기물의 수입이동서류를 수입허가자가 직접 작성·보관토록 절차를 간소화

* 관련 부서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7. ‘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 반영

○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에 따라 우표·수입인지·각종 유가증권 등의 수입요령을 정비

* 관련 부서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99. 3/4분기 통합공고 개정고시의 법령별 주요 변경내용(요약)

유형	법 령	현 행	개 정
규제 폐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가스용기 등 수입시 사전신고제	사전신고제 폐지
		액화석유가스 수입시 계약승인 및 수입신고	계약승인 및 수입신고제 폐지
	인삼산업법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신고 후 수출입	신고제 폐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입시 수출국 발행 반출증명서 첨부	반출증명서 첨부 규정 폐지
규제 완화	비료관리법	비료수입업 등록제	신고제로 변경
	식물방역법	시험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예외 인정	정부 인정 국제박람회 출품을 위한 식물수입에 대해서도 예외인정
	주세법	주류수출업면허, 수입업면허가 구분	주류수출입업면허로 통합
	종자산업법	Negative system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 규정	Positive system으로 변경
		수출입신고시 다양한 구비서류 필요	수출구비서류 폐지, 수입구비서류 축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입 이동서류 발급	수출입 허가자가 직접 이동서류 작성·보관토록 변경
	전기통신…	유선방송 수신용 컨버터 수입시 형식승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석유사업법	윤활유 제품 수입시 부과금 납부	윤활유제품은 부과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원자력법	수입시 구비요건이 다양	시설검사만 합격하면 수입이 가능
	잠업법/농수산물품질…	검사합격 후 잠종 수출입(잠업법)	민간수출입의 검사규정 폐지(잠업법 폐지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
	수산업법	이식승인 대상 품목 : 총 14종	관상용 활어 등 6종 제외

유형	법 령	현 행	개 정
규제 강화 (추가)	수산물검사법	양식용 수산물의 경우 이식승인 후 수출입	병해충 검사 규정 신설
	오수·분뇨…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판매·사용 금지	제조·수입금지 규정 신설
	유해화학…	유독물 : 502개/수입금지물품 : 28개	각 1개씩 추가
	가축전염병	흥행장용품 목적의 동물수입에 대한 규정 미비	검역규정 신설
	식물방역법	일정지역·일정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수입금지 대상에 2개 품목 추가
	원자력법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자는 사용·판매에 대해 과기부장관의 허가 필요	이동사용도 허가대상에 포함
	약사법	서류에 의한 수입요건확인	EDI 방식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
		미시판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시 판매증명서 제출이 생략 가능	'… 생략한다'로 조문 정리
	외국간행물…	CD-ROM 형태의 전자출판물 규정 미비	CD-ROM 형태의 전자출판물을 동법대상품목으로 포함
	음반·비디오물및…	수입·반입추천에 대한 예외규정 미비	수입·반입 추천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전파법	EMI 검정 면제대상 규정 미비 및 무선기기 가허가 규정 및 실효성 없는 규정 잔존	면제대상 품목을 명시하고, 실효성없는 규정 정비
	식품위생법	활성규조토 대신 규조토가 식품첨가물에 해당	활성규조토를 식품첨가물로 분류
		식품 등의 통합공고 누락사례 빈발	누락된 품목을 통합공고에 명시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 식품 수입규정 미비	수입규정 신설
	가축전염병	젖소 등 수입시 호주에 대해서는 위도제한	위도제한 폐지 및 수입허용국 및 금지국에 대한 정비
	축산물가공…	코코아 등을 원료로 한 조제분유 등이 식품위생법 대상으로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으로 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30호(99. 11. 8)

통합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수입부문】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 ’99. 6. 21,「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속제노오말밴드, 전기연필깍기기 등 23개 제1종전기용품의 수입시 형식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형식승인시 전기적 안정성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후봉사체제, 제품사용설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 완화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품목이면서 현행 통합공고 별표 2의 수입요령상에 누락되어 있던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 12개품목(HS 10단위기준)을 추가함

○ 검사 및 검정등의 확인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외에 품목에 따라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설자협회를 추가함

○ 품목번호(HSK)가 신설되므로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청석면등 8개품목(HS 10단위기준)을 추가하고, 6개품목을 삭제함

* 관련 부서 : 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보건환경과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사항 반영

○ 유독물 추가지정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입이 가능한 유독물을 무기은염류등 14개를 추가하고, HSK의 개정으로 1개품목을 삭제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

5. ‘식품위생법’ 관련사항 정비

○ 냉장·냉동한 김, 미역, 다시마등 21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한 검사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서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로 변경하고, 그 동안 별표 2의 수입요령상에 누락되어 있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이 검사해야 하는 150여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추가함

○ 또한, 식품위생법 대상 품목들의 목록인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상에는 누락되어 있던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 400여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추가로 통합공고에 명시함으로써 수입시 관련법령 및 수입요건 적용상의 혼란방지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6. ‘약사법’ 개정사항 반영

○ 사전 검정대상 의약품 중 화장품이 2000년 1월 1일부터 제외(한·EU간 화장품 TBR관련 이행 사항)됨에 따라 전문에 반영함

○ 의료용구의 수입요건확인기관을 추가지정함

- 한국의료공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서 한국의료공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의료기기협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장으로 확대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삭제함

7.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사항 반영

○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와 같이 동물용의약품 등의 수입요령도 사전관리체제에서 사후관리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서류로 행하던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을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도록 절차 변경

* 관련 부서 : 농림부 가축위생과

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황산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화약(HS 3833.22.00.00)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을 강화함.

* 관련 부서 : 경찰청 방범지도과

9.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 추가

○ 그 동안 적용대상 법령 및 수입절차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식용란(HS 0407.00.1090)에 대한 수입절차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

* 관련 부서 : 농림부 가축위생과

【수출부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 사항 반영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의 개정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한 유독물 퍼플루오로시클로펜텐 등 8개품목(HS 6단위 기준)이 추가 지정됨

Ⅴ- 19. 2000년의 통합공고 운용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23호(2000.2.26)

통합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본문부문】

○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
- 요건확인 품목, 요건면제품목 등 각 장에 산재해 있는 정의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

○ 요건면제 사유를 신설함(제12조제1항)
-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던 수출입특례규정과 요건면제물품을 통합하고, 요건면제사유를 명확화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대하여는 요건면제물품에서 제외함(제12조제2항)
- 비아그라, 뮤즈(발기부전치료제) 등

○ 야생조수에 관한 규정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규정에 포함하여 규정함 (제106조)
-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규정되어 있던 야생조수 및 멸종위기의 야생조수의 수출입요령을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조문에 이관하여 규정함

○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을 생략하는 경우를 구체화함(제119조제2항)

현 행	개 정(안)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 국제협약에 의해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 제철소, 조선소, 광산등 및 제설용, 방송용, 전기·통신 복구용등 한정된 장소 및 특수용도로만 운행되는 자동차 - 관세법에 의해 공매되는 자동차 등

【수출부문】

1. ‘농약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농약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해야 하는 사람이나 가축등에 유해한 농약이나 원제를 삭제함에 따라 통합공고 관련 규정을 정비

* 관련 부서 : 농림부 환경농업과

2. ‘수산업법 및 수산물검사법’ 사항 정비

○ 해양부고시 수산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치어및치패수출제한고시 등에 수출제한 규정이 없는 굴, 가리비 등 5개품목(HS 6단위 기준)을 통합공고 별표1의 수출요령에서 삭제함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 사항 반영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의 개정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한 중크롬산나트륨등 10개품목(HS 6단위 기준)을 유독물로 추가 지정함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

4.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시행령’ 사항 정비

○ 군용이외의 연발권총, 탄약통등 10개 품목(HS 6단위기준)에 대한 허가권자가 경찰청장에서 지방경찰청장로 바뀜에 따라 통합공고 관련 규정을 정비

* 관련 부서 : 경찰청 방범지도과

【수입부문】

1. ‘석유사업법’ 개정사항 반영

○ 석유사업법시행령의 개정(2000.1.1 시행)으로 원유, 천연가스 등 석유류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통관일까지 납부에서 통관후 익월 15까지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공고에 반영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2. ‘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염수입시 대한염업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축소함
- 생산지에서의 염의 제조·가공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함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사항 반영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입이 가능한 유독물의 범위에 중크롬산나트륨 등 12개 품목을 추가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으로 3개 품목을 삭제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기관이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공고 관련규정 정비

* 관련 부서 : 환경부 교통공해과

5. ‘원자력’ 관련사항 정비

○ 핵연료 물질,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입시 각각 과학기술부장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허가사항이 요건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공고 관련규정을 정비

* 관련 부서 :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6. ‘식품위생법’ 관련사항 정비

○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물품 중 별표 2의 수입요령에 누락되어 있는 감초, 푸르푸릴 알콜 등 3개 품목을 추가하고, 동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사탕무종자, 양(면양)등 4개품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 새우살, 게살 등 33개 품목(HS 10단위 기준)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검사를 종전대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실시하고, 가공품이 아닌 경우에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이 검사되도록 업무를 조정함에 따라 통합공고 관련규정을 정비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7. ‘마약법’ 사항 정비

○ 마약법상 마약에 속하지 않는 아포몰린 및 염산아포몰린을 수입할 수 없는 대상에서 삭제

*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8.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협약)’ 회의 결과 반영

○ 참다랑이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는 적도기니아에서, 황새치 및 그 가공품은 벨리제·온두라스에서 2000. 6. 23부터 동회원국에서 수입할 수 없도록 의결('99. 11. 15-22)됨에 따라 통합공고 관련 규정에 반영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9.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사항 반영

○ 동법의 개정으로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견본제출등의 업무가 문화관광부장관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인쇄서적,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수입요령을 변경함.

* 관련 부서 :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10.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흑색화약, 무연화약 폭약등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군용으로만 사용하는 산탄총의 총신, 탄약통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통합공고 관련규정을 정비

* 관련 부서 : 경찰청 방범지도과

11. ‘가축전염병예방법’ 사항 정비

○ 건조 또는 훈제한 쇠고기의 수입허용 지역에 우루과이를 추가하는 등 동법 대상 54개 품목(HS 10단위기준)에 대하여 통합공고 수입요령을 정비함

* 관련 부서 : 농림부 가축위생과

12. ‘식물방역법’ 사항 정비

○ 동법상 수입지역이 제한된 품목중 통합공고에 누락되어 있는 탈각하지 않는 낙화생의 채유용 종자등 25여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추가하고, 삼나무, 동백등 40여개 품목은 수입제한 지역이 아님에도 통합공고 별표 2의 수입요령을 정한 품목을 삭제함

* 관련 서류 : 농림부 환경농업과

13. ‘사료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동법의 개정으로 수입사료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신고대상에 어분등 1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통합공고에 반영

* 관련 부서 : 농림부 환경농업과

14.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물품과의 조정

○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99-40호)에는 수입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공고 별표 2의 수입요령에는 누락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법 및 약사법 관련 150여개 품목을 추가함.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75호(2000.8.1)

통합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본 문】

1. 적용대상 법령정비(제3조)

○ 마약법, 대마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되고, 약사법에서 화장품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다른 공고와의 관계를 명확화(제7조)

○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외에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대한 관계도 규정함

3. 오·남용의약품에 대한 요건면제 정비(제12조)

○ 오·남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자가치료용이라 하더라도 수출입요건을 거쳐야 하였으나, 자가치료용으로서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요건을 면제

4.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변경 반영(제87조)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전까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5. 국외반출승인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절차를 신설함(제107조)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함

【수출부문】

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반영

○ 국내 희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시붕어등 11개품목의 어류와 줄석송, 나도고사리삼등 190개품목의 식물에 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정비함

* 관련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계(T : 504-9284)

2. ‘원자력법’ 개정 사항 반영

○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반도체재료도핑용 이온주입기, 컴퓨터단층촬영기기, 감마사진기장치등 16개품목(HS 6단위기준)의 수출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을 거치도록 정비함

* 관련 부서 : 과기부 방사선안전과(T : 503-7654)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 사항 반영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의 개정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후 수출이 가능한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등 5개품목(HS 6단위 기준)을 유독물로 추가 지정함.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T : 504-9288)

【수입부문】

1. ‘약사법’ 개정사항 반영

○ 약사법 개정에 따른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등 관련규정을 정비

- 방사성의약품의 수입시 식약청장의 허가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통관예정보고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도록 함

* 관련 부서 : 식약청 의약품안전과(T : 380-1824)

2. ‘화장품법’ 제정사항 반영

○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화장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수출입요령을 정비함

- 종별(품목)허가제 폐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 신고하고 수입함. 다만, 기능성화장품(신 원료포함)에 대하여는 식약청장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관련 부서 : 식약청 의약품안전과(T : 380-1824)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사항 반영

○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관련 부서 : 식약청 마약관리과(T : 380-1855)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가 형식승인에서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업체별로 형식승인을 받던 것을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받음

* 관련 부서 : 산자부 산업표준안전과(T : 500-2584)

5. ‘품질경영촉진법’ 개정사항 반영

○ 고무제의 타이어등 11개 물품(HS 10단위)이 안전검사 대상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통합공고에 반영

* 관련 부서 : 산자부 품질디자인과(T : 500-2528)

6.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 반영

○ 일본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일본산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제한(농림부고시 제2000-26호)하고, 지정검역항을 목포항 및 속초항으로 확대함에 따라 통합공고에 반영

* 관련 부서 : 농림부 가축위생과(T : 504-9438)

7. ‘식물방역법’ 사항 정비

○ 동법상 수입지역이 제한된 품목중 통합공고에 누락되어 있는 달팽이 등 유해동·식물 6개 품목(HS 10단위기준)을 추가하고, 별표 10의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 관련 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환경농업과(T : 503-7284)

8.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반영

○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물품 중 별표 2의 수입요령에 누락되어 있는 육엑스, 육즙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고, 동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타조, 사향, 우황 등 7개 품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 붕장어, 대구, 명태 등 3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물품을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T : 3148-684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T : 380-1733)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사항 반영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입이 가능한 유독물의 범위에 산성플루오르화암모늄 등 12개 품목(HS10단위 기준)을 추가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으로 3개 품목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반영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T : 504-928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83호(2000. 8. 18)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0-7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0년 8월 1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통합공고중 개정고시(안)

통합공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안전인증등등)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정확인서를 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건확인 세부요령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품목별 수출입요령의 품목번호 제2844.40호의 제1항중 관계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87조(안전인증 등) ①(생략) 〈신 설〉 ②-③(생략)	제87조(안전인증 등) ①(현행과 같음)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정확인서를 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산업자원부고시 2000-131호(2000.12.15)

통합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 개 요

○ 금번 개정안은 각 부처의 개정 수요가 많지 않아 소폭 개정함

□ 본문부문

○ 의료용구의 수입 위탁자 요건을 완화함(안 제31조)
-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자구수정(안 제49조)

○ 수입식품의 표시사항에 함량을 포함함(안 제52조)

□ 수출부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5개 물품(HS 6단위기준)이 유독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수입부문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사항 반영
- 우루과이의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류 동물 및 관련물품이 수입금지 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5개 물품(HS 10단위기준)이 유독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Ⅴ- 20. 2001년의 통합공고 운용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83호(2001. 7. 14)

통합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본문부문】

○ 狂牛病(BSE) 관련 수입관리대책을 반영
(제32조, 제35조, 제41조, 제166조)
- 대상 : 의약품,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식품, 사료 등(680개 품목)
- 소, 염소 등 ○○動物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으로서 EU지역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産 소 유래품목은 수입금지
-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産 품목을 수입시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動物 유래물질 未使用증명서 또는 未感染증명서 제출 의무화
-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 이외의 제3국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당해 품목 제조사가 수입금지국가産 금지품목을 함유하지 않음을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 의무화

  * 狂牛病 :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移植수산물 수입승인 대상에 내수면 낚시터 放流 등도 포함 규정(제8조제10호)
- 수산물의 移植승인대상에 內水面어업법상 내수면에서의 낚시업도 포함
- 수산물의 移植승인 범위에 낚시터 방류용으로 적합한 품종도 포함

* 移植水産物 :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후 양식·종묘·생산시설 등에 옮겨서 기르거나 낚시터에 방류하는 수산물

○ 野生鳥獸 및 그 가공품의 수입/반입 대상 확대(제106조)
- 현재는 타조, 메추라기, 머스코비오리만 허가후 반입이 가능하나, 외국에서 판매목적으로 인공사육된 鳥獸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번식·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는 모두 허가후 반입가능

○ 放射性동위원소 및 放射線발생장치의 수출입대상자를 수출자와 수입자로 구분 규정(제95조)
- 수출대상자는 원자력법 제65조(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사용허가)에 의하여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고를 필한 자로 한정하고

- 방사성관련 품목의 관리를 위해 수입대상자를 기존 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를 받은자에서 판매허가를 받은자로 제한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출입허가권자 변경 (제109조, 제111조, 제113조)
- 동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산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2001.7.17일 이후)

○ 폐기물 수입시 첨부서류 일부 간소화(제111조)
-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내역서를 구비서류에서 제외
- 재활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구비서류에서 제외

【별표상 수출부문】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추가된 유독물을 반영

○ 동법에 규정된 有毒物은 통합공고상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 신고해야 하는데, 동법에 추가된 유독물을 통합공고에 반영
- 이염화에탄, 염화비닐, 옥시란 등 6개 품목

2. ‘원자력법’ 개정사항 반영

○ 동법상 “放射性동위원소 또는 放射線발생장치” 수출입시 신고사항인데, 동법 개정으로 관련 檢査用計器도 신고사항에 포함됨. 이를 반영

○ 동법상 관련 告示명칭이 변경된 바, 이를 반영
- “방사선량등을정하는기준”을 “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량등에관한고시”로 명칭변경

3. ‘수산업법·수산물검사법’ 職制改正 내용 반영

○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변경

【별표상 수입부문】

1. 약사법 및 화장품법상 狂牛病(BSE) 관련 수입관리방안 규정 반영
  - 내용은 본문부문에서 전술

2. '사료관리법'상 광우병 관련 수입관리 방안 및 직제 변경
  ○ 광우병 관련 수입관리 방안 : 내용은 본문부문에서 전술
  ○ "축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

3. '가축전염병예방법'상 口蹄疫 발생국에서 수입금지지정 내용 반영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로부터 돼지고기, 면양/산양고기 등 牛蹄類 동물 등 수입금지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有毒物 신설사항 반영
  ○ 수출부문에서 전술한 내용을 수입에도 적용

5. '수산업법·수산물검사법' 개정사항 반영
  ○ 직제개정으로 "국립수산물검사소장(지소장포함)"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포함)"으로 변경
  ○ 移植수산물에 대한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승인대상 품목에 국내양식용 뿐 아니라 낚시터 방류용 품목도 포함.

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 내용은 본문에서 전술

7.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반영
  ○ 내용은 본문에서 전술

8. '원자력법' 개정사항 반영
  ○ 동법상 放射線발생장치는 수출입신고사항인데, 동법 개정으로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 부속품도 신고사항에 포함한 바, 이를 반영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현재 안테나증폭기, 모니터, 개인용컴퓨터 및 네트워크컴퓨터 등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形式承認과 전파법상 電磁波適合登錄을 요하였으나, 상기품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으로 형식승인(인증)대상에서 제외된 바, 이를 반영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12호(2001. 9. 15)

통합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 일본에서 狂牛病 발생에 따른 농림부의 수입사료 관리대책을 반영

○ 최근 일본에서 狂牛病 양성반응을 보이는 소가 발견되어 농림부는 '01. 9. 10부터 축산물 등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

○ 현재 광우병 유입 대상국인 유럽 30개국을 대상으로 사료수입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음(통합공고)

○ 일본에서도 광우병 발생가능성이 있어 일본을 포함한 유럽 30개국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료 수입중단 등 방역대책을 수립

- 통합공고상에 반영(별첨)

【근거 : 사료관리법 / 소관 : 농림부 축산경영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57호(2002. 1. 3)

통합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1.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 폐지에 따라 통합공고에 반영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음반물을 제외한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수입추천을 폐지함으로 자가사용의 경우 자유로이 수입 가능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는 존재함으로 국내 판매용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문광부 게임음반과

2.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양국간의 약정에 의해 수산물 위생검사 후 수출해야 하며 그 지정품목을 통합공고에 반영

○ 중국과의 "수출입수산물위생관리에관한약정"에 의해 중국(홍콩 제외)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검사를 받은 후 수출해야 함.

○ 대상 : 송어, 대구, 명태 등 338품목

*「수산물품질관리법」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3. '식품위생법'상 狂牛病(BSE) 관련 품목의 추가 지정사항 반영

○ '식품위생법'에 의한 광우병 관련 품목 추가 지정으로 잠정수입 신고중단 국가로 부터는 수입할 수 없고 그 외 국가로부터는 잠정수입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첨부

○ 어류의 혼합조제식료품 등 17개 품목 추가 지정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한 유독물·관찰물질 지정사항 반영

○ 동 법에 의해 지정된 유독물・관찰물질을 통합공고에 반영
(술폰아미드 등 5개 품목)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화학물질과

5. 법률명칭변경 및 요건확인기관 변경 사항 반영

○ 법률명칭변경 : ‘수산물검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요건확인기관 변경

- 의료용구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의 단일화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협회’ 2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화)
- 종자산업법 요건확인기관 개정
농촌진흥청 → 국립종자관리소(종자산업법)

○ 기관명칭 변경
국립동물검역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Ⅴ- 21. 2002년의 통합공고 운용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3호(5. 14)

통합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1.「염관리법」상 수입되는 염에 대한 수입부담금제도 폐지 사항 반영

○ 염 수입시 납부했던 수입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대한염업조합에 신고 절차도 폐지

*「염관리법」 산자부 생물화학산업과

2.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및 「국외반출시승인을얻어야하는생물자원지정」 고시 개정사항 반영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5종 추가 지정
- 붉은귀거북,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국외반출시승인을얻어야하는생물자원지정」 158종 추가 지정
- 파충류(도마뱀과, 장지뱀과 등 7종), 양서류(도룡뇽과, 두꺼비과 등 4종), 곤충류(작은실잠자리, 왕소똥구리 등 54종), 식물류(면마과식물, 노박덩굴과, 회양목과 등 60종), 어류(잉어과, 기름종개과, 메기과, 큰가시고기과 등 33종)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생태과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추가 지정사항 반영

○ 4-MTA, 4C-BM, 아세톤, 안스라닐릭산, 에칠에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약청 마약관리과

4.「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관찰물질 지정사항 반영

○ 동 법에 의해 신설된 유독물・관찰물질

- 2, 2-티오디에탄티올, 1-사이클로헥실,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N, N-디메틸프로판-1, 3-디아민[N-[3-(Dimethylamino)propyl]-N, N-dimethyl propane-1, 3-diamine]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화학물질과

5.「ICCAT」,「IOTC」 협약 변경 사항 통합공고에 반영

○「ICCAT」,「IOTC」 협약에 의해 대서양 및 인도양에서 어획한 참치류를 동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ICCAT(대서양참치류보존위원회)」 회원국 변경 사항
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키,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테,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튀니지, 파나마 영국령엥길라,

- 신설국 :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IOCT(인도양참치위원회)」 의무사항 반영

- 눈다랑어의 수출시 동 협약에 의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ICCAT」,「IOCT」 협약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6.「식품위생법」 상 식품류의 국외수출후 국내로 반송시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지정

○ 국내로 반송되는 품목은 요건면제 대상이었으나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검사 대상으로 개정

*「식품위생법」 식약청 식품유통과

7.「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입가능 지역 추가 지정사항 반영

○ 동 법상 우제류 동물 수입 가능지역 추가 지정

- 미국, 카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추가지정 지역 :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8.「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기·전자제품 등에 내장된 전지에 대해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납부대상으로 지정

○ 전지품목만 수입시 부과금을 납부하였으나 내장된 전지에 대해서도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납부대상으로 지정

- 시계, 전화기, 전자계산기, 사진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환경부 자원재활용과

9.「사료관리법」의 개정 사항 반영

○ 배합사료업체에 자가배합용으로 수입하는 사료에 대해 수입신고를 자가용으로 면제했던 것을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신고 및 요건확인토록 함

*「사료관리법」농림부 축산경영과

Ⅵ. 原産地制度

가. 배 경

○ 상공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하였음

○ 이 제도를 시행하게된 배경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입개방된 상황('91.5 수입자유화율 97.2%)에서,

- 최근 원산지 표시가 전혀 없는 품목이 수입되어 국내생산품으로 표기되어 시판되는 경우가 있고,
- 또 일부 수입품목은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경미한 가공 또는 단순조립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고 있어

○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소비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임

나. 원산지표시제도의 내용

1)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이번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품목은 의류, 가전제품, 식품류, 생활용품 등 주로 일반 소비재를 중심으로 250개품목(HS4단위)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별첨 1참조)

- 섬유류 : 의류, 타월, 카펫, 신발 등 50개
- 음식료품 : 된장, 간장, 아이스크림등 8개
-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등 44개
- 생활용품 : 우산, 지팡이, 식탁용품 등 54개
- 기타 : 문구류, 완구류, 공구류등 94개

2) 원산지규정

○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규정이 필요함

○ 원산지규정에 대하여는 국제관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교토협약의 기준을 수용하였음

○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할 원산지규정은,

-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 실질적 변형의 판정기준으로서는 세 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세 번 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적용 대상품목 43개 : 별첨 2 참조)

〈완전생산기준〉

○ 당해물품의 원재료를 모두 특정국내에서 조달하여 당해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당해국이 원산지가 됨

〈실질적변형기준〉

○ 당해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2개국 이상에서 조달된 경우 당해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케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

- 세번변경기준 : 원재료의 HS 세 번과 완제품의 HS세번이 상이한 경우 완제품생산국이 원산지가 됨
- 부가가치기준 : 당해제품의 부가가치중 35% 이상의 가치(금액)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
- 가공공정기준 : 35%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가 없거나 2개국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특성상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을 생산하거나 가공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됨

〈원산지규정의 적용절차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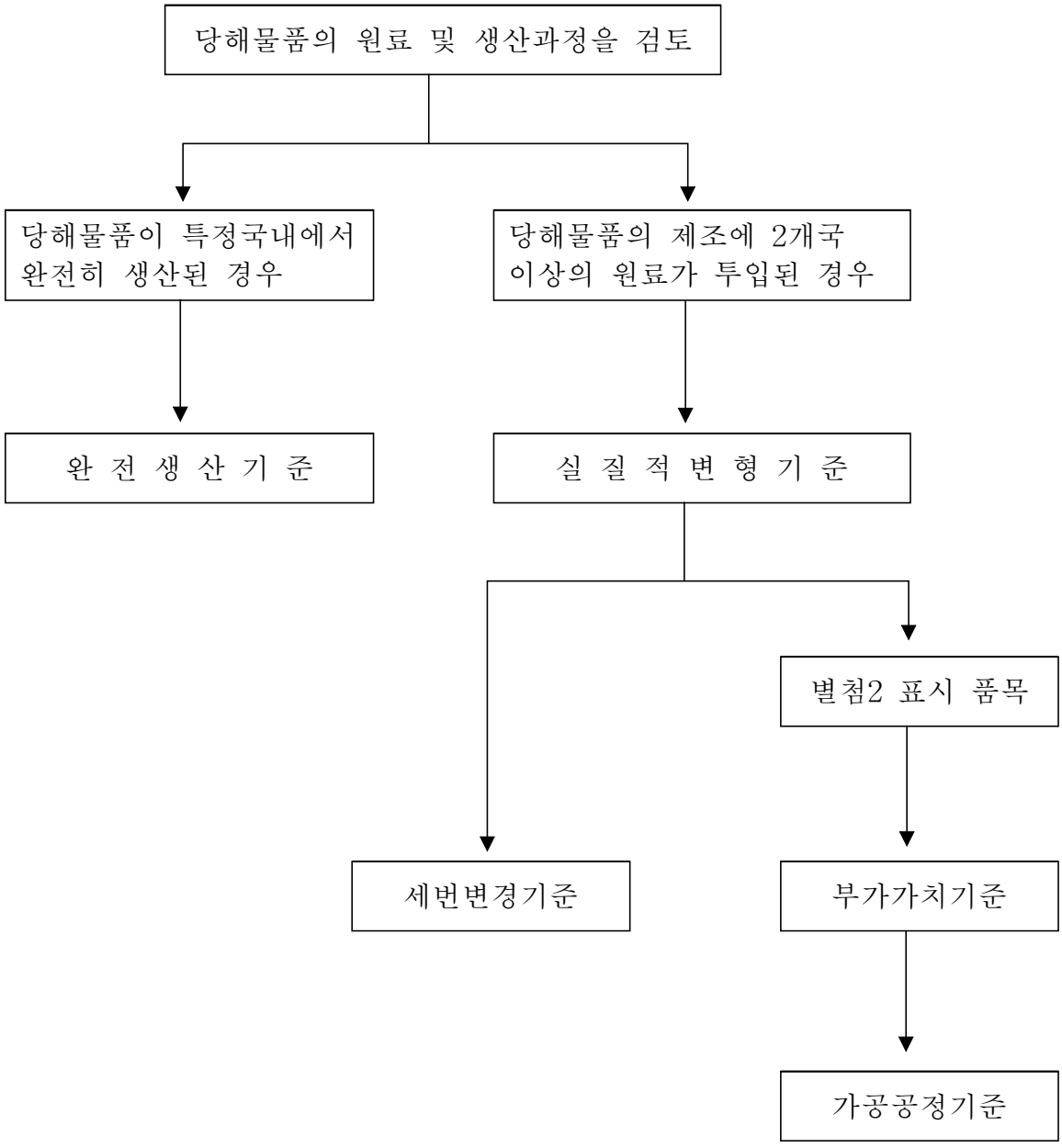

다. 원산지제도의 운용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원산지규정에 관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정함

○ 원산지표시의 확인, 위반물품의 처리등 집행업무는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장(세관장)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라. 원산지제도 시행일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는 새로 도입,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무역업계가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91. 7. 1)부터 시행함.

마. 원산지표시대상품목

H S	품 명	H S	품 명
1101 00 1000	밀가루	4303	모피의류, 부속품 및 기타모피제품
2101	커피,차류 및 이들의 농축물·조제품·대용품등	4304	인조모피와 그제품
		4419-4421	목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케이스등
2102	효모, 베이킹파우더등	4602	농세공품, 지조세공품, 수세미제품등
2103	소스,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분·조분 및 그 조제품등	4803	화장지, 티슈타월등
		4814-4821	벽지, 복사지, 앨범등
2104	수프, 조제식료품등	5007	견직물
2105	아이스크림, 빙과류	5111-5113	직물
2106	기타 조제식료품	5208-5212	면직물
3201-3407	염료, 화장품, 비누, 세제류	5309-5311	아마직물등 식물성 섬유직물
3702-3704, 3707	사진필름	5407,5408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3808	살충제, 소독제등	5512-5516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등
3818 00 1000	반도체제조용 실리콘 웨이퍼	5601 10	위생용품
3823 90 9090	합성조미료	5701-5705	양탄자류
3916-3926	플라스틱제품류	5802	테리타올 직물
4006-4017	고무제품류	6101-6310	의류, 모포류등 섬유제품
4202-4206	가방류, 케이스류, 혁제의류등		

H S	품 명	H S	품 명
6401 - 6406	신 발	8451 2	건조기
6501 - 6507	모 자	8452	재봉기
6601 - 6603	우산, 지팡이 등	8469	타자기, 워드프로세싱
6907, 6908	타 일		머신
6910 - 6912	도자제 위생·식탁.	8470	계산기 등
	주방용품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7003 - 7005	판유리	8472	사무용기계
7009 - 7015	유리제품류	8476	자동판매기 등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8479 89 10	에어컨류
7311	철강제 용기	8482	베어링
7317 - 7324	철강제 생활용품류	8502	발전기류
7415 - 7418	동제 생활용품류	8504 40 2010	무정전 전원장치
7612, 7613	알루미늄제생활용품	8504 40 2090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7615,		8506	건전지 등 일차전지
8201 - 8215	공구, 생활용품 등	8507 30	니켈카드뮴 축전지
8415	에어컨,공기조절기등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418	냉장고류	8509	진공청소기 등 가정용 전기
8419	가열기, 살균기, 정류기 등		기기
		8510	면도기, 이발기
8421	탈수기, 세탁기 등	8513	휴대용전등
8422	세척기, 건조기 등	8516	난방기, 드라이어,
8423	중량측정기기류		전자렌지, 토스트 등
8450	세탁기	8517	전화기, 모사전송기 등

H S	품 명	H S	품 명
8518	앰프, 튜너, 스피커,	8712	자전거 등
	헤드폰, 이어폰 등	8713	장애자용 차량
8519	레코드 플레이어,	8715	유모차
	턴테이블 등	9001 30 -	콘텍트렌즈, 안경렌즈
8520	카셋트, 테이프데크,	9001 50	
	녹음기 등	9002	렌즈, 필터 등 광학용품
8521	VTR		
		9003 - 9005	안경 및 안경테 등
8524 10,	레코드, 테이프 등	9006	사진기 및 부속품
8524 2		9009	복사기
8525 20 3000	모사전송기	9010	사진현상기기
8525 20 6010	워키토키 셋트	9011, 9012	현미경
8525 20 70	무선전화기	9017	제도·설계·계산용구
8525 30	TV 카메라	9018, 9019	의료용기기 등
8527	라디오	9025	온도계 등
8528	TV	9101 - 9114	시계와 부분품
8529	안테나 및 부분품	9201 - 9209	악기와 부분품
8535	퓨우즈, 피뢰기 등	9401	의자와 부분품
8536	플러그, 소켓등	9402	의료용가구류
8539	램프	9403	가구류
8543 80	이온정수기, 미용기기,	9404	침구류
	오디오믹서 등	9405	조명기구류
8544	전선, 케이블류		
8701 - 8705	승용자동차 등		
8711	모터사이클 등		

H S	품 명	H S	품 명
9501 - 9508	완구, 운동용구 등		
9603 - 9605	청소용구류		
9607	슬라이드파스너		
9608 - 9617	문구류, 라이터, 보온병 등		

바. 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 적용대상품목

H S	품 명	주요부품 또는 주요공정
7011 20 1000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라벌브 (TV기준 21“에 한함)	· 용해공정
8471 20 9000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 중앙연산처리장치 보드
91 9000		
92 2010	프린터	· 헤드
93 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헤드
8508 10 1000		
10 9000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20 0000	전기톱	
80 1000	전기그라인더, 샌더, 플리와셔, 브러셔	· Motot
80 2000	대패와 그루버	
80 9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8516 60 2000	전기밥솥	· 테프론코팅 알루미늄내솥
8516 79 1000	전기보온밥통	
8517 82 1000	모사전신기	· TPH
8518 40 0000	가청주파증폭기	· Power Trans
8519 21 0000	레코드플레이어	· 카트리지
8519 91 2010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중 디지털 식의 것(자동차용)	· Deck Mechanism
91 2020	기타의 음성재생기기중 디지털 식의 것(휴대용)	

H S	품 명	주요부품 또는 주요공정
99 3010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음성재생기기	
99 3020	(확성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Deck Mechanism
99 3090		
8520 31 2020	디지털방식의 테이프 녹음기	
	(휴대용)	· Deck Mechanism
90 1040	디지털식 카세트형의 데크	
8521 10 1000	마그네틱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	· Deck Mechanism
10 2000	용 기기	
90 1000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 Deck Mechanism
8525 30 1000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 렌즈 Assembly
8527 11 2000	레이저광학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수신	· Deck Mechanism
	용기기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한다)	
21 1090	아나로그식이 아닌 기타의 음성기록 또는	· Deck Mechanism
	재생기기와 결합된 라디오방송수신용 기기	
8527 21 2000	레이저광학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	· Deck Mechanism
21 3000	신용기기	
31 1210	(전원 및 용도와 형태는 불문한다)	
31 1310		
8528 10 4000	비디오 튜너(칼라용)	· 주파수변환장치
8528 10 9040	칼라텔레비젼 수상기	· CPT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	
	이가 53.34㎝ 이상의 것에 한함)	

H S	품 명	주요부품 또는 주요공정
8528 20 3000	비디오 튜너(흑백용, 단색용)	· 주파수변환장치
8529 10 9210	위성방송 수신기의 안테나 및 동부분품	· 최종제조공정
8539 39 2000	나트륨 램프	· 아크 튜브
9006 51 9000	35㎜ 롤필름용의 사진기	· 셔터
53 9000		
9009 12 0000	전자식 보통용지 복사기	· 드럼
9102 11 9000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 무브먼트
9504 90 2000	전자식게임기	· 프로그램이 내장된 팩 또는 보드(프로그램내장형) · 중앙연산처리장치 보드 (프로그램교환형)

한국의 수입 관련법령의 체계 (2002년말 현재)

구 분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고시/규정	소관
실물의 이동	비관세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수출입공고	
					수출입 별도공고	
		50여개 개별법	50여개 개별법시행령	50여개 개별법 시행규칙	수출입 통합공고	
	관세	산업피해 구제법	산업피해구제 법시행령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통계 통합분류표	재정경제부
				덤핑방지관세 규칙		
				긴급관세규칙		
				특별긴급관세 규칙		
			조정관세규정			
			할당관세규정			
			세계무역기구 협정등에의한 양허관세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적용규정			
		수출용원자료관세환급법	수출용원자료 관세환급법시행령	수출용원자료 관세환급법시행규칙		
자금의 이 동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	
금융의 지 원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시행령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무역금융 취급세칙	